



2026. 4.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Analysis of the First supplementary
budget proposal for 2026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총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이상준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유민호 임동훈 김민혁 박승호 이석원
정금연 김용오 김성은 김다운 이미선
서창희 김지수 임제웅 정한솔 오규환
정성영 김유진 안승재 허아름 박은형 예산분석관
김효경 박지원 이정훈 박정환 이유섭 추계세제분석관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황진솔 이두영 황종률 김상용 이진희 경제분석관

지원 | 김병규 예산분석관보
김정선 정진아 김리라 장유진 행정실무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02) 6788-3769 | e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6. 4.

발 간 사

총지출 25.2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고유가 위기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피해 산업 및 기업 지원, 공급망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업종의 초호황과 내수 회복세를 바탕으로 올해 2%대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말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고유가·고환율의 충격이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의 향방에 따라 하반기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의 적기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엄중한 경제 상황 하에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됩니다. 제1장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재원 조달의 적정성, 국세수입·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주요 정책별 분석 등 총괄적인 분석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각 부처 개별 사업의 시급성, 집행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바라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충실히 지원해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4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제1장 추경안 총괄 분석

I. 추경안 개괄 / 3

1. 개 요	3
가. 추경안의 구성	3
나. 추경안의 편성배경 및 방향	6
2. 재정총량	7
가. 개요 및 자원	7
나. 재정총량 변화	9
다. 분야별 총지출 변화	10
3. 주요 내용	11
가. 편성목적별 주요 내용	11
나. 세부사업별 내역	12
다. 회계·기금별 내역	17
라.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주요 내용	19
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주요 내용	22

II. 총량 분석 / 25

1. 경제여건 및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25
가. 경제여건	25
나.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8
2. 추경안의 편성요건 분석	43
가. 추경안의 편성요건	43
나. 분석의견	44



CONTENTS

3. 추경안 재원구조 분석	47
가. 재원 현황	47
나. 분석의견	49
4. 2026년도 국세수입 실적 및 세입경정 분석	52
가.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55
나. 2026년 국세수입 전망	58
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차이 분석	69
5.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72
가. 재정수지	73
나. 국가채무	77
6. 총평	90
III. 정책별 분석 / 93	
1. 고유가 부담 완화	93
가. 고유가 부담 완화 사업 편성 현황	93
나. 분석의견	96
2. 민생 안정	100
가. 민생 안정 사업 편성 현황	100
나. 분석의견	104
3.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119
가.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사업 편성 현황	119
나. 분석의견	121
4. 지방재정 보강 등	131
가. 지방재정 보강 등 편성 현황	131
나. 분석의견	132

제2장 위원회별 분석

I.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137

1. 개 요	137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137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39
2. 사업별 분석	146
가. 조달금리 추계의 적정성 및 가용 자원 미활용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 우려 (재정경제부)	146
나. 지방채 인수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재정경제부)	156
다.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의 추경안 미편성에 따른 문제점(기획예산처)	160
라. 목적예비비 편성의 불가피성과 제도적 보완 과제(기획예산처)	165
마.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 분석(국세청)	172
바.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전조사 결과 관계 기관과의 공유·활용방안 마련 및 법령상 근거 명확화 필요(조달청)	187

II. 교육위원회 / 195

1. 개 요	195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195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96
2. 사업별 분석	201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추경에 따른 체계적 집행 계획 수립 필요(교육부)	201
나.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대상자 선발 과정의 면밀한 관리 필요(교육부)	212



CONTENTS

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교육부)	221
라. 태양광 설비 확충 사업 공사 단가 비교 필요(교육부)	225

III.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28

1. 개 요	228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228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228
2. 사업별 분석	231
가. 4대 과학기술원 창업지원의 중장기 사업계획 보완 및 유사 지역거점 창업지원사업과 연계방안 마련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1
나.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의 기존 사업과 차별화 강화 및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1

IV. 행정안전위원회 / 248

1. 개 요	248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248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249
2. 사업별 분석	250
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자치단체 보조율의 다층화 및 지역사랑상품권 수급자 사용편의성 제고 필요(행정안전부)	250
나.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대응지방비 추가소요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재정관리 필요 (행정안전부)	263
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재설계 필요(행정안전부)	270

V.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80

1. 개 요	280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280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281
2. 사업별 분석	284
가.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 및 조속한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문화체육관광부)	284
나.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면밀한 사업관리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292
다. 4대 분야 할인쿠폰 사업 분석(문화체육관광부)	301
라.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청년콘텐츠 분야 투자 비중 상향 및 펀드 전체 수익률 제고 필요(문화체육관광부)	314

VI.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320

1. 개 요	320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320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321
2. 사업별 분석	325
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등 (농림축산식품부)	325
나. 2026년 유가를 반영하여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의 기준가격 현실화 검토 필요 등(농림축산식품부)	334
다.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융자)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농림축산식품부)	342
라. 원자재 가격 동향에 비추어 소요액 대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액 과소 편성 여부 검토 필요(농림축산식품부)	346

CONTENTS

마. 농지 전수조사 수행을 위한 대규모 조사원 신규 채용 방안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등(농림축산식품부)	352
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가 대상지역 선정시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 필요 등 (농림축산식품부)	364
사.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면밀한 집행 관리 필요(해양수산부)	370
아. 수출기업바우처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 필요(해양수산부)	375
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 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해양수산부)	380
차. 항공유 구입 사업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산림청)	385

VII.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388

1. 개 요	388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388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389
2. 사업별 분석	395
가. 소부장공급망안정화종합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개선 필요(산업통상부)	395
나.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산업통상부)	404
다.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의 부처간 중복 지원 배제 필요(산업통상부)	413
라. 제조암묵지 기반 AI모델개발(R&D) 사업의 업종별·공정별 다양성 확보 필요 등 (산업통상부)	420
마. 석유비축사출자 사업의 비축유 구입 예산 재산정 필요 등(산업통상부)	425
바.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사업의 추경을 통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 재검토 필요 등 (산업통상부)	436
사.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 추진 시 산업통상부와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면밀한 지원 필요(중소벤처기업부)	445

CONTENTS

아.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의 연내 인증획득 지원 가능한 협약기업 선정 필요 등 (중소벤처기업부)	459
자. 창업 활성화 및 재기 지원 사업 분석(중소벤처기업부)	468
차.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상생형 제조AX선도모델)의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여부 및 추경예산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중소벤처기업부)	497
카. 중소기업 모태펀드 기존 자펀드 운용 재원 투자 여력 검토 필요(중소벤처기업부)	504
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자체 보증여력 우선 검토 필요(중소벤처기업부)	513
파.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대출 공급 필요(중소벤처기업부)	521
하.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사업의 면밀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필요 (지식재산처)	531

VIII. 보건복지위원회 / 538

1. 개 요	538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538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539
2. 사업별 분석	541
가. 의료급여 수급 자 수, 적정 적립금 등을 고려한 면밀한 예산 추계 필요 (보건복지부)	541
나.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사업수행을 위한 면밀한 계획 마련 필요 (보건복지부)	552
다. 긴급복지 사업의 반복적 과소계상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관리 강화 필요 (보건복지부)	559
라.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재원 안정화, 전문 인력 중심의 전달체계 보완 필요 (보건복지부)	568
마.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의 기간제 대체인력 수급 계획 수립 등 면밀한 사전준비 필요(보건복지부)	575

CONTENTS

바. 지역필수의사제 지원 목표인원 확대에 따른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보건복지부) · 582	
사.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실적 제고 및 참여 유도 방안 강구 필요(보건복지부) ····· 591	
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상담인력 채용 관리 및 AI 관련 인프라 구축 예산 편성의 필요성 검토 필요 등(보건복지부) ··········· 597	

IX.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606

1. 개 요 ··········· 606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 606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 607	
2. 사업별 분석 ··········· 612	
가.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다양화를 고려한 기금편성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 612	
나. 이차보전 사업의 사업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 621	
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연료비 보전 지원 편중 및 구조적 개선 투자 미흡 (기후에너지환경부) ··········· 631	
라.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 637	
마. CCU메가프로젝트(R&D)의 기술개발 성과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 예산 편성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 643	
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목표인원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등 (고용노동부) ··········· 648	
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병행 필요(고용노동부) ··········· 656	
아. 내일배움카드 사업: 자부담 훈련비를 감소한 목표인원 선정 필요 등(고용노동부) 662	
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 및 사업주 대상 참여 독려 필요 (고용노동부) ··········· 672	



CONTENTS

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직접융자의 적정 규모 검토 및 높은 수요를 감안한 이차보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고용노동부)	678
카. 신용보증대위변제: 구상채권 회수율 개선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고용노동부)	685
타. 체불청산지원융자: 대지급금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를 감안한 사업 활성화 및 집행관리 필요(고용노동부)	691

X. 국토교통위원회 / 699

1. 개 요	699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699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700
2. 사업별 분석	702
가. 법 개정 논의 및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반영한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소요예산 추계정확성 제고 필요(국토교통부)	702
나. 법률 및 세무 자문 지원 단가 및 규모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국토교통부)	708
다. 모두의 카드 사업 소요예산 적정성 검토 필요(국토교통부)	714

제1장

추경안 총괄 분석

1

개요

가. 추경안의 구성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7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이 2026년 3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번 추경안은 총지출 기준 18개 부처의 13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사업 중 증액이 이루어진 사업은 133개이고, 감액된 사업은 없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개)

구 분	회계기금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증액 사업 수 (총지출 기준)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1
			국세청	1
			조달청	1
		교육위원회	교육부	9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5
			해양수산부	4
			산림청	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13
			중소벤처기업부	12
			지식재산처	1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9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4
			고용노동부	6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5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구 분	회계기금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증액 사업 수 (총지출 기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5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6
	관광진흥개발기금			6
	영화발전기금			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1
	농지관리기금			1
	축산발전기금		1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1
	전력산업기반기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5
	기후대응기금			3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1
	근로복지진흥기금			2
	임금채권보장기금			1
합계				133

주: 총지출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참고로 2020년 이후 추경안 편성 사례를 살펴보면, 2020~2022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하여 총 8차례의 추경안이 편성되었으나 2023~2024년의 경우 추경안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5년에는 2차례의 추경안이 편성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된 추경안의 규모, 소관 부처의 수 등은 다음 표와 같다.

[2020~2026년도 추경안의 소관부처 및 세부사업수 현황]

(단위: 조원, 개)

구분		규모		소관 상임위원회수	소관 부처수	증액 세부사업수 (총지출 기준)
		세입결손 보전	세출증액			
2020	제1회	3.2	8.5	7	8	42
	제2회	-	4.0	1	1	1
	제3회	11.4	16.0	16	28	299
	제4회	-	7.8	7	7	18
2021	제1회	-	15.0	10	17	70
	제2회	-	31.8	11	13	78
2022	제1회	-	14.0	3	4	5
	제2회	-	52.4	16	59	58
2025	제1회	-	12.2	9	14	93
	제2회	10.3	14.9	13	19	159
2026	제1회	-	25.2	10	18	133

주: 세출증액은 총지출 순증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추경안의 편성배경 및 방향

정부는 2026년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상회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6년 3월 13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한편,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고,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에너지 복지 확대를 추경안에 포함하였다.

또한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중동 사태에 따른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피해기업·산업 지원, 에너지·신산업 전환, 나프타·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내국세 초과세수에 연동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등 지방재정 보강분도 반영되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업종 호조 등에 따른 법인세·증권거래세 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가. 개요 및 재원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액의 총지출 기준 순증(이하 “세출증액”) 규모는 25.2조원으로,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제출된 총 19회의 추경안 중에서 세출증액 규모는 세 번째에 해당한다.

[2009~2026년도 추경안 규모 및 구성 현황]

(단위: 조원)

구분	국회제출일	총 편성규모		국회 세출증감
		세입결손 보전	세출증액	
2008년	6.20.	-	5.2	△0.3
2009년	3.30.	11.2	17.7	△0.5
2013년	4.18.	12.0	7.0	△0.01
2015년	7.6.	5.6	9.3	△0.06
2016년	7.26.	-	8.9	△0.1
2017년	6.7.	-	10.6	△1.0
2018년	4.6.	-	3.9	△0.02
2019년	4.25.	-	6.7	△0.9
2020년	제1회	3.5.	8.5	2.4
	제2회	4.16.	4.0	4.0
	제3회	6.4.	16.0	△0.2
	제4회	9.11.	7.8	△0.03
2021년	제1회	3.4.	15.0	△0.1
	제2회	7.2.	31.8	0.2
2022년	제1회	1.24.	14.0	2.6
	제2회	5.13.	52.4	2.8
2025년	제1회	4.21.	12.2	1.6
	제2회	6.23.	14.9	1.3
2026년	3.31.	-	25.2	심사 예정

주 정부안의 세출증액은 총지출 순증규모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열린재정, 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따른 세출증액 25.2조원은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현 상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추경안의 재원은 법인세 등 국세수입 중심의 세입증액경정 25.2조원, 기금 여유재원 1.0조원이 활용될 예정으로, 재원별 상세내역 및 합의 등에 대해서는 II장에서 분석하였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규모 및 재원]

(단위: 조원)

규 모		재 원	
- 세출 증액	25.2	- 세입 증액경정	25.2
- 국채 상환	1.0	- 기금 여유재원	1.0
합 계	26.2	합 계	26.2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재정총량 변화

이번 추경안에 따른 재정총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총수입**의 경우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5.4조원 증가한 700.6조원이며 **총지출**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5.2조원 증가한 753.1조원이다.

[추경안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

(단위: 조원, %, %p)

구 분	2025 제2회 추경	2026		증 감 (B-A)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총수입 (증가율) ¹⁾	642.4 (4.9)	675.2 (3.6)	700.6 (7.5)	+25.4
총지출 (증가율) ¹⁾	703.3 (7.1)	727.9 (8.1)	753.1 (11.8)	+25.2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60.8 (△0.8)	△52.7 (△1.9)	△52.5 (△1.9)	+0.2 (-)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111.6 (△4.2)	△107.8 (△3.9)	△107.6 (△3.8)	+0.2 (+0.1)
국가채무 (GDP대비)	1,301.9 (49.1)	1,413.8 (51.6)	1,412.8 (50.6)	△1.0 (△1.0)

주: 1) 2025년도는 2024년도 예산 대비 기준임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통합재정수지**는 추경안 기준 △52.5조원(GDP 대비 △1.9%)으로, 본예산 대비 적자 규모가 0.2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¹⁾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7.6조원(GDP 대비 △3.8%)으로, 본예산 대비 적자 규모가 0.2조원 감소할 예정이다.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413.8조원(GDP 대비 51.6%) 대비 1.0조원 감소하여 1,412.8조원(GDP 대비 50.6%)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다. 분야별 총지출 변화

이번 추경안에 따른 총지출 증감현황을 12대 분야별로 보면, 총지출이 증가한 분야는 일반·지방행정(9.9조원), 교육(4.8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3.3조원), 보건·복지·고용(0.9조원), 문화·체육·관광(0.6조원) 등 9개 분야이며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증가 규모가 가장 크다.

참고로 정부는 추경안을 통해 예비비를 5조원 증액할 예정인데, 예비비는 12대 분야에 집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추경안에 따른 12대 분야별 총지출 변화]

(단위: 조원)

구 분	2025 제2회 추경	2026		증감 (B-A)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총 지 출	703.3	727.9	753.1	25.2
보건·복지·고용	251.7	269.1	270.0	0.9
교육	96.2	99.9	104.8	4.8
문화·체육·관광	8.9	9.6	10.2	0.6
환경	12.9	13.9	14.0	0.1
R&D ¹⁾	29.7	35.5	35.6	0.1
산업·중소·에너지	35.3	31.8	35.0	3.3
SOC	26.0	27.7	27.8	0.1
농림·수산·식품	27.0	28.0	28.4	0.3
국방 ²⁾	61.3	65.9	65.9	-
외교·통일	7.3	7.0	7.0	-
공공질서·안전	25.8	27.3	27.0	-
일반·지방행정	127.2	121.4	131.3	9.9

주: 1) 각 분야에 포함된 R&D 지출을 합제한 금액

2) 국방 분야 중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관(병무청 제외) 일반회계 총계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편성목적별 주요 내용

정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을 26.2조원 규모로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고유가 부담 완화(10.1조원), ② 민생 안정(2.8조원), ③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6조원), ④ 지방재정 보강 등(9.7조원), ⑤ 국채상환 등 1.0조원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주요 내용]

(단위: 조원)

구 분	주요내용	규모
고유가 부담 완화	전국민 부담 경감(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5.1
	고유가 피해지원금	4.8
	에너지 복지	0.2
	소 계	10.1
민생 안정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0.8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9
	고물가 대응	0.1
	소 계	2.8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피해기업산업 지원	1.1
	에너지신산업 전환	0.8
	공급망 안정화	0.7
	소 계	2.6
지방재정 보강 등	교부세 확대·지방채 인수 등	9.7
기타	국고채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	1.0
총 규모		26.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2026. 3.)

나. 세부사업별 내역

총지출¹⁾ 기준으로 이번 추경안의 세출증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총 133개 세부사업의 25조 1,721억 7,800만원으로 구성되며, 감액된 사업은 없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부사업별 세출증액 내역]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본예산 ¹⁾	제1회 추경안	증액
재정경제부 (2)	공공자금	지방채 인수(용자)	100,000	200,000	100,000
	관리기금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29,163,856	29,270,456	106,600
기획예산처 (1)	일반회계	예비비	4,000,000	9,000,000	5,000,000
국세청 (1)	일반회계	압류재산공매	14,868	228,232	213,364
조달청 (1)	조달특별회계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3,359	5,998	2,639
교육부 (9)	일반회계	보통교부금	69,004,889	73,582,087	4,577,198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630,914	676,421	45,507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10,304	225,473	15,169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261,828	1,352,842	91,014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60,813	601,263	40,450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61,329	62,328	999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2,750	3,050	300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262,461	290,761	28,300
		국립대학 시설 확충	910,898	922,898	12,0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7)	일반회계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97,077	311,375	14,29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16,367	132,857	16,490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26,289	142,779	16,490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20,610	137,100	16,490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27,643	28,143	5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연구개발특구육성(R&D)	167,343	176,043	8,700
	정보통신 진흥기금	AI통합바우처	89,775	109,775	20,000

1) 총지출은 지출 총계에서 내부·보전거래 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국채 원금상환은 총지출에서 제외된다.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본예산 ¹⁾	제1회 추경안	증액
행정안전부 (6)	일반회계	고유가 피해지원금	-	4,825,185	4,825,185
		보통교부세	61,698,352	66,237,321	4,538,969
		지역현안특별교부세	763,247	819,399	56,152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954,058	1,024,248	70,19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90,811	204,849	14,038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	19,515	19,515
문화체육 관광부 (20)	일반회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89,022	89,722	700
		예술창작활동 지원	32,598	34,094	1,496
		K-콘텐츠 펀드출자	430,000	480,000	50,000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63,214	65,806	2,59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민문화활동지원	23,846	28,629	4,783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지원	51,850	60,750	8,900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용자)	20,000	70,000	50,000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28,000	60,000	32,000
		예술인생활안정자금	780	1,560	780
		예술창작지원	69,118	73,118	4,000
		예술인력육성	23,897	27,822	3,925
		문화예술향유지원	327,638	332,738	5,100
	관광진흥 개발기금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14,269	19,939	5,670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15,617	17,317	1,700
		국내관광 역량강화	64,193	81,633	17,440
		관광산업 융자지원(용자)	644,066	924,066	280,000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48,348	78,948	30,600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104,474	114,474	10,000
	영화발전기금	영화정책지원	28,099	64,199	36,100
		영화창제작지원	40,929	79,419	38,490
농림축산 식품부 (8)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무기질비료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15,600	19,800	4,200
		농업자금이차보전	729,661	731,816	2,155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	7,824	7,824
		한시 지원('26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115,751	122,951	7,200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34,075	304,705	70,630
	농지관리기금	농지이용관리지원	13,944	72,715	58,771
	축산발전기금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용자)	250,000	315,000	65,000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농식품소비기반조성	122,716	172,716	50,000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본예산 ¹⁾	제1회 추경안	증액
해양수산부 (5)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	46,819	46,819
		수산물해외시장개척	79,098	80,687	1,58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연안화물선유류비보조	18,661	29,212	10,55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25,668	28,612	2,944
	수산발전기금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101,748	131,748	30,000
산림청 (1)	일반회계	산림헬기 도입·운영	193,826	195,826	2,000
산업통상부 (13)	일반회계	무역보험기금출연	70,500	170,500	100,0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41,429	347,334	5,905
		수출지원기반활용	181,074	214,074	33,000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135,036	608,431	473,395
		제조암묵지기반SI모델개발(R&D)	-	80,000	80,000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56,738	76,738	20,00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핵심광물재자원화 산업육성지원	3,777	5,857	2,080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76,929	82,929	6,000
		석유비축사업출자	55,300	213,733	158,433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16,314	38,654	22,340
		석유유통구조개선	761	2,741	1,98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산업위기대응	24,667	31,667	7,000
		산업단지환경조성	409,920	423,920	14,000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본예산 ¹⁾	제1회 추경안	증액
중소벤처 기업부 (22)	일반회계	수출지원기반활용	150,203	250,203	100,000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93,572	105,756	12,184
		창업사업화지원	461,838	536,918	75,080
		창업저변확대	24,830	189,630	164,800
		민관협력창업자육성	239,856	338,256	98,400
		중소기업 재기지원	14,966	24,966	10,000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69,290	74,640	5,350
		신용보증기금출연	80,000	180,000	100,000
		기술보증기금출연	60,000	160,000	100,000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402,056	489,056	87,000
		기술혁신기반조성	43,366	55,866	12,500
		마케팅지원사업	24,944	31,544	6,600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820,000	990,000	170,000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1,605,800	1,755,800	150,000
		재도약지원자금(융자)	612,500	662,500	50,000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250,000	500,000	250,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316,378	416,378	100,000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	3,362,000	3,682,000	320,000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	131,069	191,389	60,320
		소상공인성장지원	621,243	661,243	40,000
		소상공인재기지원	351,649	376,249	24,600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564,895	565,495	600
지식재산처 (1)	일반회계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	9,500	9,500
보건복지부 (9)	일반회계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	14,586	16,729	2,143
		긴급복지	405,254	418,329	13,075
		의료급여	9,839,997	10,122,834	282,837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5,909	9,288	3,379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	6,602	6,602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16,280	17,567	1,287
		의료취약지 지역 보건의료 긴급지원	-	2,065	2,065
		보험정책사업관리	403	5,375	4,97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3,607	53,524	9,917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본예산 ¹⁾	제1회 추경안	증액
기후에너지 환경부 (1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에너지바우처	494,027	504,257	10,230
		무공해차 보급사업	2,284,513	2,374,513	90,000
	환경개선 특별회계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31,376	36,976	5,600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85,309	87,209	1,900
	전력산업 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용자)	648,000	868,469	220,469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14,332	276,712	62,380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217,116	275,916	58,800
		전력효율향상	125,922	127,210	1,288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14,952	151,276	36,324
	기후대응기금	산업·일자리전환 지원	8,753	11,042	2,289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108,575	121,411	12,836
		CCU메가프로젝트(R&D)	20,000	42,405	22,405
고용노동부 (10)	일반회계	국민취업지원제도	1,012,830	1,092,963	80,133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284,752	311,221	26,46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7,959	933,709	25,750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106,820	108,000	1,180
		내일배움카드	627,325	880,349	253,02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150,108	162,108	12,000
	고용보험기금	고용유지지원금	70,225	88,784	18,559
	임금채권 보장기금	채불청산지원용자	70,635	160,579	89,944
	근로복지 진흥기금	신용보증대위변제	37,734	60,315	22,581
		생활안정자금용자	89,432	98,407	8,975
국토교통부 (5)	일반회계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	-	27,941	27,941
		해외인프라시장개척	56,490	56,890	400
		정책연구개발사업	2,878	3,878	1,000
		건설산업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4,305	4,438	133
	교통시설 특별회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557,970	645,678	87,708
	합계(133개 세부사업)			205,091,821	230,263,999

주: 1) 기금은 제1회 추경안 제출 직전 계획액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 회계·기금별 내역

이번 추경안의 총지출 기준 지출 확대분 25.2조원(133개 세부사업)을 회계·기금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1.9조원(61개 세부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되었고, 0.6조원(29개 세부사업)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0.3조원, 8개 세부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0.1조원, 9개 세부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2.7조원(43개 세부사업)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0.7조원, 5개 세부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0.4조원, 5개 세부사업) 등 16개 기금에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회계·기금별 구성 체계 및 내역]

회계·기금(사업수)		증액 (총지출)	주요 사업
예산	일반회계(61개)	21.9조원	· 예비비(5조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 8,252억원) · 보통교부금(4조 5,772억원) · 보통교부세(4조 5,390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8개)	0.3조원	· 석유비축사업출자(1,584억원) · 무공해차 보급사업(900억원) ·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223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9개)	0.1조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원) · 산업단지환경조성(140억원)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12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1개)	0.09조원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877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6개)	0.07조원	·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468억원) ·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78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2개)	0.04조원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283억원) · 국립대학 시설 확충(120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2개)	0.008조원	·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56억원)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19억원)
	조달특별회계(1개)	0.003조원	·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26억원)

회계·기금(사업수)		증액 (총지출)	주요 사업
기 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5개)	0.7조원	·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2,500억원)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1,700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용자)(1,5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5개)	0.4조원	· 소상공인지원(용자)(3,200억원) ·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603억원) · 소상공인성장지원(40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5개)	0.4조원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용자)(2,205억원)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624억원) ·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588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6개)	0.3조원	· 관광산업 용자지원(용자)(2,800억원) ·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306억원) · 국내관광 역량강화(174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2개)	0.2조원	· 국고채 이자상환(1,066억원) · 지방채 인수(1,00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6개)	0.1조원	·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용자)(500억원)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320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1개)	0.09조원	· 체불청산지원용자(899억원)
	영화발전기금(2개)	0.07조원	· 영화창제작지원(385억원) · 영화정책지원(361억원)
	축산발전기금(1개)	0.07조원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용자)(650억원)
	농지관리기금(1개)	0.06조원	· 농지이용관리지원(588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1개)	0.05조원	· 농식품소비기반조성(500억원)
	기후대응기금(3개)	0.04조원	· CCU메가프로젝트(R&D)(224억원)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128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2개)	0.03조원	· 신용보증대위변제(226억원) · 생활안정자금용자(90억원)
	수산발전기금(1개)	0.03조원	·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300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1개)	0.02조원	· AI통합바우처(200억원)
	고용보험기금(1개)	0.02조원	· 고용유지지원금(186억원)
합 계(133개)		25.2조원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라.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¹⁾의 주요 내용

2026년 제1회 추경안의 대상이 되는 성인지 예산사업은 9개 사업이며, 성인지 기금사업은 6개 사업이다. 제1회 추경안에 따라 전체 성인지 예산 및 기금의 규모는 26조 8,544억원에서 27조 8,497억원으로 9,953억원(3.7%) 증액되었다.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따른 성인지 예산사업의 수는 196개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예산 규모는 12조 3,059억원에서 12조 7,281억원으로 4,222억원 증액(3.4%)되었다.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따른 성인지 기금사업의 수는 69개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기금 규모는 14조 5,484억원에서 15조 1,216억원으로 5,731억원 증액(3.9%)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총괄]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증감(B-A)	증감률(%)
중앙관서 수		34	34	-	-
예산	예산	12,305,927	12,728,134	422,207	3.4
	사업수	196	196	-	-
기금	예산	14,548,477	15,121,622	573,145	3.9
	사업수	69	69	-	-
합계	예산	26,854,404	27,849,756	995,352	3.7
	사업수	265	265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처별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총액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46억원, 고용노동부의 경우 3,709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6,198억원 증액되었다.

김상용 경제분석관(sangyong@assembly.go.kr, 6788-4753)

- 1)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각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34조·제71조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부처별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증액 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	'26년 예산(A)	'26년 제1회 추경안(B)	증감 (B-A)	증감률 (%)
문화체육관광부	290,435	295,060	4,625	1.6
고용노동부	9,341,223	9,712,130	370,907	4.0
중소벤처기업부	8,010,392	8,630,212	619,820	7.7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추경안에 따른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창작안정망 구축 사업이 7억원 증액,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257억 5,000만원 증액,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이 2,530억 2,400만원 증액,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이 801억 3,300만원 증액,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이 120억원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해외시장지출 사업이 100억원 증액,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이 240억원 증액,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이 100억원 증액, 마케팅지원사업이 66억원 증액되었다.

기금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력 육성 사업이 39억 2500만원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이 1,500억원 증액, 재도약지원자금(융자) 사업이 500억원 증액,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이 453억 2,000만원 증액,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이 39억원 증액,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이 3,200억원 증액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사업별 세출증액 내역]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본예산	제1회 추경안	증감
문화체육 관광부	일반회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89,022	89,722	700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7,959	933,709	25,750
		내일배움카드(일반)	627,325	880,349	253,024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1,012,830	1,092,963	80,133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150,108	162,108	12,000
중소벤처 기업부	일반회계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17,519	27,519	10,000
		창업사업화지원 - 창업패키지(예비,초기,도약), 초격차스 타트업1000+프로젝트, 창업중심대학	411,599	435,599	24,000
		중소기업 재기지원 - 중소기업 재기지원	14,966	24,966	10,000
		마케팅지원사업	24,944	31,544	6,600
		예산사업 합계(9개 사업)		3,256,272	3,678,479
부처	기금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본예산	제1회 추경안	증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술인력 육성 - 문화예술기관 연수 단원 지원	8,531	12,456	3,925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1,605,800	1,755,800	150,000
		재도약지원자금(융자)	612,500	662,500	50,000
	소상공인 시장진흥 기금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	22,550	67,870	45,320
		소상공인재기지원 -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지원)	25,625	29,525	3,900
		소상공인지원(융자)	3,362,000	3,682,000	320,000
기금사업 합계(6개 사업)			5,637,006	6,210,151	573,145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총계(15개 사업)			8,893,278	9,888,630	995,35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¹⁾의 주요 내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사업은 2개 사업이며,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사업은 7개 사업이다. 제1회 추경안에 따라 전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의 규모는 16조 8,189억원에서 17조 3,822억원으로 5,633억원(3.3%) 증액되었다.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사업의 수는 185개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예산 규모는 10조 4,207억원에서 10조 5,984억원으로 1,777억원(1.7%) 증액되었다.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사업의 수는 162개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기금 규모는 6조 3,982억원에서 6조 7,838억원으로 3,856억원(6.0%) 증액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총괄]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증감(B-A)	증감률(%)
중앙관서 수		35	35	-	-
예산	예산	10,420,653	10,598,361	177,708	1.7
	사업수	185	185	-	-
기금	예산	6,398,223	6,783,809	385,586	6.0
	사업수	162	162	-	-
합계	예산	16,818,876	17,382,170	563,294	3.3
	사업수	347	347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진희 경제분석관(jinhee@assembly.go.kr, 6788-4677)

1)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각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34조·제71조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부처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총액을 살펴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4,256억원(4.6%),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500억원(2.8%), 국토교통부의 경우 877억원(8.1%) 증액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부처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증액 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	'26년 예산(A)	'26년 제1회 추경안(B)	증감 (B-A)	증감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9,286,096	9,711,682	425,586	4.6
중소벤처기업부	1,814,341	1,864,341	50,000	2.8
국토교통부	1,076,178	1,163,886	87,708	8.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추경안에 따른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사업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이 900억원 증액,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이 877억원 증액되었다.

기금사업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산업·일자리전환지원사업이 23억원 증액,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이 128억원 증액,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이 363억원 증액,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용자) 사업이 2,205억원 증액,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이 624억원 증액, 전력효율향상 사업이 13억원 증액, 중소벤처기업부의 재도약지원자금(용자) 사업²⁾이 500억원 증액되었다.

2) 중소벤처기업부의 재도약지원자금(용자) 사업은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존사업에서 그린 분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에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사업별 세출증액 내역]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본예산	제1회 추경안	증감
기후 에너지 환경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무공해차 보급사업	2,284,513	2,374,513	90,000
국토 교통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557,970	645,678	87,708
예산사업 합계(2개 사업)			2,842,483	3,020,191	177,708
부처	기금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본예산	제1회 추경안	증감
기후 에너지 환경부	기후대응 기금	산업·일자리전환지원	8,753	11,042	2,289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108,575	121,411	12,836
	전력산업 기반기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14,952	151,276	36,324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648,000	868,469	220,469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14,332	276,712	62,380
		전력효율향상	125,922	127,210	1,288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재도약지원자금(융자)	612,500	662,500	50,000
기금사업 합계(7개 사업)			1,833,034	2,218,620	385,58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총계(9개 사업)			4,675,517	5,238,811	563,29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1

경제여건 및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경제여건

2026년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2026년 세계 경제는 성장률이 소폭 낮아지고, 세계 교역량 증가세도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글로벌 무역 구조 변화로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크게 높아지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상승 압력과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국내 경제는 2025년 하반기 이후 내수와 수출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건설투자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상승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의 수급차질이 장기화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연평균 100달러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상당 폭 하락할 우려가 있다.**

(1) 세계경제 여건

2026년 세계경제는 전년과 같은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최근 들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원유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경기 하방 위험도 커지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의 전망치에 근거한 세계경제성장률은 2025년 3.1%에서 2026년 2.9%(선진국 1.7%, 개도국 4.1%)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26.1월)와 세계은행('26.1월)는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3%와 2.6%로 각각 예상하며 직전 전망 대비 0.2%p 상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급증, 2025년 하반기 무역 갈등의 일시적 완화¹⁾, 예상보다 견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황종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조한 미국의 재정 부양 효과 등을 들었다. IMF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여 올해 세계경제가 전년과 동일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 반면, 세계은행과 OECD는 구조적 저성장 고착화와 무역장벽 강화 지속 등을 우려하며 전년대비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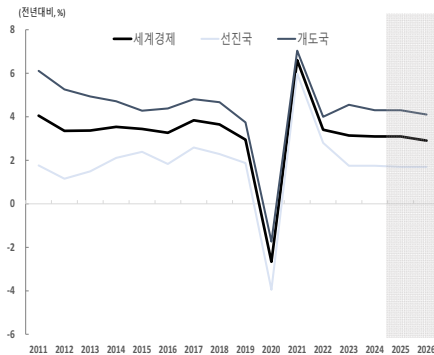
특히, OECD는 지난 3월 27일에 발표한 수정 전망에서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과 같은 2.9%로 유지하였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공급 충격이 에너지가격 상승과 기업 비용 및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중동 전쟁 상황과 유가 상승 시나리오를 3단계로 구분하고 현재의 중동 상황은 시나리오 1단계(제한적 충돌, 국제유가 10~20% 상승)를 넘어 시나리오 2단계(호르무즈 부분 봉쇄, 국제유가 30~50% 상승)에 진입한 것으로 특징지었다. 향후 시나리오 3단계(호르무즈 전면 봉쇄, 국제유가 80~150% 상승)에 진입할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급등, 국제금융시장 급락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2026년 세계교역량은 증가세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2025년에는 미국의 관세인상에 대비한 조기선적(front-loading) 효과, 중국 등 주요국 수출 다변화와 재고 확보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증가세 유지하였다. 그러나 2026년에는 전년도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충분한 재고 확보, 무역장벽 강화 및 관세 부과와 부정적 영향 가시화 등으로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될 전망이다. IMF는 실효관세율(effective tariff rate)이 18.5%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기업의 비용이 상승하는 등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교역량 증가율이 2025년 3.9%에서 2026년 2.4%로 하락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2025년 각각 3.0%, 5.7% 증가하였으나 2026년에는 각각 1.9%, 3.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1)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정점에 달하였던 무역 갈등은 11월 미·중 간의 일시적 무역 휴전(trade truce)과 관세율 인하 조치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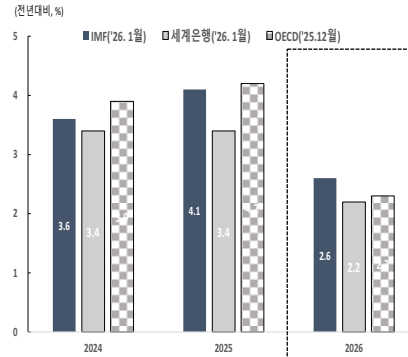
2)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전년대비, %, '25년→'26년): IMF 3.3→3.3, 세계은행 2.7→2.6, OECD 3.2→2.9

[세계경제성장률]



자료: IMF('26.1월), 세계은행('26.1월),
OECD 세계경제전망('25.12월)

[세계교역량]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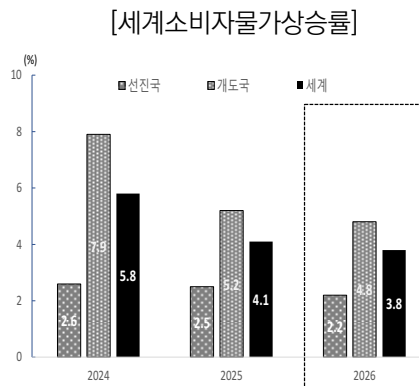
2026년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전년에 이어 완만한 하락 안정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5년 4.1%에서 2026년 3.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는 중동사태의 상황 변화와 국제유가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선진국은 2025년 2.5%에서 2026년 2.2%로 주요국 중앙은행 목표치에 근접하며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으로의 진전이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경우 견조한 내수와 노동시장 여건 등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2%)에 복귀하는 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5년 5.2%에서 식량 가격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2026년 4.8%로 하락할 전망이나, 환율 변동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내수 약화와 공급과잉 등으로 저물가 혹은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황이며, 브라질은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수요 둔화 등에 기인하여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다. IMF 등 주요 국제기구는 중동사태 이전 발표한 전망에서 국제유가가 2025년 배럴당 69달러에서 2026년 62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11%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³⁾ 그러나 미국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는 3월 전망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일

3) 2026년 국제유가(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현물가격 단순평균 기준)는 IMF('26.1월 전망) 배럴당 65.8달러, 세계은행('26.1월 전망) 60.0달러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시적인 공급 충격으로 인해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3~5월 중 배럴당 90달러를 상회하고 점차 수급이 정상화되며 연말에는 70달러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평균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79달러(WTI 기준 74달러)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지난달 전망치(연평균 56달러)에서 30% 이상 상향 조정된 것이다. 석유수급 전망에서는 3월 중 일평균 1.9백만 배럴의 공급부족 상황⁴⁾이 지속되지만 4월에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향후 중동사태의 상황 변화에 따라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였다. 군사적 충돌이 단기간에 멈추고 이란의 보복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끝나면 원유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장기화되고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 석유파동이 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료: IMF('26.1월)



자료: 미국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hort-term Energy Outlook "(2026. 3월 기준)

4) EIA 전망에 따르면 중동사태의 영향으로 전세계 석유수요는 2월 일평균 1억 5,100만 배럴에서 3월 일평균 1억 3,700만 배럴로 일평균 1,400만 배럴 줄지만, 석유공급은 2월 1억 7,900만 배럴에서 3월 1억 1,800만 배럴로 일평균 6,100만 배럴 줄어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6년 세계 경제는 전년의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성장률은 추세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무역 구조 변화로 인해 세계 교역량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성장의 주요 위험 요인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무역 및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교역 위축, 주요국 경제정책 기조 충돌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글로벌 AI 관련 투자 거품 붕괴 가능성 등이다.

우선, 중동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세계 경제성장에 주요 하방 위험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다. 향후 중동사태가 지역 전쟁으로 발전하고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으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기침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요인은 자국 우선주의 무역 및 관세정책 강화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무역정책 변화로 인한 하방 위험이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심화되었던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었다기보다는 지난 11월 미·중 간 무역 휴전(trade truce)으로 올해 11월까지 유예된 상태이다.⁵⁾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 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대체 관세를 모색하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보다는 장기화되는 경로로 접어들었다 할 수 있다.

각국의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변화가 충돌하면서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도 성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는 각국의 실물경기과 인플레이션 전망 변화를 반영하여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견실한 내수회복 등으로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어,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속도가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등 개도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성장의 하방 위험도 커져 정책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2025년 미 달러화는 주요

5) 2025년 11월 합의된 미·중 무역 휴전(펜타닐 관세 인하(10%p), 상호관세 및 수출 통제 유예)이 11월에 종료 예정이다.

국 통화 대비 약세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미국과 이들 여타 국가의 정책금리 격차가 커져 미 달러화 강세 기조로 전환되면 환율과 주가 등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주요국의 재정정책 여력도 약화되고 있다. 미국, 유로존 국가, 중국 등은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회복과 성장을 지지하지만, 공공부채 비율을 높여 장기 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⁶⁾ 장기금리 상승은 민간투자를 구축(crowding out)하고 향후 위기 대응 여력을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및 주요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AI 관련 투자가 수익성 실현 및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IMF는 지난 1월 전망보고서에서 현재 미국 등 주요국의 성장이 AI에 대한 막대한 기대감과 투자에 힘입어 무역정책 변화의 역풍 속에서도 예상 밖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AI 주도의 생산성 및 수익성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자산시장의 급격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⁷⁾고 경고하고 있다.

6) IMF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의 국가부채 GDP대비 비율은 2023년 108.5%에서 2024년 109.1%로 상승하였고, 개도국은 2023년 66.9%에서 2024년 69.0%로 상승하였다.

7)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26. 1월), 6 페이지

(2) 국내 경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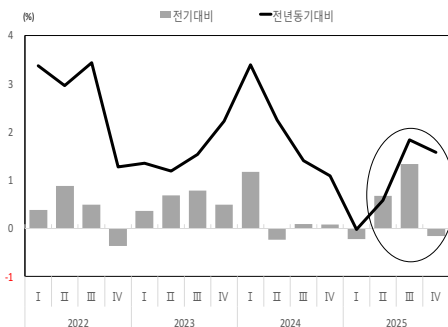
① 경제성장률 추이

국내 경제는 2025년 하반기 이후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수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며 상승국면으로의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실질GDP 성장률은 2025년 연중 1%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반기별로는 상반기 0.3%에서 하반기 1.3%로 높아졌다. 계절변동 조정계열로는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플러스로 돌아서 3분기에는 1.3%까지 높아졌다. 다만 4분기에는 높았던 3분기의 반향으로 성장률이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지출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2025년 상반기 0.7%에서 하반기 1.9%로 성장세가 높아졌다. 민간투자는 연중 3.9% 감소하였는데 이는 건설투자가 크게 부진했던(-9.8%) 데 주로 기인한다. 다만 건설투자 부진은 하반기에 감소 폭이 줄면서 다소 개선되었다(-12.2% → -7.3%).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 증가하였으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2.9% 증가하였다. 정부소비는 두 차례의 추경편성 등에 힘입어 연중 3.0% 정도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정부투자는 2024년(0.8%)과 비슷한 0.7% 성장하였다. 내수부문의 성장기여도는 상반기 0.3%p, 하반기 1.0%p였으며 연중으로는 0.6%p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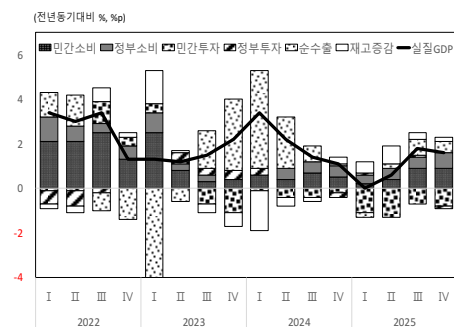
총수출(GDP물량 기준)은 연중 4.2% 성장하여 2024년(6.8%)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다만 반기별로는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5.4%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총수입은 자본재를 중심으로 2024년(2.5%)에 비해 높은 3.8%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총수출에서 총수입을 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3%p에 그쳤다.

[실질GDP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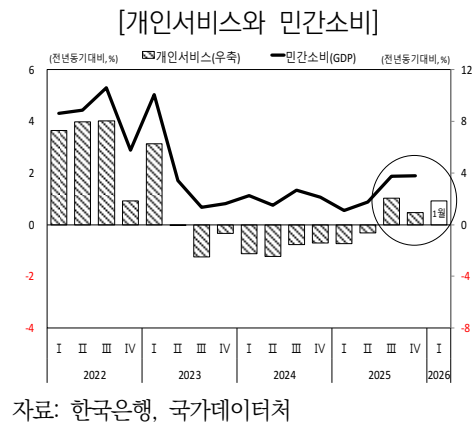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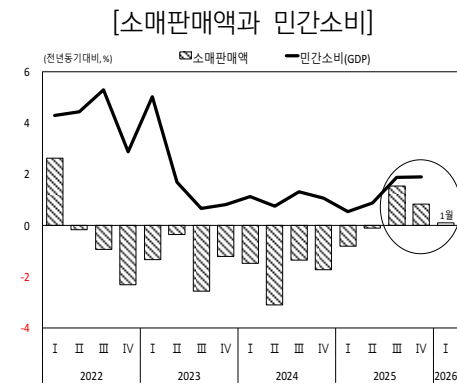
[지출부문별 성장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② 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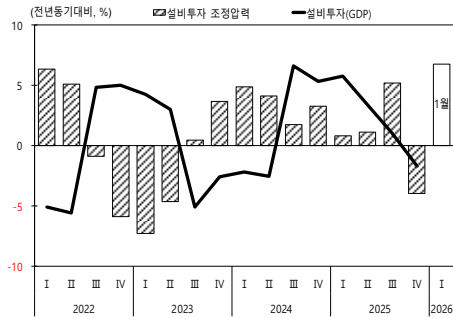
내수는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설비투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건설투자는 부진이 장기화하며 내수경기의 상승세를 제약하고 있다. 민간소비 중 상품소비의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상승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아래 왼쪽). 민간소비 중 서비스소비와 밀접한 개인서비스업 지수⁸⁾도 3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아래 오른쪽). 이는 물가안정과 실질소득 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설비투자 선행지표)은 2025년 4분기 감소로 돌아섰으나 2026년 1월에는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조정압력이 설비투자에 1분기 정도 앞서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설비투자의 상승세가 기대된다. 건설수주액(건설투자 선행지표)은 2024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최근 늘어난 수주가 순조롭게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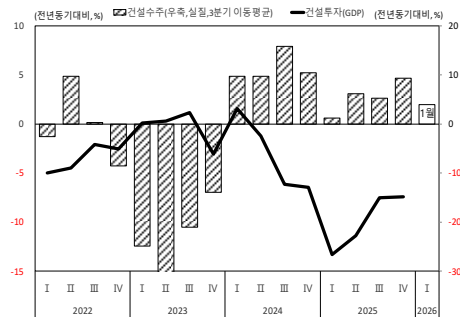
8) 개인서비스업 지수는 서비스업 지수 가운데 민간소비의 서비스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하였다. 지수 가중치로는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기준년 가중치를 활용하였다(국가데이터처,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통계 개편 결과」).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설비투자]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건설수주액과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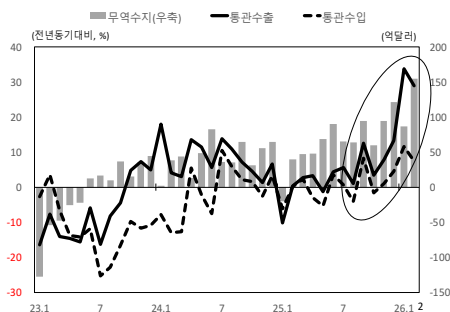


주: 건설수주액은 3분기 중심항 이동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③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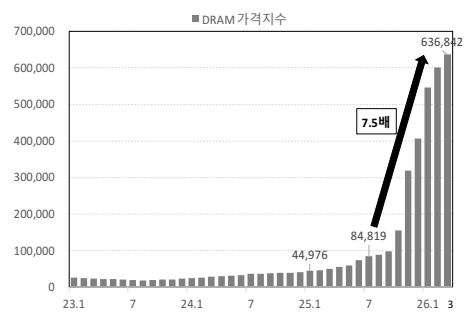
수출(통관기준, 상품)은 2025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수출 증가율의 오름세가 커지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AI 기반시설 투자가 확대되며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반도체 가격 조사기관인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2026년 3월 반도체의 평균 시장가격은 2025년 7월 대비 7.5배 상승하였다(2025년 1월 대비로는 14.5배). 수입(통관기준, 상품)도 최근 설비용 기계류 등 자본재 수입이 늘면서 증가세가 높아졌으나 수출보다는 증가 폭이 낮았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통관 수출입차)는 최근 흑자 폭이 크게 확대되어 2026년 2월에는 사상 최대치인 155.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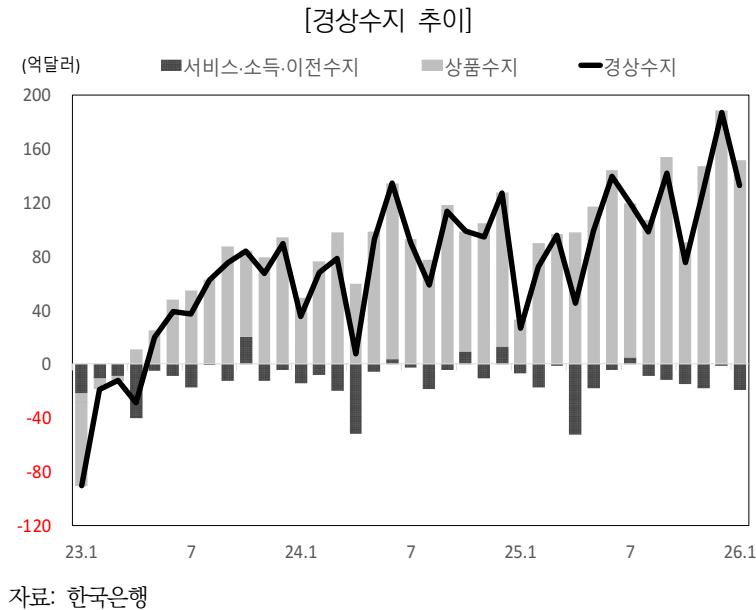
주: 무역수지(수출입차) 및 수출입은 통관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글로벌 반도체 가격지수 추이]



자료: DRAM Exchange는 DRAM 및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실거래가격(현물 및 고정)과 거래량을 이용하여 시장평균 가격을 산출
자료: 연합뉴스포맥스

경상수지(국제수지 기준) 역시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5년 연간 1,230.5억 달러 흑자였으며 2026년 1월에도 132.6억 달러의 흑자를 이어갔다. 부문별로는 상품수지가 1월 151.7억 달러 흑자로 흐름을 주도하였다. 다만 서비스·소득·이전수지는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적자 폭이 커진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1월 19.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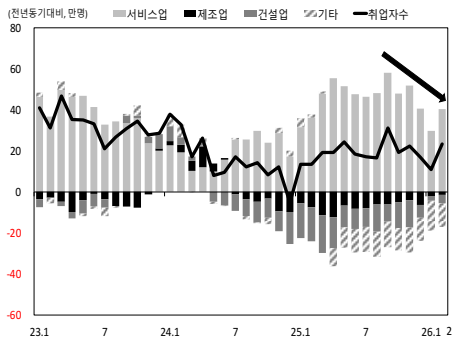


④ 고용과 물가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축소되었다. 2025년 중 월평균 20만명 선이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2026년 1월에는 10.8만명까지 축소되었다. 다만 2월에는 다시 23.4만명으로 반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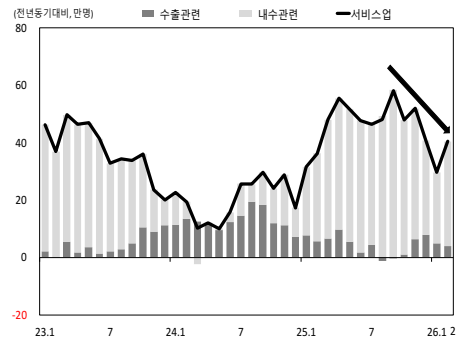
산업별은 고용 비중이 가장 큰 내수관련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축소된 반면 수출관련 서비스업에서는 운수 및 창고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2025년 중 20만명 정도였던 건설업과 제조업의 취업자 수 감소 폭이 2026년 2월에는 5.6만명으로 줄어 이들 업종의 고용사정이 차츰 나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취업자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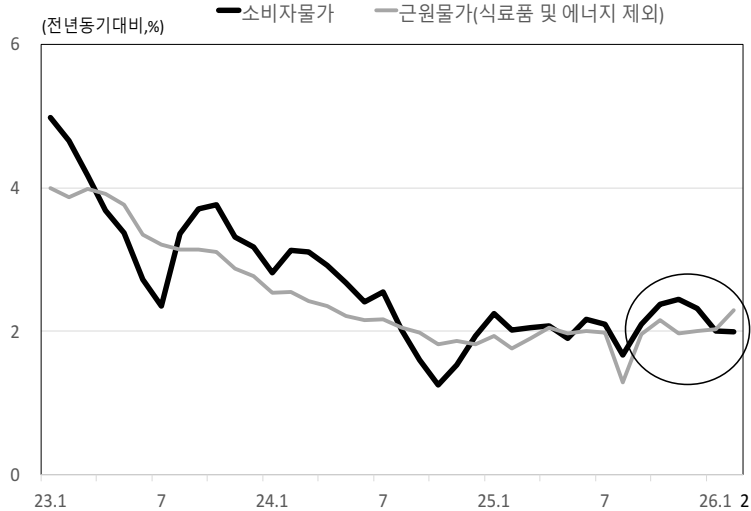


주: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창고·통신업을 수출관련 서비스업으로, 그 외 서비스업을 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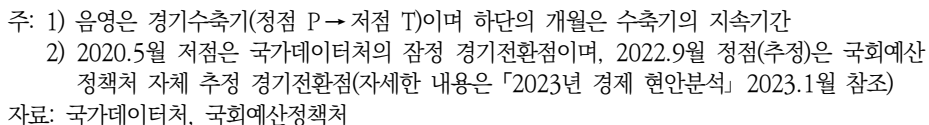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나 다소 불안한 모습도 보인다. 2025년 하반기에는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11월 2.4%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안정되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 선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2026년 들어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커졌다(2월 2.3%).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기는 내수와 수출의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의 부진이 장기화하며 상승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의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26년 1월 하락을 멈추고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건설수주, 주가지수, 교역조건(수출단가/수입단가) 등 경기선행지수의 구성항목들이 개선되며 상승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건설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며 국면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36 • ПАРБО®

전 국제유가 전망치의 평균값인 배럴당 연평균 61.8달러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전쟁 개시 이후의 상황을 일정 수준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여 국제유가가 배럴당 연평균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의 수급차질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기준 시나리오(국제유가 연평균 75달러) 대비 0.2~0.3%p 정도 추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⁹⁾

9)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NABO 경제전망」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연평균 75달러 내외인 상황을 기준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다. 만일 고강도 분쟁이 지속되어 국제유가가 연평균 100달러 내외까지 오른다면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 등 중동 전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p.59~61, 2026.3.27.).

나.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개 요

2026년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수출 증가세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중동전쟁의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해운·물류 비용이 상승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¹⁾

이에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6.2조원 규모로, 그 재원은 초과세수(국세수입 증액 경정) 25.2조원과 기금 여유재원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안은 ① 고유가 부담 완화(10.1조원), 민생 안정(2.8조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6조원) 등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15.5조원과 ② 지방정부의 투자재원 확충 등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9.7조원 및 ③ 국채 상환 1.0조원으로 구분된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의 성장여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총지출 변화, 분야별 재정지출 변화 및 예산의 집행 시점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하의 분석은 주요 거시경제변수 및 정부지출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구축한 거시재정모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의 집행 시점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산출하였다.

황진솔 경제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72)

이두영 경제분석관(douyounglee@assembly.go.kr, 6788-4671)

1) OECD는 최근 중동전쟁이 장기 지속될 경우를 가정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하였으며(26.3.),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NABO 경제전망」에서도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2026년 경제성장률이 -0.2 ~ -0.3%p 추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2) 주요 고려사항

① 분석의 기본 가정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적 효과는 분야별 재정지출이 GDP 항목에 미치는 1차 효과와 경제부문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2차 파급효과로 구성된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그 내용 및 분야별 구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예산의 집행 시점에 따라 각 연도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재정모형에서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승수²⁾ 등 주요 재정경제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고, 해당 관계가 2026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2026년 NABO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성장경로를 기준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 시나리오(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과 포함) 사이의 경제성장률 차이를 추정하였다.³⁾ 셋째, 예산집행 상 비효율성, 전달경로 상 누수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② 집행 시점

추가경정예산이 해당 연도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그 집행 시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본 분석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예산집행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성을 고려하여 3가지 집행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설정 시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3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어 2/4분기부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고유가 피해지원금(4.8조원)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신속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2) 재정지출승수는 재정지출이 1조원 증가하였을 때 국민총소득(GDP)의 증가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재정지출이 t년도에 1조원 증가했을 때 GDP가 t년도에 0.7조원 증가하였다면 t년도 재정지출승수는 0.7이 된다.

3)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NABO 경제전망」에서 2026년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하였다. 이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조기에 정상화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2026년 연평균 국제유가가 75달러/배럴 수준을 기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예비비 및 국채 상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및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5조원)의 경우, 연내 전액 집행되는 것을 가정하여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였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당 부분이 미집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예비비의 경우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및 나프타 수급 위기라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예비비로서 편성되었고, 정부에서도 현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폭넓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한편, 추경안에 포함된 국채 상환(1조원)의 경우 추경 편성이 국채·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출의 성격을 고려하여 GDP 항목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재정지출로는 분류하지 않았다.

④ 고유가 피해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긴급재난지원금(2020년), 민생회복 소비쿠폰(2025년) 등 유사 지원사례에서 나타난 전달경로 등에 있어서의 특징을 고려하였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를 지역화폐와 유사하게 설정한다는 것을 전제하여, 이러한 지원금의 경우 전달경로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금 수급 가구의 소비지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대부분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복수의 재정사업을 통해 소비, 투자, 수출 및 수입 등 모든 형태의 경제활동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과 비교할 때, 지원금을 수령한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가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른 처분가능소득 증가에 대응한 소비지출 증가, 즉 소비성향과 관련된 파급경로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경제적 효과 추정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집행 시점에 따라 2026년 경제성장률을 0.21%p~0.29%p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본 분석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적 효과를 2026년 본예산의 16대 분야별 비중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총지출 규모 증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나타내는 ‘규모효과’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16대 분야별 비중이 기존의 16대 분야별 비중과 달라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보여주는 ‘구성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세출예산 증액(25.2조원, 국채 상환 1조원 제외)에 따른 총지출 증가는 규모효과를 발생시키고, 정부지출 내 분야별 비중의 변화는 구성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경제성장률을 0.21~0.29%p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2/4분기에 50%, 3/4분기에 30%, 4/4분기에 20%가 집행되는 경우 그 효과가 0.29%p로 상대적으로 크게 추정되는 반면, 분기별로 각각 20%, 40%, 40% 집행되는 시나리오에서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21%p로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된다.

[추경의 집행 시점별 경제적 효과]

비교 시나리오	추경규모 ¹⁾ (조원)	추경 집행(%)			2026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p)
		2분기	3분기	4분기	
A	25.2	50.0	30.0	20.0	0.288
B		33.3	33.3	33.3	0.241
C		20.0	40.0	40.0	0.208

주: 1) 추정안 중 국채 상환(1.0조원)을 제외한 규모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적 효과 추정치는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분야별 재정지출 효과와 집행시기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추정치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추경예산의 집행상 효율, 구체적인 전달경로 및 연내 집행률에 따라 실제 경제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 분석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등을 위한 예비비 5조원이 연내 전액 집행되는 것을 가정하였으나, 동 예산은 시장 공급가, 정부가 설정한 최고가 및 원가 등을 반영한 기업의 실질적인 손실액을 산정하여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목적예비비의 실제 집행규모에 따라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고유가 피해 지원 관련 예산 등의 경우, 본 거시재정모형에서 주요 재정경제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상의 통상적인 정부지출과 그 성격이 상이한 측면이 있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경제적 효과 추정 시 반영하였으나, 이러한 특수 목적 지출에 대한 누적된 실증 데이터 및 선행 연구가 제한적이므로, 추정치의 해석에 일정 부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추경안의 편성요건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1)은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요건 외에도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편성되는 추경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추경안 편성을 위해서는 목적적합성·예측불가능성·보충성·시급성·연내 집행가능성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건	세부내용
①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②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③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④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⑤ 연내 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나. 분석의견

중동 사태의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유가·환율 급등에 따른 충격이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고유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공급망 안정 및 산업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이번 추경안의 편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된 이후,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72.5달러(2.27일)에서 100달러를 돌파(3.9일 장중)하는 등 단기간에 약 40% 이상 급등하였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이 현실화되면서 나프타, 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핵심 원자재의 수급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1,510 원을 상회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당초 중동 사태가 단기에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4월 현재 이란과 미국 간 협상의 진전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지속되는 등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고유가 상황이 지속²⁾되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사태 발발 전 리터당 1,693원에서 3월 12일 1,903원까지 상승하였으며, 경유 가격 역시 같은 기간 1,592원에서 1,924원으로 332원 이상 급등하였다.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을 제약함으로써,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대응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5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Delta 0.2\%$ 로 소폭 역성장하였으나,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2025년 연간 기준으로는 1.0% 성장을 기록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2026년 성장률을 각각 1.9~2.0%로 전망한 바 있으나, 이는 중동 사태 발발 이전 또는 사태 초기 단계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3.27.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32달러,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99.64달러를 기록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NABO 경제전망」을 통해, 향후 유가 급등의 영향이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 소비 위축,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파급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준전망 대비 0.2~0.3%p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정부 및 주요 경제기관의 2026년 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전망주체	정부		한국은행	KDI	NABO
전망시점	2025.9.	2026.1.	2026.2.	2026.2	2026.3.
실질GDP 성장률	1.7	2.0	2.0	1.9	2.0
민간소비	1.6	1.7	1.8	1.7	1.7
설비투자	1.5	2.1	2.4	2.4	2.2
건설투자	2.7	2.4	1.0	0.5	0.8
지식생산물투자	2.7	3.3	3.5	3.5	3.3
명목GDP 성장률	3.8	4.9	-	-	6.0
경상수지(억달러)	800	1,350	1,700	1,488	1,700
통관수출증가율	△0.5	4.2	12.1	3.9	11.9
통관수입증가율	0.5	2.0	5.6	1.0	6.2
취업자수 증가(만명)	17.3	16.0	17.0	17.0	17.4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1	2.2	2.1	2.3

주: 취업자수 증가(만명) 및 경상수지(억달러)를 제외한 거시경제 지표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 정부,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5.9 및 「2026년 경제성장전략」, 2026.1.;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수정」, 2026.2.;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년 2월)」, 2026.2.;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6.3.

단기적으로도 유가 급등에 따라 물류·운송업계를 중심으로 실질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석유화학·항공·해운 등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 업종과 소상공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석유 판매가격에 대한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관련 가격 안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동 조치는 정유사에 대한 손실보전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나아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나프타·요소 등 중동 고의존 품목의 수급 차질이 심화되고, 수출 중소기업의 운송 경로 변경에 따른 물류비 부담 증가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재정·비재정적 수단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의 여건 변화가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제2호의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적 변수는 본예산 편성 및 심사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요인이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등 유가 급등 대응을 위한 재원은 본예산만으로는 충당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며, 추경안 편성을 통해 고유가 및 고환율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적시에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경안을 편성함으로써, 경기 악화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동시에 국가채무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의 편성요건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추경안에 편성된 개별 사업의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에 대해서 사업별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제2장의 위원회별 분석에서 상세히 분석하였다.

가. 재원 현황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초과세수(국세수입 증액 경정) 25.2조원, 기금 여유재원 1.0조원으로 구성된다.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이번 추경안을 포함하면 총 19회의 추경안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서 총 5회의 추경안은 초과세수(세입증액경정)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였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규모 및 재원]

(단위: 조원)

규 모		재 원	
- 세출 증액	25.2	- 초과세수(국세수입 증액 경정)	25.2
- 국채 상환	1.0	- 기금 여유재원	1.0
합 계	26.2	합 계	26.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과거 대부분의 추경안 재원조달 방식이 국고채 추가발행, 지출구조조정, 전년도 세제잉여금 등을 활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추경안은 재원의 대부분(96.2%)을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소득세 등 초과세수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전망치를 초과하여 대폭 증가하였고, 정부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¹⁾

다만, 이번 세입경정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3.4조원 감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추경 편성 이전에 시행된 유류세율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분으로, 실질적으로는 조세지출의 성격에 가깝다. 이를 감안하면 초과세수를 통한 순수 재원 확충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25.2조원보다 크게 나타나지만, 그 일부는 이미 유류세 인하라는 고유가 대응 정책수단에 사전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유류세 인하의 재정 효과와 이번 추경의 고유가 대응 지출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이에 대해서는 'II장 4. 2026년도 국세수입 실적 및 세입경정 분석'에서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년 이후 매년 추경안 편성 시 전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나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왔으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이미 국고에 납입이 완료된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3.4조원)이 세입경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 사례와 차이가 있다.

[역대 추경안 재원 조달방식]

구 분		국고채 추가발행	기금 재원	지출 구조조정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당해연도 초과세수
2008		x	○	x	○	x
2009		○	○	x	○	x
2013		○	○	○	○	x
2015		○	○	x	○	x
2016		x	x	x	○	○
2017		x	○	x	○	○
2018		x	○	x	○	x
2019		○	○	x	○	x
2020	제1회	○	○	x	○	x
	제2회	x	○	○	x	x
	제3회	○	○	○	x	x
	제4회	○	x	x	○	x
2021	제1회	○	○	x	○	x
	제2회	x	○	x	○	○
2022	제1회	○	○	x	x	x
	제2회	x	○	○	○	○
2025	제1회	○	○	x	○	x
	제2회	○	○	○	x	x
2026		x	○	x	x	○

주: 정부안 기준이며,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에는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포함
 자료: 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

나. 분석의견

이번 추경안의 재원에 한국은행 잉여금을 활용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제 17조 예산총계주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든 가용 재원을 제시하고, 그 재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잉여금은 외화자산 운용수익, 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 환율 등의 영향을 받아 연도별 변동폭이 크며, 그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다·과소 추계가 반복되어 왔다.²⁾ 실제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실적(15.3조원)이 2026년도 본예산 확정 시점에서의 전망치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도 10조 7,05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조 4,359억원 증가하였다. 동 금액은 「한국은행법」 제 99조에 따라 2026년 3월 말 기준 이미 정부에 납입이 완료되어 국고에 수납된 상태로, 세수 전망이나 추계에 의존하는 여타 세입과 달리 실현이 확정된 재원이다.

[2020~2026년 한국은행 잉여금 수납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당기순이익 (A)	법정적립금 (B)	임의적립금 (C)	정부납입금 (D=A-B-C)	본예산 (E)	증감 (F=D-E)
2020	53,131	15,939	339	36,853	29,742	7,111
2021	73,659	22,098	341	51,220	43,061	8,159
2022	78,638	23,592	266	54,781	40,315	14,466
2023	25,452	7,636	270	17,546	12,725	4,821
2024	13,622	4,087	315	9,221	16,300	△7,079
2025	78,189	23,457	241	54,491	42,000	12,491
2026	153,275	45,982	242	107,050	72,691	34,359

자료: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목의 상반기 초과 세수 실적과 세입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약 25조 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실제로 한국은행 잉여금은 2020~2023년 4년 연속 본예산 대비 초과 수납되었으며, 2022년에는 본예산 대비 1조 4,466억원 초과 수납되었고, 2025년에도 1조 2,491억원의 초과 수납액이 발생하여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 납입분 3.4조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약 1.2조원의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 납입분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수납이 완료된 대규모 확정 재원을 세입경정에 반영하지 않은 점은 재정 투명성 및 재원 활용의 일관성 측면에서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3월에 이루어진 세수 재추계는 전망치에 불과하여 하반기 경기 추세 및 유류세 인하 규모와 기간에 따라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한국은행 잉여금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납부가 완료된 확정 세입이다. 따라서 추경안 재원의 확실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는 한국은행 잉여금이 보다 적합한 재원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 납입분을 세입경정에 포함시킬 경우, 동 금액만큼 불확실성이 높은 세수 재추계 규모를 축소하거나 적자국채 순발행 규모를 추가로 줄이는 방향으로 재원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활용 실익이 크다. 특히 중동 사태 장기화 등으로 하반기 세수 여건이 악화될 경우, 추계에 기반한 세입 경정분이 실현되지 않아 재정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미 확정된 한국은행 잉여금을 선제적으로 세입경정에 반영함으로써 추경 재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상의 재정규율 차원에서도 한은 잉여금의 미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17조제1항³⁾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도록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총계주의의 취지는 정부가 징수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예산서에 담아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가 재정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있다.

물론 한국은행 잉여금은 본예산에 이미 세입 과목이 편성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추경안의 국회 제출 시점에 이미 3.4조원의 초과 수입이 확정·납입되었음에도 이를 세입경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국회로 하여금 실제 재정 상태와 괴리된 세입 규모를 전제로 추경안을 심의하게 한다는 점에서 예산총계주의의 핵심인 재정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훼손할 소지가 있다. 설령 정부가 한은 잉여금을 하반기 세수 결손에 대비한 완충 재원으로

3)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유보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그 활용 방안은 세입경정에 반영한 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이 재정통제 원칙에 부합한다.

동 금액이 세입경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2026회계연도 결산 시 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며, 해당 재원의 용도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를 통해 사후적으로 결정된다. 이는 추경안 심의 단계에서 국회가 해당 재원의 활용 방안(적자국채 발행 축소, 국채 상환, 추가 세출 편성 등)을 직접 심의·결정할 수 있었던 기회를 법정 처리 절차에 따른 사후적 결정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①추경안 편성 시 한은 잉여금의 세입경정 여부는 정부의 재량이므로 예산총계주의 위반이 아니고, ②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NXC 국세물납주식매각대 등 세외수입 역시 징수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한은 잉여금 초과수납분을 미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①이미 수납이 완료된 확정적 재원을 세입경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재량 범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총계주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②또한 세수 결손을 우려하는 경우에도, 이미 확정된 한은 잉여금 초과수납분을 세입에 포함한 다음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은 세수 재추계 규모를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용 방향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NXC 물납주식매각대는 징수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재원인 반면, 한은 잉여금 초과수납분은 이미 국고 수납이 완료된 확정 재원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 납입분을 세입경정에 반영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동 재원의 운용 계획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4-1. 세입경정 현황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세수입은 본예산(390.2조원) 대비 25.2조원(6.5%) 증액된 415.4조원으로 편성되었다.

국세수입 경정은 2010년 이후 9개 연도, 10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었다. 이 중 증액 경정을 한 경우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 외에도 2016년(9.8조원), 2017년(8.8조원), 2021년(31.5조원) 및 2022년(53.3조원)이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입경정 연혁 및 규모: 2010년 이후]

(단위: 조원)

구 분		추경 편성 규모		
		합계	세출 증액 경정	세입경정 ¹⁾
				국세수입 증감
2013		17.3	5.3	△12.0
2015		11.6	6.7	△4.9
2016		11.0	11.0	11.0
2017		11.2	11.2	8.8
2020	제1회	11.7	11.5	△0.2
	제3회	35.3	23.9	△11.4
2021	제2회	33.0	31.8	31.5
2022	제2회	59.4	52.4	54.7
2025	제2회	30.5	20.2	△10.3
2026		26.2	26.2	25.2

주: 1) 국세수입 경정과 국세외수입 경정의 합계

1. 2010년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도 중 국세수입 경정이 이루어진 연도만 작성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박지원 추계세제분석관(jwpark1209@assembly.go.kr, 6788-4662)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hkkim@assembly.go.kr, 6788-4647)

이정훈 추계세제분석관(nororand@assembly.go.kr, 6788-4669)

이유섭 추계세제분석관(useuplee@assembly.go.kr, 6788-4838)

2026년 국세수입 본예산은 390.2조원으로, 2025년 국세수입 실적(373.9조원) 대비 16.3조원(4.4%)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업종의 법인 영업실적 증가, 증시 활성화에 따른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세입여건의 상방요인으로 인해 세입증액 경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중동전쟁에 따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확대 등 제도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소비 관련 세목에 대해서는 감액 경정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98.7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20.1조원(5.3%)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6.8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5.1조원(44.0%) 증액하였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법인세는 101.3조원으로 2025년 법인 영업실적의 증가세를 견인하였던 반도체 업종내 주요 기업의 2026년 실적 전망이 상향¹⁾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본예산(86.5조원) 대비 14.8조원(17.1%)을 증액하였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세는 73.2조원으로 2026년 상용근로자수 및 임금증가율 등 고용지표 전망의 개선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68.5조원) 대비 4.8조원(7.0%)을 증액하였다. 또한, 주요 기업의 영업실적 호조 및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주가지수가 상승²⁾하면서 증권거래대금이 증가³⁾함에 따라 증권거래세(10.6조원)와 농어촌특별세(13.6조원)⁴⁾를 본예산 대비 각각 5.2조원, 5.1조원 증액하였다.

한편,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에 대응한 유류세 인하조치 확대⁵⁾,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⁶⁾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13.0조원)와 개별소비세(8.9조원)를 본예산 대비 각각 3.4조원, 0.5조원 감액하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부가세(surtax)인 교육세(5.6조원) 또한 본세의 감액에 따라 본예산 대비 0.8조원 감액하였다.

1) 반도체 업종 주요기업의 영업이익(조원): 삼성전자 ('25년) 43.6 → ('26년, 증권사 컨센서스) 198.0
SK하이닉스 ('25년) 47.2 → ('26년, 증권사 컨센서스) 165.1

2) 유가증권 시장(KOSPI) 주가지수는 2025년말 4,214포인트에서 2026년 2월 26일 6,307포인트까지 상승하였으며, 2026년 3월 현재 5,000포인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3) 일평균 거래대금(조원): 코스피 ('25.1~6.) 13.0 ('25.7~12.) 20.7 ('26.1.) 41.0 ('26.2.) 50.1
코스닥 ('25.1~6.) 8.0 ('25.7~12.) 10.6 ('26.1.) 21.3 ('26.2.) 19.0

4)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은 증권거래세 외에 거래대금의 0.15%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5)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폭(%): (~'26.3.26.) 휘발유 △7/ 경유 △10, (3.27.~5.31.) 휘발유 △15/ 경유 △25

6)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율: (2026.1.~6.) 3.5%(기본세율 5%)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국세수입 예산안]

(단위: 조원)

구분	2025 실적 (A)	2026			
		본예산 (B)	추경예산안 (C)	전년 대비 (C-A)	본예산 대비 (C-B)
국세수입	373.9	390.2	415.4	41.5	25.2
일반회계	361.5	378.6	398.7	37.2	20.1
근로소득세	68.4	68.5	73.2	4.8	4.8
법인세	84.6	86.5	101.3	16.7	14.8
개별소비세	8.5	9.4	8.9	0.4	△0.5
증권거래세	3.4	5.4	10.6	7.1	5.2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6.4	13.0	△0.2	△3.4
교육세	5.7	6.4	5.6	△0.1	△0.8
특별회계	12.4	11.6	16.8	4.3	5.1
농어촌특별세	9.2	8.5	13.6	4.4	5.1

주: 1. 추경예산안에 세입정정이 있는 세목만 표시함

2. 단수조정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4-2. 2026년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수입 전망

가.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국회예산정책처는 현 시점에서 진단한 거시경제 여건과 2월까지의 국세수입 수납 실적을 전제로 2026년 국세수입 규모를 수정전망하였다.

현재 중동지역의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2026년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수정 전망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2025년 경제여건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25년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수출 또한 반도체 등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2025년 실질GDP 성장률은 1.0%로 잠정 집계되었는데, 반기별로 살펴보면 상반기(0.3%)에 비해서 하반기(1.6%)의 성장세가 회복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내수의 경우, 민간소비가 상반기 0.7%에서 하반기 1.9%로 반등하면서 성장세의 회복을 견인하는 가운데, 설비투자과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도 각각 연중 2.0%, 2.9%의 성장세를 보였다. 통관수출입 역시 상반기에는 수출 0.0%, 수입 △1.5%로 전년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수출 7.4% 수입 1.5% 등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경제 성장세, 소비회복, 수출실적 증가 등으로 법인 영업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 확인된다. 2025년 자산총액 100대 법인을 기준으로 영업이익⁷⁾은 전년 대비 33.8% 증가하였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글로벌 수요 증가 및 주력 수출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상승⁸⁾ 등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2.5%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2026년 2월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개시되기 이전에는 금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국내 주요 경제기관들의 실질GDP 성장률 전망은 대체로 정부가 본예산 편성시 전제한 수준보다는 개선된 1.8~2.0% 수준이었다. 이러한 전망은 주로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

7) 2026년 3월말 현재 12월 결산법인의 공시가 진행되고 있어,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상장법인 실적 집계는 완료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사업보고서 공시 등이 완료되어 확인이 가능한 자산총액 기준 100대 법인을 중심으로 2025년 법인 영업실적을 살펴본다.

8) 메모리 반도체(DDR4 8GB) 가격(USD): ('24.12.) 1.74 ('25.6.) 5.5 ('25.12.) 9.3 ('26.3.26.) 34.0

출이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에 따라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에 주로 기인한다.

[정부 및 주요 경제기관의 2026년 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전망주체	정부		NABO	KDI	한국은행
전망시점	2025.9.	2026.1.	2026.3.	2026.2.	2026.2.
실질GDP 성장률	1.7	2.0	2.0	1.9	2.0
민간소비	1.6	1.7	1.7	1.7	1.8
설비투자	1.5	2.1	2.2	2.4	2.4
건설투자	2.7	2.4	0.8	0.5	1.0
지식생산물투자	2.7	3.3	3.3	3.5	3.5
명목GDP 성장률	3.8	4.9	6.0	-	-
경상수지(억달러)	800	1,350	1,700	1,488	1,700
통관수출증가율	△0.5	4.2	11.9	3.9	12.1
통관수입증가율	0.5	2.0	6.2	1.0	5.6
취업자수 증가(만명)	17.3	16.0	17.4	17.0	17.0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1	2.3	2.1	2.2

주: 취업자수 증가(만명) 및 경상수지(억달러)를 제외한 거시경제 지표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 정부,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5.9 및 「2026년 경제성장전략」, 2026.1.;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수정」, 2026.2.;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년 2월)」, 2026.2.;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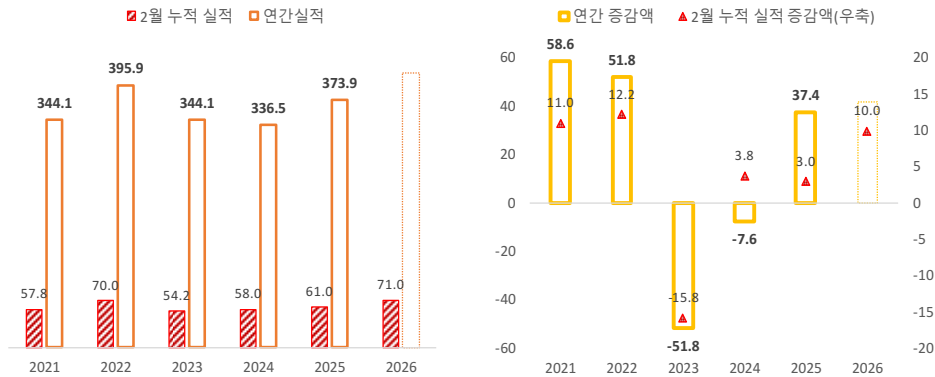
한편, 2월까지의 국세수입은 71.0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61.0조원) 대비 10.0조원(16.5%)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5년(2021~2025년)간 국세수입 2월 누적 실적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2월 누적 실적의 증감은 2024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연간 국세수입의 증감과 동일한 방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추이를 감안할 때, 금년 2월 실적 수준은 연간 세수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⁹⁾한다.

9) 다만, 국세수입의 2월 누적 실적은 주요 세수인 법인세(3월, 8월), 종합소득세(5월), 부가가치세(4월, 7월, 10월) 등의 징수실적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간 세수실적 전망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월 국세수입 실적 추이: 2021~2026년]

(단위: 조원)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세목별로 살펴보면, 2월까지 국세수입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우선 소득세는 2월까지 29.2조원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2.4조원(9.1%)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거래량 상승¹⁰⁾에 따른 양도소득세(전년동기 대비 1.1조원) 증가와 임금상승 및 성과급 지급 확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1.0조원)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부가가치세는 2월 누적 21.0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4.1조원(24.5%)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및 통관수입 증가¹¹⁾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2월까지 각각 1.7조원, 1.9조원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1.2조원씩 증가하였다. 이는 연초 주가상승에 따른 증권거래대금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의 경우 유가증권 시장(KOSPI) 및 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에 대한 세율인상¹²⁾도 세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외의 세목들은 전년동기 대비 0.1~0.3조원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국세수입을 전망하였다.

10) 주택매매거래 상승률(전년동월 대비, %): ('25.11.) 25.0 ('25.12.) 37.0 ('26.1.) 60.4

11) 소매판매액 지수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25.4Q) 0.9 ('26.1.) 0.1
통관수입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25.4Q) 1.4 ('26.1.) 11.6 ('26.2) 7.5

12)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유가증권시장은 0%에서 0.05%로, 코스닥시장은 0.15%에서 0.20%로 0.05%p 인상되었다.

[2026년 2월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당월			1~2월 누적				2025	2026
	'25.2	'26.2	증감액	'25.2	'26.2	증감액	증감률	실적	본예산
국세수입	14.3	18.1	3.8	61.0	71.0	10.0	16.5	373.9	390.2
○ 소득세	13.2	14.1	0.9	26.8	29.2	2.4	9.1	130.5	132.0
- 종합소득	0.1	0.1	0.0	1.5	1.7	0.2	13.6	21.3	22.6
- 양도소득	2.1	2.9	0.7	3.1	4.2	1.1	33.5	19.9	20.4
- 근로소득	9.2	9.3	0.1	18.2	19.2	1.0	5.4	68.4	68.5
○ 법인세	1.5	1.5	0.0	4.2	4.2	0.0	1.0	84.6	86.5
- 신고분	0.0	0.1	0.1	0.2	0.1	△0.1	△53.9	60.9	63.4
- 원천분	1.5	1.5	△0.0	4.0	4.1	0.2	3.9	23.7	23.2
○ 부가가치세	△5.4	△5.1	0.3	16.8	21.0	4.1	24.5	79.2	86.6
○ 상속증여세	1.2	1.1	△0.0	2.0	2.3	0.3	12.5	16.5	17.0
○ 개별소비세	0.5	0.7	0.2	1.6	1.7	0.1	3.7	8.5	9.4
○ 증권거래세	0.3	1.3	1.0	0.6	1.7	1.2	207.1	3.4	5.4
○ 교통·에너지·환경세	1.0	1.2	0.2	2.1	2.4	0.3	15.9	13.2	16.4
○ 농특세	0.4	1.2	0.9	0.7	1.9	1.2	188.2	9.2	8.5
○ 기타 ¹⁾	1.7	2.0	0.3	6.2	6.6	0.4	6.3	28.8	28.3

주: 기타는 본 표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세목의 총합임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2026년 국세수입 전망

(1) 총괄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국세수입을 413.8조원으로, 2025년 실적(373.9조원) 대비 39.8조원(10.7%), 본예산(390.2조원) 대비 23.5조원(6.0%) 증가할 것으로 수정전망하였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국세수입 415.4조원보다는 1.7조원(0.4%) 낮은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전망은 중동지역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세입 수정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7개 세목을 대상으로 수정전망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세목에 대해서는 기존 전망(2025.10.)¹³⁾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13)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5~2029」, 2025.10.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5 실적 (A)	2026						
		정부		NABO				
		본예산 (B)	추경예산 (C)	NABO 전망 (D)	전년 대비 (D-A)		본예산 대비 (D-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373.9	390.2	415.4	413.8	39.8	10.7	23.5	6.0
일반회계	361.5	378.6	398.7	397.2	35.7	9.9	18.6	4.9
근로소득세	68.4	68.5	73.2	74.6	6.1	9.0	6.1	8.9
법인세	84.6	86.5	101.3	99.4	14.8	17.5	12.9	14.9
개별소비세	8.5	9.4	8.9	8.6	0.1	1.4	△0.8	△8.5
증권거래세	3.4	5.4	10.6	9.1	5.7	164.6	3.8	69.5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6.4	13.0	12.7	△0.5	△3.9	△3.7	△22.5
교육세	5.7	6.4	5.6	5.6	△0.1	△1.5	△0.8	△12.5
특별회계	12.4	11.6	16.8	16.5	4.1	32.9	4.9	41.9
농어촌특별세	9.2	8.5	13.6	13.3	4.1	44.9	4.8	57.0

주: 단수조정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26년 국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23.5조원 수준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에는 우선 2025년 법인의 영업실적이 반도체 업종 등을 중심으로 본예산 당시 전제하였던 수준보다 증가세가 높은 데에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본예산 편성 당시 2025년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증권사 전망 컨센서스를 활용하여 전산업 19.8%으로 전제하여 법인세 등을 전망하였으나, 실제 법인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자산총액 100대 기업 기준 33.8% 등으로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5년 법인 영업실적 증가를 견인한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 영업이익 증가율을 25.9% 수준으로 전제하여 전망하였으나, 하반기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총액 100대 기업 기준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72.5%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반도체 경기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매출액은 2025년 전세계적으로 22.5% 증가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액은 27.8% 증가하였다. 세계반도체협회(WSTS)에 따르면, 인공지능 확산으로 2026년 반도체 시장은 2025년과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전년 대비 39.4% 증가)를 중심으로 높은 매출액 증가세(26.3%)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반도체 기업의 2025년 실적 증가와 2026년 증가세 지속 전망은 법인세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기업의 성과급 증가는 근로소득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5년말부터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주가지수가 상승하면서 금년 증권거래대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본예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주식거래의 활성화는 반도체 업종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실적의 호조와 함께 정부의 주주환원 확대 유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가치 제고 정책 등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불안 등에 따른 세수 하방요인도 동시에 존재한다. 2026년 2월말 중동전쟁이 개시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행을 제한하는 등 원유 공급 차질에 따라 유가 상승¹⁴⁾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동지역의 전쟁이 지속될 경우, 고유가로 인한 물가불안에 따른 소비심리의 위축,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경제성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정부는 3월 26일 유가상승에 대응하여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의 인하폭을 확대하는 조치¹⁵⁾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와 같은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관련 세수가 본예산을 하회할 전망이다.¹⁶⁾

14) 두바이유 가격(USD/bbl): ('24.12.) 75.3 ('25.6.) 68.8 ('25.12.) 61.6 ('26.3.15.) 166.8

15) 유류세 탄력세율(원/ℓ): (~'26.3.26.) 휘발유 492.0원/ℓ, 경유 337.5원/ℓ → ('26.3.27.~5.31.) 휘발유 450.0원/ℓ, 경유 281.0원/ℓ

16) 2026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산은 탄력세율 인하를 전제하지 않고 2025년 실적 13.2조원 대비 3.2조원(24.0%) 증가한 16.4조원 규모로 편성 편성되었다.

(2) 세목별 전망

① 법인세

2026년 법인세는 99.4조원으로 2025년(84.6조원) 대비 14.8조원(17.5%) 증가하고, 본예산(86.5조원)을 12.9조원(14.9%)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⁷⁾

세원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신고분은 75.2조원으로 전년 대비 14.3조원(23.5%) 증가하고, 본예산 대비 11.8조원(18.7%) 초과수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인세 원천분은 24.2조원으로 전년 대비 0.5조원(2.1%) 증가하고, 본예산을 1.0조원(4.4%)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법인세 전망]

(단위: 조원, %)

	2025 실적 (A)	2026						
		정부		NABO				
		본예산 (B)	추경예산안 (C)	NABO 전망 (D)	전년 대비 (D-A)		본예산 대비 (D-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법인세	84.6	86.5	101.3	99.4	14.8	17.5	12.9	14.9
- 신고분	60.9	63.4	76.7	75.2	14.3	23.5	11.8	18.7
- 원천분	23.7	23.2	24.6	24.2	0.5	2.1	1.0	4.4

주: 단수조정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먼저, 2026년 법인세 신고분에 영향을 미치는 2025년 법인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5년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중 자산총액 기준 100대 법인¹⁸⁾의 영업이익은 210.2조원으로 전년 대비 53.1조원(33.8%)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라 전기전자 업종이 전체적인 실적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일반서비스 업종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주요 제조업종인 자동차 등 운송장비, 운송창고 등의 업종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17) 2026년 법인세 본예산은 86.5조원으로 2025년 실적(84.6조원) 대비 1.9조원(2.3%)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18) 2026년 3월말 현재 12월 결산법인의 공시가 진행되고 있어,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상장법인 실적 집계는 완료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사업보고서 공시 등이 완료되어 확인이 가능한 자산총액 기준 100대 법인을 중심으로 2025년 법인 영업실적을 살펴본다.

[자산총액 100대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잠정) 현황]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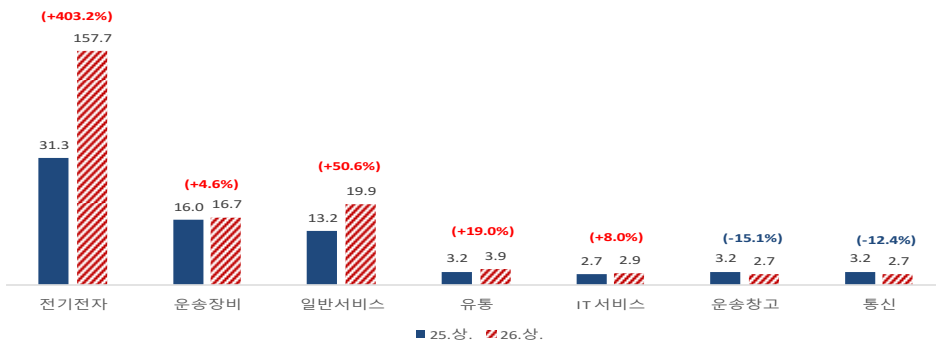
	영업이익 현황			
	'24년	'25년	증감액	증감률
전산업(비금융업)	157.0	210.2	53.1	33.8
- 전기전자	55.8	96.2	40.4	72.5
- 일반서비스	19.4	32.0	12.6	65.2
- 운송장비	31.1	26.8	△4.3	△13.8
- 운송창고	8.7	5.6	△3.0	△34.7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정보 DB(TS2000)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음으로 2026년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에 영향을 미치는 상반기 기업실적¹⁹⁾ 전망을 증권사의 전망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의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의 주요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서비스, 운송장비, 유통, IT서비스 등의 실적은 2025년 상반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운송창고, 통신 등의 실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총액 100대 상장법인의 2026년 상반기 영업이익 증권사 전망 컨센서스]

(단위: 조원, %)



주: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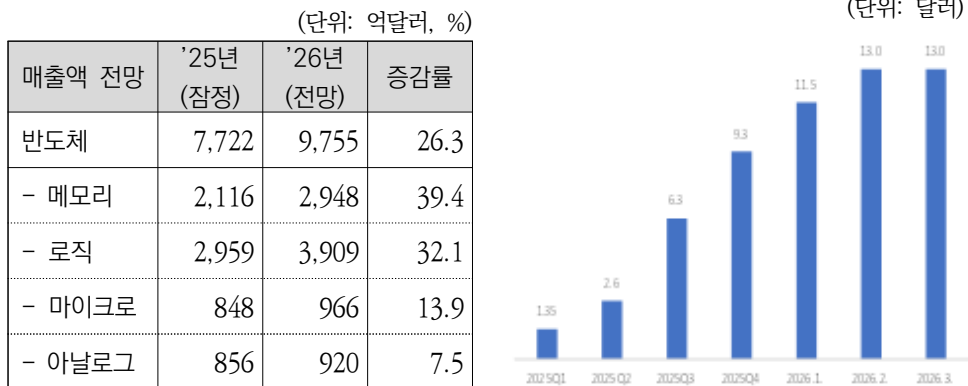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자료(접속일: 2026.3.2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9) 2024년 세법개정으로 2025년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시 상반기 실적 가결산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반도체 업종의 실적 증가 전망은 전세계적인 반도체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 세계반도체협회(WSTS)에 따르면, 2026년 반도체 시장 매출액(9,755억 달러)은 전년 대비 2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매출은 메모리 반도체 매출(전년 대비 39.4%)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계반도체협회는 이를 데이터센터 등 반도체 인프라 투자규모의 확대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증가로 인해 공급부족이 심화되면서 최근 고대역폭 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 HBM) 뿐만 아니라 기존 메모리(Legacy Memory) 반도체 시장가격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메모리 품목의 가격상승은 해당 품목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시장의 매출액 전망 및 고정가격(DDR4 8G 기준) 추이]



주: 반도체 가격은 4~6개월 후 기업간 거래가격인 고정가격(Contract price) 기준

자료: (매출액 전망) 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 2025.12.

(가격 추이) DRAMexchange(접속일자: 2026.3.31.)

이와 같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상반기 법인의 영업실적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금년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은 본예산 당시 예상하였던 수준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중동지역 정세의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산업의 중심자원인 원유의 공급 차질로 고유가가 지속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가동률을 저하시키고, 원가부담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을 악화시켜 법인세수의 하방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권사의 전망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이러한 하방요인을 반영하여 2026년 법인세를 본예산 대비 12.9조원(신고분 기준 본예산 대비 11.8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②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2026년 증권거래세는 9.1조원으로 2025년(3.4조원) 대비 5.7조원(164.6%) 증가하고, 본예산(5.4조원)을 3.7조원(69.5%)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가증권 시장 증권거래대금의 0.15%를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도 13.3조원으로 본예산(8.5조원)을 4.8조원(57.0%)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전망]

(단위: 조원, %)

	2025 실적 (A)	2026						
		정부		NABO				
		본예산 (B)	추경예산안 (C)	NABO 전망 (D)	전년 대비 (D-A)		본예산 대비 (D-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증권거래세	3.4	5.4	10.6	9.1	5.7	164.6	3.7	69.5
농어촌특별세	9.2	8.5	13.6	13.3	4.1	44.9	4.8	57.0

주: 단수조정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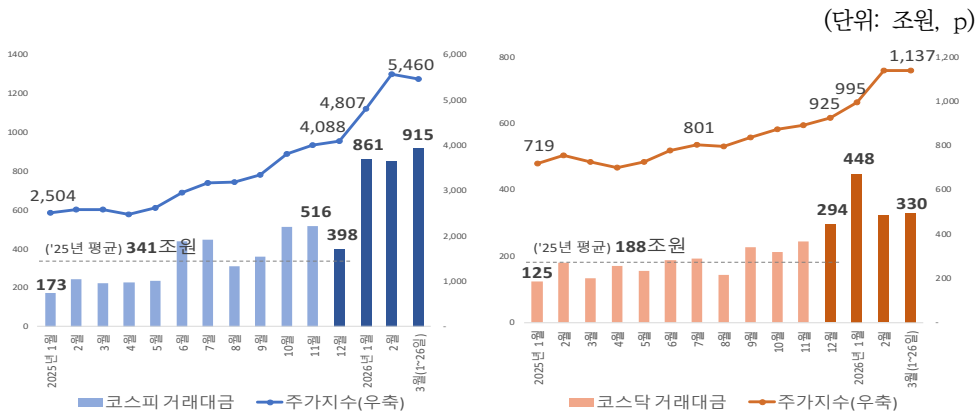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증권거래세는 2월까지 1.7조원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1.2조원(207.1%) 증가하였다. 동 기간 농어촌특별세도 1.9조원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1.2조원(188.2%)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세수실적의 증가는 주가상승으로 증권거래세 등의 바탕이 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대금이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 반도체 업종 등 기업실적의 호조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확대 등 정책효과 등으로 유가증권 시장의 주가는 2025년말 4,088포인트에서 2026년 3월 26일 기준 5,460포인트로 33.6% 상승하였다. 코스닥 시장의 주가도 동 기간 925포인트에서 1,137

포인트로 22.9% 상승하였다. 주가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주식거래도 활성화되어 유가증권 시장의 증권거래대금은 2026년 1월 861조원을 기록하여 2025년 월평균 거래대금(341조원)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코스닥 시장의 경우, 2026년 1월 448조원까지 증가한 후, 2월에는 322조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025년 월평균 거래대금(188조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월별 증권거래대금 및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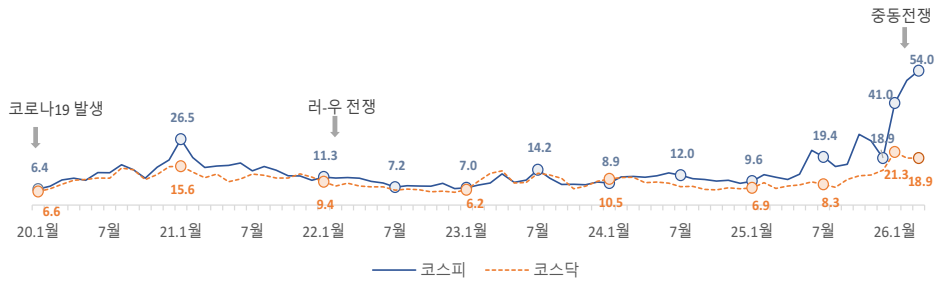
- 주: 1. 증권거래대금은 월별 합계액, 주가지수는 월별 평균 수치임
 2. 한국거래소 및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 거래대금을 합산한 금액임
 3. 26년 3월은 1~26일(17일간) 기간의 거래대금을 합산한 금액임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및 넥스트레이드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6년도 증권거래세수는 최근의 주가 상승, 기업 경기 호조, 그 외 증권거래를 촉진하는 시장요인 및 정책효과의 영향으로 본예산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중동전쟁 이후 일평균 증권거래대금의 감소추세²⁰⁾와 같이 대외경제 등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세수의 증가가 제약될 수 있다.

20)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증권거래대금은 고유가, 고환율, 공급망 위기 등으로 장기간 둔화되는 추이를 보였다.

[일평균 증권거래대금 추이: 2020년 1월~2026년 3월]

(단위: 조원)



주: 26년 3월은 1~24일(16일간) 기간의 거래대금을 합산한 금액임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및 넥스트레이드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6년 2월말 중동전쟁 개시 이후의 증권거래대금 추이를 살펴보면, 전쟁 개시 직후인 3월 초에는 주식투자자의 차익실현을 위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와 주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3월 2주 이후 증권거래대금은 3월초 대비 감소하였다.

[주간 일평균 증권거래대금 추이: 2026년 2월 4주~3월 4주]

(단위: 조원)

	2월 4주	3월 1주	3월 2주	3월 3주	3월 4주
유가증권 시장	62.5	87.7	45.0	41.5	40.4
코스닥 시장	20.4	21.8	19.1	17.5	17.3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및 넥스트레이드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③ 근로소득세

2026년 근로소득세는 74.6조원으로, 2025년(68.4조원) 대비 6.1조원(9.0%) 증가하고, 본예산(68.5조원)을 6.1조원(8.9%)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근로소득세 전망]

(단위: 조원, %)

	2025 실적 (A)	2026						
		정부		NABO				
		본예산 (B)	추경예산안 (C)	NABO 전망 (D)	전년 대비 (D-A)		본예산 대비 (D-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근로소득세	68.4	68.5	73.2	74.6	6.1	9.0	6.1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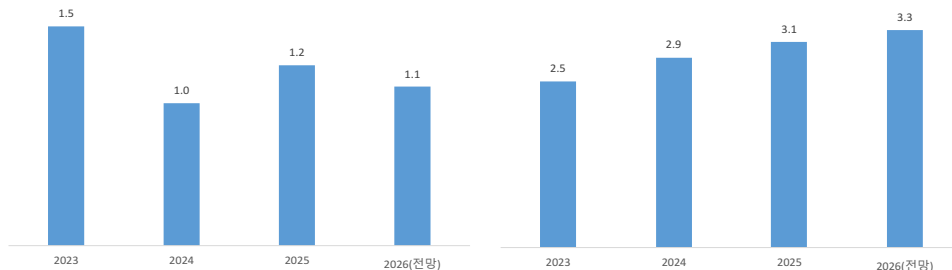
주: 단수조정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26년 2월까지 근로소득세 수납실적은 19.2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0조원(5.4%) 증가하였다. 통상 1분기 근로소득세는 전년도 법인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규모 및 지급 시점에 따라 수납실적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2월까지의 실적만으로 연간 추세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상장기업 영업이익률의 호조세가 2025년에도 지속²¹⁾되었고 이에 따른 특별급여 지급 증가 등으로 임금상승률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연중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본예산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급여 증가 등을 포함하여 전망된 명목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6년 근로소득세수를 전망하였다.

[고용지표 증감률 추이]
[임금근로자수 증감률] [명목임금 상승률]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1) 상장기업 영업이익의 증가율(전년 대비, %): ('23년) △24.5, ('24년) 61.7, ('25년) 33.8(자산총액 100대 기업 기준)

④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2026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2.7조원으로, 2025년(13.2조원) 대비 0.5조원(△3.9%) 감소하고, 본예산(16.4조원)을 3.7조원(△22.5%)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소비세는 8.6조원으로, 본예산(9.4조원)을 0.8조원(△8.5%) 하회할 전망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가 본예산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가세(surtax)인 교육세도 본예산을 0.8조원(△12.5%)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유류관련 세목 전망]

(단위: 조원, %)

	2025 실적 (A)	2026						
		정부		NABO				
		본예산 (B)	추경예산안 (C)	NABO 전망 (D)	전년 대비 (D-A)		본예산 대비 (D-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6.4	13.0	12.7	△0.5	△3.9	△3.7	△22.5
개별소비세	8.5	9.4	8.9	8.6	0.1	1.4	△0.8	△8.5
교육세	5.7	6.4	5.6	5.6	△0.1	△1.5	△0.8	△12.5

주: 단수조정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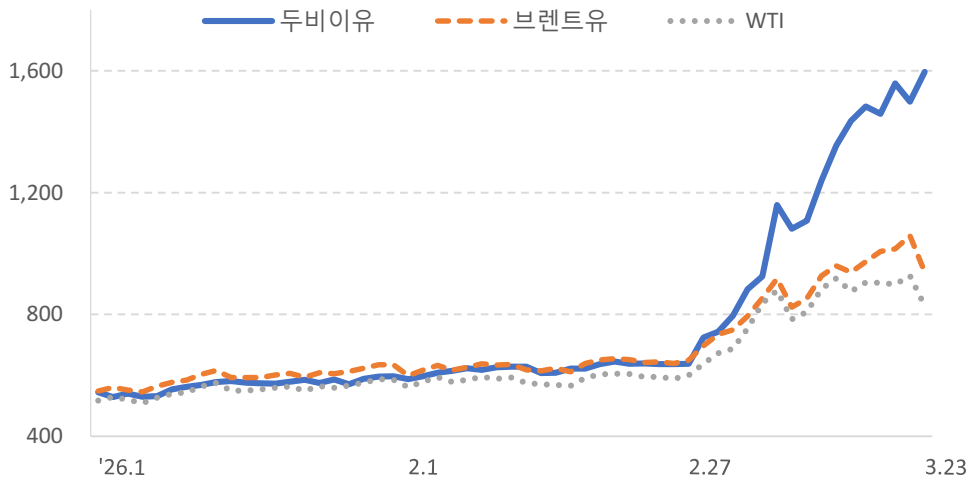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전망이 본예산보다 낮은 것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폭 확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한시적 인하 등 본예산 편성 당시에 반영되지 않았던 제도적 요인의 영향에 주로 기인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당초 정부는 2021년 11월 이후 지속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는 전제하에 2026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6년에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는 유지되었다. 또한, 2026년 3월 현재 중동전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역의 유조선 통행을 제한하면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3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였다.²²⁾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제도적 요인과 함께 고유가에 따른 유류 소비량 감소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2026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본예산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2)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26.3.26.) 휘발유 492.0원/ℓ, 경유 337.5원/ℓ → ('26.3.27.∼5.31.) 휘발유 450.0원/ℓ, 경유 281.0원/ℓ

[2026년 1 ~ 3월 원유가격 추이]

(단위: 원/ℓ)



자료: 한국석유공사 펌트로넷(petronet.co.kr)

한편,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도 본예산을 0.8조원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본예산 편성 당시 반영되지 않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한시적 인하²³⁾ 효과 등 제도적 요인을 반영한 결과이다.

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차이 분석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413.8조원으로 정부 추경예산안의 국세수입 415.4조원보다는 1.7조원(△0.4%) 낮은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차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향후 세입여건을 보수적으로 전망한 데에 주로 기인한다.

23)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율: (2026.1.~6.) 3.5%(기본세율 5%)

먼저 법인세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본예산을 12.9조원(14.9%) 상회하는 99.4조원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정부 추경예산안(101.3조원)과 비교하여 1.9조원(△1.9%) 낮은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전망차이는 대체로 중동전쟁에 따른 하방요인의 반영 수준에서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는 모두 2025년 법인 영업실적이 본예산 편성 당시 전제한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며, 2026년 상반기에도 반도체 경기는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았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흐름이 지속될 경우, 기업의 생산량 저하, 원가부담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 하방요인을 반영하여 상반기 영업실적을 다소 보수적으로 전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정부 추경예산안 대비 각각 1.5조원, 0.3조원 낮게 전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주가상승 등으로 인한 증권거래대금의 증가세를 반영하여 본예산 편성 당시 전제한 수준보다는 세수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주식거래량이 최근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²⁴⁾을 반영하여 세수를 전망하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본예산을 각각 12.7조원, 8.6조원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정부 추경예산안보다 0.3조원씩 낮은 수준인데,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전망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유류 등 과세대상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수요를 제한할 가능성을 반영한 것에 기인한다.

반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74.6조원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정부 추경예산안(73.2조원) 1.3조원(1.8%) 높은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전망 차이는 주로 임금상승률 등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전제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법인 영업실적의 호조로 인한 특별급여 상승 등을 반영하여 명목임금 상승률을 3.3%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정부는 2026년 명목임금 상승률을 2.7%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10년(2016~2025년)간 명목임금 상승률 평균(3.5%)과 근로소득세수의 연평균 증가율(9.7%)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세수가 전년 대비 9.0% 증가한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24) 2026년 2월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3월중 주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세목별 전망의 '②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편 참고)

[2026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정부 vs 국회예산정책처]

(단위: 조원)

구분	본예산 (A)	정부		NABO		차이 (C-B)
		추경예산안 (B)	본예산 대비 (B-A)	전망 (C)	본예산 대비 (C-A)	
국세	390.2	415.4	25.2	413.8	23.5	△1.7
근로소득세	68.5	73.2	4.8	74.6	6.1	1.3
법인세	86.5	101.3	14.8	99.4	12.9	△1.9
개별소비세	9.4	8.9	△0.5	8.6	△0.8	△0.3
증권거래세	5.4	10.6	5.2	9.1	3.7	△1.5
교통·에너지·환경세	16.4	13.0	△3.4	12.7	△3.7	△0.3
교육세	6.4	5.6	△0.8	5.6	△0.8	△0.0
농어촌특별세	8.5	13.6	5.1	13.3	4.8	△0.3

주: 단수조정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1. 추경안 편성에 따른 재정총량 현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제1회 추경안) 편성으로 예상되는 관리 재정수지 적자는 주로 초과세수가 추경재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2026년 본예산 대비 0.2조원 축소된 △107.6조원(GDP 대비 △3.8%)으로 계획되었으며, 국가채무는 추경재원 중 1.0조원이 국채상환으로 사용될 계획으로 본예산 대비 1.0조원이 감소한 1,412.8조원(GDP 대비 50.6%)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700.6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25.4조원이 증가하였으며,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25.2조원 증가한 753.1조원이다. 제1회 추경안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본예산 대비 0.2조원 감소한 △107.6조원(GDP 대비 △3.8%)이다.

정부는 추경 재원 26.2조원 중 25.2조원을 초과세수로 나머지 1.0조원은 기금 자체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채 추가발행 없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고 추경재원 중 1.0조원이 국채상환에 사용됨에 따라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1.0조원이 감소한 1,412.8조원, GDP 대비 50.6% 규모로 계획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총량]

(단위: 조원, %, %p)

구 분	2025년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제2회 추경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총수입 (증가율, %)	651.6 -	642.4 -	675.2 (3.6)	700.6 (7.5)	25.4
총지출 (증가율, %)	673.3 -	703.3 -	727.9 (8.1)	753.1 (11.8)	25.2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21.7 (△0.8)	△60.8 (△2.3)	△52.7 (△1.9)	△52.5 (△1.9)	0.2 (0.0)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73.9 (△2.8)	△111.6 (△4.2)	△107.8 (△3.9)	△107.6 (△3.8)	0.2 (0.1)
국가채무 (GDP대비, %)	1,273.3 (48.1)	1,301.9 (49.1)	1,413.8 (51.6)	1,412.8 (50.6)	△1.0 (△1.0)

주: 증가율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임.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5-2.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가. 재정수지

(1) 제1회 추경안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본예산 △52.7조원 대비 적자 규모가 0.2조원 축소된 △52.5조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동일한 수준으로 계획됨에 따라 본예산 △107.8조원 대비 0.2조원 개선된 △107.6조원으로 계획되었다. 이는 2025년 제2회 추경 △111.6조원 대비로는 4.0조원 축소된 수준이다.

제1회 추경안 기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2026년 본예산과 동일한 △1.9%로 계획되었으며, 관리재정수지는 △3.8%로, 본예산 △3.9% 대비 적자 규모가 0.1%p 축소되었고, 2025년 제2회추경 △4.2% 대비로도 적자규모가 0.4%p 축소될 계획이다.

[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원, %, %p)

구분	2025		2026		본예산 대비 (C-B)	전년 대비 (C-A)
	본예산	제2회 추경 (A)	본예산 (B)	1회 추경안 (C)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21.7 (△0.8)	△60.8 (△2.3)	△52.7 (△1.9)	△52.5 (△1.9)	0.2 (0.0)	8.3 (0.4)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52.1	50.8	55.1	55.1	0.0	4.3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73.9 (△2.8)	△111.6 (△4.2)	△107.8 (△3.9)	△107.6 (△3.8)	0.2 (0.1)	4.0 (0.4)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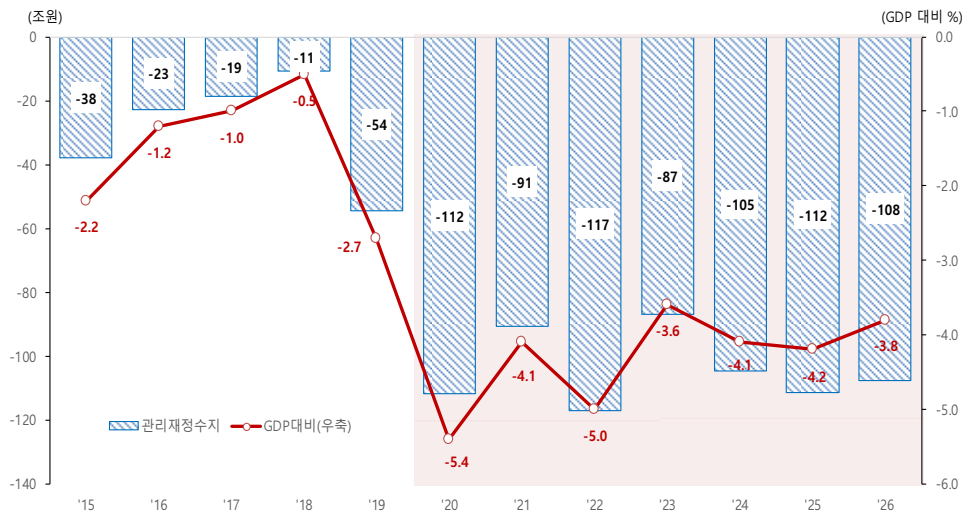
(2) 실효성 있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모색 필요

2026년 제1회 추경안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본예산 △3.9% 대비 0.1%p 개선된 △3.8%로 계획되어 있으나, 2024년 이후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상회하고 2027~2029년 관리재정수지가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바 재정수지 개선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 목표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중·장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1회 추경안에 따른 2026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본예산 대비 0.2조원 축소된 △107.6조원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에서 △3.8%로 적자 폭이 0.1%p 축소되었다.

그러나 2024~2026년 최근 3년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매년 100조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3년 연평균 적자 비율이 △4.0%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관리재정수지 추이]



주: 2024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5년은 제2회 추경, 2026년은 제1회 추경안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1회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으로 2026년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107.6조원(GDP 대비 △3.8%)을 기록한 이후 2027~2029년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1~△4.4% 수준으로 △4%를 상회하며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추경안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변화(2026~2029년)]

(단위: 조원, %, %p)

		'25	'26	'27	'28	'29
관 리 재 정 수 지	'25~'29계획 (GDP대비, %)	△111.6 (△4.2)	△107.8 ¹⁾ (△3.9)	△115.4 (△4.1)	△128.9 (△4.4)	△124.9 (△4.1)
	'26년 제1회 추경안(B) (GDP 대비, %)(D)	△111.6 (△4.2)	△107.6 (△3.8)	△115.4 (△4.1)	△128.9 (△4.4)	△124.9 (△4.1)
	금액 차이(B-A)	-	0.2	-	-	-
	GDP 대비 차이 (D-C)	-	(0.1)	-	-	-

주 1) 2026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6.3.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기획예산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을 제시하면서 지난 예산안 심사시 제출한 추상적인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만을 구체적인 관리방안 없이 제출하였다.

[제1회 추경안 재정총량 관리방안 비교]

구분	재정총량 관리방안
2025년 제2회 추경안	□ 지출 효율화 및 수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여력 확보 ○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의무지출 중장기 소요 점검 및 효율화 방안 강구 ○ 세입기반 확대 노력 강화 및 투자재원 다각화 추진 □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관리체계 정비 ○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 등 □ 경제·재정여건 변화 등에 따른 향후 재정운용 방향 및 운용 목표를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국회 제출 계획

구분	재정총량 관리방안
2025~2029년 재정운용 기본방향	① 성과 중심 재정운용으로 경기회복·경제성장 적극 뒷받침 ○ 고성과 부문에 투자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으로 경제 회복·성장 지원 ○ 서민·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지원, 소비진작·지역경제 활성화, 신산업 육성, 인구변화 대응 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에 재정을 선택·집중 투자 ② 재정-경제 선순환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경제성장 및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등 ○ 저성과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등 ③ 재정운용 효율성 및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 지속 ○ 성과평가 예산환류 강화, 예타제도 개편 등 재정관리 효율화 등 ○ 국민참여 확대,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 및 재정교육 강화 등
2026년 제1회 추경안	① 지출 효율화 및 수입기반 확충 ○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중장기 재정지출 구조 혁신으로 재정 효율화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폐지 등 조세지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안정적 수입기반 확충 노력 지속 ② 재정관리체계 정비 ○ ‘부처-기획예산처’로 이원화된 평가를 통합 성과평가로 일원화,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 내실화하여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 뒷받침 ○ 균형성장 투자 유도, 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효과적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중동전쟁 등에 따른 경제불확실성 확대, 물가 불안 등을 고려시 경기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경편성은 필요한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재정지출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정부는 우리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유지·제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재정운용 목표 설정과 재정준칙 등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026년 9월로 예정된 2027년도 예산안 등과 함께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국가채무

(1) 제1회 추경안에 따른 국가채무 변화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따른 2026년 국가채무는 정부가 25.2조원 초과세수 중 일부인 1.0조원을 국채상환에 활용함에 따라 본예산 1,413.8조원 대비 1.0조원 감소한 1,412.8조원으로 계획되었다. 다만 2026년 국가채무 1,412.8조원은 2025년 제2회 추경 기준 국가채무 1,301.9조원 대비 110.9조원 증가한 규모로서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2021년과 2025년에 이어 4번째로 연간 국가채무 증가 폭이 100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2026년 제1회 추경안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6%로, 본예산 51.6% 대비 1.0%p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2025년 제2회 추경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인 49.1% 보다 1.5%p 상승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국가채무 변화]

(단위: 조원, %, %p)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제2회 추경(A)	2026년		증감	
			본예산 (B)	제1회 추경안(C)	본예산 대비 (C-B)	전년 대비 (C-A)
■ 국가채무	1,175.0	1,301.9	1,413.8	1,412.8	△1.0	110.9
(GDP대비, %)	(46.0)	(49.1)	(51.6)	(50.6)	(△1.0)	(1.5)
중앙정부 채무	1,141.2	1,267.2	1,377.1	1,376.1	△1.0	108.9
- 국채	1,139.8	1,265.5	1,375.7	1,374.7	△1.0	108.9
(국고채)	1,047.9	1,161.2	1,270.6	1,269.6	△1.0	108.4
(국민주택채)	79.1	74.5	69.8	69.8	0.0	△4.7
(외평채)	12.8	29.9	35.3	35.3	0.0	5.5
- 차입금	1.2	1.6	1.3	1.3	0.0	△0.3
- 국고채무부담행위	0.2	0.1	0.1	0.1	0.0	0.0
지방정부 순채무	33.9	34.7	36.7	36.7	0.0	2.0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한편 정부가 제1회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제1회 추경안 기준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2026~2029년 1.0~2.4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6년 50.6%를 기록한 이후 2029년에는 57.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추경안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변화(2025~2029년)]

(단위: 조원, %, %p)

		'25	'26	'27	'28	'29
국 가 채 무	'25~'29계획	1,301.9	1,413.8 ¹⁾	1,532.5	1,664.3	1,788.9
	(GDP대비, %)	(49.1)	(51.6)	(53.8)	(56.2)	(58.0)
	'25년 제2회 추경(안)	1,301.9	1,412.8 ¹⁾	1,530.2	1,661.9	1,786.5
	(GDP대비, %)	(49.1)	(50.6)	(53.7)	(56.1)	(57.9)

주 1) 2026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6.3.를 바탕으로 재구성

(2)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나, 최근 선진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전반적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는 IMF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General Government Debt, % of GDP)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정부회계기준(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산출¹⁾하며,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최근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부채 규모는 주요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규모를 IMF 분류에 따른 37개 선진국²⁾과 비교해보면, 202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56.7%로 대상국가 37개국 중 19위 수준이며, 선진국 평균 108.5%³⁾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G20 국가 평균 120.8%, G7 국가 평균 125.7% 대비로도 절반 수준을 하회하는 규모이다.

한편 2026년 IMF 자료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226.8%)이며 이후 싱가포르(176.3%), 그리스(141.9%), 이탈리아(138.3%), 미국(128.7%) 순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56.7%)보다 낮은 주요국은 호주(50.7%), 네덜란드(45.2%), 노르웨이(42.5%), 스위스(36.1%), 아일랜드(31.5%) 등이다.

1) 일반정부 부채(D2)의 포괄범위, 산출기준, 주요 활용 등을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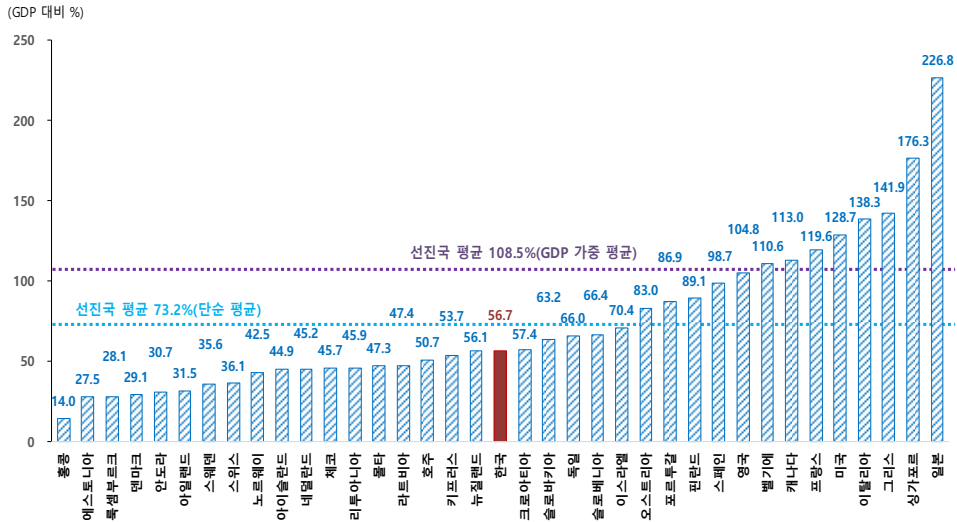
재정지표	포괄범위	산출기준	주요 활용
일반정부 부채(D2)	D1 + 비영리 공공기관	국제지침(GFS), 발생주의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IMF, OECD)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 IMF는 1인당 국민소득, 대외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 개도국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3) IMF가 발표하는 GDP 가중평균 기준이며, 단순평균 기준 37개 선진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72.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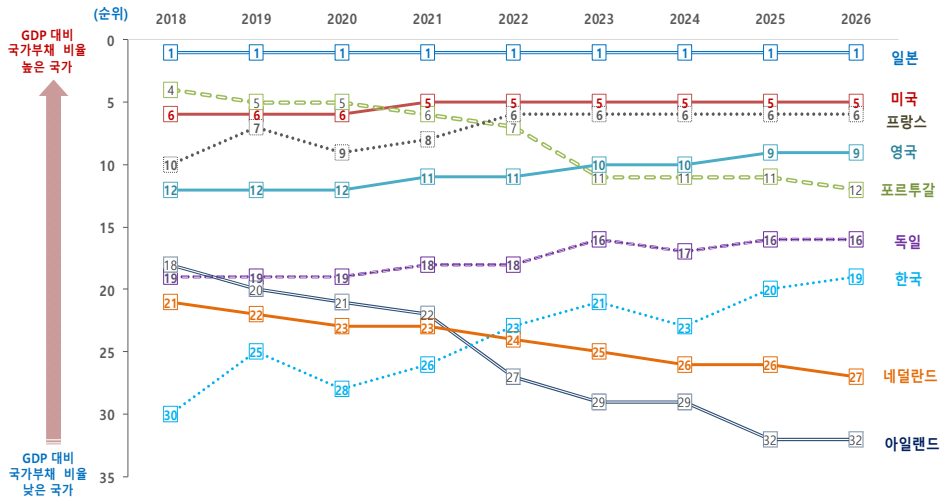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국제 비교(2026년 기준)]



- 주 1. GDP 대비 국가부채(D2 기준) 비율
 2. 선진국의 일반정부 부채 평균 108.5%는 IMF가 발표하는 GDP 가중평균 기준이며, 단순평균 기준 37개 선진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73.2%
 자료: IMF, 「Fiscal Monitor」(2025.10)

다만, 선진국 중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순위는 2018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순위는 2018년 기준 37개 선진국 중 30위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8위를 기록하였고 2025년 기준 20위, 2026년 19위로 상승한 상황이다. 한편 주요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2018년 이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2021년 이후 5위를 지속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경우 2018년 4위에서 순위가 하락하며 2026년 이후 12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2018년 21위에서 2026년 27위로 하락하였다.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 2018년 18위에서 2025년, 2026년 32위로 순위가 14단계 하락하며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냈다.

[선진국(37개국) GDP 대비 국가부채(D2기준) 비율 순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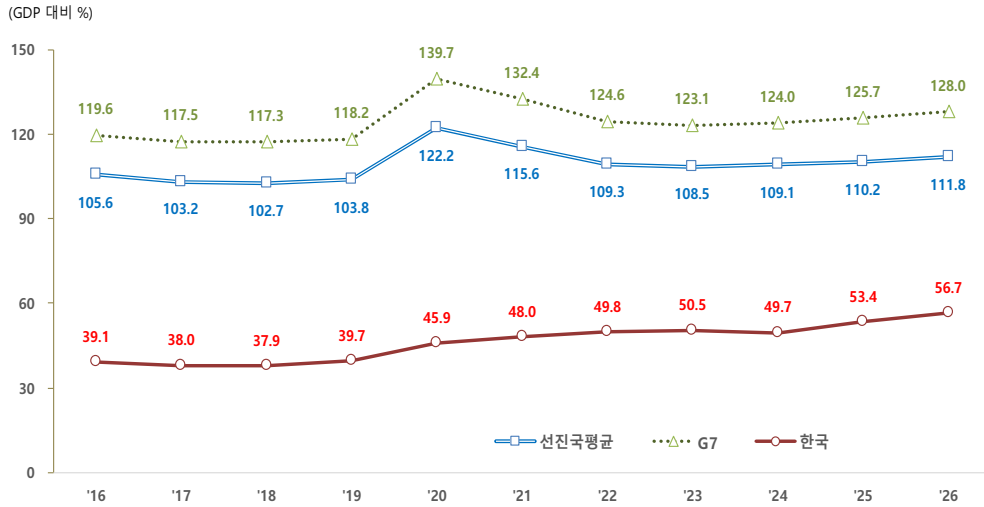
주: 선진국은 IMF 분류 기준

자료: IMF, 「Fiscal Monitor」(2025.10)

또한 주요 선진국의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1~2023년 하락세를 나타낸 이후 2024~2026년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전반적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중 G7 국가의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0년 139.7%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 123.1%를 기록한 이후 2026년 128.0%로 상승세를 보였다. 37개 선진국의 평균 GDP 대비 국가부채(D2) 비율도 2020년 122.2%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며 2023년 108.5%를 나타내었으나 2026년 3.3%p 상승한 111.8%를 기록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19년 39.7%에서 2023년 50.5%로 상승한 이후 2024년 49.7%로 하락하였으나 2025년 재차 상승하며 2026년 56.7%를 기록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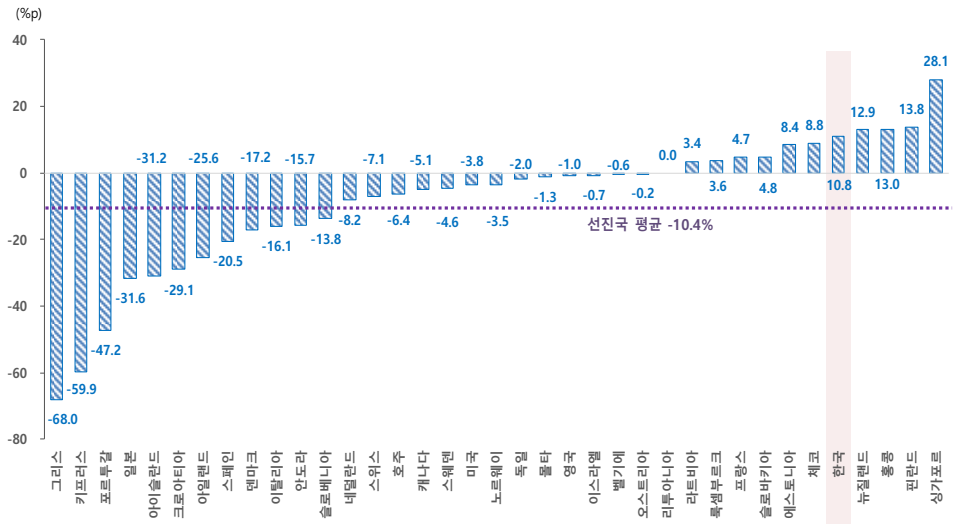
주: GDP 대비 국가부채(D2 기준) 비율

자료: IMF, 「Fiscal Monitor」(2025.10)

국가부채 증가율 측면에서 2020년~2026년 기간 우리나라는 37개 선진국 중 5번째로 높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증가속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0년 대비 2026년 10.8%p 상승하였으며 이는 싱가포르의 28.1%p, 핀란드 13.8%p, 홍콩 13.0%p, 뉴질랜드 12.9%p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2020~2026년 기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상승한 국가는 37개 선진국 중 11개국이며, 25개 선진국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하락하였다. 2020~2026년 기간 37개 선진국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10.4%p 하락하였으며,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는 그리스로 68.0%p가 하락하였다. 또한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도 각각 31.6%p, 3.8%p, 2.0%p, 1.0%p 하락하였다.

[2020년 대비 2026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변동폭 비교]



주: GDP 대비 국가부채(D2 기준) 비율
 자료: IMF, 「Fiscal Monitor」(2025.10)

(3) 국가채무의 질 악화 관리방안 검토 필요

최근 대응자산이 없어 실질적 채무상환 부담이 수반되는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국가채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6년 제1회 추경안의 1.0조원의 국채상환에도 불구하고 2026년 계획된 국가채무 증가가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 등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국가채무의 양적 증가 뿐 아니라 질적 악화를 관리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는 성질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자원조성 없이도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이다. 이에 반해,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상환 시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 부담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채무이다.

[성질별 국가채무 개요 및 종류]

구분	개념	종류
적자성 채무	일반회계 채무,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 부담행위, 부채의 정리·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금의 채무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고채,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금융성 채무	대응하는 금융자산(현금 및 예금, 주식 이외 유가증권, 융자)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해 추가적 자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등

자료: 대한민국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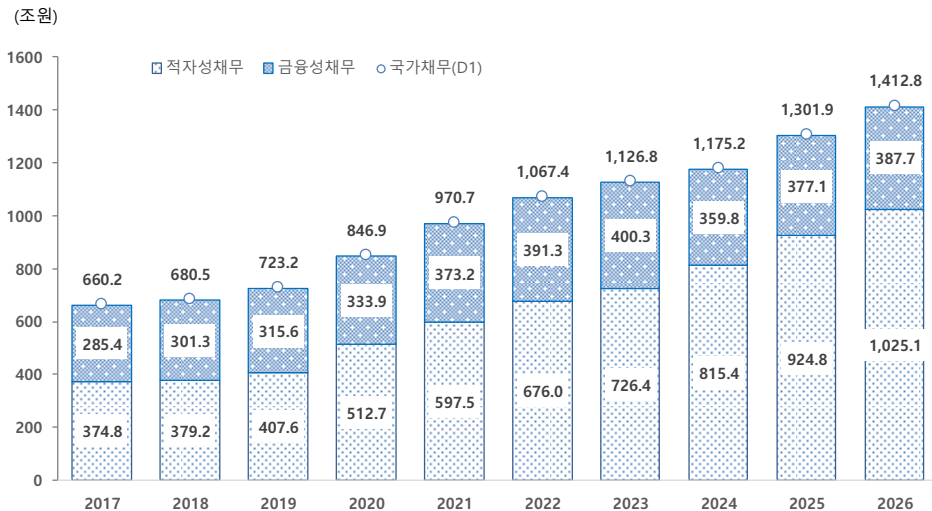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2.8조원 감소한 1,025.1조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025년 제2회 추경 대비로는 100.4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따른 금융성 채무는 387.7조원으로 2025년 제2회 추경 대비 10.5조원 증가할 예정이다. 2025년 제2회 추경 대비 2026년 제1회 추경안 기준 적자성 채무 증가 규모는 금융성 채무 증가 규모의 9.6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배 수준이며, 2025년 제2회 추경 대비 2026년 제1회 추경안 기준 전체 국가채무 증가 규모 110.9조원 중 90.5%(100.4조원)가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증가되는 상황이다.

증가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07.6조원에서 2026년 1,025.1조원으로 연평균 14.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동기간 금융성 채무는 315.6조원에서 387.7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3.0%를 기록하였다. 증가율 기준으로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의 4.7배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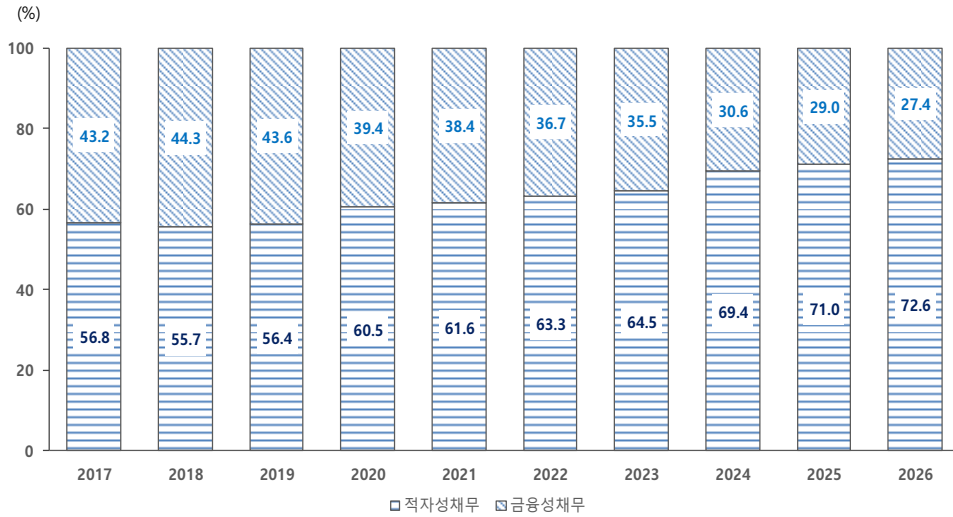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추이]



주: 2024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5년은 제2회 추경, 2026년은 제1회 추경안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 결과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6.4%에서 2026년 72.6%로 16.2%p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의 전체 국가채무 대비 비중은 2019년에 43.6%에서 2026년 27.4%까지 하락하였다.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비중 추이]



주: 2024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5년은 제2회 추경, 2026년은 제1회 추경안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채무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자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 등의 문제를 수반하므로 국가채무 총량 뿐 아니라 적자성 채무 수준에 대한 적극적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제1회 추경안과 함께 제출된 ‘재정총량 관리 방안’ 등에서 적자성 채무 증가 등 국가채무의 질에 대한 관리 방안 및 관리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적자성 채무의 관리목표 및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국가보증채무 확대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 검토 필요

채무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국가보증채무가 2026년 이후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과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신규 보증 등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 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2026년 6월 시행에 따라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 투자¹⁾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채권이 국가보증채무로 발행될 경우 국가 보증채무의 증가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보증채무 규모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국가재정법」 제 92조²⁾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하여 국가 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2026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국가보증 채무는 2025년 16.7조원(GDP 대비 0.6%)에서 2026년 39.0조원(GDP 대비 1.4%)으로 133.5% 증가할 전망이며, 2029년에는 80.5조원(GDP 대비 2.6%)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 증가는 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³⁾,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량 확대 등에 기인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보증채무 중 한국장학재단채권⁴⁾은 2025년 11.0조원에서 2029년 15.6조원으로 41.8% 증가하며,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동기간 4.2조원에서 21.4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 1)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 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조선협력투자”)
- 2)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3)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보증채무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임
- 4)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2010년부터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임

조원으로 17.2조원(409.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⁵⁾의 경우 2025년 1.5조원에서 2029년 43.5조원으로 42.0조원(2,800%) 증가해 가장 가파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추가적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6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한미전략투자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정부가 보증⁶⁾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향후 한미전략투자채권이 국가보증채무로 발행될 경우 국가보증채무의 증가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 잔액 전망]

(단위: 조원, %, %p)

구분	2024	2025(A)	2026	2027	2028	2029(B)	증감(B-A)
국가보증채무	11.0	15.6	39.0	54.5	68.6	80.5	63.8
(GDP 대비)	(0.4)	(0.6)	(1.4)	(1.9)	(2.3)	(2.6)	(2.0)
-장학재단채권	10.4	11.0	12.2	13.4	14.5	15.6	4.6
-공급망안정화 기금채권	0.4	4.2	10.3	14.9	18.7	21.4	17.2
-첨단산업전략 기금채권	-	1.5	16.5	26.2	35.4	43.5	42.0
-기간산업안정 기금채권	0.2	-	-	-	-	-	-
-한미전략투자 채권			2026년 6월 이후 채권발행은 가능하나 발행규모 및 발행시점은 미정(국회 동의 필요)				

주: 2024년은 결산 기준, 2025~2029년은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5)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보증채무는 첨단전략산업의 경쟁 격화에 대응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채무임
- 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2조(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전략적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한미전략투자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의 확정채무가 아니므로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될 위험이 있고, 특히 2026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점진적으로 실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번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10월 이후 19차례의 추경안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11차례가 2020년부터 2026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와 최근의 대내외 여건 급변이라는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추경이 사실상 연례적 재정운용 수단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바이다.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가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반복적 편성이 관행화될 경우 본예산의 실질적 의미가 퇴색되고 재정규율이 형해화될 수 있다. 특히 세수의 과다 또는 과소 추계로 인한 세입경정 또는 국채 추가발행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재정당국의 세수추계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세수 과소 추계는 초과세수 발생 시 총지출 확대를 위한 추경 편성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세수 과다 추계는 지출사업의 강제불용이나 추가 국채발행의 요인이 된다. 물론 이번 추경 편성의 배경이 되는 중동 전쟁은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라는 점에서 편성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초과세수의 규모가 곧 총지출 순증 규모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초과세수가 추경 규모를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세입 과소·과다 편성 모두 재정운용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회계연도 개시 후 불과 3개월 만에 약 25조원¹⁾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이번 사례는 단순한 추계 실패를 넘어 세수추계 체계 전반에 대해 재정당국의 점검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세목별 증감을 고려한 순증 금액이 25.2조원이며, 실제 세입경정 항목에 포함된 세목별 오차 규모 절댓값의 합은 이보다 큰 34.6조원이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 감소분은 세수오차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세지출(유류세를 인하 조치)에 가깝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근로소득세 4.8조원, 법인세 14.8조원, 증권거래세 5.2조원

- 개별소비세 △0.5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 △3.4조원, 교육세 △0.8조원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국채발행 없는 추경’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 편성에 수반되는 비용은 국채 추가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즉,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동 초과세수는 세제잉여금으로 남아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최소 51% 이상이 국채 원리금 상환 등 채무 감축에 의무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사실상 초과세수 전액을 지출로 소진함으로써 이러한 채무 감축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직접적인 국채 추가발행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안과 관련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중동 사태의 전개 방향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구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동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종료될 경우 유가와 환율 등 경제지표는 비교적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반면, 장기화된다면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 기준금리 인하 제약,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 복합적인 경기 하방 압력이 현실화될 수 있다. 추경안의 사업 구성과 규모는 이러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중동 사태의 추이와 각종 경제지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동 사태의 조기 종료, 현 수준 지속, 추가 확산 등 주요 시나리오별로 추경안의 세입·세출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 소요 변동 추정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정책 분야별 고려사항

먼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유류세 인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에너지바우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고유가 부담 완화 대책이 다수 편성되었다. 개별 사업은 각각 정책적 필요성이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지원 규모가 누증되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압박이 커진다는 점에서, 정책 간

조율 체계 구축, 지원 종료 기준의 사전 명확화, 비재정적 수단의 적극적 활용 등이 요구된다.

이번 추경안의 고유가 대응 정책은 주로 재정·조세 수단을 통한 공급가격 억제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가격 억제 중심의 대응은 에너지 소비를 유지 또는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재정 소요를 누적시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재정 부담은 확대되는 반면 에너지 소비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논의 중인 차량 10부제 등 수요 억제·분산을 위한 비재정적 수단을 병행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재정·조세 수단과 비재정적 수단의 조합을 통해 단기적 민생 부담 완화와 중장기적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일시적으로 크게 확대된 재원을 활용하여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사업계획 미비로 인해 연내 집행가능성이 우려되거나 수출바우처 등 기존 사업과 지원대상 및 사업성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국회 심사와 과정에서 세부사업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 및 가용재원의 미활용 문제

추경안의 재원인 초과세수의 성격과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가용 재원의 규모를 고려할 때,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채 상환 및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 업종의 역사적 호황이라는 특수한 경기 요인에 기인한 법인세²⁾로, 구조적인 세입 확충 기반이 마련된 결과가 아닌 일시적·비반복적 성격의 재원이다. 이러한 성격의 재원을 신규 지출 용도로 대부분 활용할 경우, 초과세수가 소진된 이후에도 지출 압력이 지속되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3.4조원) 등 이미 확정된 가용 재원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국채 상환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는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넓다고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2) 실제로 이번 추경안의 국세수입 세입경정 25.2조원 중 법인세 증가분이 14.8조원으로 전체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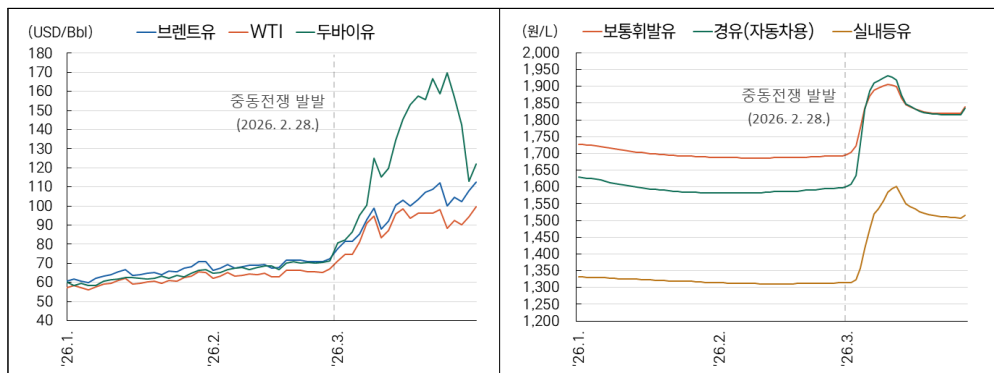
1

고유가 부담 완화

가. 고유가 부담 완화 사업 편성 현황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수급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브렌트유 선물 증가는 3월 12일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3월 27일에는 브렌트유 장중 110달러, WTI 장중 100달러를 각각 돌파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유류가격도 빠르게 상승하여 3월 10일 기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07원, 자동차용 경유 1,932원으로 3월 중 최고가격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3월 12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확정하고 3월 13일 1차 고시를 발령하였다. 3월 27일 2차 고시에서는 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을 최고가격으로 설정하였다.

[2026년 국제유가(원유) 및 국내유가(주유소 평균판매가격) 추이]



주: 1. 브렌트유: (2.27) 72.48 → (3.12) 100.46 → (3.20) 112.19 → (3.23) 99.94 → (3.27) 112.57
 WTI: (2.27) 67.02 → (3.12) 95.73 → (3.20) 98.32 → (3.23) 88.13 → (3.27) 99.64
 2. 휘발유: (2.27) 1,693 → (3.10) 1,907 → (3.12) 1,899 → (3.25) 1,819 → (3.27) 1,839
 경유: (2.27) 1,597 → (3.10) 1,932 → (3.12) 1,919 → (3.25) 1,815 → (3.27) 1,835

자료: 한국석유공사(Opinet)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2026. 3. 26.)에서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성장 둔화, 물가 상승, 민생 악화, 공급망 불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국내경제에 악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특히 에너지 소비비중이 높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타격으로 양극화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패키지(전국민·서민층·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고유가 상황에 대응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이며, 고유가 부담 완화 사업이 전체 추경안 26.2조원 규모 중 38.5%(10.1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분야는 지원 목적 및 내용에 따라 ① 전국민 유류비·교통비 경감, ② 고유가 피해지원금, ③ 에너지 복지로 구분된다.

① **전국민 유류비·교통비 경감**의 경우 기름값 안정 및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보강하고,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필요한 예비비(목적예비비, 5조원 증액)를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877억원 증액)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다.

②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구간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60만원을 지급하는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4.8조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다.

③ **에너지 복지**의 경우 등유·LPG 이용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에 5만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바우처(102억원 증액) 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78억원) 및 해양수산부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468억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무기질비료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42억원 증액) 및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용자)(650억원 증액) 사업과 해양수산부 연안 화물선유류비보조(106억원 증액) 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고유가 부담 완화 주요 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증 감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B-A)	(B-A)/A
전국민 유류비 · 교통비 경감	기획예산처	예비비	4,000,000	9,000,000	5,000,000	125.0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557,970	645,678	87,708	15.7
고유가 피해 지원금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	4,825,185	4,825,185	순증
에너지 복지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너지바우처	494,027	504,257	10,230	2.1
	농림축산 식품부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	7,824	7,824	순증
		무기질비료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15,600	19,800	4,200	26.9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응자)	250,000	315,000	65,000	26.0
	해양수산부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	46,819	46,819	순증
		연안화물선유류비보조	18,661	29,212	10,551	56.5

주: 내역사업명이 기재된 경우의 예산액은 내역사업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1) 고유가 부담 완화 사업

① 예비비(기획예산처)

예비비¹⁾는 「대한민국헌법」 제55조제2항²⁾과 「국가재정법」 제22조³⁾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계상하는 자금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2026년도 본예산 4조원 대비 5조원 증액된 9조원을 편성하였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등을 위해 목적예비비를 5조원 증액한 것으로, **향후 유가 전망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손실보전금의 산정 기준, 보전 범위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총칙(안)에 명시된 **목적예비비의 용도가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로 명시되어 있어 매우 포괄적이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②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⁴⁾은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비 지출액의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2026년도 본예산 5,579억 7,000만원 대비 877억 800만원 증액된 6,45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신규 가입자가 기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1인당 환급액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편, 2026년 도입된 정액형 환급제도 이용

1) 코드: 일반회계 3069-300

2) 「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4)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4931-354

자 수는 예측보다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 추계에 활용된 추정치가 실제 이용실적 대비 과소·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추경안의 소요예산 전반을 적정히 재추계하여 국회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⁵⁾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조 8,251억 8,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하는 대응 지방비 규모는 1.3조원에 달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과 소득계층 분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율이 설정되어 있어 대응지방비의 지역별 편차가 상당하고 재정력과 사업 집행액이 비례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과 소득분포를 고려한 국고보조율 다층화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분에 대한 국고 부담 비율 상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수단으로 논의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정책수단별 사용권역·업종제한·기한 등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수급자의 사용편의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운용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에너지 복지 사업

① 에너지바우처 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바우처 사업⁶⁾은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등유·LPG 사용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본예산 4,940억 2,700만원 대비 102억 3,000만원을 증액한 5,04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다.

5) 코드: 일반회계 3069-300

6)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146-301

해당 사업은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나,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포함하여 추경안에 편성된 대부분의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사업 증액분의 대부분이 연료비 보전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빈곤을 근본적으로 탈피하기 위한 구조적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② 농업용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사업⁷⁾은 시설원에 농가의 난방용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통해 78억 2,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해양수산부 어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사업⁸⁾은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출어지원을 위해 어업용 면세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통해 468억 1,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해당 사업들은 2022년 예산 편성 시 사용된 기준가격과 동일한 기준가격으로 2026년 추경안을 편성하였는데,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6년도 유가를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현실화하여 지원금 소요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국회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경우 농기계용 면세유 사용량이 난방용보다 많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을 농기계용은 제외하고 시설농가의 난방용 면세유로 한정하는 것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③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사업⁹⁾은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농업인의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2026년도 본예산 156억원 대비 42억원 증액된 198억원을 편성하였다.

7) 코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041-302

8)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40-371

9) 코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2260-377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무기질비료의 가격이 약 20%(톤당 약 17만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동 사업 추경안에는 무기질비료 지원단가가 톤당 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소요액보다 과소 편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제 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을 고려하여 추경안 증액 규모가 실제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가. 민생 안정 사업 편성 현황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특히 가중되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편성되었다.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하락세이고, 청년고용률이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청년고용 부진 등으로 양극화 구조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편성된 저소득층, 소상공인, 취약 노동자, 청년 등을 위한 민생 안정 사업이 전체 추경안 26.2조원 규모 중 10.7%(2.8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동 분야는 지원 목적 및 내용에 따라 ① 취약계층 일상 회복, ②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③ 고물가 부담 경감, ④ 지역의료체계 확충으로 구분된다.

① **취약계층 일상 회복**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2,828억원 증액),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지역 거주자에게 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다.

②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의 경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관련 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1,550억원 증액),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사업(2,530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다.

임제웅 예산분석관(lim@assembly.go.kr, 6788-4638)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안승재 예산분석관(seungjaean@assembly.go.kr, 6788-4635)

③ **고물가 부담 경감**의 경우 경기침체 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문화,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목표로 영화, 공연예술, 숙박, 휴가 4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영화·공연예술·숙박·휴가 할인 사업(586억 원 증액),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500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다.

④ **지역의료체계 확충**의 경우 최근 공중보건의사 규모 급감에 따른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방지를 목적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한 직무교육 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21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민생 안정 주요 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증 감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B-A)	(B-A)/A
취약계층 일상회복	보건복지부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	7,344	9,487	2,143	29.2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405,254	418,329	13,075	3.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9,839,997	10,122,834	282,837	2.9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70,205	88,764	18,559	26.4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34,075	304,705	70,630	30.2

(단위: 백만원, %)

구분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증 감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B-A)	(B-A)/A
청년창업 · 일자리 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저변확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155,000	155,000	순증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지역창업패키지)	-	51,080	51,080	순증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중심대학)	88,250	112,250	24,000	27.2
	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원	297,077	311,375	14,298	4.8
	정보통신부	연구운영비 지원(R&D)	116,367	132,857	16,490	14.2
	과학기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26,289	142,779	16,490	13.1
	정보통신부	연구운영비 지원(R&D)	120,610	137,100	16,490	13.4
	과학기술	울산과학기술원	-	20,000	20,000	순증
	정보통신부	연구운영비 지원(R&D)	-	6,602	6,602	순증
	과학기술	광주과학기술원	13,944	72,715	58,771	421.5
	정보통신부	연구운영비 지원(R&D)	521,313	626,093	104,780	20.1
	과학기술	AI통합바우처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	148,244	148,244	순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	28,300	28,300	순증
	농림축산 식품부	농지이용관리지원	873,620	953,753	80,133	9.2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일반) (청년창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907,959	933,709	25,750	2.8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일반) (K-뉴딜아카데미)	-	19,515	19,515	100
	교육부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	10,054	63,402	630.6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	149,962	149,962	순증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국세청	압류재산공매 (국세 체납관리단)				
	국세청	압류재산공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위: 백만원, %)

구분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증 감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B-A)	(B-A)/A
고물가 부담경감	농림축산 식품부	농식품 소비기반 조성 (농축산물 할인지원)	108,000	158,000	50,000	46.3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정책지원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	36,100	36,100	순증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향유지원 (공연예술관람료지원)	-	5,100	5,100	순증
	문화체육 관광부	국내관광 역량 강화 (숙박할인권 지원)	3,963	15,203	11,240	283.6
	문화체육 관광부	국내관광 역량 강화 (근로자 휴가지원)	10,700	16,900	6,200	57.9
지역의료 체계확충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	2,065	2,065	순증
	보건복지부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2,794	3,711	917	32.8
	보건복지부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시니어의사 지원)	7,225	7,595	370	5.1

주: 내역사업명이 기재된 경우의 예산액은 내역사업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1) 취약계층 일상 회복 사업

①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업('그냥드림' 사업)(보건복지부)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그냥드림' 사업)¹⁾은 취약계층의 일상적인 결식을 예방하고 동주민센터, 푸드뱅크 등 거점 공간 내 '먹거리 지원 코너'를 매개로 은둔형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2026년도 본예산 73억 4,400만 원 대비 21억 4,300만 원 증액된 9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공공재정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광역푸드뱅크 등 민간 후원 물품과의 1:1 매칭 구조에 과도하게 의존함에 따라 지자체별 재정 및 자원 동원 역량의 차이가 현장의 서비스 격차로 고스란히 전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대규모 신규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월 50만 원 수준의 적은 수당으로 노인 일자리나 자원봉사 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위기가구 심층 상담 등 고도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공공재정의 최소 운영 물량 확보, 차등 매칭제 도입 및 인력 체계 개편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긴급복지 사업(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사업²⁾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 비용을 즉각적으로 선지원함으로써 극단적 상황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2026년도 본예산 4,052억 5,400만 원 대비 130억 7,500만 원 증액된 4,18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최근 제도의 위기 사유 인정 범위 확대 및 소득·재산 기준 완화로 실제 지원 건수와 재정 소요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는 한편, 물가 상승 및 경

1) 코드: 일반회계 2631-308

2) 코드: 일반회계 1133-300

기 침체와 같은 구조적 변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과거 단기 증가율에만 의존한 소극적인 수요 예측을 고수하여 연례적인 예산 부족과 잦은 타 예산 전용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정교한 위기가구 수요 예측 모델을 적용하여 소요예산 전반을 현실화**하고 이를 국회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③ 의료급여 사업(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2026년도 본예산 9조 8,399억 9,700만 원 대비 2,828억 3,700만원 증액된 10조 1,22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예산 편성 당시 예측했던 수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2026년 2월 기준 1,638,888명), 실제 1인당 평균 진료비 단가 또한 기초 1종 기준 1,020.4만 원으로 본예산 단가(979만 원)를 상회하는 등 수급 물량과 단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추경안에 반영된 목표 수급자 물량에 실제 진료 단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추계액(약 10조 6,122억 원)과 실제 편성액 사이에는 약 4,000억 원의 상당한 간극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완전한 예산 편성은 향후 대규모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저하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

또한 의료급여기금의 적정 적립금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재정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적립금을 소진할 경우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실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수요 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예산을 현실화하고, 미지급금 방지를 위한 적정 적립금 운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④ 고용유지지원금 사업(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³⁾은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요인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실업을 예방하고

3) 코드: 고용보험기금 1045-350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추경안)에는 2026년도 당초 계획액 702억 2,500만 원 대비 185억 5,900만 원 증액된 88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1년 코로나19 여파 대응 당시 예산을 대폭 증액했음에도 집행률이 69.1%에 그치는 등 잦은 대규모 불용 사태가 발생한 바 있으며, 2026년 역시 2월 말 기준 집행률이 12.7%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추경을 통한 선제적 예산 확보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내 실집행 가능성이 낮을 우려가 큰 측면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일선 고용센터 등을 통해 사업주 대상 고용유지조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실질적인 집행을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 국회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⁴⁾은 인구소멸지역 농어촌 군 주민등록 거주자에게 1인당 월 15만원(국비 지원액은 6만원 정액, 지자체 자체 추가 부담으로 인당 15만원 이상 가능)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본예산 대비 706억 3,000만원 증액(5개 군 추가 선정 계획)된 3,04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대상지역 선정 시 시범사업 종료 이후 기본소득 정책 성과 평가**라는 동 시범사업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비교 연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면 지역 주민의 경우 지급받은 지역화폐를 모두 면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면 지역의 가맹점 수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면 지역 지역화폐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사용처 제한 한도를 상향하는 등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35-300

(2)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

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⁵⁾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관련 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5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창업인재를 발굴해 창업활동자금을 지원하고, 지역별 오디션과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가를 선발 후 이들의 사업화 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이들에게 투자하는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한다.

다만 동 사업과 관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및 2차에 사용할 예산을 통합하여 별도 내역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편성·추진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사업 성과의 통합적인 관리를 추진하며, 지역 오디션·권역 오디션·대국민 경진대회 등 **단계별 탈락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미흡한바 이들에 대한 사후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사업⁶⁾은 예비·초기·도약 단계 등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및 도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6년도 본예산은 4,618억 3,800만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역창업패키지 내내역사업 신규 편성(510억 8,000만원) 및 창업중심대학 내역사업 증액(240억원)에 따라 750억 8,000만원이 증액된 5,369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다만 동 사업과 관련 지역창업패키지 사업과 창업중심대학 사업 모두 창업도시(대전, 대구, 광주, 울산)에 지원이 집중되어있는데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준과, 창업도시 내 창업 및 지역이전 수요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지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 발굴 및 유인체계 개선 등 정책수단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5) 코드: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3131-301

6) 코드: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1532-302

③ 4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출연연구기관(대학)인 4대 과학기술원의 연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⁷⁾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각 과기원에 대해 창업전담인력 인건비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리그 운영, 창업지원 자율 프로그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창업펀드 조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2026년도 본예산은 6,603억 4,300만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37억 6,800만원이 증액된 7,24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 동 사업은 소요 예산 규모가 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주축인 창업원 신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창업도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최초로 **정부출연금 기반의 기술지주회사 창업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므로 운용 및 사후관리방안, 지역 혁신기업 투자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과기원 창업지원은 기추진 중인 연구개발특구육성(R&D)과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두 사업의 강점을 결합하기 위해 사업 간 지원대상, 기술내용, 지원내용 등에서 차별화 및 연계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AI통합바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통합바우처⁸⁾는 국내 AI 활용 확산과 시장 확대를 위해 AI 서비스와 개발·활용기반(고성능컴퓨팅자원·클라우드·데이터 등)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국내 AI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897억 7,500만원이나 AI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200억원이 증액된 1,097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신규편성된 내역사업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는 제조업 등 전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매·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2026년도 1차 추경

7)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2231-40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2231-402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2231-403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2231-405

8) 코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2602-336

의 중점 편성 분야인 민생·에너지, 창업·청년뉴딜, 문화예술 토대 강화 중 창업·청년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편성되었다.

동 사업과 유사한 AX 사업(AX 원스톱 바우처,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제조 혁신구축지원 사업 등)이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추경안에 AI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편성된 취지를 고려하여, 동 사업이 **AI 분야에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수요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우수한 AI 기업이 매칭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정보통신진흥기금에 편성한바, **AI 지원 사업의 일반회계와 정보통신진흥기금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① 청년 일자리 확충 사업 (공통)

이번 추경에서는 중동전장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2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청년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수의 부처에서 청년 일자리 확충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에 근무하면서 청년들의 직업상담, 공공행정 등과 관련된 업무역량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125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15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현장에서 청년이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00명을 채용하고자 하며 195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정신요양시설, 방과 후 야간연장돌봄 시설, 자립준비전담기관에 청년을 포함한 629명의 대체인력 배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6억 2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은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청년층,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각각 2,500명, 7,000명 규모)하여 체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은 634억 200만원 증액된 734억 5,600만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은 1,499억 6,2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은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경을 통해 청년 등 조사원 채용 규모를 850명에서 4,5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바 본예산 587억 7,100만원이 증액된 727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 비교]

구 분	국민취업지원 제도 청년지원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지원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 내용	국민취업 지원제도 수행 민간위탁 기관 근무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 과업 수행	사회복지시설 내 보조·대체인력 업무 수행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 보조	농지의 소유·이용 관계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안 편성상 시간당 임금	10,320원 ¹⁾	11,188원	10,320원 ¹⁾	12,250원	12,235원
채용 규모	125명	2,500명	629명	(국세)2,500명 (국세외수입) 7,000명	4,500명
참여 기간	6개월	5개월	8개월	6개월 ²⁾	5개월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주: 1)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임

2) 단, 10월부터 근무 예정인 2차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3개월 근무 예정

1. 근무시간은 사업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미정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② 내일배움카드(일반)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사업⁹⁾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도 본예산은 6,273억 2,500만원이나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규모를 기존 49,500명에서 59,500명으로 1만명 확대하고 신규사업인 K-뉴딜아카데미 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530억 2,400만원이 증액된 8,803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신규사업인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0대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첨단·선호분야 직업 능력개발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설계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이 편성되고 집행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연내 집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계획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 보인다. 또한 동 사업의 대상은 15~34세 청년인데, 같은 청년 계층 내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가 상이한바 고용노동부가 **사업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③ 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 (교육부)

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의 내역사업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¹⁰⁾ 사업은 대학 재학생이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을 제공하여 실무역량을 제고하고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쉬었음’ 청년, 취업 준비생, 실업자 등 일자리 밖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민생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83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달리 대학 재학생이

9) 코드: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1234-300

10)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256-300의 내역사업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자 선발 과정을 별도로 관리하고, 신규 추진하는 만큼 사업 계획 구체화 후 부트캠프 운영대학 선정, 교육생 모집 등 **절차가 지연되어 2026학년도 하반기부터 부트캠프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대학이 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 청년 직업교육 사업 비교]

구분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훈련	K-뉴딜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목적 및 주요 내용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청년 대상 대기업이 첨단·선호분야 직업능력개발과 직장적응프로그램 제공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단기집중교육을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¹¹⁾	15~34세 청년	청년
시행 주체	직업훈련기관, 기업, 대학	대기업	대학(전문대학 포함)
훈련비	훈련 비용의 10% 자부담 (상한 60만원)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훈련 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월 40만원	없음
예산	6,260억원	1,482억원	283억원

자료: 교육부,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¹²⁾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1조 128억 3,000만원이나 I 유형에 대한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801억 3,300만원이 증액된 1조 929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11)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12) 코드: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1234-300

동 사업 추진과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3만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나, 기존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다소 도전적인 목표로 보이는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 확대 과정에서 취업지원 서비스가 악화되거나 사업의 실질적 성과로 볼 수 있는 취업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④ 청년일자리창출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¹³⁾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해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9,079억 5,900만원이나 비수도권 유형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50,000명에서 65,00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57억 5,000만원이 증액된 9,337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 추진 관련 2026년 2월말 현재 집행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집행 부진의 가능성이 큰바,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예산이 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노력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¹⁴⁾은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과 지역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195억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 관련, 행정안전부는 기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청년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일경험 지원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사업의 분절적 추진에 의한

13) 코드: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1043-301

14) 코드: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3131-306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방식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역할 분담과 조정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성화 목표와 관련하여 정책대상인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단체의 실질적 정책 수요와 조직 지원을 위한 단기 인턴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므로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⑥ 국세 체납관리단,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¹⁵⁾은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조직의 설치·운영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은 체납관리단 인원 2,500명 추가 채용을 위해 본예산 대비 634억 200만원이 증액된 734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은 실태확인원 7,000명 채용을 위해 1,499억 6,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본예산의 국회 의결내용,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부대의견 취지와 다른 측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실태조사가 실효적일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하고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의 실태확인 업무는 법적 근거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향후 법률안 심사 경과를 보아가며 사업 추진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⑦ 농지이용관리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¹⁶⁾은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농지 특별조사(전수조사)에 필요한 조사원 인력 채용 등을 근거로 본예산 대비 587억 7,100만원 증액된 727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조사 수행을 위한 **지자체의 조사원 채용 규모가 현재**

15) 코드: 국세청 일반회계 2202-301의 내역사업

16) 코드: 농지관리기금 4130-412

850명에서 4,500명으로 대폭 확대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중인 대규모의 조사원 신규 채용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 채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농지법」상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토지등에의 출입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등의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민간인인 조사원이 농지 특별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채용한 조사원들의 농지이용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드론을 활용한 농지조사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매한 드론의 증장기 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고, 드론 관련 현행법 체계와 부합하는 내부 규정을 정비하여 드론을 활용한 농지 조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고물가 부담경감 사업

①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¹⁷⁾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환율·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500억원 증액된 1,580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 전후 가격 변동을 도매시장 가격 등 외부 기준과 상시 비교·검증하는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체 할인율이 높거나 할인 이행 실적이 우수한 유통업체에 대해 차년도 사업 참여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자체 할인 실적과 보다 밀접하게 연계된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고, 아울러 유통업체의 할인 이행 실적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17) 코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41-300의 내역사업

② 영화·공연예술·숙박·휴가 할인 쿠폰 사업(문화체육관광부)

영화·공연예술·숙박·휴가 할인쿠폰 사업은 경기침체 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문화·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하여 4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제공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2026년도 본예산 146억 6,300만원 대비 586억 4,000만 원 증액된 73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다.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¹⁸⁾·공연예술관람료지원 사업¹⁹⁾은 2020년, 2021년, 2025년 기금변경 및 추경을 통해 유사한 쿠폰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 **기존 실적을 고려하여 사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예매 중심의 발급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디지털 소외'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²⁰⁾은 추경안으로 추가되는 지원 물량 30만장을 모두 인구감소지역에 배정하고 있는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을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²¹⁾은 2025년 집행 실적이 부진하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제고하고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4) 지역의료체계 지원 사업

①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²²⁾은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규모 급감에 따른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0억 6,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4~2025년간 이어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0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전년도 250명 대비 98

18) 코드: 영화발전기금 1261-302

19)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1765-301

20)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4-309

2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4-309

22) 코드: 일반회계 3350-302

명으로,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 또한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농어촌 지역 등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인 바,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동 사업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공보의 확보가 어려운 의료취약지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비용에 더해, 직무교육 시 발생하는 인력 공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간제 대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체인력 수급 계획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기간제 인력 채용계획 및 지역별 배치 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의료취약지의 진료 기능이 유지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②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²³⁾은 지역에서 5년 이상 장기근무할 것으로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한 8개 필수과목²⁴⁾ 전문의에게 매월 400만원씩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제한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27억 9,400만원이나 최근 공보의 인력 급감에 따른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9억 1,700만원이 증액된 37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본예산을 통해 전년도 선정 인원에 대한 계속 지원에 더해, 신규로 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총 20명의 전문의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신규로 5개 지자체에 20명씩 100명에 더해, 전국에 배치된 16개 보건의료원 개소당 2명씩 총 132명의 전문의를 추가로 선정하여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전문의 채용 목표 인원이 2026년 본예산 대비 대폭 확대된다는 점에 더해,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 보건

23) 일반회계 2750-303(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24)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의료원의 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인력 신규 채용 및 관련 예산의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③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²⁵⁾은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및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퇴직 의사 등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72억 2,500만원이나 최근 공보의 인력 급감에 따른 지역 의료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75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본예산을 통해 2025년 지원 목표로 설정한 전일제(1형) 시니어의사 80명과 시간제(2형) 시니어의사 30명 등 총 110명을 대상으로 한 계속 지원 예산에 더해, 2026년 신규로 전일제 20명, 시간제 30명 등 50명을 선정하여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일제 시니어의사 15명, 시간제 시니어의사 5명 등 총 20명을 추가 선발하여 4개월간 채용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동 사업은 의료인력의 지역 기피 문제 등으로 인해 2025년 당초 계획 목표 대비 실제 채용 실적이 다소 저조한 상황이므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본예산 및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목표로 설정한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니어의사 인력 매칭 플랫폼인 ‘닥터링크’의 기능개선을 추진하는 등 시니어의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5) 코드: 일반회계 2750-303(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가.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사업 편성 현황

2026년 2월 28일 발발한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내 원유 수입량의 약 61%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사실상 제한되면서, 중동 지역 대상 우리 수출기업의 판로 위축은 물론, 유가 및 환율의 급등이 동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물류비 및 에너지 비용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나프타·요소 등 주요 원자재의 수급 불안이 심화되며, 석유화학·정유·비료 등 연관 산업 전반의 생산이 차질을 빚는 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에너지·신산업 전환,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목표 아래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분야에 전체 추경안 26.2조원 중 10%인 2.6조원 규모가 편성되었다.

동 분야는 지원 목적 및 내용에 따라 ① 피해 기업·산업 지원, ② 에너지 전환, ③ 신산업 전환, ④ 공급망 안정화로 구분된다.

① **피해 기업·산업 지원**의 경우 중동 전쟁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물류비 상승, 대체시장 발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바우처(255억원 증액), 수출·물류바우처(1,000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고, 수출 기업의 유동성 및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시장창출지원금 등 대출과 기술·신용·무역 등 보증보험에 6,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총 7.1조원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유류비 인상 등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저금리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관광산업융자지원 사업(2,800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다.

② **에너지 전환**의 경우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발전설비 구축 시 용자·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활용도가 높은 전기화물차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205억원 증액), 무공해차 보급사업(900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다.

③ **신산업 전환**의 경우 문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K-콘텐츠 펀드 출자, 500억원 증액),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500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고, 산업·제조 공정의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제조 암묵지 구축 및 AI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800억원)과 제조 현장에 스마트 공장 및 로봇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상생형 제조AX선도 모델 사업(750억원 증액),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200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다.

④ **공급망 안정화**의 경우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4,734억원 증액) 사업이 편성되었고, 비축유 130만 배럴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석유비축사업출자(1,584억원 증액)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석유 불법 거래행위 감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223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주요 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증 감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B-A)	(B-A)/A
피해기업 · 산업 지원	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 (긴급지원바우처)	42,443	67,943	25,500	60.1
		무역보험기금출연	70,500	170,500	100,000	141.8
	중기부	수출지원기반활용	150,203	250,203	100,000	66.6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250,000	500,000	250,000	1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용자)	316,378	416,378	100,000	31.6
		신용보증기금출연	80,000	180,000	100,000	125.0
		기술보증기금출연	60,000	160,000	100,000	166.7
	문체부	관광산업용자지원(용자)	644,066	924,066	280,000	43.5
	농식품부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2,004	79,204	7,200	10.0
에너지 전환	기후부	수산물해외시장개척 (경쟁력강화)	29,075	30,664	1,589	5.5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용자)	648,000	868,500	220,500	34.0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14,332	276,732	62,400	29.1
		무공해차 보급사업	2,284,513	2,374,513	90,000	3.9

(단위: 백만원, %)

구분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증 감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B-A)	(B-A)/A
신산업 전환	산업부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	80,000	80,000	순증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56,738	76,738	20,000	35.2
	중기부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상생형 제조AX선도모델)	-	75,000	75,000	순증
		K-콘텐츠 펀드 출자	430,000	480,000	50,000	11.6
	문체부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20,000	70,000	50,000	250.0
공급망 안정화	산업부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135,036	608,431	473,395	350.6
		석유비축사업출자	55,300	213,733	158,433	286.5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16,314	38,654	22,340	136.9

주: 내역사업명이 기재된 경우의 예산액은 내역사업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1) 피해기업·산업 지원 사업

① 수출바우처 지원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류 비용 상승, 대체 시장 발굴 등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는 산업통상부의 긴급바우처지원 사업¹⁾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²⁾, 해양수산부의 수산물해외시장개척(경쟁력강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사업 등에 총 1,342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 중동 지역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 약 567개사를 대상으로 국제운송비, 통상 애로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2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중동 지역 수출기업 중 약 4,800개사를 선정하여 국제운송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5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³⁾

1) 코드: 일반회계 1139-307의 내역사업

2) 코드: 일반회계 3131-301

3)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추경안 증액분 1,000억원은 중동 특화 물류바우처 500억원과 일반 수출바우처 500억원으로 구성된다.

[2026년 중동 전쟁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 계획]

구분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업	(본예산) 약 180개사 (추경안) 추가 약 567개사	(본예산) 약 1,000개사 (추경안) 추가 약 4,800개사
지원내용	일반 서비스(국제운송 포함) + 특화 서비스	국제운송 서비스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5억원	기업당 1,500만원
2026년 예산	(본예산) 80억원 조정 집행 중 (추경안) 255억원 증액	(본예산) 105억원 (추경안) 500억원 증액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모두 중동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⁴⁾을 대상으로 국제운송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게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및 선정 단계부터 중복 지원을 배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의 및 역할분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재정 여건과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내수-초보-성장-고도화 바우처의 각 단계별 지원한도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상향하여 추경안을 편성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수출 제고 효과가 큰 내수·초보 바우처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 정책적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② 수출 정책금융 지원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자금경색 해소를 위한 수출 정책금융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⁵⁾과 신시장진출지원자금⁶⁾, 신용보증기금출연⁷⁾, 기술보증기금출연⁸⁾, 산업통상부의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⁹⁾에 총 6,5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재정지원을 통해 정부는 총 7.1조원의 수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4) 산업통상부는 중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5)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261-302

6)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261-303

7) 코드: 일반회계 1231-881

8) 코드: 일반회계 1231-882

9) 코드: 일반회계 1138-881

[2026년 추경안을 통한 수출 정책금융 지원 계획]

(단위: 억원)

구분	수행기관	공급규모	재정지원	내용
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500	3,500	· 긴급경영안정 및 신시장창출지원
보증	신용보증기금	25,000	1,000	· 직·간접 피해기업 특례보증 - 보증료를 인하, 보증비율 향상 등
	기술보증기금	12,000	1,000	
	한국무역보험공사	30,000	1,000	· 수출기업 및 현지법인 유동성 공급 · 원자재 수입대금 및 신시장진출 지원
합계		70,500	6,5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먼저, 중소기업부는 중동 전쟁의 여파 확대로 환율·유가 변동 및 공급망 불안이 확대됨에 따라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 자금 및 신시장창출지원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중동전쟁 피해 등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시에 안정적인 대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두 융자 사업의 대출 부실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추경안의 경우 각 기관별 원활한 보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보강해주는 성격의 재원이다. 그러나 최근 이들 기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 기관의 기본재산이나 보증잔액 현황, 자체 재원을 활용한 추가 보증여력 등을 점검하고, 적정 출연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¹⁰⁾은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를 통해 관광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중동 전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2,8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동 사업 추경안을 통한 융자 규모는 최근 시행한 특별융자 지원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나, **융자 지원대상, 피해 입증 절차 및 대상별 금리 우대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업종별 피해 상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10) 관광진흥개발기금 4267-300의 내역사업

(2) 에너지 전환사업

①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교육부)

정부는 화석연료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본예산 0.9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하였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900억원),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위한 히트펌프 보급(69억원) 등 투자를 강화하였다. 특히 태양광 설비 보급을 위해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총 2,15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다.

[태양광 관련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기후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주택지원	25,665	27,865	2,200	8.6
		건물지원	45,867	81,047	35,180	76.7
		가정형 태양광	-	25,000	25,000	순증
		소계	71,532	133,912	62,380	87.2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용자)	태양광 시설용자	476,000	610,469	134,469	28.2
		태양광 이차보전	-	6,000	6,000	순증
		소계	476,000	616,469	140,469	29.5
교육부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시설확충	30,764	31,763	999	3.2
	국립대학 시설확충	정책사업 (신재생 에너지설비)	-	12,000	12,000	순증
합 계			578,296	794,144	215,848	37.3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현재계획액을 기재

자료: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¹¹⁾은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저리의 사업비를 용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2026년도 당초 계획액 6,480억원 대비 2,204억 6,900만원¹²⁾이 증액된 8,684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다. 특히, 햇빛소득마를 확산

11) 코드: 전력산업기반기금 5202-304

(약 150개소 → 700개소)을 위해 직접대출과 이차보전을 병행하여 0.4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약 160억원¹³⁾이 편성되었다.

이차보전 사업은 과거 전액 불용되는 등 지속적인 실집행 부진이 있어 2024년도 예산안에서 폐지되었으며, 정책용자에 비해 은행 금리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이 크고 자금 확보의 안정성이 낮아 수요자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는 등 **집행부진 우려가 크므로 이차보전사업의 철저한 수요 검증을 통해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¹⁴⁾은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2026년도 당초 계획액 2,143억 3,200만원 대비 623억 8,000만원이 증액된 2,767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태양광 보급 지원을 위해 건물 및 주택용 설비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아파트 베란다형 소규모 태양광 보급을 신설하기 위함이다.

동 사업은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태양광에만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나,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획일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에너지원 다각화를 고려한 기금 편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국립학교 및 국립대학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총 129억 9,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¹⁵⁾ 사업에서 2026년도 본예산 307억 6,400만원 대비 9억 9,900만원이 증액된 317억 6,300만원, 국립대학 시설확충¹⁶⁾에서 2026년도 본예산 9,108억 9,800만원 대비 120억원이 증액된 9,228억 9,800만원이 편성된 것이다.

교육부 소관 태양광 설비 확충 사업은 1kW당 단가가 333만원인데, 기후에너지

12) 동 예산안에는 비태양광 용자 800억원이 포함됨

13) 정책용자 100억원, 이차보전 60억원

14) 코드: 전력산업기반기금 5202-304

15) 코드: 일반회계 1702-300의 내역사업

16)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740-300

지환경부가 수행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1kW당 단가가 150만원으로 두 소관 사업의 발전설비 용량(kW)당 단가가 2배가량 차이가 나는바, 공사 단가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각 사업별 1kW당 단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 설비 확충 사업(증액분) 산출 근거 비교]

(단위: 만원/kW, kW, 개소, 백만원)

부처	사업명	대상	단가	용량	개소	지원율	예산
교육부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초중고	333	100	3 ^{주)}	100 %	999
	국립대학 시설확충	대학			36		12,000
기후 에너지 환경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학교	150	54.2	132	40%	1,920
		일반건물			1,008		32,780
		전통시장			16		480
		단독주택	190	3	964	25%	2,200
		가정용베란다	200	0.5	100,000		25,000

주: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 제주대학교 부설고,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초

자료: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무공해차 보급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무공해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 2조 3,745억 1,300만원 대비 900억원이 증액된 2억 3,745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소상공인 등이 주로 구매하는 소형 전기화물차의 보조수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전기화물차 사업은 상반기 수요 증가를 이유로 9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부진하였고,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에서도 대규모 감액된 이력이 있는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신산업 전환 사업

①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¹⁷⁾은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투자 시장 위축 우려에 대응하고, 특히 ‘청년콘텐츠’ 분야를 신규로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이 편성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인 ‘청년콘텐츠 기업 또는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4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데, 정책 취지를 보다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소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는 주목적 투자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주목적 투자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¹⁸⁾은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술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용자를 공급하는 것으로, 202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안에 5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6년 본예산을 통해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현재 용자 신청·접수 단계에 있으며 실제 대출 시행 건은 전무한 상황**으로, 추가 재원 투입 시 집행가능성이 낮을 우려가 있어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타 재정용자사업이 개별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③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 (산업통상부)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¹⁹⁾은 제조업 현장의 명장이나 숙련인력의 경험과 직관, 판단 등이 녹아있는 제조 암묵지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17) 코드: 일반회계 1231-322

18)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1633-314

19) 코드: 일반회계 3541-450

AI 솔루션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8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단년도에 50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나, 암묵지의 특성상 데이터화하기 어렵고, AI 개발 후 적용 과정에서 시행착오 등이 예상되므로, **2026년 시범사업 후 다년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구축되는 제조 데이터나 AI 솔루션이 향후 다양한 제조업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업종별·공정별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④ 상생형 제조AX선도모델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형 제조AX선도모델 사업²⁰⁾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공정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제조공정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기업 맞춤형 AX 전환을 지원하고, 대기업이 기술 도입 전 과정에 참여하여 공정 최적화, 첨단 AI 기술 적용, 재직자 교육 및 컨설팅 등을 병행하는 상생형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75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대중소상생형의 일환으로 추진되나,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분담비율 증가 및 사업 난이도 상승 등에 따른 참여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 추경안 확정 이후 사업 공고, 참여기업 선정 및 맞춤형 AI 개발 등의 **추진 일정 고려 시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공급망 안정화 사업

① 소부장공급망안정화종합지원 사업 (산업통상부)

소부장공급망안정화종합지원 사업²¹⁾의 2026년도 추경안은 석유화학산업의 원료인 나프타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예산 4,694억 5,200만원과 요소 수입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37억 4,300만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부는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 조치와 함께 석유화학기업의 대체수입 단가 차액을 보조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으나, 이

20) 코드: 일반회계 2111-303의 내내역사업

21) 코드: 일반회계 3574-306

에 그치지 않고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생산 구조가 NCC설비에 집중되어 있어 원재료 조달 리스크 대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원료 포트폴리오 및 수입선 다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소**의 경우 그간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 중동 전쟁 상황처럼 글로벌 공급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경우 수급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 (산업통상부)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²²⁾은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비축에 필요한 비축유 구입, 비축기지 건설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비축유 구입 출자액 1,554억 3,300만원과 비축유 저장 탱크 추가 설치를 위한 사전용역비 30억원이 편성되었다.

먼저, 산업통상부가 **비축유 구입 추경안** 편성 시 적용한 국제유가(96.41달러/배럴)나 환율(1,450원/달러)은 최근의 기름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석유공사의 자체재원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회 추경안 심사 시 **최근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추이, 한국석유공사의 자체재원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소요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축유 저장 탱크 추가 설치**를 위한 부지선정 등 사전타당성 용역비의 경우 사업기간, 부지 조성 규모, 재원 분담 방안, 추진 절차 등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석유 비축계획과 연계하여 시설 구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③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사업 (산업통상부)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사업²³⁾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유통 전 단계를 감시하는 데 소요되는

22)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432-301

23)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432-302

제반 비용과 신고포상금, 시스템 운영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중동 전쟁 이후 석유 및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에 따른 특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223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추경안 증액 내역 중 **석유통합관계센터 구축** 사업은 분산되어 있는 석유시장 정보를 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나, **통합시스템이 2026년 말에 구축 완료될 예정으로** 즉시 활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시스템 활용도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추경을 통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석유 시장 불안에 따른 품질·유통검사 수행이 필요한 **검사차량 20대를 추가로 구매**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1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차량 개조 등에 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특별점검 기간 및 이후 검사차량 활용가능성,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구입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 지방재정 보강 등 편성 현황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과 함께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대외 충격은 재정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단위의 선제적이고 탄력적인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을 증액 경정하고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률분을 추가 교부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단체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민생안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따른 소요를 감안하여 해당 통합 지방정부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채 인수 규모를 확대하였다.

이번 추경안의 지방재정 보강을 위한 사업은 전체 추경안 26.2조원 규모 중 36.3%(9.5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66조 2,373억원(4조 5,389억원 증액),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조 242억원(701억원 증액), 교육부 보통교부금 73조 5,820억원(4조 5,772억원 증액), 국가시책특별교부금 1조 3,528억원(910억원 증액), 재정경제부 지방채인수(융자) 사업 2,000억원(1,000억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의 지방재정 보강 등 주요 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증 감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B-A)	(B-A) /A
지방재정 보강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61,698,352	66,237,321	4,538,969	7.4
		지역현안특별교부세	763,247	819,399	56,152	7.4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90,811	204,849	14,038	7.4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954,058	1,024,248	70,190	7.4
	교육부	보통교부금	69,004,889	73,582,087	4,577,198	6.6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630,914	676,421	45,507	7.2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10,304	225,473	15,169	7.2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261,828	1,352,842	91,014	7.2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60,813	601,263	40,450	7.2
	재정경제부	지방채 인수(융자)	100,000	200,000	100,000	100.0

주: 내역사업명이 기재된 경우의 예산액은 내역사업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1) 지방재정 보강 사업

정부는 이번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9.4조원)와 지방채 인수 확대(0.1조원) 추진을 통해 지방재정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 민감 세목을 중심으로 지방세수의 하방 압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는 여전히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자치단체의 경우 증액된 지방교부세의 상당 부분을 이번 추가경정예산 국고보조사업에 매칭해야하는 한편,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자체사업 소요도 증가하고 있어 재정 운용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세수 감소와 재정 수요 확대가 동반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추가 발행 유인은 높아지고 있으나 추경안에 반영된 지방채

인수 증액분 1,000억원은 통합특별시 지원 목적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효과는 제한적이다. 본예산 인수분 1,000억원 역시 재정 여건이 양호한 광역단체 중심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있어,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지방채 우선 인수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경우 이미 상당한 여유재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로 여유재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일몰계획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체계 개편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유재원의 효율적·체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지방교부세(보통·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¹⁾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총 62조 481억 4,700만원이나 이번 추경안에는 4조 6,793억 4,900만원이 증액된 68조 2,858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민생안정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입의 하방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4.8조원, 대응지방비 1.3조원)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업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지방재정부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본예산에 편성된 특별교부세 중 수시배정으로 지정된 교부세의 조기 집행을 도모하는 한편, 세입경정에 따라 증가된 특별교부세의 집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심의·배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적시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일반회계 1631-300, 1632-300, 1632-301, 1644-300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²⁾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이다. 2026년도 본예산은 71조 6,687억 4,800만원이나, 내국세 세입 증액 경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조 7,693억 3,800만원이 증액된 76조 4,380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여유 재원이 상당 규모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재원 체계 개편 논의 및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일몰 등을 고려하여 정부 예산 집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③ 지방채 인수(융자)(재정경제부)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³⁾은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상응하는 금액을 재정경제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인수(융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1,000억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1,000억원이 증액된 2,000억원이 편성되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증액 규모, 대응지방비 소요 현황, 지방세 세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방채 인수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수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광역자치단체보다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인수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코드: 일반회계 1500(프로그램)

3)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1031-100

제2장

위원회별 분석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재정경제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411조 6,65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조 648억원 증액되었다. 또한 총지출은 34조 5,09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66억원이 증액되었다.¹⁾

기획예산처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11조 4,807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다. 총지출은 15조 1,90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조원 (49.1%) 증액되었다.

국세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3,110억 2,5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2조 3,111억 5,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133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다.

조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3,976억 4,0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2,987억 7,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국가데이터처, 관세청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총수입 ·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재정경제부	총수입	-	391,601,133	411,665,934	20,064,801	5.1
	총지출	-	34,303,009	34,509,609	206,600	0.6
기획예산처	총수입	-	11,480,745	11,480,745	-	-
	총지출	-	10,190,762	15,190,762	5,000,000	49.1
국세청	총수입	296,420	311,025	311,025	-	-
	총지출	2,004,000	2,097,794	2,311,158	213,364	10.2
조달청	총수입	366,385	397,640	397,640	-	-
	총지출	245,168	296,135	298,774	2,639	0.9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1. 「정부조직법」 개정(25.10.1.)으로 2026년 1월 2일 기획재정부의 예산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각각 분리·이체됨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의 2025년 예산을 별도 계상하지 않음
자료: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조달청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은 총 13개이며, 이 중에서 신규로 편성된 과목은 없다.

주요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① 세수실적 등을 반영하여 법인세 14조 7,741억원, 소득세 4조 7,971억원, 증권거래세 5조 1,868억원을 증액 경정하고, 개별소비세 5,34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3조 3,658억원, 교육세 7,949억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②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2조 7,613억원 감액하였고, ③ 지방채 인수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을 15억원 증액 편성하였다.

[재정경제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과목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일반회계	소득세(원천분)	85,349,376	88,966,007	93,763,101	4,797,094	5.4
	법인세	83,567,118	86,547,444	101,321,538	14,774,094	17.1
	개별소비세	8,747,915	9,434,414	8,900,408	△534,006	△5.7
	증권거래세	3,845,400	5,375,303	10,562,085	5,186,782	96.5
	교통·에너지·환경세	14,001,191	16,412,159	13,046,366	△3,365,793	△20.5
	교육세	5,776,493	6,443,294	5,648,424	△794,870	△12.3
	기금예수금	114,948,803	108,304,108	105,542,760	△2,761,348	△2.5
	특별회계전입금	240,295	114,274	111,635	△2,639	△2.3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159,789	177,972	179,472	1,500	0.8
	기금예수금	22,794,629	21,938,868	21,559,607	△379,261	△1.7
	기금예탁이자수입	6,958,697	6,834,460	6,846,827	12,367	0.2
	일반회계예탁이자수입	29,403,558	25,558,448	25,517,028	△41,420	△0.2
	특별회계예탁이자수입	320,783	399,645	404,238	4,593	1.1
합계		376,114,047	376,506,396	393,403,489	16,897,093	4.5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5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없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보강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에 1,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② 국고채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을 1,066억원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보전거래로서 ③ 국고채 원금상환 사업에서 1조 275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재정경제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 (현계획액)(A)	추경안(B)	(B-A)	(B-A)/A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인수 (융자)	1,210,000	100,000	200,000	100,000	100.0
	국고채이자상환 (개인투자용국채 포함)	30,409,038	34,315,479	34,422,079	106,600	0.3
	기타기금 예탁	44,763,785	39,810,441	40,634,919	824,478	2.1
	특별회계 예탁	3,310,377	2,912,541	3,218,748	306,207	10.5
	국고채 원금상환 (개인투자용국채 포함)	117,535,053	116,217,993	117,245,524	1,027,531	0.9
합 계		197,468,253	193,356,454	195,721,270	2,364,816	1.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현계획액을 기재

자료: 재정경제부

한편, 재정경제부 소관 세출사업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 편성된 사업은 3개(세부사업 단위)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예탁 사업이 2조 7,613억 4,8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이에 따라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사업에서 414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재정경제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 (현계획액)(A)	추경안(B)	(B-A)	(B-A)/A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예수이자상환	29,403,558	25,558,448	25,517,028	△41,420	△0.2
공공자금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	915,666	750,900	745,211	△5,689	△0.8
관리기금	일반회계 예탁	114,948,803	108,304,108	105,542,760	△2,761,348	△2.5
합계		145,268,027	143,129,534	135,308,257	△7,821,277	△5.5

주: 총계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2)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소관 세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은 총 2개이며, 이 중에서 신규로 편성된 과목은 없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① 일반회계 전입금이 4조 8,488억원이 증액 경정되었고, ② 특별회계 전입금이 4조 7,099억원 감액 편성되었다.

[기획예산처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과목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지역균형발전	일반회계전입금	3,346,210	2,576,890	7,425,663	4,848,773	188.2
특별회계	특별회계전입금	6,224,587	7,038,984	2,329,085	△4,709,899	△66.9
합계		9,570,797	9,615,874	9,754,748	138,874	1.4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①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를 5조원 증액 편성하고, ② 일반회계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전출금이 673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기획예산처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 (현재계획액)(A)	추경안(B)	(B-A)	(B-A)/A
일반회계	예비비	3,800,000	4,000,000	9,000,000	5,000,000	125.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전출	-	4,878,032	4,945,348	67,316	1.4
합 계		3,800,000	8,878,032	13,945,348	5,067,316	57.1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한편, 기획예산처 소관 세출사업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 편성된 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① 일반회계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금을 4조 7,099억원 감액 편성하고, ② 일반회계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전출금(교통에너지환경세분)이 673억원 감액 편성되었다.

[기획예산처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 (현계획액)(A)	추경안(B)	(B-A)	(B-A)/A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전출 (교통에너지환경세분)	634,194	328,243	260,927	△67,316	△20.5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6,224,587	7,038,984	2,329,085	△4,709,899	△66.9
합계		6,858,781	7,367,227	2,590,012	△4,777,215	△69.7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3) 국세청

국세청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개 세부사업이며 신규사업은 없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2,500명 추가 채용을 위하여 634억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②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앞서 체납자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실태확인원 7,000명을 채용하기 위해 1,499억 6,200만원 신규 편성되었다.

[국세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일반회계	압류재산공매	4,254	14,868	228,232	213,364	1,435.1
합계		4,254	14,868	228,232	213,364	1,435.1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세청

(4) 조달청

조달청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개 세부사업이며 신규사업은 없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공정하고 안전한 공공공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입찰자격 사전조사를 실시하고자 26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조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조달 특별회계	공사 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3,007	3,359	5,998	2,639	78.6
합계		3,007	3,359	5,998	2,639	78.6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조달청

가. 조달금리 추계의 적정성 및 가용 자원 미활용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 우려(재정경제부)

(1) 현 황

국고채 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사업¹⁾은 공자기금의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34조 3,155억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1,066억원이 증액된 34조 4,221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최근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올해 신규 발행분 국고채의 이자상환을 위한 증액 편성이다.

국고채 원금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사업²⁾은 공자기금의 국고채 발행에 따른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116조 2,179억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1조 275억원이 증액된 117조 2,455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조기상환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회계 예탁 사업³⁾은 공자기금이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탁하는 금액, 즉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액이다.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108조 3,041억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2조 7,613억원이 감액된 105조 5,428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초과세수의 일부를 활용하여 올해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 규모를 소폭 축소하는 것이다.

즉, 위 3개 사업은 국고채 조달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상환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에 대응하고,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발행 국채 일부를 조기에 상환하며, 적자국채 발행을 축소하기 위해 올해 계획한 일반회계 예탁 규모를 감액한다는 점에서 상호 연결된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1071-780

2)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9862-981

3)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8520-851

[국고채 이자·원금상환, 일반회계 예탁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수정	2026		증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국고채 이자상환 (개인투자용국채 포함)	30,469,038	34,315,479	34,422,079	106,600	0.3
국고채 원금상환 (개인투자용국채 포함)	117,535,053	116,217,993	117,245,524	1,027,531	0.9
일반회계 예탁	148,004,091	108,304,108	105,542,760	△2,761,348	△2.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분석의견

국고채 이자·원금상환, 일반회계 예탁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번 추경안은 단기물 예상 발행액의 평균 조달금리를 3.4%로 상향하였으나, 최근 채권시장 추이, 중동 사태 장기화, 추경에 따른 재정 확장 및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등 추가 상승 요인을 감안할 때 동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26년도 본예산은 기존 국고채 잔액에 대한 이자 외에 2026년도 신규발행 국고채에 평균 조달금리 3.0%를 적용하여 34조 3,155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상승추세를 반영하여 정부는 추경안을 통해 단기물(2·3·5·10년물)의 조달금리를 3.0%에서 3.4%로 상향 조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 1,066억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2·3·5·10년물 등 단기물을 중심으로 조달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자지급기간은 단기물의 통합발행분 중 연내 이자지급 시기(6개월 주기)가 도래하는 3·6월 통합발행분에 대한 이자지급 소요(6개월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근거를 제시하였다.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의 추경안 세부 산출 근거]

○ 국고채 실제 발행금리 인상 등을 감안하여 이자상환금액(예상 부족분) 증액
- 국고채 금리 상승의 단기물(2·3·5·10년물) 중심 단기적 영향 가정
- 산출근거: (단기물 예상 발행액(106.6조원) × (단기물 가중평균금리(3.4%) - 편성금리(3.0%))
× 이자지급기간(3/12개월)) = 1,066억원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 과정에서 정부는 조달금리 인상의 영향을 단기물에 한정하여 추가 이자부담을 산출하였으나, 3월 실제 발행실적 및 최근 금리 추이에 따르면 장기물 금리 역시 본예산 편성금리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어 실제 이자부담 증가분이 추정안 편성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25년 말부터 국고채 평균조달금리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출 시점('25.9월)의 평균 조달금리는 2.61%에 불과하였으나, '26.2월에는 3.40%까지 상승하여 해당 기간 상승폭은 0.81%p, 상승률은 31.0%를 기록하였다.

[최근 월별 국고채 발행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5년					2026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발행잔액	1154.3	1152.6	1166.8	1178.9	1159.4	1176.8	1198.7	미정
발행액	21.0	21.5	17.7	15.6	5.4	17.9	22.4	21.2
평균 조달금리	2.55	2.61	2.68	3.01	3.15	3.18	3.40	3.49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3월호」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연간 기준으로는 최근 10년 사이 국고채 평균조달금리가 3.57%로 정점을 찍었던 2023년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2026년 3월 말 현재 국고채 유통금리는 5년물과 10년물이 3.8~3.9% 수준에 달하는 상황이고, 2026년 연간 국고채 발행한도액은 225.7조원으로 발행량도 역대 최대치에 이르는 만큼, 향후 정부의 국고채 조달 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2016~2025년 연도별 국고채 발행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국고채 잔액	516.9	546.7	567.0	611.5	726.8
국고채 발행	101.1	100.8	97.4	101.7	174.5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1.62	2.10	2.43	1.68	1.38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국고채 잔액	843.7	937.5	998.0	1047.1	1159.4
국고채 발행	180.5	168.6	165.7	157.7	226.2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1.19	3.17	3.57	3.22	2.66

주: 잔액은 연말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3월 국고채 발행 실적에 따르면, 2026년 3월 중 발행된 국고채의 실제 평균 조달금리(가중평균)는 이미 정부의 추경안 전망치(3.4%)를 상회하는 약 3.50%를 기록하였다. 특히 핵심 지표인 5년물과 10년물의 낙찰금리는 각각 3.735%, 3.695%에 달하였으며, 20년물은 3.840%까지 치솟았다.

[2026년 3월 국고채 발행 실적]

(단위: 억원)

구분	경쟁입찰			비경쟁 인수(Ⅰ) (B)	비경쟁 인수(Ⅱ) (C)	스트립 비경쟁 인수(Ⅲ) (D)	모집 방식 비경쟁 인수(Ⅳ) (E)	국고채 교환 (F)	합계 (A+B+ C+D+E+ F)
	입찰일	발행 계획	발행규모 (가평낙찰 금리,%) (A)						
명목2년물 (국고03000-2803)	'26.3.3.	32,000	32,000 (3.030)	-	-	-	-	-	32,000
명목3년물 (국고02750-2812)	'26.3.9.	33,000	33,000 (3.466)	-	8,050	2,840	-	-	43,890
명목5년물 (국고03375-3103)	'26.3.23.	31,000	31,000 (3.735)	-	-*	-*	-	-	31,000
명목10년물 (국고03250-3512)	'26.3.16.	30,000	30,000 (3.695)	-	4,760	1,210	-	1,000	36,970
명목20년물 (국고02750-4509)	'26.3.24.	6,000	6,000 (3.840)	-	-*	-*	-	-	6,000
명목30년물 (국고03500-5603)	'26.3.4.	50,000	49,940 (3.520)	-	210	-	-	4,000	54,150
명목50년물 (국고02750-7409)	'26.3.13.	8,000	8,000 (3.485)	-	-	-	-	-	8,000
합계		190,000	189,940	-	13,020	4,050	-	5,000	212,010

주: 5년물 비경쟁인수(Ⅱ,Ⅲ) 및 20년물 비경쟁인수(Ⅱ,Ⅲ) 금액은 보고서 발간 시점에서는 비공개

자료: 재정경제부

현 시점에서 국고채 조달금리에는 다음과 같은 상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먼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다. 최근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이 3.87%까지 상승하여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지속되는 한 에너지 가격 상승 → 비용 인플레이션 → 채권 금리 상승 경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 추정안은 '국채발행 없는 추정'을 표방하고 있으나,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향후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다소 불확실해진 측면이 있고,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1,510원을 넘는 등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경제여건이 국고채 금리의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고채 조달금리의 상방요인과 하방요인]

상방요인(금리 인상 압력)	하방요인(금리 인하 압력)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추경 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 미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원화 약세 지속	WGBI 지수 편입 초과세수를 통한 국채 발행 축소 가능성 경기 둔화 우려 중동 사태의 신속한 해소
중립요인: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조	

자료: 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물론, WGBI 편입에 따른 금리 인하 요인도 존재한다. 한국 국채는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세계국채지수(WGBI)에 단계적으로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 규모는 600억달러(약 90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⁴⁾ 재정경제부는 WGBI 편입에 따라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금리 하락으로 연간 최대 1.1조원의 이자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자체 분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향후 2~3년간 반도체 업종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치가 우세한 만큼, 이로 인해 확보되는 추가적인 세수는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정부가 해당 재원을 활용하여

4) WGBI에서 한국의 비중은 4월 0.26%에서 시작하여 11월 2.08%까지 계단식으로 증가하며, 매월 약 9조원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다.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거나 기발행 국채를 조기상환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경우, 국고채 조달금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동 사태가 조기에 종료될 경우,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유가가 안정화되어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및 국고채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WGBI 편입은 8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고, 반도체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어 실제 법인세수로 확보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올해 국고채 조달금리의 안정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참고로, 정부는 3월 26일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국채시장 안정화를 위한 5조원⁵⁾ 규모의 긴급 바이백 실시를 발표하였다.⁶⁾ 통상 차환 목적의 국채 조기상환은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나⁷⁾, 최근 국고채 금리 급등 등 채권시장 불안정성이 증대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5조 원의 물량을 회수함으로써 채권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국채금리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조치는 채권시장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겠으나, 제1차 국고채 매입 입찰결과(3.27)를 살펴보면, 잔존만기가 약 4년 9개월이 남은 10년물의 경우 가중평균낙찰금리가 3.85%로 낙찰되는 등 채권시장의 현재 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5조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은 여유재원을 활용한 ‘순상환’이 아닌 ‘차환발행’ 형태이므로, 국가채무 총량을 줄이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기상환에 따른 신규 국고채 발행 소요가 이연된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국채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5조원의 물량을 훨씬 높은 비용으로 새롭게 조달해야 하는 고금리 차환 리스크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국고채 이자상환 비용의 구조적인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⁸⁾

5) 금번 긴급 바이백은 3.27일(2.5조원)과 4.1일(2.5조원) 양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6) 이외에도,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채 순상환 및 「WGBI 자금 유입 상시 점검반」 가동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7)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고채 매입은 1차례(2022.6)를 제외하면 모두 하반기에 이루어졌다.

8) 다만, 연내 세수 여건이 기대치를 상회한다면 적자보전용 국채 등 국고채 발행 규모를 계획 대비 축소함으로써 하반기에 추가 국채발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제1차 국고채 매입 입찰결과(3.27)]

1. 입찰개요

입찰일시	대금지급일	대 상 종 목	입찰금액
'26.3.27.(금) 10:40~11:00	'26.3.31.(화)	■ 27년 만기 2종목, 29년 만기 1종목, 30년 만기 1종목, 33년 만기 2종목, 34년 만기 1종목	2.5조원

2. 입찰결과

【낙찰결과】 낙찰금액 : 25,000억원

(단위: 억원, %)

종 목	낙찰금액	부분낙찰률	최저 낙찰금리	최고 낙찰금리	가중평균 낙찰금리
국고02250-2709-02	11,310	30.906	3.260	3.260	3.260
국고02875-2712-03	3,620	100.000	3.390	3.390	3.390
국고03250-2903-05	2,770	100.000	3.620	3.620	3.620
국고01500-3012-10	2,620	100.000	3.850	3.850	3.850
국고03250-3306-10	3,130	100.000	3.890	3.890	3.890
국고03750-3312-20	1,450	100.000	3.915	3.915	3.915
국고03000-3412-10	100	15.385	3.910	3.910	3.910
합 계	25,000				

주: 1. 종목명으로 만기와 표면금리를 확인 가능

(예: 국고02250-2709-02는 표면금리 2.25%, 만기가 2027년 9월인 국고채 2년물)

2. 조기상환의 낙찰금리는 경쟁입찰에서와 같이 차등가격낙찰방식에 의해 결정

자료: 재정경제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결론적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단기물의 평균 조달금리를 3.4%로 상향 조정한 것은 최근의 금리 상승 추세를 일부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이나, 여전히 과소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WGBI 편입이나 세수 증대와 같은 금리 하방 요인들은 그 효과가 점진적이거나 시차가 존재하는 반면, 중동 사태 장기화, 글로벌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 등 금리 상방 압력은 당면한 위협으로 작용하며 최근 채권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3.4%의 단기물 평균조달금리는 현시점의 시장금리 수준(3.8~3.9%) 및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실제 조달금리가 이를 상회하여 추가적인 이자상환 재원이 필요해질 가능성에 대비한 보수적인 금리 책정이 필요하다.

둘째, 3.4조원 규모의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을 적자성 국채 발행 축소에 적극 활용할 경우, 국고채 이자상환 부담을 추가로 절감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고채 이자상환은 발행금리와 발행규모에 따라 소요가 확정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 사업으로서, 본예산 부족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나 추경 편성을 통한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망치에 비해 조달금리가 빠르게 상승하여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통한 관련 예산 증액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규모]

(단위: 조원)

구분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추경	2026	
					본예산	추경안
공자기금 → 일반회계 예탁	86.2	55.4	96.6	114.9	108.3	105.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만, 코로나19 이후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 규모, 즉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액이 2년(2025~2026) 연속 100조 원을 초과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고채 이자상환을 위한 지출 규모도 매년 확대되며, 전체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국고채 이자상환 비용 및 의무지출 대비 비중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국고채 이자상환	18.2	20.1	24.0	27.7	30.3	34.3
의무지출 규모	266.1	303.2	340.3	347.4	365.0	387.7
의무지출 대비 이자상환 비중(%)	6.84	6.63	7.05	7.97	8.30	8.85

주: 1. 국고채 이자상환 비용은 결산 기준(2026년은 본예산 기준)

2. 의무지출 규모는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번 추경안은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성되었으나, 올해 기편성된 국채 물량은 현재의 높은 금리 환경 속에서 발행되어야 한다. 중동 사태 장기화,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 신호 등으로 국고채 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자상환 소요의 증가는 재정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정책적 재량 지출의 여지를 축소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국고채 원금상환 사업에서 약 1조원을 증액하여 기발행 국채 일부를 조기상환하고,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 규모를 당초 108.3조원에서 105.5조 원으로 약 2.8조 원 축소하였는바, 이는 초과세수로 확보된 재원의 일부를 재정건전성 확보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6조⁹⁾는 정부로 하여금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8항¹⁰⁾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와 그 관리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취지를 고려할 때, 본예산 대비 3.4조원 초과이입된 한국은행 잉여금¹¹⁾을 활용하여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더욱 과감하게 축소할 수 있었음에도, 조달비용 최소화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용 방식 활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있다.

9) 「국가재정법」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은행 잉여금에 대해서는 “다. 한국은행 잉여금의 추경안 미편성에 따른 문제점”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하였다.

[2020~2026년 한국은행 잉여금 수납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당기순이익 (A)	법정적립금 (B)	임의적립금 (C)	정부납입금 (D=A-B-C)	본예산 (E)	증감 (F=D-E)
2020	53,131	15,939	339	36,853	29,742	7,111
2021	73,659	22,098	341	51,220	43,061	8,159
2022	78,638	23,592	266	54,781	40,315	14,466
2023	25,452	7,636	270	17,546	12,725	4,821
2024	13,622	4,087	315	9,221	16,300	△7,079
2025	78,189	23,457	241	54,491	42,000	12,491
2026	153,275	45,982	242	107,050	72,691	34,359

자료: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총 19회의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2017년을 제외하면 세입증액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채 상환도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2022년 제2회 추경안에서는 국채 상환 규모가 9조원에 달했다.¹²⁾

[세입증액경정이 포함된 추경안의 국채 상환 규모]

(단위: 조원)

구분	추경 규모	세입증액경정 규모	국채 상환 규모
2016년	11.0	9.8	1.2
2017년	11.2	8.8	-
2021년 제2회	33.0	31.5	2.0
2022년 제2회	59.4	44.3	9.0
2026년	26.2	25.2	1.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따라서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가용 재원을 활용한 국채 조기 상환 및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액 축소를 통한 이자부담 완화, 그리고 이에 따른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2)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7.5조원으로 축소되었다.

나. 지방채 인수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재정경제부)

(1) 현 황

지방채 인수(용자) 사업¹⁾은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상응하는 금액을 재정경제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인수(용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1,000억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1,000억원이 증액된 2,000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지방채 인수 수요조사 결과,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서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지방채 인수(용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수정	2026		증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지방채 인수(용자)	1,210,000	100,000	200,000	100,000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2)에 근거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³⁾에 따라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하는 것이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1031-100

2)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②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4.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공자기금을 통해 지방채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분기의 공자기금 예탁금리가 적용되며, 상환 조건은 통상 5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이다. 공자기금 예탁금리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자체가 시장에서 직접 발행⁴⁾하는 경우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이자 부담 절감 효과가 있다.

(2) 분석의견

4.7조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 증액 규모 및 추경 편성으로 인한 대응지방비 규모 증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채 인수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당초 2026년 지방채 인수 사업의 본예산은 1,000억원이었으나,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3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행정통합 이행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경을 통해 1,000억원을 추가로 증액하려는 것이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지방채 인수 사업의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00억원을 편성하여 79억원과 100억원을 집행하였다. 2024년에는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이 원활히 교부되지 못하면서 이를 보강하기 위해 본예산 규모가 2조 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집행률은 99.9%를 기록하였다.

2025년에는 당초 1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제1회 추경에서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2,000억원, 제2회 추경에서 세입감액경정에 따른 대응지방비 확보 차원에서 1조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조 2,10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이 중 1조 712억원이 집행되었다.

4) 지방채 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7월 다음연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발행 한도액과 발행계획안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확정·통보(∼10.31.)한다. 회계연도 개시 후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한도액 초과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 이상인 지자체는 장관 승인이 각각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지방채 인수 사업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당초	수정(A)					
2022	10,000	10,000	10,000	7,900	79.0	79.0	2,100
2023	10,000	10,000	10,000	10,000	100.0	100.0	-
2024	2,600,000	2,600,000	2,600,000	2,596,204	99.9	99.9	3,796
2025	10,000	1,210,000	1,210,000	1,071,164	88.5	88.5	138,836
2026	100,000	200,000	-	-	-	-	-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번 추경안에서는 대규모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내국세 연동(19.24%) 구조에 따라 4.7조원의 지방교부세가 증액 편성되어 지자체로 이전될 예정이다. 실제로 2022년의 경우 2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대응지방비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제2회 추경에서 약 12조원의 지방교부세가 증액되면서 연간 지방채 인수 집행액이 79억 원에 그친 바 있다. 이처럼 대규모 지방이전재원이 확충될 경우 지자체의 가용재원이 늘어나 지방채 발행 필요성이 그만큼 축소될 수 있다.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동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재원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보통교부세		내국세의 19.24%의 97%	61,698,352	66,237,321	4,538,969
특별 교부세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의 40%	763,247	819,399	56,152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의 50%	954,058	1,024,248	70,190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의 10%	190,811	204,849	14,038
합계			63,606,468	68,285,817	4,679,349

주: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의 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올해 지방세 세입여건은 내국세 호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을 포함하여 이번 추경안에 따른 추가적인 대응지방비 규모가 1.7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채 발행 수요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과거 사례에서도 대응지방비 소요 확대가 지방채 인수 증액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어, 이번 추경안 집행 과정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1,000억원의 증액과는 별개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증액 규모, 대응지방비 소요 현황, 지방세 세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방채 인수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수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광역자치단체보다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인수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의 추경안 미편성에 따른 문제점(기획예산처)

(1) 현 황

한국은행 잉여금¹⁾은 「한국은행법」 제99조²⁾에 따라 한국은행의 직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중 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서는 한은 잉여금의 변동은 없다.

[한국은행 잉여금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제2회 추경	2026		증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한국은행 잉여금	5,449,101	7,269,092	7,269,092	-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은행법」 제99조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당기순이익의 30%를 ①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②남은 금액 중 일부를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이후 ③잔액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5회계연도 당기순이익 15조 3,275억원 중 4조 5,982억원은 법정적립금으로, 242억원은 임의적립금으로 각각 적립하였다. 임의적립금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³⁾ 목적 232억 원과,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목적 1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립금 적립 후 나머지 10조 7,050억 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였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54-548

2) 「한국은행법」

제99조(이익금 처분) ①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당초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한은 잉여금을 6조 4,191억원 편성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국은행의 2025년도 당기순이익 전망치를 상향함에 따라 예산안 대비 8,500억원을 증액한 7조 2,691억원이 본예산으로 편성되었다.

[한국은행 잉여금의 2025년 및 2026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금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	본예산	4,200,003	■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전망 × 7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출연예상액 = 6,034,500백만원 × 0.7 - 24,100백만원 = 4,200,003백만원
	추경	5,449,101	■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 7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출연액 = 7,818,900백만원 × 0.7 - 24,100백만원 = 5,449,101백만원
2026 본예산		7,269,092	■ 한국은행 '25년도 상반기 당기순이익 × 2(연간기준 조정) × 70% = 4,585,066백만원 × 2 × 0.7 = 6,419,092백만원 ■ 국회 예산 심의 증액 850,000백만원

자료: 재정경제부

(2) 분석의견

이번 추경안에 한국은행 잉여금 세입증액경정을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은 잉여금의 활용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 납입분 3조 4,359억원은 추경안 편성 시점에 이미 국고에 납입이 완료된 확정 세입으로서,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세수 재추계 전망치보다 추경 재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세입경정 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잉여금은 외화자산 운용수익, 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 환율 등의 영향을 받아 연도별 변동폭이 크며, 그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다·과소 추계가 반복되어 왔다.⁴⁾ 이에 2026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도 국회가 당기순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여 한은 잉여금 수입을 증액 의결한 바 있다.

4) 실제로 한국은행 잉여금은 2020~2023년 4년 연속 본예산 대비 초과 수납되었으며, 2022년에는 본예산 대비 1조 4,466억원 초과 수납되었고, 2025년에도 1조 2,491억원의 초과 수납액이 발생하여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 바 있다.

[2020~2026년 한국은행 잉여금 수납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당기순이익 (A)	법정적립금 (B)	임의적립금 (C)	정부납입금 (D=A-B-C)	본예산 (E)	증감 (F=D-E)
2020	53,131	15,939	339	36,853	29,742	7,111
2021	73,659	22,098	341	51,220	43,061	8,159
2022	78,638	23,592	266	54,781	40,315	14,466
2023	25,452	7,636	270	17,546	12,725	4,821
2024	13,622	4,087	315	9,221	16,300	△7,079
2025	78,189	23,457	241	54,491	42,000	12,491
2026	153,275	45,982	242	107,050	72,691	34,359

자료: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수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실적(15.3조원)이 전망치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도 10조 7,050억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3조 4,359억원 증가하였다. 동 금액은 「한국은행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3월 말 기준 이미 정부에 납입이 완료되어 국고에 수납된 상태로, 세수 전망이나 추계에 의존하는 여타 세입과 달리 실현이 확정된 자원이다.

[한국은행의 연도별 손익]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수납)	2023년 (2024년 수납)	2024년 (2025년 수납)	2025년 (2026년 수납)
총수익(A)		209,946	194,469	265,179	335,194
- 영업수익		209,443	193,260	264,741	334,413
	(유가증권이자)	(75,578)	(89,812)	(115,933)	(126,449)
	(유가증권매매익)	(67,356)	(47,509)	(83,172)	(95,051)
	(외환매매익)	(23,069)	(9,655)	(11,654)	(63,194)
- 영업외수익		503	1,209	439	782
총비용(B)		176,982	175,829	161,208	127,544
- 영업비용		176,899	175,553	161,150	127,324
	(통화안정증권이자)	(19,200)	(36,848)	(40,330)	(32,512)
	(유가증권매매손)	(97,307)	(90,883)	(82,626)	(61,138)
- 영업외비용		83	276	58	221
세전이익(C=A-B)		32,964	18,640	103,972	207,650
법인세 등(D)		7,512	5,018	25,782	54,375
당기순이익(E=C-D)		25,452	13,622	78,189	153,275

자료: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목의 상반기 초과 세수 실적과 세입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약 25조 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 납입분 3.4조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약 1.2조원의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 납입분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수납이 완료된 3.4조 원 규모의 확정 재원을 세입경정에 반영하지 않은 점은 재정 투명성 및 재원 활용의 일관성 측면에서 미편성 근거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3월에 이루어진 세수 재추계는 전망치에 불과하여 하반기 경기 추세 및 유류세 인하 규모와 기간에 따라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한국은행 잉여금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납부가 완료된 확정 세입이다. 따라서 추경안 재원의 확실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는 한국은행 잉여금이 보다 적합한 재원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 납입분을 세입경정에 포함시킬 경우, 동 금액만큼 불확실성이 높은 세수 재추계 규모를 축소하거나 적자국채 순발행 규모를 추가로 줄이는 방향으로 재원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활용 실익이 크다. 특히 중동 사태 장기화 등으로 하반기 세수 여건이 악화될 경우, 추계에 기반한 세입 경정분이 실현되지 않아 재정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미 확정된 한국은행 잉여금을 선제적으로 세입경정에 반영함으로써 추경 재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NXC 국세물납주식매각대 등 세외수입 역시 징수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한은 잉여금 초과수납분을 미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세수 결손을 우려하는 경우에도, 이미 확정된 한은 잉여금 초과수납분을 세입에 포함한 다음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은 세수 재추계 규모를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용 방향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NXC 물납주식매각대는 징수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재원인 반면, 한은 잉여금 초과수납분은 이미 국고 수납이 완료된 확정 재원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확정적으로 초과 납입된 세입을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제17조 예산총계주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17조제1항⁵⁾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도록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총계주의의 취지는 정부가 징수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예산서에 담아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가 재정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있다.

물론 한국은행 잉여금은 본예산에 이미 세입 과목이 편성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추경안의 국회 제출 시점에 이미 3.4조원의 초과 수입이 확정·납입되었음에도 이를 세입경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국회로 하여금 실제 재정 상태와 괴리된 세입 규모를 전제로 추경안을 심의하게 한다는 점에서 예산총계주의의 핵심인 재정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훼손할 소지가 있다. 설령 정부가 한은 잉여금을 하반기 세수 결손에 대비한 완충 재원으로 유보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그 활용 방안은 세입경정에 반영한 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이 재정통제 원칙에 부합한다.

나아가 동 금액이 세입경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2026회계연도 결산 시 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며, 해당 재원의 용도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를 통해 사후적으로 결정된다. 이는 추경안 심의 단계에서 국회가 해당 재원의 활용 방안(적자국채 발행 축소, 국채 상환, 추가 세출 편성 등)을 직접 심의·결정할 수 있었던 기회를 법정 처리 절차에 따른 사후적 결정으로 이 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참고로, 기획예산처는 추경안 편성 시 한은 잉여금의 세입경정 여부는 정부의 재량이므로 예산총계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이미 수납이 완료된 확정적 재원을 세입경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재량 범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총계주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 납입분을 세입경정에 반영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동 재원의 운용 계획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5)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라. 목적예비비 편성의 불가피성과 제도적 보완 과제(기획예산처)

(1) 현 황

예비비¹⁾는 「대한민국헌법」 제55조제2항²⁾과 「국가재정법」 제22조³⁾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계상하는 자금으로, 사용목적은 예산총칙에서 정해놓은 목적예비비와 사용목적에 대한 제한이 없는 일반예비비로 구분된다.

당초 202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8,000억원, 목적예비비 3조 2,000억원을 합하여 총 4조원이 편성되었으나,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등을 위해 목적예비비를 5조원 증액하는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예비비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편성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5 제2회 추경	2026		증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예비비	38,000	40,000	90,000	50,000	125.0
일반예비비	12,000	8,000	8,000	-	-
목적예비비	26,000	32,000	82,000	50,000	156.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3069-300

2) 「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은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현황

2026년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중동 정세 불안이 심화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였다. 브렌트유는 3월 9일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였으며(종가 기준 98.96달러), 이후 소폭 하락하여 3월 11일 기준 91.98달러 수준을 기록하였다. 다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유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석유 가격도 중동 사태 발생 이후 빠르게 상승하여, 2026년 3월 12일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903원, 경유는 1,924원으로 사태 발생 직전인 2월 27일(휘발유 1,693원, 경유 1,592원) 대비 각각 200원, 332원 이상 상승하였다. 이에 정부는 2026년 3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방안을 확정하였고, 3월 13일 산업통상부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고시)을 발령하여 해당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석유 판매가격의 상한을 정부가 고시로 지정함으로써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행의 목표는 ① 석유가격 안정, ② 시장왜곡 대응(정유사·주유소의 과도한 이익 추구 방지), ③ 석유가격 상승 비용의 경제주체 간 균등 부담으로 설정되었으며,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성 및 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폐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고가격은 고시에 명시된 산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14일 단위로 재설정된다.

[석유 최고가격 설정 방식]

$$\text{최고가격} = \text{기준가격(주간 평균)} \times \text{국제제품가 변동률} + \text{제세금}$$

- ▶ 기준가격: 중동 사태 발생 전 평시(가격 급등 전)에 형성된 정유사의 주간 단위 세전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활용하여 국내 가격 안정 효과를 제고
- ▶ 변동률: 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MOPS)의 변동 비율을 반영
- ▶ 제세금: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경유), 개별소비세(등유), 부가가치세 등
- ▶ 조정주기: 원칙적으로 매 2주 단위 재설정. 유가 반영 시차(약 2주) 및 가격안정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필요시 조정주기 변경 가능

자료: 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적용 품목은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이며, 선택적 소비재인 고급 휘발유는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정유사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으로 한정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역별 가격 차이, 경영전략 등의 차이로 일률 규제가 곤란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 지역은 별도 운송비용을 감안하여 5% 이내 범위에서 별도 최고가격 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정유사 및 석유수출입업자의 월별 수출 물량을 전년 동기 대비 100%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참고로 현재 고시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른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단위: 원/L)

구분	유종	적용기간		증감
		1차(3.13~3.26)	2차(3.27~4.9)	
일반 석유제품	보통휘발유	1,724	1,934	+210
	자동차용·선박용 경유	1,713	1,923	
	실내 등유	1,320	1,530	
도서지역 석유제품	보통휘발유	1,743	1,953	
	자동차용·선박용 경유	1,732	1,942	
	실내 등유	1,339	1,549	

주: 단, 선박용 경유는 2차 기간부터 최고가격제가 적용
 자료: 산업통상부 고시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최고가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에 발생하는 손실은 법 제23조제3항 및 동 고시 제7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며, 정유사가 원가 등을 포함한 손실액을 공인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이를 검증 및 산정하는 방식으로 사후 정산한다.

[최고가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및 사후정산 원칙]

손실보전	최고가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실제 손실액 보전
정유사 입증 책임	정유사가 자체 원가 등을 감안하여 손실액 산정 후 공인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정산 요청
분기별 정산	회계·법률·석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손실액 검증 후 정산

자료: 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주유소 판매가격이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별도로 운영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민간기관·법인·단체에게 판매가격 및 수출물량 흐름을 모니터링하도록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가격 과도 인상이나 매점매석 의심 주유소에 대해서는 공표 → 범부처 조사 → 과태료·영업정지 등 단계적 대응을 시행한다.

(3) 분석의견

이번 추경안의 목적예비비 증액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사업자 손실보전비용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손실보전금의 산정 기준, 보전 범위, 대상 사업자별 배분 기준, 과다 보전 시 환수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되며, 목적예비비는 매년 예산총칙에서 용도를 제한하여 편성한다.

정부는 3월 13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4)에 근거하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유사에게 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목적예비비 5조원을 이번 추경안에 편성하였다. 다만, 예산총칙 제12조의 목적예비비의 용도에는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2026년 추경안의 예산총칙(안) 제12조]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8,2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률 그리고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지급 해야하는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안전보장 소요,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최고가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정유사 손실보전이라는 목적이 이미 특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과 최고가격 설정 기준 등 세부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고, 최고가격제 시행 배경이 되는 중동 전쟁의 종료 시점 및 유가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이유로 손실보전비용 전체를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가가격 설정 기준, 시행 기간, 대상 유종의 범위 등 제도적 세부 사항이 추경안 편성 시점에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이번 추경안은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5조원 규모의 재정이 민간 기업의 손실보전에 투입되는 만큼, 정부는 손실보전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제3항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시 사업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13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고시)을 제정하여 손실보전의 대략적인 절차를 마련하였다.

동 고시 제7조에 따르면, 정유사가 원가 등을 포함하여 손실액을 산정하고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제출하면,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정산위원회’가 이를 검증하여 적정 보전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시 제정에도 불구하고, 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지출의 핵심이 되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 고시 제7조제3항은 정산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령

에 명시하지 않은 채,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손실액 산정의 출발점이 각 정유사의 자체 계산에 맡겨져 있음에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의 범위, 정제마진 변동분의 분리 방법, 기존 재고 평가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인회계법인 심사 및 정산위원회 검증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정산위원회의 산정 기준마저 부처 간 내부 협의로 결정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보전액 산정 과정의 객관성에 대한 제도적 담보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어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연장되고 손실보전 규모가 확대될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추경안 심의에 앞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부처 간 협의로 정하기로 한 손실보전금의 산정 기준, 보전 범위, 대상 사업자별 배분 기준, 과다 보전 시 환수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목적예비비의 용도가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로 명시되어 매우 포괄적이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예산총칙(안) 제12조에 목적예비비 규모를 8.2조원으로 확대하고, 목적예비비의 용도에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2026년 추경안의 예산총칙(안) 제12조]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8,2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률 그리고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지급 해야하는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안전보장 소요,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나 이번에 추가된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국제정세 변동’이라는 사유,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라는 상황, ‘대응을 위한 지출’이라는 용도가 모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뿐만 아니라 공급망 관련 금융지원,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비축유 구매 등 사실상 고유가 관련 거의 모든 재정 지출이 이 항목 하에 집행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는 기존 목적예비비 용도 항목들의 특정성 수준과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목적예비비 제도의 취지를 사실상 몰각할 우려가 있다.

또한 목적예비비 용도가 이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 국회가 예산총칙을 의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가 집행될지를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특히 5조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이라는 명목 하에 행정부의 재량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재정통제 약화 우려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동 목적예비비 용도 규정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정부의 원재료 수출제한 조치 등에 따른 손실보전 지출’ 등으로 구체화할 경우, 목적예비비의 집행 범위가 명확해지고 당초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의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 분석(국세청)

(1) 현 황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¹⁾은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조직의 설치·운영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에 100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체납관리단 인원 2,500명 추가 채용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634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34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은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에 앞서 체납자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실태확인원 7,000명을 채용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1,499억 6,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압류재산공매	4,254	14,868	228,232	213,364	1,435.6
국세 체납관리단	-	10,054	73,456	63,402	630.6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	-	149,962	149,962	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국세청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2202-301의 내역사업

국세청은 경기 부진과 청 내부의 조직·인력 제약 등으로 체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²⁾에서 징수실적 제고, 공공일자리 창출 및 복지연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26년 1월부터 일반 국민을 기간제 근로자인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3월부터는 500명을 채용하여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³⁾

아울러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의 실태를 조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안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2,500명을 추가 채용하여 국세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관할 50개 주요 지역⁴⁾에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권역별로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운영공무원은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 및 복무관리를 담당하고, 동행공무원은 방문실태확인 시 순차적으로 동행하여 실태확인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인력운영 계획]

(단위: 명)

구분		서울	중부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합계
당초 채용 (500명)	운영	9	10	6	4	4	4	7	44
	동행	3	3	2	2	2	2	3	17
	기간제	92	116	84	48	40	40	80	500
추가 채용 (2,500명)	운영	24	36	27	15	12	12	24	150
	동행	16	16	12	6	5	5	11	71
	기간제	432	576	440	272	212	200	368	2,500

자료: 국세청

2) 최근 4개년의 국세관련 체납자 수 및 체납액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만명, 조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체납자 수	127.6	132.6	133.7	133.0
국세체납액	99.9	102.5	106.1	110.7

자료: 국세청

3)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기 채용된 500명은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 8개 지역에서 2026. 2. 26.~2026. 10. 8.까지 실태확인을 실시할 예정임

4) 서울 8개, 중부 12개, 인천 9개, 대전 5개, 광주 4개, 대구 4개, 부산 8개로 총 50개

한편, 국세와 달리 국세외수입⁵⁾은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체납자 정보의 통합관리와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국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⁶⁾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6년 3월 말 기준 국세외수입 체납징수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기능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⁷⁾이 발의되어 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을 통해 유형과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징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은 이런 필요에 따라 실태확인원을 채용하여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⁸⁾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수가 384만명으로 국세 체납자 수 133만명보다 많아 전국 단위의 실태확인을 위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인력으로 전화실태확인원 2,800명, 방문실태확인원 4,200명 등 총 7,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인력운영 계획]

(단위: 명)

구분	서울	충부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합계
전화실태확인원	480	560	280	320	440	280	440	2,800
방문실태확인원	720	840	420	480	660	420	660	4,200
합계	1,200	1,400	700	800	1,100	700	1,100	7,000

자료: 국세청

5) 국가수입 중 조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과징금, 과태료, 토지·건물 대여료 등이 있음

6) 최근 5개년 국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조원)

연 도	징수결정액 ¹⁾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체납 + 납기미도래 ²⁾)
2020	213.7	193.2	1.4	19.1(13.3 + 5.8)
2021	248.6	226.3	1.3	21.0(14.1 + 6.9)
2022	245.5	221.5	1.2	22.8(14.5 + 8.3)
2023	254.7	229.6	1.1	24.0(15.9 + 8.1)
2024	284.3	257.8	1.4	25.1(16.2 + 8.9)

주: 1) 징수결정액은 당해 연도 징수결정액 + 전년도 미수납액

2) 납기미도래는 12월말 기준으로 고지는 되었지만, 납기가 도래하지 않고 수납도 되지 않은 금액

자료: 국세청

7)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2026. 2. 26.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125

8)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 1. 30. 안도결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황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력을 단계적으로 채용할 예정으로 1차로 6월에 3,000명을 채용하고, 2차로 9월에 4,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2026년 말까지 전체 체납자 384만명(2024년 말 기준)에 대하여 전화실태확인을 실시하고, 이 중 과태료 체납자 및 소액체납자(300만원 미만)를 제외한 68만명에 대해서는 방문실태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계획]

구분	2026년 1차 채용(6월)	2026년 2차 채용(9월)
채용인원	3,000명	4,000명
근무기간	7.1 ~ 12.23(120일) 채용완료 후 6월 교육 실시	10.1 ~ 12.23(58일) 채용완료 후 9월 교육 실시
실태확인팀	750개팀	800개팀
전화실태확인	384만명 전체	
방문실태확인	68만명(3백만원 미만 소액체납자, 과태료 체납자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예산 편성 산출내역을 비교한 결과, 국세 체납관리단은 1일 6시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경우 파악 대상 체납자 수가 많아 출장 전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전화 및 현장방문 이후에도 실적 정리와 조치사항 작성 등 후속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므로 근무시간을 더 길게 반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체납관리단 근무시간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근무시간 비교
국세 체납관리단	경력단절여성, 은퇴자가 가사 및 가정 내 취학자녀의 돌봄 등으로 9시까지 출근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정 (10시~17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장지 동선 파악, 현장 확인 이후 확인표 작성 및 실적 정리 등 후속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김 (9시~18시)

자료: 국세청

체납관리단 사업의 인건비를 확인해보면, 처우개선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생활임금으로 산정하였다. 당초 국세 체납관리단 본예산 편상 당시에는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인 10,320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는데, 추경예산안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12,250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다. 기존에 채용된 500명의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추경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5월부터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으로 인상된 보수를 받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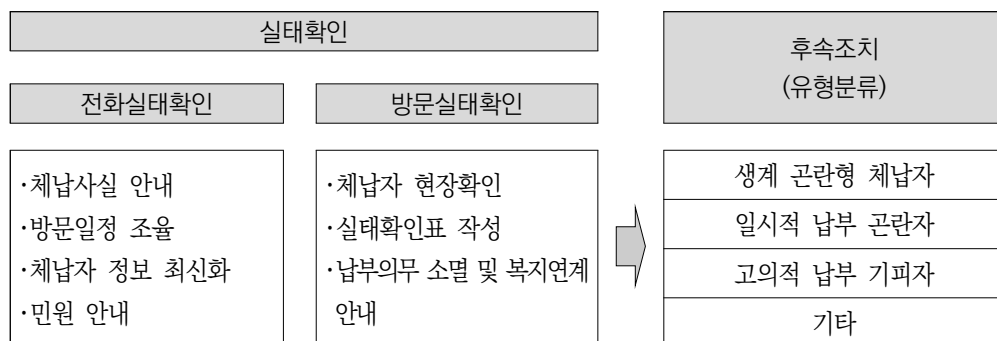
[본예산 편성 체납관리단 사업 인건비 비교 표]

구분	인건비 편성 내역
본예산 편성	○ 근로자 급여 : 400명×219일×6시간× 10,320원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추경예산안 (국세)	○ 신규 채용인력 : 2,500명×156일×6시간/일× 12,250원 ○ 기존 채용인력 : 500명×120일×6시간/일× 1,930원 ¹⁾
추경예산안 (국세외수입)	○ 1차 채용인력 : 3,000명×156일×8시간/일× 12,250원 ○ 2차 채용인력 : 4,000명×74일×8시간/일× 12,250원

주: 1) 최저임금을 받던 기존 채용인력에 대해서 5월부터 생활임금과의 차액만큼 추가 임금 지급
자료: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 모두 채용한 실태확인원을 통해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주거실태, 생활환경, 체납사유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납자의 유형을 분류할 계획이다. 이후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납부곤란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및 분할납부 등을 유도할 예정이며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등 상응하는 엄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 사업 주요업무 흐름도]



자료: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관리단과 달리 현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체납관리단 사업 비교 표]

구분	국세 체납관리단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 대상	생계형체납자 + 고액체납자 50만명 (전원 방문실태확인 방침)		384만명 전수 실태확인 (68만명에 대해서 방문실태확인)	
투입 예산	734억 5,600만원		1,499억 6,200만원	
채용 인원	3,000명 ¹⁾ (전화실태확인원 750명, 방문실태확인원 2,250명)		7,000명 (전화실태확인원 2,800명, 방문실태확인원 4,200명)	
투입 공무원	동행공무원 88명 운영공무원 199명		○(9월) 동행 60명 운영 450명	○(9월 이후) 동행 140명 운영 610명
운영 계획	○(기존 채용) 2026.2.26.~10.8. ○(신규 채용) 2026.7.1.~12.23.		○(1차 채용) 2026.7.1.~12.23. ○(2차 채용) 2026.10.1.~12.23.	
실무교육 기간 ²⁾	○(기존 채용) 2026.2.26.~3.4. ○(신규 채용) 2026.7.1.~7.7. ³⁾		○(1차 채용) 2026.6.22.~6.30. ○(2차 채용) 2026.9.14.~9.30.	
방문실태확인 ⁴⁾	3인 1조 (동행공무원 1인 + 기간제 근로자 2인)	3인 1조 (기간제 근로자 3인)	3인 1조 (동행공무원 1인 + 기간제 근로자 2인)	2인 1조 (기간제 근로자 2인)
실태확인 법적근거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없음	
비밀유지의무 및 과태료 규정	「국세징수법」 §10조2③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 한 자료 등은 타인 제공·누설·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116조2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 한 자료 등을 타인 제공·누설·목적 외 용도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없음	

주: 1) 기존에 채용된 500명을 포함한 수치임

2) 실무교육 기간은 채용일정 등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3) 2026.7.8.부터 초기 2주간은 교육과 실태확인을 병행할 예정임

4)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무원이 동행하여 방문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조를 편성하여 방문 예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분석의견

첫째,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당초 본예산의 국회 의결내용,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부대의견 취지와 다른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당초 채용한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500명에 더하여, 이번 추경안을 통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신규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7,000명 채용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①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 확대 필요성으로 생계형 체납자⁹⁾(28.5만명)와 고액 체납자¹⁰⁾(21만명) 등 약 50만명에 대한 방문실태확인이 시급하며, 현재 채용된 500명으로는 12만명¹¹⁾만 확인할 수 있어 나머지 38만명에 대한 방문실태확인을 위해 2,500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②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경우에는 체납자 수(384만명)가 국세 체납자 수(133만명)보다 많고, 사업을 단기간 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업을 시행한 6개월 이내에 국세외수입 체납자들을 전수조사한다는 목표를 세워 7,000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9)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되는 자를 말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음. 다만 국세청은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판단되는 체납자 중에서 2025년 1월 1일 기준 소득·부가세 합계 5천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 우선 조사할 계획임

구분	내용
폐업	①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②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도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 5천만원 이하 (소득·부가가치세 기준)
수입금액	최종 폐업일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
범칙제외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분·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지 않을 것
중복제외	과거 납부의무소멸(「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자료: 국세청

10) 5천만원 이상 체납자

11) 188팀(500명) x 131일(근무일) x 5명(1일 방문 인원)을 통해 총 12만명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체납관리단 채용인원 산출식]

구분	채용인원	산정 근거
국세	2,500명	○ 625팀(2,500명) x 120일 x 5명 = 38만명
국세외 수입	7,000명	○ (전화 실태확인) ¹⁾ : 1,159만건 전화를 위한 2,800명 ²⁾ 필요 - (6월) 49건 x 120일 x 1,200명 = 705만건 전화 - (9월) 49건 x 58일 x 1,600명 = 454만건 전화 ○ (방문 실태확인) ³⁾ : 68만명 방문을 위한 4,200명 필요 - (6월) 5명 x 120일 x 750팀(1,800명) = 45만명 방문 - (9월) 5명 x 58일 x 800팀(2,400명) = 23만명 방문

주: 1) 체납자 384만명에 최소 3회 이상 전화 = 1,159만건 전화 필요
 2) 전화상담 2,800명은 재택 근무 인원 1,000명, 사무실 근무 인원 1,800명으로 예정하고 있음
 3) 체납자 384만명 - 과태료 체납자 255만명 - 300만원 미만 체납자 61만명 = 68만명
 1. 각 일수는 채용 이후 실 근무 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2. 국세청은 1일 방문 인원을 5명, 1일 전화 횟수를 49건으로 산정하고 있음

자료: 국세청

다만 국세청이 다수의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업무를 이번 추경안 편성 계획과 같이 단기간 내 일시에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당초 2026년 국세 체납관리단 예산안 편성 당시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총 2천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¹²⁾ 또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넣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¹³⁾ 의결 당시, 국세청의 실태확인 성과를 우선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사업 규모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이 첨부된 바 있다.

그리고 국세 체납관리단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에서도 당초 500명 규모로 제출된 규모를 400명으로 감축하는 등 사업의 조정이 이루어져 일부 예산이 감액된 바도 있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은 당초 계획 및 부대의견의 취지와는 달리 사업 규모를 단기간 내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2) 「국세 체납관리단 문답자료」, 국세청 (2025. 9. 4.)

1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214735호

14) 당초 500명을 채용하기 위한 125억 4,700만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400명 채용으로 조정하여 100억 5,400만원 예산이 확정됨. 이에 국세청은 당초 계획과 달리 체납관리단 운용 기간을 줄여 확정된 예산으로 500명을 채용함.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이 운영하고자 하는 실태확인을 2026년에는 고액상습채납자, 재산제세 채납자, 생계형채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자 위주로 실시하고 **해당 성과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2025. 12. 1. 대안)」, 의안번호 제2214735호

둘째, 실태조사가 실효적일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하고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현재 계획 기준 추경안 편성을 통하여 국세 채납관리단은 생계형 채납자와 고액 채납자, 국세외수입 채납관리단은 전체 채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채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리고 이러한 채납관리단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성과지표가 충분히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채납관리단의 개입이 없더라도 기존 제도의 운영이나 재고지 등 통상적인 수단에 따라 일정 부분 정리될 수 있는 채납까지 채납관리단 사업의 성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체 채납자를 일률적으로 조사하기보다는, 채납액 수준별·채납기간별 정리율¹⁵⁾ 등의 자료를 기초로 기존 제도만으로도 비교적 정리가 가능한 대상을 제외하고 실태조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기 채납자의 경우 채납 사실에 대한 인지 부족, 주소 이전에 따른 고지 미수령, 일시적 자금곤란, 제도·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사유로 채납 상태에 이른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채납수준별·채납기간별 채납액 정리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우선 확인하고 정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상에 대해서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채납관리단의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5) 다만 국세청은 채납수준별·채납기간별 채납자의 채납정리율에 대한 정보를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임

셋째,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의 실태확인 업무는 법적 근거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법률안 심사 경과를 보아가며 사업 추진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세외수입 체납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국세외수입 체납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2026년 2월 26일 제안되었다. 현행 제도상 국세외수입의 부과·납부·체납관리 등 징수 전 과정은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으나, 동 법안이 제정될 경우 부과·납부는 각 부처가 담당하되, 체납 이후의 징수절차는 국세청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개정안	주요 내용
① 국세외수입 범위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	국세외수입을 중앙관서의 장 등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국가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정의
② 과세정보 등의 이용 근거 마련 (안 제13조 및 제14조)	필요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경우 과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단, 5천만원 이상의 국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자로서 1년 이상 장기간 체납한 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금융자산의 조회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조회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③ 실태확인 (안 제15조)	실태확인원을 채용하여 체납자의 납부의사, 납부계획 확인
④ 간접제재 수단 도입 (안 제16조 ~ 제21조)	① 지급대금 중 체납액 상당 금액 지급정지 규정 마련 ② 납부의무자 경영 사업 정지 또는 취소 규정 마련 ③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자료 제공 ④ 출국금지 요청 가능 ⑤ 체납정보 공개 가능
⑤ 체납처분절차 명확화 (안 제24조~제34조, 제37조~제40조)	압류, 매각, 청산 등 국세외수입의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세외수입 징수 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
⑥ 체납처분 유예 및 정리보류 (안 제36조 및 제39조)	① 일시적 사유로 체납한 자에게 매각 유예 등 조치 ② 실효성 없는 징수행정 방지를 위해 정리 보류 가능

자료: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2026. 2. 26.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125

다만 국세청은 정부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일원화하기에 앞서, 신속한 실태확인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고 체납 유형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¹⁶⁾이 발의되었으며, 동 개정안에는 실태확인 실시 근거, 국세청장의 과세정보 활용, 실태확인 과정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및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실태확인 (안 제14조의4제1항 신설)	체납자 현황 파악 근거 마련
② 실태확인원 채용 (안 제14조의4제2항 신설)	공무원이 아닌 자를 실태확인원으로 채용 가능
③ 국세청장 위탁 (안 제14조의4제3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실태확인을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 제공할 수 있음
④ 국세청장의 과세정보 활용 (안 제14조의4제4항 신설)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⑤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안 제14조의4제5항 신설)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⑥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안 제39조제1항 신설)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⑦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통신망 구축 (안 제40조제1항 신설)	재정경제부 장관이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함.
⑧ 국세청장 위탁 (안 제40조제2항 신설)	재정경제부 장관은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을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자료: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 1. 30.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464

따라서 국세청으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며, 국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의 법적 근거 마련은 「국가채권 관리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16)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 1. 30.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그러나 국세청은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개별 법률에서 체납처분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한 규정을 근거로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처분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한 법률은 총 25개이며, 그 항목은 대부분 과징금, 징계부가금, 환수금 등이다. 이들 법률은 통상 세무서장에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국세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납처분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한 법률 내역]

번호	법률	조항	위탁 구분 ¹⁾	세외수입항목	관리부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6조④	임의	이행강제금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5조③	임의	과징금	
2	군인사법	§53조의2⑤	강제	환수금	국방부
	군인사법	§56조의2④	강제	징계부가금	
	군인사법	§62조③	강제	환수금	
3	군무원인사법	§37조의2	강제	징계부가금	
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9조⑦	임의	환수금, 제재부가금	금융위원회
5	은행법	§65조의8③	임의	과징금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434조③	임의	과징금	
7	금융지주회사법	§69조③	임의	과징금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61조③	임의	과징금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3조③	임의	과징금	
10	공인회계사법	§52조의5③	임의	과징금	
11	상호저축은행법	§38조의7③	임의	과징금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조의2④	임의	과징금	
1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조④	임의	과징금	
14	여신전문금융업법	§58조⑦	임의	과징금	
15	전자금융거래법	§46조⑤	임의	과징금	
16	법관징계법	§7조의2④	강제	징계부가금	대법원
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1조의2⑥	임의	환수금	산업통상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1조의3⑤	임의	제재부가금	
18	병역법	§95조⑦	강제	과태료	병무청

번호	법률	조항	위탁 구분 ¹⁾	세외수입항목	관리부서
1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8조⑤	강제	과태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20	공직선거법	§57조③	강제	반환금	
	공직선거법	§135조의2⑥	강제	반환금	
	공직선거법	§261조⑩	강제	과태료	
	공직선거법	§262조의3⑤	강제	반환금	
21	정치자금법	§4조③	강제	환수금	
	정치자금법	§51조④	강제	과태료	
	정치자금법	§54조③	강제	반환금	
22	정당법	§62조②	강제	과태료	인사혁신처
23	국가공무원법	§74조의2④	강제	환수금	
	국가공무원법	§78조의2④	강제	징계부가금	
24	감사원법	§31조⑤	강제	변상금	감사원
25	국유재산법	§73조②	강제	연재료	재정경제부

주: 1) 위탁구분은 체납액 발생시 관리부서가 국세청에 강제 혹은 임의로 위탁하는지 여부를 나타냄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체납처분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부처는 총 10개에 불과하며, 개별 법률상 위탁 근거가 없는 부처의 체납자에 대해서까지 국세청이 실태확인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률상 위탁이 없는 경우에도 각 부처의 행정응원¹⁷⁾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국세청의 의견과 실태확인이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기에 법적 근거 없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2025년 국세 체납관리단 예산안 편성 당시 법적 근거가 필요로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세징수법」 개정¹⁸⁾

17)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18)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실태확인)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2026. 1. 1. 시행)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국세청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태조사를 단순 사실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국민의 권리·자유를 직접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도 허용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이 예정하고 있는 실태조사와 같은 행위는 체납자의 체납액 등 정보 확인 및 향후 체납처분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아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응원 등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실행위로 인정되는 행정조사¹⁹⁾에 대해서도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⁰⁾ 행정조사가 아무런 한계나 절차적 통제 없이 허용되지 않도록 한 것은 행정기관이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라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²¹⁾

국세청이 계획하는 체납사실 안내, 납부방법 안내 등의 실태확인도 단순 사실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체납처분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실태확인은 체납처분에 앞선 조사로 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교통법칙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같이 노출을 꺼리는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도 체납자 관련 정보가 실태확인원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실태확인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사실 등 개인정보를 실태확인원이 확인할 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19)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0)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원소연 외, 「행정조사 합리화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 p.14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실태확인원을 대상으로 체납정보와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세징수법」에서는 실태확인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국세외수입 체납대상자에 대한 실태확인과 관련해서도 실태확인의 근거, 취득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²²⁾

「국세징수법」상 비밀유지 조항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실태확인)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자료: 「국세징수법」

22)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인 실태확인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실태확인원은 수탁자 국세청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독립된 제3의 수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재위탁의 대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바.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전조사 결과 관계 기관과의 공유·활용방안 마련 및 법령상 근거 명확화 필요(조달청)

(1) 현 황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사업¹⁾은 계약체결 전 페이퍼컴퍼니²⁾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입찰자격 사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공공공사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6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다.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3,007	3,359	5,998	2,639	78.6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	-	2,639	2,639	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조달청

최근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³⁾에서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방향을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소하는 예방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조달청은 안전사고·부실공사 가능성이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공공공사에서 사전적으로 배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

조달청은 예산·인력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2025년 9월부터 시범특례사업으로 국가 종합건설공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⁴⁾하였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 4월 내로 국가·지방 종합건설공사에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6-345의 내역사업

2) 페이퍼컴퍼니란 공사수행을 위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실제 시공·관리능력이 없거나 미흡한 상태로 영업활동을 하는 건설업체를 말하며, 이때 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사무실·장비 중 하나라도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봄

3)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고용노동부(2025. 9. 15.)

4) 조달청은 시범사업 7건 중 부적격업체 2개 사를 낙찰배제하였고, 유사 공사 대비 입찰자가 20%가량

대한 사실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부대공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실조사를 수행할 인력은 총 64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공무원 22명에 더하여, 추경안을 통해 중앙조달공사 적격심사 대상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42명을 추가 채용하고,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인력을 2인 1조로 편성하여 총 22개 팀이 현장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4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및 자본금심사 용역 공고를 시작하여 6월에 본격적인 사업 시행 준비를 한 이후, 하반기인 7월에서 12월까지 사실조사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인력 70% 이상을 청년(만 34세 이하)으로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추진계획 및 인력채용 계획]

추진 계획	국가 종합건설공사 (‘25.9~ , 시범특례) ➤ 국가·지방 종합건설공사 (‘26.4월~) ➤ 국가·지방 종합·전문건설공사 + 부대공사(전기·통신·소방) (‘26.하반기~)		
인력 채용	○ (4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70% 이상 청년 채용 계획), 자본금심사 용역 공고 ○ (5월) 자본금심사 용역 계약 ○ (6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무공간 확보 ○ (7월~12월) 사실조사 확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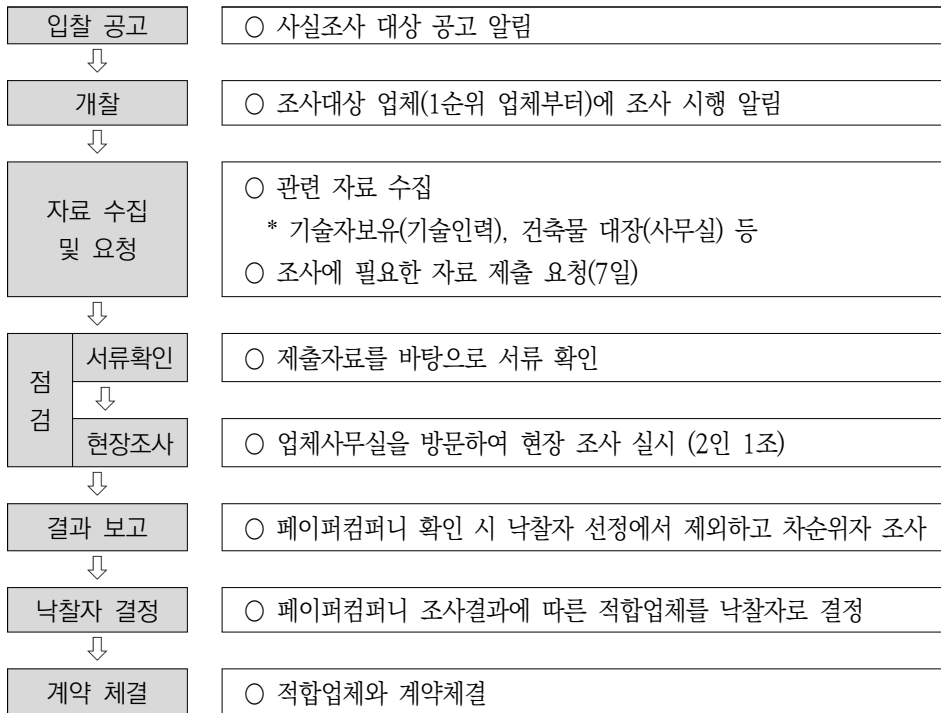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페이퍼컴퍼니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교적 소규모 적격심사 공사⁵⁾를 중심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및 소속 공무원을 통해 공사 발주 후 낙찰예정자에 대한 서류 확인과 현장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한 후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감소하여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5) 국가의 경우 100억원 미만, 지방의 경우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절차도]



자료: 조달청

사실조사 관련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원이 수행할 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 타 업종 겸업,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확인 등 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내용]

- 관련 규정 제·개정 등 제도관리
- 유관기관 협의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
- 자본금심사 용역 관리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타 업종 겸업, 상시근로 여부 등 확인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설비, 통신설비 등 확인
- 서류확인·현장조사 업무가이드라인 작성
- 적발업체정보 관리 등

자료: 조달청

(2) 분석의견

첫째, 조달청은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타 기관과의 중복조사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이 추진하는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사업은 공사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공공공사 입찰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⁶⁾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입찰참가신청서, 참가자격 증명 서류, 기타 요구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에 근거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⁷⁾하고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의 충족 여부를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계획]

기존 (서류)	개선 (서류 + 현장)
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사무실·장비 중 하나라도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 기준을 미달한 페이퍼컴퍼니이나, 서류를 통해서 기술자 보유기준 등만 검토하였기에 페이퍼컴퍼니 확인에 한계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등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기에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 가능

자료: 조달청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입찰 참가신청)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7) 조달청 공고 제2026-135호

이에 따라 조달청은 기간제 근로자를 42명 채용하고, 외부 사무공간 확보, 차량 임차, 자본금심사 용역 등 사실조사 수행을 위한 인력·공간·장비·지원체계를 확충하는 예산으로 2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다.

[조달청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일용임금 (728,721천원)	가. 사실조사 인력 기본급 (642,096천원): 98,000원× 42인 ×156일 나. 급식비 (40,320천원): 160,000원× 42인 ×6월 다. 시간외수당 (46,305천원): 18,375원×10시간× 42인 ×6월
일반수용비 (54,200천원)	가. 직원위탁 교육비 (4,200천원): 100,000원× 42인 ×6월 나. 물품 구입비 등 (50,000천원): 50,000,000원×1회
공공요금 및제세 (2,520천원)	가. 운전자 보험료 (2,520천원) :10,000원× 42인 ×6월
피복비 (10,500천원)	가. 피복비 (10,500천원) · 안전화(2,100천원) : 50,000원× 42인 ×1회 · 근무복(8,400천원) : 200,000원× 42인 ×1회
특근매식비 (6,174천원)	가. 사실조사 인력 (6,174천원) : 7,000원× 42인 ×3.5일×12월
임차료 (319,500천원)	가. 외부 사무실 임차료 (187,500천원) · 31,250,000원×6월 나. 사실조사 차량 임차료 (132,000천원) · 1,000,000원×22대×6월
유류비 (15,491천원)	가. 차량유류비 (15,523천원): 70원×1,680km×22대×6월 + 조정재원(△3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95,537천원)	가. 임차 사무실 배치 등 리모델링: 95,537,244원×1회
복리후생비 (8,400천원)	가. 복리후생비 (8,400천원): 200,000원× 42인
일반용역비 (1,200,000천원)	가. 자본금 심사용역 (1,200,000천원): 1,200,000원× 1,000건
국내여비 (40,740천원)	가. 일비 (26,775천원): 2,500원× 42인 ×51일 나. 식비 (3,675천원): 25,000원× 42인 ×3.5일 다. 숙박비 (10,290천원): 70,000원× 42인 ×3.5일
사업추진비 (19,000천원)	가. 간담회 (18,000천원): 12,500원× 42인 ×51일 나. 워크숍 (1,000천원): 25,000원× 42인 ×3.5일
고용부담금 (138,217천원)	-

자료: 조달청

해당 예산은 최근 3개년 조달청 적격심사공사 연평균 건수인 약 2,300건⁸⁾에 차순위자 조사, 공동도급 등 추가조사 요인을 반영하여 약 15%를 할증한 연 2,640건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사실조사 인력 64명⁹⁾ 역시 연 2,640건 처리를 전제로 산출되었으며, 자본금 심사 용역비도 본격적인 조사가 7월 이후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절반 수준인 약 1,000건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조달청 사실조사 실무 소요인력 산출 내역]

심사방법	건당 소요시간 (A)	'23~'25년 연 사실조사 예상건수 (B)	총 소요시간 (C=A×B)	연평균 근무시간/인 (D)	소요인력 (E=C/D)
사실조사	48	2,640	126,720	1,984	63.9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조달청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전수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나, 동일 업체에 대한 중복조사 우려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미 사실조사를 실시한 업체는 그 조사 시점부터 1년간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¹⁰⁾ 이는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와 조달청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상당 부분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때마다 사실조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 대상 업체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낙찰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는 지방자치단체 3곳(서울특별시·경기도·충청남도)과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

8) 조달청이 최근 3년간 중앙조달발주 적격심사를 한 건수는 아래와 같다.

(단위: 건)

구분		중앙조달			
		평균	2023	2024	2025
적격심사	국가계약법	1,051	1,238	1,075	841
	지방계약법	1,253	1,272	1,304	1,184
	소계	2,304	2,510	2,379	2,025

자료: 조달청

9) 조달청은 공무원 22명과 기간제 근로자 42명으로 조사인력을 구성할 예정임

10)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조사를 이미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발급한 사실조사 완료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할 예정임

단체 및 공공기관 등도 조달청에 계약요청¹¹⁾을 하지 않고 자체 발주가 가능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발주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기관이 별도의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조달청의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적격 업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간 조달청의 사실조사 결과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달청은 사실조사 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그 법령상 근거가 명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하여 사실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는 사실조사의 주체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입찰 참가신청)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자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

조달청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동행하는 방식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법적 근거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달청이 제시하는 근거 법령에서 사실조사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 참

11) 조달청을 거쳐야 하는 공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종합공사 30억 이상, 전문공사 3억 이상인 공사를 의미함

여자 중 일부가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울러 현재 건설공사 입찰 이전 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교통부 역시 사실조사를 전원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채용하고자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교육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7조 2,141억 4,3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111조 1,716억 8,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조 8,109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다.¹⁾

[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총수입 ·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교육부	총수입	8,012,483	7,214,143	7,214,143	-	-
	총지출	104,868,403	106,360,749	111,171,686	4,810,937	4.8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교육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교육부

교육부 소관 세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정된 세입과목은 1개이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 수입 과목이 403억원 증액되었다.

[교육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16,020,508	16,880,671	16,920,971	40,300	0.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3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내국세 세입 경정에 연동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프로그램 내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국가시책, 디지털교육혁신) 사업에 총 4조 7,693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대학에 재학 중이지 않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신규 운영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에 28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 국립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9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교육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일반회계	보통교부금	67,732,259	69,004,889	73,582,087	4,577,198	6.6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726,916	630,914	676,421	45,507	7.2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42,306	210,304	225,473	15,169	7.2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033,814	1,261,828	1,352,842	91,014	7.2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45,908	560,813	601,263	40,450	7.2
	영유아특별회계 전출	-	6,629,072	7,059,552	430,480	6.5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2,450	2,750	3,050	300	10.9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57,435	61,329	62,328	999	1.6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	13,983,349	14,834,117	14,951,821	117,704	0.8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184,950	262,461	290,761	28,300	10.8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1,115,224	910,898	922,898	12,000	1.3
합 계		85,441,911	94,369,375	99,728,496	5,359,121	5.7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한편, 교육부 소관 세출사업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 편성된 사업은 2개(세부사업 단위)이며, 감액규모는 총 5,078억 8,400만원이다.¹⁾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교육세 세입 감액 경정에 따라 ①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은 4,304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은 774억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1) 다만, 회계 간 내부거래에 대하여 총지출은 변동이 없다.

[교육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 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일반 회계	영유아특별회계 전출 (교육세 지원분)	-	2,638,044	2,207,564	△430,480	△16.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	2,037,159	2,046,554	1,969,150	△77,404	△3.8
	합 계	2,037,159	4,684,598	4,176,714	△507,884	△10.8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세 등²⁾ 목적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에서 제외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1호).³⁾ 같은 법에 따른 내국세는 이번 추경에서 증액 결정되었으나, 교육세는 감액 결정되었다.

2)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3) 목적세 외에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 및 종합부동산세(「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주세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도 제외된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국세 세목별 증감]

(단위: 조원)

구분	2025년도 실적	2026년도		
		본예산(A)	추경안(B)	B-A
총국세	373.9	390.2	415.4	25.2
법인세	84.6	86.5	101.3	14.8
근로소득세	68.4	68.5	73.2	4.8
증권거래세	3.4	5.4	10.6	5.2
농어촌특별세	9.2	8.5	13.6	5.1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6.4	13.0	△3.4
개별소비세	8.5	9.4	8.9	△0.5
교육세	5.7	6.4	5.6	△0.8

자료: 기획예산처

교육세 세입이 감액 경정⁴⁾되면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중 교육세 지원분,⁵⁾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금 중 교육세 지원분⁶⁾ 및 보통교부금 교육세분이 모두 감소하였다.⁷⁾ 교육세에서 각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감소한 만큼 교육세 외 일반회계에서 각 특별회계로의 전출금⁸⁾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경우 추경 사업(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283억원, 국립대학 태양광 설비 시설확충 정책사업 120억원)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403억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다.

4)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등에 대한 부가세이므로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이 감액 경정되면 교육세도 감액되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한시적 인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폭 확대 등으로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이 감액 경정되었다.

5) 코드: 일반회계 8101-800

6) 코드: 일반회계 8001-805

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는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자분(「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 영유아특별회계로는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주세액에 대한 부가세 중 60%(「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 제2항)가 전출되도록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세 세입 예산에 연동되어 위 2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규모도 정해진다.

8) 코드: 일반회계 8101-800(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일반회계 8001-804(영유아특별회계 전출)

[교육세 배분 관련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 (교육세 지원분)	2,037,159	2,046,554	1,969,150	△77,404	△3.8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	13,983,349	14,834,117	14,951,821	117,704 ²⁾	0.8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	-	2,638,044	2,207,564	△430,480	△16.3
영유아특별회계 전출	-	6,629,072	7,059,552	430,480	6.5
보통교부금	67,732,259	69,004,889	73,582,087	4,577,198	6.6
(교육세분)	2,450,138	1,034,888	747,901	△286,987	△27.7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2) 교육세 지원분 감액 보전 77,404백만원 + 추경 사업(2개) 예산 40,300백만원

자료: 교육부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추경에 따른 체계적 집행 계획 수립 필요(교육부)

(1) 현 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¹⁾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이다. 근거 법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1971. 12. 28.)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인건비와 시설비,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보통교부금과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디지털교육혁신 4개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다.

보통교부금은 해당 연도 내국세²⁾ 총액 20.79%의 96.2%³⁾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다. 교육세 세입액 중 금융·보험업자분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되고, 그 밖에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및 주세액 3개 세목에 대한 부가세분 중 60%는 영유아특별회계로 전출되며, 나머지 40%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된다.

특별교부금은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 20.79%의 3.8%를 재원으로 한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 20.79%의 1.8%를 재원으로 한다.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 20.79%의 0.9%(즉, 3%의 30%)를 재원으로 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 20.79%의 0.3%(즉, 3%의 10%)를 재원으로 한다.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 20.79%의 0.8%를 재원으로 한다. 2024. 1. 1.부터 202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교부되며, 종래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던 재원 중 일부가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으로 활용되는 구조이다.

임제웅 예산분석관(lim@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1500(프로그램)

2)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3)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202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교부함에 따라 조정된 비율이다(97% → 9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3항 참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구분		내국세	교육세
보통교부금		20.79% × 96.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및 영유아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특별 교부금	국가시책	20.79% × 3% × 60%	-
	지역현안	20.79% × 3% × 30%	
	재난안전관리	20.79% × 3% × 10%	
	디지털교육혁신	20.79% × 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 세입에 연동되어 예산 교부액이 정해진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⁴⁾⁵⁾

2026년 3월 말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본예산 71조 6,687억 4,800만원 중 20조 467억 9,140만원이 교부되었다(교부율 27.8%). 보통교부금은 69조 48억 8,900만원 중 19조 1,150억원(27.7%), 특별교부금은 2조 6,638억 5,900만원 중 9,317억 9,140만원(35.0%)이 교부되었다.

2026년도 본예산은 71조 6,687억 4,800만원이나, 내국세 세입 증액 경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조 7,693억 3,800만원이 증액된 76조 4,380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다.

4)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0,281,203	71,668,748	76,438,086	4,769,338	6.7
보통교부금	67,732,259	69,004,889	73,582,087	4,577,198	6.6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033,814	1,261,828	1,352,842	91,014	7.2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726,916	630,914	676,421	45,507	7.2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42,306	210,304	225,473	15,169	7.2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45,908	560,813	601,263	40,450	7.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교육부

(2) 분석의견

첫째,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시도교육청의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로 교부될 예정으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여유 재원이 상당 규모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지방 교육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집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편성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89조). 이번 추경예산은 중동지역 긴장에 따른 고유가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물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 취약 계층 등 민생을 안정시키며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⁶⁾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4조 7,693억 3,800만원 증액) 외에 대학 재학생 외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트캠프 도입, 국립대

6)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기획예산처, 중동 상황 신속 대응을 위해 추경 준비에 착수하여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제출」, 2026. 3. 13.

학 태양광 발전 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415억 9,900만원의 추경안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교육 분야 추경 전체 증액 중 0.9% 수준이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에 내국세나 교육세가 증액 편성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이에 연동되어 증액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2항).⁷⁾ 이번 추경으로 내국세 세입을 증액 경정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액 편성된 것이다.

참고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회계연도의 경우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정산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⁸⁾ 2026년도 본예산에도 2024회계연도 정산분이 반영되어 있다. 2023년, 2024년에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세수를 재추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 불용한 바 있다. 그리고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90조제2항).

[최근 10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결산 현황: 2016~2025]

(단위: 억원)

구분	본예산(A)	추경 증감(B)	불용(C)	결산 (D=A+B+C)	세계잉여금 정산(E)	당해연도 교부 (F=D+E)
2016	412,284	19,331	0	431,615	0	431,615
2017	429,317	17,868	0	447,185	18,724	465,910
2018	495,407	0	0	495,407	29,121	524,528
2019	552,488	0	0	552,488	52,817	605,305
2020	553,722	△18,611	0	535,111	319	535,431
2021	532,300	63,658	0	595,958	7,413	603,371
2022	650,595	109,854	0	760,450	52,526	812,976
2023	757,607	-	△103,970	653,637	0	653,637
2024	688,732	-	△42,524	646,208	364	646,572
2025	722,794	△19,982	0	702,812	0	702,812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7) 추경에 따라 세입을 증액 경정하는 경우와 달리 감액 경정 시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 편성하지 않고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조절할 수 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2항 단서).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고유가 등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이 지방 교육 재정을 운용하는 데도 추가 예산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I 시대의 미래 교육이나 노후 시설 보강 등의 소요도 있을 수 있다. 추경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다만, 최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감소 추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청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증액 추경이 있었던 2021년, 2022년에는 조성액이 크게 늘어 2022년 말 잔액이 11조 5,845억원에 달하였으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불용되었던 2023년, 2024년과 감액 추경이 있었던 2025년에는 지속적으로 기금 잔액이 감소하여 2025년 말 잔액은 3조 7,493억원이다.

[시·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

(단위: 개, 억원)

연도	조례 제정 교육청	기금 수	조성액(A)	사용액(B)	연도 말 현재액(A-B)
2019	6	6	11,828	0	11,828
2020	17	13	23,056	0	23,056
2021	17	14	36,894	6,774	30,121
2022	17	17	120,564	4,719	115,845
2023	17	17	122,569	26,575	95,994
2024	17	17	98,790	37,168	61,622
2025	17	17	64,808	27,315	37,493

자료: 교육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을 포함한 전체 시·도교육청 기금 조성액도

2022년 말에 21조 3,811억원에 달하였으나, 2025년 말 기준으로 7조 7,311억원으로 감소하였다.⁹⁾

[시·도교육청 기금 조성 현황]

(단위: 개, 억원)

연도	기금 수	조성액(A)	사용액(B)	연도 말 현재액(A-B)
2017	9	3,566	359	3,207
2018	10	4,669	331	4,338
2019	20	17,981	823	17,157
2020	31	29,761	813	28,948
2021	44	61,677	7,636	54,041
2022	55	221,811	7,860	213,811
2023	54	226,111	39,135	186,976
2024	54	194,916	71,112	123,804
2025	57	130,933	53,622	77,311

자료: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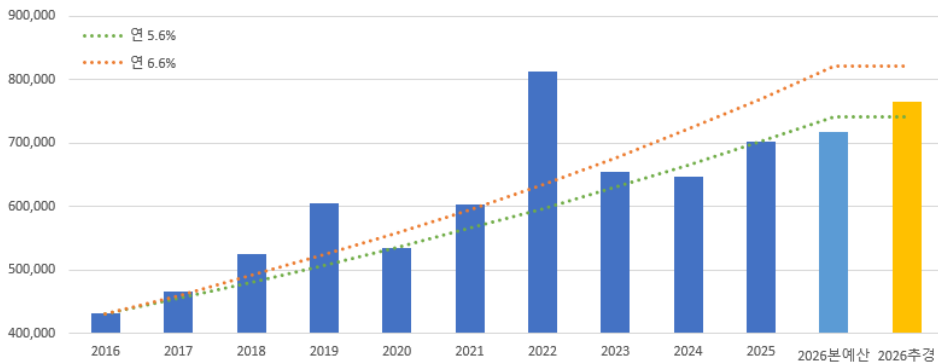
최근 10년간(2016~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평균 5.6% 증가하였는데,¹⁰⁾ 2025년도 추경 대비 2026년도 본예산은 2.0%, 이번 추경예산은 8.8% 증가한 것이다.

9)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사용처가 한정된 기금을 제외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다. 두 기금 잔액의 합계는 2022년 말 20조 3,918억원에서 2025년 말 6조 8,247억원으로 감소하였다.

10) 이는 기하평균 값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전년 대비 증감률의 산술평균은 6.6%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2016~2026]

(단위: 억원)



주: 1. 점선은 2016~2025년간 연평균 증가율(5.6%) 또는 증감률 평균(6.6%)을 적용한 추세선

2. 2016~2024년은 결산액과 세제잉여금 정산액의 합, 2025년은 추경 기준 예산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각 시·도교육청은 2026년도 정부 본예산 규모에 맞춰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이번 정부 추경안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규모(4조 7,693억 3,800만원)는 본예산 대비 6.7%, 전년 추경예산 대비 8.8%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즉, 시·도교육청이 당초 예상한 규모보다 큰 규모로 추가 교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시도교육청의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로 교부될 예정으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여유재원이 상당 규모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¹¹⁾ 향후 지방 교육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집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¹²⁾

11)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2025년 본예산(72억 2,794만원) 대비 2026년 본예산(70억 2,812만원)이 감액된바, 이번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12)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비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보통교부금이며, 보통교부금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집행 계획은 매월 시·도교육청에 자금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지방교육재정의 집행 주체인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추경안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되더라도 실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현재 교육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이 부재할 경우 추경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실제 예산 집행 기간이 짧아 모든 증액분을 용처를 정하여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현재 입장이다.

둘째, 3년간 한시적으로 교부 중인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이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므로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나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에 사용되며, 2024.1.1.부터 2026.12.31.까지 한시적으로 교부된다.¹³⁾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과거 윤석열 정부가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여 초·중등 교육 현장에 보급하는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고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¹⁴⁾

그런데 당시 개발된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된 현재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적절한 용도와 준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25년도에 교부 명세를 보면, 교원 교수·학습역량 강화 및 방과후교육 활성화에 주로 사용되었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 등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및 디지털 관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2025년도 교부 명세]
(단위: 백만원)

구분	단위사업명	교부액
디지털교육 혁신 특별교부금	교원의 교수·학습역량 강화	332,319
	방과후교육 활성화	210,802
	교육혁신 우수 교육청 재정지원	12,000
	계	555,121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디지털 역량 제고	13,993
	디지털 기반 구축	73,020
	디지털 교과서 개발	25,749
	계	112,762

자료: 교육부

13)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3. 8. 31.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 법안의 본회의수정안(6년→3년, 1%→0.8%)이 가결되면서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이 도입되었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는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되, 인공지능(AI)의 활용도가 늘어나는 것의 부작용으로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과 함께 독서 교육에도 재원을 투입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 1. 28.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따라서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용도를 포함하여 일몰 연장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유초중등 교육과정 학생 수의 감소로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미래 교육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 교부되어 유·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데,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에 연동하여 규모가 정해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총세입의 65%를 차지한다.¹⁵⁾

그런데 유초중등 교육과정 학생 수¹⁶⁾의 감소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학생 1인당 교부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5.6% 증가하는 동안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연평균 7.5% 증가하였다.

15) 다만, 정부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만으로 구성되지만,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이 포함된다.

16) 참고로 학령인구는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 해당하는 6~21세 인구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2016~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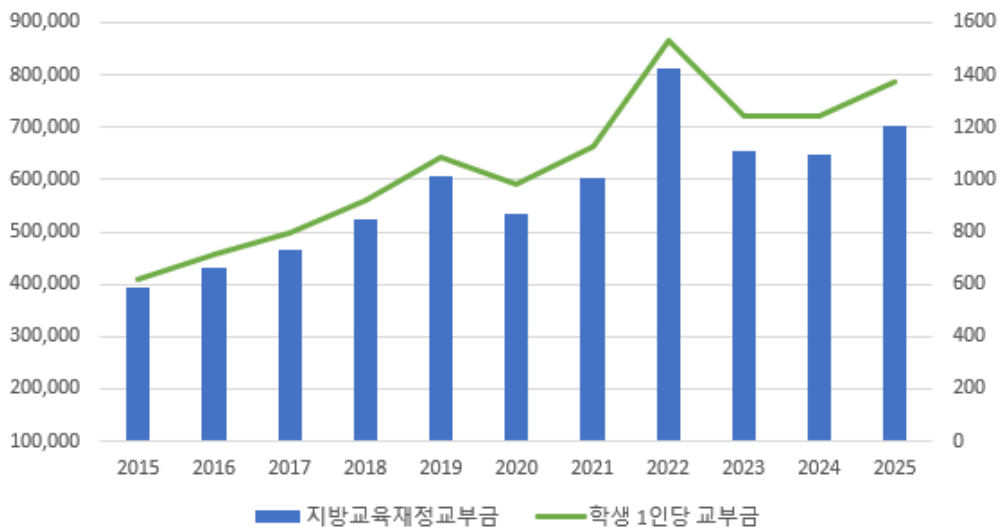
(단위: 억원, %, 만명, 만원/명)

구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A)		교부금 지원 대상 학생 수(B)		1인당 교부금(A/B)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016	431,615	9.5	602	△3.4	716	15.5
2017	465,910	7.9	583	△3.2	799	11.6
2018	524,528	12.6	570	△2.2	920	15.1
2019	605,305	15.4	556	△2.5	1,088	18.3
2020	535,431	△11.5	544	△2.2	985	△9.5
2021	603,371	12.7	535	△1.7	1,128	14.5
2022	812,976	34.7	532	△0.6	1,528	35.5
2023	653,637	△19.6	526	△1.1	1,241	△18.8
2024	646,572	△1.1	520	△1.1	1,243	0.2
2025	702,812	8.7	513	△1.3	1,371	10.3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학생 1인당 교부금 추이: 2016~2025]

(단위: 억원, 만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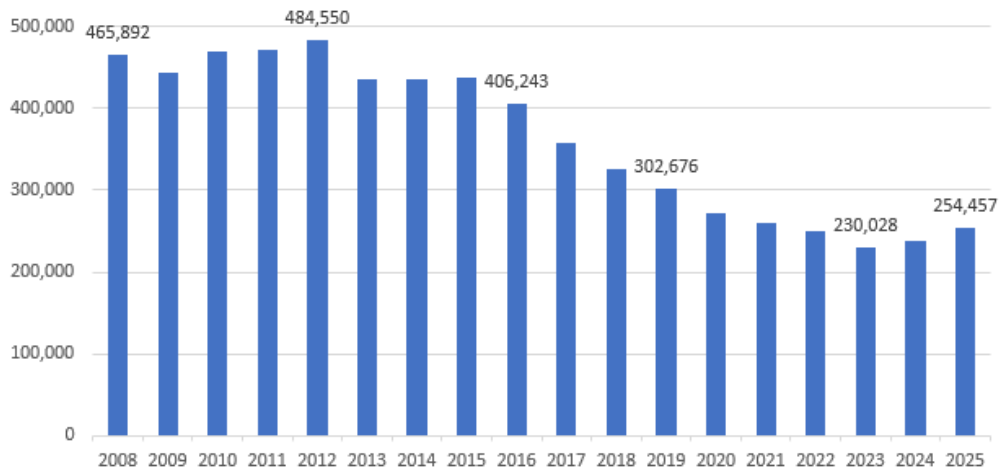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최근 10년간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학생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2025년 출생아 수는 25만 4,457명(잠정)으로, 전년 대비 1만 6,140명(6.8%) 증가하여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반등 추세이나, 10년 전인 2015년¹⁷⁾ 43만 8,420명 대비 42% 감소한 수준으로 당분간 유초중등 교육과정의 학생 수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이다.¹⁸⁾

[출생아 수 추이: 2008~2025]

(단위: 명)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이에 대하여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교육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한편,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교육수요를 고려하면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노후 교육시설 개선이나 특수교육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 개편에 관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견해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17) 2026학년도 유·초·중·고등학생(2008~2022년)의 중위 출생연도이다.

18) 예를 들어 2027학년도에는 2008년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3년생이 유치원에 입학하기 시작하므로 23만명 이상이 감소한다.

나.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대상자 선발 과정의 면밀한 관리 필요(교육부)

(1) 현 황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¹⁾ 사업은 대학 재학생이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을 제공하여 실무역량을 제고하고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쉬웠음’ 청년, 취업 준비생, 실업자 등 일자리 밖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민생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83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신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184,950	262,461	290,761	28,300	10.8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	-	28,300	28,300	순증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68,250	134,175	134,175	-	-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교육부

이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의 전문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동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AI)²⁾ 등 분야에서 총 47개교를 선정하였으며, 2026년에 인공지능(AI), 미래차, 로봇 분야에

임제웅 예산분석관(lim@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256-300의 내역사업

2) 2025년 AI 분야 예산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으로 편성(2,250백만원=3개교×750백만원)되었으며, 강원대, 숭실대, 한양대 3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서 41개교를 추가 선정하여 총 88개교(분야별 중복 포함)에 1,341억 7,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분야는 지역별로 안배하여 대학을 선정하였다.³⁾

[기준]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운영대학 현황]

인공지능(40개교)	반도체(28개교)
강원대, 송실대, 한양대,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계명대, 광주대, 국립군산대, 국립금오공대, 국립목포대, 국립부경대, 국립순천대, 국립창원대, 국립한국교통대, 국립한국해양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동의대, 부산대, 부산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충남대, 충북대, 한남대, 한라대, 한양대ERICA, 호서대	강릉원주대, 경기과기대, 단국대, 동양미래대, 두원공과대, 오산대, 울산과학대, 한국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일대, 구미대, 대구대, 대림대, 동국대, 동의대, 선문대, 우송대, 인하공전, 청주대, 평택대, 한경국립대, 한국외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홍익대, 순천향대, 한림대
	이차전지(4개교)
	국립군산대, 동국대, 동서대, 충북보건대
	바이오(4개교)
	가천대, 영남대, 충남대, 한남대
미래차(4개교)	디스플레이(3개교)
성균관대, 한국공학대, 건국대, 전남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한양대ERICA
로봇(2개교)	항공우주(3개교)
경북대, 대구가톨릭대	조선대, 청주대, 한국항공대

주: 굵은 글씨는 2026년에 선정된 대학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번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신규사업은 첨단인재형(유형1)과 실전인재형(유형2)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첨단인재형(유형1)은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이 운영하나, 실전인재형(유형2)은 기존 부트캠프 사업 선정대학으로 제한하지 않고 AX 실전 직무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되 지원 분야도 AI, 반도체 등으로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다. 유형별 20개교에 학교당 7억원을 지원하여 총 4,000명 내외를 양성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전문기관으로서 각 대학의 교과목 개발 및 학생 선발 등 사업 운영을 관리하는 출연사업이다. 하반기 과정 운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3) 수도권 7개교(서울 3개교, 경기·인천 4개교), 비수도권 30개교(대경권 6개교, 동남권 6개교, 충청권 6개교, 호남권 6개교, 강원·전북·제주 6개교)

[교육부 소관 부트캠프 사업개요]

구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인재형(유형1)	실전인재형(유형2)	
총예산	283억원		1,342억원
교육 대상	비재학생 청년		대학 재학생
지원대학 수	20개교	20개교	88개교 ¹⁾
지원 단가	7억원	7억원	14억원 (AI융합 과정 10개교에 5억원 추가 지원)
지원 분야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로봇	제한 없음 (인문, 사회, 예술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로봇
비고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주: 1) 분야별 중복 포함(중복 제외 시 66개교)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분석의견

첫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달리 대학 재학생이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자 선발 과정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부트캠프(bootcamp)는 집중적인 단기 실무교육 과정으로, 코딩 분야에서 시작하여 다른 산업 분야에도 도입되고 있는 모델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부스트캠프(boostcamp),⁴⁾ 삼성청년SW·AI아카데미(SSAFY)⁵⁾ 등이 부트캠프 모델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의 주요 내

4) <https://boostcamp.connect.or.kr/>

5) <https://www.ssafy.com/>

용 중 하나인 AI부트캠프 운영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경 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인공지능(AI) 분야 3개교를 선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하였으며, 2026년도 본예산에 인공지능(AI) 분야에서 37개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총 40개교를 선정하였다. 연차, 중간, 최종 평가를 통해 단기 집중 과정의 질적 수준, 참여 인원, 취업 실적 등을 핵심성과지표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달리 대상을 대학 재학생이 아닌 청년⁶⁾으로 설정하고, 지원 분야도 기존의 첨단산업(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로봇) 분야 외 인문, 사회, 예술 등으로 확대하려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첨단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첨단인재형(유형1)과 지원 분야 제한이 없는 실전인재형(유형2)으로 구분된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산출
계	28,300	-
(유형1) 첨단인재형	14,000	700백만원 × 20개교
(유형2) 실전인재형	14,000	700백만원 × 20개교
사업관리비	300	-

자료: 교육부

이번 사업은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2월 고용동향」(2026. 3.)에 따르면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하였고,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⁷⁾ 중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최근 다소 증가 추세이나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6) 청년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15~29세인 사람이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15~34세(같은 조 단서)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범위와 같다(같은 법 제3조 제1호).

7)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사람

[청년 고용동향 통계(2026년 2월 기준)]

(단위: %, 천명)

구분	'25. 2월	11월	12월	'26. 1월	2월
실업률	3.2	2.2	4.1	4.1	3.4
15~29세(청년층)	7.0	5.5	6.2	6.8	7.7
25~29세	6.3	5.8	6.2	6.7	7.1
'쉬었음' 인구	2,697	2,543	2,679	2,784	2,724
15~29세(청년층)	504	416	411	469	485
15~19세	44	11	17	27	31
20~29세	460	405	394	442	454
60세 이상	1,179	1,148	1,232	1,312	1,255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취업준비자(전체 연령대) 수는 62만 3,000명으로, 이 중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⁸⁾ 중인 사람은 16만 6,000명, 그 외 취업 준비자는 45만 8,000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학원·기관에 통학 중인 사람은 감소하였으나, 그 외에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이나 도서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소폭 증가하였다.

[취업준비자 통계(2026년 2월 기준)]

(단위: 천명)

구분	'25. 2월	11월	12월	'26. 1월	2월
취업준비자	650	596	570	600	623
취업학원·기관 통학	200	176	166	176	166
기타	451	420	404	424	458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교육부 소관 부트캠프 사업은 교육부가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출연하고 공모로 지원대학을 선정한 다음, 선발된 대학이 기업과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해당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이번 청년도약 인재양성

8)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 중 '통학(재학·수강 등)'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이 취업준비자에 포함

부트캠프는 대학 재학생 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40개교를 선정하여 총 4,000명 내외의 실무인력을 양성할 예정으로, 대학별로 평균 100명을 선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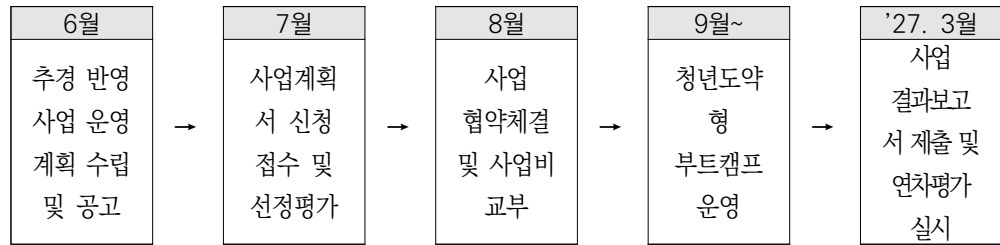
청년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대학과 교육 수요자인 청년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구직 중인 청년들이 40개 대학에서 각각 운영하는 부트캠프의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직무에 적합한 과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요컨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달리 대학 재학생이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발 절차가 추가되었는바, 각 대학의 선발 과정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신규 추진하는 만큼 사업 계획 구체화 후 부트캠프 운영대학 선정, 교육생 모집 등 절차가 지연되어 2026학년도 하반기부터 부트캠프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대학이 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올해 6월까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7월에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운영할 대학을 선정한 다음, 올해 9월부터 부트캠프 운영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추진 일정]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2025년 제2회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인공지능(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의 경우, 선정된 대학 3개교 중 2개교(강원대, 숭실대)는 당초 일

정대로 2025학년도 2학기부터 부트캠프 과정으로 인원을 양성하기 시작하였으나, 1개교(한양대)는 2025학년도 겨울학기에 비로소 부트캠프 과정으로 양성 인원을 배출하였다.⁹⁾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현황]

구분	2025학년도 2학기 (‘25. 9.~12.)	2025학년도 겨울학기 (‘26. 1.~2.)
강원대	40명 - AI Agent 해커톤(초급)	68명 - 중급 AI 부트캠프(중급) - 클라우드 AI 부트캠프(고급) - 생성형 AI 부트캠프(고급)
송실대	115명 - AI 클라우드 트랙(중급) - AI 시스템(초급) - XR 확장현실(초급) - 피지컬 AI(초급) - 빅데이터컴퓨팅(중급) - 인공지능(중급) - 정보보호(중급)	34명 - AI 클라우드 트랙(중급)
한양대	-	92명 - 산업AI 부트캠프(몰입형-중급) - 산업AI 부트캠프(몰입형-초급) - 산업AI 부트캠프(교과형-초급) - 산업AI 부트캠프(교과형-중급)

주: 2025년도 제2회 추경으로 AI 분야 시작(3개교 선정), 2026년도 본예산으로 37개교 추가 선정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번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도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부트캠프 운영대학을 선정한 다음, 대학 재학생이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수립한 사업추진 일정보다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운영하도록 선정된 대학 중에 지정하는 첨단인재형(유형1)의 경우 기존 부트캠프 과정에 재학생과 비재학생 청년을 합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9)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한양대도 부트캠프 교육과정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했다고 답변했다.

종합하면 ‘쉬었음 청년’, 취업 준비생, 실업자 등 일자리 밖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민생안정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올해 9월부터 부트캠프를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한 만큼, 당초 계획한 시기에 부트캠프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대학이 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 고용노동부의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훈련, K-뉴딜아카데미 사업과 비교해 교육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에 대한 지원 유인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과정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이번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같이 학생(교육생) 자부담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과 유사한 취지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과 K-뉴딜아카데미 사업의 경우¹⁰⁾ 교육비 성격의 훈련비와 별도로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과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차별화되지 않는 경우 월 20~40만원 내외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 고용노동부 사업과 비교하면 취업 준비 청년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취업 준비 청년들이 교육부 부트캠프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사업에 중복 지원할 수 있는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교육부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의 교육훈련 과정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0) 두 사업 모두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1234-300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 모두 편성되었으며, 특히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과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관련 사업 비교]

구분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훈련	K-뉴딜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목적 및 주요 내용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청년 대상 대기업이 첨단·선호분야 직업능력개발과 직장적응프로그램 제공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단기집중교육을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주)}	15~34세 청년	청년
시행 주체	직업훈련기관, 기업, 대학	대기업	대학(전문대학 포함)
훈련비	훈련 비용의 10% 자부담 (상한 60만원)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훈련 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월 40만원	없음
예산	6,260억원	1,482억원	283억원

주: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
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
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자료: 교육부,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교육부)

(1) 현 황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¹⁾ 사업은 미취업 상태이거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 관리, 진로상담, 직업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에 참여하는 거점학교를 선정,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27억 5,000만원이나 3개교를 추가 선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억원이 증액된 3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2,450	2,750	3,050	300	10.9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교육부

(2) 분석의견

첫째, 현재 거점학교 모집 공고 기간이 마감되고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바,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기신청 학교 중에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기본계획」(2020. 1.)에 따라 직업계고 졸업생을 지원하는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수행하는 보조사업이다. 직업계고 졸업생은 출신학교나 인근 학교에서 진로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²⁾

임제웅 예산분석관(lim@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4606-304

2)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59,661명 중 12,420명(20.8%)이 미취업 또는 진로미결정자이다.

2020년에 지원모델 개발에 참여할 거점학교를 공모하여 17개교로 시작하였고, 2025년에는 24개교로 확대되었으며, 2026년도 본예산은 27개교로 확대하기 위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번 추경안은 3개교를 추가하여 30개교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학교당 1억원을 교부하면서,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우수, 보통, 미흡)에 따라 1,000만원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예산 산출 근거]

(단위: 천원, 개교)

구분	2025년도 본예산	2026년도(A+B)	
		본예산(A)	제1회 추경안 증액(B)
계	2,450,000	2,750,000	300,000
거점학교 지정	2,400,000	2,750,000	300,000
거점학교 수	24	27	3
단가	100,000	101,825	100,000
사업관리비	50,000	-	-

자료: 교육부

2026년도 본예산에 3개교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된바, 2026년 3월 말 현재 모집 공고의 신청 기간(3. 10.~27.)이 마감된 상태이다.³⁾ 한국장학재단에서 거점학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중등직업교육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제안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사업제안서에는 최근 3년간 졸업생 지원 및 관리 실적, 예산 활용 계획 등이 포함된다. 전담인력(1명) 인건비는 연 4,000만원 이내에서 편성한다.

추경예산 편성 후 3개교를 더 확충하기 위하여 추가 모집 공고를 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추경으로 추가 모집한 거점학교는 먼저 모집한 학교보다 운영 기간이 조금 더 짧아지게 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기신청 학교 중에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기존 거점학교 중 참가(지원) 중단학교 발생 시 대체 학교를 추가 선발한다(3개교+α).

둘째, 향후에는 신규 선정된 거점학교가 직업계고 졸업 시점인 2월부터 취업지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장학재단 중앙취업지원센터의 「2026년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이며, 신규 거점학교는 2~3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직업계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졸업생이 배출되는 2월부터 사업을 수행하면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거점학교 신규 모집 공고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앞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예산항목 관련 편성 지침(2025)]

□ 예산항목 관련 편성 지침

과제	목	세목	용도	편성 한도
인프라 구축	건설비 (420)	시설비(03)	시설(공사비 등) 구축에 필요한 경비	(기존)2천만 원 이내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01)	자산취득(책상, 의자 등)에 필요한 경비	(신규)7천만 원 이내
취업 지원 · 성과 공유 및 확산 · 특성화 사업	인건비 (110)	기타직보수(02)	전담인력 보수(기본급, 성과급 등)	1억 1천만 원 이내
		기타인건비(05)	강사로, 회의참석비 등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홍보, 인쇄비, 소모품비, 회의비, 온라인교육 비, 사업담당자연수비 등	
		공공요금및제세 (02)	전화료, 우편요금 등	
		피복비(03)	졸업생 의류대여서비스 비용	
		급량비(04)	교육프로그램 참여 대상 식사 및 간식비	
		특근매식비(05)	사업담당자 특근매식비	
		임차료(07)	장소, 건물, 장비, 버스 등 각종 임차료	
		유류비 등(08)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 가동에 필요한 경비	
		시설장비유지비 (09)	건축설비, 공구, 비품 등 유지 관리비	
		재료비(11)	교육 실습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복리후생비(12)	전담인력 법정부담금	
		일반용역비(14)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교육 등 비용	
		관리용역비(15)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에 대행시키는 비용	
	여비(220)	국내여비(01)	국내 출장경비	
	업무추진비(240)	사업추진비(01)	기관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간담회비 등	
	업무추진비(240)	기관내 업무협약	기관내 업무협약, 간담회 등 소용되는 경비	
특성화 사업	직무수행 경비(250)	특정업무 경비(02)	업무관리수당	
	연구개발비(260)	연구개발비(01)	시스템개발비	

□ (인건비) 세부 내역에 수량(인건비의 경우 고용 기간 등) 단가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전담인력(1명)은 고용(기타직보수)하여야 함

○ 인건비(기타직보수) 예산은 총 연 4천만 원 이내에서 편성

※ 급여, 시간외수당, 퇴직금, 명절상여금, 보너스 등 포함

○ 법정부담금(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복리후생비로 편성

□ (급량비) 교육프로그램 참여 고졸자 대상 식사 및 간식비

□ (업무추진비) 학교별 배정된 최종 예산액의 5%로 이내로 편성, 추가 증액은 불가

□ (인프라 구축) 별도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및 자산 구입 가능

□ (장비구입비) 배정 예산 내 구입 가능

○ 범용성장비: 교직원용 일반 사무용 PC, 노트북, 프린터, 캠코더, 네비게이션 등 구입 불가

※ 단, 취업준비 공간에 졸업생 대상 PC 설치, 냉·난방기, 실습용 기자재, 전공 관련 소프트웨어 등 구입 가능

□ (임차비) 장비 임차는 해당 사업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 (실습재료비) 교육프로그램 1회당 졸업생 1인 최대 30만원 이내로 편성하여야 함

자료: 한국장학재단

라. 태양광 설비 확충 사업 공사 단가 비교 필요(교육부)

(1) 현 황

태양광 설비 확충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안에는 국립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과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국립대학 시설확충(정책사업)이 편성되었다.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¹⁾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은 307억 6,400만원이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9억 9,900만원이 증액된 317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²⁾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57,435	61,329	62,328	999	1.6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26,819	30,764	31,763	999	3.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교육부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정책사업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³⁾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은 90억원이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20억원이 증액된 210억원이 편성되었다.

임제웅 예산분석관(lim@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1702-300의 내역사업

2) 참고로 교육부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으로 2026년부터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시작한다.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이를 기후, 생태 전환 교육과 연계하려는 사업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는 특별교부금(433억원, 260개교)을 재원으로 학교당 50kW 용량의 설비를 설치한다. 국립학교를 대상으로 일부 사업예산은 국고로 이번 추경안에 편성되었다.

3) 코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740-300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국립대학 시설확충	1,115,224	910,898	922,898	12,000	1.3
정책사업	93,493	83,358	95,358	12,000	14.4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9,000	9,000	21,000	12,000	133.3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교육부

(2) 분석의견

교육부 소관 국립학교 등 태양광 설비 확충 사업은 1kW당 단가(333만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학교 건물 태양광 설비설치 지원 단가(150만원)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공사 단가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소관 태양광 설비 확충 사업은 국립 초·중등학교와 국립대학 모두 학교당 3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100kW 용량의 설비를 설치한다.⁴⁾ 교육부에서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면, 학교에서 설계, 공사 용역 계약을 직접 수행한다.

그런데 전력산업기금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행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⁵⁾ 사업은 학교 건물에 태양광 설비설치를 지원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이번 추경으로 증액하려는데, 100kW 용량의 설치 단가를 1억 5,000만원으로 산출하였다. kW당 단가는 150만원이다.

4) 공립학교의 경우 특별교부금(433억원)으로 학교당 50kW 내외(4m × 40m)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 단가는 학교당 1억 6,600만원으로, kW당 333만원이다.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 태양광, 탄소중립과 생태전환교육을 잇다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 발표,” 2026. 2. 26.

5) 코드: 전력산업기반기금 5202-303

[태양광 설비 확충 사업(증액분) 산출 근거 비교]

(단위: 만원/kW, kW, 개소, 백만원)

부처	사업명	대상	단가	용량	개소	지원율	예산
교육부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초중고	333	100	3 ^{주)}	100%	999
	국립대학 시설확충	대학			36		12,000
기후 에너지 환경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학교	150			132	40%
		일반건물		54.2	1,008	32,780	
		전통시장		50	16	480	
		단독주택	190	3	964	2,200	
		가정용베란다	200	0.5	100,000	25%	25,000

주: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 제주대학교 부설고,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초

자료: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육부 소관 사업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업을 비교하면 발전설비 용량 (kW)당 단가가 2배가량 차이가 나는바, 공사 단가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⁶⁾

참고로 조달청 나라장터의 가격정보를 보면 100kW 용량 태양광발전장치의 평균 거래가격의 1kW당 단가는 평균 220만원, 최저 133만원, 최고 663만원이다.⁷⁾

6)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조달청 나라장터 공사비(조달우수제품 납품실적 상위 5개사 평균 사용), 설계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공공공사 발주를 위한 원가를 계산(50kW)하여 단가를 산출한 것으로, 단가에는 태양광 패널과 인버터 외 설계비, 간선공사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포함되었다고 답변하였다.

7) 나라장터 누리집(<https://www.g2b.go.kr/>)-가격정보-계약물품 조회 [최종 방문: 2026. 3. 30.]

III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개 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10조 556억 3,0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23조 8,570억 5,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53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다.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총수입 ·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총수입	9,649,445	10,055,630	10,055,630	-	-
	총지출	20,982,548	23,741,686	23,857,059	115,373	0.4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1. 기후대응기금 포함한 총지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은 총 1개이다.

주요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과목이 200억원 증액되었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66)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정보통신진흥기금	기금예수금	15,187,601	15,048,717	15,068,717	20,000	0.1

주: 1.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9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4대 창업 거점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에 각각 142억 9,800만원, 164억 9,000만원, 164억 9,000만원, 164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제조업 등 전통기업이 AI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매·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AI통합바우처 사업이 200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현계획액)	추경안(B)	(B-A)	(B-A)/A
일반회계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5,757	27,643	28,143	500	1.8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233,356	297,077	311,375	14,298	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지원(R&D)	101,447	116,367	132,857	16,490	14.2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97,660	126,289	142,779	16,490	13.1
	광주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101,384	120,610	137,100	16,490	13.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연구개발특구육성(R&D)	116,104	167,343	176,043	8,700	5.2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현계획액)	추경안(B)	(B-A)	(B-A)/A
정보통신 진흥기금	AI통합바우처	-	89,775	109,775	20,000	22.3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 정) 예수이자상환	88,231	82,789	83,089	300	0.4
기후대응기금	CCU메가프로젝트(R&D)	-	20,000	42,405	22,405	112.0
합 계		743,939	1,047,893	1,163,566	115,673	11.0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현계획액을 기재

3. 기후대응기금 포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 (현계획액)(A)	추경안(B)	(B-A)	(B-A)/A
정보통신 진흥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3,631	40,128	39,828	△300	△0.7
합 계		33,631	40,128	39,828	△300	△0.7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현계획액을 기재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4대 과학기술원 창업지원의 중장기 사업계획 보완 및 유사 지역거점 창업지원 사업과 연계방안 마련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현 황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¹⁾,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²⁾,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³⁾,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출연연구기관(대학)인 4대 과학기술원의 연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6,603억 4,300만원이나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4대 창업 거점 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37억 6,800만원이 증액된 7,24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다.

[4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33,356	297,077	311,375	14,298	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01,447	116,367	132,857	16,490	14.2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97,660	126,289	142,779	16,490	13.1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01,384	120,610	137,100	16,490	13.4
합 계	533,847	660,343	724,111	63,768	9.7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66)

1) 코드: 일반회계 2231-401

2) 코드: 일반회계 2231-402

3) 코드: 일반회계 2231-403

4) 코드: 일반회계 2231-405

추경안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각 과기원에 대해 창업전담인력 인건비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리그 운영, 창업지원 자율 프로그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창업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4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의 추경안 증액 내역]

구분	편성내용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R&D)	(창업전담인력 인건비) · '26년 신규인력 인건비(창업) 48백만원 직원 2명×48백만원×6개월/12개월 ※ 창업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내실화 및 지속가능한 창업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인력의 인건비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예산) · 창업리그 운영 1,500백만원×1식 = 1,500백만원 ※ 4대 과기원 재학·휴학·졸업 2년 이내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 리그를 구분하여 개별 과기원 내 예선을 치르고, 예선 통과팀을 대상으로 4대 과기원 통합 본선 진행 ※ 예선 참여자와 본선 참여자에게 제품개발비, 후속투자 및 연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 · 창업지원 자율 프로그램 6,500백만원×1식 = 6,500백만원 ※ 과기원의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율 프로그램(시제품 제작 지원, AI 에이전트 창업, 지역 공유 창업 실험실 구축 등) 설계를 지원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250백만원×1식 = 1,250백만원 ※ 해외 시장 조사 및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연계 프로그램, 현지 VC 네트워킹, 주요 창업 성과물 전시회 개최 등을 지원 · 창업펀드 조성 5,000백만원×1식 = 5,000백만원 ※ 과기원별 창업리그 입상팀 등 초기 기업 중심으로 지역 내 유망기업 발굴투자 ※ 나머지는 과기원 매칭으로 과기원별 100억원 조성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R&D)	(창업전담인력 인건비) · 2026년 창업 지원 인력 인건비 증액 48백만원×10명×0.5=240백만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예산) · 창업리그 운영 1,500백만원 · 창업지원 자율 프로그램 6,500백만원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250백만원 · 창업펀드 조성 7,000백만원

구분	편성내용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R&D)	(창업전담인력 인건비) · '26년 신규증원 직원 10명×0.5×48백만원 = 240백만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예산) · 창업리그 운영 1,500백만원 · 창업지원 프로그램 6,500백만원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250백만원 · 창업펀드 조성 7,000백만원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R&D)	(창업전담인력 인건비) · '26년 신규증원 직원 10명×0.5×48백만원 = 240백만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예산) · 창업리그 운영 1,500백만원 · 창업지원 프로그램 8,500백만원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250백만원 · 창업펀드 조성 7,000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창업지원 추경안 편성을 통해 4대 과기원의 우수한 인프라, 공공기술 등을 활용하여 학내 학생·교원 창업 뿐만 아니라 지역거점 창업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중부권, 광주과학기술원은 호남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대경권, 울산과학기술원은 동남권의 창업허브 역할을 담당한다는 구상이다.

[4대 과학기술원 지역거점 창업허브 계획]

구분	대상지역	대상지역의 특화 분야
한국과학기술원	중부권 (대전·충북·충남)	바이오, 반도체, AI, 양자 등
광주과학기술원	호남권 (광주·전북·전남)	에너지,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경권 (대구·경북)	로봇, 반도체, 헬스케어 등
울산과학기술원	동남권 (울산·부산·경남)	소재, 우주항공, 조선·해양 등

주: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특화 분야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님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거점 창업허브는 과기원 창업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며,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창업전담인력 인건비, 지역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업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의 예산은 창업전담조직으로 지원된다. 다만, 현재 한국과학기술원만이 창업전담조직인 창업원을 2014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과기원은 창업 지원 추경안이 편성되면 창업원 조직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창업원은 창업원운영팀, 창업지원센터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보직교수가 원장 등을 겸임하며 전담인력 16명이 창업 관련 사업추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교원 및 학생 창업 지원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평균 110개 내외 창업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 현황]

- 조직 구성
 - (조직)
 - 창업원운영팀 : 창업지원 인력 및 인프라 관리
 - 창업지원센터 : 사업 총괄 및 성과관리, 창업지원/보육, 사업화 연계 지원
 - (인력) '26년 본예산 기준 전담인력 16명 + 보직교수
- 운영 프로그램
 - (교원) 실험실 기반 창업유도 및 사업화·투자유치 지원, 경영·기술·투자역량 강화 지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지원 등
 - Labs Startup KAIST: 연구실 대상 창업 멘토링 및 연구비 지원 등
 - KEP프로그램: 유망 초기 기업 대상으로 기술·비즈니스 모델 등의 검증 비용지원, 국·내외 투자 유치 및 매출 창출 등의 스케일업 촉진
 - (학생) 학내 기업가 정신 확산, 실전 창업 도전 환경 조성 및 유망 창업팀 발굴·육성 등
 - E*5 KAIST: 유망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팀을 발굴하여 창업분야 전문가 멘토링 기회 제공 및 실제 사업화 단계 지원 및 우수팀 선발
 - 점심N창업: 매일 점심시간 활용, 주제별 AC/VC 및 창업 학생 간 네트워킹 개최 (월 2회, E*5 KAIST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 (공통) 글로벌 스튜디오, IR Deck 컨설팅, KSTP 등
- 주요 성과
 - 연평균 110개 내외 창업 성과 창출
 - KAIST 출신 교원·학생 창업기업 기준 주요 딥테크 기업가치 15조원 달성
 - 최근 5년간 상장기업 24개 배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분석의견

첫째, 4대 과기원 창업지원은 소요 예산 규모가 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주축인 창업원 신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창업도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최초로 정부출연금 기반의 기술지주회사 창업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므로 운용 및 사후관리방안, 지역 혁신기업 투자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대 과기원 창업지원은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2026년 추경을 통해 창업원 신설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규 창업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거친 후, 2027년 이후 본사업으로 편성하고 지역 거점 창업 허브를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기재정소요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연 소요예산을 2026년 추경안 규모로 가정하더라도 2026~2032년 5년간 예산소요액은 한국과학기술원 714억 9,000만원, 그 외 과기원 각각 824억 5,000만원으로 총 3,188억 4,000만원 규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에 대해 4대 과기원의 창업 인프라, 인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4대 거점도시에 창업허브를 구축한다는 사업목적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한국과학기술원을 제외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사업운영의 주축이 되는 창업원을 신설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조직구조, 인적구성, 과기원 자체재원 부담 등 창업원 조직 신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기원의 설립계획 추진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지역 간 창업생태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창업·투자 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해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정책인 ‘창업도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과기원 창업지원 사업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경안에 편성되었다. 2026년에는 4개 선도 창업도시(대전·대구·광주·울산)를 선정하고 향후 비수도권 중심 6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2030년까지 총 10개 창업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창업도시에 재정지원이 선제적으로 집중되는 현 구조와, 향후 10개 창업도시로의 확대 계획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제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창업도시 지정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한 창업펀드 조성의 경우에도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 4대 과기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5)에 근거하여 보유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지주회사는 각 출자기관이 출자한 출자액을 활용하여 우수 기업에게 투자하고 기업의 지분 획득을 통해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한다. 이번 추경안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하여 과기원 자체재원과 매칭하여 총 400억원을 조성하여 기술창업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원 기술지주회사 창업펀드 지원]

(단위: 억원)

구분	정부출연금	과기원 자체재원	합계
한국과학기술원	50	50	100
광주과학기술원	70	30	1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70	30	100
울산과학기술원	70	30	100
합 계	260	140	4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동안 과기원은 자체재원을 출자하여 투자를 진행해왔으나 이번 추경안에서 최초로 정부출연금을 편성하여 기술지주회사 창업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출연금이 투입되는 만큼 펀드 수익 정산 및 청산 시 회수금 처리 방안, 지역 내 혁신기업으로 원활한 투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기원은 원천기술과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 ①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4. 보유기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 ③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④ 공공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⑤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 ⑥ 공공연구기관이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고급 인력을 바탕으로 초기투자를 주도해 왔으나, 성장 가속화 단계에 필요한 후행 투자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민간 자본과의 공동 매칭(Matching)을 통한 펀드 규모 확대 및 구체적인 민간 재원 조달 계획 수립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3~12년 경과한 기추진 중인 기술지주회사 펀드 운영 규모가 496억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안에 조성 예정인 400억 원 규모의 펀드가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투자 집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2025년말 과학기술원 기술지주회사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운영 규모	경과연수	주투자처	주요실적
한국과학기술원	165	12	지역 내 초기 스타트업 및 성장기업 중심	누적 투자 기업수 115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예정)	4		-
광주과학기술원	79	3		누적 투자 기업수 6개
울산과학기술원	232	8		누적 투자 기업수 32개
합계	496	-		-

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 2026년 하반기부터 펀드 결성 예정(現추경안과 별개로 계획된 내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같이 4대 과기원 창업지원은 소요 예산 규모가 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주축인 창업원 신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창업도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최초로 정부출연금 기반의 기술지주회사 창업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므로 운용 및 사후관리방안, 지역 혁신기업 투자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과기원 창업지원은 기추진 중인 지역거점 창업지원 사업인 연구개발특구 육성(R&D)과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두 사업의 강점을 결합하기 위해 사업 간 지원대상, 기술내용, 지원내용 등에서 차별화 및 연계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기원 창업지원은 4대 과기원이 소재한 4대 창업 거점 도시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추진 중인 연구개발특구육성(R&D)과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지원방식, 지원내용 등에서 유사하다. 다만, 두 사업의 시행주체는 각각 과기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차이가 있다.

연구개발특구육성(R&D)은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특구(6개 광역 특구와 13개 강소 특구) 내 4대 과기원, 출연연, 대학 등의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 지원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⁶⁾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기관으로 기술 사업화 핵심거점인 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하고, 특구에서 창출된 공공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인프라·환경을 지원한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2~2014년 정부출연금 250억원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50억원 출자를 씨드머니로 하는 연구개발특구펀드를 운영하고 있어, 창업펀드 조성에서도 과기원 창업지원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술창업 지원 사업 비교]

구분	과기원 창업지원	연구개발특구육성(R&D)
회계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도입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2005년
사업목적	과기원 자체 기술역량 기반 지역 기술창업 활성화	기술사업화 중심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내용	연구실 원천기술 사업화, 초기 기술 창업·성장 지원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 (R&BD)
지원대상	과기원 교원·학생 및 지역 (예비)창업가	특구 내 입주 기업·연구기관
예산규모	4대 과기원 연 638억 내외(추경안 포함시)	연 1,600억 내외
지원방식	(예비)창업가 발굴해 교육, 보육, 사업화 지원	기술이전·보육·사업화 패키지 지원
창업펀드 운영	과기원 기술지주회사 - '26년 정부출연금 260억원과 과기원 출자 140억원을 매칭하여 400억원 조성 목표(500억원 기운영 중)	연구개발특구펀드 - 2012~2014년 정부출연금 250억원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50억원 출자를 씨드머니로 하여 회수금 재출자를 통해 운용 중(2024년말 누적조성액 5,000억원)
거점지역	중부권(대전,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울산, 부산, 경남)	6개 광역 특구와 13개 강소 특구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기관으로 2026년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예산은 201억 3,600만원 규모이다.

구분	과기원 창업지원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시행 주체	4대 과기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법률 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히, 연구개발특구육성(R&D)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통해 6개 광역 특구와 13개 강소 특구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과기원, 출연연, 대학 등에서 개발된 공공기술을 이전하여 창업을 지원한다. 이 중에는 4대 과기원이 소재한 대전, 광주, 대구, 울산이 포함되며, 이 지역에서 4대 과기원은 이미 기술이전을 통한 창업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의 주요 특구 현황]

구분	지정시기	범 위	입주현황(개)	특화산업
대덕	'05.7월	(대전)유성·대덕	기업(2,808), 공공연(31), 대학(7) ※ 한국과기원 소재	IT 융복합, 바이오 의약, 나노융복합
광주	'11.1월	(광주)광산·동·북구 (전남)장성군	기업(2,863), 공공연(10), 대학(5) ※ 광주과기원 소재	광기반 융복합, 차세대전지, 친환경자동차부품
대구	'11.1월	(대구)동·북·중·수성 달서, 달성군 (경북)경산시	기업(1,056), 공공연(5), 대학(9) ※ 대구경북과기원 소재	스마트IT융합기기, 의료 융융복합기기, 그린에너지융복합
부산	'12.11월	(부산)강서·금정·영도·사하·부산진·연제구	기업(3,392), 공공연(9), 대학(10)	해양플랜트, 조선해양기자재, 그린해양기계
전북	'15.8월	(전북)전주, 정읍, 완주, 익산	기업(813), 공공연(13), 대학(4)	융복합소재부품, 농생명 융합
강원	'25.11월	(강원)춘천, 원주, 강릉	기업(904), 공공연(8), 대학(7)	바이오 신소재, 디지털헬스케어, 반도체(센서)소재·부품
울산	'20.8월	울산(울주)	기업(183), 대학(1) ※ 울산과기원 소재	미래형 전지
충북	'19.8월	충북(청주)	기업(294), 연구기관(8), 대학(1)	스마트IT 부품·신소재
충남	'20.8월	충남(천안·아산)	기업(131), 연구기관(1)	차세대 자동차 부품
전북	'20.8월	전북(군산)	기업(222), 연구기관(4), 대학(2)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구분	지정시기	범 위	입주현황(개)	특화산업
전남	'20.8월	전남(나주)	기업(434), 연구기관(2), 대학(3)	지능형 태양광 에너지 저장
경북	'20.8월	경북(구미)	기업(303), 연구기관(7), 대학(1)	스마트 제조 시스템
경남	'19.8월	경남 김해	기업(225), 연구기관(2), 대학(1)	의생명·의료기기
		경남 창원	기업(38), 연구기관(1)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경남 진주	기업(500), 연구기관(2), 대학(1)	항공우주 부품소재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대해 과기부는 과기원 창업지원은 과기원 학생·교원 및 지역 내 예비/초기 창업가 중심으로 지원하며 R&D 직접 수행주체로서 고유 전문성을 토대로 연구성과·기술 기반 기획형 창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를 도모한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과기원 창업지원은 기추진 중인 지역거점 창업지원 사업인 연구개발특구육성(R&D)과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두 사업의 강점을 결합하기 위해 사업 간 지원대상, 기술내용, 지원내용 등에서 차별화 및 연계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의 기존 사업과 차별화 강화 및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현 황

AI통합바우처¹⁾는 국내 AI 활용 확산과 시장 확대를 위해 AI 서비스와 개발·활용기반(고성능컴퓨팅자원·클라우드·데이터 등)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국내 AI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897억 7,500만원이나 AI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200억원이 증액된 1,097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AI통합바우처의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수정 ¹⁾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AI통합바우처	103,591	89,775	109,775	20,000	22.3
AI청년창업기업동반성장바우처	-	-	20,000	20,000	순증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중 2026년도 제1차 추경안에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내역사업이 신규로 200억원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제조업 등 전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매·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2026년도 1차 추경의 중점 편성 분야인 민생·에너지, 창업·청년뉴딜, 문화예술 토대 강화 중 창업·청년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편성되었다.

지원대상인 청년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2)에 따라 대표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66)

1) 코드: 정보통신진흥기금 2602-336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2의2. (생략)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

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이다. 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AI 솔루션 수요기업)은 특정 산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을 포함하되, AI 솔루션 등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공정 혁신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구분	내용
도입취지	제조업 등 전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솔루션 등을 구매·활용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 AI청년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으로 정의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의미 - 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 특정 산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을 포함하되, AI 솔루션 등*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공정 혁신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원 계획 *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AX 관련 분야 전반을 포함
지원방식	- 수요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공모·선정을 거쳐 매칭한 후, 수요기업이 청년창업기업의 AI 솔루션을 선택·도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고, 수행 단계 및 결과에 따라 분할 지급·정산 - 청년창업기업이 개발·보유한 AI 솔루션 등을 기반으로 한 제품·서비스(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AX 관련 분야 전반을 포함)를 중심으로 하며, 수요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확산 지원 계획 - 특히, 제조 공정 혁신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석·예측·최적화 등 현장 적용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AI솔루션 등을 우선 고려 예정
추경안 산출근거	200억원 = 10억원(지원단가) × 20개 기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의2. (생략)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5.~10. (생략)

11.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12.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13.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공모·선정을 거쳐 수요기업 및 청년창업기업을 매칭한 후, 수요기업이 청년창업기업의 AI 솔루션을 선택·도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고, 수행 단계 및 결과에 따라 분할 지급·정산한다.

(2) 분석의견

첫째,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AX 사업이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추경안에 AI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편성된 취지를 고려하여, 동 사업이 AI 분야에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수요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우수한 AI 기업이 매칭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설계가 필요하다.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기추진 중인 산업, 생활 등에 AI 적용을 지원하는 AX 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AI 바우처, AX 원스톱 바우처,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은 AI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기업과 AI 기업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AI 도입 촉진 및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상생형 AI트랙, 상생형 제조AX선도모델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공정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제조공정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기업 맞춤형 AX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상생형 제조AX선도모델은 추경안에 신규로 750억원이 편성되었다.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와 유사 사업 현황]

구분	AI 청년창업 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AI 바우처	AX 원스톱 바우처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상생형 AI트랙	제조AX선도 모델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세부 사업	AI통합바우처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개요	제조업 등 전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업 이 개발한 AX 솔루션을 구매·활용하도 록 지원함으로써 상생 동반성장 도모	AI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국내 기업 AI 도입 촉진 및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사적 AI·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필요한 기술·인프라· 데이터를 바우처로 통합 제공해, AX 성공사례 확보	제조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AI융합 솔루션 개발·실증을 지원하여 산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AI융합 솔루션의 개발·확산 지원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공정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제조공정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기업 맞춤형 AX 전환 지원	
예산 규모	'26년(추경안) 200억원	'26년(본예산) 276억원	'26년(본예산) 300억원	'26년(본예산) 99억원	'26년(본예산) 100억원	'26년(추경안) 750억원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의료기관, 소상공인 및 AI기업	중소·중견, 대기업 및 AI기업	AI기업 및 수요처(제조업)	AI기업 및 수요처(제조업)		
지원 내용	AI 솔루션 (데이터/클라우 드 등) 제공	AI 솔루션	AI솔루션 + 데이터 + 클라우드	제조 현장의 현안 해결에 필요한 AI융합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개발·실증)	단일공장·작업 을 위한 설비 및 시스템을 중심으로 AI 적용	여러 공장·밸류체 인에 전사적 AI 적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다만, AI 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은 AI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타 사업과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동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AI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³⁾으로, 해당기업은 업력이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타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므로, 동 사업의 별도 편성을 통해 AI 분야에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AX 사업의 지원대상에 연령으로 칸막이를 둠으로써 수요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우수한 AI기술을 보유한 AI기업을 매칭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AX 사업이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추경안에 AI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편성된 취지를 고려하여, 동 사업이 AI 분야에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수요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우수한 AI기업이 매칭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적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을 정보통신진흥기금에 편성하였으나, AI 지원 사업의 일반회계와 정보통신진흥기금 간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의 2026년 추경안은 정보통신진흥기금에 편성되었으며, 재원조달을 위해 기금 수입⁴⁾ 중 공자기금예수금 200억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 기금 지출에 3억원이 편성되었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3. 「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수입	기금예수금	287,944	141,836	161,836	20,000	14.1
지출	AI통합바우처	103,591	89,775	109,775	20,000	22.3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	-	20,000	20,000	순증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88,231	82,789	83,089	300	0.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3,631	40,128	39,828	△300	△0.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공자기금예수금으로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수지 악화로 추경재원으로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누적 여유자금은 2024년 1,101억원에서 2025년 129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주파수할당대가 감소⁵⁾로 자체수입이 감소하고 공자기금 예수금 의존 비중이 높아지는 등 수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들 기금의 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은 재할당이 예정된 2026년에는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⁶⁾되지만 재할당 이후에는 그 증가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5) 주파수할당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45%, 정보통신진흥기금 55%로 배분되며, 할당시점에 총 할당대가의 25%를 일시금으로 납부, 차액은 차년도부터 이용기간 종료까지 매년 균등분납으로 신규할당 또는 재할당이 있는 시점에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2021년은 1.8GHz, 2.1GHz 대역 등 3G·4G(LTE) 주파수 총 290MHz에 대한 재할당으로 총 재할당 대가의 25%가 일시금이 납부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6) 2016년에 경매한 4G(LTE) 80MHz, 2021년 재할당 290MHz 등 총 370MHz폭의 재할당이 2026년에 예정되어 있다. 재할당 시 부담금의 25%를 당해연도 수입에 미리 편성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및 여유자금 추이: 2020~2026년]

(단위: 억원)

구분	정보통신진흥기금				
	주요 수입				누적 여유자금
	법정부담금	공자기금 예수금	차입금	합계	
	주파수할당대가				
2020	5,918	4,261	-	10,179	1,073
2021	9,988	5,385	-	15,373	2,487
2022	5,566	8,892	-	14,458	2,025
2023	5,595	3,258	2,500	11,353	1,133
2024	5,143	4,500	-	9,643	1,101
2025	4,990	3,762	-	8,452	129
2026	8,506	1,418	-	9,924	

주: 2020~2025년은 결산, 2026년은 계획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적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바우처 사업을 정보통신진흥기금에 편성한 것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편성된 기존 AI통합바우처의 내역사업으로 신설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AI 지원 사업은 정부 프로그램예산체계 상 통신분야로 분류되며, 통신분야는 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 AI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조달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일반회계 편성, 기존사업의 일반회계 전환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기존 정보통신진흥기금에 편성된 AI 혁신펀드 사업,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을 2025년도 제2회 추경안부터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국정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 편성에서처럼 AI 지원 사업을 재정여건이 취약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AI 지원 사업의 일반회계와 정보통신진흥기금 간 재원부담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사업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야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AI 지원 사업을 통신분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1,796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총지출은 86조 4,29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9조 5,240억원 (12.4%) 증가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행정안전부	총수입	1,631	1,796	1,796	-	-
	총지출	859,822	769,055	864,295	95,240	12.4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경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6개 사업의 세출 증액만 이루어졌으며, 신규사업으로는 2개 사업이 편성되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중동전쟁발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 경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4조 8,25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②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19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③ 내국세 추정액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4조 6,79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일반회계	고유가 피해지원금	-	-	4,825,185	4,825,185	순증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 범사업	-	-	19,515	4,825,185	순증
	보통교부세	60,401,769	61,698,352	66,237,321	4,538,969	7.4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658,551	763,247	819,399	56,152	7.4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164,638	190,811	204,849	14,038	7.4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823,189	954,058	1,024,248	70,190	7.4
	합 계	62,048,147	63,606,468	73,130,517	9,524,049	15.0

주: 1.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자치단체 보조율의 다층화 및 지역사랑상품권 수급자 사용편의성 제고 필요(행정안전부)

(1) 현 황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¹⁾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조 8,251억 8,5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고유가 피해지원금	-	-	4,825,185	4,825,185	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계층별, 거주지별로 차등을 두어 취약계층·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5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본 금액에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속하지 않는 소득하위 70% 국민에 대해서도 거주지에 따라 비수도권은 5만원, 인구감소우대지역은 10만원, 인구감소특별지역은 15만원의 추가금이 지급된다. 이때, 인구감소우대·특별지역은 2026년 본예산의 ‘지방우대원칙’ 수립 시 적용한 기준을 준용하여 우대지역 49곳과 특별지역 40곳이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350-302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요 내용]

구 분		지원단가		
지급내용	거주지	소득하위 70% (3,256만명)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36만명)	기초수급자 (285만명)
	수도권	10만원	45만원	55만원
	비수도권	15만원	50만원	60만원
	인구감소(우대)	20만원		
	인구감소(특별)	25만원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설정		
지급시기		미정		
사용기한		미정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구분 및 해당 시·군·구 목록]

구분	기준	개수	해당 시군구 목록
특별 지역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지표 하위지역 및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의 공통 해당 지역	40	강원(양구군, 화천군), 충북(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충남(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경북(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함천군)
우대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49	부산(동구, 서구, 영도구), 인천(강화군, 옹진군), 대구(남구, 서구, 군위군), 경기(가평군, 연천군), 강원(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옥천군, 제천시,) 충남(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전북(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남(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경남(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계		89	-

자료: 행정안전부 및 KDI공공투자관리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단, 소득 구간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대상자 정보가 있는 기초·차상위가구 대상자에 1차로 우선지급하고 소득하위 70%에게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된 후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하의 분석은 현재('26.3.31.)까지 발표된 정부 보도자료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구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답자료 등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으며,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참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개요]

구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021년)	민생회복 소비쿠폰(2025년)								
지급대상	·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α 국민	· (1차) 전 국민 (2차) 소득 하위 90%								
대상별 지원내역	· 1인당 25만원(가구 기준 선별)	<table><tr><td>상위 10%</td><td>일반 국민</td><td>차상위· 한부모가정</td><td>기초 수급자</td></tr><tr><td>15만원</td><td>25만원</td><td>40만원</td><td>50만원</td></tr></table> ※ 단, 비수도권 3만원, 농어촌인구감소지역 5만원 추가지급	상위 10%	일반 국민	차상위· 한부모가정	기초 수급자	15만원	25만원	40만원	50만원
상위 10%	일반 국민	차상위· 한부모가정	기초 수급자							
15만원	25만원	40만원	50만원							
지급 수단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수급자 택1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수급자 택1								
선별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고액자산가 제외) ※ 맞벌이 및 1인가구 별도기준 적용	· (2차)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90% 선별(고액자산가 제외) ※ 맞벌이 및 1인가구 별도기준 적용								
사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처 제한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	· (신용·체크·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 ※ 단, 사용불가 업종 제외, 지역제한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								
예산규모	· 11.0조원 (국비 8.6조원, 지방비 2.4조원)	· 13.9조원 (국비 12.2조원, 지방비 1.7조원)								

주: 각 사업 확정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2) 분석의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과 소득계층 분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율이 설정되어 대응지방비의 지역별 편차가 상당하고 재정력과 사업 집행액이 비례하지 않는 만큼 상당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대해 보조율의 다층화 및 기준금액 초과 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분에 대한 국고 부담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속한 지급과 효율적 대민행정이 필요한 사업의 특성상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대규모 보조사업이 전국 표준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다. 동 사업 역시 총 6.1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국고보조율이 80%(서울은 70%)임을 감안할 때 지방비 분담분이 약 1조 3,201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소득 선별 시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한 별도 산정으로 지원대상이 추가될 경우 실제 지방비는 이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별 소요재원 및 지방비 대응액]

(단위: 억원)

구 분	지원인원	지원금액	총소요	국비	지방비
소득하위 70%	3,256만명	10~25만원	세부 산정 근거 미제출 ¹⁾		
차상위·한부모	36만명	45~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	55~60만원			
합 계	3,577만	10~60만원	61,400	48,199	13,201

주: 1) 행정안전부는 기획예산처로부터 총액 기준으로 예산 규모를 통보받아 세부 산출근거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그런데 각 자치단체는 지역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자체 세입의 규모와 세출 구조가 상이하여 재정력에 편차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모두 단일하게 서울과 기타 지방자치단체로만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매년 동일한 국고보조율 적용해 왔다.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사업 국고보조율 내역]

(단위: %)

('20)긴급재난지원금		('21)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부안	국회확정	정부안	국회확정	정부안	국회확정
서울 70	서울 81.9	서울 70	서울 70	서울 70	서울 75
기타 80	기타 86.1	기타 80	기타 80	기타 80	기타 90

주: 2020년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대상자 추가가 있었으며 해당 소요예산은 모두 국비로 부담하면서 국고보조율이 조정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여타 지역 간에도 재정 여력을 나타내는 경제지표 및 소득분포 측면에서 상당한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한다. 실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서울을 제외하더라도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집행액이 최소 108억 원에서 최대 3,423억원으로 표준편차가 1,363억 원에 달해 지역별 지방비 부담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각 자치단체별 재정 여력과 지방비 집행액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치단체별 재정력 지수 및 ('25)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재정력 지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액	
	세입규모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지방비
서울	50,199,958	79.1	2,265,187	566,297
부산	18,295,472	48.6	946,3990	94,699
대구	12,103,636	46.7	685,455	68,546
인천	16,639,379	55.6	796,243	79,624
광주	7,962,532	42.0	408,843	40,884
대전	7,214,118	45.1	412,639	41,264
울산	6,279,930	52.9	308,025	30,803
세종	1,878,779	62.7	108,122	10,812
경기	65,617,252	62.8	3,423,703	342,370
강원	15,193,948	29.0	448,460	44,846
충북	12,530,243	36.9	465,779	46,578
충남	18,668,071	36.8	626,120	62,612
전북	16,961,365	27.1	523,086	52,309
전남	19,903,265	27.1	536,696	53,670
경북	25,851,960	31.0	753,570	75,357
경남	23,547,443	39.2	945,563	94,556
제주	7,167,530	39.5	191,432	19,143

주: 1. 세입규모와 재정자립도는 2025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순계 기준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집행액은 국비 집행(교부)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것이며 현재 실집행
결산 중으로 부정수급 환급액 등에 따라 지방비 실집행액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전 국민 대상이던 이전과 달리 이번 사업의 대응지방비를 결정하는 요인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역내 주민등록인구 수인데 상대적으로 재정력에 제약이 큰 지역에 오히려 해당 인구 비중이 오히려 높아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나아가 1인당 지원금 지급 규모가 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재정력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경향이 있어 유사한 재정 부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지역별, 소득수준별로 지원금의 차등 폭이 크기 때문에 역내 소득분포에 따른 대응지방비 수준도 편차가 더욱 클 수 있다.

일례로, 경기·인천의 소득 하위 70% 이하이면서 차상위·한부모가족에 속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한 대응지방비는 인당 2만원 수준이나 인구감소특별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인당 12만원의 대응지방비가 소요된다. 그런데 인구감소우대·특별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이 가장 많은 전남지역과 경북지역을 보면 재정여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데 반해 가구소득의 중앙값은 전국평균인 5,880만원보다 낮은 5,411만원, 5,199만원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수가 타 시도에 비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전국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수 중 해당 지역 거주자 비중이 각각 11.7%, 14.0% 수준으로 유사한 재정 여건을 보이는 타 지역(약 8~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 재정여력과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단위: 백만원, %, 만원, 명)

구분	세입규모	재정 자립도	가구소득 중앙값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비중(%)		비중(%)
서울	50,199,958	79.1	5,882	44,523	15.3	450,293	16.5
부산	18,295,472	48.6	4,920	18,600	6.4	247,776	9.1
대구	12,103,636	46.7	4,975	15,097	5.2	165,283	6.1
인천	16,639,379	55.6	4,922	14,026	4.8	189,134	6.9
광주	7,962,532	42.0	5,321	6,886	2.4	101,843	3.7
대전	7,214,118	45.1	5,923	9,404	3.2	81,864	3.0
울산	6,279,930	52.9	6,535	4,494	1.5	47,655	1.7
세종	1,878,779	62.7	8,274	804	0.3	9,616	0.4
경기	65,617,252	62.8	6,657	54,550	18.7	521,399	19.1
강원	15,193,948	29.0	4,939	11,936	4.1	90,188	3.3
충북	12,530,243	36.9	5,894	8,568	2.9	86,224	3.2
충남	18,668,071	36.8	5,986	12,866	4.4	100,438	3.7
전북	16,961,365	27.1	5,025	18,430	6.3	137,029	5.0
전남	19,903,265	27.1	5,411	22,083	7.6	113,072	4.1
경북	25,851,960	31.0	5,199	23,509	8.1	160,858	5.9
경남	23,547,443	39.2	5,262	22,437	7.7	188,828	6.9
제주	7,167,530	39.5	5,531	3,272	1.1	38,355	1.4

주: 1.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25년 5월 기준 지역별 인원

2. 세입규모 및 재정자립도는 2025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순계 기준

자료: 지방통합공개시스템 공시자료, 「2025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해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되는 비효율과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 사업의 국고보조율 차등화는 서울과 그 외 지역으로만 설계되어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을 추가 지원한다는 기조하에 피해지원액을 지역 기준 4개 유형으로 다층화하고 지역 간 지원금 격차를 크게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고 보조율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지원금 단가가 높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 일수록 대응지방비 부담이 더욱 커지는 역설적 문제가 있다.

[지역별 대상자 1인당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응지방비 비교]

(단위: 원)

구분		지원금(1인)	국비(1인)	지방비(1인)
소득하위 70%	수도권	10만	(서울) 7만 (그외) 8만	(서울) 3만 (그외) 2만
	비수도권	15만	12만	3만
	인구감소우대지역	20만	16만	4만
	인구감소특별지역	25만	20만	5만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수도권	45만	36만	9만
	수도권 외 지역	50만	40만	10만
기초수급자	수도권	55만	44만	11만
	수도권 외 지역	60만	48만	12만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대응지방비 부담이 항상 비례할 수는 없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다른 국고보조사업들을 포함하면 총 대응지방비 규모가 약 1조 3,201억원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지방재정 여건의 차별성과 지역별 소득분포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의 다층화 방안 및 기본지원금액 외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수단으로 논의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최근 다양한 정책사업에 활용되면서 사업별 목적에 따라 사용기한·업종 제한·사용권역이 상이하여 수급자의 이용 편의가 낮고 일부 금액이 미사용되는 사례가 확인되는데,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 취약계층에서 이러한 제약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수단, 사용처, 사용기간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범정부TF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례에 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하도록 하되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식일 것으로 예상된다. 혹은 영세상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더불어 이전 지원금과 같이 단기간 내 소비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용기한도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최근 주요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만 지급하거나 지역화폐 수급 시 추가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수급자가 복수의 정책사업을 통해 동시에 지역화폐를 수령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동일한 지역화폐라 하더라도 지급 사업에 따라 사용처·사용기한 등 사용요건이 개별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선불카드로 신청한 수급자의 경우 수당별로 4~5종의 카드를 분산 수령하여 관리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며 체크카드·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수당별 정책사업 구분코드가 별도 부여되어 개별 관리가 요구된다.

[A군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정책수당 요건 비교]

사업명	금액	사용기한	업종 및 사용처 제한
상품권 일반발행	충전액별 상이	발행일 기준 5년	· 해당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준용
농어촌 기본소득	인당 월 15만원	지급일 기준 읍 90일, 면 180일	· 군 생활권 중 거주지기준 특정권역 내 (읍 주민은 읍·면 사용가능, 면 주민은 원칙적 면 지역사용) · 3개 업종(면하나로마트, 주유소, 편의점) 사용 합산액 5만원 이하
농어민수당	인당 연 45만원 (1인가구 80만원)	지급연도 내	· 해당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준용
아동수당	인당 월 13만원	발행일 기준 5년	· 해당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준용
결혼장려금	부부당 500만원	발행일 기준 5년	· 해당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준용
(비교) 민생회복 소비쿠폰	인당 15~55만원	해당연도 11.30.까지	· 주소지가 특별·광역시인 경우 광역 내 가맹점, 도 지역은 거주 시·군 내 가맹점 ·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역내 가맹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이하 매장 · 지급수단에 상관없이 사용불가 업종 설정

자료: 각 자치단체 공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이에 따라 수급자는 결제 시마다 해당 수당의 종류·잔액 및 사용 가능 가맹점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복잡한 수급 구조는 수혜자가 체감하는 정책수당의 효용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기한이 지급일 기준 수개월 내~상품권 발행일 기준 5년까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생활 인프라 특성상 일상생활 반경 내 가용 사용처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복수의 정책사업을 통해 누적된 지역화폐의 사용요건과 운영 체계가 사업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경우, 주민의 소비 접근성이 더욱 저하되어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기대되는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온전히 발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 보다 ‘고유가에 따른 전방위적 물가상승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보다 방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자 편의성과 정책의 효과성 측면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보다 면밀한 지급수단과 사용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정책 목적이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경감에 있음을 감안하여 사용 조건을 수혜자 중심으로 단순화·표준화하는 한편, 인프라가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용처 확대 방안을 병행 마련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민생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존 사례와 달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21만 명에 대한 우선 지급 후 선별을 거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 명에게 추가 지급을 추진할 예정으로, 민생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상자 선별 및 지급집행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지원금은 소득하위 8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상자 선별에 소요되는 절대적인 시간 때문에 예산확정일로부터 45일 후 1차 지급이 이루어졌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약 5,116만명의 전 국민에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선별을 거쳐 2차로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각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DB를 활용하여 대상자 조기확정이 가능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차 지급을 완료하고,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약 3,256만명은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한 소득기준 산정을 거쳐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우선시하면서도 지원 범위를 중산층 이하까지 폭넓게 확대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지급계획(안)]

(단위: 명, 억원)

구분		인원	예산액	기준
1차 지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36만	48,199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가족이면서 기준 중위소득×72% 이하 가구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50% 이하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285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중위소득 대비 32~50% 이하 부양의무자 조 건 충족 가구
2차 지급	소득하위 70%	3,256만		· 건강보험료 기준(금융·재산소득 확인) 소득하위 70% 이하~차상위계층 이상

주: 1. 행정안전부는 기획예산처로부터 총액 기준으로 예산 규모를 통보받아 지급대상 집단별 예산소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그런데 2차 지급의 경우 소득 수준 확인 등 선별에 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지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80%를 선별에만 45일이 소요되었으며, 2025년에는 1차 지급 후 상위 10%를 구분하여 2차 신청을 접수하기까지 만 64일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소득기준 산정과 선별, 이의신청 처리 등 일련의 행정 과정에도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차 지급 대상자 역시 중동 전쟁에 의한 유가 및 물가의 가파른 상승세로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못지않은 가계 부담을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만큼, 지원금이 적시에 집행되지 못할 경우 지원의 효과성이 제약될 수 있다. 더욱이 2차 지급 대상자가 전체 지급 대상의 90% 이상인 3,256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2차 지급의 신속성이 정책의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유사사업 예산확정 후 신청접수 소요기간]

구분	지급방식	예산확정일	최초신청일	소요일수	비고
재난지원금('20)	전 국민	2020.4.30	5.11	만 11일	선별 불필요 가구당 지급
코로나19 상생지원금('21)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선별지원	2021.7.24	9.6	만 45일	하위 80% 선별 소요, 개인당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25)	1차: 전국민	2025.7.4.	1차:7.21	만 17일	선별 불필요 개인당 지급
	2차: 가구소득 하위 90% 선별지원		2차:9.22	만 64일	하위 90% 선별 소요, 개인당 지급

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당시 하위 90% 선별은 이전에 완료되었으나 1차 신청일이 7월 21일부터 9월 12일임을 감안하여 시차를 두고 9월 22일에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선별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면밀히 정비하여 1차 지급과 2차 지급 간 시차를 최소화하고, 지원금이 신속하고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민생 지원의 체계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나.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대응지방비 추가소요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재정관리 필요 (행정안전부)

(1) 현 황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¹⁾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보장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내국세²⁾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해당 재원의 97%는 보통교부 세, 3%는 특별교부세의 재원이 된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특성상 「지방교부세법」 제 5조제2항³⁾에 근거하여 세입경정이 이루어질 경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액도 조 절될 수 있다.

[보통·특별교부세 개요]

구분		목적	재원	
보통교부세		지자체의 기본 행정수행 경비 보장, 자치단체별 재정력 격차 해소	(내국세의 19.24% 해당액 + 전(전)년도 정산액) × 97%	
특별 교부세	지역현안	보통교부세 산정 시 파악이 어려운 지방 현안 수요 충당	(내국세 19.24% 해당액 + 전(전)년도 정산액) × 3%	40/100
	국가지방 협력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지자체 간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재정 운용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등		10/100
	재난안전	재난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 위한 특별 재정수요 충당		50/100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 1) 코드: 일반회계 1631-300, 1632-300, 1632-301, 1644-300
- 2)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과되는 조세로 관세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소득세(종합, 양도, 근로),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에는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목적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에 대항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3)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계상)
 -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총 63조 6,064억 6,800만원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조 6,793억 4,900만원이 증액된 68조 2,858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4조 5,389억 6,900만원이 증액된 66조 2,373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는 561억 5,200만원이 증액된 8,193억 9,900만원,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는 140억 3,800만원 증액된 2,048억 4,900만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01억 9,000만원이 증액된 1조 242억 4,800만원 규모이다.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보통교부세	60,401,769	61,698,352	66,237,321	4,538,969	7.4
지역현안특별교부세	658,551	763,247	819,399	56,152	7.4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64,638	190,811	204,849	14,038	7.4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823,189	954,058	1,024,248	70,190	7.4
계	62,048,147	63,606,468	68,285,817	4,679,349	7.4

주: 1) 추경은 2026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2) 분석의견

첫째,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는 중동 전쟁에 의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유가상승에 따른 소비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입의 하방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의 21.9%인 5.5조원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지방재정부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정부는 추경재원으로 예상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세입을 증액 경정했으며, 교부세 산정 근거인 내국세 추계액이 본예산 편성 당시 343.9조원보다 24.2조원 증가한 368.1조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입의 일정 비율로 계상되는 지방교부세 정률 분인 보통·특별교부세 또한 이에 연동(「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 하여 증액 편성하였다.

최근 7년간 지방교부세 정률분의 교부 내역을 보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감소 후 2022년 코로나19 회복 국면과 반도체 시장 활성화로 내국세가 증가하여 이전년도 대비 지방교부세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은 세수 결손에 의한 당해연도 미교부·불용 처리가 있었고 2025년과 2026년 역시 이전년도 감정산분 반영으로 지방교부세 규모 증가율이 2026년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다. 인구구조 변화 및 경기둔화 등으로 자체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감정산으로 인해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2020~2026년도 보통·특별교부세 교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합 계	비고
2020	44,926,519	1,389,478	46,315,997	-
2021	51,331,840	1,587,583	52,919,423	-
2022	70,414,236	2,177,760	72,591,996	-
2023	59,519,727	2,062,534	61,582,261	불용액 (보통) 7,168,852
2024	57,793,200	1,787,499	59,580,699	불용액 (보통) 2,050,717 (특별) 63,343
2025	60,401,769	1,646,379	62,048,148	2023년 감정산분 (보통)2,530,082 (특별)299,968
2026	61,698,352	1,908,116	63,606,468	2024년 감정산분 (보통) 2,305,535 (특별)71,386

주: 2020~2025년은 최종교부액, 2026년은 본예산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응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후 자치단체별 재정건정성 확보 노력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지방채 발행액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5년 최종예산 기준 7조 3,961억원, 2026년 당초예산은 6조 913억원 규모로 확인된다.

[연도별 지방채 발행규모 및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

(단위: 억원, %)

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A) ¹⁾	지방채(B)	의존율(B/A)
2020	3,061,095	68,026	2.2
2021	3,275,869	65,332	2.0
2022	3,515,950	37,202	1.1
2023	3,380,044	31,868	0.9
2024	3,521,121	55,556	1.6
2025	3,749,496	73,961	2.0
2026	3,418,710	60,913	1.8

주: 1. 2020~2025년 예산규모 및 지방채는 순계 기준 최종예산액이며, 2026년은 당초예산 기준
 2.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예산규모와 지방채 규모는 각 자치단체별 규모를 임시 계상한 추정치로
 공시 금액(26.4월말 예정)과 상이할 수 있음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계상한 금액이며, 순계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보통교부세의 추가 교부(4조 5,389억원)는 중동 전쟁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대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자체사업 재원 확보에 상당 부문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입 측면에서 2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⁴⁾은 불확실성 속의 하방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민감 세목인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그 배분분인 지방소비세 역시 동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 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역시 경기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주택·토지 거래가 위축되어 세수 확보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더해 최근 DSR 규제 강화와 지방 미분양 현황을 감안할 때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6.01.; 주택산업연구원, 2025.12).⁵⁾

4) 2024년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11개 세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의 22.8%가 취득세, 22.7%가 지방소비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방소득세 17.5%, 재산세 13.2%, 자동차세 6.5% 순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5)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6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및 정책이슈」, 2026.02.; 주택산업연구원 「2026년 주택시장 전망」, 2025.12.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중동 사태 관련 지방세 세정 지원 지침」에 따라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납세자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납세자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단기적으로는 지방세입의 추가적인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세출 측면에서 보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총 26.2조원 중 5.5조원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이를 위한 대응지방비는 약 1.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야별 대응지방비 추계액]

(단위: 백만원)

분 야	지자체보조금 추경예산안(A)	2026 대응지방비 추계(B)	합계 (A+B)
보건·복지·고용	356,832	131,407	488,239
교육	-	-	-
문화·체육·관광	-	-	-
환경	95,600	31,200	126,800
R&D	-	-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9,800	4,200	14,000
SOC	87,708	96,902	184,610
농림·수산·식품	120,728	128,416	249,144
국방	-	-	-
외교·통일	-	-	-
공공질서·안전	-	-	-
일반·지방행정	4,819,910	1,320,103	6,140,013
합 계	5,490,578	1,712,228	7,202,806

자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작성

종합하면,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4.5억원)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 일부 보강될 예정이나,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응지방비 소요가 1.7조원에 달하는 점, 당초예산 기준 지방채 발행분이 6조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자체수입 여건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보다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 여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채 인수 예산을 당초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하였으나 증가분 1,000억원은 2026년 7월 출범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을 위한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해소에는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및 민생안정을 위한 대응 여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별 필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재정 운용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안전부는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특별교부세 중 수시배정으로 지정된 교부세의 조기 집행을 도모하는 한편, 세입경정에 따라 증가된 특별교부세의 집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심의·배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적시에 재원을 활용하여 민생경제 조기 회복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난 5년간(‘21~’25년) 특별교부세는 연례적으로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3월말과 11월말에 해당 재원의 배정이 이루어졌으며, 2026년 역시 본예산에 편성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1,908억 1,1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954억 600만원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9,540억 5,800만원의 50%인 4,770억 2,900만원이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전년도의 실효부일정을 감안하면 수시배정 대상이 된 재원은 11월말에 수시배정이 이루어지고 12월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2026년 특별교부세 수시배정 지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역현안	국가지방협력	재난안전관리	계
2021	예산액	550,982	137,746	688,727	1,377,455
	배정액	-	137,746	339,300	477,046
	비율	-	100%	50%	35%
2022	예산액	681,701	170,426	852,127	1,704,254
	배정액	-	170,426	426,064	596,490
	비율	-	100%	50%	35%
2023	예산액	824,469	206,117	1,030,586	2,061,172
	배정액	-	-	515,293	515,293
	비율	-	-	50%	25%
2024	예산액	740,337	185,084	925,421	1,850,842
	배정액	200,000	185,084	462,711	847,795
	비율	27%	100%	50%	46%
2025	예산액	658,551	164,638	823,189	1,646,378
	배정액	-	164,638	411,595	576,233
	비율	-	100%	50%	35%
2026	예산액	763,247	190,811	954,058	1,908,116
	배정액	-	95,406	477,029	572,435
	비율	-	50%	50%	30%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입경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분에 대해 현재 수요 재조사 중으로 특별교부세 교부 절차상 시·군·구에서 사업계획 수립·교부·신청 후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통해 사업을 선정·교부하는데 약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분에 대해서도 교부시점이 차기 분기 등으로 이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중동 전쟁 상황에 의한 적기 대응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특별교부세가 지방재정 유동성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안정과 민생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기 교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의 추경 증가분에 대한 수요조사와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하반기 배정이 예정된 본예산분에 대해서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재설계 필요(행정안전부)

(1) 현 황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¹⁾은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과 지역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195억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	19,515	19,515	100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이 사업은 「청년기본법」 상 청년(19~34세) 중 미취업자 총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 현장에서 청년이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 대상인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통칭하나 아직 법률적 정의는 없다. 다만 기존 발의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협동조합, 농·수·산림 협동조합, 신협·새마을금고,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연합조직, 그 밖의 대통령령 등록 법인·단체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 중 마을기업, 협동조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한정한다는 방침이며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국고보조율 50%)할 예정이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3131-30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중 미취업자 2,500명 ※ 단, 지방정부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 적용(신안군 등 19~49세) ▫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단체
지원내용	▫ 참여자: 인턴 참여수당(인건비) 인당 월 260.8만원(4대보험료 포함) ▫ 참여사업체: 멘토수당 인당 월 35만원, 운영기관 청년1인당 70만원
법적근거	▫ 「청년기본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제23조제1항
지원기간	▫ 선발일로부터 5개월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국고보조율 5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행정안전부는 2025년 4월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5월 수요조사를 거쳐 금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교육 및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안)]

① 구체적 사업설계 (중앙부처, 전문가)	➔	② 설명회 및 수요조사 (지방정부 등)	➔	② 청년·기업 선발 및 매칭 (지방정부 등)	➔	③ 프로그램 운영 (지방정부 등)	➔	④ 현장점검, 성과평가 (중앙부처, 지방정부)
'26년 4월		'26년 5월		'26년 6월		'26년 7~11월		'26년 12월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2) 분석의견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청년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일경험 지원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사업의 분절적 추진에 의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방식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역할 분담과 조정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을 통해 관련 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사회연대경제 조직 대상별 소관부처 및 조직 현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마을기업법」 (‘26.8.15. 시행 예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협동조합기본법」 및 개별 협동조합법	「벤처기업법」
3,762개	1,726개	962개	(사회적협동조합) 6,499개	2,007개

주: 조직현황(개소 수)는 2024년 말 기준이며 협동조합은 총 26,520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2026년 본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은 14개 (내역)사업²⁾으로 이들 사업에는 운영비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사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일반회계 편성 사업을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의 운영지원비 일부를 지원하면서 사회적기업육성(지특) 사업을 통해 신규 근로자(취약계층) 고용 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일정 비율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자활사업 외에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사업을 통해 인력 운용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기관은 사회복지법인·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해당한다.

이처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 내역사업 형태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과 같이 전체 운영비 또는 프로젝트별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도 해당 사업체가 지원금 일부를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총괄)」, 2025.11., pp.490-521.

[사회연대경제조직 일자리지원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사회적기업육성	도시재생사업 지원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사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	행정안전부
주요내용	경영·판로지원(일 반회계) 및 신규 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지특회계)	내역사업으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단체)별 사업개발지원 및 창업·경영전문기관 운영	마을기업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원 운영비 지원(인건비 20%한도)
예산액	(지특) 32,100	3,579	360	5,250

주: 예산액은 2026년 본예산 세부사업 예산액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다양한 사업들이 각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설계·운영되어 온 결과, 지원 대상과 방식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나 차별성이 부재한 실정이며, 사회적기업의 범주에 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되는 등 각 조직 간 경계가 모호함에 따라 동일한 조직이 여러 사업의 수혜대상이 되거나 유사·중복 사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사업대상이 중복될 경우 직접적인 인건비 보조 방식의 사업과 운영비·프로젝트 경비 지원 방식의 사업이 혼재하면서, 수혜 조직 입장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어느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며, 지원의 효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 이번 추경안에도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에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유형이 신설되었는데, 사업 대상이 사회적 기업이며 청년이 해당 사업체에 가서 6개월 이내에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의 범주 안에는 상당수의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이 포함되는데 이들 사업체에서 일경험을 제공한다는 점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참여사업체에 멘토수당을 지급하고 중간지원조직에 운영관리비를 지원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다만, 참여수당으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수준, 지원기간, 사업방식은 상이하다.

[2026년 제1회 추경안 청년 일경험 관련 사업 비교]

구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회적 가치형 일경험 지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시범사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2조,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8조, 제12조	「청년기본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제23조제1항
사업대상	19~34세 미취업 청년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 일부 포함)	19~34세 미취업 청년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지원내용	청년 : 참여수당 월 170만원(주 30시간) 멘토수당 및 운영비 월 40만원	청년 : 참여수당 월 260.8만원 (주40시간, 4대 보험료 포함) 멘토수당 및 운영비 월 49만원
지원기간	3개월	5개월
사업방식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원규모	1,000명	2,500명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추가경정예산 사업 추진 시 중복 수혜 방지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동일 대상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유사 사업의 추진 주체가 다르고 지원 수준이나 기간만 차이가 있다면,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제약되어 정책대상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동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기존 사업들과의 유사·중복성과 파편화된 관리체계의 한계가 더욱 가시화될 가능성이 다. 따라서, 사업 주체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통합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여 지원 대상·방식·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대상자가 사업 취지와 신청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성화 목표와 관련하여 정책대상인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단체의 실질적 정책 수요와 조직 지원을 위한 단기 인턴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므로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참여자의 인건비 소요 전액과 멘토수당 및 운영경비를 해당 사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 자치단체 경상보조 19,365백만원
 - 청년 참여수당(인건비) $2,500\text{명} \times \text{월 } 260.84\text{만원} \times 5\text{개월} \times 50\% = 16,303\text{백만원}$
 - ※ 참여수당 월 234만원, 4대 보험 포함 시 약 260.84만원
 - 기타지원비(멘토수당 및 운영비 등) $2,500\text{명} \times 49\text{만원} \times 5\text{개월} \times 50\% = 3,062\text{백만원}$
- ▣ 사업운영비 150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그런데 이 사업이 사회연대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의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나 이러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전국 1,726개소의 마을기업 연간 총매출액은 약 3,070억원(2024년 말 기준)으로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연 매출 5천만원 이하의 영세한 규모이며 상용근로자 수 또한 업체당 평균 10인 이상인 서울·제주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2인 미만이다. 1~2인의 상시 인력이 필요에 따라 마을주민들과 협력하여 소규모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영세 조직이라는 특성상,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외부에서 투입되는 사업 참여자가 해당 조직의 운영 역량 강화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지원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협동조합 역시 전체 협동조합의 평균 매출액이 3.7억원 수준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관 부처의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를 제외하면 비슷한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2~2024년 마을기업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2022			2023			2024		
사업체수	근로자수	평균 근로자수	사업체수	근로자수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	사업체수	근로자수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
1,770	3,171	1.79	1,800	3,189	1.77	1,726	3,167	1.8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더불어,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기획재정부, 2024)을 비롯한 관련 실태조사와 학술연구 등에 따르면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운영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애로사항은 ‘자본 조달의 한계’, ‘판로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 ‘전문 경영 역량 부족’, ‘의사결정의 지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³⁾ 관련 기업체의 역량과 성과 간 관계를 밝힌 실증연구⁴⁾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의 만족도와 마을기업의 판로개척 및 고객관리 역량 등이 조직의 성과에 가장 유의미한 성과를 나타낸다고 밝히긴 바 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이 직면한 구조적 고충과 현장의 실질적 정책 수요를 반영한 정교한 사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태 분석 없이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 중심의 일방향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조직 역량 강화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및 수요 파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설계에 반영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에게 유의미한 일경험을 제공한다는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규 일자리 중심의 인건비 제공 및 사업체 자부담률 설정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경과적 일자리가 되도록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3) 기획재정부(2024).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애로실태 조사」; 충남연구원(2021). 「2021충남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4) 유수동·윤필환(2024). 마을기업의 역량과 만족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혁신기업연구, 9(4), pp.107-129; 백진숙(2022). 「마을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연구」, 34, pp.81~104.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일경험을 제공한다는 정책적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기 노동력 제공을 넘어 청년에게 경력 개발과 사회적 가치 체험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계획 상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

동 사업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별 특성에 따라 청년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데, 대상 사업체의 특성과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일경험사업의 조건과 비교할 때 청년층의 입장에서 유인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마을기업을 예로 들면, 1,726개소 중 1,160개소가 영농조합 및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서비스 유형별로는 지역특산물을 포함한 식품판매업이 전체의 56.7%를 차지한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계획 구체화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선발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이나, 해당 지역의 경우 농수산물 및 식품 판매업종 비중이 73.1% 이상으로 업종 편중도가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 및 장류 판매, 마을카페 운영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있어, 청년 참여자에게는 단순 제조·서빙·판매 보조 등 분절적·저숙련 직무 위주의 업무 구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대 노동시장의 수요 및 청년층이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경력 형성 경로와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아울러 특정 업종으로의 편중으로 인해 청년의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6년 3월 31일 기준 청년정책플랫폼⁵⁾에 등재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738개이며, 이 중 대상을 모집 중인 일경험 사업이 68건으로 확인된다. 동 사업이 사회연대경제 현장 참여라는 가치만으로는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력 연계 가능성 및 직무 매력도를 차별화하여 사업 설계 단계에서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5) 온통청년 누리집: <https://www.youthcenter.go.kr>(자료검색일:2026.03.31.)

[마을기업 업종별 현황(2024.12.기준)]

(단위: 개, %)

구분	합계	일반식품	관광체험	전통식품	공예품	교육	문화예술
개소수	1,726	769	235	209	87	87	89
비율(%)	100	44.6	13.6	12.1	5	5	5.2
구분	재활용	유통기업	의류신발	물류배송	사회복지	에너지	기타
개소수	25	26	17	5	19	2	156
비율(%)	1.5	1.5	1	0.3	1.1	0.1	9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현 사업설계에 따르면 5개월간 일경험을 하는 청년의 인건비 전액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양질의 직무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해당 사업체 상용근로자에게 멘토수당을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업체가 신규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단기로 고용하던 인력의 인건비를 정부지원금으로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또한 일괄 지급하는 멘토 수당으로는 실질적 직무교육 및 경험 제공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워 참여 청년이 단순노무에 편중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상사업체 유형 중 비중이 높은 소규모 마을카페 등 영세사업장의 경우 기존 임시직을 정부 지원인력으로 대체할 유인이 높고, 인력 구조 특성상 직무교육보다는 단기 단순 노무 위주 인력 운용에 그칠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사업들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하여 일정 수준의 자부담률을 설정한 조건 하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대상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는 참여 사업체가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정부 지원금으로 단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업무 수요에 기반하여 적정 인원을 신규 고용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존 인력 외 신규 일자리에 대해 일정분을 지원하고, 사회적가치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함과 동시에 해당 인건비의 일부는 기업에서 부담하게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자리·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방식 비교]

(단위: 개, %)

구분	사회적기업 육성 (일반인력 지원 사업)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시범사업
대상 사업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협동조합 10인이하 비영리법인·단체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일정 비율 지급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인턴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일정 부분 지원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채용한 청년인턴 인건비 전액 지원
인건비 지원 비율	지원 비율 차등적용 (기본) - 일반기업 월 50만원 - SVI우수 월 70만원 - SVI탁월 월 90만원 * 고용유지기간에 따라 추가인센티브 지급	(국내인턴형) 월 50만원 (ESG형)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기업 50% 매칭	월 260.84만원 (4대보험료 포함)
지원 기간	지원약정일로부터 12개월, 1년 단위 재심사, 최대 지원기간 5년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따라 상이	5개월
지급 방법	근로자 인건비 지급 확인 후 월별 사후지원	근로자 인건비 지급 확인 후 월별 사후지원	미정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제작됨

동 사업 역시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 사업체의 자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참여 기관의 책임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회연대경제 조직 유형별 직무 특성을 세분화하여 경력개발 가능성이 높은 과업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청년의 경력 형성과 노동시장 진입으로 이어지는 경과적 일자리로서 사업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원 측면에서 지원대상의 실질적 정책수요와 단기 인턴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한편, 청년에 대한 일경험 제공 측면에서 사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유의미한 경과적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회경제조직의 인력 운용지원에 대한 사업의 파편화에 따른 비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개 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4조 1,808억 6,6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8조 4,398억 2,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84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총수입 ·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문화체육관광부	총수입	4,014,214	4,180,866	4,180,866	-	-
	총지출	7,254,143	7,855,547	8,439,823	584,276	7.44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은 총 5개이며, 이 중에서 신규로 편성된 과목은 2개이다.

주요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① 이번 추경안의 재원 마련을 위한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추가 회수로 1,303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② 관광사업체 용자지원, 숙박할인권 지원 등 이번 추경안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예수금 2,440억원이 증액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국민체육진흥기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	150,000	280,395	130,395	86.9
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전입금	367,707	390,871	466,676	75,805	19.4
관광진흥개발기금	기금전입금	-	-	101,410	101,410	순증
	기금예수금	-	-	244,000	244,000	순증
영화발전기금	기금전입금	64,497	96,300	150,890	54,590	56.7
합계		432,204	637,171	1,243,371	606,200	95.1

주: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24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1개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상황 발생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산업 용자지원(용

자) 사업에 2,8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술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예술산업금융지원시범사업(융자)에 5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청년콘텐츠 펀드를 추가 조성하기 위하여 5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현계확액(A))	추경안(B)	(B-A)	(B-A)/A
일반회계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44,278	63,214	65,806	2,592	4.1
	K-콘텐츠 펀드 출자	370,000	430,000	480,000	50,000	11.6
	예술창작활동 지원	23,360	32,598	34,094	1,496	4.39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82,770	89,022	89,722	700	0.79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63,616	51,850	60,750	8,900	17.2
	국민문화활동지원	27,435	23,846	28,629	4,783	20.1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100,000	110,000	185,805	75,805	68.9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	-	101,410	101,410	순증
	영화발전기금 전출	60,000	95,000	149,590	54,590	57.5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술산업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	20,000	70,000	50,000	250
	예술창작 지원	64,677	69,118	73,118	4,000	5.8
	예술인력 육성	22,358	23,897	27,822	3,925	16.4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18,000	28,000	60,000	32,000	114.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907	780	1,560	780	100
	문화예술 향유지원	290,581	327,638	332,738	5,100	1.6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현계획액)(A)	추경안(B)	(B-A)	(B-A)/A
관광진흥 개발기금	국내관광 역량강화	106,879	64,193	81,633	17,440	27.2
	관광산업 융합지원 (융자)	593,500	644,066	924,066	280,000	43.5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57,370	48,348	78,948	30,600	63.3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13,124	14,269	19,939	5,670	39.7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14,993	15,617	17,317	1,700	10.9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	63,694	104,474	114,474	10,000	9.6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53,523	49,026	52,686	3,660	7.5
	예수이자상환					
영화발전기금	영화 창작작 지원	21,710	40,929	79,419	38,490	94.0
	영화정책지원	43,680	28,099	64,199	36,100	128.5
합계		2,136,455	2,373,984	3,193,725	819,741	34.5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현계획액을 기재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가. 관광사업체 용자지원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 및 조속한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문화체육관광부)

(1) 현 황

관광사업체 용자지원 사업¹⁾은 관광사업체에 대한 용자를 통해 관광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6,375억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최근 중동 전쟁상황 발생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800억원이 증액된 9,175억원이 편성되었다.

[관광사업체 용자지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수정 ¹⁾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관광산업 용자지원(용자)	593,500	644,066	924,066	280,000	43.5
관광사업체 용자지원	586,500	637,500	917,500	280,000	43.9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분석의견

첫째, 관광사업체 용자지원 사업은 2010년 이후 최대 규모 수준인 점, 특별재난지역 등에 대한 과거 용자실적 등을 살펴볼 때 용자금이 연내에 전액 집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48개 업종의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2026년 1분기 기준 2.96%)를 적용하여 시설 및 운영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금의 용도에 따라 건설은 최대 150억원, 개보수는 80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7-300의 내역사업

억원, 운영자금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중견기업 및 특급호텔에는 지원 비율과 한도를 축소하여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도모한다. 또한, 중저가 숙박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는 일반 시설보다 연장된 거치·상환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관광사업체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저리 융자지원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48개 관광사업 업종 등(시설확충·운영자금)

- (취급은행) 산업은행 등 13개 은행

- (지원범위)

· 건설 : 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이내(중견기업·특급호텔 70%, 75억)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이내(중견기업·특급호텔 70%, 40억)

· 운영자금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선정(30억원 이내)

- (지원시기) 연 2회 지침공고(6월, 12월), 분기별 접수

- (대출금리) 재경부 고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6.1분기 2.96%)

구분		대출금리
대·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공공법인·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 (대출기간)

구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 자금	신축	1~3성급 호텔, 호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신설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원 이상의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증축	대규모 투자시설	
	증설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성급 호텔, 호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의 2026년 당초 계획액은 6,375억원으로, 분기별로는 1분기에 전체의 약 29%인 1,875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각각 1,500억 원씩 균등하게 배정되었다.

연도별 용자 총계는 2020년 6,400억 원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 4,417억 원으로 감소한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에는 5,865억 원을 기록하였다. 연간 지원 규모는 약 500억~700억 원 수준이며, 여행업 부문은 중소기업 이하의 영세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지난 6년간 대·중견기업에 대한 용자는 총 3개 연도에 걸쳐 1개 사씩만 이루어졌다.

[관광사업체 용자지원 사업 용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용자총계	6,400	4,417	4,725	4,464	5,365	5,865
운영자금	4,164	2,136	2,005	2,031	2,624	3,443
여행업(평균)	1,438(0.75)	528(0.79)	645(0.94)	551(1.94)	582(1.66)	693(1.22)
대·중견기업 (개소)	10 (1)	-	-	17 (1)	-	7 (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근 중동 전쟁 상황 발생으로 인해 여행사들에 중동 및 유럽 노선의 대규모 환불과 취소 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관광사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용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총 규모는 2,800억원으로, 중동 사태 등으로 경영상 타격을 입은 1,150개 관광사업체에 총 2,300억 원을 배정하여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해소를 도모하고 있으며, 250개 관광 스타트업에도 총 500억 원을 지원하여 신생 기업의 생존력과 혁신 동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출내역]

①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 ('26) 637,500백만원 → ('26추경) 917,500백만원, 280,000백만원 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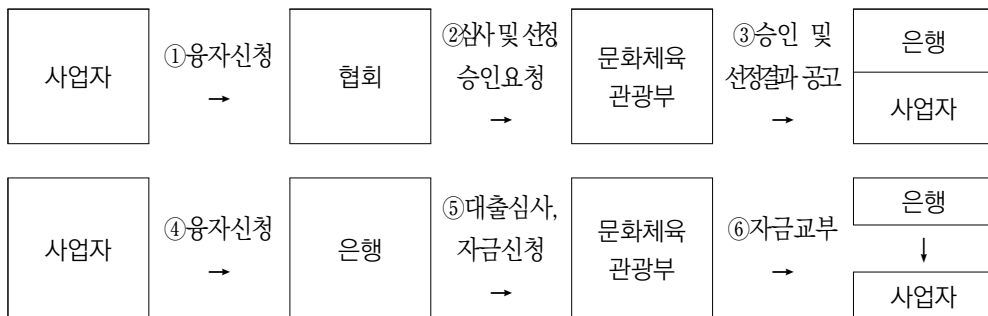
- 중동사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지원 230,000백만원
 - 중동사태 피해 관광업종 운영자금 지원 230,000백만원(2억원 × 1,150개 업체)
- 스타트업 운영지원 50,000백만원
 - 스타트업 운영지원 50,000백만원(2억원 × 250개 업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사업계획안은 2026년 3월 말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문체부는 대출 기간, 융자 조건 등은 기존 융자와 동일하나, 추후 집행 전 융자 조건 등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융자 절차를 살펴보면 운영자금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17개 시·도 관광협회, 한국여행업협회 등 업종별 관광협회에 융자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융자가 필요한 사업자가 협회에 융자를 신청하면, 협회는 서류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문체부에 통보하고, 문체부는 이를 심사하여 소요예산 범위 내 업체별 융자지원액을 확정하고 공고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는 확정된 융자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중은행에 융자신청을 하고, 시중은행은 대출심사 후 문체부에 자금 대하를 신청하여 자금이 배정되면 은행은 사업자에게 융자금을 대출한다.

[사업 집행절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집행률은 양호한 편으로, 2022년에는 527억 8,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이 90.0%에 머물렀으나, 2023년에는 불용액을 1억 6,400만 원으로 최소화하며 99.9%의 집행률을 기록하였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이월이나 불용 없이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 100.0%의 집행률을 달성하였다.

[최근 4년간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당초	수정					
2022	649,000	525,400	525,400	472,616	-	52,784	90.0
2023	446,500	446,500	446,500	446,336	-	164	99.9
2024	536,500	536,500	536,500	536,500	-	-	100.0
2025	586,500	586,500	586,500	586,500	-	-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같이 100%에 달하는 집행률은 관광업계의 융자 자금 수요가 기존에 편성된 당초 계획액 규모를 완전히 소진할 만큼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융자 재원이 현장의 대기 수요를 소화하기에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동 전쟁 상황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긴급한 유동성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사업체의 피해 최소화 및 경영 안정화라는 본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편성이 타당한 방향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관광 부문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로 할인 소비쿠폰 지급 등 수요 진작 중심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졌으나, 현재 중동 지역은 실제 전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발령 기준에 따라 관련 국가 대다수가 출국 권고 또는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비쿠폰을 통한 수요 유인책을 전개하더라도 국민 안전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이 원천 차단되어 있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단기적인 소비 진작보다는, 대규모 환불 및 취소 사태로 즉각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관광사업체에 직접적으로 운영자금을 수혈하는 이번 융자지원 규모 확대는 현재의 재난 특성에 부합하는 현실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중동 국가 해외안전정보]

(2026. 3. 31. 기준)



자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s://www.0404.go.kr/ntnSafetyInfo/list>)

그런데 과거 2010년 이후 시행된 특별용자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이번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한 용자금의 연내 전액 집행 여부가 다소 불투명할 수 있다. 2016년 추경 관련 특별용자(114.8%)나 2017년 중국 관광객 감소 대응 특별용자(257.4%)처럼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집행된 사례도 존재하지만, 2010년 일자리 창출 특별용자(8.4%), 2014년 경제활성화 긴급용자(9.5%), 2019년 강원지역 산불 관련 특별용자(7.7%) 등 실제 집행 실적이 계획액의 10% 내외에 그친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 결과, 해당 기간 진행된 14건의 특별용자는 지원계획 총 8,870억원 중 6,837억원이 집행되어 평균 집행률이 77.1%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0년 이후 관광산업 특별용자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억원, %)

지원연 도	건명	지원 계획 (A)	선정		집행		집행률 (B/A)
			업체	금액	업체	금액 (B)	
2010	일자리 창출 특별용자	500	15	397	7	42	8.4
2011	구제역 피해관련 특별용자	100	94	89	66	61	61.0
2013	일본 인바운드여행업체 지원	100	11	97	7	50	50.0
2014	세월호관련 특별용자	500	575	1,758	364	377	75.4
2014	경제활성화 긴급용자 지원	920	29	375	16	87	9.5
2015	메르스 관련 특별용자 지원	900	730	1,883	404	482	53.5
2015	추경 관련 특별용자	2,300	523	3,521	321	1,555	67.6
2016	추경 관련 특별용자	1,200	373	2,379	236	1,377	114.8
2017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른 운영자금 특별용자	500	438	2,288	250	1,287	257.4
2017	추경 관련 특별용자	600	222	1,195	132	585	97.5
2018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용자	300	250	1,709	102	300	100.0
2019	강원지역 산불관련 특별용자	300	4	64	2	23	7.7
2019	일본수출규제 여행업 특별용자	150	70	258	52	153	102.0
2025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용자	500	140	584	105	458	91.6
2025	산불피해지역 특별용자	150	-	-	-	-	-
2026(안)	중동 전쟁에 따른 관광사업체 특별용자	2,800	-	-	-	-	-
합계		11,820	3,474	16,597	2,064	6,837	77.1 ¹⁾

주: 1) 평균 집행률은 아직 용자가 시행되지 않은 2025년 산불피해지역 특별용자와 2026년 특별용자 제외 후 산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일반 운영자금 용자와 달리 특별용자는 환불·취소 내역 및 매출 하락 등 까다로운 피해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단계에서 시중은행의 여신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대출이 무산되는 병목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중동 전쟁 관련 용자 역시 일반 용자의 높은 대기 수요만으로 100% 집행을 낙관할 수 없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 기업 및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 발굴, 취급 은행과의 긴밀한 대출 심사 기준 협의 등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사업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용자지원 규모 확대는 긴급 편성으로 인해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세부 용자 조건 등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번 용자지원 규모 확대는 중동 전쟁 상황에 대응하여 긴급하게 편성된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인 만큼,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등 세부 기준의 구체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대규모 환불 및 취소 사태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중동·유럽 지역 관련 피해 업종으로 대상을 한정할 것인지, 혹은 유가 상승 및 항공료 인상 등으로 전반적인 타격을 입은 관광사업체 전체를 포괄하여 지원할 것인지 등 지원대상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피해 입증 절차 및 금리 우대 등 세부적인 조건을 구체화하여 사업계획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의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 업종 및 용자 요건을 신속히 확정하고, 긴급 유동성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면밀한 사업관리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문화체육관광부)

(1) 현 황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²⁾은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술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200억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추가로 500억원이 증액된 700억원이 편성되었다.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수정 ¹⁾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	20,000	70,000	50,000	250.0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2026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편성되어, 예술산업 분야 사업체³⁾를 대상으로 대출 원금을 은행 대여 후 지원하는 대리대출 방식을 통해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로 하고 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2)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1633-314

3) 문학, 미술, 음악,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의 예술 분야에서 예술작품 및 예술상품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업체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공연장·미술관 등 민간 예술시설업체와 예술작품 기획·제작·유통 등 서비스업체
- **(용자분야)** 시설자금, 운전자금
 - *시설자금: 예술 분야 시설의 신·증축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예술 분야 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
- **(지원방식)** 대출 원금을 은행 대여 후 지원
- **(용자이율)** 공공자금관리자금 용자계정 변동금리('26년 1분기 2.96%)
 - *가산·우대금리: (중견기업 이상) 가산금리(+0.04%p), (중소기업) 우대금리(-0.21%p), (청년기업) 2.5% 고정금리
- **(취급기관)** 시중은행
- **(용자조건)** 용자대상별 한도액,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상이

용자대상	분야	한도액	상환기간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 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	30억원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5억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기타 예술서비스업체	시설자금	10억원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5억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원대상 문화예술사업체 장르별 현황]

(단위: 개, 명, 억원)

구 분	합 계	공연예술	미술	문학	예술일반 ¹⁾
사업체수	116,092	52,300	47,703	13,329	2,760
종사자수	228,275	103,166	90,200	27,760	7,149
매출액	261,649	130,253	90,225	27,348	13,823

주: 1) 예술 마케팅업, 예술저작권 위탁·관리업, 예술 교육 매개 서비스업, 기타 예술 일반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

자료: 2024 예술산업 특수분류체계 시범조사 연구('25.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동 사업의 당초 2026년 기금운용계획은 98개 사업체에게 2억 500만원씩 대출금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2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지원대상 규모를 342개 업체로 확대하기 위하여 500억원이 증액된 7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6년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당초 계획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1회 추경안)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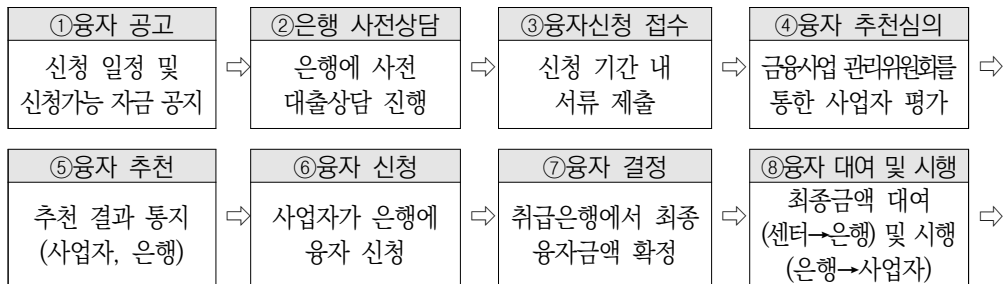
당초 계획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1회 추경안)
- 예술기업 금융지원 융자금 20,000백만원 - (산출근거) 98개 사업체 × 205백만원	- 예술기업 금융지원 융자금 70,000백만원 - (산출근거) 342개 사업체 × 205백만원 (+500억원 증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집행절차를 살펴보면, 융자 공고 후 사업자는 본격적인 신청에 앞서 취급은행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상담을 진행 후 융자를 접수하고, 금융사업 관리위원회가 신청 사업자에 대한 평가 및 융자 추천 심의를 수행한다.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으로 최종 추천이 결정되면, 그 결과는 해당 사업자와 취급은행 양측에 모두 통지된다. 추천 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취급은행에 정식으로 융자를 신청하면, 은행의 자체적인 여신 심사 기준에 따라 최종 대출 금액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 주체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취급은행으로 해당 금액을 대여하고, 은행이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대출을 시행한다.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지원절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분석의견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직 실제 대출 실적이 부재한 시범사업에 500억 원의 대규모 기금계획 변경안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연내 집행의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예산의 이월 및 불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동 사업은 예술산업 사업체 대상으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운전자금(제작 및 기획)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예술산업의 초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갖춘 예술 경영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년 예술분야 창업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총 46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인 대출 희망 규모를 살펴보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45.8%, '1억원 미만'이 41.5%를 차지하여, 대다수의 예술기업이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향후 운전자금 대출 신청계획 및 신청 금액 규모]

(단위: 개, %)

전체(개)	1억 미만	1~3억원	3~5억원 미만	5~10억원	10억원 이상	계(%)
465	41.5	45.8	8.4	2.2	2.2	100

주) 「2025년 예술분야 창업기업 공모사업」 신청기업 대상 조사에 참여한 1,252개 기업 중 향후 1년간 운전자금 대출 신청계획이 있는 기업(465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동 사업의 2026년 당초 계획액은 단 98개 사업체만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산정되어, 확인된 현장의 대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었다. 예술산업은 타 산업군에 비해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고 영세한 사업체가 많아, 정부 보조금 외에는 제도권 금융을 통한 자체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고, 최근 중동 지역 전쟁에 따른 고유가 등으로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안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 대상을 342개 업체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정책 사각지대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예술기업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 금융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산업 전반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또한 '2024 예술산업 특수분류 체계 시범조사 연구'에 따르면 매출 3억 원 이상, 종사자 수 5인 이상 예술기업은 총 11,973개로, '2024년 예술산업 금융지원 연구'에서 산출한 융자 희망 예술기업 비율(52%)과 융자 희망금액별 기업 비율을 고려하면 예술산업 융자 잠재수요는 총 1조 1,64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1~2월 용자 공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취급은행을 선정 후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4월 7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은 후 6월까지 1차 용자금을 대여한다는 계획이다.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2026년 사업 추진일정]

기간	추진일정
1~2월	- 취급은행 모집 공고 - 취급은행 선정 및 협약 체결 - 용자 공모 추진 계획 수립 - 금융사업 관리위원회 구성
3~6월	- 용자사업 공모(1차) 추진 - 용자사업자 추천(1차 관리위원회 소집) - 용자금 대여(1차)
7~9월	- 용자사업 공모(2차) 추진 - 용자사업자 추천(2차 관리위원회 소집) - 용자사업 FAQ 정리 - 용자금 대여(2차)
10~12월	- 결과보고서 취합 - 사업종료 및 결과보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동 사업은 2026년 처음 시작한 시범사업으로 현재 용자 신청 접수 및 용자사업 공모 등 사전 절차만 진행 중일 뿐, 아직 실제 대출이 시행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용자 자금에 대한 현장의 실제 수요, 대출 대상 예술업체의 상환 능력 등 실적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다.⁵⁾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당초 계획액의 2.5배에 달하는 500억원을 기금계획변경안으로 대규모 증액 편성한 것은 연내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다. 계획된 추진 일정에 따르면 3~6월 사이 대출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시중은행의 엄격한 대출 심사, 영세 예술기업의 담보 여력 부족, 약정 체결 지연 등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 실제 용자금 대하 및 대출 실행이 지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5)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3월 13일 공모 개시 이후 상담 건수가 240여 건에 이르는 등 예술사업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추정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방지하고 당초의 편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출 심사부터 실제 용자 시행까지의 행정 소요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집행 현장의 장애 요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사업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사업 초기에 대규모 기금 변경안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면밀한 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사업에 있어 시범사업은 본격적인 대규모 예산 투입에 앞서 사업을 사전 운영해 봄으로써, 제도의 타당성, 집행 상의 문제점, 정책적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이를 환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도출된 대출 상환율, 연체율, 실제 자금 수요 충족 여부 및 예술기업의 경영 개선 효과 등 객관적인 성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면밀한 평가를 거친 후, 본사업으로의 전환 여부와 적정 사업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동 사업은 2026년 신규 편성되어 아직 최초의 용자금 대출조차 실행되지 않은 극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당초 계획액(200억원)의 2.5배에 달하는 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 재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시범사업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본사업 수준의 대규모 예산이 사업의 실효성 검증 이전에 선제적으로 투입되어 사업이 급격히 확대 및 가속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충분한 실적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규모가 조기에 확대되고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취급은행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원 대상 예술기업의 대출금 집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용자 지원이 실제 예술산업의 자생력 제고와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 효과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향후 이러한 종합적인 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객관적인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동 사업의 본사업 전환 및 지속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본사업으로 전환 시 재정 여건 변화 등에 흔들림 없이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재정용자사업이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반면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은 사업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동 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와 달리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기금의 목적 외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재정 운용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과 용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전제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용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⁶⁾ 문화예술산업 사업체에 대한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대한 용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예술산업 사업체에 대하여 자금을 용자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르면 용자사업의 경우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⁷⁾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중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6)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용자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7)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p. 273

기금의 용도와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명문화한 현행 조문 체계상 새로운 용자 대상 범주를 추가하려면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한다.

따라서 문체부는 예술산업 금융지원의 근거가 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법적 근거 마련 하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⁸⁾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정용자사업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용자, 관광산업 용자 및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사업이 있으며, 각 사업별로 개별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한 예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5호의2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에서는 이 용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⁹⁾

관광산업 용자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¹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¹¹⁾에 따라 기금이 관광사업 등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 용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서 체육용구 생산업, 체육시설 설치·운

8)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근거 마련을 포함한 「문화예술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9)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용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법 제5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해외지사 설치

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3.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4.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 등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5.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조성

6. 관광 관련 국제기구의 설치

영업, 체육 관련 용역업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²⁾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정융자사업 현황 및 법적 근거]

회계	사업명	법적 근거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금융지원(융자)	국민체육진흥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향후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재정 여건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향후 본사업으로 전환 시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 목적 및 재원의 출처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12)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1.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
2.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
3.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다. 4대 분야 할인쿠폰 사업 분석(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을 통해 영화·공연예술·숙박·휴가의 4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제공을 추진하고자 하는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안에 이를 위한 비용 총 586억원을 증액 반영하였다.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따른 4대 분야 할인쿠폰 사업 개요]

구 분	영화	공연	숙박	휴가	합 계
내용	1회당 6천원 할인	1회당 1만원 할인	1박당 2~3만원 할인 (연박 5~7만원)	휴가비 50% (최대 20만원)	-
인원	신규 600만명	신규 50만명	30만명	7만명	687만명
예산	361억원	51억원	112억원	62억원	586억원

자료: 기획예산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 3.

다-1.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공연예술관람료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1) 현 황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¹³⁾은 국민 영화관람 문화 활동 진작을 통한 민간 소비 활성화 및 영화관람 수요 확대에 따른 영화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2026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361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공연예술관람료지원 사업¹⁴⁾은 일반 국민의 공연예술 접근성과 문화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국공립·민간 공연장의 유료 관객 수 증대를 유도하여 공연 예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6년 3월 국회에 제출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51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3) 코드: 영화발전기금 1261-302의 내내역사업

14)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1765-301의 내역사업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공연예술관람료지원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수정 ¹⁾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영화정책지원	43,680	28,099	64,199	36,100	128.5
영화정책지원	30,060	3,006	39,106	36,100	1200.9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27,100	-	36,100	36,100	순증
문화예술향유지원	290,581	327,638	332,738	5,100	1.6
공연예술관람료지원	5,100	-	5,100	5,100	순증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분석의견

첫째, 영화 관람·공연예술 쿠폰 사업은 기존 추경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회 추경안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관람과 관련하여 영화·공연 관람 쿠폰을 각각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 방식을 보면, 영화 쿠폰은 전국 영화관을 대상으로 6천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쿠폰 600만 장을 배포하며, 공연 쿠폰은 연극·뮤지컬·클래식 등의 예매 시 1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50만 장을 지원한다. 쿠폰은 선정된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발급되며 1인당 각 예매처별로 2매씩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영화 관람·공연 예술 쿠폰 사업 개요]

구 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공연예술관람료지원
지원내용	전국 영화관에서 영화관람 시 관람료 6천원 할인	티켓 예매처에서 공연 예약시 1만원 지원 * 사용 조건 없이 정액 지원
지원대상	영화관 상영 영화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복합, 서커스/마술 (대중음악, 대중무용 제외)
지원단가	6천원	1만원
발급규모	600만장	50만장
계획안	361억원 (할인지원금 360억원, 사업운영비 1억원)	51억원 (쿠폰발행비 50억원, 운영홍보비 1억원)
지급방식	- 영화관별 지원금 배분→영화관별 온라인 할인쿠폰 발급 - 소규모 비계열 영화관: 현장발권 시 즉시 할인	온라인 예매처 5곳을 통한 쿠폰 지급
발급 및 사용시기	2026. 5~12월	2026. 6~11월
1인당 발급한도	영화관별 1인 2매	예매처별 1인 2매 (1인당 최대 10매 사용 가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는 국민의 문화소비를 촉진하여 관련 업계의 자생력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 유사한 쿠폰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 영화 쿠폰은 2020년 기금 자체변경 및 제3회 추경을 통해 280만장, 2021년 제2회 추경을 통해 167만장을,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450만장을 발급하였으며, 공연예술 쿠폰의 경우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180만장을,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50만장을 발급하였다.

발급된 쿠폰의 실제 사용 실적을 살펴보면, 영화 쿠폰은 897만장 중 865만장(96.4%)을 사용하였으며, 공연예술 쿠폰은 230만장 중 53.8만장(23.4%)을 각각 사용하였다.

[2020년 이후 유사한 쿠폰 사업 추진 내역]

구 분	영화			공연예술		
	2020년 기금변경 및 제3회 추경	2021년 제2회 추경	2025년 제2회 추경	2020년 제3회 추경	2021년 (‘20년 이월분)	2025년 제2회 추경
지원단가	6,000원			8,000원		10,000원
발급규모	280만장	167만장	450만장	180만장		50만장
발급 및 사용시기	2020.6.4~6.28. 2020.8.14~8.17. 2020.10.30~11.23.	2021.11.1. ~12.31.	2025.7.25~9.2. 2025.9.8~10.31.	2020.10.22. ~11.23.	2021.5.18. ~12.5. ¹⁾	2025.8.8~9.19. 2025.9.25~12.31.
사용실적	243만장 (36.5만장 이월)	166만장 (+이월분 36만장)	456만장 ²⁾	5.1만장	15.1만장	33.6만장

주: 1) 온라인 공연 지원은 2021.5.18.~12.5., 오프라인 공연지원은 2021.11.1.~12.5.

2) 6천원 미만 할인 존재로 발급규모 대비 사용실적 높음(예: 실버영화관 2천원 티켓가에 1천원 할인 적용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각 사업의 실행 현황을 살펴보면, 영화쿠폰의 경우 계획대비 집행률이 2020년 87.1%, 2021년 99.5%, 2025년 99.9%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연 예술 쿠폰의 계획현액 대비 실행률은 2020년 8.9%, 2021년 11.3%, 2025년 70.7%인바 실행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다.

[2020~2025년 영화 쿠폰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2020	-	17,823	-	17,823	15,519	2,235	69	87.1
2021	-	10,000	2,235	12,235	12,178	-	57	99.5
2025	-	27,100	-	27,100	27,068	-	32	99.9

주: 영화쿠폰 사업은 영화발전기금의 운용 주체인 영화진흥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실행이 아닌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0~2025년 공연예술 쿠폰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부처			보조사업자(예술경영지원센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전년도 0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B/A)
								예산 현액	집행액			
2020	-	15,880	15,880	15,880	-	15,880	1,415	15,880	1,415	14,465	-	8.9
2021	-	-	-	-	14,465	14,465	1,639	-	-	-	12.826	11.3
2025	-	5,100	5,100	5,100	-	5,100	3,604	5,100	3,604	-	1,496	70.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및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쿠폰의 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되는바, 현재 상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다만, 동일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영화 쿠폰과
공연 쿠폰의 집행 실적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근 유사 사업 수행 시
미흡했던 점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함으로써 사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온라인 예매 중심의 발급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디지털 소외'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의 혜택이 대다수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제공됨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PC 활용에 익숙한 청년층에 혜택이 편중되고 고령자 및 정보 취약계층의 이용은
제한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쿠폰의 경우 종합 콜센터를
운영하여 안내를 돕고, 영화 쿠폰은 소규모 비계열 영화관(전체 10%) 현장 할인 적
용 및 멀티플렉스 내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 현장 할인 예외 적용 등을 협의 중이
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보완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관리하는 한편,
극장 매표소 등 현장 창구에서 직원이 대면으로 온라인 쿠폰 발급을 직접 보조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오프라인 지원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지역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내 전체 공연 시설의 과반이 수도권(서울 35.2%,
경기·인천 16.7%)에 밀집해 있어,¹⁵⁾ 비수도권 거주민들은 할인쿠폰을 사용할 물리
적 기회 자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거주 지역에 따른 실질적인 혜

15)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25년 공연예술조사(2024년 기준)」, 2025.12.

택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 거점의 공연장 정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거나 쿠폰 결제가 가능한 고품질 공연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는 등의 대안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종합하면, 이번 관람 할인쿠폰 사업이 목적인 바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업의 집행 한계 극복,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보장, 그리고 지역별 수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과 세밀한 사업 관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2.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인구감소지역 내 세부적인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집행가능성 제고를 통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 현 황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¹⁶⁾은 국내 숙박상품 온라인 예약 시 할인권을 지원하여 내수활성화 및 지역관광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3월 국회에 제출된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숙박할인권 지원규모 확대를 위하여 현 계획액 대비 11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52억 3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¹⁷⁾은 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여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26년 당초 계획액은 107억원이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수혜규모 확대를 위하여 62억원이 증액된 169억원이 편성되었다.

[숙박할인권 지원·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수정 ¹⁾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국내관광 역량 강화	106,879	64,193	81,633	17,440	27.2
국내관광 캠페인	55,896	13,607	24,847	11,240	82.6
숙박할인권 지원	47,699	3,963	15,203	11,240	283.6
국민관광지원	43,286	42,186	48,386	6,200	14.7
근로자 휴가지원	15,900	10,700	16,900	6,200	57.9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분석의견

첫째,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은 추경안으로 추가되는 지원 물량 30만장을 모두 인구감소지역에 배정하고 있는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구감소 우대·특별 지역을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6)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4-309의 내내역사업

17)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4-309의 내역사업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은 국내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을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2020.5.26.)」을 계기로 2020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었으며, 이후 매년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다.

연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52만 장이었던 할인권 실제 사용량은 2025년 152만 장으로 크게 증가하며 사업의 실집행 규모 역시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본예산 규모는 2023년 30억 원, 2024년 27억 원 등으로 매우 저조하거나 아예 편성되지 않았으며, 매년 대 규모의 기금 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2025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추진내역]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290억원 (제3차 추경 기금변경)	607억원 (본예산 419억원, 이월 189억원)	- (이월예산 활용)	403억원 (본예산 30억원, 기금변경 373억원)	282억원 (본예산 27억원, 기금변경 255억원)	477억원 (기금변경 330억원, 추경 147억원)
실집행	101억원	197억원	398억원	402억원	281억원	477억원
배포목표	100만장	130만장	114만장	130만장	95만장	150만장
실제사용	52만장	78만장	110만장	130만장	95만장	152만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숙박할인권 30만장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할인권 지원금 110억 4,000만원 및 사업운영비 2억원 등 총 112억 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다.

비수도권 지역 7만원 이상 숙박 시 3만원 할인, 7만원 미만 숙박 시 2만원이 할인되며, 올해 계획안에서는 체류일수 증가 및 소비 유도를 위해 연박할인권(2만장)과 주요 관광 특화섬 대상으로 섬 할인권(2만장)이 신설된다. 추경안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 추가 물량 30만장을 모두 인구감소지역¹⁸⁾에 배정하고, 보조율도 지자체 매칭 50%에서 국비 100%로 한시 상향할 예정이다.

18)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지원 제외

[2026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당초 계획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1회 추경안) 세부내역]

구 분	당초 계획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1회 추경안)
숙박할인권 지원	○할인권 지원(20만장): 3,480백만원 (지자체 매칭 5:5) -(비수도권 할인권) 2320백만원 $((1.6\text{만장} \times 2\text{만원}) + (14.4\text{만장} \times 3\text{만원})) \times 50\%$ -(섬 할인권) 480백만원 $((1.8\text{만장} \times 5\text{만원}) + (0.2\text{만장} \times 3\text{만원})) \times 50\%$ -(연박 할인권) 680백만원 $((0.2\text{만장} \times 5\text{만원}) + (1.8\text{만장} \times 7\text{만원})) \times 50\%$	○할인권 지원(50만장):14,520백만원 당초 계획안+ -(비수도권1) 할인권) 6,960백만원 $(21.6\text{만장} \times 3\text{만원}) + (2.4\text{만장} \times 2\text{만원}) / 3\text{만원} \cdot 2\text{만원권 총 24만장 9:1 비율}$ -(연박 할인권) 4,080백만원 $(5.4\text{만장} \times 7\text{만원}) + (0.6\text{만장} \times 5\text{만원}) / 7\text{만원} \cdot 5\text{만원권 총 6만장 9:1 비율(국비 100\%)}$ (+110.4억원 증액)
사업 운영비	483백만원	683백만원 (+2억원 증액)
합 계	39.6억원	152억원

주: 1)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비수도권인 지역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관련하여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추가 지원되는 숙박할인권 30만 장이 전량 인구감소지역에 배정된 점은 긍정적이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례를 참고하여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세부적인 차등 지원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2026년 제1회 추경안에서,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균형발전지표 및 예타 낙후도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심한 ‘특별지역(40곳)’과 ‘우대지역(44곳)’으로 세분화하여 지원 단가에 차등을 두고 있다.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역시 이와 같은 분류 기준을 준용하여, 인프라가 더욱 취약한 특별지역 내 숙박 시 할인 금액의 할인율을 추가로 상향하거나 해당 지역을 위한 특화 할인권을 우선 배정하는 등 보다 정교한 지급 체계를 마련한다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소외지역의 관광 내수 진작이라는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한층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제1회 추경안 주요 내용]

구 분		지원단가		
지급내용	거주지	소득하위 70%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수도권	10만원	45만원	55만원
	비수도권	15만원	50만원	60만원
	인구감소(우대)	20만원		
	인구감소(특별)	25만원		
지급수단		미정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설정		
지급시기		미정		
사용기한		미정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구분 및 해당 시·군·구 목록]

구분	기준	개수	해당 시군구 목록
특별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지표 하위지역 및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의 공통 해당 지역	40	강원(양구군, 화천군), 충북(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충남(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경북(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함천군)
우대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44	인천(강화군, 옹진군), 대구(군위군), 경기(가평군, 연천군), 강원(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옥천군, 제천시), 충남(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전북(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남(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경남(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계		84	-

주: 1.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균형발전지표 하위지역: 58개,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 58개
자료: 행정안전부 및 KDI공공투자관리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2025년 집행 실적이 부진하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제고하고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¹⁹⁾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된 기업의 근로자에게 1인당 근로자 자부담액 20만원, 기업 지원금 10만원, 정부 보조금 10만원의 총 40만원을 적립금으로 조성하여 전용 온라인몰(휴가샵)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당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근로자 10만명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10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지원 대상 규모를 17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62억원이 증액된 169억원이 편성되었다. 변경안은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중견기업 근로자에게도 5만원을 지원하도록²⁰⁾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2026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당초 계획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1회 추경안) 세부내역]

구 분	당초 계획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1회 추경안)
근로자 휴가 지원금	10만명×10만원=10,000백만원	·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15,000백만원) : 15만명×10만원=15,000백만원 · 중견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1,000백만원) : 2만명×5만원=1,000백만원 (+60억원 증액)
사업 운영·관리	700백만원	900백만원 (+2억원 증액)
합 계	107억원	169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의 최근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와 지원 인원 및 실집행률에 연도별 변동이 확인된다. 2023년에는 예산 149억 원, 지원 인원 14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총 159억 원의 예산과 15만 명의 지원 인원으로 규모가 증가하였다. 한편 실집행률은 2021년 32.9%에서 2022년 82.2%, 2023년 89.4%로 상승하였으나, 2024년 83.9%, 2025년 70.6%를 기록하였다.

19)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소속 근로자, 소상공인 대상(2025년은 중견기업 제외)

20)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자 20만원, 기업 지원금 15만원, 정부 지원금 5만원의 총 40만원 적립금 조성

[2020~2025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추진내역]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160억원 (본예산 85억원 +자체변경 75억원)	110억원	110억원	149억원 (본예산 99억원 +기금변경 50억원)	159억원 (본예산 99억원 +기금변경 60억원)	159억원 (본예산 70억원 +기금변경 89억원)
지원인원	12만명	10만명	10만명	14만명	15만명	15만명
실집행률	45.2%	32.9%	82.2%	89.4%	83.9%	70.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매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의 경우 계획현액 159억 원 대비 실집행률이 70.6%에 그쳐 46억 7,6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보조사업자(한국관광공사)								
	계획액	계획 현액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예산 현액	집행액(B)			
2021	11,000	11,000	11,000	11,000	8,770	19,770	7,328	11,000	3,619	7,381	5,061	32.9
2022	11,000	11,000	11,000	11,000	7,381	18,381	13,492	11,000	9,044	1,955	2,934	82.2
2023	9,900	14,900	14,900	14,900	1,956	16,855	15,185	14,900	13,318	891	779	89.4
2024	9,900	15,900	15,900	15,900	891	16,791	14,233	15,900	13,342	807	1,751	83.9
2025	7,000	15,900	15,900	15,900	807	16,707	12,031	15,900	11,229	-	4,676	70.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처럼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소진율도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새롭게 확대하며 당초 예산(107억 원) 대비 57.9% 증가한 169억 원을 편성하였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라는 본 사업의 정책적 취지를 달성하고 이월 및 불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 규모와 지원 대상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롭게 편입된 중견기업 근로자의 실제 참여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철저한 사전 사업 준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청년콘텐츠 분야 투자 비중 상향 및 펀드 전체 수익률 제고 필요(문화체육관광부)

(1) 현 황

K-콘텐츠 펀드 출자사업¹⁾은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6년도 본예산의 경우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에 2,600억원이 편성되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투자 시장이 위축될 우려에 대응하고, 특히 “청년콘텐츠” 분야를 신규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이 증액된 3,100억원이 편성되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K-콘텐츠 펀드 출자	370,000	430,000	480,000	50,000	11.6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260,000	260,000	310,000	50,000	19.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글로벌리그 펀드 출자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금번 추경안으로 편성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의 문화계정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정부 출자 비율은 60%, 투자 대상은 문화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이다.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하아름 예산분석관(liebe89@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1231-322

[K-콘텐츠 출자 사업(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정부 예산을 마중물로 콘텐츠산업에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공급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
정부출자 비율	60%
모펀드 운용사	한국벤처투자
운용방식	재간접투자
투자대상	문화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주목적 투자비율	60%
2026년도 예산	- (본예산) 2,600억원 - (1회 추경안) 3,100억원 (본예산 대비 500억원 증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본예산 2,600억원에 재출자액 1,300억원, 그리고 민간 자금 등을 포함하여 총 6,500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번 추경을 통해 500억원이 추가되면서 조성 목표액은 총 7,34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제1회 추경안에 따른 K-콘텐츠 펀드 모태펀드 문화계정 정부 출자 및 조성목표액 변경안]
(단위: 억원)

본예산				제1회 추경안				총 조성 목표액
정부 출자액			조성 목표액	정부 출자액			조성 목표액	
예산	재출자	합 계		예산	재출자	합 계		
2,600	1,300	3,900	6,500	500	-	500	840	7,34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세부적으로는 본예산으로 조성하고자 했던 IP 펀드 등 5종 외에 청년콘텐츠 분야를 새로 조성함으로써, 청년 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하고, 청년 주도 콘텐츠 프로젝트를 육성할 계획이다.

[2026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조성계획(안)]

(단위: 억원)

분야	출자액 (사출자 포함)	조성 목표액	정부 출자 비율	주요 출자 내용
IP 펀드	1,200	2,000	60%	콘텐츠 원천 IP를 소유 또는 유통·배급하는 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로, 제작사의 IP 확보 지원
수출펀드	1,200	2,000	60%	글로벌 콘텐츠(글로벌 OTT 또는 해외에 판매 예정인 콘텐츠 등) 관련 국내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
CT 펀드	600	1,000	60%	콘텐츠 신성장 원천기술(콘텐츠플랫폼, 음악, 출판, 캐릭터, 공연 등 원천기술 전분야), 창작 시설 등에 투자
콘텐츠 신성장 육성 펀드	450	750	60%	성장 가능성이 큰 신성장 분야, 창업초기기업 등 유망 콘텐츠기업에 집중 투자
M&A·세컨 더리 펀드	450	750	60%	M&A 및 Buyout을 통해 문화산업 중소기업을 인수하거나 문화산업 중소기업이 기발행한 주식을 인수
청년콘텐츠	500	840	60%	문화콘텐츠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청년콘텐츠 기업 ¹⁾ 또는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²⁾ 에 약정총액의 40% 이상 투자)
합계	4,400	7,340	60%	-

주: 1)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
(펀드 투자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2) 청년 주도 프로젝트의 범위 관련 추가 검토 후 추후 확정 예정

1. 음영은 '26년 1회 추경안을 통해 편성된 신규 분야임

2. 세부출자내용은 벤처투자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확정 예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분석의견

첫째, 청년콘텐츠 분야의 경우 현재 40%로 설정되어 있는 청년콘텐츠 기업 또는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비율 상향을 검토하고, 청년프로젝트 등 관련 투자 대상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청년콘텐츠 분야의 경우 위 표에서 보듯이 문화콘텐츠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청년콘텐츠 기업 또는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4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한 예로 최소 기준에 맞춘다면 청년콘텐츠 기업 등에 40%를 투자하고, 그 외 문화콘텐츠 기업에 20%를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콘텐츠 분야의 주목적은 제명과 같은 “청년콘텐츠”에 대한 지원이라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청년콘텐츠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40%에 그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통상 주목적 투자비율을 60%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낮은 수치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콘텐츠 분야를 신규로 설정하는 정책 취지를 보다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청년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원 요건 중 ‘청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주도 프로젝트의 범위를 검토하고 추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년 프로젝트의 개념은 지원 분야를 확정하는데 핵심적인 요건이므로,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대상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의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을 고려할 때, 펀드의 안정적인 운용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게임 분야(실제수익률 7.9%)를 제외한 나머지 출자 분야의 수익률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2021~2025년 K-콘텐츠 펀드 출자 문화계정 수익률]

(단위: %)

출자분야	주요 투자대상	모태펀드 출자비율	주목적 투자비율	기준수익률	실제수익률
CG/3D	CG/3D	50	60	5	△6.7
게임	게임	50	60	6	7.9
공연예술	공연예술	70	80	2.5	△3
글로벌콘텐츠	글로벌콘텐츠	40	60	5	△16.2
드라마	드라마	50	60	5	△26.3
문화산업	문화산업	30	60	8	△7.8
문화산업투자 KVF결성목적	문화산업투자 KVF결성목적	10억원 이내	70	10	△7.3
방송드라마	방송드라마	60	70	3	△6.8
방송영상	방송영상	60	80	5	△3.9
융합콘텐츠	융합콘텐츠	70	70	5	△5.6
융합콘텐츠 기획개발	융합콘텐츠 기획개발	21	60	5	△16.6
제작초기	제작초기	65	80	0	△4.2
콘텐츠영세기업	콘텐츠영세기업	70	80	0	△4.5

주: 1. 내부수익률(IRR) 기준

2. 기준 수익률 및 실제 수익률은 출자대상별 자펀드들의 중위수

3. 최근 5년간 청산된 펀드 기준(2021년 이후 청산조합), 2025년 12월 기준

4. 주목적 투자비율은 해당 출자분야 공고문상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의 중위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계정은 문화·영화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금의 일부를 영세기업 및 저예산 프로젝트에 투자하였으며, 코로나19, OTT 등장 등 펀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청산된 자펀드의 수익률은 상승 추세를 실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향후 정책 목적이 강한 펀드를 조성함과 동시에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투자 범위를 넓힌 콘텐츠 신성장 펀드, M&A·세컨더리 펀드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유인책을 도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정책펀드는 민간이 충분히 투자하지 않는 영역에 자금을 공급하여 산업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사모펀드와 같이 높은 수익률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구조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정책금융에서도 민간 매칭 투자 확

대와 성과 중심 운용이 강조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할 경우 민간 참여 유인이 약화되어 정부 재정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 이는 펀드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해당 분야 투자에 대한 부정적 신호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민간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오히려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계정의 수익률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VI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개 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19조 7,777억 9,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조 1,223억 3,100만원 증액되었다. 또한 총지출은 20조 4,107억 6,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65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다.¹⁾

해양수산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1조 1,51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00억원(2.7%) 증액되었다. 또한 총지출은 7조 4,48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919억원 증액되었다.

산림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4,368억 3,2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3조 279억 6,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농림축산식품부	총수입	13,052,425	14,655,468	19,777,799	5,122,331	35.0
	총지출	19,452,135	20,144,980	20,410,760	265,780	1.3
해양수산부	총수입	1,344,946	1,121,874	1,151,874	30,000	2.7
	총지출	6,925,412	7,356,579	7,448,482	91,903	1.2
산림청	총수입	427,463	436,832	436,832	-	-
	총지출	2,616,930	3,025,967	3,027,967	2,000	0.1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정금연 예산분석관(loveymjh@assembly.go.kr, 6788-4632)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은 총 5개이다.

주요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① 2026년 증권거래 활성화 등으로 농어촌특별세 수납률이 향상되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계정이 5조 1,223억 3,100만원 증액되었고,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에 편성된 추경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계정으로부터 계정간전입금이 5조 676억 8,800만원 증액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구조개선 사업계정)	계정간전입금	2,466,868	3,793,367	8,861,055	5,067,688	133.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계정)	농어촌특별세	7,415,300	8,498,826	13,621,157	5,122,331	60.3
농지관리기금	특별회계전입금	-	500,000	558,771	58,771	11.8
축산발전기금	특별회계전입금	145,500	145,500	210,500	65,000	44.7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특별회계전입금	-	204,030	254,030	50,000	24.5
합계		10,027,668	13,141,723	23,505,513	10,363,790	78.8

주: 1.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8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1개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① 시설원예농가에 서 난방용으로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이 78억 2,4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②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사업 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③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농식품소비기반조성 사업이 500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④ 2026년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증가 등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706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⑤ 현행 약 190만 필지 규모로 수행하고 있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약 930만 필지 규모로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587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 (현재회계)(A)	추경안(B)	(B-A)	(B-A)/A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업자금이차보전	682,500	729,661	731,816	2,155	0.3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25,500	15,600	19,800	4,200	26.9
	농식품글로벌 경쟁력강화	92,729	115,751	122,951	7,200	6.2
	시설농가 면세유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	-	7,824	7,824	순증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234,075	304,705	70,630	30.2
농지관리기금	농지이용관리지원	13,540	13,944	72,715	58,771	421.5
축산발전기금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옹자)	300,000	250,000	315,000	65,000	26.0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농식품소비기반조성	-	122,716	172,716	50,000	40.7
합 계		1,114,269	1,481,747	1,747,527	265,780	17.9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현재회계액을 기재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5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없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중동 상황으로 인한 글로벌 물류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수출 바우처 사업에 16억원을 증액하였고, ②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사업에 46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③민생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④섬 주민 1일 생활권 구축 및 적자 발생에 따른 항로 단절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 사업 내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에 29억원을 증액하였다.

[해양수산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농어촌 특별회계	수산물해외 시장개척	54,563	79,098	80,687	1,589	2.0
농어촌 특별회계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	-	46,819	46,819	순증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연안화물선유류비 보조	16,873	18,661	29,212	10,551	56.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가보조항로결손 보상금	24,390	25,668	28,612	2,944	11.5
수산발전기금	수산업가치및소비 촉진제고	151,748	101,748	131,748	30,000	29.5
합 계		247,574	225,175	317,078	91,903	40.8

주: 1.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해양수산부

(3) 산림청

산림청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없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중동전쟁에 따른 항공유 인상과 관련하여 '26년 산불재난 적기 대응을 위한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이 20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산림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 (현계획액)(A)	제1회 추경안(B)	(B-A)	(B-A)/A
일반회계	산림헬기 도입·운영	93,858	193,826	195,826	2,000	1.0
합 계		93,858	193,826	195,826	2,000	1.0

주: 1.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산림청

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등(농림축산식품부)

(1) 현 황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¹⁾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1,080억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환율·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축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500억원이 증액된 1,580억원이 편성되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수정 ¹⁾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농식품 소비기반 조성	243,424	122,716	172,716	50,000	40.7
농축산물 할인지원	228,000	108,000	158,000	50,000	46.3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은 크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간 단위로 선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평상시에 소비자의 농축산물 할인 구매를 지원하는 ‘상시 할인지원’과 명절, 김장철 등 농축산물 구매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농축산물 할인 구매를 지원하는 ‘농축산물 구매 성수기 할인지원’으로 나뉜다.

상시 할인지원은 유통채널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로 분류된다. 온라인 방식은 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온라인 유통업체에 쿠폰 예산을 배정하고, ② 온라인 유통업체가 홈페이지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간 단위로 선정하는 행사 품목에 대한 할인쿠폰을 발행한다. 쿠폰 할인율은 전통시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41-300의 내역사업

장 온라인몰은 30%, 그 외 온라인 유통업체는 20%이다. ③ 소비자는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을 다운로드 및 적용하여 농축산물 구매시 할인된 가격으로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④ 이후 aT에서 온라인 업체별로 정산을 실시한다.

오프라인 방식은 ① aT가 농축산물 할인지원 대상업체를 공모 및 선정하고,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 업체별로 할인지원 예산을 배정한다. ③ 이후 행사기간 동안 선정된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간 단위로 선정하는 품목에 대해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④ 행사가 종료된 이후 업체는 aT에 할인판매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할인금을 정산받는다.

농축산물 구매 성수기 할인지원에는 상시 할인지원 외에 전통시장에서 오프라인으로 농축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받는 방식과 30% 선할인 판매되는 농할상품권을 이용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받는 방식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별로 인구수, 전통시장수, 농축산물 점포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선정할 수 있는 전통시장 수를 배정하고 ②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내의 전통시장을 선정한다. ③ 이후 선정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하고 ④ 행사가 종료된 이후 aT에서 사업비를 정산받는다.

농할상품권을 이용하는 방식은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전에 30% 선할인된 모바일 전자상품권인 농할상품권을 구매 후 오프라인 전통시장 내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방식별 할인율 및 할인방식]

구분		업체별	할인율	한도	사용 방법
상시 할인지원	온라인	온라인쇼핑몰	20% + 업체 자체할인	1만원/1주	쇼핑몰 내 할인
		전통시장 온라인몰	30% + 업체 자체할인	2만원/1주	쿠폰 발급 및 적용
	오프라인	대형마트	20% + 업체 자체할인	1만원/1주	할인가로 구매·결제
		중소형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중소형마트 협·단체			
농축산물 성수기 할인지원	온라인	온라인쇼핑몰	20% + 업체 자체할인	1만원/1주	쇼핑몰 내 할인
		전통시장 온라인몰	30% + 업체 자체할인	2만원/1주	쿠폰 발급 및 적용
	오프라인	대형마트	20% + 업체 자체할인	1만원/1주	할인가로 구매·결제
		중소형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중소형마트 협·단체			
	전통시장	현장할인	30%	2만원 /행사기간	구매 증빙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
		농할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선할인 구매

주: 1. 품목 성격, 농축산물 수급상황 등에 따라 정률이 아닌 정액 지원도 가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분석의견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 전후 가격 변동을 소비자 가격 외에 도매시장 가격 등 외부 기준과 상시 비교·검증하는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²⁾부터 시작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예산은 2026년 전년대비 1,200억원 감소하긴 하였으나, 2020년 410억 원에서 2025년 2,280억원으로 450% 이상 꾸준히 확대되었다.

2) 동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2020.7.)부터 최초로 반영되었다.

[2020~2026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농축산물 할인지원	41,000	154,000	108,000	130,500	166,700	228,000	108,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와 같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확대는 소비자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 완화와 국산 농축산물 판로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2025년에 수행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소비자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표본 1,000명 중 740명이 동 사업을 인지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740명 중 517명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동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와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소비자 인지도 조사]

(단위: 명)

구 분	사례수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①)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②)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들어본 적 있다(③)	사업명이나 사업내용중 하나만 들어본 적 있다(④)	전혀 모른다(⑤)	알고 있다(①+②+③+④)
전 체	1,000	71	270	272	127	260	740

자료: 2025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보고서

[2025년 농축산물 할인지원 상품 구매율]

(단위: 명)

구 분	사례수	구 매	미 구 매
전 체	740	517	223

자료: 2025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보고서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행사 추진 과정에서 참여 유통업체의 부정수급 방지 및 적정 이행 여부 점검을 목적으로 사업 참여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오프라인 유통업체 5,687개 매장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형식으로, 온

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사이트별 행사품목(최대 3개)을 사이트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하였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모니터링 조사 개요]

구 분	오프라인	온라인
조사 대상	사업 참여 오프라인 유통업체 (대형마트 7개, 중소형마트 24개, 친환경매장 5개, 로컬푸드 직매장 16개, 지역농협 1개)	사업 참여 온라인 유통업체 (대형 온라인몰 5개, 중소 온라인몰 5개, 지자체몰 6개, 전통시장몰 6개)
조사 방법	업체 방문 조사	사이트 방문 조사
조사 지역	발주처에서 제공한 사전 조사대상 선정된 유통업체 매장	해당 사이트
표본 수	총 5,687개 매장 (대형마트 3,112개, 중소형마트 1,506개, 지역농협 342개, 친환경매장 281개, 로컬푸드 직매장 446개)	각 사이트별 행사품목 최대 3개 (회차별 이슈 상황에 따른 조정)
표본 추출	업체유형 및 권역을 고려한 조사매장 선정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내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메뉴 접속 후 상위노출 3개 조사
조사 기간	2025년 6월 26일(목)-2026년 1월 14일 (수), 총 33주(8월 21일~8월 31일 제외)	2025년 6월 26일(목)-2026년 1월 14일 (수), 총 33주(8월 21일~8월 31일 제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5년 국회 국정감사³⁾와 감사원 정기감사⁴⁾에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한 6개의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직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후 할인지원 행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지적되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는 할인 행사 전·후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사업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귀착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사 추진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유통업체에서는 행사 전·후 가격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행사 품목 가격에 대해 평시 가격 대비가 아닌 유통업체에서

3) 제22대 국회 2025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17)

4) 감사원 정기감사(농림축산식품부), 2025.9.18

설정한 가격 대비 할인율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만을 모니터링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등 전쟁, 고유가에 따른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라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 전후 가격 변동을 소비자 가격 외에 도매시장 가격 등 외부 기준과 상시 비교·검증하는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행사 직전 자체 가격을 인상하는 등 사업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부당 행위에 대하여 예산 감액 및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체 할인율이 높거나 할인 이행 실적이 우수한 유통업체에 대해 차년도 사업 참여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자체 할인 실적과 보다 밀접하게 연계된 유통업체의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고, 아울러 유통업체의 할인 이행 실적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26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과 관련하여 업체의 자율성 증진을 위하여 사업신청시 유통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되,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선의의 경쟁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는 2025년 대형 유통업체에 20%, 중소 유통업체에 10%의 자체 할인 의무를 부과했던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체 할인 의무가 업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일률적인 의무 부과가 아닌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고 설명하였다.

[2026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계획]

① 할인지원 사업

- (사업대상) 전통시장을 제외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 * 전통시장 환급행사 및 농할상품권 지원사업은 성수기에 별도 추진
- (자체할인 개선) 업체의 자율성을 증진하되,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선의의 경쟁체계 구축
 - 지난해 의무적으로 부과한 자체할인(대형 20%, 중소형 10%)을 사업 신청시 업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개선
 - 농식품부 및 aT는 업체의 자체할인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예산 배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 예산 중 일정 비율의 예산을 배정 유보하고 유보된 사업비를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추가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2026년도 동 사업비 예산 1,060억원⁵⁾ 중 대형 유통경로 배정예산은 477억원, 중소 유통경로 배정 예산은 583억원이고, 대형 유통경로 배정 예산 477억원 중 95억 4,000만원(9.0%) 및 중소 유통경로 배정 예산 583억원 중 36억 6,000만원(3.6%)을 배정 유보 후 인센티브로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2026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배정 계획]

① 대형유통경로 : 477억원(45%)

- (오프라인) 대기업(계열회사 포함)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형마트’에 35,775백만원(사업비의 33.75%) 배정
 - * (예)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마트(농심 계열사) 등
- (온라인) 대기업(계열회사 포함) 온라인몰에 2,385백만원(2.25%) 배정
 - * (예) 11번가(SK계열사), NS쇼핑, 카카오, 현대홈쇼핑 등
- (인센티브)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예산으로 9,540백만원(9.0%) 유보 배정

② 중소유통경로 : 583억원(55%)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34,000백만원, 32.1%), 제로페이 농할상품권(6,000백만원, 5.7%)에 40,000백만원(37.7%) 배정
- (오프라인) 지역조합,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12,298백만원(11.6%) 배정
- (온라인)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민간 온라인몰, 공공기관·지자체몰 등에 2,342백만원(2.2%) 배정
 - * (예) 오아시스, 쉼리 등 민간몰, 남도장터 등 지자체몰
- (인센티브)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예산으로 3,660백만원(3.4%) 유보 배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2026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우수사업자에 대한 추가배정은 직전분기 집행실적과 자체 할인 목표치 달성률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평가 기준이 되는 자체 할인 목표치 달성률은 유통업체에서 제출한 할인지원 적용 품목의 자체 할인율을 실제로 달성한 비중을 의미한다.

5)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 기준이며, 운영비 20억원 제외

[2026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비 배정]

□ 사업비 배정에 관한 사항

① 최초배정: 선정평가점수,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 등 반영

* 선정평가점수: 100 + 가·감점 5(자체할인, 부정수급)

* 추가 고려 기준 : 신선 농축산물 매출액 등

② 추가배정: 직전분기 집행실적, 자체 할인실적 등 반영하여 조정

- 자체할인목표치: 달성률에 따라 차등배정, 100% 이상 달성한 적극 참여 업체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별도 배정

* 자체할인목표치 달성률

{	(100% 이상) 인센티브 예산 배정
	(95 이상~100% 미만) 기본배정
	(95% 미만) 예산 감액 배정
	(90% 미만) 특정시기 사업 배제

- 제출한 자체할인 목표치의 달성률이 연중 사업비 배정 및 차년도 평가에 반영되므로 달성 가능한 비중으로 제출 요망

* 자체할인 목표치 달성률이 9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사업비 감액, 100% 초과 시 추가 인센티브 사업비 배정

* 자체할인 목표 달성률이 90% 미만인 경우 특정시기 사업 배제될 수 있음

* 자체할인율 달성률 산정기준 = 기간별로 사업자가 제시한 할인지원 적용품목의 전체 판매액의 **사업자 자체 할인율** 대비 총 자체할인액의 비율

$$\boxed{\text{자체할인율 달성률}} = \frac{\text{총 자체할인액}}{\text{전체 판매액} \times \text{사업자 제시 자체 할인율}}$$

예시) 분기별 할인지원품목 전체 판매액 1억원, 사업자 제시 자체할인율 20%, 총 자체할인액이 1,800만원일 경우

$$\boxed{\begin{array}{c} 90\% \\ \text{(자체할인율 달성률)} \end{array}} = \frac{\begin{array}{c} 18,000,000 \\ \text{(총 자체할인액)} \end{array}}{\begin{array}{c} 100,000,000 \\ \text{(전체 판매액)} \end{array} \times \begin{array}{c} 20\% \\ \text{(사업자 제시 자체 할인율)} \end{array}}$$

- 부정수급 사례 적발: 모니터링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례 3회 적발 시, 차분기 배정예정액에서 일정수준(10% 내외) 감액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업체가 의무적으로 10~20%의 자체 할인을 추가하는 방식은 유통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유통업체에는 대형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등 중소 유통업체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2026년부터 자체 할인 의무 방식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겠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근본 목적은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은 정부의 재정 투입과 더불어 소비자 혜택의 폭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6년 자체 할인 실적 평가는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만을 알 수 있는 자체할인 달성률만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획한 우수 사업자 인센티브인 예산 추가 배정액 역시 대형 유통경로의 경우 배정 전체 예산 477억원 중 95억 4,000만원(9.0%), 중소 유통경로의 경우 583억원 중 36억 6,000만원(3.6%)으로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추가 배정액 비율 제고나 차년도 사업 참여시 우선권 부여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체 할인율이 높거나 할인 이행 실적이 우수한 유통업체에 대해 차년도 사업 참여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자체 할인 실적과 보다 밀접하게 연계된 유통업체의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고, 아울러 유통업체의 할인 이행 실적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 2026년 유가를 반영하여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의 기준가격 현실화 검토 필요 등(농림축산식품부)

(1) 현 황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¹⁾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용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중동 전쟁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시설농가 경영부담 완화 지원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78억 2,4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	-	7,824	7,824	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 면세유’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²⁾에 따라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 기계 및 연료용 유류에 대한 세금³⁾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현행 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42종의 농업용 면세 유류 지원 농기계를 규정하고 있다.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041-302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교통세·개별소비세·교육세·자동차세·부가가치세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목 적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
근 거	「조세특례제한법」 §106의2,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유 종	경유, 등유, 휘발유, 중유, 윤활유, LPG(난방용), LPG(차량용), 부생연료유 1·2호
대 상 (42종)	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이앙기, 주행형 동력분무기, 고속분무기, 바인더, 콤바인, 곡물건조기, 주행형 탈곡기, 예도형 예취기, 동력중경제초기, 동력수확기, 농산물 건조기, 관리기, 정식기, 농업용 난방기, 동력절단기,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농업용 양수기, 예취기, 탈곡기, 동력배토기, 비료살포기,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농산물 결속기,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농산물 세척기, 동력혈굴기, 동력구절기,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동력파종기, 농선, 잔디깎는 기계, 녹차채엽기, 버섯재배소독기, 농업용 무인 항공기, 농업용 로더(4톤 미만), 동력제초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배합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시설원예농가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한 중유, LPG(난방용) 등 농업용 면세유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78억 2,400만원은 등유 66억 6,300만원, 중유 2억 2,300만원, LPG(난방용) 4억 9,500만원, 부생연료1호 1억 7,900만원, 부생연료2호 2억 6,400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지원 유종	등유, 휘발유, 중유, 윤활유, LPG(난방용), LPG(차량용), 부생연료유 1·2호
산출내역	7,824백만원 ≒ 등유 6,663백만원 + 중유 223백만원 + 난방LPG 495백만원 + 부생1호 179백만원 + 부생2호 264백만원 - ① 등유(6,663백만원) ≒ 55,568kl × 단가한도 120원/ℓ ② 중유(223백만원) ≒ 1,855kl × 단가한도 120원/ℓ ③ 난방용LPG(495백만원) ≒ 3,842kl × 단가한도 129원/ℓ ④ 부생1호(179백만원) ≒ 1,636kl × 단가한도 109원/ℓ ⑤ 부생2호(264백만원) ≒ 2,321kl × 단가한도 114원/ℓ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업용 면세유의 실제 사용 현황을 보면 농기계용 사용량이 난방용보다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을 시설농가의 난방용 면세유로 한정하여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025년 농업용 면세유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용량 13.7억ℓ 중에서 경유, 휘발유, LPG(차량) 등 농기계용 사용량이 9.4억ℓ로, 농업용 면세유 전체 사용량의 약 68%가 농기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2024년 농업용 면세유 사용 현황을 살펴보다도, 농기계용 사용량이 전체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3~2025년 농업용 면세유 사용 현황]

(단위: 억ℓ, %)

구 분		합 계	농기계용			난방용			윤활유
			경유	휘발유	LPG (차량)	등유	LPG (난방)	중유, 부생연료	
2023	사용량	13.4	8.5	0.9	0.0	3.5	0.1	0.4	0.0
	비중	100.0	63.1	6.5	0.1	26.0	0.9	3.3	0.0
2024	사용량	13.4	8.5	0.9	0.0	3.4	0.1	0.4	0.0
	비중	100.0	63.7	6.5	0.2	25.5	1.0	3.2	0.0
2025	사용량	13.7	8.5	0.9	0.0	3.7	0.1	0.5	0.0
	비중	100.0	62.2	6.4	0.3	26.7	1.1	3.3	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 농업용 면세유 중 사용량이 더 많은 농기계용을 제외하고 시설농가의 난방용에 한정하여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제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다수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시설농가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요 시설원에 작물의 수도광열비는 생산비의 14%, 경영비의 20% 수

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22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농가의 유가 상승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시설원에 분야에 한정하여 지원하였던 점을 참고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은 농가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농업용 면세유의 사용량이 더 많은 농기계용을 오히려 제외하고 시설농가의 난방용에만 한정하여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업인의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정책효과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의 정책 대상을 시설농가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22년 5월 시점의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를 기준가격으로 설정하였는데,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집행 수요를 현실화하여 지원금 소요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국회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 추정 78억 2,400만원을 편성하면서 등유, 중유, 난방용LPG, 부생1호, 부생2호 등 5가지 유종에 대하여 각각 120원/ℓ, 120원/ℓ, 129원/ℓ, 109원/ℓ, 114원/ℓ의 단가한도를 적용하였다. 단가한도의 산출은 기준가격의 10.78% 수준이고, 기준가격은 2022년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이다.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 세부 산출 내역]

(산출) 7,824백만원 ≒ 등유 6,663백만원 + 중유 223백만원 + 난방용LPG 495백만원 + 부생1호 179백만원 + 부생2호 264백만원

- ① 등유(6,663백만원) ≒ 55,568kl × 단가한도 120원/ℓ
- ② 중유(223백만원) ≒ 1,855kl × 단가한도 120원/ℓ
- ③ 난방용LPG(495백만원) ≒ 3,842kl × 단가한도 129원/ℓ
- ④ 부생1호(179백만원) ≒ 1,636kl × 단가한도 109원/ℓ
- ⑤ 부생2호(264백만원) ≒ 2,321kl × 단가한도 114원/ℓ
- * 단가한도 = 기준가격(22.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의 10.78%
- ** 물량 : '25년 3·4·9월의 유종별 면세유 구매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사용된 유종별 기준가격은 등유 1,112원/ℓ, 중유 1,116원/ℓ, 난방용LPG 1,197원/kg, 부생1호 1,015원/kg, 부생2호 1,055원/kg으로, 다음과 같이 2022년 5월 기준 농업용 면세유 유종별 평균 가격의 88.5%으로 산출된다.

[2022년 5월 기준 유종별 평균가격과 2026년 추경안 기준가격 산출 내역]

(단위: 원/ℓ, 원/kg)

구 분	등유	중유	난방용LPG	부생1호	부생2호
'22년 5월 평균가격(A)	1,257	1,261	1,352	1,147	1,192
26년 추경안 기준가격 (A×88.5%)	1,112	1,116	1,197	1,015	1,05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기준가격 산출시 현시점(2026년) 기준이 아닌 2022년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상황에서 예비비 배정을 통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단기간의 유가 급등에 따라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사업이 한시적으로 필요할 경우 2022년도 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2022년 동 예산안 신규 편성시 2022년 5월 평균가격의 88.5% 수준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한 것은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농업용 면세유 가격 동향을 살펴볼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전인 2022년 3월~4월 면세유 가격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그 이상의 가격 인상분을 국가에서 보조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2022년 1월~5월 농업용 면세유 유종별 가격 동향]

(단위: 원/ℓ, 원/kg)

구 분	등유	중유	난방용LPG	부생1호	부생2호
22.1월	901	904	1,207	862	836
22.2월	974	982	1,234	919	920
22.3월	1,094	1,070	1,240	1,016	1,017
22.4월	1,202	1,289	1,300	1,139	1,113
22.5월(A)	1,257	1,261	1,352	1,147	1,192
기준가격 (A×88.5%)	1,112	1,116	1,197	1,015	1,055
22.6월	1,376	918	1,318	944	1,129
22.7월	1,457	876	1,345	934	765
22.8월	1,408	876	1,366	1,011	76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기준가격의 설정은 유가연동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유가 동향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고, 동 사업이 2022년에 신규 편성되었다고 하여 2022년도에 결정된 기준가격을 현시점에서 기준가격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6년 농업용 면세유 동향을 살펴보면, 동 사업 예산안 편성에 사용된 기준가격과 중동 전쟁의 발발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기 직전인 2026년 2월의 면세유 가격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생1호나 부생2호의 경우 각각 1,003원/kg, 1,025원/kg으로 기준가격인 1,015원/kg, 1,055원/kg과 비슷한 수준이나, 등유와 난방용LPG는 2026년 2월 가격이 기준 가격대비 50원 낮으며, 중유의 경우 그 괴리가 144원으로 나타난다.

[2026년 농업용 면세유 유종별 평균가격]

(단위: 원/ℓ, 원/kg)

구 분	등유	중유	난방용LPG	부생1호	부생2호
26년 추경안 기준가격 (A×88.5%)	1,112	1,116	1,197	1,015	1,055
26.1월	1,079	960	1,107	999	1,026
26.2월	1,062	972	1,147	1,003	1,025
26.3월 (1~25일)	1,174	1,013	1,140	1,067	1,06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동 사업 예산이 2022년과 기준가격을 동일하게 설정함에 따라 예산 전액이 불용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기준가격을 2026년도 유가동향에 맞추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당시 불용 사유는 2024년 면세유 판매가격이 기준가격(2022년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을 하회하였기 때문이었고,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유사한 가격연동 보조사업이 편성될 경우 편성사유 및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⁴⁾

[2024회계연도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 결산 시정요구 내역]

시정요구명	유가연동 보조사업의 집행기준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시설농가면세유유가연동보조금한시지원 (3031-306)
지적사항	동 사업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2024년 면세유 평균 판매가격*이 기준가격**을 하회하게 되어 2024년 예산 69억 7,200만원이 전액 불용됨 * 평균 판매가격: 등유 1,097원, 중유 1,016원 ** 기준가격: 등유 1,112원, 중유 1,116원
시정요구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유사한 가격연동 보조사업이 편성될 경우 편성사유 및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 대한민국 국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참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추경안의 취지가 2026년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의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2022년의 기준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2026년도 유가를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현실화⁵⁾하여 지원금 소요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국회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가령 2022년 동 사업 기준가격 설정 방식과 동일하게 중동 전쟁 발발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기 직전인 2026년 2월 농업용 면세유 가격 수준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용자)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농림축산식품부)

(1) 현 황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용자)¹⁾ 사업은 축산 농가에 저금리로 사료구매 정책 자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2,500억원이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사료비 인상에 대응하여 축산 농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650억원이 증액된 3,150억원이 편성되었다.

[축산발전기금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용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수정 ¹⁾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용자)	300,000	250,000	315,000	65,000	26.0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용자) 사업은 축산 농가의 신규 사료구매 자금과 기존 외상 금액 상환 자금을 대한 용자금 지원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축산농가나 법인이고, 고정금리 1.8%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용자) 사업 개요]

사업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 조건	용자 100%, 고정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 한도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기존의 당해사업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하여 지원
시행 주체	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축산발전기금 3733-32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증액 편성된 650억원은 추가로 1,300개 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평균 5,000만원의 용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2026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용자) 사업 세부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산출내역
당초 계획	250,000 백만원	가. 농가사료구매자금 (250,000백만원) · 농가사료구매자금 : 5,000농가 × 50백만원 × 용자 100% = 250,000백만원
계획 변경안	315,000 백만원	가. 농가사료구매자금 (315,000백만원) · 농가사료구매자금 : 6,300농가 × 50백만원 × 용자 100% = 315,00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분석의견

축산 농가에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공급하는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6년에 도래하는 2022년 및 2023년 용자의 원활한 상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용자가 차질 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목적인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00개 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평균 5,000만원의 추가 용자 필요성을 근거로 동 사업 계획액 650억원을 증액 변경하였고, 다음과 같이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의 전입금으로 사업비 650억을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 분	세부사업명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세출	축산발전기금전출	145,500	210,500	65,000	44.7
축산발전기금					
구 분	세부사업명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수입	특별회계전입금	145,500	210,500	65,000	44.7
지출	농지이용관리지원	250,000	315,000	65,000	26.0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추가되는 용자에 대해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을 통해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023~2025년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볼 때 당초 계획안에 수립되어 있는 5,000농가에 대한 용자(2,500억원)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2026년에 상환 예정인 2022년과 2023년의 용자 대출이 원활히 상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3~2025년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계획현액 3,550억원 중 약 445억원이 불용되었고, 2024년에는 계획현액 3,000억원 중 415억원이 불용되었으며, 2025년에는 계획현액 3,000억원 중 약 700억원이 불용되어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난다.

[2023~2025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용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실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					
2023	355,000	355,000	-	355,000	310,458	44,542	87.5
2024	300,000	300,000	-	300,000	258,473	41,527	86.3
2025	300,000	300,000	-	300,000	234,960	69,931	78.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2025년 동 사업의 불용액은 약 700억원으로 실집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상환 예정이었던 2022년 용자와 2023년 용자가 모두 축산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유예 조치됨에 따라 2025년 신규 대출 여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금리를 0.8%p 인하함과 동시에 2년 거치 일시상환인 동 사업 용자를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조치²⁾가 있었고, 2023년에는 한육우 농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해 2025년 상환 도래 예정이었던 사료구매자금을 1년간 상환 유예하는 조치가 있었다.

2026년 당초 계획안에 수립되어 있는 2,500억원의 용자는 2025년 유예되어 2026년 상환 예정인 2022년과 2023년의 용자가 원활히 상환되는 것을 전제하고 수립된 용자로, 축산 농가에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공급하는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2025년 유예되었던 2022년과 2023년 용자 상환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상환 예정인 2022년과 2023년 동 사업 용자가 원활히 상환되어 2026년 신규 용자 대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2) 기획재정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발표”, `22.7.8.

**라. 원자재 가격 동향에 비추어 소요액 대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액 과소 편성 여부 검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1) 현 황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사업¹⁾은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와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농업인의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당초 예산액은 156억원이나 중동전쟁으로 인한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2억원이 증액된 198억원이 편성되었다.

[무기질비료구입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25,500	15,600	19,800	4,200	26.9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은 농협에서 무기질비료를 구입하는 축산 농가에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선할인하여 판매하고, 정부·지자체·농협이 선할인된 비료 가격을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비료 가격 인상분 80%는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부담비 30%로 지원된다.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42억원은 14만톤의 무기질비료에 대하여 중동 전쟁으로 인한 가격상승분의 80% 중 국비 부담분 30%으로 산출된다.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2260-377

[무기질비료구입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사업 증액 세부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4,200백만원	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 140,000톤 × 100,000원/톤 × 국비 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분석의견

국제 비료가격 급등이라는 상황 하에 동 사업 추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2억원(26.9%)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수준임을 감안하더라도 증액 규모가 현재 급등하고 있는 비료 가격에 비추어 적정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료는 원료에 따라 무기질비료(질소·인·황 비료), 유기질비료(동식물비료), 동물질비료, 식물질비료, 광물질비료가 있고,²⁾ 무기질비료의 주요 원자재는 요소, 암모니아, 염화칼륨, 인산이암모늄(DAP), 인광석 등이 있다.

2022~2024년도 일반무기질³⁾ 비료의 원가 구성비를 살펴보면 원자재 가격의 비중이 60.3~77.3%를 차지하고 있고, 원자재 중에서 요소의 비중이 26.7~45.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암모니아는 2.6~4.5%로 나타난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무기질비료산업의 동향과 발전 방안 :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2012.12.

3) 수도작용 비료를 의미함

[일반 무기질 비료 원가 구성비]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원자재	요소	45.2	35.8	26.7
	암모니아	2.6	4.5	3.6
	염화칼륨	9.1	11.5	6.6
	인산이암모늄(DAP)	14.6	6.9	6.3
	인광석	0.6	5.2	5.0
	기타	5.2	10.1	12.2
	소 계	77.3	73.9	60.3
원자재 외	간접비	4.0	4.5	6.9
	노무비	3.3	3.5	4.6
	제조경비	4.7	5.2	8.6
	수송조직비	4.4	4.6	5.7
	판매관리비	4.9	4.5	7.7
	기타	1.4	3.8	6.1
	소 계	22.7	26.1	39.7
합 계		100	100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한, 2021~2023년 우리나라의 주요 비료 원자재 국가별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요소의 40% 이상을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수입하고 있다.

[2021~2023년 우리나라의 주요 비료 원자재 대륙별 수입실적]

(단위: 천 톤, %)

구 분		2021		2022		2023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요소	중동·북아프리카	69	16	230	49	149	41
	동남아시아	69	16	147	31	109	30
	중국	279	65	86	18	106	29
	기타	9	2	8	2	2	1
	소 계	427	100	472	100	367	100
암모니아	중동·북아프리카	470	34	634	49	506	46
	동남아시아	634	46	588	46	504	46
	호주	67	5	46	4	71	6
	중국	-	-	16	1	21	2
	기타	194	14	-	-	-	-
	소 계	1,366	100	1,285	100	1,102	100
염화칼륨	캐나다	491	64	494	76	431	77
	중동·북아프리카	40	5	96	15	68	12
	동남아시아	5	1	36	6	54	10
	기타	235	30	27	4	6	1
	소 계	771	100	652	100	560	100

자료: 2024 비료사업 통계요람

이처럼 무기질 비료 원가에 있어 요소의 비중이 크고 중동에 대한 요소 수입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비료업체의 원료 구입 부담 증가와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편, 동 사업 추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2억원(26.9%)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소요액보다 과소 편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정한 2026년도 무기질비료 원료별 계약 가격에 따르면, 2026년 2월 계약 가격 대비 요소는 418\$/톤에서 754\$/톤으로 80.5%, 암모니아는 386\$/톤에서 545\$/톤으로 41.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6년 무기질비료 원료별 추정 계약가격]

(단위 : 원/\$, \$/톤, FOB, %)

구분	계약가격		추정 계약가격*		국제가격	
	'21.8월	'26.2월 (A)	'26년 예상 가격(B)	대비 (B/A-1)	전쟁 전 (‘26.2.27.)	전쟁 후 (‘26.3.13.)
요 소	313	418	754	80.5	493	708
암모니아	276	386	545	41.2	520	545
D A P	396	729	713	△2.2	710	713
인 광 석	125	187	183	△2.1	197	183
염화칼륨	311	339	339	0.0	359	339
환 율	1,123	1,410	1,477	4.8	1,425	1,48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과 같이 2026년 무기질비료의 가격이 약 20%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6년 무기질비료 판매 예상 가격 추정 검토]

(단위 : %)

구 분	환율	원 재 료					계
		요소	암모니아	D A P	인광석	염화칼륨	
비 중(A)	57.9	21.6	2.1	6.8	4.4	6.6	-
변동률(B)	4.8	80.5	41.2	△2.2	△2.1	0.0	-
가격변동(A×B)	2.8	17.4	0.9	△0.1	△0.1	0.0	20.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무기질비료의 가격은 평균 871천원/톤이고, 이에 따르면 톤당 17만원 정도의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 추경안에는 무기질비료 지원단가가 톤당 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소요액보다 과소 편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며, 국제 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에서 동 추경안 증액 규모가 실제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기질비료구입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사업 증액 세부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4,200백만원	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 140,000톤 × 100,000원/톤 × 국비 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재의 비료 가격 급등 상황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증액 편성 규모가 농가 경영 안정이라는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 농지 전수조사 수행을 위한 대규모 조사원 신규 채용 방안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등 (농림축산식품부)

(1) 현 황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¹⁾은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139억 4,400만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농지 특별조사에 필요한 조사원 인력 채용, 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근거로 587억 7,100만원 증액된 727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수정 ¹⁾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농지이용관리지원	13,540	13,944	72,715	58,771	421.5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농지법」²⁾에서는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이용 실태조사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현행 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5년 이내에 ① 취득농지 ② 부채지주의 농지 ③ 공유농지 ④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등에 대하여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90만 필지에 해당한다.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농지관리기금 4130-412

2)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상의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농지

1.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2.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취득한 농지
3.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5.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6.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8. 그 밖에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증액된 727억 1,500만원의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 지자체가 수행하는 190만 필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930만 필지로 확대하면서 특별조사비 478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다. ② 이용실태조사 필지가 확대되면서 출장여비, 피복비, 태블릿 등 44억 4,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지자체 추가 운영비 지원이 12억 500만원 증액되었다. ③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조사를 위한 드론을 구매하고 농지조사 시스템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65억 4,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④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농지 이용실태조사 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조사를 위한 일용임금 등 63억 2,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세부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당초 계획(13,944백만원)	계획변경안(72,715백만원)
1. 지자체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3,944백만원 가. 조사원 채용 (13,344백만원) · 이용실태조사 : 190만 필지 × 0.5시간/필지 × 10,320원 × 1.1147(보험료) × 70% = 7,650백만원 · 농지대장현행화조사 : 300만필지 × 0.33시간/필지 × 10,320원 × 1.1147(보험료) × 50% = 5,694백만원 나. 운영비 지원(600백만원)	1. 지자체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59,842백만원 가. 조사원 채용 등 (58,037백만원) · 특별조사 : 930만 필지 × 0.55시간/필지 × 12,235원 × 1.1147(보험료) × 70% = 47,898백만원(증액) · 농지대장현행화조사 : 300만필지 × 0.33시간/필지 × 10,320원 × 1.1147(보험료) × 50% = 5,694백만원 · 출장여비, 피복비, 태블릿 등 4,445백만원(신규) 나. 운영비 지원(1,805백만원(증액)) 2. 한국농어촌공사 ○ 민간경상보조(320-01) : 6,547백만원(신규) 가. 드론 구매, 용역 및 영상 저장·편집 장비 등 (6,255백만원) 나. 농지 조사 지원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발 및 라이선스 구입 등 (192백만원) 다. 농지 조사를 위한 교육·홍보비 (100백만원)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비 6,326백만원(신규) ○ 일용임금(210-01) : 5,018백만원 · 392명 × 256만원 × 5개월 × 100% = 5,018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575백만원 · 일용임금 × 11.47% × 100% = 575백만원 ○ 피복비(210-03) : 59백만원 · 392명 × 15만원 × 100% = 59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333백만원 · 392명 × 10,625원 × 16일 × 5개월 × 100% = 333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41백만원 · 392명 × 66천원 × 5개월 × 100% = 129백만원 · 우편 송달료 등 212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분석의견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특별조사 수행을 위한 지자체의 조사원 채용 규모가 현재 850명에서 4,500명으로 대폭 확대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중인 대규모의 조사원 신규 채용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 채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채용된 조사원은 단기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90만 필지를 조사하기 위해 채용된 조사원 규모는 850명 내외이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930만 필지 규모로 조사 규모를 확대하면서 약 4,500명 규모로 조사원 채용이 확대될 계획이다. 이는 매년 지자체에서 채용하고 있는 조사원 규모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원 채용 개요]

구 분	내 용
채용 주체	시·군·구 및 1,850여 개 읍·면·동
채용 기간	매년 9월 ~ 11월 (90일)
채용 형태	단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모	(현행) 850명 내외(190만 필지) → (계획) 약 4,500명(930만 필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현재 조사원의 채용은 전국 통합 공고 방식이 아닌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조사 주체가 시군구 및 약 1,850여 개 읍·면·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850명 규모의 5배 수준인 약 4,500명의 조사원 신규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별 상이한 조사원 채용 공고 일정을 사업 지침을 통해 관리하고, 나라일터, 도농인력중개플랫폼 등 통합채용 플랫폼을 활용하여 조사원 채용 공고 플랫폼을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조사 규모가 전체 농지 대상인 전수조사 규모로 확대되는 만큼 실효성있는 조사가 수행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전수조사 실시 전 농지법 기초, 위반유형, 현장 판단 기준 등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특별조사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고용된 조사원의 농지조사 수행 근거, 출입조사권의 범위와 같은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추정안을 통해 수행되는 농지특별조사에는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관원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① 지자체는 기간제근로자(민간인)인 조사원을 채용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전담하는 주체이고,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드론을 구매하여 투기 우려 지역 등에 대해 드론 촬영을 통해 농지 현황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조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③ 농관원은 매년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및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일제 정비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부 물량에 대해 농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농지특별조사 사업 주체별 역할]

구 분	내 용
지자체	조사원(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농지이용실태조사 수행
한국농어촌공사	드론을 구매하여 지자체의 조사 지원 예정 (투기 우려 지역 등에 대해 드론 촬영을 통해 농지 현황 파악)
농관원	일부 물량에 대해 현장 노하우를 지닌 농관원 주관으로 「농지법」 위반 사항 조사 예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군·구청장은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소속 공무원에게 농지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도록 하고,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⑥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⑦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농지법」은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54조의4 제1항에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토지등의 출입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등의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또는 시·구·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 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49조제3항에 따른 농지대장 작성·정리 또는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거대·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제5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자**
 5. **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이와 동시에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해 이해관계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일시와 장소 등을 사전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출입조사권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농지법」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우편, 전화, 전자 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 싸인 해당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처럼 현행법상으로 조사의 권한을 민간인이 아닌 소속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등의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조사 수행을 위해 타인에 토지에 대한 출입 권한을 허용하면서도 그 권한의 행사에 제한을 둔 취지는 농지이용실태조사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행위로서, 헌법상에 보장된 재산권 및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성격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와 농관원은 현행 「농지법」 제54조의4 제1항에 근거하여 농지특별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겠으나, 민간인인 기간제 근로자 조사원의 경우 조사원이 농지 소유자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측이 해당 조사원의 권한 유무를 문제 삼아 출입을 거부하거나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사원은 현장조사를 사실상 포기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재방문해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 조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조사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추경안 편성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농지 전수조사 예산이 원활히 집행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법 상에 지자체에서 채용한 조사원들의 농지이용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³⁾

3)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셋째, 동 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드론을 활용한 농지조사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드론 구매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매한 드론의 증장기 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출할 필요가 있고, 드론을 활용한 농지 특별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드론 관련 현행 법령과 부합하는 내부 규정을 정비하여 드론을 활용한 농지 조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증액된 내역 중 한국농어촌공사에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신규 편성된 62억 2,500만원은 드론을 활용한 농지 조사를 내용으로 한다.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부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당초 계획	계획변경안
	○ 민간경상보조(320-01) : 6,547백만원 가. 드론 구매, 용역 및 영상 저장·편집 장비 등 (6,255백만원) 나. 농지 조사 지원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발 및 라이선스 구입 등 (192백만원) 다. 농지 조사를 위한 교육·홍보비 (10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비 예산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10대의 드론을 구매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효율적인 자료 수집 및 조사를 위해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서 드론 촬영 용역을 통해 농지 현황을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드론을 구매하여 지방정부의 농지 조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드론의 활용은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조사원이 일일이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은 있겠으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드론 활용에 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고, 구매한 드론의 증장기 활용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드론 운용 인력 교육이나 「항공사업법」⁴⁾에 따른 공공기관 소유 드론의 보험 가입 의무 등에 관한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드론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드론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경찰청, 산림청 등은 훈령이나 예규 등 행정규칙을 통해 드론을 행정에 적용 시 선결 과제인 「항공안전법」상의 비행 규제나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례로,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이라는 예규를 통해 드론(무인비행장치)의 운용계획 수립, 현황 조사, 운용자 지정, 사용승인,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여 「항공안전법」, 「드론 활용 촉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드론 관련 법령과 그 아래 체계적으로 정비된 행정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드론을 활용한 행정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매한 드론의 중장기 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고, 드론을 활용한 농지 특별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드론 관련 현행 법령과 부합하는 내부 규정을 정비하여 드론을 활용한 농지 조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변경계획안에 신규로 편성된 세부 내역들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보다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증액된 내역 중 930만 필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신규로 편성하면서 조사원의 출장여비, 피복비, 태블릿 등 명목으로 44억 4,5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농관원 조사로 일용임금 50억 1,800만원, 고용부담금 5억 7,500만원, 피복비 5,900만원, 국내여비 3억 3,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4,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4) 「항공사업법」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③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소유자들은 그 경량항공기의 비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부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당초 계획	계획변경안
	<지자체 이용실태조사> 가. 조사원 채용 등 · 출장여비, 피복비, 태블릿 등 4,445백만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 6,326백만원 ○ 일용임금(210-01) : 5,018백만원 · 392명 × 256만원 × 5개월 × 100% = 5,018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575백만원 · 일용임금 × 11.47% × 100% = 575백만원 ○ 피복비(210-03) : 59백만원 · 392명 × 15만원 × 100% = 59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333백만원 · 392명 × 10,625원 × 16일 × 5개월 × 100% = 333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41백만원 · 392명 × 66천원 × 5개월 × 100% = 129백만원 · 우편 송달료 등 212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계획에는 농지 특별조사를 예정하고 있지 않아 출장여비, 피복비 등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농지 특별조사를 추진하게 되면서 현장조사 시 필요한 출장여비, 피복비 등을 편성하였고, 금액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농관원 조사에 대해서는 농관원은 매년 공익직불제 이행점검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일제 정비를 수행하면서 고도화된 현장 조사 역량을 구축하고 있어 실제 영농 여부 확인 노하우를 농지 조사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농지 특별조사가 기존에 수행해 온 매년 190만 필지 규모의 실태조사를 930만

필지 규모의 조사로 확대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조사원 증원에 따른 예산 증액은 필연적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기존 실태조사에서 편성되지 않았던 출장여비, 피복비 등 신규 항목이 당초 계획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45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세부 산출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대규모 지자체 조사에 더하여 농관원 조사까지 약 64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변경계획안에 신규로 편성된 세부 내역들에 대해서 그 편성 근거 및 산출 내역을 보다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

**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가 대상지역 선정시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 필요 등
(농림축산식품부)**

(1) 현 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¹⁾은 소멸 위기인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사업 대상(군) 주민등록 거주자에게 인당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당초 예산액은 2,340억 7,500만원이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초기 단계에서 인구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706억 3,000만원 증액된 3,047억 500만원이 편성하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234,075	304,705	70,630	30.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706억 3,000만원은 인구소멸 지역 군 중 5개 군(19.6만명)을 추가 선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인당 15만원씩 6개월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산출되었다.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35-300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세부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산출내역
본예산	234,075 백만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비(337백만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비(233,738백만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10개 군(32.5만명)×15만원×12개월×40%=233,738백만원
추가 경정 예산	304,705 백만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비(337백만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비(304,368백만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10개 군(32.5만명)×15만원×12개월×40%=233,738백만원 · 추가 선정 5개 군(19.6만명)×15만원×6개월×40%=70,63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분석의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 대상지역 선정시 시범사업 종료 이후 기본소득 정책 성과 평가라는 동 시범사업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비교 연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정책 모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정책효과에 대한 면밀한 성과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2년간(2026~2027년)의 시범사업이다.

동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 대상지역 선정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농어촌과 기본소득 지급 유무 외에 인구, 소득 등 외생변수가 유사한 비교대상 지역을 선정하였고, 비교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 69개 군 중에서 10개 군(강원 정선, 경기 연천,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전남 곡성, 전남 신안,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충남 청양, 충북 옥천)을 선정하였고, 2026년 동 사업 예산액은 2,340억 7,500만원으로 10개 군의 주민 32.5만명에 매월 15만원(국비 보조금액은 6만원 정액 지원²⁾)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도입방안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69개) 중 지역 여건,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 지역 선정, 2년간('26~'27) 시범사업 추진 *사회적 논의 및 정책효과 성과평가를 거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본사업 전환 검토('27)
지원대상·규모	인구감소지역 군(69개) 중 10개 군(32.5만명)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26예산) 2,340억 7,500만원
지원내용	일정 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제외자(안): 직업군인 외 군 복무자, 실거주 미확인자 등
국고 보조율	인당 월 6만원을 정액 지원(농어촌기본소득의 40%)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부담으로 인당 월 15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국비 지원액은 인당 월 6만원 정액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해 5개의 군을 추가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인바, 2026~2027년까지의 시범사업 종료 이후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정책 모델로서 정책의 성과를 실효성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5개의 군 추가 선정시 기본소득 정책 성과 평가라는 동 사업의 본래 취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정책실험에서는 비교집단(대조군)의 독립성 확보가 효과 측정에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예컨대 연결 지역이 사업지가 되면 인구 이동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등 사업지역과 비사업지역 간의 비교를 통한 정책효과 측정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시 시범사업 종료 이후 기본소득 정책 성과 평가라는 동 시범사업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비교연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부담으로 인당 15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국비 지원액은 인당 6만원 정액 지원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는 면 지역 지역화폐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사용처 제한한도를 상향하는 등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지역 군의 주민에 매월 15만원³⁾을 지역화폐(지역 사랑상품권)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용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정한 거주 읍 또는 면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5개 업종(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은 읍과 면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지역 및 업종]

1. 사용 지역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정한 거주 읍 또는 면 지역

- 시내권역에 사용처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되, 소비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여러 개 면 또는 읍·면을 생활권으로 지정해 사용 가능

* 읍과 하나의 생활권을 설정한 면의 경우 읍 내 가맹점 등의 사용한도 설정

○ 읍 중심으로 운영되는 5개 업종(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은 모든 읍·면에서의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한도를 다르게 설정

자료: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

이에 따라 읍 주민은 본인이 거주하는 읍과 군 내 모든 면에서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하고, 5만원의 한도 내에서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MOU 체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읍과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된 면 주민은 거주하는 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5만원의 한도 내에서 읍 내 가맹점,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MOU 체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에, 읍과 별도의 생활권으로 설정된 면 주민은 전술한 5개 업종(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면 내에서 사용해야 하고, 5만원의 한도 내에서도 모두 면 내의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MOU 체결)에서 사용해야 한다.

3) 국비 보조금액은 6만원 정액 지원이고, 지자체 부담에 따라 지역별 지원액은 15만원 이상 가능

[농어촌 기본소득 읍·면별 사용처 세부기준]

구분	읍과 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	읍과 면을 별도의 생활권으로 설정
읍 주민	· 군 내 모든 면에서 사용 가능 ·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MOU 체결) 사용한도를 합산하여 최대 5만원*으로 제한 *시범사업 기간 중 제한적으로 허용된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사용금액 포함 *군비추가분이 있을 경우, 추가분만큼 한도 상향 가능	
면 주민	· 군 내 모든 면에서 사용 가능 · 읍 내 가맹점,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MOU 체결) 사용한도를 합산하여 최대 5만원*으로 제한 *예외적으로 허용된 농협 주유소 또는 농자재판매장 사용금액 포함 *군비추가분이 있을 경우, 추가분만큼 한도 상향 가능	· 군 내 모든 면에서 사용 가능 · 5개 업종(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한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MOU 체결) 사용한도를 합산하여 최대 5만원*으로 제한 *예외적으로 허용된 농협 주유소 또는 농자재판매장 사용금액 포함 *군비추가분이 있을 경우, 추가분만큼 한도 상향 가능

자료: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라는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일회적인 소득 재분배의 효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하기 때문인 바,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 현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23일 기준 연천군 내 읍·면별 지역사랑상품권(연천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 현황을 살펴보면, 연천군 전체 가맹점 2,165개 중 연천읍과 전곡읍에는 각각 322개, 1,185개의 가맹점이 있으나, 군남면, 미산면 등 면은 200개가 되지 않으며, 중면의 경우 가맹점의 수가 15개뿐이다.

[2026년 3월 23일 기준 연천군 내 읍·면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

(단위: 개)

구 분	가맹점 수	구 분	가맹점 수
연천읍	322	백학면	104
전곡읍	1,185	장남면	31
군남면	117	중면	15
미산면	58	신서면	111
왕징면	31	청산면	193
합 계	2,165		

자료: 연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작성

특히 읍과 면이 별도의 생활권으로 설정된 지역 주민의 경우 5개 업종을 제외하고 지역화폐를 모두 면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의 사용한도를 5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면 지역의 부족한 가맹점 수를 고려할 때 주민들의 선택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자칫 실질적인 사용처가 없어 사용 기한이 있는 지역화폐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①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에 대해서는 면 주민도 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면 지역 주민에게는 기본소득 사용기한⁴⁾을 읍 주민보다 확대하였다고 보도⁵⁾한 바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와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생활권역별로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제한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으나, 5개 업종(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에 대해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읍으로 확대하고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기한을 확대하는 보완 방안이 기본소득 사용처 제한에 따른 면 지역 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실질적인 사용 편의 확보에 충분하지 못한 측면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면 지역 지역화폐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사용처 제한한도를 상향하는 등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읍 주민(3개월), 면 주민(6개월)

5)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소멸 위기 탈출 정조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2026.2.26

사.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면밀한 집행 관리 필요 (해양수산부)

(1) 현 황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¹⁾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대형마트·전통 시장 등) 할인행사를 추진하여 소비자들의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동 내역사업의 2026년도 본예산은 1,000억원이 나,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 소비심리 위축 방지를 위한 사업 확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00억원이 증액된 1,300억원이 편성되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예산	2026		증 감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B-A)	(B-A)/A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154,748	101,748	131,748	30,000	29.5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100,000	100,000	130,000	30,000	30.0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어업인 소득 향상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및 전통 시장 등 주요 소비처 중심 할인행사·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소비자 직판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 추경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실시되고 있다. 동 사업은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100%), 자치단체경상보조(50%) 형태로 실시되고, 시행주체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공모로 선정된 업체·단체 등이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수산발전기금 3044-311의 내역사업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로 국내 어업인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고, 신선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여 민생부담 완화
○ (지원대상)	공모로 선정된 업체·단체
○ (지원내용)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및 전통시장 등 주요 소비처 중심 할인행사·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소비자 직판행사 지원
○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100%), 자치단체경상보조 (50%)
○ (사업기간)	2020~계속
○ (시행주체)	해양수산부, 지자체, 공모로 선정된 업체·단체 등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의 2026년도 본예산은 1,000억원으로 온·오프라인 행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제로페이 행사, 지자체 직거래 장터 등 4개로 이루어진다. 추경예산안은 추석 할인행사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할인(200억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85억원), 홍보·운영비(15억원)에 총 3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2026년 본예산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 예산 개요 및 추경예산안]

구분		행사명
전체 예산		1,000억원 → 1,300억원(300억원 증액)
온·오프라인 (7회)	예산	500억원 → 700억원(200억원 증액, 500만건 → 700만건)
	사업 내용	○ 설·추석 명절 등 소비 집중 시기에 행사 추진 ○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체감 물가 완화 등을 위해 대중성 어종(6종) 등 행사 별로 품목을 결정 ○ 20% 할인(1인 당 최대 1만원 한도) 원칙을 적용 * 다만, 명절 물가 관리 및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시 한시적으로 한도 상향(1만원→2만원)
온누리 환급 (2회)	예산	320억원 → 405억원(85억원 증액, 320만건 → 405만건)
	사업 내용	○ 설, 추석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 2만원 한도)
홍보 운영비	예산	90억원 → 105억원(15억원 증액, 환급 부스 운영비)
	사업 내용	○ 대행용역, 홍보용역, 유통사 가격 모니터링, 소비자 만족도 조사용역, 효과 분석 용역, 법률자문료, 운영관리비 등

구분		행사명
제로페이 (8회)	예산	80억원
	사업 내용	○ 제로페이(한국간편결제진흥원)와 연계하여 20% 선(先) 할인 온라인 상품권 발행(구매 금액 20만원, 할인액 4만원 한도) *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권을 수산물 판매업체(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지자체 직거래 장터	예산	10억원
	사업 내용	○ 지자체 여건에 맞는 수산물 할인행사,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 (할인율 20%) * 국비 50%:지방비 50%

자료: 해양수산부

(2) 분석의견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은 수산물 소비촉진 및 물가안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나, 디지털 소외계층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고, 대형유통업체에 예산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등 향후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이슈로 인한 수산물 물가상승, 소비 심리 위축 우려가 있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인하여 2026년 본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²⁾됨에 따라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정의 달, 추석과 같이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중성 어종이나 김 등 주요 소비품목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해 수산물 수급과 물가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수산물 할인행사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산물 판매를 진작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 [2026년 4월~12월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별 예산 소요액]

- **향후 소요금액 1,091억원 대비 잔여재원은 791억원으로 300억원 부족**
 - 수산인의 날(90), 가정의달(90), 여름맞이(95), 여름휴가(95), 추석(430), 김장철(130), 고등어·마른김 등 상시(161)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연내 집행가능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의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26년의 경우에도 하반기에 여름맞이 특별전, 추석 성수품 할인대전, 김장철 행사 등 명절 및 계절별 할인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추경예산안의 집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4년간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집행	
	본예산	추경, 이월 등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22	20,000	41,000	61,000	60,000	98.4
2023	64,000	94,114	158,114	155,398	98.3
2024	133,773	-	133,773	131,149	98.0
2025	100,000	53,000	153,000	144,075	94.2
2026.3.	100,000	-	100,000	20,893	20.9

자료: 해양수산부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고령층의 인지도가 낮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계층일수록 할인 행사 정보나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의 서비스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할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기 어려워 보이므로, 추경예산안으로 확대되는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사업 등 특정 사업 유형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동 사업이 처음 시행된 2020년부터 유통업체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집행된 예산(3,290억 5,600만원) 중 54.8%(1,802억 5,800만원)가 대형유통업체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다. 동 현황자료에는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 대형유통업체 지원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2025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25.10.15.)에서도 대형유통업체 편중 문제에 대한 지적³⁾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경향신문, 2025.10.10. “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4분의 3’은 쿠팡 등 대형유통업체에 집중”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00600081#ENT>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유통업체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대형 유통업체 ¹⁾	13,523	29,058	26,261	33,803	37,549	40,064	180,258 (54.8)
중·소형 유통업체	630	2,982	3,039	15,910	13,605	21,589	57,755 (17.5)
온라인	5,217	11,247	10,330	22,031	20,771	21,447	91,043 (27.7)
계	19,370	43,287	39,630	71,744	71,925	83,100	329,056

주: 1)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은 미포함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과 사업 목적 및 구조가 유사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⁴⁾에 대해 2025년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에 참여한 한 대형마트의 경우 132개 품목에 대해 할인 행사 직전 주 대비 판매가를 인상한 후 할인행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20% 할인해 판매하였고, 132개 품목 중 45개 품목은 판매가 인상률이 20%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⁵⁾되었다. 이는 할인행사를 추진하여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동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에서 지적되어 온 여러 문제점 및 유사 사업의 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4)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부터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 소비기반 조성 사업』의 내역사업임.

5) 감사원 『처분요구별 공개문』 - 할인지원 품목 지정기준 마련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개선 필요
유통업체가 농축산물의 가격을 올린 후 이를 기준으로 할인행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할인행사 전후가
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유통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가격을 인상하
여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아. 수출기업바우처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 필요(해양수산부)

(1) 현 황

경쟁력강화 사업¹⁾은 국내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산식품 기업 및 조직 육성, 유망상품 개발, 비관세장벽 등 바우처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동 내역사업의 2026년도 본예산은 290억 7,500만원이나,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에 따른 수출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5억 8,900만원이 증액된 306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다.

[경쟁력강화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예산	2026		증 감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B-A)	(B-A)/A
수산물해외시장개척	54,663	79,098	80,687	1,589	2.0
경쟁력강화	18,674	29,075	30,664	1,589	5.5

자료: 해양수산부

내내역사업인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사업은 수출준비부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까지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성장사다리형 바우처 제공을 통해 글로벌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출기업바우처 사업으로, 추경예산안은 수출기업바우처 사업에 2026년 본예산 167억 6,400만원 대비 15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수출기업바우처(내수·초보·성장·고도화)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바우처 제공을 통한 스타 품목(김), 차세대 스타 품목(굴, 전복, 넙치 등) 수산식품 천만불 수출기업 육성
- 2026 예산 : 16,764백만원(국비 80%)
- 지원대상 : 수산식품 중소·중견 수출업체
- 사업내용 : 수출 준비단계에서 해외 마케팅까지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바우처 제공 (메뉴판식 총 22개)
- 수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 해양수산부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7-300의 내역사업

(2) 분석의견

지원 대상 기업의 재정 여건과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내수·초보·성장·고도화 바우처의 각 단계별 지원한도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상향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수출 제고 효과가 큰 내수·초보바우처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동 사업의 정책적 취지에도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예산안이 증액된 사업인 수산식품기업바우처는 준비바우처, 기업바우처(내수·초보·성장·고도화)로 이루어지고, 수산식품 중소·중견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준비,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17~22종의 바우처²⁾를 지원함으로써, 단계별·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성과 제고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수출기업바우처 사업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수산식품기업바우처	16,764	1,589	18,353	
준비바우처	905	-	905	
수출기업바우처	15,857	1,589	17,446	
① 컨설팅	569	-	569	
② 내수바우처	216	27	243	수출기업바우처 단계별 지원 한도를 각 10%씩 상향
③ 초보바우처	3,000	300	3,300	
④ 성장바우처	5,252	580	5,832	
⑤ 고도화바우처	6,820	682	7,502	

자료: 해양수산부

2) [바우처 사업 메뉴]

수출준비 (13종)	해외시장조사, 수출실무 교육,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관련 검사비, 지적재산권 출원, 국제인증 취득, 통번역 및 서류대행, 샘플통관운송비, 무역애로 해소, 수출 포장제 개발, 비관세장벽 컨설팅, 바이어 발굴, AI활용
해외진출 (5종)	수출용 브랜드 개발, 유통업체 판촉, 온라인 판촉, 해외 마켓테스트, 박람회 및 바이어 상담
경쟁력강화 (4종)	유망상품화, 홍보물 제작, 미디어 홍보, 자유평모 사업

자료: 『2026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설명자료집』

수출기업바우처 사업의 각 단계별 지원한도는 내수바우처 3,000만원, 초보바우처 5,000만원, 성장바우처 1억원, 고도화바우처 2억 2,000만원이며,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중소기업) 또는 70%(중견기업)를 지원하고 있다.

[2026년 수출기업바우처(내수·초보·성장·고도화) 지원 내용]

구분	내수	초보	성장	고도화
지원업체	9개사 내외	60개사 내외	58개사 내외	31개사 내외
지원자격	전년도 수산물 수출실적 1만불 미만인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 1만불~50만불 미만 기업	최근 2년 평균 수출 50만불~500만불 미만 기업	최근 2년간 평균 수출 500만불 이상
지원한도	30백만원	50백만원	100백만원	220백만원
지원비율	지원한도 내 총 사업비의 80%(중소기업), 70%(중견기업)			
지원기간	-	-	-	최대 5년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혼란 기증에 따른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기업바우처(내수·초보·성장·고도화)의 각 단계별로 10%씩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초보’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또는 ‘성장’ 단계에서 ‘고도화’ 단계로의 전환 업체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바우처 지원기업을 백만불(성장바우처) 또는 천만불(고도바우처) 수출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간의 지원 실적을 보면, 2021년 15개였던 지원업체 수는 2025년 100개까지 증가하였으며, 수출실적도 1억 4,500만불에서 5억 6,100만불로 같은 기간 동안 약 3.8배 확대되었고, 단계별 전환에 성공한 업체는 2023년 6개, 2024년 4개, 2025년 8개 수준으로 나타나 동 사업이 성장가능성 높은 수산식품 중소·중견업체가 단계별로 전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수·초보·성장·고도화바우처 지원 실적]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3
예산(백만원)		1,806	3,329	3,450	6,114	8,968	13,143
지원업체수 (개)	내수	-	-	-	-	-	9
	초보	-	10	10	22	40	60
	성장	10	15	17	26	39	58
	고도화	5	8	8	14	21	31
	소계	15	33	35	62	100	158
집행액 (백만원)	내수	-	-	-	-	-	-
	초보	-	395	494	982	1,704	-
	성장	851	1,266	1,547	2,380	3,441	-
	고도화	955	1,668	1,409	2,752	3,823	-
	소계	1,806	3,329	3,450	6,114	8,968	-
수출실적 (백만불)	내수	-	-	-	-	-	-
	초보	-	1	4	4	12	-
	성장	37	52	70	83	115	-
	고도화	108	138	159	301	434	-
	소계	145	191	233	388	561	-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단계별 전환실적을 살펴보면 ‘성장’ 단계에서 ‘고도화’ 단계로 전환한 업체는 13개사로, ‘초보’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성장한 업체(5개사) 대비 2.6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영세한 내수·초보바우처 참여 기업의 경우 단계 상향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수출 제고 효과가 큰 내수·초보 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

[수출기업바우처 사업 단계별 전환 실적]

(단위: 개사)

구분	초보 → 성장	성장 → 고도화	계
2023	1	5	6
2024	-	4	4
2025	4	4	8
계	5	13	18

자료: 해양수산부

국제정세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는 타당하다. 다만, 지원 대상 기업의 재정 여건과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내수·초보·성장·고도화 바우처의 각 단계별 지원한도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상향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수출 제고 효과가 큰 내수·초보바우처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동 사업의 정책적 취지에도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 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해양수산부)

(1) 현 황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 사업¹⁾은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출어지원을 위해 어업용 면세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추가경정예산 안에 468억 1,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예산	2026		증 감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B-A)	(B-A)/A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	-	-	46,819	46,819	순증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2022년과 2024년 2차례에 걸쳐 시행되었고,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어업인의 출어를 지원하기 위해 어업용 면세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기준가격 초과분의 70%(상한액 115.3원/ℓ)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40-373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사업 제1회 추경안 개요]

- (지원기간) 2026.4.1.~9.30.(6개월 구입분)
- (유종) 면세경유
- (지원대상):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어업용 면세경유를 공급받은 자
- (지원기준) [(4~9월 면세경유 평균가격) - 기준가격] × 보조율 70% (상한액: 115.3원/ℓ)
 - (기준가격) 1,070원/ℓ
 - * 2022년, 2024년 상한액: 112.5원/ℓ

자료: 해양수산부

(2) 분석의견

해양수산부는 2022년 당시 기준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동 사업의 편성 사유와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가격 등 면세경유 보조금의 편성·집행 기준을 현실화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동 사업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어업인에 대한 유류비 한시지원은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22.2.) 등으로 인해 급등한 국제 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가경정예산(238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이전용(84억 6,000만원) 및 예비비(140억 3,900만원)를 통해 447억 5,500만원이 집행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여전히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45억 700만원)에 반영되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기준가격(1,070원/ℓ) 대비 초과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으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가격으로 적용함에 따라, 2024년 면세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기준가격을 하회하게 되어 본예산 45억 70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고, 2025년도 및 2026년도 본예산에는 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았다.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2	-	23,886	8,460	14,039	46,385	46,385 [44,755]	-	-
2023	-	-	-	-	-	-	-	-
2024	4,507	-	-	-	4,507	-	-	4,507
2025	-	-	-	-	-	-	-	-

자료: 해양수산부

[2022년, 2024년, 2026년도 수협 면세경유 가격 현황]

(단위: 원/ℓ)

2022년도				2024년도				2026년도	
월	면세 경유 가격	월	면세 경유 가격	월	면세 경유 가격	월	면세 경유 가격	월	면세 경유 가격
1월	700	7월	1,471	1월	894	7월	910	1월	843
2월	793	8월	1,320	2월	907	8월	942	2월	810
3월	895	9월	1,217	3월	967	9월	870	3월	880
4월	1,153	10월	1,245	4월	938	10월	786	4월(추정)	1,381
5월	1,209	11월	1,270	5월	967	11월	810		
6월	1,296	12월	1,215	6월	911	12월	843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보조금 비율을 70%(2022년, 2024년 50%)로 상향하였고, 운송·물류업계[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 1,700원(과세유)/ℓ, 상한액 183.21원/ℓ]와의 형평성을 고려²⁾하여 기준가격(1,070원/ℓ)을 설정하였으며,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와 2022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2) 과세 경유에 포함된 유류세를 제외하여 어업용 면세 경유 기준가격을 산정

$$\text{상한액 } 115.3\text{원}/\ell \times 406,065\text{kl}(25.4\sim 9\text{월 면세유 공급량}) = 468\text{억원}$$

수산경제연구원의 『2025년도 어업경영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류비가 출어비의 53%를 차지³⁾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은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동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2년도 예산 편성시 기준가격(1,070원/ℓ)은 당시 면세경유 판매가격을 반영하여 설정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가격(1,700원/ℓ)에서 유류세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 우크라이나 사태(‘22.2.) 초기 유가 급등 전 수준으로 설정었다. 그러나 2024년에도 동일한 기준가격이 유지되면서 실제 면세경유 판매가격이 해당 기준가격을 하회하여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추경예산안에 동일한 기준가격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최근 유가 변동 추이와 국제 정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의 합리적·탄력적 편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참고로, 2022년 예산안 편성 당시와 동일한 기준가격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2026년 기준가격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전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826.5원/ℓ(1월~2월 면세경유 판매가격 평균)으로 산정된다.

3) [어업비용 지출 상황]

(단위: 천원, %)

구분	2024
출어비	404,295(100)
- 어구비	67,197(16.7)
- 수리비	33,410(8.3)
- 연료비	214,281(53.0)
- 기 타	89,406(22.0)

자료: 수산경제연구원

[2022년, 2024년, 2026년 어업용 면세경유 기준가격 및 산정 근거 현황]

(단위: 원/ℓ)

구 분	예산안 편성시 기준가격	기준가격 산정근거	연평균 유가	비고
2022	1,070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 유가 급등 전 유가 수준	1,148.6	추경예산, 이전용, 예비비를 통해 96.5% 실집행
2024	1,070	2022년 기준가격과 동일하게 설정	895.4	면세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하회하여 전액 불용
2026	1,070		-	2026년 1월~2월 면세경유 판매가격 평균: 826.5원/ℓ

자료: 해양수산부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2022년 당시 기준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동 사업의 편성 사유와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가격 등 면세경유 보조금의 편성·집행기준을 현실화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동 사업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차. 항공유 구입 사업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산림청)

(1) 현 황

항공유 구입 사업¹⁾은 산림재해(산불, 산림병해충 등) 대응을 위한 산림 헬기 운영에 필요한 항공유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6년도 본예산은 26억 3,800만원이나, 국제유가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0억원이 증액된 46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항공유 구입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예산	2026		증 감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B-A)	(B-A)/A
산림헬기 도입·운영	93,858	193,826	195,826	2,000	1.0
항공유 구입	3,517	2,638	4,638	2,000	75.8

자료: 산림청

산림청은 2026년 예산 편성 당시의 헬기 가동대수와 항공유 구입액을 기준으로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항공유 가격 인상분과 불가동 헬기 감소 대수(14대 → 7대)에 대한 항공유 구입 비용,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임차헬기 5대 운용에 필요한 항공유 추가 소요분으로 인한 항공유 구입 예산 조기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동 사업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항공유 구입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산출내역]

유가인상분: 36대 × (104.8백만원 ¹⁾ - 73.26백만원 ²⁾ = 1,135.4백만원 (A)
불가동 감소: 7대 × 104.8백만원 = 733.6백만원 (B)
국외임차헬기: 5대 × 104.8백만원 × 0.25(3개월) = 131백만원 (C)
A + B + C = 2,000백만원

주: 1) 최근 5년간(22~25) 평균 사용량에 유가 상승률(153%)과 유가 상승 전 기간(2개월)을 제외하여 단가 산정

2) 2026년도 예산 편성 당시 헬기 1대당 항공유 구입 단가

자료: 산림청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2333-300의 내역사업

(2) 분석의견

산림청은 향후 동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비목별 집행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항공유 구입 사업의 경우 실제 예산 소요액 보다 과소 편성하여 연례적으로 상당 규모의 이·전용 등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항공유 구입 사업의 집행 현황을 보면,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2024년을 제외하고는 항공유 구입 예산 부족으로 이전용 및 세목조정을 통해 동 사업을 운용하였다.

[최근 4년간 항공유 구입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리터, 원)

구분	예산 편성액	이·전용 등	예산 집행액	편성 기준량	사용량	편성단가
2022	3,024	2,757	5,781	4,102,818	6,647,051	737
2023	3,517	600	4,117	3,082,234	3,296,604	1,141
2024	3,517	△112	2,046	2,159,391	2,023,972	1,629
2025	3,517	987	4,488	2,338,586	4,606,596	1,504
2026.2.	2,638	-	1,598	1,707,001	1,213,445	1,545

주: 1. 이·전용 등: 이용, 전용, 세목조정 등

2. 2026년 1~2월 사용량 및 평균단가

3. 평균공급 단가는 매월 변동되어 다르며, 월별 단가의 평균으로 작성함

자료: 산림청

동 사업은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헬기 운영시 이를 위한 연료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중동 전쟁으로 항공유 가격이 인상되었고 2026년도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하였던 2026년 불가동 헬기 대수가 감소(14대 → 7대)²⁾하여 비행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2025년도 동 기간 대비 초동 진화를 위해 운용되는 임차헬기(3개월) 비행시간도 증가³⁾하여 2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 공군헬기(KA-32) 5대 불용에 따른 관리전환 부품 활용 및 헬기(KA-32) 부품회사 예비 부품 구매를 통한 불가동 대수 감소(당초 14대 → 변경 7대)

3) 비행시간 추세: ('25.1~2월) 673시간 → ('26.1~2월) 1,502시간(증 829시간) / 임차헬기(3개월)

[최근 4년간 항공유 구입 사업 헬기 및 예산 현황]

(단위: 대,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헬기	가동헬기	48	42	40	42	43
	임차헬기	-	-	7	2	5
	소계	48	42	47	44	48
예산		3,024	3,517	3,517	3,517	2,638
국제유가 (\$/Bbl)(원유)		96.41	82.10	79.58	69.36	119.55
항공유(원/ℓ)		1,239.53	1,119.52	1,077.01	1,017.24	1,606.12

자료: 산림청

항공유 단가의 경우 국제유가의 변동성 등으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사용량의 경우 비교적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음에도 임차 헬기의 항공유 소요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등 산림청은 동 사업 예산을 2026년 본예산을 2025년 예산보다 8억 7,900만원(25%)이 감액된 26억 3,800만원으로 과소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산편성 시 적정 비목과 비목별 소요액을 면밀하게 산출·반영하지 못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림청은 향후 동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비목별 집행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VII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산업통상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수입은 2조 2,665억 4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10조 3,583억 6,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24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9조 7,827억 7,2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18조 4,607억 4,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 9,374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다.

지식재산처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수입은 7,018억 2,7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6,403억 2,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5억원 증액되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총수입 ·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산업통상부	총수입	2,758,640	2,266,504	2,266,504	-	-
	총지출	10,241,227	9,434,233	10,358,366	924,133	9.8
중소벤처기업부	총수입	9,420,836	9,782,772	9,782,772	-	-
	총지출	20,962,074	16,523,307	18,460,741	1,937,434	11.7
지식재산처	총수입	645,885	701,827	701,827	-	-
	총지출	556,595	630,825	640,325	9,500	1.5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이미선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소관 세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정된 세입 과목은 무역보험기금 출연 증액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일반회계전입금 1개이다.

[산업통상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무역보험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380,000	70,500	170,500	100,000	141.8

주: 1.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4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1개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내 원유수급 차질에 대비하여 전략 비축유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에 1,584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석유화학제품의 원재료인 나프타의 대체수입선 발굴 시 중동산과의 차액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소부장공급망안정화종합지원 사업에 4,733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물류비 등 수출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과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에 각각 1,000억원과 3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산업통상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일반회계	무역보험기금출연	380,000	70,500	170,500	100,000	141.8
	수출지원기반활용	180,171	181,074	214,074	33,000	18.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34,606	341,429	347,334	5,905	1.7
	제조암묵지기반SI모델 개발	-	-	80,000	80,000	순증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57,446	56,738	76,738	20,000	35.2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 지원	90,545	135,036	608,431	473,395	350.6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석유비축사업출자	79,901	55,300	213,733	158,433	167.5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15,859	16,314	38,654	22,340	136.9
	석유유통구조개선	811	761	2,741	1,980	260.0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415,447	76,929	82,929	6,000	7.8
	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	-	3,777	5,857	2,080	55.1
지역균형 발전특별 회계	산업단지환경조성	387,478	409,920	423,920	14,000	3.4
	지역산업위기대응	5,165	24,667	31,667	7,000	28.3
무역보험 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	3,158,727	1,895,187	1,995,187	100,000	5.3
합 계		5,106,156	3,267,632	4,291,765	1,024,133	31.3

주: 1.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부

(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은 총 5개이다.

주요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① 모태펀드 증액을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이 1,700억원 증액되었으며, ② 소상공인지원(용자)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예수금 수입 과목이 3,248억 7,300만원 증액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중소벤처기업	기타민간차입금	5,223,150	4,115,788	4,665,788	550,000	13.4
창업및진흥기금	일반회계전입금	1,792,941	1,851,937	2,021,937	170,000	9.2
기술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	110,000	60,000	160,000	100,000	166.7
소상공인시장	일반회계전입금	3,825,610	2,196,360	2,321,880	125,520	5.7
진흥기금	기금예수금	2,274,354	453,414	778,287	324,873	71.7
합계		13,226,055	8,677,499	9,947,892	1,270,393	14.6

주: 1.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26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취약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용자) 사업에 3,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②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재기지원(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2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③ 스타트업 열풍 조성을 통해 청년이 창업에 도전하고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 위해 창업저변확대 사업에 1,6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④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모태출자조합 사업에 1,7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⑤ 중동전쟁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지원기 반환용 사업에 1,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⑥ 중동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 및 온라인 신규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사업에 121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⑦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사업에 2,5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2026		증 감	
			본예산 (현재확액)(A)	추경안(B)	(B-A)	(B-A)/A
일반회계	신용보증 기금출연	100,000	80,000	180,000	100,000	125.0
	기술보증 기금출연	110,000	60,000	160,000	100,000	166.7
	ICT융합스마트 공장보급확산	286,923	402,056	489,056	87,000	21.6
	기술혁신 기반조성	16,521	43,366	55,866	12,500	28.8
	수출지원 기반활용	217,360	150,203	250,203	100,000	66.6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	92,058	93,572	105,756	12,184	13.0
	마케팅지원사업	21,827	24,944	31,544	6,600	26.5
	창업저변확대	20,318	24,830	189,630	164,800	663.7
	창업사업화지원	457,567	461,838	536,918	75,080	16.3
	민관협력 창업자육성	208,281	239,856	338,256	98,400	41.0
	중소기업 재기지원	16,629	14,966	24,966	10,000	66.8
	창업생태계 활성화지원	87,238	69,290	74,640	5,350	7.7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	1,792,941	1,851,937	2,021,937	170,000	9.2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전출	3,825,610	2,196,360	2,321,880	125,520	5.7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2026		증 감	
			본예산 (현계획액)(A)	추경안(B)	(B-A)	(B-A)/A
중소벤처기업 창업및 진흥기금	긴급경영안정 자금(용자)	550,000	250,000	500,000	250,000	100.0
	신시장진출지원 자금(용자)	482,450	316,378	416,378	100,000	31.6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용자)	1,835,800	1,605,800	1,755,800	150,000	9.3
	재도약지원 자금(용자)	750,100	612,500	662,500	50,000	8.2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800,000	820,000	990,000	170,000	20.7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243,946	174,522	274,522	100,000	57.3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83,422	131,069	191,389	60,320	46.0
	소상공인 성장지원	1,927,379	621,243	661,243	40,000	6.4
	소상공인 재기지원	360,455	351,649	376,249	24,600	7.0
	소상공인지원 (용자)	4,220,000	3,362,000	3,682,000	320,000	9.5
	시장상권 경영혁신지원	1,940,172	564,895	565,495	600	0.1
	공공자금관리기 금(총괄계정)	589,956	565,527	570,400	4,873	0.9
	예수이자상환					
합 계		13,378,810	21,036,953	15,088,801	17,426,628	82.8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자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현계획액을 기재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의 경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1개 사업의 신규사업 세출 증액만 이루어졌다.

신규 사업인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사업은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해외시장에서 위조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증명표장을 개발, 국가 차원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95억원이 편성되었다.

[지식재산처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일반회계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	-	9,500	9,500	순증

주: 1.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지식재산처

가. 소부장공급망안정화종합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개선 필요 (산업통상부)

(1) 현 황

소부장공급망안정화종합지원 사업¹⁾은 수입선다변화, 공급망 컨설팅, 품목 심층 분석 등을 통해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기업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2026년도 본예산은 1,350억 3,600만원이나 요소 등 공급망 안정화 및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733억 9,500만원이 증액된 6,084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소부장공급망안정화종합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소부장공급망안정화종합지원	90,545	135,036	608,431	473,395	350.6
수입선다변화지원	5,251	5,184	9,127	3,943	76.1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	-	469,452	469,452	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수입선다변화지원, 공급망컨설팅지원, 글로벌공급망정보분석,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 투자지원,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의 총 6개 내역으로 구성된다. 이 중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증액 편성된 내역은 수입선다변화지원,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의 2개 내역이다. 두 내역사업 모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한다.

① 수입선다변화지원 내역은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요소를 제3국에서 수입할 경우 중국산과의 단가차액을 수입기업에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 본예산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3574-306

은 51억 8,400만원이었으나, 추경안에는 39억 4,300만원 증액된 91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다. 본예산을 통해 지원하려던 요소 수입물량(총 3만 7,500톤)에는 변화가 없으나, 중동 전쟁에 따라 급등하고 있는 요소 가격²⁾을 반영하여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증액분이 추경안에 반영되었다.

[2026년도 요소 수입선다변화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제1회 추경안
차액 보조	일본산	· $90\$ \times 7,500\text{톤} \times 60\% \times 1,425\text{원}$ = 577	· $250\$ \times 7,500\text{톤} \times 60\% \times 1,450\text{원}$ = 1,631 (+1,054)
	베트남산	· $80\$ \times 22,500\text{톤} \times 40\% \times 1,425\text{원}$ = 1,026	· $300\$ \times 22,500\text{톤} \times 40\% \times 1,450\text{원}$ = 3,915 (+2,889)
	중동·유럽등	· $240\$ \times 7,500\text{톤} \times 90\% \times 1,425\text{원}$ = 2,309	· $240\$ \times 7,500\text{톤} \times 90\% \times 1,425\text{원}$ = 2,309
	대행수수료 및 위탁정산비	· 대행수수료: 342 · 위탁정산운영비: 150	· 대행수수료: 342 · 위탁정산운영비: 150
대체수입선 발굴		· 52백만원 $\times$ 15개사 = 780	· 52백만원 $\times$ 15개사 = 780
합계		5,184	9,127

자료: 산업통상부

②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내역은 이번 추경안에 신규로 편성되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우리나라 나프타 수요의 2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되고 있는 만큼,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나프타 수급 차질 및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기업들이 4~6월 중 대체수입선을 통해 나프타 수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하기로 하였고, 2026년 제1회 추경안에는 대체수입 가능 물량 213만톤을 수입단가 차액 304달러/톤, 보조율 50%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 4,69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 중동산 요소가격의 경우 2월 27일 기준 톤당 484달러에서 3월 11일 기준 톤당 650달러로 34.3% 인상되었다.

[2026년도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사업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대체수입 물량(213만톤) × 지원단가(220,400원) = 469,452 - 지원단가: 수입단가 상승분(1,087\$/톤-783\$/톤)×50%×1,450원/\$ ※ 지원물량 및 단가 등은 글로벌 나프타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산업통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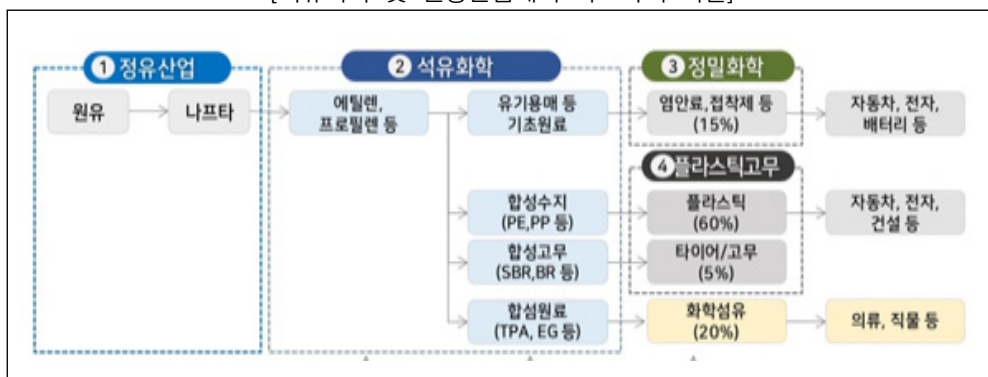
(2) 분석의견

소부장공급망안정화종합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산업통상부는 나프타 수급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생산 구조가 NCC설비에 집중되어 있어 원재료 조달 리스크 대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원료 포트폴리오 및 수입선 다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프타(Naphta)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자동차·전자·배터리·건설·의류 등 다양한 수요산업의 기초소재 생산에 필요하다.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설비가동이 중단될 경우 전방 수요산업에서 사용하는 기초소재 공급 부족이 발생하여 이들 산업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석유화학 및 전방산업에서 나프타의 역할]



자료: 산업통상부

2026년 2월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내 석유화학업체의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전방 수요산업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8일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였다.³⁾ 또한, 산업통상부는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3월 27일 0시부터 5개월간 시행하기로 하였다.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 주요내용]

- ① 사업자의 나프타 생산·사용 등에 관한 보고 의무
- ② 나프타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 ③ 나프타 수출제한 물량의 국내 전환
- ④ 수급조정 조치
- ⑤ 시행시기: 2026.3.27. 00시~5개월간 시행

자료: 산업통상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 조치와 함께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기업의 나프타 대체 수입선 발굴을 지원할 목적으로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사업을 이번 추경안에 신설하였다. 동 사업은 석유화학기업들이 2026년 4~6월 중 대체수입선을 통해 나프타 수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안 산출 시 나프타 수입 보조 지원물량은 호르무즈 봉쇄 이후 석유화학기업이 계약을 체결 또는 확보 중인 대체수입 물량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으며, 총 213만톤 규모이다. 보조금 지원단가는 중동전쟁 발생 이후 수입단가와 중동전쟁 발생 직전 5년간의 월별 나프타 수입단가 간 차액인 톤당 304달러 수준이며, 보조율 50%를 적용하여 톤당 152달러 수준으로 지원된다. 지원물량 및 단가는 사업 집행 과정에서 글로벌 나프타 상황 등에 따라 변동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의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에서의 상황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수입국가 또는 대체수입지역의 확보, 해외 공급사업자의 관리, 수입국가 다변화를 위한 물류 비용 절감 등의 사업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2026년도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추경안 산출근거]

구분	적용기준	산출근거
물량	213만톤	호르무즈 봉쇄 이후 석화기업 확보 예정인 대체수입 물량 합계 추정: 213만톤
단가 및 보조율	304\$/톤	· 단가: 1,087\$/톤 - 783\$/톤 = 304\$/톤 - (중동전쟁 발생 이후 기간(2.27.~3.13.)의 일별 나프타 수입단가 중 극단값(상하위 10%)을 제외한 수치 중 가장 높은 단가) - (중동상황 발생 직전 5년간의 월별 나프타 수입단가 중 극단값(상하위 10%)을 제외한 수치 중 가장 높은 단가) · 보조율: 50%
환율	1,450원/\$	최근 환율 적용

자료: 산업통상부

한편, 국내 연간 나프타 사용량은 약 5,900만톤으로, 이 중 국내생산이 약 55%, 해외수입이 약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수입 중 중동 지역에서의 조달 비중이 약 60%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연간 나프타 사용량 중 약 25%인 1,440만톤이 중동에서 직접 수입된다.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213만톤은 국내 연간 나프타 사용량(5,900만톤)의 3.6% 수준이며, 정상가동률 기준으로 약 13일(2주) 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⁵⁾

[국내 나프타 사용량 및 조달 구조 등]

구분	연간 사용량	조달 구조	중동 의존도	추경안 구매량(안)	중동산 평균가격
나프타	5,900만톤	국내 생산 55%, 해외 수입 45%	25% (연간 1,440만톤)	213만톤 (약 13일분)	617\$/톤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을 통해 4월부터 6월까지 대체수입물량 구매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프타 수출제한 및 대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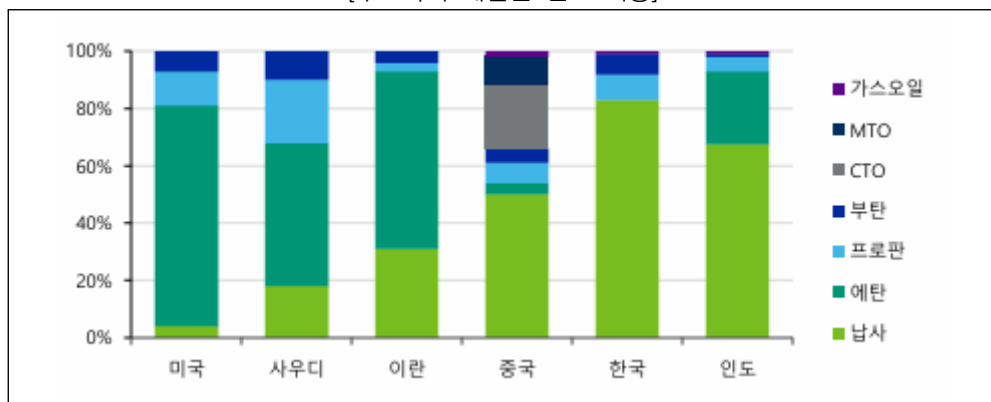
4) 그러나 정유사를 통한 국내생산 중 중동산 원유조달 비중이 평균 7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나프타 생산 중 실질적인 중동 노출도는 60% 이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5) 산업통상부는 5,900만톤은 기업들이 정상 가동 했을 때 기준이며, 국내 기업들은 현재 최저가동률 수준으로 가동하고 있어 실제 사용가능 일수는 13일 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동률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가능일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입 보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동 상황이 정상화되어 나프타 수출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석유화학 산업의 타격은 우리나라에 특히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생산 구조가 NCC⁶⁾설비에 집중되어 있다는 데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에틸렌 원료 중 나프타 비중은 2024년 기준 83%로 주요 에틸렌 생산국가 중 가장 높다. NCC는 ECC⁷⁾나 CTO⁸⁾ 대비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이 생산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 생산 방식에 집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이번 중동 전쟁처럼 원재료 공급제약이 발생할 경우 대응 여력이 급격히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⁹⁾

[주요국의 에틸렌 원료 비중]



주: 2024년 기준

자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신용평가(「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산업별 영향 점검 Update: 석유화학」) 재인용

한편, 산업통상부는 2025년 12월 30일 제정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자율적

6) NCC(Naphta Cracking Center): 나프타를 주원료로 사용, 올레핀 및 비올레핀 계열까지 다양한 제품 생산

7) ECC(Ethane Cracking Center): 에탄가스를 주원료로 사용, 올레핀 계열 제품 생산비중 약 80%

8) CTO(Coal to Olefin): 석탄을 주원료로 사용, 올레핀 계열 제품만 생산가능

9) 한국신용평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산업별 영향 점검 Update: 석유화학」, 2026.3.18.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 동 구조개편 방향은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이다. 그러나 이번 중동 전쟁 상황에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구조에 취약성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이번 중동 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제한 및 대체수입 차액보조 등의 노력과 함께,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생산구조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원료 포트폴리오 및 수입선 다변화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요소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 중동 전쟁 상황처럼 글로벌 공급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경우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요소(Urea)는 화학산업의 원료나 비료, 자동차, 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2011년 국내 기업의 사업 철수 이후 국내 소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국내 요소 수입의 약 84%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로 차량용 요소수 공급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수급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산업통상부는 ‘수입선다변화지원’ 내역사업을 통해 일본, 베트남 등 제3국으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 중국산 대비 단가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조해 왔으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는 중동 및 유럽 등의 지역으로부터 차량용 요소를 공동 구매하고, 보조율을 90%까지 상향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26년에도 산업통상부는 일본(60%), 베트남(40%), 유럽·중동 등(90%) 수입선별 차등 보조를 계획하였으나, 중동 전쟁 이후 글로벌 요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조금 단가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산 요소의 경우 톤당 보조금이 54달러에서 150달러로, 베트남산 요소는 톤당 보조금이 32달러에서 120달러로 각각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2026년도 요소 수입국별 지원물량 및 보조율 현황]

구분		일본	베트남	유럽·중동 등
지원물량		7,500톤	22,500톤	7,500톤
보조율		단가차액의 60%	단가차액의 40%	단가차액의 90%
1톤당 보조금액	본예산	$90\$ \times 60\% = 54\$$	$80\$ \times 40\% = 32\$$	$240\$ \times 90\% = 216\$$
	추경안	$250\$ \times 60\% = 150\$$	$300\$ \times 40\% = 120\$$	

자료: 산업통상부

최근 글로벌 요소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공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전세계 요소 수출 물량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 이란의 카타르 공격으로 요소 생산의 핵심 원료인 LNG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중동산 요소 가격은 2026년 2월 27일 톤당 484달러에서 3월 11일 톤당 650달러까지 급등하였다. 또한, 중국 역시 2026년 3월 기준 자국 내 비료 공급 확보와 식량 안보를 이유로 요소 수출을 제한하여 사실상 수출 허가를 중단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베트남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대체 수입선의 안정성도 담보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LNG를 원료로 요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중동 지역의 에너지 공급 차질로 원료 수급에 영향을 받아 요소 생산 및 수출에도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은 자국의 가스전을 기반으로 요소를 생산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지만, 글로벌 공급 부족 상황에서 수요가 집중될 경우 가격 상승 및 물량 확보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4년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면서 요소 대란이 발생했을 당시, 산업통상부는 반복되는 요소수 공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생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었다. 이후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2025.3.25.)’에서 국내 생산 재개 방안(1안)과 수입 다변화 지원 방안(2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국내 생산 재개는 정부 재정부담이 크고, 유연한 정책대응이 곤란하다는 사유 등으로 수입 다변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수입 다변화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공급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유효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최근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공급 자체가 축소되고 주요 수출국이 자국 내 수급 안정을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요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더라도 글로벌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요소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단기적으로는 수입선 다변화,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요소 공급망을 관리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국내 생산 기반을 재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산업통상부)

(1) 현 황

정부는 「무역보험법」 제30조¹⁾에 따라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²⁾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지원 확대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 본예산에는 70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000억원 증액된 1,705억원이 편성되었다.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무역보험기금출연	380,000	70,500	170,500	100,000	141.8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작·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공급 확대, 나프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자원 수입기업 대상 수입자금 금융지원 확대, 중동 외 대체시장 발굴 시 수입자 한도 우대 등을 위하여 총 3조원의 무역보험 지원 증가에 예상되는 기본재산 예상손실액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의 기본재산을 확충하고자 1,000억원을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무역보험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3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공급확대를 위해 출연금 1,000억원과 함께 자체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무역보험법」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4. (생략)

2) 코드: 일반회계 1138-881

재원 77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① 중동 사태로 인해 물류 지연,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피해가 확대될 것을 예상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제작자금 대출 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230억원을 편성하였고, ② 거액 수출계약이 성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사태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한도 3,0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130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③ 중동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석유화학, 에너지, 광물 등 주요 자원을 수입하는 기업의 수입자금 금융지원 6,500억원을 확대하기 위해 3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④ 중동 해외 현지법인의 운전자금 2,0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90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⑤ 중동 리스크를 피해 중남미·동남아 등 대체시장 수입선 발굴 시 거래 가능한도를 최대 3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단기수출보험 1조 3,500억원 지원을 목표로 자금운용배수 30배를 적용하여 2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6년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 추정 증액 세부내역]

(단위: 배, 억원)

구분	세부내역	지원목표	자금운용 배수	기금 출연	자체 재원	내용
중소기업 수출 긴급지원	① 유동성 지원	5,000	12.5	230	170	중동사태 작간접 피해 중소중견 기업 대상 유동성 공급 확대
	② 특례지원	3,000	12.5	130	110	거액 수출계약 성사 후 중동사태 로 일시적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에 특별한도 부여
	소계	8,000	12.5	360	280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지원	③ 수입보험 확대	6,500	12.5	300	220	중동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증 한 석유화학, 에너지, 광물 등 주요 자원 수입기업의 수입자금 금융지원 확대
	④ 현지법인 유동성 지원	2,000	12.5	90	70	중동사태로 일시적 운전자금 애 로를 겪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 유동성 지원
	소계	8,500	12.5	390	290	
⑤ 대체시장 발굴		13,500	30.0	250	200	중남미·동남아 등 대체시장 수입 선 발굴 시 수입자 한도 우대
합 계		30,000	-	250	200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5개 지원 방안 중 ① 유동성 지원과 ② 특례지원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하였고, ③ 원자재 확보 강화, ④ 현지법인 유동성 지원, ⑤ 대체시장 발굴의 경우 석유화학, 에너지, 광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 세계적인 물류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중소·중견기업 외에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또한, ⑤ 대체시장 발굴을 제외한 4개 방안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을 중동 지역으로 특정하지 않고 폭넓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경안을 편성하였다.

[2026년 추경안을 통한 보증·보험 상세내용]

구분	세부내역	지원대상	지원방안	지원목표
중소기업 수출 긴급지원	① 유동성 지원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동 지역 비특정)	한도 2배 우대, 보증료 50% 할인, 무감액 연장 등	5,000억원
	② 특례지원	단기·거액 신규 수출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 (중동 지역 비특정)	재무요소 외에 비재무항목 종합 심사 후 특별한도 부여	3,000억원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지원	③ 원자재 확보 강화	석유, 에너지, 광물 등 주요 자원 수입기업 (대·중견·중소기업)	원자재 수입 선급금 미회수 보장, 수입자금 대출보증 지원	6,500억원
	④ 현지법인 유동성 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대·중견·중소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 은행 대출보증 지원	2,000억원
⑤ 대체시장 발굴		중동 바이어 대체 수입처 발굴 수출기업 (대·중견·중소기업)	한도 최대 3배 우대, 보험료 할인 (최대 50%)	13,500억원

자료: 산업통상부

(2) 분석의견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5년 대미 관세 대응에 이어 2026년 중동 전쟁으로 무역보험기금이 부담하는 위험 총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 무역보험기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금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각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중동 전쟁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고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보증보험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1,000억원의 여유재원을 무역보험 기금에 투입할 경우 기금총액은 6조 5,907억원으로 증가하고, 유효계약액은 124조 7,577억원으로 증가하며 기금배수는 18.9배로 2026년 본예산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2026년 무역보험기금 경영현황]

(단위: 억원, 배, %)

구분	2023	2024	2025	2026	
				당초	수정(안)
기금총액	39,187	47,756	59,388	64,907	65,907
정부출연금	500	700	3,800	705	1,705
자체수입	11,927	14,747	16,427	15,476	15,476
보험공급액(조원)	245	237	268	275	275
보험금지급액	3,007	3,274	3,234	3,642	3,642
채권회수액	1,839	2,281	1,381	2,229	2,229
유효계약액	1,009,241	1,034,558	1,221,073	1,247,577	1,247,577
기금배수	25.8	21.7	20.6	19.2	18.9
사고율	0.11	0.12	0.10	0.13	0.13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기금 총액은 2023년 3조 9,187억원에서 2025년 결산 기준 5조 9,388억원으로 51.6% 증가하였고, 2026년 당초 기준 기금총액도 6조 4,907억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할 예정이었으며, 이번 추경안 반영 시 6조 5,907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1.5%p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율의 경우에도 연도별 등락은 있으나, 0.2% 내외에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기금배수의 경우 2023년 25.8배에서 2024년 21.7배, 2025년 20.6배로 개선되었으며, 2026년 당초 기준 19.2배에서 이번 추경안 반영 시 18.9배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2025년 무역보험기금 유효계약액(책임잔액)은 122.1조원으로 전년(103.4조원) 대비 18.7조원 증가하였고, 2025년 무역보험기금총액은 5.94조원으로 전년(4.78조원) 대비 1.2조원 가까이 증가하였으므로, 유효계약액(책임잔액) 증가분은 기금총액 증가분의 16배 수준에 해당하여, 기금이 부담하는 위험 총량은 다소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추경안은 증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 산업피해 최소화, 경기 침체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편성되었다. 그러나 무역보험기금의 최근 경영 지표는 기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번 추경안을 통한 기금 출연은 바로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비가 아닌 무역보험기금의 기본재산을 보강해주는 성격의 재원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역보험기금은 이번 추경안을 통해 위험 총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몇 년 동안 기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재산이나 보증잔액 현황, 자체 재원을 활용한 추가 보증여력 등을 점검하는 등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정 출연 규모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소기업 수출 긴급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 지원 시 수출 중소중견기업 전체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증동 지역 수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를 구분하여 지원 절차나 우대요건을 달리하는 등 보다 면밀한 사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산업통상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무역보험공사가 국내리스크 뿐만 아니라 증동관련 해외 리스크까지 담보하는 등 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라는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추경안 편성에 앞서 산업통상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애로사항 접수데스크를 운영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긴급 피해조사를 실시하였다. 3월 20일까지 총 53개사에서 77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결과, 운송차질 답변이 가장 많았고, 거래중단 및 계약파기, 비용상승, 수출대금 회수 지연 등 수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수출기업 애로사항 접수 결과(2026.3.20.기준)]

(단위: 건)

접수 채널	업체수 (개사)	애로사항				
		운송차질	비용상승	결제지연	거래중단, 계약파기 등	합계
애로사항 접수데스크	31	11	12	10	13	46
긴급 현장 피해조사	20	16	4	4	4	28
기타(간담회 등)	2	2	-	1	-	3
합계	53	29	16	15	17	77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2026년 2월말 발발한 중동 전쟁이 1개월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원자재, 물류비 상승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출업체 전반의 채산성 및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추경안을 통해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전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하고, 보증료 50% 할인, 무감액 연장 등의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모든 수출 중소·중견기업으로 포괄할 경우, 중동 전쟁의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기존에 자금난을 겪고 있던 기업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중동 전쟁의 파급효과는 중동 지역과의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중동으로부터의 원자재 및 에너지 조달 차질을 직접적으로 겪는 기업과 원가 구조상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기업 간에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이나 절차로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일례로, 중동 지역 수출 기업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절차를 간소화하

거나 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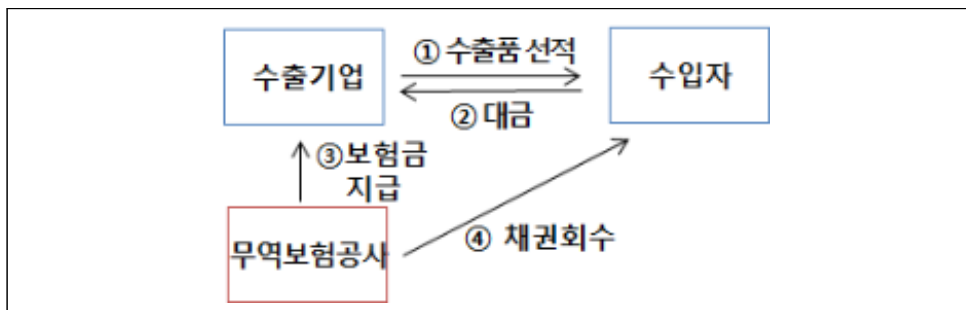
따라서 산업통상부(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 긴급 수출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 시 중동 지역 수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직접 피해, 간접 피해 및 그 정도를 반영하여 지원 절차나 우대요건을 달리하는 등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체 수출시장 발굴 지원의 경우 중동 리스크를 피해 중남미·동남아 등으로의 대체시장 수입선 발굴 시 수입자 한도를 3배까지 우대할 계획이나, 대체 거래선 확보, 네트워크 구축, 시장 진입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추경 효과가 지연될 수 있고, 대체 수입선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체 수입선 발굴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한편, 수입자 리스크를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한도를 적용하는 등의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추가된 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중동 지역 수출기업이 중남미·동남아 등 대체시장 수입선을 발굴할 경우, 수출계약 거래 가능한도를 최대 3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단기수출보험 1조 3,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가 수출기업에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에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통상 2년 이내의 단기 수출거래를 보장 대상으로 한다.

[단기수출보험 운영 구조]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대 중동 수출기업이 중동 이외의 중남미·동남아 등으로 대체 수입선을 발굴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추경안을 통한 단기수출보험 지원의 효과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존 거래처가 아닌 대체 수입선을 발굴할 경우 수입자 신용도가 낮을 수 있고, 이 경우 리스크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대체 수입선 발굴은 대체시장 조사, 네트워크 구축, 제품 현지화, 계약 체결 등의 절차로 진행되고, 전체 소요기간은 기업의 품목이나 바이어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하단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 반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수입선 발굴 사례]

구분	주요내용
A社 1.5년 소요	2023년 8.16-8.18일 미국에서 개최된 렛 박람회에 참가하여 말레이시아 바이어와 첫 미팅을 실시한 A社는 해당 바이어와 지속적인 교신을 통해 2025.3월 첫 수출에 성공 (수출바우처 지원)
B社 1년 소요	B社은 2025년 미국 무역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로 총 45.5%에 달하는 관세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주력 시장이었던 미국 외 새로운 대체시장 개척 절실 → KOTRA 토론토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을 활용해 캐나다 파트너사 검증, 신규 수출 프로젝트 등 진행 → 지사화 전담직원이 도면 사양 비교, 현지 규격 확인 등 세부 계약조건 등 협의 밀착지원 → 대체시장 발굴 및 품목 다변화 성사 (지사화지원)
C社 5개월 소요	KOTRA 선전 무역관은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바이어의 수입선 다변화 수요 포착 → 수협 홍콩센터와 협력해 바이어 제시 조건에 맞는 국내 기업 발굴 → 온라인 화상상담 및 바이어 대리 방문 지원(25. 3-5월) → 샘플 발송(4-5월) → 계약서 체결(5월) → 1차 발주(6월) → 2차 발주(7월) 전 과정 밀착지원

자료: 산업통상부(대한무역투자공사)

또한, 대체수입선을 신규 발굴 시 수입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정보⁴⁾가 부족할 수 있고, 리스크가 높은 바이어에 대해 정책적으로 더 많은 한도가 부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4)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내부적으로 수입업체별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A~F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한국무역보험공사)는 대 중동 수출기업의 대체 수출시장 발굴에 따른 수입자 한도 우대 시, 대체 거래선 확보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추경을 통한 긴급 지원 효과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대체 수입선 발굴을 지원하는 타 사업들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체 수입자에 대한 한도 우대 시에는 수입자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한도를 적용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다.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의 부처간 중복 지원 배제 필요 (산업통상부)

(1) 현 황

긴급지원바우처 사업¹⁾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위기를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 컨설팅, 국제운송, 관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2026년도 본예산은 424억 4,300만원이나 중동 전쟁에 따른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대체시장 진출, 신규 바이어 발굴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55억원이 증액된 679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수출지원기반활용	180,171	181,074	214,074	33,000	18.2
통합지원사업	150,435	154,312	154,312	-	0.0
긴급지원바우처	84,672	42,443	67,943	25,500	60.1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부

수출바우처(통합지원사업)는 기업이 원하는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메뉴판²⁾에 제시된 14개 서비스 항목 중 기업의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중소기업 대상 수출바우처와 2025년 대미 관세 대응을 위해 신설된 긴급지원바우처(관세대응바우처)로 구분된다. 관세대응바우처는 2026년 본예산부터 긴급지원바우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2025년 이후 중동지역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1139-307의 내역사업

2)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는 브랜드 개발·관리, 홍보·광고, 전시·화 행사·해외영업지원, 조사·일반 컨설팅,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통번역,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재권·시험, 국제운송비지원 등의 카테고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 약 567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도 긴급지원바우처 사업 추경안의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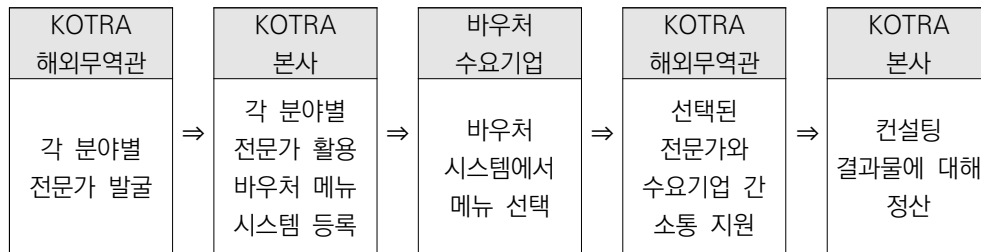
내역사업	주요내용	2026 예산	
		본예산	추경안
긴급지원 바우처	· (본예산) 미 관세 조치 등 대내외 무역장벽 심화에 따른 국내 중소·중견기업 수출 위기 긴급 지원¹⁾ - 796개사×76.5백만원×69.7%=42,443백만원 · (추경) 중동전쟁 장기화 대비 피해기업 지원 - 567개사×45백만원	42,443	67,943 (+25,500)

주: 1) 산업통상부는 긴급지원바우처 본예산 중 80억원을 중동 사태 지원을 위한 바우처로 활용하기 위해 2026년 3월 11일 선정 공고를 시행하였음

자료: 산업통상부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보조하여 집행된다. 바우처에 신청해서 선정된 기업은 메뉴판에 제시된 서비스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절차(안)]



자료: 산업통상부

(2) 분석의견

산업통상부는 긴급지원바우처 집행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와 지원기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의 및 역할분담을 강화하는 등 피해기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추경안 편성에 앞서 기존 긴급지원바우처의 본예산 424억 4,300만원 중 상반기 공고 후 하반기 공고를 위해 남겨둔 예산(120억원)의 일부(80억원)를 활용하여 2026년 3월 11일 중동전쟁 상황으로 인해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바우처 선정 공고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번 바우처는 2025년 이후 현재까지 중동 14개국에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 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5억원까지 보조율 50% 또는 70%로 지원된다. 특히, 중동지역 수출 규모나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여,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는 ‘패스트 트랙’을 신설하였다.

[중동전쟁 관련 긴급지원바우처 개요]

구분		주요내용
지원 대상	일반	2025년 이후 현재까지 중동 수출실적 보유 또는 수출 계약기업
	패스트 트랙	아래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① 2025년 중동 직수출 실적 총액 100만불 이상 보유기업 ② 2025년 중동 직수출 총액 50만불 이상이면서 해당지역 수출비중이 해당 기업의 2025년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중동 지역 대상국가		외교부 기준에 따른 총 14개국(레바논, UAE,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예멘, 이란, 팔레스타인, 사우디, 오만,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카타르)
지원규모		총 80억원 / 기업당 최대 1.5억원(중견 50%, 중소 70% 보조)

자료: 산업통상부

3월 11일 시행한 공고 내용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중동 전쟁상황으로 인해 수출물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 긴급지원바우처 서비스에 “중동 물류 대응” 서비스 메뉴를 신설하였고, 물류 반송 비용, 전쟁 위험 할증료(WRS) 및 긴급분쟁 할증료(ECS), 대체 목적지로 우회하는 국제운송비(해상항공 운임), 최종 목적국 또는 경유지가 중동지역인 화물의 현지 발생 지체료 항목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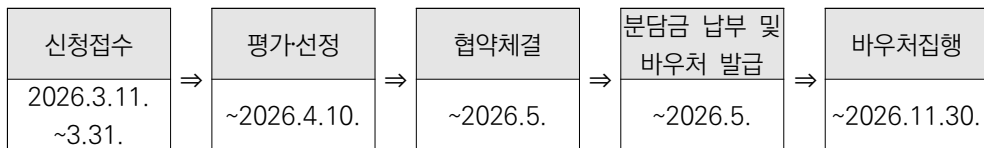
[중동전쟁 대응 긴급지원바우처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일반 서비스	수출 준비	① 조사/일반 컨설팅, ② 디자인 개발, ③ 브랜드 개발관리, ④ 홍보 동영상, ⑤ 통번역, ⑥ 역량강화 교육
	수출 이행	⑦ 전시회/행사/해외영업 지원, ⑧ 해외 규격인증, ⑨ 특허/지재권, ⑩ 홍보/광고, ⑪ 국제운송
	후속관리	⑫ 서류대행/현지등록, ⑬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⑭ 무역보험·보증
긴급지원 서비스		① 美 관세산정, ② 美 관세환급, ③ 美 수출 원산지 대응, ④ 생산거점 이전, ⑤ 유럽 통상 애로, ⑥ 인도 통상 애로, ⑦ 중동 물류 대응

자료: 산업통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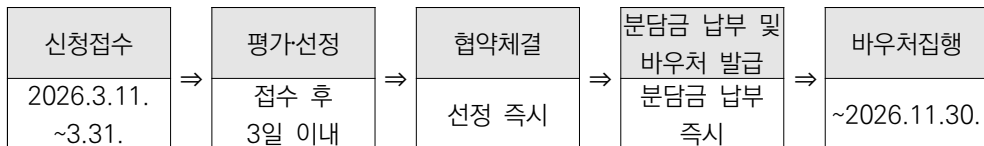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에 걸쳐 중동전쟁 대응 바우처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행하였고, 4월 10일까지 평가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며,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평가선정을 완료하고, 선정 즉시 바우처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다.³⁾ 또한, 2026년 1~2월에 이미 선정이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도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신설된 서비스 메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중동전쟁 대응 긴급바우처 평가선정 절차(일반트랙)]



자료: 산업통상부

[중동전쟁 대응 긴급바우처 평가선정 절차(패스트트랙)]



자료: 산업통상부

3)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6년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총 349개사가 중동전쟁 긴급지원바우처를 신청하였고, 이 중 44개사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바우처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긴급지원바우처에 대해 콜센터로 문의한 기업은 총 1,965개사로 추경안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확보되는 255억원에 대해서도 3월 11일 공고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4월중 공고 후 참여기업을 선정할 후 6월까지 바우처 발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긴급지원바우처 사용기간을 2026년 2월 1일로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3월 11일 공고한 긴급바우처와 추경안을 통해 추가 공고할 긴급바우처 모두 유사사업 중복 지원 및 선정을 배제할 계획이다. 이에 공고문에도 기존의 KOTRA 수출바우처,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 바우처 사업의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은 지원 및 선정이 불가함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유사사업을 수행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3월 18일자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 공고를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참여기업도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중복지원 관련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내용]

구분	공고 내용
산업통상부	· 2026.2.1. 기준 KOTRA 수출바우처,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 사업의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은 신청 및 선정 불가
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참여기업도 본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및 선정 제한 - 2026년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물류비 한도 증액을 지원받은 기업 - 동일 물류비 건에 대해 타 수출지원사업 또는 유사 사업에서 중복 정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 적용

자료: 각 부처 사업공고문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동 전쟁 대응 수출바우처는 모집대상이 중동 지역 수출기업으로 동일하다.⁴⁾ 지원내용이나 지원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제운송 물류비를 1,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반면, 산업통상부는 국제운송 물류비를 포함한 수출바우처 메뉴를 최대 1.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물류 바우처는 산업통상부의 긴급지원바우처 메뉴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국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중복되는 상황이다.

4) 중동 범위 포함국가는 일부 차이가 있다. 산업통상부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중심의 14개국 대상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아프리카 대륙 국가가 일부 포함된 21개국 대상이다.

[부처별 중동 사태 대응 수출바우처 사업 개요]

부처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바우처명	긴급지원바우처	중동 특화 물류바우처
수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대상	2025년 중동 수출 실적 또는 계약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중동 14개국)	중동 지역 수출 물류 발송 및 계약 체결 중소기업(중동 21개국)
지원업종	전체 업종	전체 업종
선정·평가	일반 +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선착순 지원
지원내용	일반 서비스(국제운송 포함) + 특화 서비스	국제운송 서비스
신청사이트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바우처 지원단가	(중견) 1~2억원, (중소) 0.5~1억원	(중소) 최대 1,500만원
보조율	(중견) 50%, (중소) 70%	(중소) 70%
본예산 지원규모	80억원, 약 180개사	105억원, 약 1,000개사
추경안	255억원, 약 566개사	500억원, 약 4,800개사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5년에 중동 21개국 대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총 1만 4,784개사로, 이 중 2026년 산업통상부 수출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이미 선정된 기업은 총 82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바우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1만 3,959개사를 대상으로 본예산과 추경안을 통해 약 75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물류 바우처의 중복을 허용하게 되면, 본예산과 추경안을 통해 1만 4,784개사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2025년 중동지역 21개국 대상 수출 중소·중견기업 현황]

(단위: 개사)

구분	총 기업수	기존 바우처발급 기업수	바우처 미보유 기업수
100만불	1,514	164	1,350
10~100만불	4,723	230	4,493
1~10만불	4,752	208	4,544
1만불 미만	3,795	223	3,572
합계	14,784	825	13,959

자료: 산업통상부

이와 같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신청 및 선정 단계에서도 중복 지원을 허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조금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선정 단계부터 지원대상 중복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정산 과정에서 동일 서비스 건에 대해 중복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운송 서비스의 경우 기업이 이미 사용한 물류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동일 물류비 영수증을 두 부처의 바우처에서 모두 정산받는 등의 부정 사례에도 취약한 측면이 있으며, 정산 과정에서 중복을 체크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긴급지원바우처 집행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와 지원기업이 중복되지 않고, 피해기업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협의 및 역할분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의 업종별·공정별 다양성 확보 필요 등 (산업통상부)

(1) 현 황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¹⁾은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디지털화하여 아를 청년 스타트업 등에 전수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8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제조암묵지기반AI 모델개발(R&D)	-	-	80,000	80,000	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제조업 현장의 명장이나 숙련공의 경험과 직관, 판단 등이 녹아있는 제조 암묵지(tacit knowledge)²⁾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AI 솔루션으로 개발하는 내용으로, 2026년 단년도로 총 990억원, 국고 지원 8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주요 공정 고숙련근로자의 암묵지를 디지털자산화하고자 하는 수요기업과 제조 AI나 로봇 AI 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 그리고 연구소 및 대학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컨소시엄별 정부 출연금 지원규모는 16억원으로, 총 50개 컨소시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3541-450

2) 암묵지(tacit knowledge)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된 지식으로, 언어문서처럼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외부로 드러내기 어려운 지식 유형을 의미한다.

[제조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R&D) 사업 주요내용]

구분	내용
사업내용	제조업 현장의 명장(고숙련자)이 보유한 경험적 지식 등 암묵지를 디지털화하고, AI 활용 검증을 중점 지원 - 데이터 디지털화, AI 모델 개발 및 검증 등
사업기간	2026년 (1년)
사업규모	총 990억원(국고 800억원, 민간 190억원)
지원단가 및 물량	컨소시엄당 16억원 × 50개 = 80,000백만원
지원대상	제조업 주요 공정 암묵지를 디지털화하고자 하는 기업(수요기업), AI 전문기업(공급기업), 연구소 및 대학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기대효과	생산인력 부족 등 제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AI 시대의 제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과제당 단가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분	세부내용	2026 제1회 추경안
데이터 디지털화	- 영상, 동작, 운용설비 로그, 보고서, 연구 노트, 전문 서적 및 교육 자료 등 암묵지가 담긴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 확보 - AI가 학습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로 정제	4.8
AI개발·검증	- 암묵지 데이터를 학습한 멀티모달 AI 개발 ※ 이미지·영상·온도 등 제조회장 판별 AI + LLM 기반의 논리적 판단 AI - AI가 제조 명장의 판단을 구현할 수 있는지 비교·검증	4.8
장비 구축	- 비정형 데이터 수집용 장비, 서버, 네트워크, 설치·시운전 등에 필요한 장비 구축 및 임차비	1.6
인건비 등	- 데이터 모델링, 암묵지 구조화 방법 등 대학·연구소 전문가 참여수당 및 인건비 등 지급	4.8
합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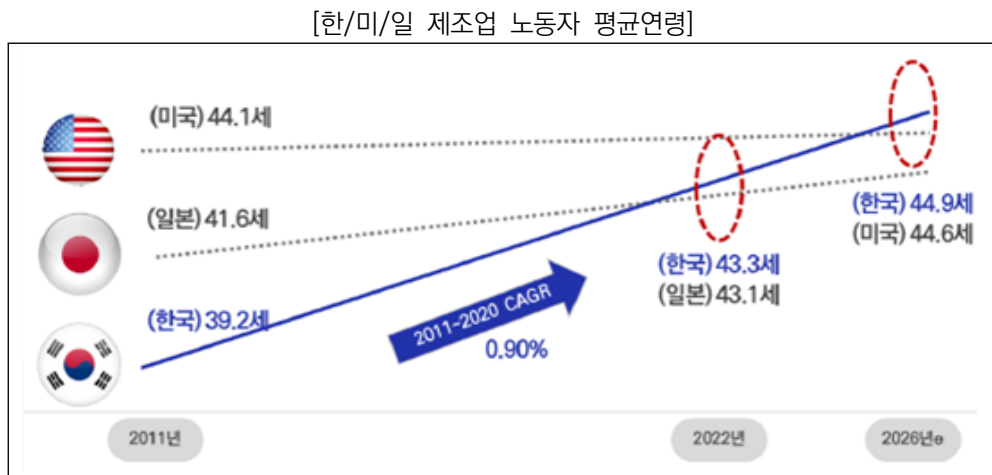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2) 분석의견

제조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R&D)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조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R&D) 사업은 단년도에 대규모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경안에 편성되었으나, 암묵지의 특성상 데이터화하기 어렵고, AI 개발 이후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시행착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6년 시범사업 추진 후 다년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현장의 숙련된 인력과 제조 데이터는 제조 AI의 중요한 잠재적 자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국내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높은 편으로, 이들이 향후 수년 내 대거 은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기술과 노하우의 단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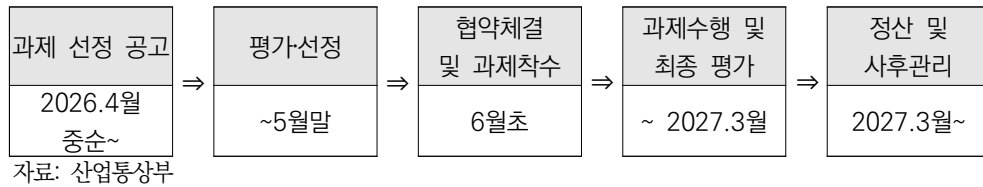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10년간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 고령화 추이', 202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는 제조업 현장의 명장 및 고숙련 인력의 은퇴 가속화로 인한 기술노하우 단절 위기에 대응하고자, 암묵지의 신속한 데이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동 사업을 기획하였다.

2026년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산업통상부는 4월 중순 과제 선정을 공고하고 5월까지 과제 선정을 마무리한 후 6월초부터 과제별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제수행기간은 2027년 3월까지로 하고, 이후 평가 및 정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추진 절차]



그러나 제조 암묵지는 개인의 경험과 숙련에 기반한 비정형 지식이기 때문에 표준화정형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1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데이터로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 사업은 암묵지의 데이터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학습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나아가 실제 생산현장에 적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와 추가적인 보완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과제 추진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이슈와 개선사항을 사업 내용에 반영할 때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26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암묵지 데이터 구축 방식과 AI 적용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은 단년도에 대규모로 추진하기 보다는 2026년 시범사업을 거친 이후 사업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통상부는 2026년 총 50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인데,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나 AI 솔루션이 향후 다양한 제조업 분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종별·공정별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명장 암묵지가 필요한 주요 공정의 예시로 조선 분야의 후판·곡면 용접 공정이나 도장 공정, 자동차 내·외장 조립공정 및 차체 품질검사 공정, 뿌리 산업의 주조 공정 및 금속가공 공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조명장의 암묵지가 필요한 주요 공정 예시]

업종	공정
조선	▶ 두께, 날씨 등에 따라 달리 작업해야 하는 후판/곡면 용접 공정 ▶ 표면 상태(녹/습기) 육안판별 및 건조타이밍이 중요한 도장 공정
자동차	▶ 내/외장 체결감각, 배선/배관 간섭방지 등을 요하는 조립공정 ▶ 불량정도 판단/대처, 차체 뒤틀림 보정 등이 필요한 품질검사 공정
부리	▶ 쇠물 온도와 붓는 속도 등 감각이 중요한 주조 공정 ▶ 연마 정도 판단, 장비 운용 등 숙련 기술이 필요한 금속가공 공정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조업 현장은 업종별 특성과 생산방식에 따라 공정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공정은 설비나 작업환경, 품질관리 방식 등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 특히 제조 명장이나 고숙련 인력이 담당하는 공정은 특정 작업 환경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동일 업종 내에서도 공정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노하우가 크게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조 암묵지는 공정별·업종별로 높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정 공정에 한정된 데이터 구축 및 자동화만으로는 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개별 공정이 아닌 기업 내 다양한 공정의 암묵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산·적용할 때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I 전문기업의 입장에서도 특정 업종이나 공정에 편중되어 과제를 수행할 경우 다양한 제조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역량과 개발 경력(track record)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 과제 선정 시 개별 과제가 단일 공정에 국한되기 보다는, 수요기업 내 다양한 공정을 대상으로 암묵지 데이터를 구축하고, AI를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업종별로도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조업 분야의 수요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조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R&D) 사업의 경우 업종의 다양성과 수요기업 내부 공정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제를 선정·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의 비축유 구입 예산 재산정 필요 등(산업통상부)

(1) 현 황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²⁾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비축에 필요한 비축유 구입, 비축기지 건설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553억원이나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584억 3,300만원이 증액된 2,137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석유비축사업출자	79,901	55,300	213,733	158,433	286.5
비축유 구입	49,281	26,300	181,733	155,433	591.0
비축기지 유지보수	30,620	29,000	32,000	3,000	10.3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비축유 구입과 비축기지 유지보수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한국석유공사에 출자된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432-301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석유비축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먼저, ① 비축유 구입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연차별 비축유 확보를 위한 구매 비용을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554억 3,300만원 증액된 1,817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본예산과 추경 증액분을 활용해 원유 130만 배럴을 구입하여 비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추경안을 통한 비축유 구입량은 현 비축시설(1.46억 배럴)에서 수용가능한 용량과 「제5차 석유비축계획(‘26~’30)」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대치이며,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약 300만 배럴³⁾)의 절반 수준이다.

[2026년도 비축유 구입 내역사업 추경안의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증감(B-A)		
	물량 (만배럴)	단가 (\$/배럴)	환율 (원/\$)	물량 (만배럴)	단가 (\$/배럴)	환율 (원/\$)	물량 (만배럴)	단가 (\$/배럴)	환율 (원/\$)
비축유 구입	25.5	74.66	1,380	130	96.41	1,450	+104.5	+21.75	+70
	26,300			181,733			+155,433		

자료: 산업통상부

② 비축기지 유지보수 사업은 9개 석유비축시설⁴⁾의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 본예산은 290억원이나 비축유 저장 탱크 추가 설치에 필요한 사전용역비 30억원이 편성되었다. 비축유 저장 탱크 설치 사업은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부지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반영되었다.

3)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UAE로부터 원유 총 2,400만 배럴(일일 소비량 8배) 긴급 도입 확정”, 2026.3.18.

4)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시설은 원유기지 4개소(서산, 여수, 거제, 울산), 제품기지 4개소(구리, 용인, 곡성, 동해), LPG기지 1개소(평택)로 구분된다.

[2026년도 비축기지 유지보수 내역사업 추정안의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본예산	제1회 추경안
비축기지 유지보수	·9개 비축기지 노후시설보수 및 교체:9,300	좌동
	·노후 송유관 교체 설치: 7,500	
	·거제2단계 수리시스템 보완 사업비: 9,600	
	·4개 비축기지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2,600	
	-	·비축유 저장 탱크 추가 설치 사전용역: 3,000
합계	29,000	32,000

자료: 산업통상부

(2) 분석의견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산업통상부는 2026년 예산안 편성 시 석유비축사업출자 예산을 ‘사업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미흡하였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석유비축사업 추진 시 국제유가 및 환율, 리스크 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략적·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를 겪은 후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향후 석유비축목표를 담은 「석유비축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는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에 따라 1억 10만 배럴 비축을 목표로 1억 60만 배럴을 비축하였고, 2026년부터는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에 따라 2030년까지 1억 26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산업통상부는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에 따른 비축 목표에 따라 2025년 43만 배럴의 석유를 구입할 계획으로 492억 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편성 당시 석유 예상단가는 배럴당 85.07달러였고, 환율은 달러당 1,347.2원을 적용하였다. 2025년 국제유가가 공급 증가, 완만한 수요 등에 따라 예상보다 하락

함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목표 구입량 보다 3.5만 배럴 많은 46.5만 배럴을 구입하였다.

[2025년도 비축유 구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계획(A)			집행(B)			증감		
	물량 (만배럴)	단가 (\$/배럴)	환율 (원/\$)	물량 (만배럴)	단가 (\$/배럴)	환율 (원/\$)	물량 (만배럴)	단가 (\$/배럴)	환율 (원/\$)
비축유 구입	43	85.07	1,347.2	46.5	71.62	1,478.9	+3.5	△13.45	+131.7
	49,281			49,281			-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산업통상부는 2026년 예산안 편성 시 동 사업을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 지출구조조정 사업으로 정하였고, 전년 대비 229억 8,100만원을 감액한 263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로 인해 2026년 본예산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비축유는 25.5만 배럴로, 2025년 구입 물량(46.5만 배럴)의 54.8% 수준에 불과하였다.

[2026년 예산안 편성 시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의 지출구조조정 내용]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	구조조정실적	구조조정유형
예특회계	석유비축사업출자 (비축유 구입)	49,281	26,300	△22,981	사업 우선순위 조정

자료: 산업통상부

2026년 정부 출자액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53.3%)으로 감소함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자체 재원 223억원을 활용하여 총 50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을 수립하였다.⁵⁾ 또한, 기존에 석유공사 자체재원으로 구입해 오던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비축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5) 비축유 구입 시 한국석유공사는 정부 출자 부분의 경우 주로 원유를 구입하는 데 집행하고, 부탄 등 석유제품 구입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왔다.

[2024~2026년 석유비축 실적 및 계획]

(단위: 만 배럴, 억원)

구분		2024 실적		2025 실적		2026 계획			
		원유	제품	원유	제품	당초		추경안	
						원유	제품	원유	제품
정부	물량	32.4	-	46.5	-	25.5	-	130	-
	금액	365	-	493	-	263	-	1,817	-
공사	물량	-	59.7	7.9	36	24.5	-	-	-
	금액	-	475	84	459	223	-	-	-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물론 이와 같은 정부의 판단은 2025년 국제 유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2026년 발발한 중동 전쟁은 예측 불가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2025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2025년 6월)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 차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던 점⁶⁾, 석유비축 제도의 목적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석유비축사업출자의 2026년 예산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구조조정한 것은 중장기적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위기 대응 능력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향후 비축유 구입 시 단년도 관점에서 원유 비축 목표량을 이행하는 데 만족하기보다는 국제유가 및 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축유 구입 추경안은 한국석유공사의 자체재원 활용 가능성과 최근 유가환율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국회 추경안 심사 시 공사 자체재원 중 활용 가능한 규모,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실소요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6) UN, "Window to Prevent Catastrophic Escalation between Iran, Israel Has Not Yet Closed, Under-Secretary-General Tells Security Council, Urging Cessation of Hostilities", 2025.6.30.

7) 영국 의회, "Iran: Impacts of June 2025 Israel and US strikes and outlook", 2025.7.22.

최근 중동 상황 및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국내 원유 수입량의 약 61%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산업통상부는 정부 비축유만이 국내에 원유를 즉각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 비상시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유의 추가 구입 예산을 추경안에 편성하였다.

산업통상부는 추경안을 통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5년간 구입할 계획이었던 130만 배럴을 2026년 내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130만 배럴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1,817억 3,300만원) 중 2026년 본예산을 통한 정부 출자금(263억원)을 제외한 1,55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6년도 비축유 구입 추경안의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제1회 추경안	본예산 반영	추경안 증액분
비축유 구입	원유 130만 배럴 × \$96.10/배럴 × 1,450원/\$ = 181,733	원유 25.5만 배럴 × \$74.66/배럴 × 1,380원/\$ = 26,300	155,433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정부 출자금 추가소요 1,554억 3,300만원은 한국석유공사의 자체재원과 최근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변동을 고려하여 재산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① 한국석유공사 자체재원

한국석유공사는 2026년에 총 5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할 계획이었다. 이 중 25.5만 배럴의 석유를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 예산으로 비축하고, 나머지 24.5만 배럴은 공사의 자체재원으로 비축할 계획이었다. 최근 몇 년동안 한국석유공사는 비축유 구입 시 자체재원 활용을 늘려 왔다. 공사는 2023년 122억 7,800만원의 자체재원을 투입했으나, 2024년에는 475억 3,400만원, 2025년에는 542억원 7,500만원을 투입하였다. 그런데 2026년에는 본예산 기준 243억 4,851만원의 자체재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추경안 기준으로 정부 출자액이 591.0% 증액되었음에도 공사의 자체재원 투입계획은 오히려 감액된 상황이다.

[2023~2026년 석유비축 및 운영 계획]

(단위: 백만원, 천 배럴)

구분	석유비축 계획량	석유 비축량	당해연도 석유 신규 비축량	신규비축석유 구입액 및 자원		
				합계	정부출자금	석유공사 자체재원
2023	‘25년까지 100,121	98,515	483	52,996	40,718	12,278
2024		99,485	921	84,079	36,545	47,534
2025		100,593	904	103,556	49,281	54,275
2026	본예산	‘30년까지	-	255	48,649	26,300
	추경안	102,622	-	1,300	181,733	181,733
						-

주: 2026년은 예산상 계획으로 작성

자료: 산업통상부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국제공동비축⁸⁾, 트레이딩⁹⁾, 비축유·비축시설 대여¹⁰⁾ 등의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수익사업을 통해 2024년 3,433억원, 2025년 3,307억원의 자체수입을 거두었으며, 2026년에도 석유비축기지 운영 수익이 3,200억원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 자체 재원을 비축유 구입에 추가 투입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2026년 석유비축기지 운영 수입 실적 및 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획
수 입	공동비축	582	299	371	496	602	784
	트레이딩	714	1,845	1,673	2,581	2,543	2225
	비축유대여	46	676	503	272	114	134
	시설대여	19	17	13	30	14	16
	기타수익	35	54	57	54	34	41
	합계	1,396	2,891	2,617	3,433	3,307	3,200

자료: 산업통상부

8) 공사 여유 저장시설에 산유국 및 외국회사 석유를 유치·저장하여 평시에는 저장료 수익을 확보하고, 비상시에는 우선 구매권 행사할 수 있다.

9) 전략비축 본연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비축물량의 30%)에서 시장을 활용, 무위험차익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10) 국내 정유사 등에 비축유 및 비축시설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아 수익을 확보한다.

특히,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의 재원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세출 예산 대비 세입 예산이 부족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전입금 등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2025년 동 사업에서도 석유수입 부담금 등 세입 부족에 따라 세출 이월이 발생하였던 점¹¹⁾¹²⁾, 2026년에도 석유수입 부담금 등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¹³⁾

②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산업통상부는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배럴 당 유가 74.66달러, 원/달러 환율을 달러당 1,380원으로 적용하였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현재 본예산 263억원은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번 추경안 편성 시에는 배럴 당 유가 96.41달러,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적용하였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배럴 당 유가는 2026년 3월 1~3주간의 WTI 원유 평균 가격에 운임·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추경안 편성 시 최근 수치를 적용하였다.

[2026년도 비축유 구입 내역사업 추경안의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증감(B-A)		
	물량 (만배럴)	단가 (\$/배럴)	환율 (원/\$)	물량 (만배럴)	단가 (\$/배럴)	환율 (원/\$)	물량 (만배럴)	단가 (\$/배럴)	환율 (원/\$)
비축유	25.5	74.66	1,380	130	96.41	1,450	+104.5	+21.75	+70
구입	26,300			181,733			+155,433		

자료: 산업통상부

- 11) 2025년 석유비축사업출자 예산 799억 100만원 중 세입 부족으로 187억 6,8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함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한국석유공사 자체재원으로 비축유 구입비용을 충당하도록 한 후 2026년 1월 29일 이월액(187억 6,800만원)을 공사에 출자하였다.
- 12) 산업통상부 소관 세입과목 중 '석유수입 부담금'의 경우 2025년 예산은 1조 4,988억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조 254억원(68.4%)으로 저조하였다. 이는 석유화학 경기 둔화, LNG일반용 징수단가 인하 등에 기인하였다.
- 13) 2026년 석유수입 부담금 세입 예산은 전년도 세입 결산(1조 254억원) 보다 37.0% 높은 1조 4,048억원이고,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석유 및 LNG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세입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두바이유(Dubai)의 경우 3월 2일~10일 배럴당 평균 97.86달러에서 3월 11일~20일 사이에는 148.95달러로 상승했고, 3월 23일은 169.75달러를 기록하였으며, 3월 24일과 25일에도 배럴당 140달러를 초과하였다. 브렌트유(Brent) 역시 3월 2일~3월 10일 배럴당 평균 86.49달러에서 3월 11일~3월 20일 사이에는 103.43달러로 상승했고, 3월 23일은 99.94달러로 소폭하락하였으나 3월 24일부터는 100달러를 계속 웃돌고 있다. 서부텍사스유(WTI)는 다른 두 종에 비해 낮은 수준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3월 2일~10일 배럴당 평균 81.51달러에서 3월 11일~20일 95.27달러로 상승한 후 3월 30일에는 100달러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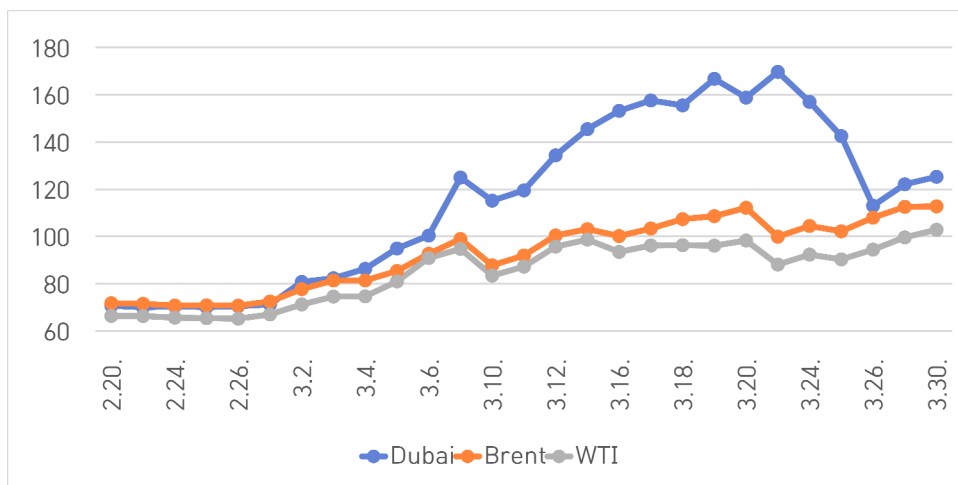
[2026년 3월 국제유가 현황]

(단위: \$/배럴)

구분	3.2.~ 3.10.	3.11.~ 3.20.	3.23.	3.24.	3.25.	3.26.	3.27.	3.30.
두바이유 (Dubai)	97.86	148.95	169.75	157.03	142.55	113.04	122.14	125.29
브렌트유 (Brent)	86.49	103.43	99.94	104.49	102.22	108.01	112.57	112.78
서부텍사스유 (WTI)	81.51	95.27	88.13	92.35	90.32	94.48	99.64	102.88

자료: 오피넷 (검색일: 2026.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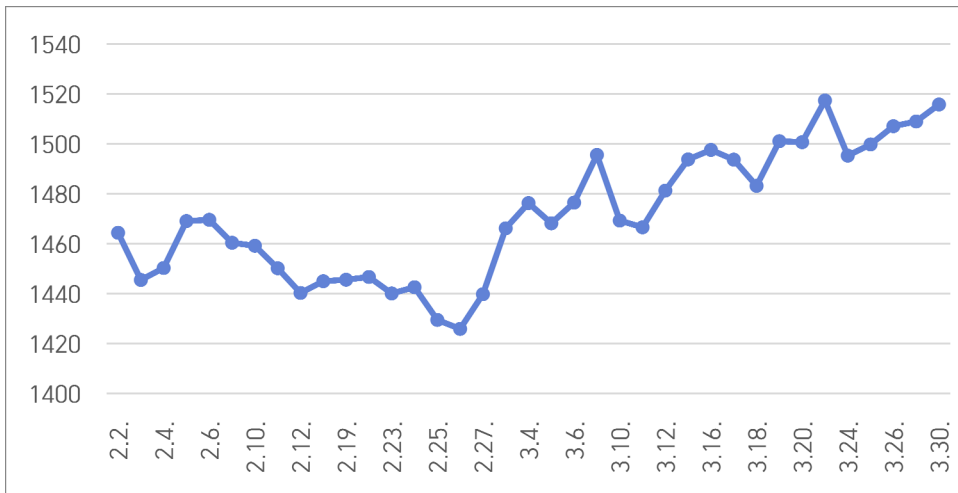
[국제유가 추이]



자료: 오피넷 (검색일: 2026.3.31.)

또한 원/달러 환율 역시 중동 전쟁이 시작된 2월말 이후 1,460을 밑도는 일이 없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3월 20일경부터는 1,500원 수준에 근접하거나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축유 구입 예산안에 중동 전쟁 이전의 환율을 적용함에 따라 실제 목표로 하는 물량의 원유를 구입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¹⁴⁾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검색일: 2026.3.31.)

이와 같이 산업통상부의 비축유 구입 예산안은 한국석유공사의 자체재원 활용 가능성, 최근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국회 추경안 심사 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비축유 구입 비용을 재산정하여 목표로 한 물량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한국석유공사의 자체재원 활용 가능성과 에트윙계 세입 전망 등을 재검토하여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통상부는 비축유 저장 탱크 추가 설치를 위한 부지선정 등 사전용역비를 이번 추경안에 편성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석유 비축계획과 연계하여 시설 구축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4) 참고로 산업통상부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사업의 경우 회도류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원/달러 환율로 3월 18일 기준 환율인 1,491.6원을 적용하였다.

한국석유공사는 전국에 총 9개 비축기지를 통해 원유 및 석유제품 약 1억 4,600만 배럴의 저장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실제 비축량은 원유 8,770만 배럴, 석유제품 1,290만 배럴 등 총 1억 60만 배럴 수준이다. 이는 국내 일일 석유 소비량을 300만 배럴로 가정할 경우 약 33~34일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22~2026년 정부 비축물량 및 비축일수]

2022.12.	누적비축물량 98.0백만 배럴, IEA 비축일수 113일
2023.12.	누적비축물량 98.5백만 배럴, IEA 비축일수 130일
2024.12.	누적비축물량 99.5백만 배럴, IEA 비축일수 115일
2025.12.	누적비축물량 100.6만 배럴, IEA 비축일수 117.8일
2026.3.9.	누적비축물량 100.6백만 배럴, IEA 비축일수 117.8일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비상시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비축시설을 확충하기로 하였고, 확충 규모 및 총사업비 등을 검토하고자 2026년도 추경안에는 부지선정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30억원을 반영하였다.

다만, 비축유 저장 탱크 추가 설치는 기존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기간, 부지 조성 규모, 재원 분담 방안, 추진 절차 등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 이후를 포괄하는 장기적 비축 전략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비축유 구입 계획과 비축시설 확충 계획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 저장공간 부족 또는 유희시설 발생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가 변동에 따른 적기 대응도 어려워져 비축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비축유 저장 탱크 확충 사업이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인 석유비축 전략 내에서 저장시설의 규모와 추진 일정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바.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사업의 추경을 통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 재검토 필요 등 (산업통상부)

(1) 현 황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사업¹⁾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유통 쉘 단계(생산-운송-저장-판매-소비)를 감시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신고포상금, 시스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사업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이며, 2026년도 본예산은 163억 1,400만원이나 석유최고가가격제 시행에 따른 석유제품 유통 감시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23억 4,000만원이 증액된 386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15,859	16,314	38,654	22,340	136.9
석유통합관제센터	-	-	16,500	16,500	순증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검사시험장비	1,235	358	4,958	4,600	1,284.9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인	753	827	827	-	0.0
석유유통관리지원	11,710	12,501	13,741	1,240	9.9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	904	1,301	1,301	-	0.0
LP가스 품질검사	1,257	1,327	1,327	-	0.0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부

2월 20일~28일 기간 국내 주유소 보통휘발유 가격은 평균 1,691원이었으나, 전쟁 발발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며 3월 9일~11일에는 1,900원을 상회하였다. 이후 불법행위 특별점검,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석유가격 안정화 조치에 따라 가격 상승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432-302

세가 둔화되면서 3월 중순 이후로는 1,800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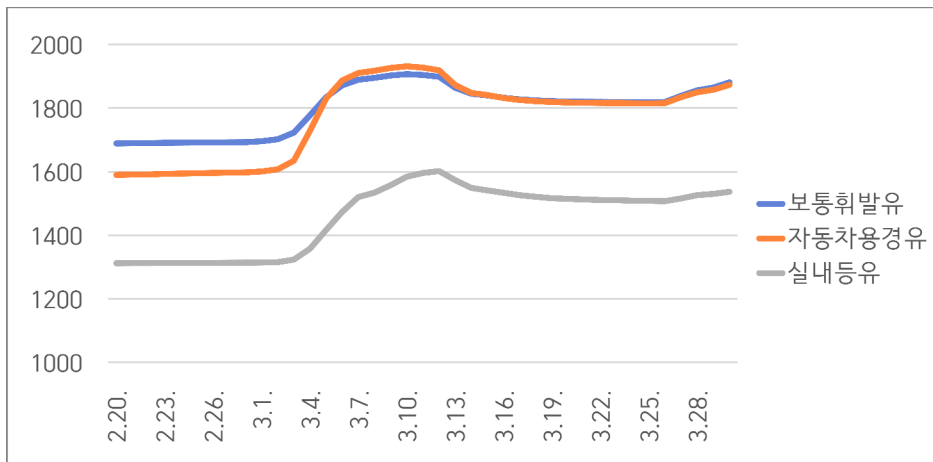
[2026년 2~3월 주유소 제품별 평균판매가격 현황]

(단위: 원)

구분	2.20.~28.	3.1.~5.	3.6.~8.	3.9.~11.	3.12.~18.	3.19.~26.	3.27.~30.
보통휘발유	1,691	1,747	1,886	1,905	1,848	1,820	1,860
자동차용경유	1,594	1,680	1,905	1,929	1,851	1,817	1,854
실내등유	1,313	1,346	1,510	1,579	1,550	1,511	1,527

자료: 오피넷 (검색일: 2026.3.31.기준)

[주유소 제품별 평균 판매가격 추이]



자료: 오피넷 (검색일: 2026.3.31.)

이처럼 석유제품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소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자 산업통상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²⁾ 및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3일 0시부터 석유판매가격 최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고가가격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석유에 대한 최고액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석유 최고액은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을 대상으로 지정되는데, 3월 13일 고시된 일반 석유제품의 고시액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었다. 산업통상부는 3월 27일 0시를 기해 2차 최고액을 고시하였으며, 일반 석유제품의 고시액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 수준이다.

[제1차 및 제2차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고시 현황]

(단위: 원/리터)

구분	1차 고시(3.13.~3.26.)			2차 고시(3.27.~4.9.)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
일반 석유제품	1,724	1,713	1,320	1,934	1,923	1,530
도서지역 석유제품 (해상운송)	1,743	1,732	1,339	1,953	1,942	1,549

자료: 산업통상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산업통상부는 3월초부터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단속하기 시작했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석유 가격 상승 가능성에 편승하여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석유 유통에 대한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이를 집중 점검·단속하기 위해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석유통합관제센터,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검사시험장비, 석유수입 부담금 환급 확인, 석유유통관리지원 등 5개 내역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제1회 추경안에 증액 편성된 사업은 석유통합관제센터,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검사시험장비, 석유유통관리지원의 3개 내역이다.

먼저, ① 석유통합관제센터는 각 부처 및 유관 기관에 분산된 석유시장 정보를 통합하여 가격·수급·민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관제센터 상황실 구축 및 관련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신규로 165억원이 편성되었다.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검사시험장비는 석유시장 불법행위 특별점검 현장에 투입할 검사차량, 시험장비, 검사장비를 추가 구매·교체하는 것으로, 2026년 본예산은 3억 5,800만원이나 제1회 추경안에는 46억원이 증액된 49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다. ③ 석유유통관리지원은 석유시장 불법행위 특별점검 확대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추진 등에 따른 출장비와 시험용가스 등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 본예산은 125억 100만원이나 제1회 추경안에는 1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37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6년도 석유품질관리사업 추경 증액 내역사업별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내용	2026 예산	
		본예산	추경안
석유통합관제센터	· (추경안 증액) - 가격/수급 통합시스템: 8,000백만원 - 석유통합콜센터: 2,400백만원 - 상황실 구축: 5,000백만원 - 인건비: 1,100백만원	-	16,50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검사 시험장비	· (본예산) - 검사시험장비(3대): 358백만원 · (추경안 증액) - 검사차량(20대) 구입: 1,200백만원 - 비노출검사장비(10대) 교체: 1,000백만원 - 검사시험장비(20대) 구입: 2,400백만원	358	4,958 (+4,600)
석유유통관리지원	· (본예산) - 인건비(166명): 10,538백만원 - 경비: 1,933백만원, 신고포상금: 30백만원 · (추경안 증액) - 출장비: 5만원×2인×30일×6개월×30개조=540백만원 - 검사비 및 홍보비: 700백만원	12,501	13,741 (+1,240)

자료: 산업통상부

(2) 분석의견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석유통합관제센터 사업은 분산되어 있는 석유시장 정보를 통합하여 불법 유통 대응 및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이번 추경안에 편성되었으나 2026년 말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중동 전쟁에 따른 석유시장 상황 관리에는 시스템 활용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추경안을 통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각 부처 및 유관기관에 분산된 석유시장 정보를 통합분석하고자 추경안에 신규로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석유 가격 정보는 한국석유공사, 담합 관련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매점매석 관련 데이터는 재정경제부, 품질/유통 정보는 한국석유관리원, 위험물은 소방청, 유가보조금은 국토부 등에 분산되어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³⁾

산업통상부는 이번 중동 전쟁 대응 과정에서 석유시장 정보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기능이 없다 보니 종합적인 석유시장 상황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 인식 하에 동 사업을 기획하였다. 석유통합관제센터 예산은 ① 가격/수급 통합시스템, ② 통합콜센터, ③ 상황실 구축, ④ 인건비로 구분된다.

[석유통합관제센터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예산안	산출내역
① 가격/수급 통합시스템	석유공사의 가격DB와 석유관리원의 수급DB 등을 통합, AI 인프라 구축	8,000	· 시스템 개발(플랫폼/서버 등): 3,820 · 통합인프라(스토리지/SW 등): 3,455 · 홈페이지: 725
② 통합콜센터	석유관련 민원 플랫폼 일원화	2,400	· 교환기, 녹취, 가상화 서버, 보안장비, 백업 및 이중화 등
③ 상황실 구축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설비공사	5,000	· 관제시스템, 회의실 디스플레이, 통합분석보고 시스템, CCTV 등
④ 인건비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콜센터 운영	1,100	· 30명×55백만원×8/12개월
합계		16,500	

자료: 산업통상부

3)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는 석유공사의 가격정보와 석유관리원의 수급정보를 우선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그러나 2026년 3월 현재도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단속 및 대응 체계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 통합 시스템 구축의 추가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⁴⁾

구체적으로 ① 가격·수급 통합시스템 및 ② 통합콜센터 구축, ③ 상황실 구축은 데이터베이스 통합, 기관 간 연계, AI분석체계 도입, 설비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⁵⁾

산업통상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가격·수급 통합시스템, 통합콜센터 및 상황실 구축은 2026년 4~6월 중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를 시행하고, 7~8월 중 관제시스템 하드웨어(H/W)를 구축한 후, 12월까지 관제시스템 S/W 구축, 개발 및 테스트 등을 거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시스템이 가동되는 시점인 2026년 말에는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인한 단기적 수급 불안 상황에 따른 불법행위 특별점검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완화된 시스템 활용도가 제한적일 우려가 있어 보인다.⁶⁾

[석유통합관제센터(통합시스템, 콜센터, 상황실) 구축 일정(안)]

일자	내용
2026.5.~6.	·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 수립 및 발주
2026.7.~8.	· 관제시스템 H/W 시스템 구축
2026.8.~12.	· 관제센터 S/W 시스템 구축, 개발 및 테스트
2026.12.	· 완료보고 및 정상 운영

자료: 산업통상부

특히, 석유품질관리사업 추정안의 다른 내역사업인 ‘석유유통 관리지원’의 경우 특별점검 출장비 산출 시 중동상황 장기화 및 정상화 소요기간 등을 6개월로 예상

4)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월 2,000회 이상 현장 점검을 추진 중이나, 가격(석유공사)과 수급 물량(석유관리원) 등의 데이터 관리 권한이 분리되어 있어 사재기 등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적발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추정안에 편성된 인건비의 경우 4월 중 채용공고를 시행하고, 5월 중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6) 이에 대해서도 산업통상부는 시스템 구축 완료 전이라도 충원된 인력을 선제 투입하여 대면·수기 방식의 관제기능을 즉각 가동할 예정이며, 시스템 완공 후에는 평시 유류세 인하분 편취나 무자료 거래 등을 상시 필터링하는 세수 방어 시스템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여 산정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석유통합관제센터 내역사업의 경우 2026년 말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번 중등 전쟁에 따른 석유시장 상황 관리에는 시스템 활용도가 제한적일 우려가 있으므로, 추경안을 통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통상부는 석유 시장 불안에 따른 품질유통검사 수행에 필요한 검사차량 20대를 추가로 구매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1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특별점검 기간 및 이후 검사차량 활용가능성,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구입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시장 불안에 따른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한편,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⁷⁾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3월 6일부터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월 2,000회 이상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석유관리원의 점검 가용인력은 200명이며, 보유하고 있는 검사차량은 30대 수준이다. 산업통상부는 특별점검 착수 이후 30대 검사차량의 가동률이 100% 포화 상태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비상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검사차량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추경안에 20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예산 12억원을 편성하였다.

[검사차량 구입 추경안 편성 내역]

구분	세부내역
검사차량 구입	· (차종) 무쏘(롱테크) · (예산안) 20대×6,000만원 = 1,20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차량은 일반 검사차량과 암행 검사에 필요한 비노출검사 장비차량으로 구분된다. 검사차량은 시료 캔 및 정량 기준탱크 등 검사장비 적재에 용이하도록 적재함을 개조하여 운영하는 차량이고, 비노출검사장비는 사업자를 대

7)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정부,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 총력”, 2026.3.5.

면하지 않고도 품질·정량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주유구에서 연료탱크로 이어지는 연료계통 구조를 특수 개조한 차량이다.⁸⁾

[검사차량 이미지]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현재 30대의 검사차량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특별점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보유 차량의 67%에 해당하는 물량의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것은 비용 대비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의 필요를 위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입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⁹⁾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4월 중 검사차량 구매 입찰공고를 시행하고, 6월까지 차량 적재함 및 비노출검사장비 장착 등의 개조를 완료한 후 본 부별 차량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추경 예산을 통해 도입하는 차량의 사용가능 시점은 6월말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증동 상황에 따른 특별점검 시 활용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⁰⁾

8) 산업통상부는 검사차량의 경우 차량의 개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하더라도 렌트나 리스 방식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9)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 가용 검사차량 30대의 가동률이 100% 포화 상태이고, 현장 단속 인력의 피로도와 안전 리스크로 인해 합동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추가 구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10)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6월말 현장에 배치되더라도 현재의 유가 불안과 불법행위 징후의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추가 구매 차량은 비상시 특별점검에 집중 투입한 후 사태 진정 후에는 노후 자산을 대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검사차량 구매 계획]

일자	내용
2026.4.	· 조달청 발주
2026.5.~6.	· 차량 적재함 등 차량 특수 개조, 본부 차량 배정

자료: 산업통상부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검사차량의 등록연도 및 내용연수를 살펴보면, 총 30대 중 2014~2017년에 구입하여 내용연수가 도과한 차량이 총 6대이고, 2017~2018년에 구입하여 곧 내용연수가 도과할 예정인 차량이 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을 통해 신규 구입하는 차량으로 이미 내용연수가 도과하였거나, 향후 도과예정인 차량을 교체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관리원 보유 검사차량의 등록연도별 현황]

(단위: 대)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차량 수	1	1	3	2	12	9	2	30
내용연수 도과(예정) 차량	1	1	3	1 (1)	(7)			6 (8)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이번 추경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편성되었다는 점, 동 사업은 석유 가격 급등에 따른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위해 시급하게 추경안에 편성되었다는 점, 단기간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장기간 사용가능한 자산을 다량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을 통해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검사차량 20대의 경우 특별점검 기간에 활용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 추경안 심사 시 적정 구입물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 추진 시 산업통상부와 협업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면밀한 지원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1) 현 황

수출지원기반활용(보조, 중소기업진흥공단 수행)¹⁾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바이어 발굴 등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1,502억 300만원이나,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물류비 부담 완화와 미국 관세 정책변화 등 통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및 대체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다변화 촉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000억원이 증액된 2,502억 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수출지원기반활용	89,800	150,203	250,203	100,000	66.6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중소기업부

세부적으로, 일반 수출바우처는 본예산 1,221억원 대비 41.0%인 5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긴급) 물류바우처는 본예산 105억원 대비 476.2%인 500억원이 증액되었다.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3131-301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산출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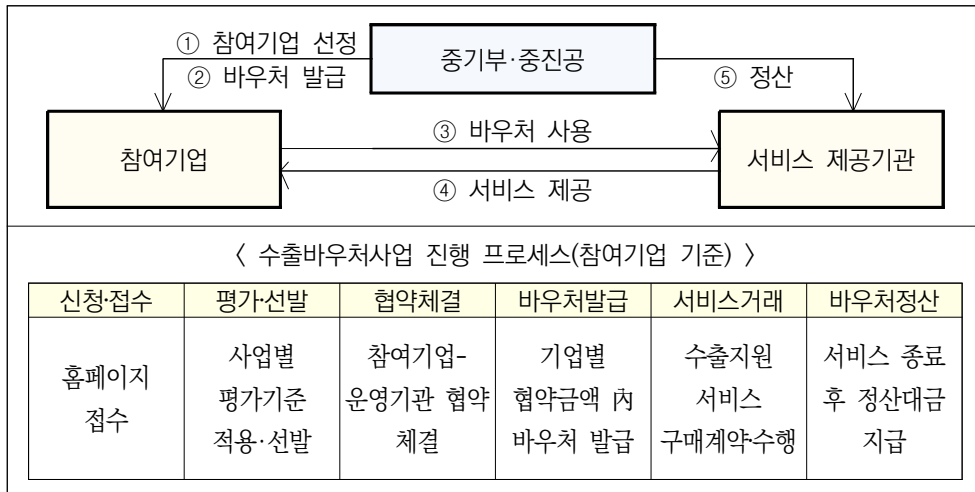
세부 내역	본예산	순증규모	산출근거
일반 수출바우처	1,221억원	500억원	=57.6백만원(평균단가) X 64.6%(평균보조율) X 1,400개사 * 1차 접수(신청 7,051개사) 미선정 5,000여 개사 고려 (경쟁률 3.6대1) 및 분쟁 장기화, 관세 정책 등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을 고려
(긴급) 물류바우처	105억원	500억원	=15백만원(기업당 지원한도) X 70%(보조율) X 4,800개사 * 중동 수출 중소기업('25년 13,956개사) 중 중동 수출 의존도(기업 전체 수출액 중 중동 수출액 비중 50% 이상)가 높은 기업(4,598개사) 현황을 고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참여 신청을 통해 선정되어 수출바우처(국고 보조금 + 기업 자체 부담금)가 발급된 기업이 바우처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때, 사업 관리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서비스 제공비용을 정산 받는다.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업무 흐름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수출바우처사업 세부추진계획(안)」, 2026.2.

수출바우처 선정 기업의 바우처 한도는 수출액 규모 및 분야 등에 따라 차등화되어 최대 1억원이며, 국고보조율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70%에서 결정된다.

[세부 지원대상 및 한도]

(단위: 개사, 백만원)

지원트랙	지원 대상	예정 기업 수	한도2)
내수	전년도 수출액 1,000달러 미만	1,160	30
	튼튼한 내수기업	100	45
수출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달러~10만달러 미만'	930	30
수출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520	45
수출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만~500만달러 미만'	420	70
수출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	250	100
합 계		3,280	-

주: 1. (국고보조율) 매출액 100억원 미만 70%, 100~300억원 60%, 300억원 이상 5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수출바우처사업 세부추진계획(안)」, 2026.2.

수출바우처의 서비스 유형은 조사·일반컨설팅, 국제운송, 관세대응패키지, 테크서비스 등 16개 분야로 구성되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약 2,300개사, 세부 서비스는 약 8,000개이다.

2) 일반수출바우처 사용 기업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한도가 확대됨

지원유형	지원 내용
관세대응패키지	○(지원대상) 수출바우처 선정기업 중 '관세대응 패키지' 신청 시 바우처 지원한도 50% 확대(단, 추가된 한도는 관세대응 패키지로만 사용 가능) ○(지원규모) 전체 30억원 규모, 약 100개사 내외 ○(국고보조) 국고 보조율은 일반바우처와 동일하게 신청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50~70% 범위 내 운영 * 일반바우처 참여기업도 필요시 '관세 대응 패키지' 메뉴 자유롭게 이용 가능
테크서비스	○(지원대상) 1차 수출바우처 선정기업 대상 중 희망기업에 한하여 추가 한도 부여방식으로 지원 ○(국고보조) 국고 보조율 70%(3,500만원)
국제운송서비스	○(지원대상) 일반 바우처를 활용하는 기업 중, 메뉴판 내 '국제운송' 추가 수요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00만원 한도 확대 ○(지원규모) 전체 105억원 규모 ○(국고보조) 국고 보조율 70%(1,050만원)

[수출바우처 서비스 유형]

분야	정의	내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수출 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 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 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조사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 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 비스 등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 반 서비스
특허/ 지재권/ 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지원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 반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 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 진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 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 행사/해외 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해외전시회,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 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 사 서비스
법무·세무· 회계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 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의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 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모바일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페이지, 제품디자인, CI·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 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분야	정의	내용(예시)
해외규격 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제품 및 서비스 국제운송비 지원	국제운송료 등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무역 보험보증	수출 위험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 신용보증 등 서비스 지원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보증비용 지원 서비스
관세대응 패키지	관세피해 대응 관련 서비스	관세어로 긴급 해결 컨설팅, 부당한 관세 부과 및 분쟁 해결 지원, 관세 분야 서류 대행, 수출 중단 대비 대체 공급망(신규 바이어) 발굴 연계 등 지원
테크서비스	해외 진출을 위한 클라우드 등 서비스 지원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 비용, 전산자원 활용 비용, 인터페이스 재구성, 해외향 모바일 앱 및 웹 개발 비용, 테크 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임을 승인받은 항목 등 지원

주: 테크서비스는 플랫폼에 메뉴판이 구현되지 않아 참여기업이 지정수행기관 없이 직접 비용을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받는 방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재가공

2025년 기준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을 받은 총 5,989개의 기업은 111.5억불의 수출액을 달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4%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연도별 수출바우처 지원 실적]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예산(백만원)	133,851	117,300	107,509	119,710	111,860	217,360
지원 기업 수(개사)	3,648	3,929	4,016	2,644	2,963	5,989
지원기업 수출액(억불)	44.7	89.4	90.2	49.3	57.5	111.5
지원기업 수출증가율(%)	13.9	24.5	5.8	3.6	6.8	3.4
전체 수출증가율(%)	△0.2	16.2	△0.9	△2.4	4.4	△3.6

주: 1. '25년 사업은 정산 완료 후 수치 변경될 수 있음

2. 전체 수출 증가율은 상반기 발표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수출바우처사업 세부추진계획(안)」, 2026.2.

(2) 분석의견

첫째,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의 경우 산업통상부의 긴급지원바우처 사업과 지원 대상 및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의 혼란이 우려되므로 산업통상부와와의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중등전쟁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등전쟁 지속으로 인한 물류 리스크가 장기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긴급 물류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2025년 기준 중등 수출 중소기업 13,956개사 중 중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기업 전체 수출액 중 중등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이 4,598개사임을 고려하여, 약 4,8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1,050만원(1,500만원×국고보조율 70%)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500억원을 편성하였다.

대중등 수출 중소기업이 2023년 1만 2,588개사에서 2025년 1만 3,956개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체 수출액 중 대중등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도 2023년 4,371개사에서 2025년 4,598개사로 매년 증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중등 수출 의존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수출 중소기업 현황]

(단위: 개사)

구 분	2023	2024	2025
전체 수출 중소기업	94,463	95,815	98,129
對중등 수출 중소기업	12,588	13,085	13,95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대중등 수출액 비중별 수출 중소기업 현황]

(단위: 개사)

대중등 수출액 비중	2023	2024	2025
10%미만	5,110	5,250	5,600
10%이상 ~ 30%미만	2,046	2,224	2,305
30%이상 ~ 50%미만	1,061	1,226	1,453
50%이상 ~ 80%미만	1,429	1,403	1,551
80%이상	2,942	2,982	3,047
전체	12,588	13,085	13,95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2022년~2024년 연도별 수출바우처 메뉴판 분야별 이용 현황을 볼 때, 국제 운송 분야의 이용 건수 및 지원액 증가율(2022년 대비 2024년)이 각각 94.2%, 130.2%로, 법무·세무·회계 분야 다음으로 크게 나타나 국제운송 분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중동전쟁으로 인해 분쟁 전 대비 유조선운임지수가 55%, 상하이컨테이너선운임지수가 28% 가량 급등³⁾하여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도 물류바우처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연도별 수출바우처 메뉴판 분야별 이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분야	이용 건 수				지원액			
	2024 (A)	2023	2022 (B)	증가율 (A/B)	2024 (A)	2023	2022 (B)	증가율 (A/B)
디자인개발	3,119	3,212	4,098	△23.9	16,520	20,167	25,684	△35.7
전시회·행사	3,428	2,853	2,208	55.3	26,883	22,341	16,283	65.1
국제 운송	3,049	2,270	1,570	94.2	5,627	2,877	2,444	130.2
특허·지재권	2,288	2,112	1,963	16.6	7,813	6,874	5,763	35.6
홍보·광고	2,072	1,896	2,309	△10.3	15,781	14,969	15,689	0.6
해외규격인증	1,982	1,860	1,920	3.2	6,407	5,341	4,234	51.3
홍보동영상	811	717	751	8.0	10,316	9,219	8,858	16.5
조사·컨설팅	820	754	668	22.8	9,165	7,706	6,643	38.0
통번역	696	788	740	△5.9	1,041	1,129	827	25.9
역량교육	282	230	300	△6.0	318	357	256	24.2
브랜드개발·관리	225	192	195	15.4	2,727	2,585	2,116	28.9
서류대행	178	187	165	7.9	305	252	240	27.1
법무·세무·회계	136	88	59	130.5	937	610	331	183.1
무역 보험·보증	43	21	-	순증	50	30	-	순증
합계	21,110	17,180	16,946	24.6	105,864	94,457	89,368	18.5

주: 1. 국비 지원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수출바우처사업 세부추진계획(안)」, 2026.2.

3) 연합뉴스, 「해상·항공 운임 동반상승…한국 수출 직격탄」, 2026.3.15.

그런데 산업통상부 역시 중동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에 수출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는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가 각각 본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부의 수출바우처 사업 편성 현황]

구 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사업명	긴급 물류바우처 (세부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	긴급지원바우처 (세부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
2026년도 본예산	105억원	424억원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순증 규모	500억원	255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2월 15일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2026년 3월 3일 내수기업·수출초보 트랙의 기업 선정을 완료하였고 3월 31일 수출유망·성장·강소 및 글로벌 강소 1000+ 트랙의 기업 선정을 완료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공고일	2025. 12. 15.
신청기간	2025. 12. 17. ~ 2026. 1. 9.
모집규모	2,000개사 내외(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400개사 내외)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용기간	2026. 2. 1. ~ 11. 30.(10개월) *전시회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최하는 건에 대해 정산 가능
메뉴판	관세대응패키지,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 포함 15개 분야 8,000여개 서비스
지원한도	지원트랙(전년도 수출액)에 따라 최대 3,000만원~1억원 한도
국고보조율	2024년 매출액에 따라 50~70% 차등 적용
선정일	2026. 3. 3. 내수, 초보 선정 발표 2026. 3. 31. 유망, 성장, 강소, 글로벌 강소 1000+ 선정 발표

자료: 중소기업부,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2025.12.15.

한편, 중소기업부는 2026년 2월 28일부터 시작된 중동전쟁 및 글로벌 물류 불안정으로 인해 운임 상승, 운송 지연, 추가 할증료 발생 등 물류 애로가 발생하자 3월 17일 「2026년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게시하였다.

지원대상은 크게 두 트랙으로 구분되는데, 트랙1은 ① '26년 2월 이후 중동지역 국가로 물류 발송 기업 또는 ② '26년 이후 중동지역으로 수출계약 체결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트랙2는 2026년도 일반 수출바우처 1차 선정기업으로 최근 1년간('25.1.~'26.2.) 중동 지역 직수출 실적 보유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추후 수요조사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3월 20일부터로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접수 후 약 3~4일 내에 지원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선착순 방식으로 지원되어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1,500만원(국고보조율 70%)의 바우처를 수출바우처 시스템 내 '국제운송' 분야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4) 3. 20. ~ 3. 25. 오전 기준 149개사 신청 (중진공)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공고일	2026. 3. 17.
신청기간	2026. 3. 20. ~ 예산 소진 시
모집규모	1,000개사 내외
지원대상	○트랙1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① '26년 2월 이후 중동지역 국가로 물류 발송 기업 ② '26년 이후 중동지역으로 수출계약 체결 기업 ○트랙2 -'26년도 일반 수출바우처 1차 선정기업으로 최근 1년(25.1~26.2) 중동지역 직수출 실적 보유 기업 (추후 수요조사)
사용기간	2026. 2. 1. ~ 7. 31.
메뉴판	수출바우처 시스템 내 “국제운송” 서비스 이용
지원한도	최대 1,500만원
국고보조율	70%
선정일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장평가 없이 최소 요건만 확인하여 접수 후 약 3~4일 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안내 ○선착순 방식으로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6.3.17.

[국제운송 분야의 서비스 유형]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비고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해상·항공 등으로 이동하는 운임 및 보험료	*인코텀즈 C, D 조건에 한하여 지원 **샘플운송, 폴필먼트, 선적 전 검사, 국제운송 부대비용 등 지원범위 확대
샘플 운송료	실제 수출을 위한 상품 샘플이 운송되는 경우	
해외 내륙 운송료	컨테이너 트럭 운송 → 1차 도착지에서 목적지 이동	
국제특송	우체국 및 국제특송(FEDEX, DHL, UPS 등) 이용 비용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등이 직접 제공하는 국내외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선적 전 검사료	수출품 선적 전에 공인 검사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품질 인증 비용	
국제운송 부대비용	물류 반송 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지체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월 30일 기준 248개의 기업이 26억원의 규모로 신청하였고 그 중 95개사를 대상으로 10억원의 국비 지원을 결정하였다.

한편, 산업통상부 역시 중동전쟁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물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6년 3월 11일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긴급지원바우처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제시하였다.

지원대상은 중동전쟁 상황으로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신청기간은 3월 11일부터인데, 2025년 대 중동 직수출 실적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접수 후 3일 이내 선정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의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4,500만원~1억 5,000만원(국고보조율 50% 또는 70%)의 바우처를 15개 분야 메뉴판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3월 11일~24일 기준 349개의 기업이 신청하였고, 44개사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을 결정하였다.

[산업통상부 「2026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긴급지원바우처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공고일	2026. 3. 11.
신청기간	2026. 3. 11. ~ 3. 31.
모집규모	미정(000개사)
지원대상	중동전쟁 상황으로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25년부터 '26년 2월까지 對 중동 수출실적 보유 기업 - '26년 對 중동 수출 계약 기업
사용기간	2026. 2. 1. ~ 2026. 11. 30.
메뉴판	15개 분야 메뉴판 서비스
지원한도	지원트랙(산업 및 '22~24년 평균 매출액)별 최대 4,500만원~1억 5,000만원
국고보조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선정일	○패스트트랙: 접수 후 3일 이내 -조건: ① 또는 ② 충족 ① '25년 對 중동 직수출 실적 총액 100만불 이상 보유기업 ② '25년 對 중동 직수출 총액 50만불 이상이면서 해당지역 수출비중이 해당 기업의 '25년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일반트랙: 2026. 4. 10. 예정 *‘패스트 트랙’에서 미선정된 기업은 ‘일반 트랙’ 기업으로 재평가 예정

자료: 산업통상부, 「2026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긴급지원바우처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6.3.11.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 모두 중동전쟁 상황으로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함에 따라 사업간 중복이 발생하는바, 이는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통상부 사업 비교]

구 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공고명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긴급지원바우처 2차)
신청기간	2026. 3. 20. ~ 예산 소진 시	2026. 3. 11. ~ 3. 31.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원한도	최대 1,500만원	지원트랙별 최대 4,500만원 ~ 1억 5,000만원
사용의무	-	○「통상애로 긴급지원서비스*」+ 수출 바우처 6대 서비스**에 바우처 총액의 70% 이상 사용 *美관세산정, 美관세환급, 美수출 원산지 대응, 생산거점 이전, 유럽 통상 애로, 인도 통상 애로, 중동 물류 대응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재권, 국제운송, 홍보/광고,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선정방식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자 부담금은 별도로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 정산인정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만 지급	○패스트트랙 -접수 후 3일 이내 평가·선정 -분담금 납부 즉시 바우처 발급 ○일반트랙 -4.10.까지 평가·선정 -5월까지 협약 체결, 분담금 납부, 바우처 발급
신청 예외	중기부·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참여기업도 신청·선정 가능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6.3.17.
산업통상부, 「2026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긴급지원바우처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6.3.11.

또한 산업통상부 사업의 경우 바우처 총액의 70% 이상을 통상애로 긴급지원서비스 및 수출바우처 6대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기업이 자체 분담금을 납부한 이후에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의 경우 기업 자체 분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등 두 사업간 수행방식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이는 행정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부와 의 원활한 협조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중소기업에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양 부처간 사업 분리 추진으로 인해 중등전쟁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 추진 시 동일 서비스 사용 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기관을 통한 중복 정산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 정산 기업에 대한 철저한 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사업간 중복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동일 서비스 사용 건에 대해 중복 정산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복 정산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중복 정산한 기업에 대해 환수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데, 2022~2025년 최근 4년간 환수규모는 1억 4,2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 유사 수출지원 사업과의 중복 정산 모니터링 현황]

(단위: 건수, 백만원)

연도	적발건수	적발규모	환수건수	환수규모
2022	4	54.5	4	54.5
2023	1	6	1	6
2024	4	46.3	4	46.3
2025	2	35.7	2	35.7
계	11	142.5	11	142.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동일 서비스 건에 대해 타 수출지원 유사 사업에서 중복 정산 시 보조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수행할 것임을 예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부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중복 정산 기업에 대한 철저한 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⁵⁾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의 중복 정산 관련 제재]

신청하는 물류비 건에 대해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 받은 건은 정산 신청 불가하며, 향후 중복수급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의 최대 5배 제재 부가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예정입니다.

자료: 중소기업부, 「2026년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6.3.17.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아.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의 연내 인증획득 지원 가능한 협약기업 선정 필요 등
(중소벤처기업부)

(1) 현 황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¹⁾은 해외시장 개척에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935억 7,200만원이나 중동전쟁 등에 대응하여 수출국 다변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에서 21억 8,400만원,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사업에서 100억원 등 총 121억 8,400만원이 증액된 1,057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다.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92,058	93,572	105,756	12,184	13.0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30,609	35,609	37,793	2,184	6.1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25,300	17,519	27,519	10,000	57.1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산출근거]

세부 내역	편성규모	산출근거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	2,184백만원	200개사(수혜대상) × 15.6백만원(지원규모) × 70%(지원비율)
해외수출규제 대응지원	10,000백만원	358개사(수혜대상) × 42.3백만원(지원규모) × 66%(지원비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3133-301

그 중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2)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해외규격인증 획득 등 수출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대한 출연 형태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³⁾으로, 해당 중소기업이 지원을 신청하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평가·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며, 이후 기업이 1년 내⁴⁾ 인증을 획득하면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인증획득 추진	비용 정산
중기부	KTR	운영 위원회	KTR	참여기업	중기부, KTR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당 지원한도는 기본 1억원이나 의료기기 분야 대상은 1.5억원이며, 지원비율은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100억원 미만은 70%, 300억원 미만은 60%, 300억원 이상은 50%으로, 인증 획득 시 '실제 인증획득 소요비용×지원비율'과 '인증분야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산업·안전 등에 관한 규격의 획득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2. 해외규격의 확보·보급
3.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출연 또는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3) 예외: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

4) 일반지원: 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2회 연장 가능

전략지원: 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1회 연장 가능

*전략지원: ① 주요 수출 소비재 관련 인증, ② 긴급 지원 필요 인증 및 K-수출 전략품목 인증, 단, 건당 인증비·시험비 합산액이 3,000원이 넘는 고비용 인증 또는 의료기기 분야 대상 인증은 제외

[기업당 인증획득 비용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지원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비고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최대 4건	1억 원	70 %	60 %	50 %	인증분야별 한도 존재

주: 1. 지원 트랙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2. 의료기기 분야 대상 인증은 최대 1.5억원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6.1.30.

지원항목은 인증서 발행비·인증 신청비 등의 인증비, 제품 시험에 필요한 시험비, 컨설팅기관에 대한 기술 자문료·서류 대행료 등의 컨설팅비로 구성된다.

[인증획득 비용 지원항목]

지원항목	지원 예시
인증비	인증서 발행비, 인증 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컨설팅비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6.1.30.

2025년 협약된 1,888개의 기업 중 12월 31일까지 인증획득한 기업 829개사를 대상으로 총 105억 4,400만원의 인증획득 비용이 지원되었다.

[협약연도별 인증획득 비용 지원 현황]

(2025. 12. 31. 기준, 단위: 건, 개사, 백만원)

협약 연도	협약 기업 수	지원 건수				지원 기업 수				지원금액			
		전년도 매출액			계	전년도 매출액			계	전년도 매출액			계
		100 억원 미만	300 억원 미만	300 억원 이상		100 억원 미만	300 억원 미만	300 억원 이상		100 억원 미만	300 억원 미만	300 억원 이상	
2023	1,029	864	280	163	1,306	440	148	83	670	4,909	2,245	1,079	8,233
2024	1,040	810	284	180	1,274	400	126	80	606	3,768	1,566	1,319	6,653
2025	1,888	2,003	659	437	3,100	570	160	99	829	6,051	2,511	1,983	10,544

주: '23~'25년 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므로 인증획득 지원 건수, 기업 수, 금액은 증가할 예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분석의견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사업의 경우 연내 인증획득 지원이 가능한 협약기업을 선정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월 30일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일반지원)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및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게시하였다.

일반지원의 경우 3월 6일까지 참여기업 모집을 받은 후 4월 15일까지 선정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며, 전략지원의 경우 11월 30일까지 상시모집하되 선정 평가는 접수 다음달 1~15일에 진행된다.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사업 공고 현황]

구분	일반지원	전략지원
공고명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일반지원)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공고일	2026. 1. 30.	2026. 1. 30.
모집기간	2026. 1. 30. ~ 3. 6.	2026. 1. 30. ~ 11. 30. (상시모집)
평가기간	2026. 3. 9. ~ 4. 15.	접수 다음달 1~15일
모집규모	200개사 내외	600개사 내외

주: 1. 전략지원: ① 주요 수출 소비재 관련 인증, ② 긴급 지원 필요 인증 및 K-수출 전략품목 인증, 단, 건당 인증비·시험비 합산액이 3,000원이 넘는 고비용 인증 또는 의료기기 분야 대상 인증은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일반지원)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6.1.30.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358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5월 중 사업공고를 게시하여 6월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7월부터 인증획득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추진 계획]

구분	추진 계획
지원규모	358개사
지원대상	수출 중소기업 * 추정 사업은 중등 전쟁 피해 기업 우대 지원 예정
추진일정	사업공고(5월중) → 참여기업 모집(~6월) → 사업수행(7월~) → 사업종료(12월)
예산집행	7월말까지 35억원 집행, 12월말까지 100억원 집행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2024년 예산 대비 2025년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2024년 대비 2025년 협약 기업 수는 73.4%, 협약 건수는 229.1% 증가하는 등 해외인증 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협약 현황]

(단위: 개사, 건)

연도	협약 기업 수				협약 건수			
	전년도 매출액 기준			계	전년도 매출액 기준			계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2023	726	200	103	1,029	1,616	441	218	2,275
2024	737	194	109	1,040	1,622	449	264	2,335
2025	1,367	332	189	1,888	5,457	1,477	750	7,68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협약시점으로부터 소요기간별 인증 성공률을 살펴보면, 협약 1년 후에는 30~40%대, 2년 후에는 40~50%대, 3년 후에는 50%대로 나타나는 등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인증획득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협약 대비 인증획득 현황]

(단위: 건, 개사, %, 백만달러)

협약연도	협약 건수	협약 기업 수	인증 성공률			수출실적		
			협약 1년 후	협약 2년 후	협약 3년 후	인증획득 전	인증획득 후	증가율
2019	1,986	648	32.7	45.4	51.4	1,416	1,545	9.1
2018	1,927	641	35.6	48.8	56.7	2,529	2,903	14.8
2021	2,520	851	31.7	46.1	53.7	2,606	2,634	1.1
2022	2,680	1,030	36.9	51.5	58.1	정산중		
2023	2,275	1,029	41.1	55.4	-	진행중		
2024	2,335	1,040	46.7	-	-			
2025	7,684	1,888	41.7 (1년 미만)	-	-			

주: 1. 수출 실적 작성 기준:

1.1. 인증획득 전: 인증획득 전년도에의 수출실적

1.2. 인증획득 후: 인증획득 해당년도 및 직후년도 수출실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인증획득 지원기간이 종료된 2021년 및 2022년 협약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증획득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380여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획득 소요기간]

(단위: 개사, 일)

연도	협약기업 수	인증획득 기업 수	인증획득 평균 소요기간 (협약일~획득일)
2021	851	574	383
2022	1,030	714	38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를 고려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추가 지원 예정인 358개의 기업은 6월에 모집·협약 완료된 후 12월 31일까지 사업수행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는바, 358개의 기업이 모두 6개월 내 인증획득을 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 결과 사업수행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출연금을 2027년~2028년까지 이월하여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할 우려가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연내 인증획득 지원이 가능한 협약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의 해외 신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인증 지원을 위해 국가별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사업 공고 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 유형을 공개하고 있으며, 비공고 해외규격인증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 비공고 규격인증에 대해 협약된 현황을 살펴보면, 협약금액 기준으로 연도별 전체 협약금액 대비 비공고 규격인증 협약금액 비율이 0.3~1.3%에 불과한바 대부분의 인증획득 지원은 공고 규격인증에 대해 이뤄짐을 알 수 있다.

[비공고 규격인증 협약 현황]

(단위: 개사, 건수, 백만원, %)

연도	협약기업 수		협약 건수		협약금액		
	전체	비공고 규격인증	전체	비공고 규격인증	전체	비공고 규격인증	비공고 규격인증 비율
2022	1,030	9	2,680	10	13,154	71.9	0.5
2023	1,029	9	2,275	10	11,696	157.5	1.3
2024	1,040	5	2,335	7	11,609	59.2	0.5
2025	1,888	5	7,684	6	20,047	53.2	0.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공고된 해외규격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은 536개, 2025년은 541개, 2026년은 562개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연평균 증가율이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도별 국가별 지원대상 인증 현황]

(단위: 개)

국가	2024	2025	2026
미국	97	97	100
유럽	37	39	39
네덜란드	4	4	5
덴마크	3	3	3
독일	18	18	18
영국	13	13	13
이탈리아	3	3	4
프랑스	7	7	7
벨기에	2	2	2
스페인	3	3	3
핀란드	1	1	1
스웨덴	2	2	2
노르웨이	4	4	4
스위스	2	2	2
슬로바키아	1	1	1
일본	33	33	34
러시아	10	10	10
말레이시아	6	7	7
멕시코	4	4	4
대만	7	7	7
태국	3	4	4
브라질	7	7	7
사우디아라비아	2	3	3
싱가포르	12	11	11
아르헨티나	3	3	3
인도	13	13	13
인도네시아	4	4	6
중국	33	31	32
카자흐스탄	1	1	1
중동	1	1	1
캐나다	11	12	12
쿠웨이트	1	1	1
페루	-	1	1
콜롬비아	4	4	4
폴란드	3	3	3
에티오피아	1	1	1
필리핀	5	6	6
라오스	1	1	1
베트남	7	7	7
호주	18	18	19
홍콩	3	3	3

(단위: 개)

국가	2024	2025	2026
이라크	1	1	1
남아프리카공화국	3	3	3
이란	3	3	3
나이지리아	1	1	1
아랍에미리트	4	4	5
이스라엘	2	2	2
우크라이나	1	1	1
모로코	1	1	1
칠레	1	1	1
미얀마	1	2	2
이집트	2	2	2
뉴질랜드	5	5	5
바레인	1	1	1
캄보디아	1	2	2
벨라루스	1	1	1
세르비아	-	-	1
우즈베키스탄	-	1	1
카타르	-	-	1
코트디부아르	1	1	1
튀르키예	1	1	2
국제	115	114	120
계	536	541	562

주: 1. 일반지원 트랙 공고 규격인증 기준

2. 비공공 규격인증의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2025년·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수출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인바, 협약 기업 수 및 협약 건수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인증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해외규격인증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

자. 창업 활성화 및 재기 지원 사업 분석(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2025년 12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 벤처·스타트업, 유니콘을 넘어 K-빅테크로-」를 발표하였으며, 국가 자원·역량 총결집을 통한 벤처생태계 혁신 및 국내 기술·자본으로 글로벌 빅테크 육성을 통한 미래산업 주도권 장악을 목표로 AI 벤처·스타트업 1만개, 유니콘·데카콘 50개 육성이라는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① (창업가) 기술의 혁신을 넘어 유니콘·빅테크 도약, ② (지역·사회) 지역과 사회 곳곳으로 혁신의 포용성 확대, ③ (기술인재) 제도·문화 혁신을 통해 우수 인재를 벤처생태계로 흡수, ④ (투자자) 모험자본 체질 개선과 벤처투자 글로벌 4강 달성 등 총 4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추진전략별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 벤처·스타트업, 유니콘을 넘어 K-빅테크로-」 과제]

추진전략	세부과제		
① (창업가) 기술의 혁신을 넘어 유니콘·빅테크 도약	① K-빅테크 성장 트랙 : AI 고속도로를 타고 유니콘·데카콘 도약		
	압도적 GPU 인프라 등으로 AI 스타트업 1만개사 육성	중기부·과기정통부	'26. ~ '30.
	유니콘·데카콘 50개 육성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 가동	중기부·금융위	'25. ~ '30.
	AI·딥테크 친화적으로 창업 R&D·보증 프로그램 고도화	중기부	'26. ~
	AI·딥테크 친화적으로 세제·제도 개편	중기부·기재부	'26. ~
	② B2B·B2G 신시장 개척 : 혁신벤처 성과를 산업·공공시장에 지원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활성화(B2B)	중기부	'26. ~
	벤처·스타트업 공공조달 시장 진출 확대(B2G)	중기부	'26. ~
	지역 제조 AX·DX 수요 창출(B2B)	중기부	'26. ~
	③ K-벤처의 글로벌 진출 : 글로벌 무대로 국내외 한인 벤처·스타트업 연결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국내 거점 확대	중기부·과기정통부	'26. ~
	글로벌 한인 창업가·경제인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중기부	'26. ~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 강화	중기부·과기정통부	'26. ~
	④ 벤처 솔루션 매니저 : 법률·경영·규제 해결 코디네이터 기능 강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운영	중기부	'25.12 ~
	신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공론화의 장 마련	중기부	'26.1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중기부	'26. ~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김지수 예산분석관(jskim05@assembly.go.kr, 6788-4630)

추진전략	세부과제		
② (지역·사회) 지역과 사회 곳곳으로 혁신의 포용성 확대	① 실패가 자산이 되는 재창업 지원 : 도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재도전 안전망		
	재도전 응원본부 신설	중기부	'26. ~
	재도전 펀드 확대·개편	중기부	'26. ~
	가계재창업재기지원 보증 신설(기보)	중기부	'26. ~
	벤처투자 연대책임 개선	중기부 금융위	'26. ~
	② 로컬벤처 혁신 거점 고도화 : 지역의 벤처·창업 공간 업그레이드		
	5국 3특을 고려 창업도시 10곳 내외 조성	중기부	'26. ~
	비수도권 스타트업 SW·HW 인프라 확산	중기부	'26. ~
	③ 지역·초기투자 토양 개척 : 지역·초기투자 마중물 조성 및 규제 완화		
	3.5조원 규모 '지역성장펀드' 신설	중기부	'26. ~
	지역 친화적 벤처투자 기반 조성	중기부·기재부	'26. ~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공급 확대	중기부	'26. ~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 규제 완화	중기부	'26. ~
	④ 소셜벤처 르네상스 :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며 혁신의 물결 확산		
	소셜벤처 개념 재정립 및 글로벌 위상 제고	중기부	'25.12 ~
	임팩트 펀드·보증 확대	중기부	'26. ~
	팁스 프로그램 내 ESG 부문 신설	중기부	'26. ~
③ (기술인재) 제도·문화 혁신을 통해 우수 인재를 벤처생태계로 흡수	① 성장 지향적 벤처 정책 구현 : K-벤처 위상을 끌어올리는 제도 혁신		
	벤처 정책의 범위 확장	중기부	'26. ~
	벤처투자 계약 문화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	중기부벤처기업협회	'26. 상 ~'26. 하
	복수의결권 주식 활성화 논의	중기부 금융위	'26. ~
	벤처·스타트업 플립(Flip)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기부	'26. ~
	벤처·스타트업 법률 분쟁 리스크 완화	중기부	'26. ~
	② 글로벌 인재 중심국 도약 : 세계 최고의 기술인재가 모여드는 생태계 조성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중기부	'26. ~
	벤처 스튜디오 모델 활성화	중기부	'26. ~
	AI 솔루션 기반 1인·소형(솔로프리너) 창업모델 활성화	중기부	'26. ~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중기부	'25.4Q~
	국내 복귀 AI 인재 세금 지원	기재부	'26. ~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활성화	중기부	'26. ~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RS) 제도 활성화	중기부	'26. ~
	벤처·스타트업과 전문연구요원간 인재 매칭데이 운영	중기부벤처기업협회	'26. ~
	우수인재의 VC 유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중기부	'26. ~
	벤처형 근로시간제도 연구 시작	중기부	'26. ~
	③ 대한민국 벤처 정신 부활의 원년 : 기업가정신의 국가 전방위적 확대		
	국가 벤처혁신 컨트롤타워 공식화	중기부 AI전략위	'26. ~
	벤처주관 신설 및 벤처 명예의 전당(아너스 클럽) 신설	중기부벤처기업협회	'26. ~
	벤처전역기업 브랜드화 (가계벤처마일스톤 클럽)	중기부벤처기업협회	'26. ~
	벤처문화(Pay it forward) 종합포털 신설	중기부벤처기업협회	'26. ~
④ (투자자) 모험자본 체질 개선과 벤처투자 글로벌 4강 달성	① 벤처투자 재원 확대 : K-벤처에 풍부한 유동성 공급		
	모태펀드 투자재원 확충 및 다변화	중기부·기재부	'26. ~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기재부·중기부	'26. ~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 점진적 허용	노동부·중기부	'26. ~
	국외자금의 국내 벤처펀드 참여 촉진	중기부	'26. ~
	② 생산적 금융 대전환 : 벤처·스타트업이 주인공인 자본 생태계		
	금융자본 규제를 벤처투자 친화적으로 개편	금융위·중기부	'26. ~
	산업자본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 유도	공정위·중기부	'26. ~
	③ 민간투자 촉진과 벤처금융 확대 : 투명하고 공정한 모험자본 인프라		
	민간 투자촉진 세제 인센티브 강화	기재부	'26. ~
	기술보증기금 기능 강화	중기부	'26. ~
	벤처투자 불공정 계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 체계 마련	중기부벤처기업협회	'26. ~
	VC 내부통제 및 감독기반 강화	중기부	'26. ~
	벤처·스타트업 자금조달 모니터링 고도화	중기부·기재부	'26. ~
	벤처기업 BSI 국가통계 승인	중기부	'26.1Q
	④ 혁신투자 선순환 구조 :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역동 생태계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 고도화 및 지원 확대	중기부·기재부	'26. ~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중기부·기재부	'26.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 벤처·스타트업, 유니콘을 넘어 K-빅테크로-」, 2025.12.18.

이러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에 따른 벤처·창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창업 활성화 및 재기 지원과 관련하여 총 13개의 세부사업을 증액 편성하였다.

창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6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개 등 총 10개의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재기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1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개 등 총 3개의 사업을 편성하였다.

13개의 세부사업 기준 2026년도 본예산은 5조 213억 5,100만원이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창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 발굴 및 재기 지원 등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8,676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조 8,890억 1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① 창업사업화지원 사업¹⁾은 창업도시 신규·이전 창업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및 정착지원금 지원을 위해 지역창업패키지 사업에 510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창업도시 연계 딥테크 창업중심 대학을 4곳 확대 운영하기 위해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240억원을 증액하였다.

② 창업저변확대 사업²⁾은 창업 열풍 확산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에 1,5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공간 6곳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지역혁신창업활성화지원 사업에 98억원을 증액하였다.

③ 민관협력창업자육성 사업³⁾은 방산, 기후테크 등 중점분야 개방형 협업 활성화 및 혁신 스타트업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에 784억원을 증액하였고, 글로벌 대기업 연계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기업협업프로그램 사업에 200억원을 증액하였다.

④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사업⁴⁾은 예비·초기 스타트업에게 경영·기술 전반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전문가 상담·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사업에 5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1) 코드: 일반회계 5132-302

2) 코드: 일반회계 5132-301

3) 코드: 일반회계 5132-304

4) 코드: 일반회계 5134-301

⑤ 기술혁신기반조성 사업⁵⁾은 창업기업 대상 기술실증, 수출, 마케팅 등 사업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에 1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⑥ 마케팅지원사업⁶⁾은 창업기업의 내수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판로진출지원 사업에 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⑦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⁷⁾은 테크·로컬 창업가 투자 지원,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마중물을 공급하기 위해 1,7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⑧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⁸⁾은 AI, 초격차 분야 등 미래 전략산업의 중심인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 강화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기반지원 사업에 1,5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⁹⁾은 창업 열풍 확산을 위한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 사업에 453억 200만원,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사업에 1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⑩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¹⁰⁾은 지역 생활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 개선을 통해 상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기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활형 혁신지원 사업에 4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⑪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¹¹⁾은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실패한 기업인들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지원 및 재도전 응원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⑫ 재도약지원자금(융자) 사업¹²⁾은 재도전 및 성실실패자 대상 재창업 소요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창업자금 사업에 5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⑬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¹³⁾은 대출 소상공인 대상 ‘위기징후 모니터링’을 통

5) 코드: 일반회계 2131-302

6) 코드: 일반회계 4835-305

7) 코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5264-301

8) 코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5152-301

9)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6

10)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7

11) 코드: 일반회계 5133-301

12) 코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5161-301

1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9

해 한계(위기) 기업을 포착하고 원활한 사업 정리 및 재기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2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창업 활성화 및 재기 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유형	회계 기금	사업명 (세부-내역-내내역)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창업 활성화	일반 회계	창업사업화지원	461,838	536,918	75,080	16.3
		창업패키지	195,187	246,267	51,080	26.2
		지역창업패키지	-	51,080	51,080	순증
		창업중심대학	88,250	112,250	24,000	27.2
		창업저변확대	24,830	189,630	164,800	663.7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155,000	155,000	순증
		지역혁신창업활성화지원	4,850	14,650	9,800	202.1
		민관협력창업자육성	239,856	338,256	98,400	41.0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24,200	102,600	78,400	324.0
		글로벌기업협업프로그램	60,000	80,000	20,000	33.3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69,290	74,640	5,350	7.7
		AX창업허브	33,362	38,712	5,350	16.0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	5,350	5,350	순증
		기술혁신기반조성	43,366	55,866	12,500	28.8
		기술사업화 패키지	24,000	36,500	12,500	52.1
		마케팅지원사업	24,944	31,544	6,600	26.5
		판로진출지원	14,301	20,901	6,600	46.2
	중진 기금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820,000	990,000	170,000	20.7
		혁신창업사업화자금(용자)	1,605,800	1,755,800	150,000	9.3
		창업기반지원	1,305,800	1,455,800	150,000	11.5
	소진 기금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131,069	191,389	60,320	46.0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	22,550	67,870	45,320	201.0
		혁신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	34,000	49,000	15,000	44.1
		소상공인 성장지원	621,243	661,243	40,000	6.4
		소상공인 생활형 혁신지원	-	40,000	40,000	순증
재기 지원	일반 회계	중소기업 재기지원	14,966	24,966	10,000	66.8
		재도전성공패키지	14,966	24,966	10,000	66.8
	중진 기금	재도약지원자금(용자)	612,500	662,500	50,000	8.2
		재창업자금	100,000	150,000	50,000	50.0
	소진 기금	소상공인재기지원	351,649	376,249	24,600	7.0
		희망리턴패키지	305,550	330,150	24,600	8.1
계			5,021,351	5,889,001	867,650	17.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재구성

(1)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의 예산 분리 편성 문제 등

① 현 황

2025년 12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 벤처·스타트업, 유니콘을 넘어 K-빅테크로-」에서 추진 세부과제로 제시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관련 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총 두 차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으로, 각 프로젝트는 일반트랙과 로컬트랙으로 구분된다.

일반트랙의 경우 1차 예산은 2025년 국회에서 통과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같은 해 12월 발표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 및 '창업중심대학'의 본예산 436억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2차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세부사업 '창업저변확대' 중 신규 내역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550억원이 편성되었다.

로컬트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차 예산은 2025년 국회에서 통과된 기금운용 계획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같은 해 12월 발표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사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중 내역사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의 본예산 191.9억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2차 예산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준 동 사업에 453.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예산 편성 현황]

구분	일반트랙		로컬트랙	
	1차	2차	1차	2차
내역사업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세부사업명	-	창업저변확대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예산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중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사업 본예산 436억원 활용	추가경정예산안 1,550억원	세부사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중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 본예산 191.9억원 활용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453.2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재구성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로컬트랙 2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¹⁾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²⁾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은 다음과 같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 및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창업저변확대	20,318	24,830	189,630	164,800	663.7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	155,000	155,000	순증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83,422	131,069	19,389	60,320	46.0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19,288	22,550	67,870	45,320	201.0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각 사업별 세부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산출근거]

구분	주요 내용
계	1,550억원
단계별 창업코칭 프로그램 운영	1,040억원 ① 자문·코칭 140억원 * (1단계) 0.3백만원×4회×8,000명, (2단계) 0.5백만원×8회×1,000명, (3단계) 0.5백만원×4회×200명 ② AI 솔루션(회계세무재고 등) 바우처 80억원 = 1백만원×8,000명 ③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500억원 = 200백만원×250개 기관 ④ 보육기관 관리·운영(멘토단·공간 등) 320억원 = 128백만원×250개 기관 ↳ 단계별(1~3R)로 기관별 창업가 보육 수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급
초기 사업화 지원	320억원 ① (1R, 창업활동자금) 160억 = 2백만×8,000명, ② (2R) 160억원 = 1,600만원×1,000명

1) 코드: 일반회계 3131-301

2)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6

구분	주요 내용
대국민 창업경진대회	50억원 ① (2R 지역창업오디션) 17억원 = 1억원x1회x17개시도 * 대국민 평가단 구성 ② (운영기관 인센티브) 20억원 ③ (우수 창업자 상금) 2억원x2명, 1억원x4명 0.5억원x10명
대국민 인식 홍보	140억원 ① (17개 시도 지역별 홍보) 85억원 = 500백만원 x 17개 ② (창업열풍확산 대국민 캠페인) 25억원 = 홍보영상, 인플루언서, 매체광고 등 ③ (방송 프로그램 제작) 30억원 = 모두의 창업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의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부 산출근거]

구분	주요 내용
계	453억 2,000만원
단계별 창업코칭 프로그램 운영	100억원 ① (1단계) 2,000명×2백만원 ① (2단계) 1,200명×5백만원
초기 사업화 지원	280억원 ① (1R, 창업활동자금) 40억 = 2백만원×2,000명 ② (2R, 초기사업화자금) 240억원 = 2,000만원×1,200명
대국민 창업경진대회	69.2억원 ① (오디션) 51억원 = 6억원×8개 권역 + 3억×1개 권역 ② (운영기관 인센티브) 9억원 = 3억원×3개 기관 ③ (우수 창업자 상금) 9.2억원 = 1억원×2명 + 5,000만원×8명 + 2,000만원×16명
대국민 인식 홍보	4억원 ① 라운드별 홍보 4억 = 2억×2라운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12월 18일에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 벤처·스타트업, 유니콘을 넘어 K-빅테크로-」에 이어 2026년 1월 30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도한 「국가창업시대 도약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때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란 단계별 멘토링, 경연, 창업 활동자금 등의 투자가 결합되어 있어 전 국민이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을 말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세부 방향]

구분	세부 방향
참여·신청	○ 창업 활동 지원 -테크 창업가 4천 명, 로컬 창업가 1천 명을 합해 전국 5천 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u>창업 활동자금 2백만원</u>을 지원 -신청 과정에서 원하는 창업 기관을 직접 선택 -전국 100여 개 창업 기관에 소속된 500명의 전문 멘토단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포함된 1,600여 명 자문단이 ‘모두의 창업 서포터즈’로 활동
창업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선별된 1천여 명의 창업가가 도전하는 17개 시·도별 예선 오디션과 5개 권역별 본선 오디션을 개최하여, 100여 명의 ‘창업 루키’를 선발 -지역별 창업 오디션을 중심으로 한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개최 -1천여 명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 AI 솔루션 제공 ○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 -100여 명의 ‘창업 루키’에게는 차년도 최대 1억 원의 후속사업화자금 지원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에서 100여 명의 ‘창업 루키’가 참여하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벤처투자를 합해 10억 원 이상의 지원 제공 ○ ‘창업 경연 프로그램’으로 제작·송출 ○ ‘창업 루키’에게 집중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 조성
성장 및 실패 후 재도전 지원	○ 테크 창업가에 대한 성장 지원 -창업기업의 공공 구매 강화, 공공데이터 활용 기회 제공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 참여를 통한 시장 창출 지원 -대기업·공공기관 등 국내 100개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기술 실증 ○ 로컬 창업가에 대한 성장 지원 -자금 공급, 역량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글로벌 상권 조성 ○ 실패 후 재도전 지원 -‘모두의 창업’ 활동 이력이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전 경력서’ 발행 -‘재도전 플랫폼’ 구축 -창업사업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패 경력서’ 제공

자료: 관계부처합동, 「국가창업시대 도약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표」, 2026.1.30.

기본적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①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활용·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트랙’과 ②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성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 특색을 활용한 로컬 창업을 대상으로 하는 ‘로컬트랙’으로 구분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트랙 유형]

트랙	일반트랙	로컬트랙
지원목적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활용·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성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지원분야	기술창업 전 분야	지역 특색을 활용한 로컬 창업
지원자격	예비창업자 또는 이중창업을 하려는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 2026.3.26.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중 일반트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트랙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1차의 경우 3~4월 참여자 모집공고 후 7~8월 기본코칭, 9~10월 지역 오디션, 11월 권역 오디션을 진행하고, 2차의 경우 6~7월 참여자 모집 후 9~10월 기본코칭, 11월 지역 오디션을 진행하며, 1·2차 결과를 통합하여 12월에 파이널 오디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운영 일정(안)]

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차	모집공고		아이디어 심사		기본코칭		지역 오디션		권역 오디션	파이널 대상자 선발
2차	-		모집공고		아이디어 심사		기본코칭(1R)		지역 오디션(2R)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월 26일 참여자 모집공고가 추진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단계별로 창업활동자금·사업화자금·상금 등이 지원되고, 100여개의 보육기

관별 멘토 및 1,600여명의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이 ‘모두의 창업 서포터즈’로 활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추진 계획안]

공모 · 보육 창업 기본코칭	지역오디션 창업 실전코칭	권역별 오디션 MVP 제작	대국민 경진대회 파이널 오디션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4,000명)	▶ 사업화자금 최대 1,000만원 (500명)	▶ 추가사업화자금 최대 1,000만원 (200명)	▶ 차년도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100명)
‘26. 6~7월	‘26. 8~9월	‘26. 10~11월	우승자 상금 5억원+α (5명) ‘26. 12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 2026.3.26.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❶ (도전) 전 국민이 손쉽게 참여하여, 5천명의 혁신 창업가 발굴	◦ (창업지원) 5천명 혁신 창업가 대상 창업 활동자금 2백만원 지원 ◦ (보육기관) 대학·BI·AC 등 전국 민간·공공 창업 지원기관(총 1,200여개) 전방위 발굴 → 보육 여건*을 심사하여 전담 보육기관 100여곳 선정 * 스타트업 보육경험, 멘토 Pool 보유현황(10명 이상), 전담인력, 인적·물적 인프라 등
❷ (멘토링) ‘모두의 창업 서포터즈’ 구성 및 AI 솔루션 활용	◦ (서포터즈) ① 전국 100곳 보육기관별 멘토* (기관별 최소 10명 ↑) ②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1,600여명 + α) * 선배 창업가, 대기업 퇴직인력, 투자사, 대학·연구기관, 분야별 전문가 등 ◦ (AI 솔루션 지원) 인력 및 전문 기술이 필요한 사업 영역들을 AI 솔루션으로 대체하여 경량화된 소형 창업모델 활성화
❸ (경연)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 개최	◦ (지역·권역별 오디션) 전국적인 지역·권역별 오디션 개최 및 지역 창업 페스티벌 연계 개최 → 지역 창업붐 조성 ◦ (파이널 오디션) 컴업 內 ‘모두의 창업(예비) + 도전-K(창업자)’를 연계 개최 → 혁신 창업가가 단일 공간에 모이는 축제의 장 조성 * 전문 AC · VC가 오디션 평가단으로 함께 참여하여 경연 과정의 투자심사 유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37개, 비수도권에는 81개 등 총 118개의 운영기관이 지역별로 선정되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지역별 운영기관 선정 현황]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광주
운영기관 수 (개)	20	11	6	7	5	7	9	4	7
지역	전북	전남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계
운영기관 수 (개)	6	4	7	5	6	7	3	4	11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 2026.3.26.

일반트랙 2차의 경우에도 단계별로 창업활동자금·사업화자금·상금 등이 지원되며, 보육기관이 제공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보육기관 내 멘토의 자문·코칭, 회계·세무·재고 등 창업에 필요한 유형별 AI 솔루션 등을 지원받는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2차 추진 계획안]

공모 · 보육	지역오디션	대국민 경진대회
창업 기본코칭	창업 실전코칭	파이널 오디션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8,000명)	사업화자금 최대 1,600만원 (1,000명)	(200명)
		우승자 상금 0.5~2억원 (16명)
'26. 9~10월	'26. 11월	'26. 12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 때, 대국민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개 오디션을 개최하는데 오디션 전 과정은 '모두의 창업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방송 송출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시·도별 홍보, 캠페인 영상 송출, 옥외광고 또는 라디오 등 온·오프라인 홍보 등 각종 홍보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중 로컬트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월 26일 참여자 모집공고가 추진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단계별로 창업활동자금·사업화자금·상금 등이 지원되고, 그룹멘토링, 창업 교육, 1:1 맞춤멘토링, 보육공간 등이 제공되며, 이를 위해 총 8개의 주관기관이 권역별로 선정되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1차 추진 계획안]

공모 · 보육	권역별 오디션	대국민 경진대회
창업 기본코칭	MVP 제작	파이널 오디션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1,000명)	▶ 사업화자금 최대 3,000만원 (600명) ▶	(100명) 우승자 상금 최대 1억원 (13명)
'26. 6~7월	'26. 8~10월	'26. 11~12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 2026.3.26.

로컬트랙 2차 참여자의 경우에도 단계별로 창업활동자금·사업화자금·상금이 지원되며, 보육단계 참여자는 공통교육(경영기초,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등)·4대 생활 문화 분야(F&B, 패션, 뷰티, 생활) 특화교육 등의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고, 권역별 오디션 참여자는 권역별 운영기관·투자사 등 전담 멘토단을 통해 사업화모델 수립, 모의투자 피칭 등 창업 실전과 관련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2차 계획안]

공모 · 보육	권역별(5극3특) 오디션	대국민 경진대회
▶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2,000명) ▶	사업화자금 최대 3,000만원 (1,200명) ▶	4대 분야 상위 창업가 (40명 내외) 우승자 최대 1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② 분석의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와 ‘창업중심대학’, 세부사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중 내역사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은 2025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취지와 달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사업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2026년도 본예산 기준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는 창업기업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성장단계별(예비, 초기, 도약기) 창업사업화자금, 창업프로그램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편성되었고, 내역사업 ‘창업중심대학’은 권역별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 및 지역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그런데 두 사업 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취지와는 달리 현재 실질적으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사업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관련 예산 편성 현황]

구분	본예산		
	국회 심의·의결 당시 목적		실제 활용 계획
예산액	49,125백만원	88,250백만원	43,600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
사업내용	○ 창업패키지: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기) 창업사업화자금, 창업프로그램 교육 등 지원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대상 지원 ○ 창업중심대학: 지정된 창업중심대학에서 대학발 창업 및 지역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사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2026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 기준 세부사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중 내역사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은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트랙 운영, 체험점포 구축·운영 등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 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취지와는 달리 현재 실질적으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1차 사업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1차 관련 예산 편성 현황]

구분	본예산	
	국회 심의·의결 당시 목적	실제 활용 계획
예산액	22,550백만원	19,190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부사업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내용	○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교육·멘토링, 사업화자금 지원 등) ○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트랙 운영 ○ 체험점포 구축·운영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1차 사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와 ‘창업중심대학’, 세부사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중 내역사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은 2025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취지와 달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사업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국회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예산이 당초 의도와 다르게 집행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2차 사업 예산은 타 세부사업인 ‘창업저변확대’ 중 내역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분리 편성된 문제가 있는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및 2차에 사용할 예산은 통합하여 별도 내역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편성·추진하는 등 예산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사업 성과의 통합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사업은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 및 ‘창업중심대학’의 본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일반트랙 2차 사업은 타 세부사업인 ‘창업저변확대’ 중 신규 내역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분리 편성되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관련 예산 편성 현황]

구분	1차	2차
예산	본예산 43,600백만원 ¹⁾	추가경정예산안 155,000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부사업명)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지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창업저변확대)
사업내용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2차 사업

주: 1) 1차 예산은 2025년 국회에서 통과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같은 해 12월 발표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중 내역사업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 및 '창업중심대학'의 본예산 436억원을 활용하고 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동일한 사업 내용임에도 사업 예산을 합리적 근거 없이 서로 다른 세부 사업에 분리 편성할 경우 사업 추진의 효과성 및 사업 성과의 통합관리가 위축될 수 있으며, 국회의 면밀한 예산 심의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및 2차에 사용할 예산은 통합하여 별도 내역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편성·추진하는 등 예산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경우 시기적으로 인접한 1·2차를 따로 진행함에 따라 사업 혼선, 홍보비 등의 중복 편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이 우려되는바, 2차 사업은 향후 2027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거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을 1차 사업 예산에 통합하여 차수 구분 없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차와 2차는 시기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파이널 오디션의 경우 12월경에 통합 운영할 예정으로, 동일한 사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공모 시기, 기본코칭, 지역·권역 오디션 등 단계가 분리되어 있어 지원대상에게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차수별 상금 규모가 다르게 편성되어 참여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일정(안)]

구분	일반트랙		로컬트랙	
	1차	2차	1차	2차
모집공고	3~4월	6~7월	3~4월	6~7월
심사	5~6월	7~8월	5~6월	7~8월
기본코칭	7~8월	9~10월	6~7월	8~9월
지역 오디션	9~10월	11월	-	-
권역 오디션	11월	-	8~10월	9월~10월
파이널 오디션	12월(통합 운영)		11~12월	12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상금 계획안]

구분	일반트랙		로컬트랙	
	1차	2차	1차	2차
상금	TOP 1 5억원	TOP 16명 0.5~2억원	TOP 1 1억원	TOP 1 1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동일 사업임에도 대국민 창업경진대회 운영비, 방송 송출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의 홍보비가 프로젝트 1차(본예산) 및 2차(추가경정예산안)에 각각 편성되어 있는바, 중복 편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트랙별·세부내역별 예산 편성 현황]

구분	일반트랙		로컬트랙	
	1차 (본예산)	2차 (추가경정예산안)	1차 (본예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계	436억원	1,550억원	192억원	453억 2,000만원
단계별 창업코칭 프로그램 운영	140억원	1,040억원	43억원	100억원
사업화자금 지원	150억원	320억원	140억원	280억원
대국민 창업경진대회	46억원	50억원	9억원	69.2억원
대국민 인식 홍보	100억원	140억원	-	4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프로젝트 2차 사업은 향후 2027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거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을 1차 사업 예산에 통합하여 차수 구분 없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지역 오디션·권역 오디션·대국민 경진대회 등 단계별 참여자에 대한 지원내용 외에 탈락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계별 탈락자에 대한 사후 지원방안을 보완하고 사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에 따르면 단계별 참여자는 창업활동자금·사업화자금·상금 등의 자금 지원과 창업프로그램·그룹멘토링·창업교육 등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트랙' 1차 참여자에 대한 단계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단계별 지원내용		지원사항	세부내용	진출	1R	2R	3R
	검 증	책 임 멘 토 링	창업 전반에 대한 멘토링 제공	●	●	●	●
		창업활동자금	초기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지원	●			
		A I 바 우 처	월 최대 100만원 내 평가 결과에 따라 자동 지급(평균 50만원 내외)	●			
		규제 스크리닝	원스톱 자문단(법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선제적 규제애로 점검·컨설팅 지원		●		
	제 작	기 술 멘 토 링	기술분야 전문가 멘토링 연계 지원		●		
		M V P 제 작	최대 1천만원 내 시제품 제작 지원		●	●	
	성 장	선 배 멘 토 링	선배 창업가의 경험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한 멘토링 제공			●	
	TOP 100 지원내용	구분	TOP 100	TOP 10	TOP 1 ★		
상 금		-	-	5억원			
글로벌		-	해외전시회 참관				
투 자		전용 IR 개최·지원	전용 IR 개최·지원	5억원 내외 연계			
사업화		차년도 사업화자금 (1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 2026.3.26.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 1차 참여자에 대한 단계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단계별 지원내용		지원사항	세부내용	진출	1R	2R	3R
	검 증	창업활동자금	초기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지원	●			
		그룹멘토링	창업 전반에 대한 그룹형 멘토링 제공	●	●		
		창업교육	경영 기초교육, 창업 프로세스, 특화교육 등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	●		
	사 업 화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내 사업화자금 지원		●		
		맞춤멘토링	분야별 전문가 1:1 맞춤 멘토링 연계 지원		●	●	
		보육공간	신청 권역별 보육공간(사무실) 지원		●	●	
	성 장	연계지원	투자연계지원 및 자금지원				●
		후속지원	후속사업(차년도 지원사업) 지원 시 우대				●
	TOP 100 지원내용	구분	아이디어 선정	권역별 오디션	파이널 오디션		
지원금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사업화자금 ^{최대} 3,000만원	상금 ^{최대} 1억원			
멘토링		그룹 멘토링	1:1 맞춤 멘토링				
투자		-	투자사 및업, 데모데이, IR피칭, 투자 연계				
인센티브		-	권역별 보육공간 지원, 차년도 지원사업 우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 2026.3.26.

그런데 현재 단계별 탈락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2026년 1월 30일 「국가창업시대 도약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표」에 따르면 '도전경력서' 발행, '실패경력서' 제공, '재도전 플랫폼' 구축 등으로만 제시되어 있을 뿐, 모집공고에서는 구체적으로 공지되어 있지 않다.

참여자에 대한 자금 지원, 창업 교육 지원 등이 일시적 지원으로만 종료될 경우 예산상 비효율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탈락자가 오디션 외에 자력으로 창업할 추진력 및 창업 준비의 연속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탈락자에 대한 사후 지원방안을 보완하고 사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유사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및 별도 사업 신설 필요성 검토 필요 등

① 현 황

창업사업화지원 사업¹⁾은 예비·초기·도약 단계 등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및 도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6년도 본예산은 4,618억 3,800만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역창업 패키지 내내역사업 신규 편성(510억 8,000만원) 및 창업중심대학 내역사업 증액(240억원)에 따라 750억 8,000만원이 증액된 5,369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창업사업화지원	457,567	461,838	536,918	75,080	16.3
창업패키지	162,255	195,187	246,267	51,080	26.2
지역창업패키지	-	-	51,080	51,080	순증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142,996	145,622	145,622	0	-
창업중심대학	77,475	88,250	112,250	24,000	27.2
창업지원사업 관리	32,841	32,779	32,779	0	-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창업패키지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지역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창업도시(대전, 대구, 광주, 울산)에 소재한 창업기업 또는 수도권 등에서 해당 창업도시로 이전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화 자금과 패키지 프로그램(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510억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김지수 예산분석관(jskim05@assembly.go.kr, 6788-4630)

1) 코드: 일반회계 1532-302

창업중심대학 내역사업은 권역별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가형 대학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88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창업도시 소재 과학기술원(KAIST·GIST·UNIST·DGIST)을 추가 지정하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현 계획 대비 240억원이 증액된 1,12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② 분석의견

첫째,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은 추경 편성을 통해 특정 4개 창업도시(대전·대구·광주·울산)에 지원이 집중되는 구조인바,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업도시 소재 또는 이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의 신규 편성과, 창업도시 소재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대학발 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창업중심대학 내역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두 사업 모두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개 창업도시²⁾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구분	지역창업패키지 사업	창업중심대학
예산 규모	510억 8,000만원	240억원
지원 대상	창업도시(대전·대구·광주·울산) 소재 또는 수도권 등에서 이전한 창업기업 (업력 10년 이내)	창업도시(대전·대구·광주·울산) 소재 과학기술원 (KAIST·GIST·UNIST·DGIST)
사업 목적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역 정착 지원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형 대학 모델 확산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 멘토링·네트워킹 등 지원	창업교육·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정부는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2026년 4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간 창업생태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창업·투자 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해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동 사업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개 도시를 중심으로 선제적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창업도시 프로젝트 추진 개요]

구분	창업도시 프로젝트		
추진 목표	지역 창업생태계 고도화		
추진 규모	2030년까지 총 10개 지역거점 창업도시 조성		
추진 단계	① 4개 선도 창업도시(대전·대구·광주·울산) 선정 → ② 비수도권 중심 6개 지역 추가 선정		
주요 지원내용	전주기 지원	R&D 실증	· (창업센터) 스케일업을 위한 TIPS(일반트랙 10% 이상) 공급 · (지역 연구기관) 기술적 가능성 등 실증 지원
		사업화 투자	· (사업화) 지역 특화산업 분야 사업화자금 · IR · 개방형혁신 지원 · (투자) ‘지역성장펀드’를 5극 3특(수도권 제외) 권역 중심으로 조성
		판로 글로벌	· (판로) 대기업·공공기관 간 개방형 혁신 지원 · (글로벌) 우수 스타트업 ‘글로벌 창업허브 프로그램’ 연계
	여건 개선	인프라	· (창업) 스타트업 파크(~'30. 10곳), 메이커스페이스 · (투자) 엔젤투자허브(~'30. 14곳), KVIC 지역사무소(~'30. 7곳)
		규제 정주 여건	· (규제개선) 창업도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 주거 · 교통 · 문화 등 범부처 거점 조성사업 연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전체 10개 창업도시 조성 계획 중 일부 지역(4개 창업도시)에 재정지원이 집중되는 구조인바, 창업도시 선정 기준 및 지원 범위의 설정 근거와 함께 향후 단계적 확대를 고려한 재정배분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창업도시에 재정지원이 선제적으로 집중되는 현 구조와, 향후 10개 창업도시로의 확대 계획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제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

기업부는 창업도시 지정 및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창업패키지 사업은 창업도시(대전, 대구, 광주, 울산) 내 창업 및 지역 이전 수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기업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 발굴 및 유인체계 등 정책수단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창업기업 수는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 사업의 지원대상인 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창업도시의 경우에도 창업기업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업종별 창업기업수 추이]

(단위: 개)

구분	지역	2020	2021	2022	2023	2024 (A)	2025 (B)	전년대비 (B-A)	연평균 증감률
합계	계	1,484,667	1,417,973	1,317,479	1,238,617	1,182,905	1,135,561	△4.0	△4.4
	서울	309,896	276,758	249,175	230,141	218,106	219,138	0.5	△5.6
	부산	86,597	82,845	74,768	68,332	62,293	59,068	△5.2	△6.2
	인천	97,059	96,818	84,878	78,930	76,212	73,773	△3.2	△4.5
	대전	39,330	35,500	33,699	33,013	31,191	30,105	△3.5	△4.4
	대구	55,782	53,211	49,701	48,347	44,782	42,074	△6.0	△4.6
	광주	39,333	35,615	33,267	31,648	29,297	26,699	△8.9	△6.3
기술 기반 업종	울산	25,388	21,939	22,663	20,928	18,785	17,565	△6.5	△6.0
	계	228,949	239,620	229,416	221,436	214,917	221,063	2.9	△0.6
	서울	55,049	56,809	53,265	52,387	51,231	53,948	5.3	△0.3
	부산	11,211	11,367	11,305	11,521	10,688	10,987	2.8	0.3
	인천	11,377	11,935	12,051	12,751	12,740	13,704	7.6	3.2
	대전	5,336	5,391	5,207	5,410	5,283	5,626	6.5	0.9
	대구	7,917	8,015	7,678	8,164	7,826	7,833	0.1	△0.2
	광주	5,307	5,534	5,151	5,082	4,937	4,967	0.6	△1.1
	울산	3,733	3,533	3,702	3,822	3,359	3,541	5.4	△0.9

자료: KOSIS, 「창업기업동향」

2020~2025년 창업기업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구(△4.6%), 광주(△6.3%), 울산(△6.0%) 등 창업도시의 감소폭은 전국 평균(△

4.4%)보다 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술기반업종의 경우 전체적으로 감소 폭이 완만한 편이나, 광주($\Delta 1.1\%$), 울산($\Delta 0.9\%$) 등은 전국 평균($\Delta 0.6\%$)보다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존 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역별 수요 현황을 보면, 수도권의 경쟁률은 13.6:1 수준인 반면 비수도권은 11.6:1 수준으로 나타나, 창업 지원 수요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대전(9.5:1), 광주(8.1:1), 울산(9.9:1) 등 창업도시의 경쟁률은 전국 평균(12.8:1)보다 낮은 수준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창업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25 지역별 창업기업의 수요현황]

(단위: 개, %)

구분	신청기업 소재지	창업패키지 (예비·초기·도약)		
		신청기업 수	지원기업 수	경쟁률
수도권	서울	12,187	922	13.2 : 1
	경기	8,981	643	14.0 : 1
	인천	1,812	129	14.0 : 1
비수도권	부산	1,826	153	11.9 : 1
	대구	1,278	102	12.5 : 1
	광주	887	110	8.1 : 1
	대전	1,334	140	9.5 : 1
	울산	434	44	9.9 : 1
	세종	350	26	13.5 : 1
	강원	962	58	16.6 : 1
	충북	745	46	16.2 : 1
	충남	853	77	11.1 : 1
	전북	894	63	14.2 : 1
	전남	585	59	9.9 : 1
	경북	983	85	11.6 : 1
	경남	1,079	89	12.1 : 1
	제주	451	35	12.9 : 1
합 계		35,641	2,781	12.8 : 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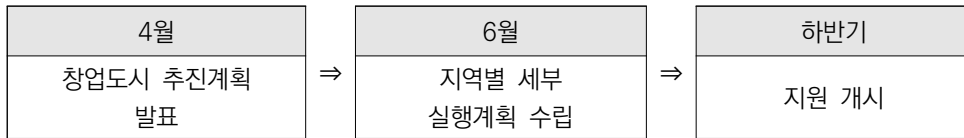
특히 동 사업은 특정 4개 창업도시에서의 창업 및 창업도시로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구조인바, 창업기업 기반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내 창업

수요와 수도권 등에서의 이전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유입 또는 창출 가능한 창업기업 풀(pool)의 규모에 대한 사전적인 수요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창업기업의 지역이전은 사업장 확보, 인력 운영, 기존 거래처 유지·조정, 정주여건 확보 등이 수반되는 의사결정으로서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 단기간 내 유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2026년 4월 추진계획 발표, 6월 세부 실행계획 수립, 하반기 지원 개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지역이전 창업기업의 모집·선정부터 이전 및 협약, 자금 집행까지의 절차를 연내에 완료하여야 하는 구조이다.

[2026년 추경예산 사업 집행 계획]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이 기업의 이전 제약 요인과 최근 창업기업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추경 편성 이후 연내 실제 이전을 전제로 한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는 데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제한된 기간 내 모집·선정 및 이전을 동시에 완료하여야 하는 사업 구조상, 지원대상 선정의 정밀성이 떨어지거나, 실질적 이전이 수반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단순한 재정지원 중심의 방식만으로는 창업기업의 지역이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지역으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이전 이후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창업패키지 사업 추진에 앞서 창업도시 내 창업 및 이전 수요에 대한 사전 검증을 면밀히 수행하고, 창업기업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 마련 및 정착 지원체계를 포함한 사업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추경으로 신규 편성되는 지역창업패키지 사업은 기존 창업패키지 사업과 비교하여 지원내용 및 대상범위 측면에서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충분한지 여부와 함께 기존 사업 내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 사업은 창업도시(대구·광주·대전·울산)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네트워킹 등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 창업패키지 사업과 동일하게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결합한 지원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사업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동 사업 내 창업패키지 및 지역창업패키지 사업의 비교]

구분	창업패키지 사업 (1,951억 8,700만원)	지역창업패키지 사업(신규) (510억 8,000만원)
사업 목적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지역 정착 지원
지원 대상	예비·초기·도약 단계 창업기업 (업력 7년 이내 중심)	창업도시(대전·대구·광주·울산) 소재 또는 수도권 등에서 이전한 창업기업 (업력 10년 이내)
지원 규모	가. 예비창업패키지 · 65.5백만원 x 750명 나. 초기창업패키지 · (일반) 72.3백만원 x 400개사 · (딥테크) 150백만원 x 146개사 · (투자연계) 72.3백만원 x 68개사 다. 창업도약패키지 · (일반) 145백만원 x 300개사 · (딥테크) 200백만원 x 110개사 · (투자연계) 145백만원 x 50개사 라. 특화창업패키지 · 글로벌 창업허브 운영비 17,460백만원	마. 지역창업패키지 (신규) · 지역성장 (신산업) 4개 도시 x 15개사 x 350백만원 (일반) 4개 도시 x 10개사 x 268백만원 · 지역이전 (신산업) 4개 도시 x 10개사 x 350백만원 (일반) 4개 도시 x 5개사 x 268백만원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및 창업 프로그램(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	
특이 사항	-	지방정부에서 창업기업 자기부담금 (총사업비의 30%)의 10% 보조

주 2026년 예산 편성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창업패키지 사업이 ‘비수도권 창업 활성화’라는 정책목적, 지방정부 주도의 운영방식, 지역이전 트랙을 포함한 지원대상 구성 측면에서 기존 창업패키지 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요소는 지원의 대상 및 운영 방식의 일부 변형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으며, 지원내용 자체가 기존 사업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수준의 구조적 차이를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기존 창업패키지 사업 또한 전국 단위로 운영되면서 비수도권의 지원기업이 약 40% 참여하고 있으며, 주관기관별 배분 및 경쟁률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 창업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는 기존 사업 내에서도 일정 부분 구현³⁾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5 지역별 창업기업의 수요현황]

(단위: 개, %)

구분	창업패키지 (예비·초기·도약)		
	신청기업 수	지원기업 수	경쟁률
수도권 소계 (서울·경기·인천)	22,980 (64.5)	1,694 (60.9)	13.6 : 1
비수도권 소계	12,661 (35.5)	1,087 (39.1)	11.6 : 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창업패키지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기 보다는, 기존 창업패키지 사업 내에서 공고 및 선정 절차를 일원화하여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지역 창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의 방식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창업중심대학 내역사업의 확대는 특정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유사 사업 간 지원이 증첩될 가능성이 있는바, 예산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창업중심대학 내역사업은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가형 대학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88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창업

3)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부터 기존 창업패키지 사업의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자기부담금 완화 조치를 도입하여, 초기·도약 단계 창업기업의 자기부담률(30%)을 비수도권의 경우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최대 10% 수준까지 차등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대전·대구·광주·울산) 소재 과학기술원(KAIST·GIST·UNIST·DGIST) 네 곳을 추가 지정하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40억원이 증액된 1,12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금번에 추가 지정된 4대 과학기술원은 이미 정부 출연금을 통해 창업 교육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교육부의 대학 창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도 일부 기관이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4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사업을 통해서도 해당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과학기술원에 대한 주요 창업 지원 사업]

구분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세부사업명	창업사업화지원 (1532-302)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2)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3)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4)	대학창업활성화 (2256-310)
내역사업명	창업중심대학	-	학생창업팀 육성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연간예산	(‘26) 88,250백만원 · (본예산) 11개교 · (추경) 4대 과기원 추가 (24,000백만원 증액)	(‘26) 660,343백만원 (추경) 63,800백만원 증액	(‘26) 3,614백만원 교당 평균 278백만원 · ‘23~’24 UNIST 지원 · ‘25~’26 KAIST 지원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및 기술개발, 투자유치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과학기술원별 창업원 신설·확대, 지역 특화분야 중심 딥테크 창업·교육 지원	실험실 창업 지원 : 22개 대학별 10개 실험실 지원 (인건비, 학생수당, 교육과정 운영비, 사업비 등)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특정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관련 재정사업이 다수 중첩되는 경우, 동일한 정책목표에 재정이 집중됨에 따라 타 분야에 배분될 수 있는 재원이 제약되는 한편, 유사한 지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재정투입 대비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중심대학 내역사업을 확대 추진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의 유사사업과 역할 분담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⁴⁾ 특정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 규모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과기원 내 학생·교원 등 실험실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기원의 창업원 신설·확대 등을 통해 권역 내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사업 간 목적·기능이 상이하며, 두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집행 효율성 제고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차.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상생형 제조AX선도모델)의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여부 및 추경예산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중소벤처기업부)**

(1) 현 황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¹⁾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IoT,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6년도 본예산은 4,020억 5,600만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제조혁신 인프라조성(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 내역사업 신규 편성(120억원) 및 제조혁신구축(대중소상생형-제조AX선도모델) 예산 증액(750억원)에 따라 870억원이 증액된 4,890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86,923	402,056	489,056	87,000	21.6
제조혁신구축지원	270,141	317,290	392,290	75,000	23.6
대중소상생형	34,000	40,000	115,000	75,000	187.5
일반	30,000	30,000	30,000	0	-
AI트랙	4,000	10,000	10,000	0	-
제조AX선도모델	-	-	75,000	75,000	순증
제조혁신 인프라 조성	13,782	12,126	12,126	0	-
스마트 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	-	-	12,000	12,000	순증
제조데이터생태계구축	3,000	8,140	8,140	0	-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	64,500	64,500	0	-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김지수 예산분석관(jskim05@assembly.go.kr, 6788-4630)

1) 코드: 일반회계 2111-303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 내역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DX·AX 전환에 필요한 운영인력과 제조 AI 솔루션 기업의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현장의 AI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2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동 내역사업은 스마트제조혁신 운영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매칭·공급하는 Track1과 제조 AI 솔루션 기업의 개발·운영을 지원할 미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Track2로 구성되어 교육·실습, 현장훈련(OJT) 및 인턴십 지원 등을 통해 실무형 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조혁신 구축지원 내역사업은 상생형 제조AX선도모델 사업 추진을 위해 7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공정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제조공정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기업 맞춤형 AX 전환을 지원하고, 대기업이 기술 도입 전 과정에 참여하여 공정 최적화, 첨단 AI 기술 적용, 재직자 교육 및 컨설팅 등을 병행하는 상생형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동 사업은 2025년 추경을 통해 도입된 상생형 AI트랙이 단일 공정 중심의 AI 적용을 지원하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공장 내 물류체계 및 밸류체인 전반에 복합적으로 AI 기술을 적용하는 전사적 AX 전환을 목표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총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5억원(총사업비 30억원, 정부지원 50%) 수준의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분석의견

첫째, ‘상생형 제조AX선도모델 사업’은 기존 상생형 AI트랙과 비교할 때 기능적 차별성보다는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한 성격이 강한 바,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기보다 기존 AI트랙 내에서 전사적 AX 전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생형 AI트랙 사업(사업비 10억원)은 단일 공정을 대상으로 데이터 인프라 구축, AI 모델 개발, 시스템 연계 및 일부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반면 상생형 제조AX선도모델 사업(사업비 30억원)은 복수 공정 및 밸류체인을 대상으로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밸류체인에 복합적 AI 기술 적용, 통합 플

랫폼 구축 및 자동화 설비 확대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산출내역을 비교할 때, 두 사업 모두 데이터 인프라 구축, AI 모델 개발, 시스템 통합, 자동화 설비 도입 등 구성 항목이 동일하며, 차이는 적용 공정 수 확대, 설비 규모 증가, 통합 플랫폼 추가 구축 등 지원 범위와 규모의 확장에 불과하다.

[대중소상생형 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구분	상생형 AI트랙 (사업비: 10억원)	상생형 제조AX선도모델 (사업비: 30억원)
산출 내역	· 데이터 인프라 및 센서구축 : 3억원 - 공정 설비 데이터 수집 센서 도입 : 0.05억원 × 20ea × 1개 공정 = 1억원 - IoT/PLC연계 및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 2억원 · AI모델 개발 및 적용 : 3억원 - 수요예측, 품질예측, 공정최적화 모델 개발 : 1개 × 2억 = 2억원 - 모델 학습·튜닝 및 현장 적용 : 1.0억원 · 시스템 통합 : 2억원 - MES/ERP 등 기존 시스템 연계 : 1억원 - API 및 운영환경 구축 : 1억원 · 로봇 및 자동화설비 도입 : 2억원 - 공정 자동화 로봇 도입 : 2억원 × 1샤= 2억원	· 데이터 인프라 및 센서구축 : 9억원 - 공정 설비 데이터 수집 센서 도입 : 0.05억원 × 20ea × 3개 공정 = 3억원 - IoT/PLC연계 및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 4억원 - (추가) 데이터 수집·정제 환경 구축(설비DX화) : 2억원 × 2식 = 2억원 * 데이터 수집이 되지 않는 장비의 디지털 전환 지원 · AI모델 개발 및 적용 : 7.5억원 - (확대) 수요예측, 품질예측, 공정최적화 모델 개발 : 3개 × 2억 = 6억원 * 복수의 공정에 AI 모델 적용 - (확대) 모델 학습·튜닝 및 현장 적용 : 1.5억원 · 시스템 통합 : 6억원 - MES/ERP 등 기존 시스템 연계 : 1억원 - (추가) 데이터 AI 통합 플랫폼 구축 : 4억원 - API 및 운영환경 구축 : 1억원 * 데이터 저장 및 클라우드 인프라 별도 소요 · 로봇 및 자동화설비 도입 : 7.5억원 - (확대) 공정 자동화 로봇 도입 : 2억원 × 2샤= 4억원 - (추가) 물류 이송 자동화 설비 : 0.5억원 × 4샤= 2억원 - (추가) 머신비전 검사 시스템 : 1.5억원 × 1샤= 2억원 * 공장규모, 적용AI기술, 통합 공정 등에 따라 항목별 금액 상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즉, 상생형 제조AX선도모델 사업은 기존 AI트랙 사업의 기능을 전사적 수준으로 확대한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지원 방식이라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고도화·대형화된 형태로 보여진다.

또한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내에서는 AI트랙을 통한 공정 단위 AI 적용, 제조 DX 멘토단을 통한 구축 방향 설정 및 운영 지원, 제조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AX 전환에 필요한 주요 기능이 이미 분산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금번 추경을 통해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 사업’까지 신규 편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사업 간 연계를 통한 단계적 고도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사적 AX 모델이 지향하는 수준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형 제조AX선도모델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기보다 기존 AI트랙 내에서 전사적 AX 전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생형 제조AX선도모델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분담비율 증가 및 사업 난이도 상승에 따른 참여 부담이 존재하며, 추경예산의 특성상 사업 공고, 참여기업 선정 및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한 규모로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상생형 제조AX선도모델 사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제조공정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공정 최적화 및 전사적 AX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5억원(총사업비 30억원, 정부지원 50%)까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의 참여기업 수를 50개사로 산정하면서, 과거 대기업 계열 공급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에 참여한 실적이 13개 기업에서 129건이라는 점, 그리고 참여 이력이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약 10개 내외 대기업이 협력회사 5~10개사와 협업할 경우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대중소상생형 사업 지원 내용]

구분	상생형 일반	상생형 AI트랙	(추경) 상생형 제조AX선도모델
구축범위 및 기술	기초~고도화단계	단일공장작업을 위한 설비 및 시스템을 중심으로 AI 적용	여러 공정·밸류체인에 전사적 AI 적용
지원조건	최대 1.2억원, 9개월 이내	최대 5억원, 9개월 이내	최대 15억원, 1년 이내
예산편성 산출내역	250개사×4억원×30% = 300억원	20개사×10억원×50% = 100억원	50개사×30억원×50% = 750억원
기업별 사업비	4억원	10억원	30억원
분담비율(%) (정부:대기업: 도입기업)	30:30:40	50:20:30	50:10:40
대기업 역할	솔루션 제공, 재정 분담		재정·기술·데이터 지원 (구축방향 설정부터 구축과정 및 구축 후 운영까지 전과정 지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러한 산정 방식은 과거 스마트공장 구축 참여 실적을 단순 확장하여 적용한 것으로, 금번 사업과 같이 공장 내 물류체계 및 밸류체인 전반에 AI 기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전사적 AX 수준의 고난도 사업에 대한 실제 신청 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2025년 기준 대중소상생형 전체 사업의 경쟁률은 1.6:1 수준에 그쳤으며, 같은 해 2차 추경을 통해 도입된 상생형 AI트랙 또한 지원목표 8개사에 신청 10개사, 협약 9개사로 경쟁률이 1.1:1 수준에 머무르는 등 수요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5년 추경을 통해 처음 도입된 AI트랙 사업의 실제 참여 규모가 10개사 내외에 그친 상황에서, 2026년 예산안에서도 지원 규모를 20개사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전사적 AX 선도모델 사업을 통해 50개 기업을 신규로 선정·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사업의 수요 및 집행 실적과 비교할 때 과도한 목표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경쟁률(2025년 기준)]

사업명	지원목표	신청 기업수	협약체결	경쟁률
정부일반형	625	1,536	725	2.1 : 1
자율형공장	20	42	20	2.1 : 1
자율형 AI트랙	100	498	100	5.0 : 1
대중소상생형	250	655	422	1.6 : 1
상생형 AI트랙	8	10	9	1.1 : 1
디지털협업공장	30	68	33	2.1 : 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동 사업은 기업당 총사업비가 30억원 수준으로 기존 AI트랙(10억원) 대비 3배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총 7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단기간 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실제 수요 및 집행 여건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동 사업은 도입기업(중소·중견기업)의 부담비율이 40%로 확대되어 총사업비 30억원 기준 최대 12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구조인 바, 이는 도입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신청 수요 확보를 더욱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제출된 추정 사업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4월 중 공고, 5월까지 대기업 신청접수, 6월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7~8월 도입기업 모집·선정 이후 실제 사업 수행은 9월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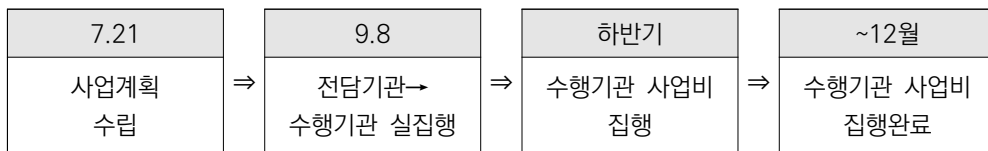
[2026년 추경예산 상생형 제조 AX 선도모델 사업 추진계획]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2025년 2차 추경으로 편성된 AI트랙의 경우에도 7월 사업계획 수립 이후 9월 대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10~11월 도입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사업이 수행되는 등 실제 사업 수행 기간이 제한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 이러한 선행 사례 및 금번 사업의 추진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경 편성 이후 연내에 실질적인 사업 수행과 집행 성과를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일정상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25년도 추경예산 AI트랙 사업 추진일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고 이후 기업 모집·선정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수시모집 및 선착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집행 절차의 단축을 통한 형식적 집행을 제고에 초점을 둔 조치로서 실제 사업 수행의 충실성 및 성과 창출 가능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전사적 AX 전환을 목표로 하는 고난도 사업으로 단기간 내 구축 완료 및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 실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형 제조AX선도모델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실제 사업 수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원규모 및 예산 편성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카. 중소기업 모태펀드 기존 자펀드 운용 재원 투자 여력 검토 필요(중소벤처기업부)

(1) 현 황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¹⁾은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의 결성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8,200억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창업기업, 지역기업, 재도전기업을 등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1,700억원이 증액된 9,900억원이 편성되었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수정 ¹⁾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800,000	820,000	990,000	170,000	20.7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운용)는 2005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11조 3,313억원의 규모로 결성되어 1,446개 48조 6,39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였으며, 11,526개 창업·벤처기업에 36조 6,767억원을 투자하였고, 그 중 335개 9조 9,082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청산하여 3조 2,589억원을 모태펀드로 배분하였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출자금 8,200억원은 NEXT UNICORN PROJECT 4,000억원, 지역 2,000억원, 재도약 300억원, 글로벌 500억원 등에 출자할 계획으로 편성되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열풍 펀드를 신설하고 지역 펀드와 재도전 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신규 출자금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반영한 것이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5264-301

[2026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계획 및 계획변경안 편성 내역]

(본예산) 2026 기금운용계획	(추경안) 2026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NEXT UNICORN PROJECT 400,000백만원 - 지역 200,000백만원 - 재도약 30,000백만원 - 글로벌 50,000백만원 - LP플랫폼 50,000백만원 - 창업초기 20,000백만원 - 회수활성화 30,000백만원 - 청년창업 20,000백만원 - 임팩트 10,000백만원 - 여성기업 10,000백만원	- 창업초기 30,000백만원 확대 - 지역 120,000백만원 확대 - 재도전 20,000백만원 확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열풍 펀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중심으로 로컬창업, 스타트업 기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해당 펀드로 결성한 투자 재원은 업력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 창업초기 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되, 스타트업 열풍 창업 기업에 20% 투자할 계획이다.

[창업열풍 펀드 개요]

구 분	창업열풍 펀드
투자 대상	초기 창업 기업, 로컬창업 기업 등
펀드 조성 기간	2026년
재정 출자 규모	300억원 이상 (추경 300억원)
총 자펀드 조성 규모	500억원 이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성장펀드는 지방정부, 금융기관, 대학 등 지역 투자금을 모집하여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역성장펀드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5년 내 최소 1개 이상 펀드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2026년 조성 지역으로 선정된 4개 지역 모펀드 외 다른 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모펀드를 연내 추가 조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반영되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모펀드 총 2조원, 자펀드 총 3.5조원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성장펀드 개요]

구 분	창업열풍 펀드
투자 대상	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펀드 조성 기간	2026~2030
연간 재정 출자 규모	2,300억원 이상 (추경 1,200억원)
연간 모펀드 조성 규모	4,000억원 이상 (5년간 총 2조원)
총 자펀드 조성 규모	3.5조원 이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펀드는 기술성·사업성을 갖춘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전용 벤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투자 대상은 폐업 이력 보유자가 재창업한 기업, 정부·지자체 재도전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2025년 12월 기준 3,380억원을 출자하여 5,073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3,901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재도전 펀드 개요]

구 분	창업열풍 펀드
투자 대상	폐업 이력 보유 재창업 기업 등
펀드 조성 기간	2026~2030
연간 재정 출자 규모	1,200억원 이상 (추경 200억원)
연간 모태펀드 출자 규모	1,200억원 이상 (5년간 총 6,000억원)
총 자펀드 조성 규모	1조원 이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분석의견

첫째, 기존 출자금을 통해 조성한 자펀드의 투자 여력이 상당 규모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펀드 결성 실적과 투자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펀드 확대를 위한 추가 출자의 시급성과 규모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기업, 지역 스타트업 기업, 재도전 기업 등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펀드를 출시하거나 펀드 운용 규모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취지 자체는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펀드 운용 규모 확대 필요성과 정부 출자금 추가 편성의 시급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획액을 활용하여 운용되고 있는 펀드 조성 실적과 투자 현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연도별 계획 편성에 따른 펀드 결성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편성된 계획액 3,135억원으로 34개 자펀드에 대한 총 1조 4,106억원의 투자 재원을 조성하였으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8,514억원의 투자가 집행되어 4,007억원의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²⁾

2024년 계획액 4,540억원으로 결성한 자펀드는 66개로 총 운용규모는 1조 9,406억원이며, 이 중 7,010억원이 투자되어 1조 454억원의 투자 재원이 유보되어 있고, 2025년 계획액 8,000억원으로는 현재까지 69개 자펀드를 결성하여 2조 6,373억원을 투자 재원을 조성하였으나, 투자 집행액은 1,546억원에 불과하여 2조 2,170억원의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2) 투자 여력은 조합운용비용 등 행정비용을 제외한 수치임

[연도별 계획 편성에 따른 자펀드 결성 및 투자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계획액	자펀드 신규 결성 갯수			자펀드 운용 규모	연도별 자펀드 투자 현황				
						투자회사 수				
						투자규모				
		신청	선정	결성		'23	'24	'25	'26.1.	계
2023	3,135	186	38	34	14,106	26	339	330	23	718
						331	4,057	4,127	277	8,514
2024	4,540	264	67	66	19,406	-	162	567	46	775
						-	1,368	5,169	473	7,010
2025	8,000	329	71	69	26,373	-	-	111	22	133
						-	-	1,106	440	1,546
2026	8,200	2026년 4월말 자펀드 운용사 선정 예정								

- 주: 1. 당해연도 예산 및 자펀드 청산·회수를 통한 재투자분 등을 포함하여 신규 결성된 자펀드 기준, 단, 한국벤처투자 운용 펀드 제외
2. 2026. 1월 31일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반영된 창업열풍 펀드, 지역성장 펀드, 재도전 펀드가 각각 포함되는 모태펀드 내 계정별 투자 현황을 살펴봐도 기존 계획액으로 조성한 자펀드 운용 재원의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확인된다.

창업열풍 펀드가 포함될 혁신모험 계정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9,877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 집행액은 4,388억원에 불과하며, 지역성장 펀드가 포함되어 있는 지방 계정은 2024년 1,027억원의 자펀드를 결성하여 393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재도전 펀드가 포함되어 있는 중진 계정은 NEXT UNICORN PROJECT, 임팩트, M&A 등의 분야에서 최근 3년간 4조 4,512억원을 조성하였으나 투자 집행액은 9,951억원으로 3조원 이상의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모태펀드 내 혁신모험·지방·중진 계정 자펀드 운용 및 투자 현황]

(단위: 억원)

계정명	연도	자펀드 운용 규모	연도별 자펀드 투자 현황			
			2023	2024	2025	계
혁신 모험	2023	5,889	98	1,733	1,735	3,565
	2024	1,605	-	136	443	579
	2025	2,383	-	-	244	244
소계		9,877	98	1,869	2,422	4,388
지방	2024	1,027	-	132	261	393
중진	2023	6,621	60	1,951	1,983	3,994
	2024	14,769	-	848	3,864	4,712
	2025	23,122	-	-	817	817
소계		44,512	60	2,931	6,108	9,099

- 주: 1. 당해연도 예산 및 자펀드 청산·회수를 통한 재투자분 등을 포함하여 신규 결성된 자펀드 기준, 단, 한국벤처투자 운용 펀드 제외
2. 2026. 1월 31일 기준

한편, 현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2026년 기금운용계획에도 모태펀드 내 자펀드 결성을 위한 출자금 8,2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26년 3월 기준 아직 자펀드 운용사 선정조차 완료되지 않아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포함된 창업열풍 펀드, 지역성장 펀드, 재도전 펀드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내 기존 자펀드인 지역 펀드, 재도전 펀드, 창업초기 펀드, 청년창업 펀드 등과 지원 대상 측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외환경 변화 및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경기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창업여건 악화와 폐업 증가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투자 수요를 적시에 충족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창업 열풍 펀드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³⁾가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프로젝트 참여기업 중심의 투자가 필요하며, 지역성장펀드의 경우 2026년 조성지역으로 선정된 4개 지역 모펀드 외에 다른 지역에 증점 투자하는 모펀드를 연내 추가 조성함으로써 지역 벤처투자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도전 분야의 경우 매년 모태펀드 출자 요청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추

3) 창업 기본코칭, 창업 실천코칭, 파인널 오디션 등의 단계별로 멘토링 제공, 경영 개최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려는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 내용에는 창업활동자금, 사업화자금, 경영 상금 등도 포함된다.

가적인 출자금 편성의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펀드 방식의 지원 사업은 정부 출자 집행을 바탕으로 기존 자펀드 청산 회수재원과 정책자금 등으로 모태펀드 내 자펀드 출자 재원을 마련하고,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 후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 재원을 조성해야 하는 운용 절차로 인해 재정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제 투자 시점까지 상당한 정책시차가 존재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연도 출자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활용한 투자가 곧바로 완료되지 않고 다년간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에 펀드 운용 규모 확대를 위한 신규 출자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기존 펀드의 투자 여력을 활용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새로운 펀드를 조성하거나 지역기업 또는 재도전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 운용 규모를 확대하려는 취지는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기존에 집행된 출자금으로 결성한 자펀드에 해당 분야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운용 재원이 상당 규모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펀드 조성 사업은 정책시차로 인해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액에 편성된 출자금을 통한 자펀드 결성조차 완료되지 않은 모태펀드에 신규 출자금을 편성하는 것이 신속한 정책효과를 기대하는 추경 편성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재정 운용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이미 교부된 출자금을 통한 펀드 결성 실적과 투자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펀드 운용 규모 확대를 위한 신규 출자의 시급성과 출자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모태펀드 출자금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감액 의결되었는데, 감액 사유인 미투자액 현황과 일반회계 전입 규모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회가 감액 결정한 사업의 예산을 다시 확대하는 것이 적정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의 출자금 규모를 1조 1,00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모태펀드 내 미투자 금액이 상당 규모 존재하고,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운용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동 사업 출자금 규모를 2,800억원 감액 의결하여 8,200억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심의결과	2026 국회 확정예산	감액 사유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1,100,000	△280,000	820,000	미투자액 및 일반회계전입금 부담에 따라 조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실제로,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미투자액 현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모태펀드 출자금이 편성되는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지출 대비 수입 부족분 충당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6년의 경우 1조 8,519억원이 편성되었다.

[연도별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일반회계전입 규모]

(단위: 백만원)

연도	당초	수정	집행액
2022	1,181,963	1,181,963	1,181,963
2023	1,164,214	1,164,214	1,164,214
2024	1,524,368	1,524,368	1,444,384
2025	1,457,941	1,792,941	1,792,941
2026	1,851,937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설명자료

즉,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감액 사유인 미투자액 현황과 일반회계 전입 의존도가 여전하며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로부터 감액 결정된 출자금의 집행을 통한 자펀드 결성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동 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증액

편성해 온 것인데, 이는 국회 예산안 심사 취지를 우회하는 재정 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물론 본예산 편성 이후 중동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펀드 운용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었겠으나, 본예산에 대한 국회 감액 결정 사유가 전혀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출자금을 편성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 사업에 편성된 모태펀드 출자금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감액되었다는 점, 감액된 출자금을 활용한 자펀드 결성도 아직 완료되지 못했다는 점, 살펴본 바와 같이 감액 결정 사유인 미투자액과 일반회계 전입 규모가 여전히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경안을 통한 사업 확대가 적정한지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자체 보증여력 우선 검토 필요(중소벤처기업부)

(1) 현 황

신용보증기금출연¹⁾ 및 기술보증기금출연 사업²⁾은 담보능력이 취약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으로 각 보증기관의 기본재산을 보강해주는 출연 사업이다.

2026년 본예산은 신용보증기금출연 800억원, 기술보증기금출연 6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각각 1,000억원 증액되어 신용보증기금출연 1,800억원, 기술보증기금 1,600억원이 편성되었다.

[신용보증기금출연 및 기술보증기금출연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신용보증기금출연	100,000	80,000	180,000	100,000	125.0
기술보증기금출연	110,000	60,000	160,000	100,000	166.7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먼저, 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에 추가로 편성된 1,000억원은 ‘위기대응 특례보증’ 확대 운용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재난 등 위기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보증을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당시 관세 피해 또는 내수 침체 등으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을 기본 지원대상으로 설정하면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추어 지원대상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번 추경안을 통해 중동전쟁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1231-881

2) 코드: 일반회계 1231-882

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이다. 위기 대응 특례보증은 2025년 추경을 통해 투입된 정부재정 출연금 1,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 자체 재원 1,400억원을 활용하여 총 3.0조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으로 운용되고 있는데,³⁾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정부재정 출연금 1,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 자체 재원 1,000억원을 더하여 보증공급 규모를 5.5조원(2.5조원 추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 위기대응 특례보증 사업 개요 및 출연 현황]

구 분	2025년 제1회 추경	2026년 제1회 추경안
지원대상	관세 피해 기업 산업위기대응지역 피해기업 산불·수해 등 재난지역 피해기업	기존 지원대상 + 중동 상황 피해기업
보증재원	정부 재정 출연 1,000억원 + 신보 자체 재원 1,400억원 = 총 2,400억원	정부 재정 출연 1,000억원 + 신보 자체 재원 1,000억원 = 총 2,000억원
목표 보증규모	3.0조원 (운용배수 12.5)	2.5조원 (운용배수 12.5)
보증비율	90% (통상 85% 대비 우대)	
보증료율	최대 0.5%p 우대 (통상 보증료율 1% 이상)	
보증한도	5억원 (통상 3억원 대비 상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음으로, 기술보증기금출연 사업에 추가로 편성된 1,000억원은 ‘중동전쟁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신규로 출시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2025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위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상품을 신규로 출시 하였으나, 내부 규정을 통해 해당 상품의 지원대상을 통상환경 변화로 직·간접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한정하여 운용함에 따라 이번 추경안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직·간접피해기업을 보증하기 위한 신규 보증상품을 출시하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제출한 ‘중동전쟁 피해기업 특례보증(안)’에 따르면,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피해기업, 원자재 수급 차질 기업,

3) 2026년 본예산에는 위기대응 특례보증 공급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경영애로기업(간접위기기업)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술보증기금 자체 재원 없이 정부 출연금 1,000억원을 활용하여 1.2조원의 보증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중동전쟁 피해기업 특례보증(안)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중동 직접 수출기업		중동산 원유 공급망 피해 원자재 수요기업		중동전쟁 등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중동수출 비중 30% 이상	중동수출 비중 30% 미만	1차 연관 산업 (석유, 화학제품 등)	2차 연관 산업 (플라스틱 등)	
보증비율	100%	95%	100%	95%	90%
보증료율	0.4%p 우대	0.3%p 우대	0.4%p 우대	0.3%p 우대	0.2%p 우대
산정특례	기업당 3억원	기업당 2억원	기업당 3억원	기업당 2억원	-
보증재원	정부 재정 출연 1,000억원				
목표 보증규모	1.2조원				

자료: 기술보증기금

(2) 분석의견

중동전쟁 피해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규모 확대는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추경안에 편성된 신용보증기금출연 및 기술보증기금출연 사업은 각 기관의 원활한 보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보강해주는 성격의 사업이므로,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현재 각 기관의 기본재산 및 보증잔액 등의 운용현황을 바탕으로 기관 자체 재원을 활용한 추가적인 보증여력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중동 상황 피해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동 사업에 편성된 출연금은 피해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원활한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기본재산을 충당해주는 것이므로,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기존 상품의 보증현황과 각 기관의 보증여력 등을 점검하여 출연 규모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각 기관이 2025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신규로 출시한 위기기업 대상 보증사업의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의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추경으로 편성한 정부 출연금 1,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 자체 재원 1,400억원을 더한 2,400억원의 보증재원으로 3조원의 보증공급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2025년말 기준 1조 5,927억원을 공급하였고, 2026년 3월 기준으로는 1조 9,818억원을 공급하여 당초 목표 대비 약 1조원 정도의 추가 보증이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기술보증기금의 통상환경변화대응을 위한 위기극복 특례보증의 경우 2025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편성한 정부 출연금 700억원과 기술보증기금 자체 재원 260억원으로 총 1.2조원의 보증공급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당초 목표한 규모의 보증공급이 이미 완료되었다.

[2025년도 추경으로 신설된 위기기업 대상 보증상품 보증공급 현황]

구분	보증 재원	보증공급 목표	보증공급 실적	추가 보증 여력
신용보증기금 위기대응 특례보증	2,400억원	3.0조원	1조 9,818억원	1조 812억원
기술보증기금 통상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위기극복 특례보증	960억원	1.2조원	1.2조원	없음

주: 2026년 3월말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위와 같이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변화로 피해를 입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보증상품의 재원으로 공급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증여력은 약 1조원 정도인 상황이므로, 향후 중동 상황 장기화 여부와 그에 따른 피해 확대 가능성 등에 따라 추가적인 보증공급 규모 확대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보증공급 규모 확대를 위한 정부 재정 출연금의 추가적인 편성 필요성 및 적정 출연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기본재산, 보증잔액, 운용배수 등을 바탕으로 기관 자체 재원을 우선 활용한 보증여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재정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 등으로 구성된 기본재산을 보증재원과 대위변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보증기금법」은 각 기금의 보증한도를 기본재산의 20배로 규정하고 있다.⁴⁾⁵⁾

먼저, 신용보증기금의 2025년말 기준 계정별 운용배수를 살펴보면, 일반보증 8.2배, 유동화보증 2.4배, 소상공인위탁보증 3.5배, 저금리대환보증 3.9배, 위기대응 특례보증 6.8배로 모두 10배 이내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계정별 운용현황]

(단위: 억원, 배)

구분	보증잔액(A)	기본재산(B)	운용배수(A/B)
일반보증	624,030	76,008	8.2
유동화보증	118,277	49,549	2.4
소상공인위탁보증	7,847	2,219	3.5
저금리대환보증	12,149	3,142	3.9
위기대응 특례보증	14,483	2,125	6.8

주: 2025년말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또한, 위기대응 특례보증 확대를 위한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소요 재원 2,000억원 중 정부 출연금 1,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억원을 일반보증 계정의 기본재산에서 충당하게 되는데, 2025년말 기준 일반보증 계정의 기본재산은 7조 6,008억원으로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신용보증기금법」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술보증기금법」

제31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5년간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 계정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구분	보증잔액(A)	기본재산(B)	운용배수(A/B)
2021	591,461	63,004	9.4
2022	613,961	71,351	8.6
2023	618,214	75,533	8.2
2024	624,973	75,451	8.3
2025	624,030	76,008	8.2

주: 2025년말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한편, 정부 출연 여부에 따른 일반보증 계정의 운용배수 예측치를 비교해 보면, 목표 보증공급을 위한 소요 재원 2,000억원 중 일반보증 계정의 기본재산에서 정부 재정 출연금 1,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억원만을 충당하는 경우 운용배수는 8.8배, 정부 출연 없이 소요 재원 2,000억원을 모두 일반보증 계정 기본재산에서 충당하는 경우 운용배수는 9.0배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위기대응 특례보증 공급 규모 확대 시 운용배수 예측]

(단위: 배)

구분	정부 재정 1,000억원 출연 (기금 재원 1,000억원 활용)	정부 출연 없이 기금 자체 재원 2,000억원 활용
운용배수 예측치	8.8	9.0

자료: 신용보증기금

다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의 2025년말 기준 계정별 운용배수는 기술보증계정 9.8배, 유동화회사보증계정 17.3배로 나타났는데, 이번 추경안을 통해 출시할 예정인 중동전쟁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3조 659억원 규모의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술보증계정 내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 계정별 운용현황]

(단위: 억원, 배)

구분	보증잔액(A)	기본재산(B)	운용배수(A/B)
기술보증	299,242	30,659	9.8
유동화회사보증	12,356	716	17.3

주: 2025년말 기준

자료: 기술보증기금

또한, 현재 추경안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자체 재원 없이 정부 출연금 1,000억원만으로 신규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인데, 신규 보증공급에 따른 기술보증계정의 운용배수는 계획대로 정부 재정이 전액 부담할 경우 10.9배, 정부 재정 출연 없이 기술보증기금 자체 재원만을 활용할 경우 11.3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동전쟁 피해기업 특례보증 신설 시 운용배수 예측]

(단위: 배)

구분	정부 재정 1,000억원 출연 (기금 재원 미활용)	정부 출연 없이 기금 자체 재원 1,000억원 활용
운용배수	10.9	11.3

자료: 기술보증기금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 계정과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계정은 충분한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운용배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재정 출연 여부에 따른 운용배수 변동폭 또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만큼 큰 차이를 보인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중동상황이 일시적인 충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중동전쟁의 직·간접적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으로까지 유동성 제약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기업에 대한 보증여력을 충분히 유지하기 위한 정부 재정 출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경 편성의 취지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신속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보강해주기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은 피해기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보증기관의 장기적인 보증여력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사용됨에 따라 기회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동전쟁 피해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증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며, 2025년 제1회 추경으로 신규 편성한 위기 기업 대상 보증 재원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는 보증여력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증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과 운용현황 등이 안정적인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각 기관의 기본재산 보강을 위한 재정 출연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공급 소요 재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향후 피해상황 장기화 여부, 보증공급 확대와 사고 발생 증가에 따른 각 기관의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변동 추이 등을 점검하여 차년도 본예산 등을 통해 출연금을 편성한다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다 신속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정책적 고려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각 기관의 기본재산 및 보증잔액 등의 운용현황과 자체 재원을 활용한 추가적인 보증여력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동 사업에 편성된 출연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 중소기업·소상공인 용자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대출 공급 필요(중소벤처기업부)

(1) 현 황

중소기업 용자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용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 기준 신성장기반자금(용자) 사업¹⁾,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사업²⁾, 신시장진출지원자금(용자) 사업³⁾, 밸류체인안정화자금(용자) 사업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용자) 사업⁵⁾ 및 재도약지원자금(용자) 사업⁶⁾ 등 총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액은 총 4조 657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중동전쟁으로 인한 환율유가 변동 등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사업 및 신시장진출지원자금(용자) 사업에 대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편성되었고,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관계부처합동, 2025.12.)에 따라 창업 초기기업 및 성실실패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용자) 사업 및 재도약지원자금(용자) 사업에 대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편성되었다.

그 결과 4개의 세부사업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액 2조 7,846억 7,800만원 대비 5,500억원이 증액된 3조 3,346억 7,800만원이다.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261-301

2) 코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261-302

3) 코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261-303

4) 코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261-307

5) 코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5152-301

6) 코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5161-301

[중소기업 융자 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수정 ¹⁾	2026		증 감		변경사유
		당초(A)	변경안(B)	(B-A)	(B-A)/A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311,110	1,081,110	1,081,110	-	-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550,000	250,000	500,000	250,000	100.0	중동전쟁 피해지원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중소기업	550,000	250,000	500,000	250,000	1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482,450	316,378	416,378	100,000	31.6	
수출기업 글로벌화	282,500	216,400	316,400	100,000	46.2	
밸류체인안정화자금(융자)	200,000	200,000	200,000	-	-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1,835,800	1,605,800	1,755,800	150,000	9.3	창업·재기 지원
창업기반지원	1,535,800	1,305,800	1,455,800	150,000	11.5	
제도약지원자금(융자)	750,100	612,500	662,500	50,000	8.2	
재창업자금	200,000	100,000	150,000	50,000	50.0	
계	5,129,460	4,065,788	4,615,788	550,000	13.5	-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편성된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①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중동지역 지정학 리스크가 장기화됨에 따른 환율유가 변동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500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② ‘수출기업 글로벌화’ 사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중동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편성되었다.

③ ‘창업기반지원’ 사업은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AI, 초격차 분야 등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 강화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500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④ ‘재창업자금’ 사업은 재창업 신청요건 충족 기업 또는 재창업 준비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재도전 및 성실실패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소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한편,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 기준 3조 3,62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중동전쟁에 의한 유가 변동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침체지역, 재해, 금융소외계층 등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특별경영안정자금⁷⁾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생겼고, 동 사업의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1조 3,500억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3,200억원이 증액된 1조 6,700억원이 편성되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수정 ¹⁾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소상공인지원(융자)	4,220,000	3,362,000	3,682,000	320,000	9.5
특별경영안정자금	1,790,000	1,350,000	1,670,000	320,000	23.7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내내역사업 기준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자금) 사업에 700억원,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사업에 1,000억원, 청년고용연계자금 사업에 1,500억원 등 총 3,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편성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사업의 융자 유형별 지원대상과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51-301의 내역사업

[중소기업 융자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세부 유형	지원대상	지원 내용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중소기업 지원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기준금리 + 0.5%p	10억 (3년간 15억)	운전 : 5(2)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최근 1년) 중소기업	기준금리/ 고정금리	연간 10억 내	운전 : 5(2)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최근 1년) 중소기업	기준금리	30억원 (운전 10억원)	시설 : 10(4) 운전 : 5(2)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창업기반지원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기준금리 - 0.3%p	60억원 (운전 5억원)	시설 : 10(4) 운전 : 5(2)
개발기술 사업화	특허·실용신안, 정부 R&D 개발기술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기준금리	30억원 (운전 5억원)	시설 : 10(4) 운전 : 5(2)
재도약지원자금(융자)				
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재편) 계획 승인기업, 통상변화대응지원 지정기업	기준금리	100억원 (운전 5억원)	시설 : 10(5) 운전 : 6(3)
재창업자금	재창업 신청요건 충족 기업 또는 재창업 준비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기준금리	60억원 (운전 5억원)	시설 : 10(4) 운전 : 6(3)
구조개선 전용자금	구조개선이 필요한 재무 위기 기업, 회생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진행기업 등	기준금리 (선제적자율 구조 : 2.5%)	60억원 (운전 10억원)	시설 : 10(4) 운전 : 5(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세부 유형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세부 유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특별경영안정자금	-	
신용취약자금	중·저신용 소상공인	○ 3천만원 한도 ○ 기준금리+1.6%p* *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회복 시 금리 0.5%p 인하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대환대출(대리)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①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②은행권의 만기연장 애로 대출	○ 5천만원 한도 ○ 고정금리 4.5% ○ 대출기간 - 비거치형 10년/거치형 10년(거치기간 2년)
긴급경영안정자금(대리**)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 채납처분 유예기업은 직접대출	○ 1억원 한도 ○ 고정금리 2.0%* *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금리·한도·기간 우대 가능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영세·창업 소상공인(연대출 1.04억원 미만+업력 7년 미만)은 직접대출	○ 7천만원 한도 ○ 기준금리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재도전특별자금	①(일반형) 재창업·재도전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 7천만원 한도 ○ 기준금리+1.6%p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②(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기업	○ 1억원 한도 ○ 기준금리+0.6%p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③(도약형) 성장유망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2억원 한도 ○ 기준금리+0.4%p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장애인기업지원자금(대리)	장애인기업	○ 1억원 한도 ○ 고정금리 2.0% ○ 대출기간 7년(거치기간 2년)
청년고용연계자금(대리)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 7천만원 한도 ○ 기준금리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기본계획」, 2025.12.

(2) 분석의견

첫째,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사업 및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용자)의 경우 중동전쟁 피해 등으로 자금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시에 안정적인 대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환율·유가·원자재 비용 상승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사업과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용자) 사업에 대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였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사업의 연도별 신규대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의 신규대출액은 2019년 대비 525%가 증가한 1조 3,000억원을 기록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수차례 추진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에 따라 2020년~2024년 동안은 신규대출액이 매년 감소하다가 대출 만기연장 효과가 사실상 종료된 2025년⁸⁾의 신규대출액은 2024년 대비 134%가 증가한 5,500억원을 기록하였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사업의 연도별 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신규대출액	208,000	1,300,000	800,000	360,000	258,900	235,000	550,000
전년대비 증가율	-	525.0	△38.5	△55.0	△28.1	△9.2	134.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는 자연·사회재난과 정책 등 대외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 관세정책의 보호무역주의로의 변화, 2026년 2월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전쟁 등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애로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용자 확대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8) 2022년 9월에 발표된 대출 만기연장 조치 기준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최대 1년간 상환유예가 추가지원되었다.

2025년 12월~2026년 2월 제시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상 일시적경영애로 융자의 경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직전연도·반기·분기·월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대상 일시적경영애로 융자의 경우 매출액이 직전연도·반기·분기·월대비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시적경영애로 사업별 지원요건]

대출 유형	지원요건
중소기업 대상 일시적경영애로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사유’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②)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① ‘경영애로 사유’ -보호무역피해/ 환율피해/ 대형사고/ 대기업 구조조정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등/ 한·중 FTA 지원업종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화학안전 법령 이행/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원전 협력 중소기업/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소재 중소기업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위메프 등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 ‘경영애로 규모’ 직전연도·반기·분기·월별 비교를 통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적용 예외) -환율 피해 또는 보호무역 피해기업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기업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원전 협력 중소기업 -대우위니아 그룹 계열사 회생 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③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대출 유형	지원요건
소상공인 대상 일시적 경영애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연도,반기,분기,월별) 비교를 통해 매출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매출감소 확인 예외) ①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⑤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⑥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5.12.22.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정공고」, 2026.2.27.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환율 피해 또는 보호무역 피해기업’ 등에 대해 피해규모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 피해규모 요건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현재 제시된 공고는 중동전쟁 전에 게시되었기 때문에 공고상으로는 피해규모 요건 미적용 대상에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급등, 물류비 상승 및 운송 차질, 계약 취소, 대금 미결제 등으로 인한 피해 등 중동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중동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기존 공고상의 지원요건을 경직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일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요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 및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사업의 경우 대출 부실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부실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사업의 경우 신규대출액이 2020년 1조 3,000억원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4년 2,350억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5,5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6.2%가 증가하였다.

또한 대출잔액은 2022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반면 부실금액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부실률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사업의 부실률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신규대출액	208,000	1,300,000	800,000	360,000	258,900	235,000	550,000
대출잔액 (a)	924,712	2,005,648	2,580,057	2,580,082	2,232,793	1,752,201	1,649,514
부실금액 (b)	48,478	54,143	65,596	89,033	122,825	109,755	91,103
부실률 (b/a)	5.24	2.70	2.54	3.45	5.50	6.26	5.5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중소기업 신시장진출지원자금(용자) 사업의 경우 신규대출액과 대출잔액이 2022년 각각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후 매년 감소하다가 2025년에는 전년대비 반등하여 각각 4,824억 5,000만원, 1조 3,969억 7,200만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부실금액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부실률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신시장진출지원자금(용자) 사업의 부실률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신규대출액	280,000	300,000	500,000	530,000	253,574	245,500	482,450
대출잔액 (a)	452,845	712,244	1,116,508	1,479,118	1,457,326	1,324,781	1,396,972
부실금액 (b)	15,553	16,541	24,406	25,989	58,449	57,231	58,725
부실률 (b/a)	3.43	2.32	2.19	1.76	4.01	4.32	4.2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용자 사업의 부실률이 증가하면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이 2023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26년에는 1조 8,519억 3,700만원의 계획액이 편성되는 등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연도별 일반회계전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당초	수정(A)					
2022	1,181,963	1,181,963	1,181,963	1,181,963	1,181,963	100.0	100.0
2023	1,164,214	1,164,214	1,164,214	1,164,214	1,164,214	100.0	100.0
2024	1,524,368	1,524,368	1,524,368	1,444,384	1,444,384	94.8	100.0
2025	1,457,941	1,792,941	1,792,941	1,792,941	1,792,941	100.0	100.0
2026	1,851,937	1,851,937	-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용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출 부실률이 더욱 높아지지 않도록 부실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하.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사업의 면밀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필요 (지식재산처)

(1) 현 황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사업¹⁾은 개별 기업의 브랜드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브랜드 보호를 위해 증명표장²⁾ 국내외 출원 등록, 정품인증기술 도입지원, 국내외 홍보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추가경정예산안에 9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	-	9,500	9,500	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한류 확산과 함께 해외에서 국내 제품의 가짜 브랜드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2024년 가짜 K-브랜드의 유통규모는 총 11조원 규모이나, 기업의 개별 대응으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 비용 부담, 현지정부의 수사·단속 등 집행 비협조,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대응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사업³⁾'을 통해 기업의 해외 권리화 지원, 위조상품 모니터링, 침해 대응 컨설팅 등 후방 지원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기업 상표가 개별 기업의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쟁 대응의 주체가 기업에 한정되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1531-308

2) 「상표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한다.

3) 코드: 일반회계 1531-304

고, 정부의 직접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정부가 직접 'K-브랜드 국가인증 표장'의 권리자가 되어 국가 차원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2026년 추경안에 동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처는 정부 소유의 증명표장을 해외에 등록하고, 증명표장에 정품 인증 기술(QR코드)을 적용한 후, 해외 시장의 소비자가 QR 인증을 시행하면 위조상품에 대한 해외 유통 증거가 확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간 수사·단속·외교 협력 등을 통해 국내 브랜드를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동 사업은 정부 인증표장 국내·외 출원, 해외 위조상품 추적 인프라 구축, 국내 외 홍보, 전담기관 운영비의 4개 내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민간위탁하여 추진된다.

먼저, 정부 인증표장 국내·외 출원의 경우 해외 70개국에 K-브랜드 국가인증 표장을 출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28억원이 편성되었고, 해외 위조상품 추적 인프라 구축의 경우 기업의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을 50% 수준으로 보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35억원)과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3억원) 등 38억원이 편성되었다. 국내외 홍보비용으로는 25억원이 편성되었고, 전담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건비 및 사업운영경비 4억원이 편성되었다.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사업 추경안의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2026 제1회 추경안
정부 인증표장 국내·외 출원	· 40백만원(해외 1개국 평균 출원 비용)×70개국	2,800
해외 위조상품 추적 인프라 구축	· 정품인증기술 도입지원: 7월×10억개×50%(보조율) ·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300(구축비의 20%)	3,800
국내외 홍보	· 71개국×35백만원	2,500
전담기관 운영비	· 인건비 및 사업운영경비	400
합계		9,500

자료: 지식재산처

(2) 분석의견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식재산처는 타 사업인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사업 본예산을 활용하여 증명표장 개발 등을 위한 용역 발주를 시행하였으므로, 추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 결과물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사업은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신규로 편성되었다. 지식재산처는 동 사업을 통해 정부 소유의 K-브랜드 증명표장을 국내 및 해외에 등록하여 공신력을 확보하고, 정부가 품질 등을 관리하면서 여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정부인증 증명표장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면 상반기 중 증명표장 개발 및 인증기준 수립 등 표장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증명표장의 국내 출원·등록을 시행하며, 정품인증기술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해외 70개국에 증명표장을 출원하고, 정품인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기업 대상 홍보 및 참여기업 모집, 위조방지기술 적용을 위한 생산공정 변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사업 추진 계획]

구분	추진 계획
상반기	· 증명표장 개발 및 인증기준 수립 등 표장 운영방안 마련 · 증명표장 국내 출원·등록 · 정품인증기술 적용방안 마련
하반기	· 해외 70개국에 증명표장 출원 및 정품인증시스템 구축 · 기업 대상 홍보 및 시범사업 실시 · 참여기업 모집 및 위조방지기술 적용을 위한 생산공정 변경

자료: 지식재산처

한편, 2026년 3월 23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한국제품(K-브랜드) 인증 표장 개발 용역’ 과제를 발주하였다. 과제는 1억원 규모의 디자인 개발·연구용역으로, 주요 과업내용은 ‘인증 표장 개발(디자인 개발)’, ‘개발된 인증 표장의 지식재산권 권리화 가능성 검토’, ‘인증 표장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 제안’이다. 이와 같

은 과업내용은 지식재산처에서 ‘K-브랜드 국가인증제도 운영 사업’을 통해 상반기에 수행하려던 내용 중 ‘증명표장 개발’과 동일하다.

[K-브랜드 인증 표장 개발 용역 과제제안서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목적	해외에서 증가하는 한류편승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제품 인증 표장을 개발하여 K-브랜드 보호 및 글로벌 소비자의 원산지 오인 방지
용역명	한국제품(K-브랜드) 인증 표장 개발 용역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6.6.30.까지
사업예산	1억원 /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사업 본예산 활용
공고기간	2026.3.23.(월)~4.6.(월)
주요내용	▶ 한국제품임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인증 표장 개발 - 전 산업 분야에 폭넓게 활용 가능한 메인 인증 표장 개발, 식품/화장품/굿즈 등 주요 업종의 특성과 소비자 인식 요소를 반영한 맞춤형 인증 표장 개발 ▶ 개발된 인증 표장에 대한 지식재산권 권리화 가능성 검토 ▶ 인증 표장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 제안

자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지식재산처는 그간 해외 수출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해외 현지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대응의 어려움을 제기해 오며 따라, 개별 기업의 위조상품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해당 용역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지식재산처가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사업’을 추경안에 편성하면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인 만큼, ‘K-브랜드 국가인증제도 운영 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동 사업은 해외 소비자의 QR 인증 데이터에 기반하여 위조상품 유통을 식별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는데,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 위조 판별의 정확성 확보, 개인정보 및 데이터 국외 이전 규제 등 실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증명표장 개발 후,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생산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때 품질 기준은 KS,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 업종별 소관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존 인증 기준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기업의 해외 생산제품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 때 인증은 기업의 자율 선택이며, 미인증 제품이라고 해서 판매제한을 두거나 하지는 않는다.

동 사업은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해 직접 대응하고, 기업의 손해배상소송 시 침해증거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처는 증명표장의 복제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하고, 국내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피해제품과 유통지역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국내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위조상품 식별기술을 융합하여 고유 QR코드를 개발하고, QR코드 내에 정품인증을 위한 비가시성⁴⁾ 고유코드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렇게 부여된 QR코드를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을 활용하여 인증했을 때, 인증 실패가 발생하거나 동일코드가 반복 인증되는 경우 위조상품이 생산 또는 유통되는 지역으로 의심하고, 지식재산처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 안정성 확보 및 모니터링 방법]

구분	추진 계획
기술안정성 확보	· QR코드 내 정품인증을 위한 비가시성 고유코드 부여
모니터링 방법	· 해외 소비자의 인증 실패 발생 또는 동일코드 반복 인증 시 위조상품 생산·유통 지역으로 의심 → 지자체 IP센터 현지 실태조사 실시 * 좁은 지역에서 반복인증 시 생산거점·넓은 지역에서 반복인증 시 유통지역 의심

자료: 지식재산처

4) 비가시성 코드는 개별 제품별로 고유의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육안으로 식별하거나 일반 복사기로 복제가 불가능한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니터링 구조는 실행 단계에서 소비자의 참여, 위조 판별 정보의 정확성 확보, 개인정보 및 데이터 국외 이전 문제 해결 등의 다양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소비자의 참여

먼저 동 사업은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을 활용해 QR 코드를 인증하여 위조상품 유통 정보를 수집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후 QR 인증을 수행하는 비율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특정 국가나 일부 사용자 집단에 편중된 데이터만 수집될 경우 실제 유통시장의 문제를 충분히 발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참여수출기업과 공동으로 브랜드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초기 단계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위조 판별 정보의 정확성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인증 실패 발생 또는 동일코드 반복 인증 시 위조상품 생산유통 지역으로 의심’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인증 실패나 동일 코드 반복 인증을 위조상품 유통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판별의 정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인증 실패는 위조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네트워크 오류, 시스템 접속 지연, 사용자 기기 문제 등 다양한 기술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동일 코드의 반복 인증 또한 정상 제품이 유통·소비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다수의 소비자가 정상 제품의 QR을 인증한 후 실제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동일 코드가 반복적으로 인증되는 기록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위조 판별 정보 수집 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⁵⁾

5) 이에 대해 지식재산청은 인증 중복, 기술적 오류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전체 데이터의 구조적 패턴(군집화, clustering)을 중심으로 해석하여 판별의 정확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개인정보 및 데이터 국외 이전 규제

마지막으로 해외 소비자의 QR 인증 데이터를 국내 시스템으로 수집·관리하는 과정에서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의 국외 이전 규제로 인해 제도 시행이 지연되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우려도 있다. QR 인증 과정에서 수집되는 위치정보 등은 일부 국가에서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국내 시스템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⁶⁾

특히, 국가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한 규제 정도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70개국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이 대상 국가의 법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Brand 국가 인증제도 운영 사업은 해외 소비자의 QR 인증 데이터에 기반하여 위조상품 유통을 식별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제도 실행 단계에서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 위조 판별의 정확성 확보,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국외 이전 규제 등 발생 가능한 각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6) 이에 대해 지식재산청은 동 제도 하에 활용하려고 하는 정보는 단순 위치정보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중국처럼 데이터 국외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현지에서 서버를 두는 등의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VIII

보건복지위원회

1

개 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보건복지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110조 9,352억 4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137조 8,211억 9,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262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총수입 ·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보건복지부	총수입	100,757,810	110,935,204	110,935,204	-	-
	총지출	126,455,890	137,494,919	137,821,196	326,277	0.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안승재 예산분석관(seungjaean@assembly.go.kr, 6788-4635)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9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2개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중동정세 및 대외 불확실성 증가와 경기침체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강화와 의료급여 수급자 급증 추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사업이 2,828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중동 정세 불안 및 고물가 등 경기 악화로 인한 위기요인 증가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복지 사업 예산이 130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또한, ③ 정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중동정세 및 대외 불확실성 증가와 경기침체 상황에서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서민층이 겪게 되는 이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에게 1인당 10~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며,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별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활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대응 인력 및 시스템 확충 등 업무 지원을 위해 보험정책관리 사업 예산 49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①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수요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 또는 기능개선 중인 5개 주요 시설들의 돌봄 인력난 일시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종사자 휴식권 보장 등 위한 한시 대체인력 투입이 시급하고 사회진출 초기 청년들의 일자리 경력관리 역할을 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66억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②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인원 및 전체 규모가 대폭 감소하면서 농어촌 지역 등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됨에 따라, 공보의 확보가 어려운 의료취약지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추가 직무교육과정 운영비 및 직무교육 시 발생하는 인력 공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 예산 20억 6,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4조 8,251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현계)확액(A)	추경안(B)	(B-A)	(B-A)/A
일반회계	민간사회복지 자원육성 지원	7,655	14,586	16,729	2,143	14.7
	긴급복지	350,109	405,254	418,329	13,075	3.2
	의료급여	8,688,201	9,839,997	10,122,834	282,837	2.9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4,261	5,909	9,288	3,379	57.2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	-	6,602	6,602	순증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4,243	16,280	17,567	1,287	7.9
	의료취약지 지역 보건의료 긴급지원	-	-	2,065	2,065	순증
	보험정책사업 관리	855	403	5,375	4,972	1,233.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090	43,607	53,524	9,917	22.7
합 계		9,096,439	10,328,062	10,652,313	326,277	3.2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현계계획액을 기재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가. 의료급여 수급 자 수, 적정 적립금 등을 고려한 면밀한 예산 추계 필요(보건복지부)

(1) 현 황

의료급여¹⁾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²⁾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은 9조 8,399억 9,700만 원이나, 중동정세 및 대외 불확실성 증가와 경기침체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급증 추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828억 3,700만원이 증액된 10조 1,228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의료급여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의료급여	8,822,328	9,839,997	10,122,834	282,837	2.9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안승재 예산분석관(seungjaean@assembly.go.kr, 6788-4635)

1) 일반회계 1132-302

2)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수급자는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3)에 따른 수급권자(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수급권자(1종 및 2종)이다.

[의료보호 지원대상]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 중증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 행려환자(의료급여법 시행령) ○ 이재민(재해구호법), 노숙인 ○ 다음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2023.1.1. 신규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근로능력 유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동일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59만 7,895원 이하이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의료급여)

-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 ③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의료급여	1,20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주: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현재는 1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은 무료이고, 외래방문시 1차병원은 1,000원, 2차병원은 1,500원, 3차병원은 2,000원을 부담한다. 2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은 급여비용의 10%를, 외래방문시에는 1차병원은 1,000원, 2차·3차병원은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구분		의료급여	
		1종	2종
입원	1·2·3차 의료기관	무료	급여비용 총액의 10%
외래	1차 의료기관	1,000원	1,000원
	2차 의료기관	1,500원	급여비용 총액의 15%
	3차 의료기관	2,000원	급여비용 총액의 15%

주: 1. 외래의 경우 원내 직접 조제가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함

2. 의료급여는 급여비용에 대하여만 지원되고 비급여비용에는 지원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2) 분석의견

첫째,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수의 증가, 진료 단가 상승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의료급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의료급여 예산은 총 10조 1,228억 3,400만원이다. 이 중 수급자에게 급여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인 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은 2026년 본예산 9조 8,377억 6,700만원에서 2,828억 3,700만원 증액된 10조 1,206억 400만원이다.

[2026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비교]

2026년도 본예산	2026년 제1회 추경안
○ 자치단체경상보조: 9,873,767백만원 -기관부담금: 9,703,500백만원 -기본진료비: 9,928,400 *기초1종 8,814,094(1,189천명×9,790천원×75.7%) *기초2종 726,081(342천명×2,805천원×75.7%) *타법 388,225(75천명×6,807천원×75.7%) -부양의무자 완화: 21,556 -요양병원 간병 지원: 76,300 -정액수가 개선비: 39,640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지원비: 7,364 -재정절감액: △369,760 ○ 본인부담금지원비: 55,635백만원 ○ 기타지원비: 64,108백만원 ○ 위탁수수료: 14,454백만원 ○ 신고포상금: 20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 1,092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560백만원 ○ 사업운영비 1,402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10,120,604백만원 -기관부담금: 9,986,337백만원 -기본진료비: 10,211,237 *기초1종 9,038,875(1,189천명×9,790천원×75.7%)+(29천명×10,204천원×75.7%) *기초2종 765,537(342천명×2,805천원×75.7%)+(18천명×2,895천원×75.7%) *타법 406,825(75천명×6,807천원×75.7%)+(4천명×6,941천원×75.7%) (이하 동일)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제1회 추경안에서 의료급여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이유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예산 편성 당시 예측했던 수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2월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1,638,888명으로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했던 1,606,607명보다 이미 3만 2,281명이 많은 상황이다.

[2022~2026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 편성시	2026.2
계	1,516,507	1,524,097	1,544,590	1,595,452	1,606,607	1,638,888
기초1종	1,067,116	1,088,831	1,117,893	1,164,345	1,189,000	1,201,552
기초2종	364,584	353,015	347,744	352,693	342,000	358,392
타법	84,807	82,251	78,953	78,414	75,000	78,944

주: 1. 연평균 수급자 수

2.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기초 1종 수급자와 기초 2종 수급자로 구분되며, '타법'이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본예산과 2026년 제1회 추경안 기관부담금 상세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본예산(A)	2026년 제1회 추경안(B)	증감 (B-A)
기관부담금	9,703,500	9,986,337	282,837
1. 기본진료비	9,928,400	10,211,237	282,837
기초 1종	8,814,094 (1,189천명×9,790천원×75.7%)	9,038,875 (1,189천명×9,790천원×75.7%) +(29천명×10,204천원×75.7%)	224,781
기초 2종	726,081 (342천명×2,805천원×75.7%)	765,537 (342천명×2,805천원×75.7%) +(18천명×2,895천원×75.7%)	39,456
타법	388,225 (75천명×6,807천원×75.7%)	406,825 (75천명×6,807천원×75.7%) +(4천명×6,941천원×75.7%)	18,600
2. 부양의무자 완화	21,556	21,556	0
3. 요양병원 간병 지원	76,300	76,300	0
4. 정액수가 개선비	39,640	39,640	0
5.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지원비	7,364	7,364	0
6. 재정절감액	△369,760	△369,760	0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는 제도적 특성상 수급자 규모와 의료급여비 단가뿐만 아니라, 부양의 무자 기준 완화 여부,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급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의료급여 예산은 사전적으로 정확한 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는 법률에 근거한 의무지출로서,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는 당해연도 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진다. 만약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할 경우, 특히 재정 여력이 취약한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 기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 사업에서는 무엇보다 적정 규모의 예산을 사전에 정확히 편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요구된다.

그러나 그간 의료급여 사업은 예산 소요 추계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실제로 예산이 과소 편성될 경우에는 미지급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비비 배정, 예산의 이·전용 등이 이루어졌다. 반대로 과다 편성 시에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구체적으로 2016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의결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는 시정요구를 통해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는 의료급여가 가지는 의무지출로서의 특성과 국민의 기본적 의료보장을 담당하는 핵심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정교한 재정추계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및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미지급금	예산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8	669,543	5,346,603	5,373,249	0	233,500	5,606,819	5,606,641	27
2019	189,851	6,391,530	6,437,402	120,000	320,972	6,878,525	6,878,452	11
2020	55,296	7,003,762	7,003,762	0	0	7,003,823	7,003,747	76
2021	11,493	7,680,461	7,680,461	△30,000	0	7,650,461	7,650,439	6
2022	0	8,123,234	8,123,234	△29,183	0	7,884,067	7,884,031	36
2023	0	9,098,368	9,098,368	△36,047	0	9,062,321	8,362,283	700,038
2024	0	8,937,713	8,937,713	0	0	8,937,713	8,437,605	500,042
2025	결산 중	8,688,201	8,822,328	0	0	8,822,394	8,822,263	54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부양비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대내외적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의료급여 소요에 대한 사전 추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2026년에도 예산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0,644명 증가한 1,657,251명의 수급자를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실제 수급자 규모를 보면, 2025년 1월 1,561,511명에서 2026년 2월 기준 1,638,88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까지 매월 평균 약 5,527명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추경안 편성 이후에도 수급자 수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2026년 연간 수급자 규모에 대한 예측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증가 추세를 반영한 보다 보수적이고 정교한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서는 예산안 편성 당시 적용되었던 예측 단가 대신 실제 의료이용 실적 데이터를 반영하여 1인당 평균 진료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종의 경우 1인당 평균 진료비가 1,020.4만원으로, 본예산 979만원 대비 41.4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 2종은 9만원, 타법 수급권자는 13.4만원 각각 상승하는 등 모든 수급자 유형에서 실제 진료비 단가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수급자 수 증가와 진료비 단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은 의료 급여 재정에 이중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수급자 증가 추세와 의료 이용 패턴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한 추계 체계를 구축하고, 추경 편성 이전 단계에서부터 재정 소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 유형별 진료 단가 비교]

(단위: 만원)

유형	2026년 본예산 단가(A)	2026년 제1회 추경안 단가(B)	차이 (B-A)
기초 1종	979	1,020.4	41.4
기초 2종	280.5	289.5	9
타법	680.7	694.1	13.4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2026년 예산 편성은 기존 예측 단가와 실제 진료비 단가가 혼재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재정 소요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 실제 진료비 단가를 기준으로 재산정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종은 약 117만 명, 기초 2종은 약 34만 9천 명, 타법 수급권자는 약 7만 7천 명 수준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목표로 설정된 수급자 규모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기초 1종의 경우에는 2026년 본예산에서 계획한 지원 인원보다도 축소된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체 추경 목표 수급자(기초 1종, 2종, 타법) 규모에 실제 1인당 평균 진료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추계액(약 10조 6,122억 원)과 추경안 실제 편성액(약 10조 2,112억 원) 사이에는 약 4,000억원의 단순한 추계 오차로 보기 어려운 상당한 간극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불완전한 예산 편성은 당해연도 예산의 조기 소진과 대규모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의료 보장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재검토 및 예산 현실화가 요구된다.

[의료급여 기관부담금 편성과 실제 단가 적용 추계액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편성액(A)	제1회 추경예산안(B)	실제 단가 적용 추계액		실제 소요 대비 과소 편성액 (B-D)
			본예산 물량 기준(C)	추경안 물량 기준(D)	
기초 1종	8,814,094	9,038,875	9,184,337	9,408,345	△ 369,470
기초 2종	726,081	765,537	749,384	788,826	△ 23,289
타법	388,225	406,825	394,064	415,081	△ 8,256
계	9,928,400	10,211,237	10,327,785	10,612,252	△ 401,015

주 1. 산출식: 수급자 수(물량) × 실제 진료비 단가 × 국비 지원비율(75.7%)을 적용함. 단가의 경우 기초 1종 1,020.4만원, 기초 2종 289.5만원, 타법 694.1만원 적용.

2. 추경안 물량: 추경안에 반영된 수급자 수는 기초 1종 1,218천명(기존 1,189천명+추가 29천명), 기초 2종 360천명(기존 342천명+추가 18천명), 타법 79천명(기존 75천명+추가 4천명)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이처럼 수급자 증가 추세와 실제 진료비 단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산 구조는 향후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미지급금 발생 위험을 다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수 증가 추이와 의료비 상승 추세를 보다 면밀하게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 재정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적 기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정책 변수 변화(보장성 강화, 수급 기준 변화 등)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정교한 추계 모형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적절한 적립금 규모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적립금 규모를 예산에 반영·교부하여 의료급여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 조성 및 집행 체계는 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금을 시·도에 교부하면 각 시·도는 「의료급여법」 제25조⁴⁾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에 재원을

4)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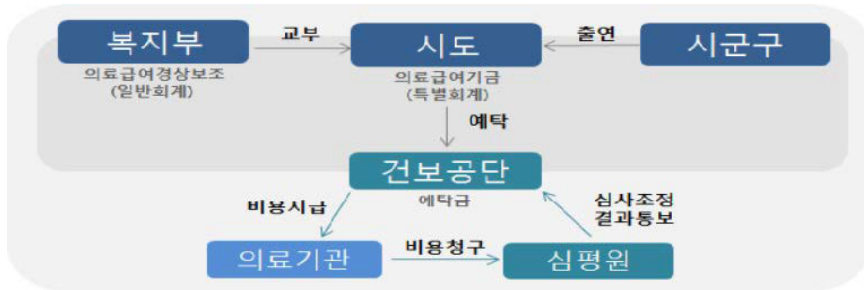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조성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의료급여 기관에 급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급여 조성 및 집행 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즉, 의료급여 재정은 시·도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매칭액을 단순히 일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재원을 통해 의료급여기금을 조성한 후 이를 공단에 예탁·집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러한 의료급여기금은 일종의 준비금적 성격을 가지며, 연도 간 재정 변동을 완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의료급여기금 적립금은 국고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이 기금으로 이월·누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실제 가용 재원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조치 요구사항(85)」을 통해 누적 적립금 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2024년에는 의료급여 예산 중 5,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기존에 적립된 의료급여기금 적립금을 활용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누적 적립금을 재정 절감 재원으로 반영함으로써, 기존 적립금을 단계적으로 소진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도별 의료급여 기금 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입	7,648,691	7,882,254	8,360,015	8,435,505	2025회계연도 결산진행 중
지출	7,332,509	7,689,033	8,222,287	8,846,257	
적립금	316,182	193,221	137,728	△410,752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은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적립금 소진 이후의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즉, 향후에는 적정 수준의 기금 적립 규모를 설정하고, 연도별 수급자 변동성과 의료비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재정 여건이 점차 제약되는 상황에서 의료급여기금의 누적 적립금을 과도하게 유지·운용하는 것은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과 같은 수급자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 확대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급여 사업은 별도의 준비금 적립 기준이나 하한선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으로, 적립금 규모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재정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적립금을 과도하게 축소할 경우 단기적인 재정 효율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미지급금 발생 위험이 확대되어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금 적립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고,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수급자 증가 추이, 의료비 상승 추세, 그리고 적정 적립금 규모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교한 재정 추계가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의료급여 재정은 단순한 지출 절감이 아니라 ‘재정 효율성과 재정 안정성 간 균형’을 핵심 원칙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 운영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정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사업수행을 위한 면밀한 계획 마련 필요 (보건복지부)

(1) 현 황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¹⁾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수요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 또는 기능개선 중인 5개 주요 시설들의 돌봄 인력난 일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종사자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한 한시 대체인력 투입이 시급하고 사회진출 초기 청년들의 일자리 경력관리에 공공이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66억 2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	-	6,602	6,602	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은 「노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아동복지법」 등²⁾을 근거로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지원 사업확대와 공공 일자

안승재 예산분석관(seungjaean@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631-341

2) 각 기관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정신건강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82조(보조금 등)

-방과 후 마을돌봄 시설: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및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44조의2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리에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정신요양시설, 방과 후 야간연장돌봄 시설, 자립준비전담기관에 629명의 대체인력 배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시설 보조 인력 배치 계획]

(단위: 개, 명)

구분	개소수	청년인력	비고 (기간 26.5~26.12, 8개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40	40	개소당 1명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	40	개소당 2명
정신요양시설	59	118	개소당 2명
방과 후 야간 연장돌봄	343	380	개소당 1명 + 17개 상담센터 1명 + @
자립지원전담기관	17	51	서울 8명, 지역 43명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3억 8,500만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지원 3억 8,5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5억 2,100만원,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 운영지원 36억 5,400만원, 자립지원 전담기관 보조 인력지원 6억 5,700만원 등 66억 2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산출내역]

2026년 추경안
〈노인보호전문기관〉 ○ 자지단체경상보조: 385백만원 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385백만원) · 1명×40개소×월 2,404천원×8개월×50%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자지단체경상보조: 385백만원 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지원(385백만원) · 2명×20개소×월 2,404천원×8개월×50% 〈정신요양시설〉 ○ 자지단체경상보조: 1,521백만원

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385백만원)

- 2명×59개소×월 2,404천원×8개월×67%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

- 자지단체경상보조: 3,654백만원

가.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지역아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3,654백만원)

- 380명×40개소×월 2,404천원×8개월×50%

〈자립지원전담기관〉

- 자지단체경상보조: 657백만원

가. 자립지원 전담기관 보조 인력 지원(657백만원)

- (서울 1개소) 총 8명×월 2,404천원×8개월×50%
- (지역 16개소) 총 43명×월 2,404천원×8개월×70%

* 최저 임금 및 4대 보험 단가 적용

* 기타 인건비 1,000,000

자료: 보건복지부

(2) 분석의견

첫째,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은 인력 부족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채용 지연에 따른 실제 사업기간 축소 우려와 명확한 직무·교육 기준의 부재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 효과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은 노인보호 및 정신건강 분야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질을 제고하며, 야간·연장 돌봄사업 확대에 따른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인력 지원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고, 행정 및 실무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기존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및 서비스 제공 여건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월 240.4만원 수준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비교적 현실적인 보상 수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사업의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구조적인 한계 또한 명확하게 나타난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4월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자체 배정을 완료하고, 5월부터 지역별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채용절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인력 투입 시점은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 집행계획]

기간	집행계획
2026.4월-5월	추경 예산 편성 및 지자체 집행(4월), 지역별 채용절차 실시(5월~)
2026.5월-12월	채용 완료 및 업무 투입

자료: 보건복지부

채용과 관련하여 기간 문제를 살펴보면, 정부의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채용은 일반적으로 채용기획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전형(서류·필기·면접 등) → 합격자 결정 → 근로계약 체결의 단계적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적 구조를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 채용공고부터 최종 임용까지는 통상 약 3~4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공공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심사·검증 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더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추경을 통해 단기간 동안 한시적 인력을 채용·운영하는 경우, 실제 근무 가능 기간은 채용 준비 및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채용 지연으로 인해 인력 투입 시점이 늦어질 경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하 및 사업 성과 미흡으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한다.

물리적인 채용 지연 못지않게 정책 설계상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보조 인력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해당 인력이 단순 행정지원 역할에 그칠 것인지, 사례관리 보조나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까지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 정의(Job Description)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일선 기관별로 인력 활용 방식에 상당한 편차를 유발하여, 사업 전반의 성과 측정과 체계적인 관리에 근본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

특히, 사례관리나 돌봄 서비스와 같은 대인 서비스 업무는 대상자의 취약한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본적인 사회복지 실천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업에는 단기 투입 인력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사후 교육이나 훈련 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나 직무 수행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체계 없이 인력이 현장에 바로 투입될 경우, 기존 종사자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 효과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자칫 서비스 질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성마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본 사업이 단순한 단기 일자리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현장 지원 및 서비스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보조 인력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 및 역할 정의 명문화, ② 현장 투입 전후의 필수적인 직무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신속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 돌봄보조인력 임금은 단기 유인 효과는 있으나 사회복지사 임금체계와의 불일치로 임금 형평성, 재정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가지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청년 돌봄보조인력에게 월 240.4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보수로서 단기 공공일자리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임금(월 240.4만 원)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단기 공공일자리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보상 수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현장 운영 과정에서 직무 수준과 역할 배분에 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만약 돌봄 보조 인력이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사례관리 보조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체계

적인 사전 교육이나 향후 경력 인정 체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실무에 투입됨에 따라 기존 종사자와의 역할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단기 인력의 모호한 직무 범위는 조직 내 실질적인 업무 강도와 보상 체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낳을 수 있으므로, 투입 인력의 명확한 역할 정의와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질 제고라는 이중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나, 단년도 사업으로 운영될 경우 고용의 지속성이 낮아 향후 실업급여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는 단기 보조 인력에 대해 직무 수준과 난이도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차등 보상 및 경력 인정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보조 인력의 임금 단가를 기점으로,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는 기존 사회복지시설 정규 종사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 예산 확보 전략이 구조적으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비 우선 투입은 신속 집행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지방비 매칭 확보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국비를 선투입할 경우 불용·사업 축소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재정여건과 집행역량을 사전에 점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조인력의 신속한 채용과 현장 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방비 추경 성립 이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교부하여 인건비를 선집행하는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통상 국비와 지방비가 동시에 확보된 이후 사업이 집행되는 기존 매칭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시차를 해소하고, 특히 연초 인력채용 지연에 따른 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집행을 제고 및 정책 체감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국비 선투입 방식은 사후적으로 지방비 매칭분이 반드시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조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추경 편성 일정에 따라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경우 이미 집행된 국비와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예산 불용, 사업 규모 조정, 또는 지자체 재정 부담 전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 특히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편성 권한을 고려할 때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수준으로 매칭을 이행하기 어렵고, 이는 지역 간 사업 추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형평성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비 선투입 방식은 단기적으로 집행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사전에 지방비 확보 가능성, 추경 편성 계획, 지자체별 재정여력 및 집행역량 등에 대한 정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단계별 교부·조건부 집행 등 관리장치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재정 비효율과 사업 차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 긴급복지 사업의 반복적 과소계상 문제 해소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보건복지부)

(1) 현 황

긴급복지 사업¹⁾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²⁾에 따라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업, 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및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단기적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26년 본예산은 4,052억 5,400만원이나 중동 정세 불안 및 고물가 등 경기 악화로 인한 위기요인 증가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계지원 인상을 통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30억 7,500만원이 증액된 4,183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안승재 예산분석관(seungjaean@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133-300

2)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1)를 적용받는 경우
- ②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긴급복지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긴급복지	373,007	405,254	418,329	13,075	3.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선지원 후조사 원칙과 단기지원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2026년 예산안 기준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99만 4,600원을 기본 3개월,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긴급복지 지원 내용(2026년 예산 기준)]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 전 현 물 지 원	위 기 상 황 주 지 원 ¹⁾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 월 생계유지비	783,000원/월 (1인 기준) 1,994,600원/월 (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 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 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39만 8,900원/월 이내 (대도시, 1인기준) 66만 2,500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55만 2,000원/월 이내 (1인기준) 149만 4,100원/월 이내 (4인 기준)	6회
	부 가 지 원 ²⁾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12만7,900원/분기 - 중 18만원/분기 - 고 21만4,000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³⁾
		그밖 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 연료비(10월~3월) : 15만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1회 (연료 비 6회)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1).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2).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게 병행 지원 여부 결정
- 3). 주거지원(최대 12개월)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자료: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³⁾일 것(소득기준), ② 일반재산의 합계액이 지역별로 일정 기준 이하일 것(재산기준⁴⁾), ③ 금융재산⁵⁾이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이라는 요건을 충족⁶⁾하여야 하고, 추후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3) 긴급복지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923,179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4) 긴급복지 지역별 재산기준

(단위: 천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241,000	152,000	130,000

- 5)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단위: 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564	10,199	11,359	12,494	13,556	14,555
금액 (주거지원)	10,564	12,199	13,359	14,494	15,556	16,555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960,000원 추가

- 6)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서는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특례를 통해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정세 불안 및 고물가 등 경기 악화로 인한 위기로인 증가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계지원 15,870건에 대한 추가 지원분 130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다.

[2026년도 긴급복지 사업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2026년 예산	2026년 제1차 추경안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405,015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418,090백만원
가. 생계지원 : 309,092백만원 (375,155건 ×1,077천원×76.5%)	가. 생계지원 : 322,167백만원 (391,025건 ×1,077천원×76.5%)
나. 의료지원 : 81,189백만원 (51,948건 ×2,043천원×76.5%)	나. 의료지원 : 81,189백만원 (51,948건 ×2,043천원×76.5%)
다. 기타지원 : 14,734백만원	다. 기타지원 : 14,734백만원
· 주거지원 : 2,500백만원 (10,431건×313.3 천원×76.5%)	· 주거지원 : 2,500백만원 (10,431건×313.3 천원×76.5%)
· 시설이용지원 : 59백만원 (137건×564.9천 원×76.5%)	· 시설이용지원 : 59백만원 (137건×564.9천 원×76.5%)
· 교육지원 : 84백만원 (684건×160.6천원 ×76.5%)	· 교육지원 : 84백만원 (684건×160.6천원 ×76.5%)
· 연료비지원 : 11,871백만원 (103,450건 ×150천원×76.5%)	· 연료비지원 : 11,871백만원 (103,450건 ×150천원×76.5%)
· 해산비지원 : 70백만원 (131건×700천원 ×76.5%)	· 해산비지원 : 70백만원 (131건×700천원 ×76.5%)
· 장제비지원 : 100백만원 (163건×800천원 ×76.5%)	· 장제비지원 : 100백만원 (163건×800천원 ×76.5%)
· 전기요금지원 : 50백만원 (247건×264.5천 원×76.5%)	· 전기요금지원 : 50백만원 (247건×264.5천 원×76.5%)

자료: 보건복지부

(2) 분석의견

첫째, 긴급복지 예산은 위기 대응을 위해 증액되었으나 반복적인 추경·전용은 구조적 과소계상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단기 증가율 중심의 추계에서 벗어나 물가경기 등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정교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예산을 2026년 본예산 대비 130억 7,500만 원 증액한 3,221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국제 유가 상승 및 고물가 지속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 불안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긴급복지사업은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계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외부 경제충격이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와 생활불안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예산 증액은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긴급복지사업은 제도적 특성상 위기 발생 시점과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예산 편성 및 운영 과정에서 구조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실제 최근 5년간 결산 내역을 보면 2022년과 2025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이·전용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는 등 본예산만으로는 수요를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는 긴급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단계에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과소계상 문제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긴급복지 사업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전 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215,639	302,957	△12,000	290,957	290,941 (263,778)	96.0	100.0	16
2023	315,486	315,486	23,873	339,359	339,355 (324,538)	107.6	100.0	4
2024	358,494	358,494		358,494	358,486 (351,346)	100.0	100.0	8
2025	350,109	373,007		373,007	373,003 (366,293)	100.0	100.0	4
2026 (2월)	405,254			405,254	80,223 (30,851)	19.8	-	-

자료: 보건복지부

더욱이 긴급복지사업은 제도 도입 이후 위기사유의 범위 확대, 소득·재산 기준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지원 예산과 지원 건수 역시 중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이러한 구조적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긴급복지제도의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타 사업 예산을 전용하거나 연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방식은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사업 집행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2026년 제1회 추경안은 기존 본예산이 전제한 375,155건의 지원 규모에 최근 3개월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가 소요 15,870건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 재원은 주로 생계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단기간의 증가율을 기반으로 한 수요 추계는 경기 변동성, 물가 상승, 고용 상황 변화, 국제정세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긴급복지사업은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단기 추세에 의존한 예산 추계는 실제 수요와 괴리를 발생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긴급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 단기 증가율 적용을 넘어, 물가 상승률, 실업률, 소득분배 지표, 국제유가 변동 등 주요 위기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수요 예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추경 및 예산 전용 구조를 개선하고, 긴급복지사업 본연의 기능인 신속하고 안정적인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긴급한 필요에 대한 대응과 함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기 지원을 위해 지방비 부담 가능성에 대한 점검 등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

긴급복지사업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자산조사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고 보충급여 방식이 아닌 가구 규모별 정액지원 방식을 적용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위기사유가 인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수준 역시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

서 제도의 접근성과 신속성이 크게 제고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설계는 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지원 대상의 선별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자료를 보면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사후적으로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환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부정·부적정 수급 건수와 환수 결정 규모 역시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긴급복지사업이 신속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전 검증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환수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긴급복지 부정수급 발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8	172	479	400	500	541	400	411

주: 부정수급이란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기타 부적정하게 지원받은 경우를 말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 환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환수결정건수	환수결정금액	환수건수	환수금액
2021	338	230	303	191
2022	206	170	153	110
2023	470	374	395	287
2024	493	528	365	354
2025	396	407	270	239

자료: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이후 일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로 연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통한 연계 실적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긴급복지 지원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로 연계된 사례는 2024년 18,105건에서 2025년 12,135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규모 자체는 두 제도 간 연계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긴급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제도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은, 단순한 행정적 한계를 넘어 이용자의 행태적 요인과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긴급복지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선정 기준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일부 이용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과 지속적 관리가 수반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의 전환을 회피하고 긴급지원에 머무르려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긴급복지 지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제도가 ‘일시적 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단기 소득보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행태는 결과적으로 긴급복지 제도의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동시에 지속적 소득보장이 필요한 대상자가 안정적인 공공부조 체계로 편입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제도 운영은 긴급복지가 일회성 지원에 머물 뿐 아니라, 일부 이용자에게는 보다 유리한 지원 조건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로로 작동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간 연계 기능을 약화시키고, 제도 간 역할 분담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긴급복지 지원 단계에서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반복 수급 또는 장기 이용자에 대해서는 직권 신청을 포함한 제도 전환을 강화함으로써, 일시적 지원과 중장기 소득보장 체계 간의 역할 정립을 명확히 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연계실적 및 공무원 직권 연계 건수]

(단위: 가구,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초생활보장 연계 실적	31,584	19,255	20,222	18,105	12,135
공무원 직권 연계 건수		22 (2022년9월~)	16	23	16

주: 1. 긴급복지 지원가구수 '21년 17.5만, '22년 13만, '23년 15만, '24년 15만, '25년 16만 가구

2. 직권신청은 차세대 구축이후(2022년 9월)부터 관리 추가되어 이전 자료 부존재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편, 최근 경기 둔화, 고물가, 고용 불안 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복합적 위기 요인의 증가에 대응하여 긴급복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긴급복지사업은 위기 발생 시점과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수요 추계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이는 예산의 적정 편성과 효율적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방비 매칭 구조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확보 및 집행 속도가 좌우될 수 있어,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 긴급지원의 적시성이 저해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는 제도의 핵심 가치인 '신속성'과 '즉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기침체 및 각종 재난에 대응하여 긴급복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부정수급 발생, 사후관리 미흡, 제도 간 연계 부족, 수요 추계의 불확실성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단기적 수요 변동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수요 예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부정수급 관리 강화, 수급자 사후관리 체계 정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연계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집행체계 점검 등을 통해 사업 관리의 체계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라.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재원 안정화, 전문 인력 중심의 전달체계 보완 필요 (보건복지부)

(1) 현황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사업¹⁾은 인적·물적 민간복지자원의 활성화 및 연계를 통해 공공복지자원·공공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육성지원, 기부식품등제공사업육성지원, 기업사회공헌활동지원, 사랑나눔실천운동,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 등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진다.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사업의 2026년도 본예산은 145억 8,600만원이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 먹거리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운영지원 사업 예산 21억 4,300만원이 증액된 167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7,655	14,586	16,729	2,143	14.7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운영지원	-	7,344	9,487	2,143	29.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운영지원 사업(이하 ‘그냥드림’)’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하여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관, 푸드뱅크 등 지역 내 거점 공간에 ‘먹거리 지원 코너’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나 소득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이용자가 간단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즉시 기본 먹거리 및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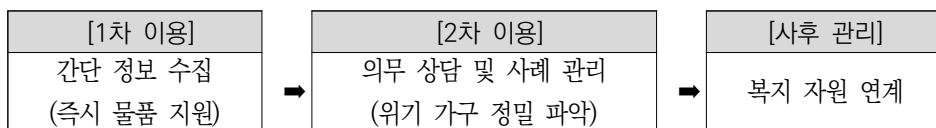
안승재 예산분석관(seungjaean@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631-308

필품을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지원 수준은 1인당 3~5개 품목, 약 2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며, 표준 제공물품 3~4개를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품목 구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이용 절차는 단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1차 이용 시에는 간단한 정보 수집 후 즉시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후 동일 이용자가 2차로 방문할 경우에는 단순 지원을 넘어 위기 가능성이 있는 가구로 간주하여 의무 상담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가구의 복지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사례관리를 병행함으로써,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절차는 '즉시 지원 → 심층 상담 → 자원 연계'로 이어지는 단계적 개입 체계를 형성한다.

[그냥드림 이용절차]



자료: 보건복지부

운영 방식은 광역푸드뱅크를 중심으로 한 물류 공급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즉, 광역푸드뱅크에서 물품을 일괄 구매한 후 이를 매월 기초푸드마켓으로 배송하고, 기초푸드마켓은 배송된 물품과 자체적으로 모집한 후원물품을 결합하여 각 사업장에 배분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2026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 5월부터 약 150개소에서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식생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기본 먹거리 보장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시·군·구당 최소 1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총 300개소의 '그냥드림'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그냥드림 사업 확대 추진 방향]

단계	시범사업 (‘25.12~)	1단계 (‘26.5~)	2단계 (‘26.下~)	전국확대 (‘27.1~)
기존		150여개소	150여개소	250여개소
변경(안)	100여개소	150개 시군구 200여개소	229개 시군구 300여개소	300여개소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현재 「그냥드림」 사업은 신한금융그룹의 100억원 규모 재정 기부를 필두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주요 모금기관을 통해 10여 개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으로부터 현금 및 현물 후원이 구체화되며 공공재정의 한계를 보완할 민관 협력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냥드림 사업 주요 민간 모금 및 후원 진행 현황]

모금 채널	주요 후원 기업·기관	후원 내용 및 규모	비고
직접 연계	신한금융	(재정)3년간(‘25~’27) 총 100억 원 기부 및 사례관리 지원 예정	
	농협중앙회	(현물·인력)'농촌형 그냥드림' 추진	코너 설치 및 봉사단 연계 물 품 배달 추진
사회복 지공동 모금회	롯데그룹, 삼천리그룹, 한국부동산원	(현금)총 3.4억 원 기부 예정	약 137개 기업 제안 진행 중
한국사 회복지 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 HK이노엔, 한국수출입은행	(현물)3.1억 원 상당 물품 지원, (현금)최대 5 억 원 1:1 매칭 기부	약 705개 기업 제안 진행 중

자료: 보건복지부

(2) 분석의견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사업의 전국 확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 안정화와 함께 전문 인력 중심의 전달체계 보완이 필요하다.

‘그냥드림’은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21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사업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7,344백만원 가. 푸드뱅크사업단 운영지원: 1,532백만원 -운영인력 3명(12개월): 112백만원 -물류비 등 운영비: 275백만원 -사업 운영 홍보비: 700백만원 -기부캠페인 운영: 30백만원 -성과분석 등 연구: 35백만원 -FMS 시스템 개선: 350백만원 나. 물품구입비: 4,000백만원 -코너 1개소당 5백만원×[(100개소×4개월)+(150개소×8개월)]×50%=4,000백만원 다. 전담인력 인건비·수당 지원: 1,302백만원 -[광역]월 3.1백만원×27명×12개월×50% (기초)월 0.5백만원×2명×100개소×4개월×50%+월 0.5백만원×2명×150개소×8개월×50% 라. 신규설치비: 300백만원 -10백만원×60개소(시범 30개소+본 30개소)×50% 마. 일반 사업 운영비: 210백만원	◦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9,487백만원 가. 푸드뱅크사업단 운영지원: 1,532백만원 -운영인력 3명(12개월): 112백만원 -물류비 등 운영비: 275백만원 -사업 운영 홍보비: 700백만원 -기부캠페인 운영: 30백만원 -성과분석 등 연구: 35백만원 -FMS 시스템 개선: 350백만원 나. 물품구입비: 5,500백만원(+1,500백만원) -코너 1개소당 5백만원×[(100개소×4개월)+(150개소×8개월)]+(150개소×4개월)×50%=5,500백만원 다. 전담인력 인건비·수당 지원: 1,645백만원(+343백만원) -[광역]월 3.1백만원×27명×12개월×50%+월 3.1백만원×7명×4월×50%(기초)월 0.5백만원×2명×100개소×4개월×50%+월 0.5백만원×2명×150개소×8개월×50%+월 0.5백만원×2명×150개소×4월×50% 라. 신규설치비: 600백만원(+300백만원) -10백만원×60개소(시범 30개소+본 30개소)×50%+10백만원×60개소×50% 마. 일반 사업 운영비: 210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사업은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연계하는 ‘접근성 기반 선제적 복지모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신청주의 부

담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기존 제도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계층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부조 체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시범 사업의 성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시범사업 성과를 보면 약 15주간 누적 기준 63,187명의 이용자 중 12,589건의 2차 상담이 이루어졌고, 5,762건의 상담 연계 의뢰와 2,742건의 복지서비스 연계가 완료되어 ‘즉시 지원 → 상담 → 복지 연계’라는 단계적 개입 구조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가구 발굴 및 공공복지체계 유입 기능이 유의미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냥드림 시범사업 15주차 실적(2026.3.5.~2026.3.11.)]

(단위: 명)

구분	이용자		기본상담 (2차이용)		상담연계의뢰		복지서비스 연계		
	주간	누적	주간	누적	주간	누적	연계 완료	검토중	연계 불요
계	5,873	63,187	1,591	12,589	644	5,762	853	2,167	2,742

자료: 보건복지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기존 푸드뱅크 인프라를 활용하여 2026년 내 전국 229개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이상, 약 300개소 규모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재정과 함께 기업 사회공헌 등 민간 후원을 병행하는 민·관 협력형 재원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다만,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원 구조의 지속가능성 문제이다. 민간 후원 의존도가 높은 현재 구조는 경기 변동에 취약하며, 전국 확대 시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그냥드림' 사업의 국비 물품구입비 예산은 70억원 규모이다. 여기에 1:1 지방비 매칭을 적용하면 총 140억원의 공공재원이 물품 구입에 투입된다. 이를 1인당 기본 물품 단가인 2만원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 지원 가능 물량은 약 70만 명분이며, 추경을 통해 전국 3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경우 1개소당 지원 가능한 인원은 연간 약 2,333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된다. 만약 하반기 8개월간 사업을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이는 1개소당 월평균 약 291명, 일평균(월 20일 기준)

14~15명 남짓만을 지원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규모이다.

이러한 수치는 현재의 재정 구조로만의 편성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에 어려움을 보여주는 결정적 방증이다. 공공재정만으로는 하루 15명 안팎의 최소 물량만 소화할 수 있어, 일선 현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지역 자체의 민간 후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출발하게 된다. 특히, 현행 계획처럼 광역푸드뱅크 공급 물품과 지역 내 자체 모집 물품을 1:1로 매칭하는 방식은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민간 자원 동원 역량의 차이를 현장의 '서비스 혜택 격차'로 고스란히 전이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과적으로 '그냥드림' 사업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전국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간 후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 물품 등에 대한 사업메뉴얼 정비, 차등 매칭제 도입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인력 계획은 기존 노인일자리 및 자활사업, 자원봉사 체계를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히 사업을 확산하려는 '저비용·고효율' 전략으로, 대규모 신규 인건비 부담 없이 단기간 내 300개소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재정 효율성이 높은 접근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월 50만원 수준의 수당은 고물가 상황에서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하기에 충분한 유인으로 보기 어렵고, 인력의 지속성 및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구조는 동시에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를 내포한다. '그냥드림' 사업은 단순 물품 제공이 아니라 2차 이용 시 의무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인데, 자원봉사자나 노인일자리 중심 인력 구조로는 전문적 상담과 지속적 사례관리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사업의 본질적 목표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력 운영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사업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전문 사회복지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거나, 기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담 인력 처우 개선 및 교육·훈련 체계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비선별적 즉시 지원 구조는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전국 확대 시 중복 이용 및 부정 이용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 반면 통제 강화는 이용자의 낙인감과 참여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이용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되 상담을 통한 '지원 연계 중심 관리'로 설계하는 균형적 접근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정책 효과성을 유지하며, 전국으로 조기 확대하고 향후 안정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원 구조와 운영 방식, 인력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확대 과정에서 재정 불안정성, 지역 격차, 전달체계 한계가 동시에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재정 안정화’, ‘최소 서비스 기준 설정’, ‘전문 인력 기반 전달체계 구축’, ‘이용 관리체계 정교화’ 등 면밀한 사업준비가 필요하다.

마.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의 기간제 대체인력 수급 계획 수립 등 면밀한 사전준비 필요(보건복지부)

(1) 현 황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¹⁾은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규모 급감에 따른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0억 6,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의료취약지 지역보건 의료 긴급지원	-	-	2,065	2,065	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그동안 공보의는 민간의료기관이 소재하고 있지 않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2024년부터 2025년 10월말까지 이어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0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전년도 247명 대비 92명으로 급감하였고, 20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는바, 농어촌 지역 등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3350-302

[연도별 의과 공보의 규모 현황]

(단위: 명, %)

연도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신규 편입인원	814	512	663	742	478	511	449	249	247	92 ¹⁾
총인원	2,116	2,002	1,960	1,901	1,862	1,714	1,432	1,209	945	587
(전년대비 증감률)	(1.2)	(△5.4)	(△2.1)	(△3.0)	(△2.1)	(△7.9)	(△16.5)	(△15.6)	(△21.8)	(△37.9)

주: 1) 당초 통보인원(98명)에서 입영 연기(질병 등 사유)를 제외한 신규 배치 예정('26.4월) 규모임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공보의 감소 등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의료 대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취약도 분석을 통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²⁾를 도출하였고, ① 공보의 배치 효율화 및 지역 의사 인력 확보, ② 지자체별 의료여건을 고려한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개편, ③ 지역 의료인력의 진료 기능 보완 등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동 사업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공보의 확보가 어려운 의료취약지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시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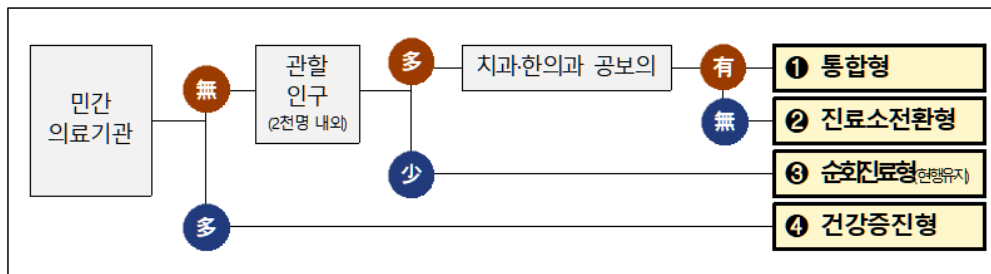
(2) 분석의견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간제 대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체인력 수급 계획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기간제 인력 채용계획 및 지역별 배치 계획 등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의료취약지의 진료 기능이 유지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 의료취약지란 ▲행정구역 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이 없으면서,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의료기관과의 거리도 4km 이상인 지역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관내 및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은 547개(532개 보건지소 소재)로 도출되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 중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개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공보의가 미배치된 의료취약지 소재 보건지소(총 393개소)의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유무, 관할인구 수, 치과한의과 공보의 유무 등 지역 여건별로 유형을 선택·조합하여 기능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기능개편 방안]



자료: 보건복지부, “공보의 감소 등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26.3.)

특히, 보건복지부의 사전 수요조사 결과, 기능개편 유형 중 ‘통합형’으로 개편을 추진할 151개 보건지소와 ‘진료소전환형’으로 개편될 42개 보건지소 등 총 193개소의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각 개소별로 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³⁾을 배치하는 등 총 193명의 인력 확보가 필요한 바,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과정 비용에 더해, 직무교육 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동 사업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크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구분된다.

3)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며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먼저, 1)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교육의 경우, ① 이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상 26주간의 직무교육을 수료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나, 보건진료소가 아닌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근무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으로 즉각적인 임상 현장투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력보강교육 및 임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약 3,9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②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농어촌의료법」상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공무원⁴⁾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직무교육(26주) 이수에 필요한 예산 약 3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 이수 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2)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의 경우,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단 기간 동안 진행되는 경력보강교육 및 임상교육을 마친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으나, 26주간의 직무교육 이수가 필요한 “전환” 예정자의 경우 직무교육 참여기간 동안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하므로 114명의 대체인력을 선발하여 매월 350만원 씩 6개월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1억 9,700만원에 더해, 내년도 정규 보건진료직을 신규 채용할 때까지 36명의 기간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8개월간 지원하기 위한 예산 5억 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교육비 지원 및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에 총 2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다.

4) 이들은 현재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면서 간호사나 조산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행 「농어촌의료법」상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보장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보건직/간호직 공무원이다.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구분	예산액	세부 편성내역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363.6	○ 기존 보건진료전담공무원(43명) 보강교육 등: 38.7백만원 - (보강교육) 0.6백만원 × 43명 × 50%(국고보조율) = 12.9백만원 - (임상교육) 0.6백만원 × 43명 × 2회 × 50%(국고보조율) = 25.8백만원 ○ 직렬 전환 예정자(114명) 직무교육 등: 324.9백만원 - (신규교육) 4.5백만원 × 114명 × 50%(국고보조율) = 256.5백만원 - (임상교육) 0.6백만원 × 114명 × 2회 × 50%(국고보조율) = 68.4백만원
기간제 대체인력	1,701	○ 전환 예정자(114명) 6개월 교육 중 대체인력 - 114명 × 3.5백만원 × 6개월 × 50%(국고보조율) = 1,197백만원 ○ 별도 기간제 채용 예정 인력(36명) - 36명 × 3.5백만원 × 8개월 × 50%(국고보조율) = 504백만원
합계	2,065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대체로 보건진료소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는 보건진료직렬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 후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후 26주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관내 보건진료소에 배치하고 있다.

참고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6주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이론교육 10주, 임상실습 10주, 현지실습 6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2026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 현황]

교육과정		교육일정	기간	교육 운영기관	
이론교육	기본	2025.11.17.~2025.12.19.	5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문	2025.12.22.~2026.01.23.	5주	권역 교육기관 (경기강원/충청/경상/전라)	
현지실습 (기초)	보건진료소	2026.01.26.~2026.02.06.	2주	권역 교육기관	보건진료소
임상실습	의료원	2026.02.09.~2026.03.20.	6주		의료원
	보건소	2026.03.23.~2026.04.17.	4주		보건소
현지실습 (심화)	보건진료소	2026.04.20.~2026.05.15.	4주		보건진료소

자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러나 2026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 급감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일차의료 공백이 우려되는바, 보건복지부는 보건지소 기능개편에 필요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정규과정 외에 별도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3월 중순경 추가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위탁기관으로 대구보건대학교를 旣 선정하였고,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4월 초에 보건·간호직 공무원 중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전환할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후, 10월까지 26주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운영하여 교육 이수 후 바로 각 지자체별 보건지소에 현장 배치한다는 계획이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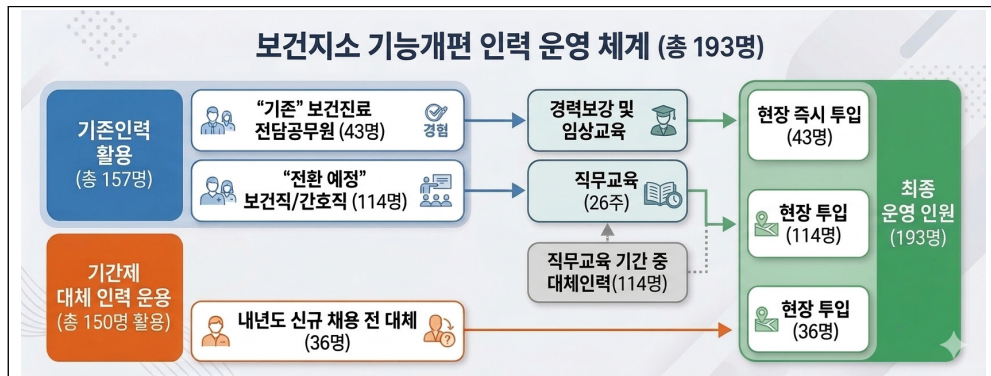
다만,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간제 대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체인력 수급 계획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기간제 인력 채용계획 및 지역별 배치 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의료취약지의 진료 기능이 유지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을 통해 보건지소 기능개편에 필요한 인력 규모를 193명으로 산정하였는데, 단기 교육 후 즉시 투입이 가능한 기존

5) 이와 더불어,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경력보강과정(3일) 및 임상교육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43명을 제외하면 전환 예정인 보건·간호직 공무원 114명의 직무교육 이수에 따른 공백과 내년도 정규직 신규 채용 전까지의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는 총 150명의 기간제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지소 기능개편에 따른 인력 운영 체계]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는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 대상과 관련하여 보건진료직 퇴직자 등 기존에 「농어촌의료법」상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항들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채용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⁶⁾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건진료직 퇴직자 등을 비롯하여 기간제 대체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후보군의 참여 여부가 매우 중요하나, 아직까지 관련 의료인력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사전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이들의 참여의사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계획 및 지역별 배치 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의료취약지의 진료 기능이 유지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6)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또한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취약지 소재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기능개편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므로, 해당 결과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의 참여의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바. 지역필수의사제 지원 목표인원 확대에 따른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보건복지부)

(1) 현 황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은 의사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제한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2026년도 본예산은 27억 9,400만원이나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 급감에 따른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9억 1,700만원이 증액된 37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내역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취약지 등 전문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4,243 (5,595)	16,280	17,567	1,287	7.9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1,352	2,794	3,711	917	32.8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1. 괄호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의 2025년 예산을 포함한 내역임(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은 당초 별도 세부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26년부터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관되었음)

자료: 보건복지부

(2) 분석의견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 채용 목표 인원이 2026년 본예산 대비 대폭 확대된다는 점에 더해,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 보건의료원의 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인력 신규 채용 및 관련 예산의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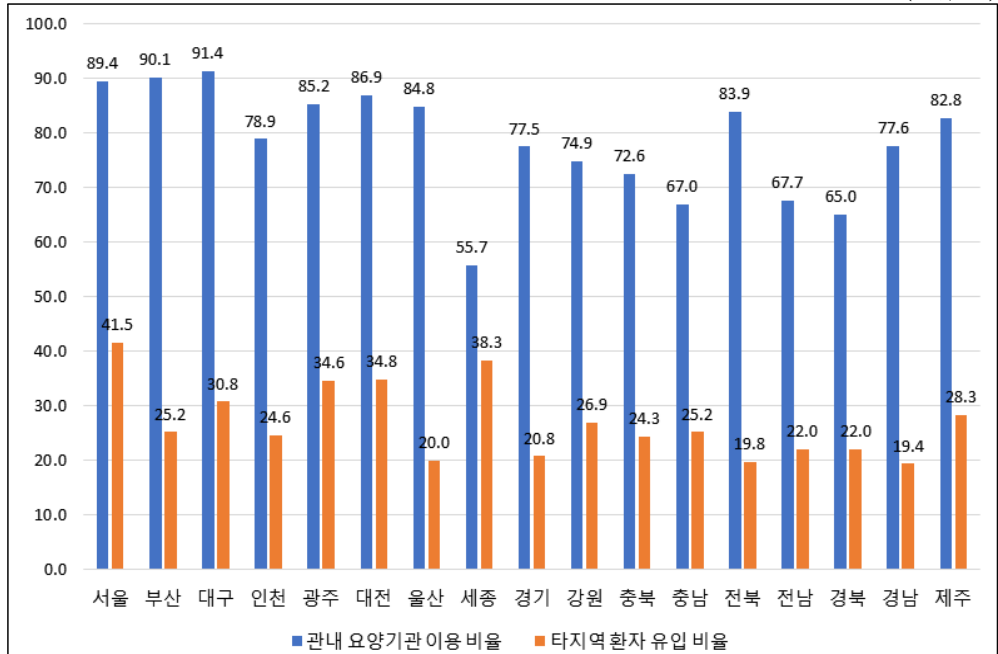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역 내 의료이용률(관내 요양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2750-303

기관 이용 비율)은 서울 89.4%, 부산 90.1%, 대구 91.4% 등 대도시권에 비해 충남 67.0%, 경북 65.0%, 세종 55.7%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타지역 환자 유입 비율 또한 서울이 41.5% 수준으로 지방 환자들의 서울 병원 “원정”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내 의료이용률(관내 요양기관 이용 비율) 및 타지역 환자 유입 비율 현황(2024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또한, 2024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00명 당 필수의료과목별 전문의 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평균 전문의 수는 2.00명이나, 비수도권 지역의 평균 전문의 수는 0.34명으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별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현황(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단위: 명/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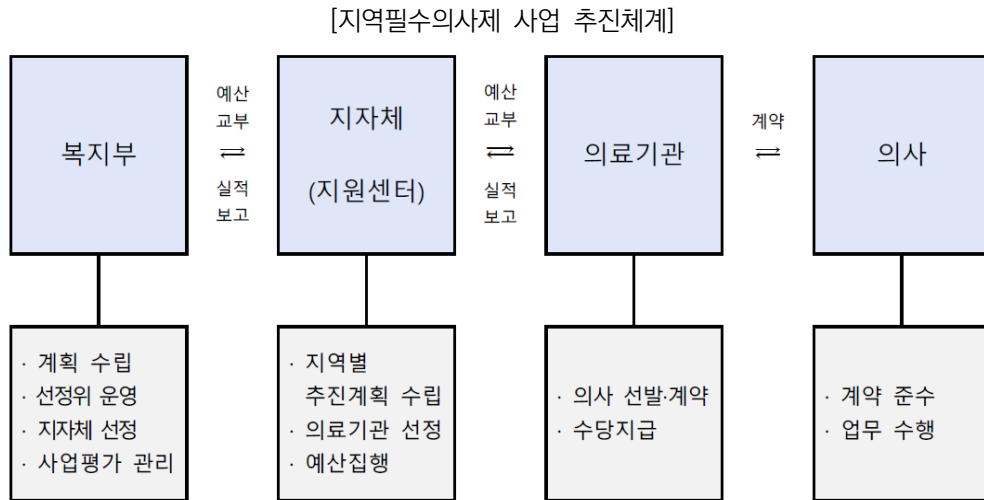
시도	합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응급 의학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서울	3.02	0.56	0.19	0.18	0.17	0.06	0.04	0.07	0.08
경기	2.42	0.47	0.15	0.16	0.19	0.07	0.02	0.05	0.08
부산	0.81	0.17	0.06	0.05	0.05	0.01	0.01	0.02	0.03
대구	0.59	0.12	0.04	0.04	0.04	0.01	0.01	0.02	0.02
인천	0.55	0.11	0.04	0.03	0.04	0.02	0.01	0.01	0.02
경남	0.53	0.11	0.04	0.03	0.04	0.01	0.01	0.02	0.02
광주	0.36	0.07	0.03	0.02	0.02	0.01	0.00	0.01	0.01
경북	0.36	0.07	0.03	0.02	0.02	0.01	0.01	0.01	0.01
대전	0.34	0.07	0.02	0.02	0.02	0.01	0.01	0.01	0.01
전북	0.34	0.07	0.03	0.02	0.02	0.01	0.00	0.01	0.01
충남	0.31	0.06	0.03	0.02	0.02	0.01	0.00	0.01	0.01
전남	0.29	0.05	0.03	0.02	0.02	0.01	0.00	0.00	0.01
강원	0.25	0.05	0.02	0.02	0.02	0.01	0.00	0.01	0.01
충북	0.24	0.04	0.02	0.02	0.02	0.01	0.00	0.01	0.01
울산	0.18	0.03	0.01	0.01	0.01	0.01	0.00	0.00	0.01
제주	0.12	0.02	0.01	0.01	0.01	0.01	0.00	0.00	0.00
세종	0.06	0.01	0.00	0.00	0.01	0.00	0.00	0.00	0.0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의 “지역별 종별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 및 통계청(2024)의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와 같이, 지방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고, 건강수준에서도 격차가 유발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바, 정부는 2024년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지역필수의사제”의 도입을 제시하였으며, 2025년 예산을 통해 지역 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지역의 의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5년 이상 장기근무할 것으로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한 8개 필수과목²⁾ 전문의에게 매월 400만원씩의 지역근무수당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 추진방식은, ① 공모 절차를 통해 지자체별 정주여건 제공 방안 연계 등을 평가하여 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하고, ② 각 지자체별로 사업 참여 전문의를 모집한 이후, ③ 선정된 전문의들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 추진 및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구조이다.³⁾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안내”

2026년 본예산에서는 2025년 선정된 4개 시·도 내 3개 지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8개 필수진료과 전문의 1명씩 총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2)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3) 지자체가 별도로 제공하는 정주여건의 경우, 주거, 교통편의, 연수, 연구활동, 자녀교육 등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금, 지역화폐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다양한 수단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2025년 선정된 지자체별 정주여건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 선정 지자체별 주요 지원내용]

- ▶(강원)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연계(연구활동 장려금, 의대생 실습책임 활동수당 등) 월 100만 원~200만 원 지역상품권, 리조트 등 지역관광 인프라 이용 지원
- ▶(경남) 지역필수의사 정착금(월 100만 원), 전입가족 환영지원금(1인 200만 원, 최대 800만 원), 자녀 양육지원금(1인 월 50만 원, 6개월이상 거주시 지급) 등
- ▶(전남) 교육부 RISE 연계(대학 기숙사 및 공공임대 활용 주거지원, 연수·연구비 지원), 생활 인프라(문화·여가시설 할인 등) 지원 등
- ▶(제주) 도지사-의료기관 간 거버넌스 토대로 지역필수의사 인원 배치 등 사업 기획, 의료기관별 숙소 지원 및 급여 상향 책정, 근무시간 조정 등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5.4.1.),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실시 - 4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수당⁴⁾을 계속 지원하는 예산 23억 400만원에 더해, 2026년 신규로 2개 시·도를 선정하여 총 20명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3개월간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2억 4,000만원 등 지역근무수당 25억 4,400만원(국고보조율 50%) 및 권역별 운영비 2억 5,000만원(국고보조율 50%) 등 27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정갈등의 여파로 인한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026년도 공중보건 의사(이하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하였고, 결과적으로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 또한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⁵⁾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공보의 감소 등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하였고,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신규로 5개 지자체에 20명씩 100명에 더해, 전국에 배치된 16개 보건의료원 개소당 2명씩 총 132명의 전문의를 추가로 선정하여 월 400만원씩 지역근무수당을 신규 지원하되, 신규 지원이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6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3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업비 7억 9,200만원 및 관련 운영비 1억 2,500만원 등 총 9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⁶⁾

4) 지역근무수당 지원 단가(월 400만원)의 경우, 2022년 기준 봉직의 평균임금(2억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기본적인 급여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6.3.13.), “전공의 수련 공백 등으로 인해 올해 공중보건 의사 급감, 농촌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해 ‘총력’”

6) 보건복지부는 신규 지자체 지원과 관련하여, 공모 및 선정 일정, 지자체 선정 후 권역별 지원센터 마련 등 사업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10월부터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 하에 3개월 분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구분		2026년 본예산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지역근무 수당	계속	- 4개시도 × 24명 × 4백만원 × 12개월 × 50% = 2,304백만원	- 4개시도 × 24명 × 4백만원 × 12개월 × 50% = 2,304백만원
	신규	- 2개시도 × 20명 × 4백만원 × 3개월 × 50% = 240백만원	- 2개시도 × 20명 × 4백만원 × 3개월 × 50% = 240백만원 - (추경 신규) 5개시도 × 20명 × 4백 만원 × 3개월 × 50% = 600백만원 - (추경 신규) 보건의료원 16개소 × 2명 × 4백만원 × 3개월 × 50% = 192백 만원
권역별 운영비	계속	- 4개시도 × 100백만원(인건비 60, 운 영비 40) × 50% = 200백만원	- 4개시도 × 100백만원(인건비 60, 운 영비 40) × 50% = 200백만원
	신규	- 2개시도 × 50백만원(인건비 30, 운 영비 20) × 50% = 50백만원	- 2개시도 × 50백만원(인건비 30, 운 영비 20) × 50% = 50백만원 - (추경 신규) 5개시도 × 50백만원 × 50% = 125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지역필수의사 채용 목표 인원이 2026년 본예산 대비 대폭 확대된다는 점,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필수의사 신규 채용 및 관련 예산의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동 사업이 신규 추진된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을 통해 채용된 전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12월말 기준으로 당초 목표 인원 96명 중 90명('26년 근무 예정 인원 4명 포함)의 전문의 모집이 완료되었으나, 모집된 인원 90명 중 27명(30%)이 4분기에 채용되는 등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전문의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기준 지역별로 채용된 필수의사의 근무 개시 월]

(단위: 명)

구분	합계	'25.7월	'25.8월	'25.9월	'25.10월	'25.11월	'25.12월	'26년 근무 시작
강원	24	1	4	7	5	6	-	1
경남	24	-	18	4	-	-	2	-
전남	19	-	8	8	-	3	-	-
제주	23	-	-	13	1	5	1	3
계	90	1	30	32	6	14	3	4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은 지역필수의사 확보 부진 문제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의 실집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 내역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지역필수의사 근무 지원 내역은 보건복지부가 교부한 예산 11억 5,200만원 중 6억 4,100만원이 실집행되고 나머지 5억 1,1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권역별 운영비 또한 보건복지부가 교부한 2억원 중 1억 2,000만원이 실집행되고 나머지 8,000만원은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 집행 및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지역필수의사 근무지원	1,152	1,152	1,152	1,152	1,152	641	-	511	55.6
권역별 운영비	200	200	200	200	200	120	-	80	60.0
합계	1,352	1,352	1,352	1,352	1,352	761	-	591	56.3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시·도별 사업 계획 구체화, 권역별 지원센터 설치·운영 준비, 지자체-의료기관

협력체계 가동 등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었고, 지자체별 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는 과정 중 지역근무수당의 성격(근로소득/기타소득)을 규정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국세청에 자문을 시행⁷⁾하는 등 사업 준비과정이 지연된 측면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의료인력의 지역 근무 기피 경향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실제 전문의 채용과정은 사업 준비가 완료된 지역 의료기관별로 채용 공고 및 계약 체결 등 순차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모집인원 중 65%가 4분기에 채용되어 실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이다.

2026년의 경우, 2025년 선정된 지자체 및 지역필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지역 근무수당 지원에 더해 신규로 2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하여 3개월간 총 40명의 지역필수의사를 지원하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지자체 공모 후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심의를 통해 3월 6일 신규 지원 지자체(충청남도, 경상북도)를 최종 선정한 상황이다.⁸⁾

하지만 이후 지자체별 최종 사업계획 수립,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지정, 권역별(지자체별) 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 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 채용 등 실제 지역필수의사 채용까지 필요한 절차들이 남아 있다.⁹⁾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2026년 본예산에서 신규 채용 목표로 계획한 인원(40명) 대비 3배를 초과하는 132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여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절차 및 절차별 소요기간, 의료인력의 지역 근무 기피 성향 등을 고려할 경우 지역근무수당 지급 관련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

특히,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신규 선정할 5개 시·도

7) 보건복지부는 국세청 자문 결과 등 사업을 통해 전문의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6.3.6.’), “충남·경북, 올 하반기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9) 보건복지부는 신규로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참고로, 2026년 3월말 현재 신규 대상 지자체 선정 후 지자체별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아직까지 신규로 채용된 전문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10)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2025년 지자체 시범사업 수요조사 실시 후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참여 의향을 보였으며, 2026년 대상 지자체 공모 시 12개 시·도 중 7개 시·도가 참여하는 등 지자체의 수요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에서는 본사업과 동일하게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추진하되, 최근 공보의 수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의료원을 신규 지원 대상으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원은 「지역보건법」상 병원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의료인력의 지방 근무 기피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 지원 대상인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도 전문의 채용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보건의료원이 지역필수의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 채용 목표 인원이 2026년 본예산 대비 대폭 확대된다는 점에 더해,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 보건의료원의 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필수의사 신규 채용 및 관련 예산의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실적 제고 및 참여 유도 방안 강구 필요(보건복지부)

(1) 현 황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은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및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퇴직 의사 등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2026년도 본예산은 72억 2,500만원이나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 급감에 따른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75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시니어의사 지원 내역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취약지 등 전문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4,243 (5,595)	16,280	17,567	1,287	7.9
시니어의사 지원	3,205	7,225	7,595	370	5.1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1. 괄호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의 2025년 예산을 포함한 내역임(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은 당초 별도 세부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26년부터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관되었음)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5년부터 퇴직의사 또는 퇴직 예정인 의사와 지역의 공공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연계하여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동 내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퇴직(또는 예정) 의사 등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 고용장려금 성격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수요 및 시니어의사의 선호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전일제(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시 월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2750-303

1,100만원을, 시간제(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근무 시 월 400만원을 지원한다. 채용 대상이 되는 시니어의사는 전문의 취득 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무 경력²⁾이 있는 60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 의과 의사이고, 대상 기관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 보건(지)소·보건의료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본예산을 통해 2025년 지원 목표로 설정한 전일제(1형) 시니어의사 80명과 시간제(2형) 시니어의사 30명 등 총 110명을 대상으로 각각 월 1,100만원, 월 40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계속 지원(12개월분)하는 예산에 더해, 2026년 신규로 전일제 20명, 시간제 30명 등 50명을 선정하여 6개월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등 채용지원금 70억 2,000만원 및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 500만원 등 총 72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보의 급감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전일제 시니어의사 15명, 시간제 시니어의사 5명 등 총 20명을 추가 선발하여 4개월간 채용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2) 전문의 취득 이후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 일반의* 면허 취득 이후 20년 이상 임상 경력(병원급 이하 포함)

*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의 경우에만 일반의 지원 가능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구분	2026년 본예산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일제 (1형)	- (계속) 80명×월11백만원×12개월×국비 50% = 5,280 - (신규) 20명×월11백만원×6개월×국비 50% = 660	- (계속) 80명×월11백만원×12개월×국비 50% = 5,280 - (신규) 20명×월11백만원×6개월×국비 50% = 660 - (추가 신규) 15명×월11백만원×4개월×국비 50% = 330
시간제 (2형)	- (계속) 30명×월4백만원×12개월×국비 50% = 720 - (신규) 30명×월4백만원×6개월×국비 50% = 360	- (계속) 30명×월4백만원×12개월×국비 50% = 720 - (신규) 30명×월4백만원×6개월×국비 50% = 360 - (추가 신규) 5명×월4백만원×4개월×국비 50% = 40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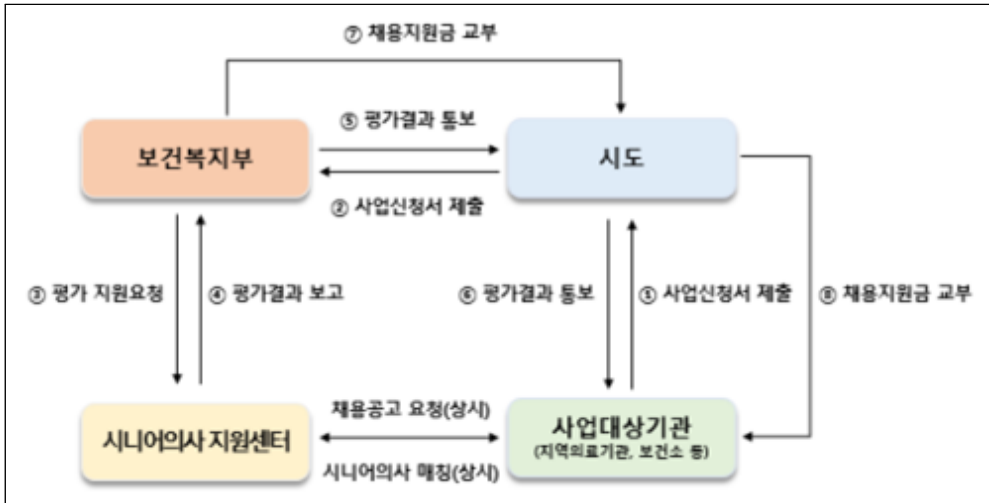
(2) 분석의견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은 의료인력의 지역 기피 문제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 목표 대비 실제 채용 실적이 다소 저조한 상황이므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본예산 및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목표로 설정한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니어의사 인력 매칭 플랫폼인 ‘닥터링크’의 기능개선을 추진하는 등 시니어의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사업 세부추진 계획 및 채용지원금 지침을 마련·확정한 후, 지역 의료기관 등이 각 시·도를 통해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기관은 시니어의사 지원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의사 인력 매칭 플랫폼인 ‘닥터링크’ 등을 활용하여 기관 특성에 적합한 시니어의사를 채용하고 지원 받은 채용지원금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추진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집행 지침('25.4.)

보건복지부는 2025년 예산을 통해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2025년 4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채용지원금 신청 안내 및 관련 지침을 통보하였고, 2025년 5월 채용지원금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6월에는 채용지원금 대상 기관 선정결과(1차)를 통보하였으며, 이후 채용지원금 지원 대상 추가 공모 계획 및 안내(6월), 국고보조금 1차 교부(7월), 채용지원금 추가 선정평가(8월), 채용지원금 추가 선정결과 통보(9월) 및 국고보조금 2차 교부(11월)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추진결과, 당초 보건복지부는 110명(전일제 80명, 시간제 30명)의 시니어 의사 채용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5년 12월말 기준 10개 지자체(시·도)에 총 99명이 채용지원금 지원 대상 인원으로 선정되었고, 실제 의료기관에 채용된 시니어의사는 총 85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단위: 명)

지역	선정 인원			채용 인원
	전일제	시간제	소계	
부산	-	2	2	2
경기	13	2	15	15
강원	13	4	17	13
충북	2	1	3	2
충남	17	4	21	20
전북	4	9	13	10
전남	5	1	6	3
경북	17	-	17	17
경남	3	-	3	1
제주	2	-	2	2
합계	76	23	99	85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은 2025년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채용지원금 지원 기간을 6개월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6개월 이상 채용이 가능한 경우 실제 채용기간 만큼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예산 편성상 목표로 한 110명보다 적은 99명을 선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동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시 향후 시니어의사 채용 계획을 제출한 의료기관도 함께 선정하였으나,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지속적인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의 지역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실제 채용까지 진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니어의사 인력풀 확보 및 채용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니어의사 지원 센터에서 ‘닥터링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능적 측면에서의 한계로 인해 의료기관의 채용 공고 등록부터 기관과 시니어의사의 매칭 등 전반적인 관리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낮고 의료기관-시니어 의사간 매칭률 제고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의료인력의 지역 근무 기피 문제에 대응하여 지역 필수

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시니어의사 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년도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한 계속 지원 인원 84명³⁾ 중 2025년 12월말 기준 실제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시니어의사는 76명인 바, 보건복지부가 2026년 본예산을 통해 신규로 채용하고자 한 목표 인원 50명에 더해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20명 등 신규 지원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⁴⁾

정리하자면,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은 의료인력의 지역 기피 문제 등으로 인해 당초 목표인원 대비 실제 채용 실적이 다소 저조한 상황이므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본예산 및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목표로 설정한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니어의사 인력 매칭 플랫폼인 ‘닥터링크’의 기능개선을 추진하는 등 시니어의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2025년 선정된 의료기관 중 1개소가 채용지원금 계속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84명으로 조정되었다.

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3월말 현재 신규 지원 인원 선정절차 진행 중으로, 13개 시·도 총 112개 기관에서 194명에 대한 채용지원금 지원을 신청하였으므로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

**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상담인력 채용 관리 및 SI 관련 인프라 구축 예산
편성의 필요성 검토 필요 등(보건복지부)**

(1) 현 황

보험정책사업관리 사업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강화,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라 제약회사 또는 재료 제조(수입)사로 하여금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보험 급여·비급여 결정 및 상한금액 결정 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독립적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4억 300만원 대비 49억 7,200만원 증액된 53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보험정책사업관리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보험정책사업관리	5,769	403	5,375	4,972	1,233.7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지원	4,914	-	4,972	4,972	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는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고려하여 소비를 활성화하고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각 시기별로 민생지원금(2021년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2025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25년부터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별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활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대응 인력 및 시스템 확충 등 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바, 정부는 민생지원금 지원을 위한 예산 외에

건강보험료 상담 등을 위한 인력 지원, 서버 증설 등 전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178개 지사별 2명씩 356명에 더해, 본부 및 6개 지역본부에 16명 등 총 372명의 단기 상담인력을 7주간 채용·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와 수당, 4대보험료, 사무기기 렌탈비, 상담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인력채용비 등 총 19억 9,200만원,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서버 증설 등을 위한 전산 인프라 구축 예상 소요액(37억원)의 80% 수준인 29억 2,200만원 등 4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일부 변경된 내역이 있는데, 먼저 1) 민원대응 지원의 경우, 본부 및 6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6명의 상담인력을 운영하되, 공단 지사를 가급과 나급으로 구분하여 가급지 지사 100개소에는 2명씩, 나급지 지사 78개소에는 1명씩 278명을 배치하는 등 총 294명의 단기 상담인력을 2개월간 채용·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¹⁾와 연차보상비, 4대보험금 등 총 2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2) 전산 인프라 구축은 민원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상담전용 AI 모델개발용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 15억 3,500만원과 AI 고객상담 서비스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하는 데에 13억 8,700만원 등 총 29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다.

1) 인건비 단가는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월 1,604,800만원에서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준 월 2,156,88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지원 내역사업의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합계	4,914	4,972
고객센터 및 지사 민원상담 지원	○ 전국 178개 지사별 2명씩 + 본부·6개 지역본부 16명 등 총 372명 채용 = 1,922백만원 - 인건비 1,045백만원 = 10,030원 × 7주 × 5일/주 × 8시간/일 × 372명 - 수당 239백만원 = 10,030원 × 8시간/일 × 8일 × 372명 - 4대보험금 142백만원 = (인건비 1,060 + 수당 243) × 10.86% - 사무기기 렌탈 120백만원 = PC·전화기 등 렌탈 18.4만원/4주 × 372개 × 7주 - 사전교육·인력채용비 446백만원 = 372명 × 1.2백만원	○ 가급지 지사 100개 × 2명 + 나급지 지사 78개 × 1명 + 본부 4명 + 6개 지역본부 12명 등 총 294명 = 2,050백만원 - 인건비 1,268백만원 = 2,156,880원 × 2개월 × 294명 - 연차보상비 24백만원 = 2,156,880/209 × 8시간 × 1일 × 294명 - 4대보험금 145백만원 = (인건비 1,268 + 수당 24) × 11.20% - 사무기기 렌탈 108백만원 = PC·전화기 등 렌탈 18.4만원 × 294개 × 2개월 - 채용·교육 등 제경비 505백만원 = 294명 × 1.72백만원
전산 인프라 보강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예상 소요(37억원)의 80% 수준(낙찰차액 고려) 반영: 2,922백만원	○ 상담전용 AI 모델개발용 장비 도입: 1,535백만원 ○ AI 고객상담 서비스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도입: 1,387백만원

주: 2026년 본예산에는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지원” 내역사업 예산이 미편성되었으므로, 전년도 추경예산안 편성 내역과 비교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로,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편성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계층별, 거주지별로 차등을 두어 취약계층·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5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본 금액에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속하지 않는 소득하위 70% 국민에 대해서도 거주지에 따라 비수도권은 5만원, 인구감소우대지역은 10만원, 인구감소특별지역은 15만원의 추가금이 지급된다.²⁾

(2) 분석의견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지원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단기 상담인력의 실제 채용 실적 및 관련 예산의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민원상담 인력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당초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보건복지부는 단기 상담인력 채용 규모와 관련하여 2021년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참고하여 전국 178개 지사별 2명씩, 본부 및 6개 지역본부에 16명씩 총 372명을 7주간 채용·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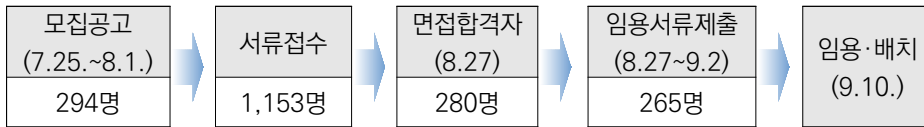
그러나 실제 단기 상담인력의 채용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당초 목표로 설정한 372명에서 인력 규모를 일부 조정하여 총 294명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 7월말부터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서류접수 및 면접전형을 거쳐 9월 10일 총 265명의 단기 상담인력을 채용하여 배치·운영하였다.³⁾

2) 인구감소우대·특별지역은 2026년 본예산의 '지방우대원칙' 수립 당시 적용한 기준을 준용하며 우대지역 49곳과 특별지역 40곳이 이에 해당한다.

3) 단기 상담인력의 근로계약기간은 '25.9.10.~11.7.

[2025년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지원 관련 단기 상담인력 채용 현황]

○ 채용일정·경과



○ 권역별 합격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본부	서울 강원	부산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전라 제주	대전세종 충청	인천 경기
모집인원	294	3	72	44	32	38	34	71
합격자	265	3	70	44	31	33	23	61
계획 대비 미달	29	-	2	-	1	5	11	1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로 인해,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해 편성된 19억 2,200만원 중 12억 5,400만원만이 실집행되고 나머지 7억 3,800만원은 불용 처리되는 등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5년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지원 내역사업 중 민원대응 인력 지원 관련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국민건강보험공단)					
	본예산	추경	집행액	교부액	교부 현액(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민원대응 인력 지원	-	1,992	1,992	1,992	1,992	1,254	-	738	63.0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기 인력 채용의 특성상 충분한 인력을 충원하는 데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고, 실제 상담인력 배치 시 지역별 수요나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채용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집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향후 민생지원금 지급 규모 및 지원 대상 기준 등 구체적인 사안이 확정될 경우, 사업 준비기간 및 민생지원금 지급 일정에 맞춰 단기 상담인력을 신속하

고 효과적으로 채용·운영할 필요가 있고, 특히 2026년 추진 예정인 민생지원금의 선별지급 기준이 작년과 상이할 경우, 건강보험료 확인·조정 등 관련 민원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위해서도 신속한 상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추경예산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바, 보건복지부는 단기 상담인력 확보 방안 및 지역별 인력 활용계획, 상담인력 교육 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함으로써 상담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치·운영되고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경예산안 편성 요건을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전산 인프라 구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민생지원금 선별지급 시 필요한 전산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상담전용 AI 모델개발용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 15억 3,500만원, AI 고객상담 서비스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 13억 8,700만원 등 총 2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AI 기반 고객상담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상담전용 AI 모델개발용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민생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민원 상담의 효율성과 품질을 제고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공단의 고객센터 응대율은 83.5%⁴⁾로 평상 시에도 민원인 100명 중 17명은 문의·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민생지원금 선별지급이 시작될 경우 보험료 확인이나 조정 등 민원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단기간 내 대량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담전용 AI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한 상담서비스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 ('25년) 인입 2,448만 건 중 2,045만 건(83.5%) 상담응대

[2026년 민생지원금 선별지급 관련 HW, SW 구매목록 및 예상 비용]

(단위: 식, 천원)

구분	유형	명칭	수량	단위	소요비용
합계					2,922,000
AI 서비스용 GPU 장비	GPU 서버	ILenovo SR675 V3	1	식	605,000
	랙	DELL 19" 표준랙, KVM 스위치 포함	1	식	16,500
AI모델개발용 GPU 장비	GPU 서버	Lenovo SR675 V3	1	식	605,000
	GPU	NVIDIA H200 NVL 141GB Passive GPU	4	식	308,000
AI 플랫폼 증설	MLOps (분석 플랫폼)	스파클링 소다	1	식	55,000
	생성형AI 보안	Sphinx AI v2.0_32Core 기준	1	식	440,000
	Konan LLM/RAG/LLMOps	Konan LLM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_ENT11	1	식	253,000
	온톨로지 SW	Graph DB 기반 온톨로지	1	식	280,907
음성봇 소프트웨어	지능형음성봇 모듈	봇프레임워크 라이선스	100	CH	80,850
	보이스 게이트웨이	보이스게이트웨이 라이선스	100	CH	70,070
	TTS	TTS 라이선스 증설 및 고도화	100	식	26,950
	STT	음성봇 라이선스	100	식	26,950
		챗봇 연동 라이선스	100	식	26,950
	음성봇 API 게이트웨이	C-hub 영구사용 라이선스 200 동시접속	100	CH	64,680
서버도입 및 증설에 따른 필수 SW	서버보안	RedCastle	1	식	3,850
	서버접근제어	DBSafer for System	1	식	2,750
	계정관리	eNgenIM	1	식	770
	패스워드관리	APPM	1	식	770
	통합관제	Zenius-SMS	1	식	2,750
	보안관제	QTIE	1	식	2,750
	취약점진단	Solidstep CCE	1	식	770
	백업SW	Netbackup	1	TB	16,500
	OS백업	Arcserve UDP v10.0 Standard Edition	1	식	1,650
	OS	Red hat 9.4x	1	식	2,750
	OS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Physical or Virtual Nodes)	1	식	2,750
	PaaS 플랫폼	VIOLA K8s Engine BareMetal Edition	1	식	15,400
	통합관제	Zenius-SMS 신규	1	식	3,300
	계정관리	eNgenIM 신규	1	식	770
	패스워드관리	APPM 신규	1	식	770
	접근제어	DBSafer for System 신규	1	식	2,750
	OS백업	Arcserve UDP v10.0 Standard Edition 신규	1	식	1,1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AI의 발전속도 및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도 확대 경향 등을 고려하면 민생지원금 지급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상담업무 영역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정 부분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추경예산은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소요가 발생한 경우(예측불가능성), 또는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시급성)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 바,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AI 기반 고객상담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할 필요성 및 시급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홈페이지·모바일 웹 등 서버를 추가 도입하고 데이터베이스 CPU를 증설하였으며, 관련 필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등 민생지원금 지급 관련 민원 대응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전산 인프라를 既 구축한 상황이다.

[2025회계연도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지원 내역사업 중 전산 인프라 보강 관련 실집행 내역]

보조세목	세부내역	집행금액	집행일자
자산취득비 (430-01)	소계	2,922,000	2025.11.12.
	- 홈페이지·모바일앱 WEB/WAS 서버 추가 도입(2식)	165,000	
	- 홈페이지·모바일앱 DB 서버 CPU/메모리 자원 증설(2식)	156,200	
	- 홈페이지·모바일앱 스토리지 증설(2식)	127,600	
	- 모바일앱 SSL가속 및 암호화 장비 도입(2식)	374,000	
	- 서버 도입 및 자원 증설에 따른 필수 소프트웨어(53종)	2,099,200	

자료: 보건복지부, 2025회계연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따라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경예산안 편성 요건을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전산 인프라 구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지원 내역사업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수급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①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②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노동자·청년 등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③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기업·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에너지·신산업 전환, 공급망 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정부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서민층이 겪게 되는 이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에게 1인당 10~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며,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별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활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대응 인력 및 시스템 확충 등 업무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보험정책관리 사업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내역사업명은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금번 추경예산안의 취지와 목적이 명확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원금 명칭에 부합하도록 동 내역사업명을 수정함으로써 추경예산안 편성의 취지 및 목적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IX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개 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8조 4,850억 5,0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22조 2,833억 5,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245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35조 9,08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93억원 증액되었다. 또한 총지출은 38조 2,14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386억원 증액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기후에너지환경부	총수입	7,147,019	8,485,050	8,485,050	-	-
	총지출	16,587,447	21,758,837	22,283,358	524,521	2.4
고용노동부	총수입	34,738,193	35,698,647	35,907,960	209,313	0.6
	총지출	37,209,173	37,676,128	38,214,743	538,615	1.4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은 총 5개이며, 이 중에서 신규로 편성된 과목은 없다.

주요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예수금이 3,062억 700만원 증액되었으며, ② 기후대응기금은 기금예수금 2,356억 500만원 증액과 같은 금액의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기금예수금	-	2,395,336	2,701,543	306,207	12.8
환경개선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6,360,082	5,462,180	5,469,680	7,500	0.1
전력산업 기반기금	기금예탁 이자수입	6,790	12,649	6,960	△5,689	△45.0
기후대응기금	기금예수금	319,910	100,000	335,605	235,605	235.6
기후대응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309,187	1,148,851	913,246	△235,605	△20.5
합계		7,995,969	9,119,016	9,427,034	308,018	3.4

주: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5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없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국제정세 속 정책금융의 선제적 지원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에 2,204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기화물차 보조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9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현재확액(A))	추경안(B)	(B-A)	(B-A)/A
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전출	6,360,082	5,462,180	5,469,680	7,500	0.1
환경개선 특별회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 업	87,815	85,309	87,209	1,900	2.2
환경개선 특별회계	생활주변 미세 먼지 관리사업	42,366	31,376	36,976	5,600	17.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 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233,025	237,618	4,593	2.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무공해차 보급사업	1,900,854	2,284,513	2,374,513	90,000	3.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에너지바우처	481,541	494,027	504,257	10,230	2.1
전력산업 기반기금	농어촌전기공 급사업	115,034	114,952	151,276	36,324	31.6
전력산업 기반기금	전력효율향상	371,432	125,922	127,210	1,288	1.0
전력산업 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168,212	214,332	276,712	62,380	29.1
전력산업 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426,300	648,000	868,469	220,469	34.0
전력산업 기반기금	SI기반 분산전 력망 산업육성	-	217,116	275,916	58,800	27.1
기후대응기금	공공자금관리 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45,012	45,672	49,206	3,534	7.7
기후대응기금	산업·일자리전 환 지원	11,219	8,753	11,042	2,289	26.2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현계회계)(A)	추경안(B)	(B-A)	(B-A)/A
기후대응기금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107,593	108,575	121,411	12,836	11.8
기후대응기금	CCU메가프로젝트(R&D)	-	20,000	42,405	22,405	112.0
합 계		10,119,485	10,095,778	10,633,900	540,148	5.4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현계회계액을 기재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은 총 2개이다.

주요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법정부담금 2,093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②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계정간전입금 225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임금채권보장기금	법정부담금	430,680	440,883	650,196	209,313	47.5
근로복지진흥기금	계정간전입금	57,887	40,172	62,753	22,581	56.2
합계		488,567	481,055	712,949	231,894	48.2

주: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4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

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801억 3,300만원, ② 지방균형발전과 청년고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257억 5,000만원, ③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쉬었음·취업준비 청년의 도약을 지원하고 AI 시대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에 2,530억 2,400만원, ④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899억 4,400만원, ⑤ 보증·담보여력이 낮은 취약근로자 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금융회사를 통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에 225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현계확약)(A)	추경안(B)	(B-A)	(B-A)/A
일반회계	국민취업지원 제도	1,010,865	1,012,830	1,092,963	80,133	7.9
일반회계	청년일자리창 출지원	791,426	907,959	933,709	25,750	2.8
일반회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291,779	284,752	311,221	26,469	9.3
일반회계	청년고용지원 인프라운영	109,730	106,820	108,000	1,180	1.1
일반회계	내일배움카드 (일반)	596,161	627,325	880,349	253,024	40.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산업맞춤 형 일자리지원	137,864	150,108	162,108	12,000	8.0
고용보험기금	고용유지지원 금	81,368	70,225	88,784	18,559	26.4
고용보험기금	비통화금융기 관예치	6,965,780	6,893,689	6,875,130	△18,559	△0.3
임금채권 보장기금	채불청산지원 용자	86,356	70,635	160,579	89,944	127.3
임금채권 보장기금	비통화금융기 관예치	121,127	42,025	161,394	119,369	284.0
근로복지 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 용자	106,342	89,432	98,407	8,975	10.0
근로복지 진흥기금	신용보증대위 변제	86,331	37,734	60,315	22,581	59.8
근로복지 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 계정전출	57,887	40,172	62,753	22,581	56.2
근로복지 진흥기금	비통화금융기 관예치	167,335	188,221	156,665	△31,556	△16.8
합 계		10,591,927	10,521,927	11,152,377	630,450	6.0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현계확약을 기재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가.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다양화를 고려한 기금편성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1) 현 황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¹⁾은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2,143억 3,200만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태양광 설비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제 정세로 인한 국민 에너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23억 8,000만원이 증액된 2,767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수정 ¹⁾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168,212	214,332	276,712	62,380	29.1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 사업은 ① ‘주택지원’(단독·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지원), ② ‘건물지원’(일반건물, 상업 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고, 기술개발·실증을 거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범보급 지원), ③ ‘융복합지원’(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간 융합 또는 지역 마을단위의 구역복합 보급사업 지원), ④ 세계태양광총회 개최지원, ⑤ ‘사후관리’(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후 A/S,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지원), ⑥ ‘원스톱서비스지원플랫폼 구축’(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운영 지원), ⑦ ‘공공주도 산단 태양광’(산단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기업 컨설팅, 수요발굴 등) 등 총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구한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전력산업기반기금 5202-303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주요 내용	'26예산
보조	주택지원	단독,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설치비 일부 지원	25,665
	건물지원	건물 등에 설치 지원, 신재생 설비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45,867
	융복합지원	에너지원간 융합 지원, 특정지역 내 주택, 공공·상업 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구역복합 지원	128,980
	세계 태양광총회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 개최 지원	1,450
출연	사후관리	고장접수지원센터 및 A/S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	3,490
	원스톱 서비스플랫폼	발전사업 정보제공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풍력발전 합동지원단 운영	4,603
	공공주도 산단태양광	산업단지 공장 지붕 등 태양광 설치 검토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4,277
계			214,33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2억원, 일반건물, 학교, 전통시장에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51억 8,000만원, 일반가정의 베란다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기 위하여 250억원 등 총 62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편성내역]

구분	편성내역
주택지원	- 태양광 2,200백만원 - 단독주택 964건 × 3kW × 1.9백만원 × 40% = 2,200백만원
건물지원	- 태양광 35,180백만원 - 일반건물 1,008건 × 54.2kW × 1.5백만원 × 40% = 32,780백만원 - 학교 32건 × 100kW × 1.5백만원 × 40% = 1,920백만원 - 전통시장 16건 × 50kW × 1.5백만원 × 40% = 480백만원
가정형 태양광1) (신규)	태양광 100,000가구 × 1.0백만원 × 25% = 25,000백만원
계	62,380백만원

주: 1) 가정형 태양광의 경우 지방비 지원 50% 예정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 분석의견

첫째, 기금 증액분이 태양광 분야에만 편성되어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구조가 심화한 바, 향후 적정 재생에너지원 조합에 맞추어 기금을 편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전부 태양광 발전 설비에 국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이전부터 태양광에 집중된 기금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이러한 집중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 사업명	2026년 당초 기금운용계획	2026년 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택 지원	- 주택지원 : 25,665백만원 가. 태양광 (14,956백만원) · (단독) 5,000건 × 3kW × 1.9백만원 ×	- 주택지원 : 27,865백만원 가. 태양광 (17,156백만원) · (단독) 5,964건 × 3kW × 1.9백만원 ×

(단위: 백만원)

내역 사업명	2026년 당초 기금운용계획	2026년 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0% = 11,400백만원 · (공동) 252건 × 25.2kW × 1.4백만원 × 40% = 3,556백만원 나. 비태양광(10,709백만원) · (태양열) 800건 × 16.7㎡ × 1.0백만원 × 50% = 6,680백만원 · (지열) 230건 × 17.5kW × 1.3백만원 × 50% = 2,616백만원 · (기타) 소형풍력 20백만원, 설치확인 1,393백만원	40% = 13,600백만원 · (공동) 252건 × 25.2kW × 1.4백만원 × 40% = 3,556백만원 나. 비태양광(10,709백만원) · (태양열) 800건 × 16.7㎡ × 1.0백만원 × 50% = 6,680백만원 · (지열) 230건 × 17.5kW × 1.3백만원 × 50% = 2,616백만원 · (기타) 소형풍력 20백만원, 설치확인 1,393백만원
건물 지원	○ 건물지원(320-01) : 45,867백만원 가. 태양광(28,747백만원) · (일반) 426건 × 54.2kW × 1.5백만원 × 40% = 13,869백만원 · (BIPV) 40건 × 42.5kW × 6.2백만원 × 70% = 7,378백만원 · (학교 태양광) 100건 × 100kW × 1.5백만원 × 40% = 6,000백만원 · (전통시장 태양광) 50건 × 50kW × 1.5백만원 × 40% = 1,500백만원 나. 비태양광(17,120백만원) · (태양열) 130건 × 43.7㎡ × 1.4백만원 × 50% = 3,977백만원 · (지열) 35건 × 47.8kW × 1.5백만원 × 50% = 1,255백만원 · (기타) 10건 × 327백만원 × 50% = 1,635백만원 · (시범사업) 12건 × 1,035백만원 × 80% = 9,936백만원 · (BIPV 설계지원) 40건 × 264백만원 × 3% = 317백만원	○ 건물지원(320-01) : 81,047백만원 가. 태양광(63,927백만원) · (일반) 1,434건 × 54.2kW × 1.5백만원 × 40% = 46,649백만원 · (BIPV) 40건 × 42.5kW × 6.2백만원 × 70% = 7,378백만원 · (학교 태양광) 132건 × 100kW × 1.5백만원 × 40% = 7,920백만원 · (전통시장 태양광) 66건 × 50kW × 1.5백만원 × 40% = 1,980백만원 나. 비태양광(17,120백만원) · (태양열) 130건 × 43.7㎡ × 1.4백만원 × 50% = 3,977백만원 · (지열) 35건 × 47.8kW × 1.5백만원 × 50% = 1,255백만원 · (기타) 10건 × 327백만원 × 50% = 1,635백만원 · (시범사업) 12건 × 1,035백만원 × 80% = 9,936백만원 · (BIPV 설계지원) 40건 × 264백만원 × 3% = 317백만원
가정형 태양광 (신규)	-	○ 가정형 태양광 : 25,000백만원 · (태양광) 100,000가구 × 1.0백만원 × 25% = 25,000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라 증액되는 내역사업인 주택지원, 건물지원, 가정형 태양광을 기준으로 2026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태양광 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는 437억 300만원, 비태양광 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는 278억 2,900만원으로 태양광 분야에 대한 지원비율이 61.1%이다. 그러나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라 태양광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태양광 분야에 대한 지원규모가 1,060억 8,3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태양광 분야에 대한 지원비율은 79.2%로 증가하게 되었다.

[주택지원, 건물지원, 가정형 태양광 지원 증가에 따른 발전분야별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주택지원 건물지원 가정형 태양광	태양광		43,703	61.1	106,083	79.2
	비태양 광	소계	27,829	38.9	27,829	20.8
		태양열	10,657	14.9	10,657	8.0
		지열	3,871	5.4	3,871	2.9
		BIPV	317	0.4	317	0.2
		시범사업	9,936	13.9	9,936	7.4
		기타	3,048	4.3	3,048	2.3
계			71,532	100.0	133,912	10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 정세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부족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비태양광 설비에 비해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가정형 베란다 사업 등 태양광 설비 사업에 집중하여 기금을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발전량 중 태양광 발전량의 비중이 51.8%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같은 태양광에 집중된 기금 편성은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획일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발전 현황]

구분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력	연료전지	IGCC	해양	계
설비용량(GW)	23.9	2.2	1.8	1.8	1.1	0.3	0.3	31.4
발전량(GWh)	29,288	3,382	12,577	3,716	6,164	997	438	56,562
발전비중(%)	51.8	6.0	22.2	6.6	10.9	1.8	0.8	100.0

자료: 산업통상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따라서 다양한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태양광 발전설비에도 기금을 편성하는 등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향후에는 재생에너지의 다각화를 고려한 기금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에 대한 지방비 지원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정책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가정형 태양광 사업은 일반가정의 베란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비 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신규 편성되었다.

[가정형 태양광 사업 상세 편성내역]

구분	세부 편성내역
가정형 태양광 (신규)	○ 태양광 100,000가구 × 1백만원 × 25% = 25,000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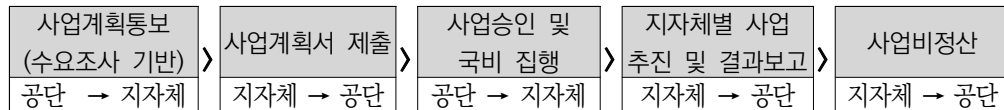
이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베란다 태양광 설치비(국산 500W기준)가 1백만원이고, 2026년 보급 목표가구인 10만 가구²⁾를 대상으로 기존 유사사업의 국비 지원비

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200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2026년 10만, 2027년 30만, 2028~2030년 60만 가구씩 지원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율을 고려하여 250억원의 기금을 신규 편성한 것이다.

동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정형 태양광 사업 추진계획]



이는 2016년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에 따른 미니태양광 설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이를 통해 당시 지방비 50% 지원만 받던 미니태양광 설비에 대해 2016년~2018년 동안 국비 25%를 추가 지원하여 베란다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 제고를 꾀한 바 있다.

다만,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베란다 태양광 설비에 대한 보조율이 80%에 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이 상이한 상황에서 지방비 지원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추진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중복지원 및 과도한 보조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5년 공동주택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발전용량이 400W~500W인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단가의 85%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바 있다.

[2025 부산광역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5년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나. 사업내용: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부산시에서 지원 다. 사업기간: 2025. 6. 2. ~ 2025. 12. (선착순 지원) 라. 사업예산: 150백만원 ※자부담금 별도 마. 사 업 량: 100여 가구 ※ 공동주택(경비실),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30개소 정도 별도 바.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소재 공동주택 소유자 중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 사. 지원설비: 500W 이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1식 ※가구당 1대 아. 지원금액: 설치 단가의 85% 지원 ※민간(자부담) 별도 자. 지원유형: 개별, 공동주택 경비실 지원 차. 설치형태: 거치형(발코니, 베란다 등), 앵커형(경비실 옥상 등)				
제품 현황	참여기업	발전용량	설치가격	부산시 보조금(85%)	자부담(15%)
	A	400W	870,000원	739,500원	130,500원
	B	500W	1,000,000원	850,000원	150,000원

자료: 부산광역시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2025년 5월 공동·단독주택 50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설치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바 있다.

[2025 성남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보급제품 보조금 및 자부담금 현황]

(단위: W, 원)

업체	보급제품			보조금	자부담
	제품형태 ¹⁾	용량	가격		
A	거치형	445	950,000	760,000	190,000
		890	1,900,000	1,520,000	380,000
	앵커형	445	1,000,000	800,000	200,000
		890	2,000,000	1600,000	400,000
B	거치형/앵커형	390	840,000	672,000	168,000
	거치형/앵커형	780	1,680,000	1,344,000	336,000

주: 1) 거치형은 난간 거치형, 앵커형은 건물 옥상 앵커형을 의미하며, 베란다 태양광 설비는 주로 난간 거치형을 의미함.

자료: 경기도 성남시

다만,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 자부담 측면에서 단독주택 지원사업(자부담 60%)과 가정형 태양광 설비 사업(자부담 25%)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별 베란다 태양광 설비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베란다 태양광 설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나. 이차보전 사업의 사업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1) 현 황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¹⁾은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6,480억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정책금융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2,204억 6,900만원이 증액된 8,684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수정 ¹⁾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426,300	648,000	868,469	220,469	34.0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2024년까지 생산 및 시설자금, 운전자금, 신산업융자금 등으로 구분되었으나, 2025년에는 생산 및 시설자금과 운전자금만 지원하였고,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생산 및 시설자금 내역사업만 편성되었다.

생산 및 시설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생산,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태양광 융자액 4,760억원, 풍력 및 기타 비태양광 융자액 1,700억원, 생산자금 융자액 20억원으로 구성된다.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전력산업기반기금 5202-304

[생산 및 시설자금 내역사업 계획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2025 수정계획	2026 계획안
태양광 시설자금	$1,231\text{백만원/MW} \times 483.3\text{MW(목표량)}$ $\times 80\%(\text{평균용자율}) = 476,000$	332,300	476,000
비태양광 시설자금	풍력 및 기타 = 170,000	90,000	170,000
생산자금	$1 \times 2,000\text{백만원} = 2,000$	2,000	2,000
합계		424,300	648,0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구체적으로 시설자금 중 ① 태양광 분야는 정책연계와 일반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정책연계에는 2026년 신규로 추진하는 RE100산단, 영농형 태양광, 햇빛연금 등이 포함되고, 일반지원은 기존에 추진해 왔던 농촌, 산단, 도심분야 태양광이 포함된다. 태양광 분야는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300억원 이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용자가 시행된다. 총사업비 중 국고 지원비율은 정책연계의 경우 85% 이내, 일반지원의 경우 75% 이내에서 결정되고, 기업 유형에 따라 국고 지원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2025년 8월 기준 태양광 시설자금 용자의 이자율은 1.75% 수준이고, 지원비율은 개인·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은 75%, 중견기업은 55%, RE100 대기업은 35%이다.

② 풍력 분야는 2026년 신규로 추진하는 바람연금과 기존에 추진해 왔던 일반지원으로 구분되나, 두 유형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된다. 풍력 분야는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이 800억원 이내이며,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시행된다. 또한, 총사업비 대비 국고 지원비율은 75% 이내에서 결정된다.

③ 비태양광 기타 분야의 경우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100억원에서 150억원 이내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에 총사업비 대비 국고 지원비율은 75% 이내에서 결정된다. 다만, 바이오 분야의 경우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④ 생산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100~300억원 이내이며, 마찬가지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에 총사업비 대비 국고 지원비율은

75% 이내이다. 마찬가지로 바이오 분야의 경우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용자가 시행된다.

[2026년도 자금용도별 용자 지원 조건]

자금용도		지원대상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및 이자율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 ³⁾
태양광	정책연계 (RE100산단, 영농형 태양광, 햇빛연금 등)	중소, 중견, 공공, 대기업의 경우 RE100 참여기업 및 공급망기여 형 기업 ¹⁾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는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²⁾	중소기업 (개인 및 협동조합) : 80% 이내
	일반지원		300억원 이내		중견기업 (또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 75% 이내
	풍력 정책연계(바람연금) 및 일반지원		800억원 이내		
	비태양광 기타		100억원~150억원 이내		
생산자금			100~300억원 이내		대기업 : 45% 이내

주: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생산 기업 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생산
 하는 제품을 설치하는 대기업

2) 2026년 1분기 1.75%

3) ‘정책연계형 지원대상’, ‘일반지원형 지원대상 중 우선지원 대상’은 해당 지원비율에 5%p 상향
 함(중소(개인 및 협동조합) 85% 이내, 중견(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80% 이내, RE100 참여기업
 중 대기업 50% 이내)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용자) 사
 업은 다양한 에너지원 설비에 대한 용자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햇빛소득마
 을 용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금 예산을 신규로 편성함에 따라 총 2,204억 6,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자금운용계획변경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당초 계획	2026년 자금운용계획변경안
태양광 시설자금	○ (태양광) 476,000 = 100MW × 1,250 × 85% + 370MW × 1,250 × 80%	○ (태양광) 610,469 = 110MW × 1,250 × 85% + 494.5MW × 1,250 × 80%
비태양광 시설자금 (생산자금 포함)	○ (육상풍력) 80,000 = 8건(40MW, 개소당 1,000억원) × 10% ○ (해상풍력) 80,000 = 1건(100MW, 80,000) × 10% ○ (기타) 10,000 = 10MW × 1,250 × 80%	○ (육상풍력) 120,000 = 8건(40MW, 개소당 1,000억원) × 15% ○ (해상풍력) 120,000 = 1건(100MW, 80,000) × 15% ○ (기타) 10,000 = 10MW × 1,250 × 80%
태양광 이차 보전금 (신규)		○ 이차보전금(320-05) : 6,000 가. (태양광) 6,000 = 340MW × 1,250 × 85% × 2.5% × 8/12개월
계	220,469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에 신규 편성된 이차보전 사업은 집행실적 부진으로 폐지된 바 있던 사업이므로 향후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자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햇빛소득마을 용자와 관련하여 약정된 금리와 금융기관의 실제 금리에 대해 차액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이차보전금 60억원을 신규편성하였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이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소득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²⁾이다. 이번 자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햇빛소득마을 대규모 확산(약 150→700 개소)을 위해 직접대출과 이차보전을 병행하여 지원을 할 계획이다.

- 2)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소득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양광 이차보전 사업 사업개요]

〈지원대상〉

-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통해 선정된 발전사업자
 - 마을주민이 직접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참여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에 공유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
 -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선정의 경우 별도 공고 시행 예정

〈지원근거〉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기후부고시 제6절 금융지원사업

〈지원기준〉

- 이차보전사업 지원기준 및 대상, 금리 등 세부 사항 검토 및 금융기관 협의 후 확정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출내역을 보면, 이는 태양광 설비용량 1MW당 12억 5,000만원의 단가를 산정하고, 햇빛소득마을은 정책연계형 지원대상으로서 85%의 지원비율이 적용되며, 이차보전 지원대상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부담하는 금리가 1.75%가 되도록 2.5% 상당의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써 60억원의 기금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5년 12월 실시된 햇빛소득마을 수요조사 결과 약 600개소에서 450MW의 수요가 제출됨에 따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 중 110MW는 내역사업 태양광 시설자금 융자사업에 반영되었으며, 340MW는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햇빛소득마을 자금지원규모 상세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당초 계획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증감액
수요 조사 결과	○ 450MW = 600개소 × 0.75MW(마을당 평균)		
정책 융자	○ 106,250 = 100MW × 1,250 × 85%	○ 116,875 = 110MW × 1,250 × 85%	10,625
이차 보전	-	○ 6,000 = 340MW × 1,250 × 85% × 2.5% ¹⁾ × 8/12개월	6,000

주: 1) 이차보전율(2.5%) = 융자금 차입금리(4.25%) - 대출이율(1.7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 계획안에 신설된 태양광, 풍력 분야 정책연계 융자의 일부를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햇빛연금, 바람연금, RE100산단 태양광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39번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한 축으로 제시되었고, 동 사업의 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지원될 예정이었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관련 국정과제 내용]

〈과제목표〉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 햇빛/바람연금 확대, RE100산단 구축 등 지역 균형성장 기반 마련

자료: 국무조정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2년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융자사업의 일부를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용한바 있었으나, 지속적인 불용으로 인한 실집행 부진이 문제됨에 따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이차보전 사업을 폐지한바 있다. 2023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산업통상부 소관 사업 중 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된 사업들의 경우 이차보전금이 전액 불용된바 있었다.

[2023 회계연도 산업통상부 소관 융자→이차보전 사업방식 변경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 기금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내역사업명	비목명	2023년 예·결산 현황		
				예산(계획) 현액	교부액	불용액
예특 회계	에너지절약 시설설치 (융자) (5139-302)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기타민간 융자금	256,834	256,834	-
			이차보전금	1,500	-	1,500
전력 기금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5202-304)	생산 및 시설자금	기타민간 융자금	457,170	457,170	-
			이차보전금	3,130	-	3,130
	녹색혁신 금융(융자) (5202-306)	주민참여 자금	기타민간 융자금	36,614	36,614	-
			이차보전금	188	-	188
합계			기타민간 융자금	750,618	750,618	-
			이차보전금	4,818	-	4,818

자료: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차보전금 사업은 융자사업에 비해 초기 자본 투입이 적어 적은 예산으로도 큰 규모의 투자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재개했다는 입장이다. 동 사업에서도 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604.5MW의 설비를 확보하는데 6,014억 6,900만원의 기금이 요구되었으나,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340MW의 설비를 확보하는데 60억원의 기금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MW당 소요 기금도 태양광 융자사업은 약 10억 1,000만원, 이차보전 사업은 약 1,80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태양광 시설용자 사업과 태양광 이차보전 사업의 비교]

내역 사업명	상세 산출내역	1MW당 소요 기금
태양광 시설자금	□ 기타민간융자금 : 610,469백만원 ○ (산출) 110MW × 1,250백만원 × 85% + 494.5MW × 1,250백만원 × 80%	1,009.9백만원
태양광 이차보전	□ 이차보전금 : 6,000백만원 ○ (산출) 340MW × 1,250백만원 × 85% × 2.5% × 8/12개월	17.6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동 사업의 집행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용자의 경우 사업자의 이자 부담이 1.75%이나,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개인 신용대출 금리 중 2.5%를 보전받게 되는데, 신용도나 담보에 따라 대출금리가 4.25%를 넘게 되는 경우 정책용자보다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이차보전 선택 유인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실질 부담 이자가 1.75%로 고정 되도록 하거나, 사업자에 대한 보증을 강화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차보전금 자금조달 및 이차보전을 산정방식]

구분	내용
이차보전방식	간접보전방식(금융기관 경유형)
이차보전율	2.5%(고정)
자금조달	금융기관 재원 활용
금리방식	분기별 변동금리
지원대상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둘째, 정책용자와 사업자의 이자부담이 동일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이나, 보증을 강화하기 위한 보증료를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는 기금 산출내역보다 더 많은 기금소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셋째, 이차보전 사업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용자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은행 금리변동에 따른 불안정성, 자금 안정성 측면에서 정책용자 사업이 이차보전 사업에 비해 선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용자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이차보전을 받기보다 차년도 용자사업을 대기하는 등으로 수요가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넷째, 산출내역에 따르면 동 사업은 5월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이 4월 초에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공고, 용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고려했을 때,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집행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2026 햇빛소득마을 사업 선정의 추진일정(안)에 따르면 8월에야 착수에 들어갈 예정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햇빛소득마을 추진 일정(안)]

* 햇빛소득마을 추진 일정(안)

- 1차 접수: 신청 마감(5월 말) → 평가(6월) → 선정(7월) → 착수(8월)
- 2차 접수: 신청 마감(7월 말) → 평가(8월) → 선정(9월) → 착수(10월)

자료: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이차보전사업 추진 일정(안)]

구분	사업 추진내용 ¹⁾
2/4분기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이차보전사업 세부기준 수립 - 은행 금리조사 및 지원대상 기준 검토, 관련규정 개정수요 파악 등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이차보전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이차보전 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에서 햇빛소득마을 선정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추천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여 및 정기상환 실행
3/4분기	○ (필요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추가 접수 및 추천서 발급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이차보전사업 대여 및 정기상환 실행
4/4분기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 등

주: 1) 상기일정은 은행과 세부기준 협의 및 지원대상사업(햇빛소득마을)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에 이차보전사업이 집행부진으로 폐지된 이력이 있던 점, 이차보전사업이 정책융자사업에 비해 선호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현장의 신청 수요의 철저한 검증, 이차보전 사업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 사업자의 실질적 부담이 정책융자 사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한 보증도입 및 제도 재설계 등 향후 불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연료비 보전 지원 편중 및 구조적 개선 투자 미흡 (기후에너지환경부)

(1) 현 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정세로 인한 에너지 단가 상승에 대처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효율향상,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농어촌전기공급사업 등 4개 세부사업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편성하였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등유, LPG 사용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0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내역사업 사회복지시설 전기화사업을 12억 8,800만원 증액하였다.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은 내역사업 도서자가발전 시설운영지원에서 발전결손비를 지원하기 위해 363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비용 절감 및 효율개선 강화를 위해 128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으로 편성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A)	추경안 (B)	
계		1,075,600	843,476	904,154	60,678
예특	에너지바우처	481,541	494,027	504,257	10,230
전력 기금	전력효율향상	371,432	125,922	127,210	1,288
전력 기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15,034	114,952	151,276	36,324
기후 기금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107,593	108,575	121,411	12,836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세부사업별 2026년 제1회 추경안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년 본예산(당초계획)	2026년 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 494,027 · 에너지바우처 488,844 ·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3,311 · 사업운영비 1,872	○ 에너지바우처 : 504,257 · 에너지바우처 : 498,844 ·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3,311 · 사업운영비 : 2,102
전력효율향상 (사회복지시설 전기화)	○ 사회복지시설 전기화 : 1,288 · 설치지원 1,288	○ 사회복지시설 전기화 : 2,576 · 설치지원 2,576
농어촌전기 공급사업 (도서자가 발전시설 운영지원)	○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 87,842 · 지자체 결손지원 8,595 · 기술지원 821 · 한전결손지원 78,426	○ 도서자가발전시설운영지원 : 124,166 · 지자체 결손지원 9,698 · 기술지원 821 · 한전결손지원 113,647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시공·물품지원 냉방지원 사업운영비)	○ 시공·물품지원 : 90,075 · 가구 89,910 · 사회복지시설 165	○ 시공·물품지원 : 101,540 · 가구 98,790 · 사회복지시설 2,750
	○ 냉방지원 : 15,740 · 가구 15,200 · 사회복지시설 540	○ 냉방지원 : 17,100 · 가구 15,200 · 사회복지시설 1,900
	○ 사업운영비 : 1,028 · 시스템 운영·관리 290 · 콜센터 운영 등 255 · 사업관리 483	○ 사업운영비: 1,039 · 시스템 운영·관리 290 · 콜센터 운영 등 255 · 사업관리 494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 분석의견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나, 증액분의 대부분이 연료비 보전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빈곤을 근본적으로 탈피하기 위한 구조적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크게 무공해차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 등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확대하는 사업과, 에너지바우처, 농어촌전기공급사업 등 에너지 단가 상승에 취약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증액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사후 연료 보전을 위한 경비에 치중되어 있으며,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투자성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되어 있다.

먼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은 전기 미공급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신규 전기공급과 도서의 자가발전시설 운영 결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국제정세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리터당 연료비 단가를 본예산 대비 500원 가량 높게 책정함에 따라 증액분 363억원 전액이 내역사업 도서자가발전 시설운영지원에 투입되었다.

[도서자가발전 시설운영지원 사업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세 산출내역]

내역 사업명	상세 산출내역
도서자가 발전시설 운영지원	□ (산출) 최근 유가 인상을 감안하여 리-우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했던 '22년 결산 단가(등유 : 1,205원, 면세경유 : 1,261원)에 최근 환율(1,450원) 적용하여 연료비 단가 산정 ○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중 한전 운영도서 연료비 35,221백만원 증액 : '26년 본예산 807.7원/ℓ × 8,623만ℓ × 75%(보조율) → '26년 추경안 1,352.4원/ℓ × 8,623만ℓ × 75% ○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중 지자체 운영도서 연료비 1,103백만원 증액 : '26년 본예산 936.6원/ℓ × 308만ℓ × 75%(보조율) → '26년 추경안 1,415원/ℓ × 308만ℓ × 7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다음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등유·LPG 사용 20만가구에 대한 5만원 추가지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 증액을 위해 102억 3,000만원의 증액이 이루어졌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산출내역]

내역 사업명	상세 산출내역
에너지 바우처	□ 추경안(5만원 추가 지원) 관련 산출근거 ○ 등유 평균사용량 106L(3~5월) × 등유 평균가격 상승분(289원*) = 30,634원 * 등유 평균판매가격 1,312원('26.2.20.) → 1,601원('26.3.12.) ○ 등유 평균가격 상승분에 추가 상승률(50%)* 고려한 50,000원 지원 * 289원 × 50% = 144.5원, 106L × 144.5원 = 15,317원 □ 사업운영비(230백만원) 관련 산출근거 ○ 카드 제작 및 배송 : 20만 세대 × 70%(전액사용자) × 1,000원 = 140백만원 ○ 카드 사용 수수료 : 20만 × 5만원(추가지원금) × 0.4% = 40백만원 ○ 등유·LPG 예외지급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 50백만원 □ 등유·LPG 사용 20만가구 : 에너지공단(사업수행기관) 바우처관리시스템상 추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과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단가 상승에 대한 보전성 경비로서 전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 중 약 76.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선하는 투자성 사업은 전력효율향상 사업과,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으로 두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 중 약 23.3%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유형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본예산 (당초 계획) (A)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변경 계획) (B)	증감액(백분율) (B-A)
연료비 보전 ¹⁾	581,869	628,423	46,554(76.7%)
투자성 사업 ²⁾	108,131	122,255	14,124(23.3%)
계	692,026	752,704	60,678(100%)

주: 1) 도서자가발전 시설운영지원 사업, 에너지바우처사업

2) 사회복지시설 전기화 사업,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고효율 전기설비·시스템 보급지원에 따라 전기수요를 절감하려는 사업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히트펌프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내역사업 사회복지시설 전기화 사업에 12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사회복지시설 전기화 사업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세 산출내역]

내역 사업명	상세 산출내역
사회 복지시설 전기화	☐ (설치지원) 2,576백만원 (74개소 × 43.5백만원/개소 × 80%) ☐ (산출단가) ○ 히트펌프(32kW급) 설치비 평균값 : 23.8백만원 ○ 태양광 발전설비(3kW) 상한액 : 4.93백만원 ⇒ 산정결과 : (23.8 + 4.93 × 4) × 80% ≈ 34.8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에어컨 교체 등을 실시하여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사업 전반적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되었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세 산출내역]

내역 사업명	상세 산출내역
시공· 물품지원	□ ('26) 90,075백만원 → ('26추경) 101,540백만원, 11,465백만원 증액 ○ (산출) 가구 : 3.7만 가구 × 24만원(단가 상향분) = 8,880백만원 시설 : 235개소(추가 지원시설) × 11백만원 = 2,585백만원
냉방지원	□ ('26) 15,740백만원 → ('26추경) 17,100백만원, 1,360백만원 증액 ○ (산출) 시설 : 150개소(기존) × 20만원 + 350개소(규모확대) × 380만원 = 1,360백만원
사업운영비	□ ('26) 1,028백만원 → ('26추경) 1,039백만원, 11백만원 증액 ○ (산출) 사업관리(11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의 근본 원인이 노후 주택의 낮은 에너지 효율과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전성 경비에 대한 지원은 대외 변수에 따라 추경을 반복하게 할 우려를 야기할 수 있으며, 에너지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2027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자립형 복지로 구조적 개선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1) 현 황

무공해차 보급사업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²⁾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³⁾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무공해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2조 2,845억 1,300만원이나, 소상공인 등이 주로 구매하는 소형 전기화물차의 보조수량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900억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무공해차 보급사업	1,900,854	2,284,513	2,374,513	90,000	3.9
전기자동차 보급	1,521,770	1,611,370	1,701,370	90,000	5.6
수소차 보급	721,830	576,200	576,200	0	0
친환경 도로청소차 보급사업	5,600	8,760	8,760	0	0
무공해차 구매 용자	0	73,500	73,500	0	0
운영비	13,904	14,683	14,683	0	0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 전기승합(버스), 전기기륜차의 구매 자금 일부를 정액으로 보조(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보조)하여 전기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33-311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자동차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해마다 집행 실적이 저조해 매년 예산의 이월·불용이 발생하여 목표 물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22~2025 전기차 보급사업 실적행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변경							
2022	17,190	17,190	14,463	1,110	15,573	13,887	974	712	89.2
2023	19,180	19,180	15,730	966	16,856	13,397	1,126	2,333	79.5
2024	17,340	17,340	11,750	1,125	12,875	9,935	331	2,609	77.2
2025	15,218	12,301	11,754	330	12,084	11,047	488	547	91.4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동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본예산 대비 2,790억원(18.3%) 이 감액된 바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불용이 예상되는 전기승용(21,550대, 646억 5,000만원)·전기화물차(21,435대, 2,143억 5,000만원) 물량에 해당하는 예산을 감액한 것이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내역]

구분	차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제2회추경		차이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전기차 (자치단체 보조)	전기 승용	7,020억원	234,000대 × 3백만원	6,373.5억원	212,450대 × 3백만원	646.5억원
	전기 화물	5,460억원	54,600대 × 10백만원	3,316.5억원	33,165대 × 10백만원	2143.5억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 분석의견

전기화물차 사업은 상반기 수요 증가를 이유로 9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부진하였고,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에서도 대규모 감액된 이력이 있는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전기화물차 사업은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900억원은 전액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에 편성되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제1회 추경안 편성 현황]

내역 사업명	2026년 본예산	2026년 1회 추경안
전기 자동차 보급	○ 자치단체 보조 1,208,700백만원 · 전기승용 624,000백만원 · 전기버스 70,000백만원 · 전기버스(어린이통학용) 34,500백만원 · 전기화물 286,700백만원 · 전기이륜 16,000백만원 · 전환지원금 177,500백만원	○ 자치단체 보조 1,298,700백만원 · 전기승용 624,000백만원 · 전기버스 70,000백만원 · 전기버스(어린이통학용) 34,500백만원 · 전기화물 376,700백만원 · 전기이륜 16,000백만원 · 전환지원금 177,500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화물차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산출내역]

내역 사업명	상세 산출내역
전기화물차 (지자체)	□ 추경안 900억원 산출근거 ○ 전기화물(지자체) 286,700백만원: 화물 28,670대 × 10백만원 → 376,700백만원: 37,670대 × 10백만원(2026년 제1회 추경안)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대해 2026년 2월말 기준 전기화물차 보급실적이 전년 동기간 대비 크게 확대됨에 따라⁴⁾ 증가한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 증액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4) 2026년 2월말 기준 전기화물차가 7,029대 보급되어 전년동기(2,291) 대비 수요가 크게 확대(+207%)

그러나 연초의 일시적 수요 확대의 사유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초기 데이터를 근거로 9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부정확한 추계로 인한 예산 불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예산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서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진바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화물차 사업도 매년 예산 불용이 발생해 왔다.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민간경상보조 (320-01)	104,720	104,720	209,720	209,720 〈170,895〉
(전기 승용)	78,000	78,000	183,000	196,620 〈162,596〉
(전기 승합)	-	-	-	-
(전기 화물)	26,720	26,720	26,720	13,100 〈8,299〉
지자체자본보조 (330-03)	1,417,050	1,138,050	1,033,050	965,633 〈903,588〉
(전기 승용)	702,000	637,350	532,350	525,371 〈511,755〉
(전기 승합)	153,050	153,050	153,050	131,739 〈104,965〉
(전기 화물)	546,000	331,650	331,650	295,910 〈277,472〉
(전기 이륜)	16,000	16,000	16,000	12,613 〈9,396〉
합계	1,521,770	1,242,770	1,242,770	1,175,353 〈1,074,483〉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2025년 전기화물차 사업 예산 대비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예산	실집행	불용액	예산	실집행	불용액	예산 ¹⁾	실집행	불용액
600,000	594,695	5,305	630,000	238,658	391,342	358,370	285,771	72,599

주: 1)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예산편성 당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기화물차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방비 확보 물량은 29,620대로 나타났는데, 추경안과 같이 37,67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 불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⁵⁾.

「2026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부담 비율은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⁶⁾인데, 30%로 가정하고 추산할 경우 수요조사에 따른 지방비 확보 금액은 총 888억 6,000만원이며, 이번 추경으로 보조 예정인 37,670대를 전부 집행하기 위해서는 1,130억 1,000만원이 필요하므로 최소 241억 5,000만원의 지방비가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5) 지방교부세가 늘어(4.7조원) 지방비 확보가 늘어날 수 있으나, 전기화물차 예산 증액으로 이어질 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6)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이 상이하나,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국비 보조금의 30%를 지급하고 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지방자치단체 전기화물차 수요 현황]

(단위: 대, 백만원)

구분	총 지방비 확보 물량	지방비 부담 금액 ¹⁾
서울	1,779	5,337
부산	1,219	3,657
대구	517	1,551
인천	1,308	3,924
광주	613	1,839
대전	561	1,683
울산	543	1,629
세종	60	180
경기	5,776	17,328
강원	1,349	4,047
충북	1,497	4,491
충남	2,148	6,444
전북	1,615	4,845
전남	2,211	6,633
경북	2,728	8,184
경남	2,641	7,923
제주	3,055	9,165
계	29,620	88,860

주: 1) 동 수치는 지방비 보조금이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2026 전
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해 추산한 수치이며, 실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상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보조율은 상이하나,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지방
자치단체는 대부분 국비 보조금의 30%를 지급하고 있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라서 전기화물차 사업의 초기 수요 증가 원인이 불분명한 시점에서 추경을
통한 사업물량 확대는 예산 불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후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 CCU메가프로젝트(R&D)의 기술개발 성과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 예산 편성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현 황

CCU메가프로젝트(R&D)¹⁾는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CO₂ 多배출 산업(철강, 발전)의 CO₂ 공급부터 CCU²⁾ 제품생산까지 연계되는 CCU 기술의 스케일-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200억원이나 실증설비 기초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24억 500만원이 증액된 424억 500만원이 편성되었다.

[CCU메가프로젝트(R&D)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수정1)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CCU메가프로젝트 (R&D)	-	20,000	42,405	22,405	112.0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 NDC 달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부문별 감축목표 10대 부문 중 CCU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CCU 메가프로젝트(R&D) 사업을 2026년에 신규 도입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2025.11.)에 따르면 2026년 488억으로 산업별 공정 연구 및 기초공사가 병행되는 계획이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가 11월에야 종료되어 2026년 본예산으로 연구 중심의 예산만 200억원이 편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2026년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실증부지 기초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224억원)을 이번 추경안에 편성하였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66)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431-326

2)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CO₂를 포집하여 항공유 등 고부가가치물질로 전환하는 기술

[CCU메가프로젝트 총 소요 예산(에타 통과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26	국고 편성예산	2027	2028	2029	2030	합계
국고	488.05	200	619.08	528.75	386.56	357.38	2,379.82
발전	123.82	50.70	202.38	208.40	175.34	166.42	876.36
철강	364.23	149.30	416.7	320.35	211.22	190.96	1,503.46
지방비	4.00		4.00	4.00	4.00	4.00	20.00
발전	4.00		4.00	4.00	4.00	4.00	20.00
민자	208.27		301.14	347.90	281.47	267.22	1,406.00
발전	49.0		118.00	126.00	111.00	101.00	505.00
철강	159.27		183.14	221.90	170.47	166.22	901.00
합계	700.35	412.27	924.18	880.65	672.06	628.58	3,805.82
발전	176.82	103.70	324.38	338.40	290.34	271.42	1,401.36
철강	523.53	308.57	599.80	542.25	381.72	357.16	2,404.4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CU메가프로젝트 2026년 제1회 추경안 편성내역]

2026년도 본예산	추경안 증액 내역
<발전, 5,070백만원> - e-SAF* 생산공정 연구 및 검증: 3,160백만원 × 1개 주관 과제 × 9/12개월 = 2,370백만원 * CO ₂ 를 전환하여 만든 지속가능항공유 - CO ₂ 직·간접전환 공정 연구 및 검증: 1,800백만원 × 1개 주관 과제 × 9/12개월 = 1,350백만원 - e-SAF 품질 고도화 요소 연구: 1,800백만원 × 1개 주관 과제 × 9/12개월 = 1,350백만원 <철강, 14,930백만원> - 건식 개질, 메탄올 생산공정 연구 및 검증: 18,106백만원 × 1개 주관 과제 × 9/12개월 = 13,580백만원 - CO ₂ 포집, CO 생산 공정 연구 및 검증: 1,800백만원 × 1개 주관 과제 × 9/12개월 = 1,350백만원	<발전, 5,687백만원> - e-SAF 생산공정 설계·인허가 및 실증부지 토목 기초 공사 등: 4,874.7만원 × 1개 주관 과제 × 7/12개월 = 2,843.5백만원 - CO ₂ 직·간접전환 공정 설계·인허가 및 실증부지 토목 기초 공사 등: 4,874.7만원 × 1개 주관 과제 × 7/12개월 = 2,843.5백만원 <철강, 16,718백만원> - CO ₂ 포집, CO 생산공정 설계·인허가 및 실증부지 토목 기초 공사 등: 14,329.7만원 × 1개 주관 과제 × 7/12개월 = 8,359백만원 - 건식 개질, 메탄올 생산공정 설계·인허가 및 실증부지 토목 기초 공사 등: 14,329.7만원 × 1개 주관 과제 × 7/12개월 = 8,359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전 분야의 경우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CO₂를 전환하여 지속가능항공유(e-SAF) 생산 기술개발 및 실증이 추진된다. 철강 분야의 경우 철강-석유화학 산업 연계 CCU 기술 실증을 통한 온실가스 대량 감축 및 플랫폼 화합물 생산기술 실증이 이루어진다.

[CCU메가프로젝트(R&D)의 실증 내용]

분야	부지 및 CCU 실증 내용
발전	○ (실증부지) 충청남도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저탄장 부지 ○ (주요내용) 화력발전소에 발생하는 CO₂를 전환하여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생산하는 기술 실증 ○ (실증 규모) CO₂ 활용(4,000t/y) 및 e-SAF 생산(550t/y)을 위한 CO₂ 직접 전환 파일럿 시스템 등 구축
철강	○ (실증부지)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제철소 내 부지 및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 (주요내용) 제철 공정 CO₂를 전환하여 저탄소 메탄올(선박용 친환경 연료), 합성가스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실증 ○ (실증 규모) CO₂ 활용(16,500t/y) 및 메탄올(6,570t/y)생산 등을 위한 CO₂ 포집 설비, 전식개질 실증 설비 등 구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분석의견

CCU메가프로젝트(R&D) 사업은 생산공정 연구개발이 이루어진 후 실증이 가능하므로 연구개발 성과를 고려하고, 공정 기본설계, 실증부지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026년도 추경안에 편성된 실증부지 공사비는 집행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CCU메가프로젝트(R&D) 사업은 CO₂를 항공유, 친환경 선박유 등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생산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사업으로, 당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2026년 본예산에 신규로 도입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추경안 편성에 대해 2026년 예산 편성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미달한바, 국내 CCU 기술 역량(포집, 전환 등)을 결집하여 비교적 단기간(57개월)에 총 2개 플랜트 합산 연간 2만톤 규모의 CO₂ 감축이 가능한

실증플랜트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실증부지 공사, 연구시설·장비 제작, 구입, 적용 등을 위한 사업 초반부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고유가, 기후위기 등 당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의 대규모 실증설비 구축을 통해 신속히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CCU메가프로젝트(R&D)는 2026년~2030년간 총 3,806억원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CCU 기술개발 이후 실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술개발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초 연구시설·장비 도입시기와 실증부지 기초공사를 차년도에 추진할 계획하에 공고가 진행되었으므로, 추경 편성으로 일정이 앞당겨질 경우, 설계, 부지 인허가, 기초공사, 대형 연구장비 도입 발주·제작 진행이 차질없이 진행 가능한지 집행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

당초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경우, 제1차 제안요청서 공고(1.23~2.23), 제2차 제안요청서 공고(2.25~3.6.)가 완료되었으며, 선정평가 및 사업추진위원회(3월~4월 중)를 거쳐 4월말에 사업 협약 체결 예정이다. 현재 사업공모 및 선정평가는 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본예산으로 공모 및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된 상황이며, 추경이 편성될 경우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추가 편성된 예산을 반영하여 의결하고 연구기관이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추가 편성 예산을 반영하여 계획서 작성 및 협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협약 체결 이후, 기존 연구데이터 및 파일럿 실증데이터 분석, 촉매 레시피 도출 등을 4월에 추진하고, 5~8월에 요소기술별 공정시스템 검증 및 CO₂ 포집·전환설비 공정 기본설계, 실증부지 인허가 전략 수립을 검토하며, 9~12월에 실증부지 기초공사 착수 및 대형 연구장비 도입 발주·제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공정 기본설계, 실증부지 인허가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발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는 2차년도에 진행하며 1차년도는 도입에 시일이 소요되는 장비(다이아 프램 등 2~3년 예정)를 우선 발주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어, 인허가 추진 상황을 보아가며 장비 발주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기획당시 1차년도 488억에 대해 기술개발 및 기초공사, 발주계획이 세워져 있던만큼 예산이 200억에서 424억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기획대로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철강의 경우 제철소 내 기 활용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CCU메가프로젝트(R&D) 사업은 생산공정 연구개발이 이루어진 후 실증이 가능하므로 연구개발 성과를 고려하고, 공정 기본설계, 실증부지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026년도 추경안에 편성된 실증부지 공사비는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목표인원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등
(고용노동부)**

(1) 현 황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¹⁾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1조 128억 3,000만원이나 I 유형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및 청년지원단이 신설되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816억 4,300만원이 증액된 1조 929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국민취업지원제도	1,010,865	1,012,830	1,092,963	81,643	7.9
I 유형	864,842	873,620	953,753	80,133	9.2
II 유형	145,058	138,245	138,245	-	-
청년지원단	-	-	1,510	1,510	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26) 1,012,830백만원 → (‘26 추경) 1,092,963백만원(+80,133백만원)
* (목표인원) 35만명 → 38만명 (+3만명)
① I 유형: (‘26) 873,620백만원 → (‘26 추경) 952,243백만원(+78,623백만원)
* (목표인원) 24.2 → 27.2만명 (+3만명)
② II 유형: (‘26) 138,245백만원 → (‘26 추경) 138,245백만원
* (목표인원) 10.8만명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26 추경) 1,51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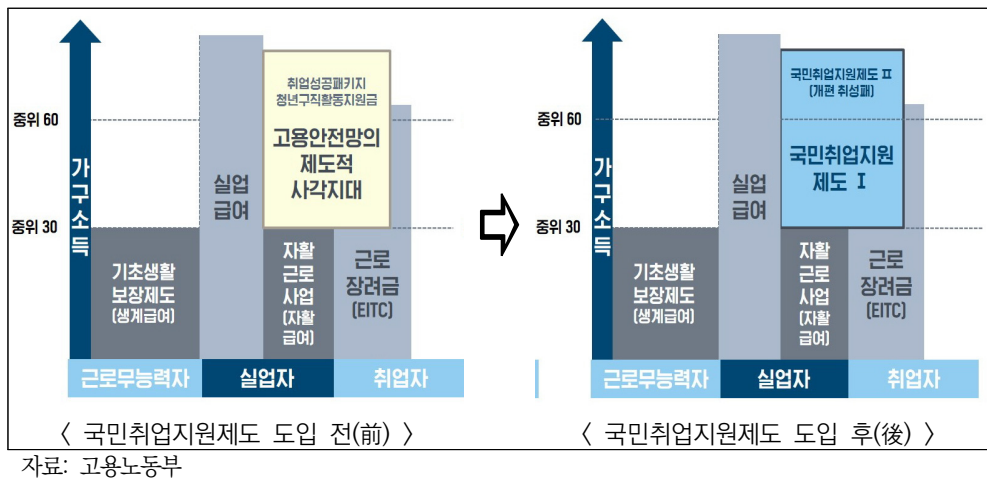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234-30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근로의사는 있으나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 구직자 등(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업자, 고용보험 혜택이 종료된 실업자,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다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구직자 등)에게 소득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전·후 고용안전망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최근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요건심사형은 저소득층이면서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선발형은 저소득층이지만 취업 경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촉진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는 수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요건심사형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자로 확정되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지만, 선발형의 경우 요건에 해당하여 신청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하에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개요]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유형)	
사업기간 (재원)	2021~계속(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병행하여 고용안정망 사각지대 해소				미취업 청·장년층 및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대상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 유 형	요건 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선발 시 고려
		선발형 (청년) ¹⁾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	선발 시 고려
	Ⅱ 유 형	특정계층 ²⁾	15~69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청년층 ¹⁾	15~34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중장년층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관
	주: 1) 청년층 연령조건은 15~34세이나, 병역의무 이행기간(최대 3년) 가산이 가능함 2) 특정계층: 조건부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기간	수당 등 소득지원 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1년 + 사후관리 기간은 3개월)					
지원수준	-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 민간위탁비: 기본 45만원				-취업활동계획수립수당: 15~25만원 -취업성공수당: 50만원, 100만원 -민간위탁비: 기본 45~70만원	
목표인원	본예산 242,000명 → 추가경정예산 272,000명				본예산 108,000명	
운영체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부정수급	사후경보기능 및 취업지원전산망(www.work24.go.kr)으로 부정수급 관리					

주: 목표인원은 당해연도 신규인정자를 말하며(이월자는 제외), 사업기간, 지원대상·기간·수준 등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동일함

자료: 고용노동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은 구직 준비 중인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직업상담사, 인적자원관리(HR), 공공행정 등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수준은 참여하는 청년 대상 인건비로 월 16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총 12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신규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 개요]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내용	구직 준비 중인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직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에서 일할 기회 제공
참여대상	직업상담사, HR, 공공행정 등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
참여기간	6개월
지원수준	인건비·운영비·멘토링비 등 월 200만원 수준 지원 (청년) 수당 월 160만원 (주 20~30시간) (민간위탁기관) 운영비 월 30만원, 멘토링비 월 10만원
업무범위	구직자 취업알선을 위한 채용정보 서칭, 채용박람회 등 현장행사 및 집단상담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진행 보조
예산 산출내역	○ (인건비) 12억원(125명×160만원×6개월) ○ (기관 지원비) 3억원(125명×40만원*×6개월) * 일경험 운영비 월 30만원, 멘토링비 월 10만원 ○ (기타 운영비) 10백만원* * 일경험 참여자 재해보상보험 일괄가입 비용

자료: 고용노동부

(2) 분석의견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3만명 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나, 기존 집행실적 및 추경 증액 후 집행사례를 감안할 때 다소 도전적인 목표로 보이는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대하고자 하는 I 유형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최근 경기하방 압력 및 고용불황 심화 등에 따라 지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지원취업제도 I 유형 예산의 증액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2026년 2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을 고려할 때, 인원 3만명을 추가하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로 보인다는 점에서 면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재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집행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I 유형의 경우 지원인원은 42,156명으로 목표인원의 17.4%를 달성하였고, 집행액은 1,294억 8,800만원으로 예산의 14.8%를 집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30,000명의 목표인원이 추가되는 경우 2월말 기준 목표인원 달성률은 15.5%, 예산 집행률은 13.6%로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와 같은 집행 수준이 연중 지속된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한 금액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²⁾.

[2026년 2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예산		
		목표(A)	실적(B)	달성률(B/A)	예산(C)	집행액(D)	집행률(D/C)
I 유형	요건심사형	117,000	20,545	17.6	873,620	129,488	14.8
	선발형(비경활)	20,000	3,388	16.9			
	선발형(청년)	105,000	18,223	17.4			
	소계	242,000	42,156	17.4			
	추경 원안 의결시	272,000	42,156	15.5	952,243	129,488	13.6
II 유형	특정계층	12,000	1,899	15.8	138,245	17,438	12.6
	청년층	78,000	9,785	12.5			
	중장년층	18,000	2,275	12.6			
	소계	108,000	13,959	12.9			

자료: 고용노동부

2) 참고로 2025년도 2월말 기준 동 사업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2025년의 경우 2월말 본예산 기준 I 유형의 집행률이 26.8%(추경 기준 22.5%), II 유형의 집행률이 26.5%(추경 기준 22.0%)인 것으로 확인된다.

[2025년 2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예산		
		목표(A)	실적(B)	달성률(B/A)	예산(C)	집행액(D)	집행률(D/C)
I 유형	요건심사형	90,000	15,983	17.8%	714,087	191,663	26.8
	선발형(비경활)	20,000	5,438	27.2%			
	선발형(청년)	105,000	24,131	23.0%			
	소계	215,000	45,552	21.2%			
II 유형	특정계층	12,000	1,849	15.4%	130,657	34,573	26.5
	청년층	68,000	6,685	9.8%			
	중장년층	10,000	2,619	26.2%			
	소계	90,000	11,153	12.4%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의 경우 미국발 관세인상과 그로 인한 경제 충격 등의 여파, 건설경기 부진 등을 감안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5.5만명(I 유형 2.7만명, II 유형 2.8만명) 확대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유사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³⁾한바 있으나, 결산 기준 898억 9,000만원이 불용(집행률 91.1%)⁴⁾된 바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목표인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집행실적과 2026년 기준 현재까지의 지원실적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확대 과정에서 취업지원서비스가 악화되거나 사업의 실질적 성과로 볼 수 있는 취업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이들이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에서 민간위탁사업자의 기본 인적요건으로 업무담당자 1인당 상시 관리해야 하는 참여자 수를 최대 100명으로 안내하고 있다. 2021~2025년 동 사업의 민간위탁사업자 현황을 보면 매년 직원 1인당 85명 내외의 인원을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환경노동위원회」, p.569 참조

4) I 유형의 경우 468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고 집행률은 94.6%, II 유형의 경우 429억 9,600만원이 불용되었고 집행률은 70.4%였음

[2025년 결산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실적]

구분		인원			예산		
		목표(A)	실적(B)	달성률(B/A)	예산(C)	집행액(D)	집행률(D/C)
I 유형	요건심사형	117,000	106,220	90.8	864,842	817,948	94.6
	선발형(비경활)	20,000	21,237	106.2			
	선발형(청년)	105,000	92,623	88.2			
	소계	242,000	220,080	90.9			
II 유형	특정계층	12,000	15,032	125.3	145,058	102,062	70.4
	청년층	78,000	56,831	72.9			
	중장년층	18,000	16,672	92.6			
	소계*	118,000	88,535	75.0			

자료: 고용노동부

* '25년 II유형은 건설업 퇴직자 목표인원(1만명) 및 지원인원(1,019명) 포함('25.8월 시행)

[2021~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기관 수	총 직원 수(A)	평균 직원 수	인정자 수	직원 1인당 담당 인정인원 (B)
2021	533	2,159	4.1	183,983	85.2
2022	529	2,131	4.0	156,956	73.7
2023	492	2,061	4.2	173,908	84.4
2024	274	2,293	8.4	192,151	83.8
2025	258	2,167	8.4	182,276	84.1

주. 2021~2025년 인정자 수 및 직원 1인당 담당인원은 결산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수를 늘릴 것을 예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을 보조하는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한 단가는 증액 편성하지 않은바 기존 민간위탁사업자를 그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참여자가 3만명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직원 1인당 담당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민간위탁사업자의 경우 모집공고상 인원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⁵⁾. 이는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확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도별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사업종료자의 일자리 취업률을 확인해보면, II유형-중장년을 제외하면 취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민간위탁사업자의 업무 부담 증가로 취업지원서비스가 부실해지는 경우 이러한 추세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5) 예를 들어 2025년 인정자 수인 182,276명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한 증가 인원 최대 30,000명을 추가하여 직원 1인당 담당인원을 계산하면 96.0명이된다. 이에 따라 지원인원이 집중되는 특정 사업자의 경우 직원 1인당 담당인원이 100명을 초과할 수 있다.

[2023~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사업종료자의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2023				2024				2025(12월 기준)			
			종료자	취창업자		취업률	종료자	취창업자		취업률	종료자	취창업자		취업률
				취업	창업			취업	창업			취업	창업	
1 유 형	요건심사형		80,263	46,081	2,134	60.1	83,526	49,068	1,988	61.1	85,475	49,164	1,999	59.9
	선발 형	청년	97,031	60,834	1,442	64.2	118,227	74,909	1,585	64.7	127,971	76,022	1,701	60.7
		비경 활	28,407	8,825	788	33.8	26,850	8,575	748	34.7	24,484	7,379	703	33.0
2 유 형	특정계층		13,756	5,046	317	39.0	14,233	5,068	341	38.0	12,852	4,561	351	38.2
	청년		36,269	25,524	369	71.4	39,319	26,566	411	68.6	42,959	28,927	432	68.3
	중장년		13,849	7,893	361	59.6	13,804	7,667	313	57.8	13,293	7,968	367	62.7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지원인원 확대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에 해당하나, 동시에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바탕으로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동 사업의 중요한 목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지원인원 확대 과정에서도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병행 필요(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¹⁾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해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9,079억 5,900만원이나 비수도권 유형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50,000명에서 65,00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57억 5,000만원이 증액된 9,337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791,426	907,959	933,709	25,750	2.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91,426	907,959	933,709	25,750	2.8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079억 5,900만원	○ 기업지원금: 7,912억 2,500만원 가. 유형1(5,225억 8,300만원) · 23년, 24년, 25년 채용자에 대한 잔여지원금 ≒ 4,549억 500만원 · 26년 채용자(55,000명) 신규지원분 ≒ 676억 7,800만원 나. 유형2(2,686억 4,200만원) · 25년 채용자 잔여지원분 ≒ 2,071억 1,700만원 · 26년 채용자(50,000명) 신규지원 분 ≒ 615억 2,500만원	9,337억 900만원	○ 기업지원금: 8,096억 6,300만원 가. 유형1(5,225억 8,300만원) · 23년, 24년, 25년 채용자에 대한 잔여지원금 ≒ 4,549억 500만원 · 26년 채용자(55,000명) 신규지원분 ≒ 676억 7,800만원 나. 유형2(2,871억) · 25년 채용자 잔여지원분 ≒ 2,071억 1,700만원 · 26년 채용자(65,000명) 신규지 원분 ≒ 799억 8,300만원
	○ 청년근속인센티브: 894억 2,600 만원 · 25년 채용자 잔여지원분 ≒ 725 억 1,400만원 · 26년 채용자(50,000명) 신규지 원분 ≒ 169억 1,200만원		○ 청년근속인센티브: 944억 6,800 만원 · 25년 채용자 잔여지원분 ≒ 725억 1,400만원 · 26년 채용자(65,000명) 신규지 원분 ≒ 219억 5,400만원
	○ 민간위탁사업비: 261억 800만원 ○ 수용비 등 경상경비: 10억원 ○ 사업출연금: 2억원		○ 민간위탁사업비: 283억 5,800만원 ○ 수용비 등 경상경비: 10억원 ○ 사업출연금: 2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이 2021년 일괄 종료됨에 따라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시범적으로(2022~2024년) 시행한 사업으로, 2025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어 시행 중이다. 동 사업은 취업애로청년²⁾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

2)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 사업 수료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등

지한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3)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5년까지 I·II 유형으로 구분되어 II유형의 경우 이른바 ‘빈일자리업종4)’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26년부터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취업 지원금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청년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사업 최근 변경사항]

구분	2025		2026	
지원 수준	기업	I·II유형: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12개월)	기업	수도권·비수도권: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12개월)
	청년	II유형: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최대 480 만원)	청년	비수도권: 6·12·18·24개월 차 각 120~180만원 (최대 480~720만원)
기업 요건	I·II유형: 연 매출액이 ‘기준피보험자 수×1,900만원’ 이상		수도권·비수도권: 연 매출액이 ‘기준피보 험자수×1,900만원’ 이상	
취업 애로 청년	I유형	모든 업종	수도 권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 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제외
	II유형	빈일자리 업종	비수 도권	적용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주기 및 심사	기업	I·II유형: 월	기업	수도권·비수도권: 월
	청년	II유형: 6·12·18·24개월 근속(4회차)	청년	비수도권: 6·12·18·24개월 근 속(4회차)
	기업	I·II유형: 기업 장기고용 인센티브 미지급	기업	수도권·비수도권: 기업 장기고 용 인센티브 미지급
	청년	II유형: 청년 장기근속 인 센티브 지급 (최대480만원)	청년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 티브 지급 (최대 72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3)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4)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건설업, 자원순환업 등 10개 분야로, 인력 수급이 어려워 지속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유형의 경우 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으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해당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비수도권’ 유형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해당 기업에게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⁵⁾을 지원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유형의 경우 지역 간 차등을 두어 ①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②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③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지역과 균형발전 하위지역 58개 지역,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 58개 중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을 우대지원지역으로 설정하였다.

5) ①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②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③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주요내용]

구 분	2025년 추경안		2026년 본예산		2026년 추경안	
유형	I유형	II유형(신설)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지원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 리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지원대상 청년	취업애 로청년	모든 청년	취업애로청 년	모든 청년	취업애로청 년	모든 청년
	* 대학 졸업예정 자 포함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사업주 지원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좌동		좌동	
청년지원 (장기근 속 인센티브)	-	480만원 (6·12· 18·24개월차 각 120만원)	-	480~72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180만원)	-	480~72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180만원)
목표인원	58,850 명	48,150명	55,000명	50,000명	55,000명	65,000명
	10.7만명		10.5만명		12만명	

자료: 고용노동부

(2)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기존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동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부터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하던 근속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업종과 무관하게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5만명 규모에서 1만 5천명을 추가해 6만 5천명 규모로 확대하고자 한다. 청년고용과 지역소멸이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동 사업의 기존 집행 실적을 감안할 때 연내에 목표한 집행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6년 현재 동 사업의 집행현황을 확인하면 2월말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이 목표한 인원의 5%도 채용하

지 못하였는바 연말까지 동 사업이 높은 집행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바 집행이 더욱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예산이 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2022~2026년(2월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인원 현황]

(단위: 명, 개, %)

구분	신규지원 목표(A)	실적		
		기업	실제 청년 채용인원 (B)	목표 대비 실제 채용인원 (B/A)
2022	140,000	47,634	113,700	81.2
2023	90,000	38,735	88,649	98.5
2024	125,000	39,472	101,519	81.2
2025	107,000	38,361	105,385	98.5
2026 (2월말)	105,000→ 120,000	3,662	5,700	4.8

주. 2026년 목표 대비 실제 채용인원 비율은 추가경정예산안상 목표 대비 실제 채용인원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아. 내일배움카드 사업: 자부담 훈련비를 감소한 목표인원 선정 필요 등(고용노동부)

(1) 현 황

내일배움카드 사업¹⁾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도 본예산은 6,273억 2,500만원이나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규모를 기존 49,500명에서 59,500명으로 1만명 확대하고 신규사업인 K-뉴딜아카데미 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530억 2,400만원이 증액된 8,803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내일배움카드(일반)	596,161	627,325	880,349	253,024	40.3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477,616	521,313	626,093	104,780	20.1
K-뉴딜아카데미	-	-	148,244	148,244	순증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0,000	20,000	20,000	-	-
돌봄서비스 훈련	33,600	29,440	29,440	-	-
일반고 특화훈련	61,557	55,383	55,383	-	-
운영비 등	2,488	1,189	1,189	-	-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추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213억 1,300만원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 기타보전금 가. 훈련비, 훈련수당 $49,500명 \times 10.5\text{백만원} = 5,203\text{억 } 4,400\text{만원}$ 나. 조정재원 9백만원 ○ 일반용역비 9억 6,000만원	7,743억 3,700만원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 기타보전금 가. 훈련비, 훈련수당 $59,500명 \times 10.5\text{백만원} = 6,250\text{억 } 7,400\text{만원}$ 나. 조정재원 9백만원 ○ 일반용역비 9억 6,000만원
			<K-뉴딜 아카데미> ○ 기타보전금 가. 훈련비 1,225억 6,400만원 나. 훈련수당 226억 8,000만원 ○ 일반용역비 29억 5,000만원 ○ 일반수용비 0.5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는 기본적으로 일부를 제외하면²⁾ 모든 국민이 발급 대상이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³⁾에서 회원가입한 후 절차를 완료하고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부터 5년이며 참여자는 1인당 300~500만원까지,⁴⁾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고,⁵⁾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20만원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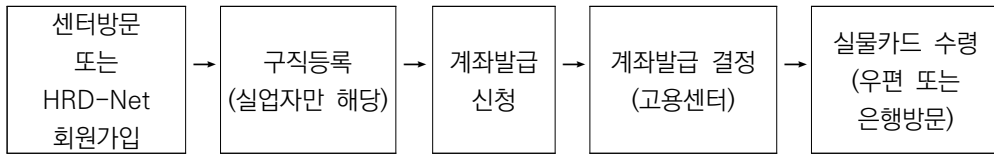
2)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3) <https://www.k-hrd.net/landingpage/main.html>

4) 원칙적으로는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나,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추가할 수 있다(2023.1.1.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하는 등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사업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크게 3가지이다.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그리고 특별훈련수당이다. 훈련비는 훈련생이 추가로 부담하는 훈련비(추가 부담 훈련비)가 아닌 정부승인 훈련비를 말하는 것으로,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기초로 산정된다.

훈련장려금이란,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실업상태 등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 등이 내일배움카드 사업에서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장려금을 뜻한다. 훈련장려금은 훈련생의 요건 충족 여부, 일 소정 훈련시간, 단위기간 출석일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특별훈련수당이란,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KDT),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중 일부 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특별수당으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K-뉴딜아카데미’는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발 위기 등으로 청년 고용상황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직무와 관련된 프로그램 등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기업 등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대신 고용노동부로부터 운영 비용을 지원받으며, 교육에 참여하는 청년은 참여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총괄운영기관의 심의를 받아 선정되며, 해당 기업과 관련된 직무 분야와 직무 외 일반 분야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신규사업 K-뉴딜아카데미 사업 개요]

사업명	K-뉴딜아카데미
사업내용	대기업이 직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지원
참여대상	(기업) 대기업 등 청년선호기업 (청년) 15~34세 청년
운영기간	300시간, 3개월 이상
지원수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역 개설 우대
참여청년 지원	수당 지급, 이력관리 등
예산 산출내역	훈련비: 1,225억 6,400만원 훈련수당: 226억 8,000만원 운영지원센터 운영비: 22억 5,000만원 총괄운영센터 운영비: 7억원 일반수용비: 0.5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 분석의견

첫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사업은 훈련비 자부담률 상향으로 훈련 참여 감소가 예상되는바, 지원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일명 KDT사업)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민간 선도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사업이다. 동 내역사업은 기업의 실제 인력수요를 훈련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 훈련과정을 함께 설계하도록 하고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 과제를 전체 훈련과정의 30% 이상 편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과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평균 6개월주 5일1일 8시간으로 운영되는 집중적인 훈련과정이다. 동 사업은 2025년 대비 2026년 본예산에서도 431억 9,700만원(9.0%) 증액되었으나, 본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047억 8,000만원(20.1%)가 추가적으로 증액되어 6,260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목표인원은 49,500명에서 59,500명으로 10,000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2026년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개요]

사업명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기간 (재원)	2021~계속(일반회계)
개요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지원기간	훈련과정 참여기간
지원요건	출석률에 따른 훈련비 및 단위기간별 80% 이상 훈련 참여 시 훈련장려금 등 지원
지원수준	훈련비 전액 지원(1회), 훈련장려금(월 최대 20만원) 및 특별훈련수당(월 최대 60만원) 지급
지원목표	49,500명 → 59,500명

자료: 고용노동부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을 확대 편성하여 기업이 수요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본 사업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동 사업은 2026년부터 참여자들이 성실한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었던 구조에서 훈련비를 일부(10%, 상한액 60만원)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훈련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60만원 상한 아래에서 차등적으로 자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훈련생 개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는 동 사업의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증액분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훈련참여인원 및 2025년 기준 평균 훈련비]

(단위: 명, 원)

신기술분야	훈련참여인원					2025년 기준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훈련비	평균 자부담	상한 적용 시
인공지능	3,952	4,447	4,839	5,126	3,697	12,362,065	1,236,206	443,539
클라우드	1,362	3,739	5,260	5,269	2,208	12,972,453	1,297,245	462,424
사물인터넷	817	658	395	475	312	11,765,725	1,176,572	457,143
메타버스	453	739	1,483	1,868	1,347	13,475,277	1,347,527	477,778
일반s/w	693	4,715	10,165	13,796	8,033	11,816,086	1,181,608	433,829
블록체인	514	603	717	453	75	13,402,928	1,340,292	463,158
빅데이터	3,477	6,303	6,697	7,002	3,118	14,475,386	1,447,538	465,101
사이버보안	12	254	498	840	428	12,971,805	1,297,180	455,882
이차전지	-	-	-	190	172	7,623,000	762,300	400,000
3D프린팅	12	19	38	70	90	14,710,854	1,471,085	528,571
반도체	-	612	917	1,216	608	9,425,118	942,511	400,000
로봇	437	310	800	902	707	12,285,724	1,228,572	449,315
드론	-	-	-	12	29	18,150,000	1,815,000	600,000
바이오헬스	-	-	-	160	282	10,098,782	1,009,878	420,000
에코업	-	-	123	112	48	12,334,429	1,233,442	442,857
신재생에너지	-	-	-	60	35	12,322,752	1,232,275	500,000
기타	-	-	-	96	80	15,851,000	1,585,100	500,000
합계	11,729	22,399	31,932	37,647	21,269			

주. 평균 자부담 금액은 2025년 평균 훈련비 금액에 2026년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값(2026년도부터 훈련비의 10%를 훈련생이 자부담)

자료: 고용노동부

실제 2026년의 경우 2월말 기준 실집행률이 7.8%로, 2025년 2월말 기준 실집행률 18.5%⁶⁾보다 저조한바 훈련생들이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2025년 2월말 기준 동 사업의 실시인원은 총 6,709명으로 목표인원 45,125명 대비 14.9%의 집행을, 집행액 기준으로는 882억 5,400만원을 집행하여 18.5%를 집행하였다.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예결산내역]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예결산		
	목표인원	실시인원	지원율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21	24,015	11,727	48.8	221,832	81,205	36.6
2022	28,521	22,394	78.1	305,562	232,967	76.2
2023	36,580	31,922	87.3	414,260	369,114	89.1
2024	44,000	37,628	85.5	475,688	475,499	100.0
2025	45,125	42,191	93.5	478,116	476,994	99.8
2026(2월말)	49,500	3,862	7.8	521,313	40,673	7.8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2026년도부터 기존 월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이 월 2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자부담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목표 훈련인원을 달성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훈련장려금이 월 11만 6,000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증가하더라도 훈련생 개인이 훈련 수수료 결과 얻게되는 금액은 2025년도에 69만 6,000원⁷⁾에서 2026년 60만원으로 줄어들고⁸⁾, 훈련장려금은 훈련 시작 시점부터 1달 가격으로 20만원씩 수령하는 것에 비해 훈련참여 시작과 동시에 60만원에 달하는 자부담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바 개별 훈련생에게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⁹⁾.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동 훈련의 참여 목표인원을 크게 늘렸는데, 위와 같은 지적을 감안해 훈련 실시인원이 목표인원에 크게 미달하지 않도록 동 사업의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이 원활히 가능하도록 훈련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7) 월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6개월간 지급받으므로 11만 6,000원*6개월=69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는다. 2025년도 기준 훈련비는 전액 무료였던바,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은 69만 6,000원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

8) 월 2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6개월간 지급받으므로 20만원*6개월=12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는다. 2026년 기준 훈련비로 자부담액 상한액인 60만원을 지출해야하는바,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은 결과적으로 120만원-60만원=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9) 다만 고용노동부는 추가로 지급되는 특별훈련수당(월 10~60만원)과 자부담이 면제되는 AI 특화과정(AI 캠퍼스) 등으로 인해 '25년 대비 수령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입장이다.

동 훈련은 2026년도부터 훈련장려금 외에 특별훈련수당을 별도로 신설하여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동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월 20만원과 30만원의 특별훈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지방균형발전 및 지역사회의 직업능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이나, 동 사업의 기존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5년 기준으로 전체 훈련 기관 중 75.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다가, 2022년 대비 2025년 수도권의 훈련기관은 130개소에서 252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훈련기관은 55개소에서 82개소로 상대적으로 인프라 확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비수도권이 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대비 동 훈련에 대한 참여가 어렵다 보이는바 특별훈련수당 지급과 함께 이에 대한 보완이 병행되어야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지역별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훈련기관 및 훈련인원 현황]

(단위: 명, %)

지역	2022		2023		2024		2025	
	훈련 기관	참여 인원	훈련 기관	참여 인원	훈련 기관	참여 인원	훈련 기관	참여 인원
수도권	130 (70.3)	19,356 (86.4)	194 (73.8)	28,306 (88.6)	252 (75.7)	34,323 (91.2)	252 (75.4)	44,244 (92.7)
비수도권	52 (28.1)	2,948 (13.2)	65 (24.7)	3,513 (11.0)	75 (22.5)	3,230 (8.3)	77 (23.1)	3,391 (7.1)
인구감소 지역	3 (1.6)	96 (0.4)	4 (1.5)	113 (0.4)	6 (1.8)	94 (0.2)	5 (1.5)	83 (0.2)
합계	185 (100.0)	22,400 (100.0)	263 (100.0)	31,932 (100.0)	333 (100.0)	37,647 (100.0)	334 (100.0)	47,718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대비 비중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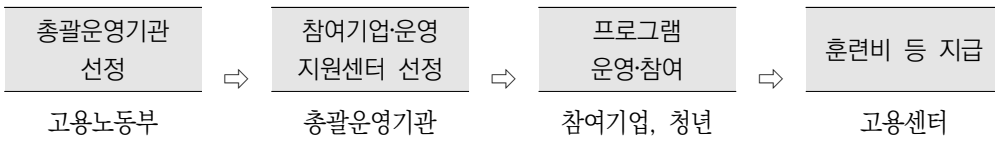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동 훈련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이나 지역 소재 기업 등과 협업해 훈련기관과 훈련 인프라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규사업인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심사와 선정 과정을 단기간에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양질의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와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0대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청년 선호 분야 직업 능력개발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설계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총괄 운영기관(미정)이 참여기업과 운영지원센터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심사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괄운영기관 운영 시 산업별 전문가,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청년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¹⁰⁾.

[K-뉴딜아카데미 사업 진행 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청년 고용 문제 및 직업능력 개발 등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해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동 사업이 편성되고 집행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연내 집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계획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 동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¹¹⁾의 경우 사업 공모 단계부터 훈련 실시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된다¹²⁾. K-뉴딜아카데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아직 총괄운영기관 선정도 이루어지

10)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 대상인원을 15,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개별 프로그램은 300시간 이상, 3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1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고용노동부 일반회계 1153-350)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대기업의 우수한 훈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12) 2025년의 경우 사업공모 단계에서 40일, 심사 및 선정 과정에서 30일, 지원금 지급 단계 및 본 훈련실시 단계까지 23일이 소요되었다(총 93일)

지 못하였고,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할 기업들도 프로그램 계획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보다 체계적인 시간 계획을 수립해 동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동 사업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대상을 15~34세 청년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청년 계층 내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가 상이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일례로 구직단념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청년에게 효과성이 높은 교육 프로그램과 대학 졸업 후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효과성이 높은 교육 프로그램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인다.

특히 동 사업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기업이 자신들만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두고 있고, AI, 반도체, 금융 등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고용노동부는 이를 감안해 사업의 계획 단계 및 총괄운영기관에서의 교육프로그램 심의 과정에서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이 완성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 및 사업주 대상 참여 독려 필요(고용노동부)

(1) 현 황

고용유지지원금 사업¹⁾은 「고용보험법」 제21조²⁾ 및 동법 시행령³⁾에 따라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702억 2,500만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185억 5,900만원이 증액된 887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수정 ¹⁾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고용유지지원금	81,318	70,225	88,784	18,559	26.4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정한솔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045-350

2)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

[2026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2026년도 계획		2026년도 변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2억 2500만 원	○ 보험금(320-04): 702억 500만원 가. 휴업·휴직(686억 8,900만원) · 37,575명×2.14개월×85만 4,000원 ≒ 686억 8,900만원 나. 무급휴업·휴직(15억 1,600만원) · 315명×3.26개월×147만 6,000 원 ≒ 15억 1,600만원	887억 8,400만 원	○ 보험금(320-04): 887억 6,400만 원 가. 휴업·휴직(802억 7,000만원) · (본예산) 37,575명×2.14개월×85 만 4,000원 ≒ 686억 8,900만원 · (추경) 10,155명×2.14개월×85만 4,000원 ≒ 185억 5,900만원 나. 무급휴업·휴직(15억 1,600만원) · (본예산) 315명×3.26개월×147 만 6,000원 ≒ 15억 1,600만원
	○ 일반용역비(210-14): 2,000만원 · 채권관리 비용 2,000만원		○ 일반용역비(210-14): 2,000만원 · 채권관리비용 2,000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제적 환경의 악화로 해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정부가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해 대량 실업 상황의 발생을 막고, 사업주의 고정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시 지급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의 판단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⁴⁾ 및 제34조⁵⁾에서 규정하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①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고 있는데, 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준 달 직전 6개월의 연평균 매출액 대비 15%(무급의 경우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다.

‘고용유지조치’란 휴업·휴직을 의미하고, 동 기간 동안 금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유급고용유지조치와 무급고용유지조치로 구분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및 이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제한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동 조치에 대한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2026년도 고용유지지원금의 유형별 고용유지조치 이행 조건]

유급	① 휴업	1개월 단위 피보험자 전체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휴업·휴직기간 휴업수당 등 금품 지급
	② 휴직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무급	① 휴업	사전 노동위원회 승인, 30일 이상 실시 실시비율: ▲ 50% 이상 (19명 이하), ▲ 10명 이상 (99명 이하), ▲ 10% 이상 (100명 ~ 999명), ▲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휴업기간 금품 미지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 지급)
	② 휴직	직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피보험자 20%이상)을 3개월(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이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30일 이상 실시 실시비율: ▲ 10명 이상 (99명 이하) ▲ 10% 이상 (100명 ~ 999명) ▲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휴직기간 금품 미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3.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 ① 영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규모는 고용유지조치의 유급·무급 여부 및 휴업·휴직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같은 형태의 고용유지조치 내에서도 해당 업종의 성격(일반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일반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을 기준으로 2/3를 1일 6.8만원의 한도에서 연 180일의 기간 동안 지원하나, 동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이거나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10을 1일 7만원의 한도에서 연 180일의 기간 동안 지원한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규모 기업의 경우 일반업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1/2(다만 단축율이 50% 이상인 경우 2/3)을 1일 6.8만원의 한도에서 연 180일 기간 동안 지원하며, 만약 대규모 기업이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인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다만 단축율이 50% 이상인 경우 3/4)을 1일 6.8만원의 한도에서 연 180일 기간동안 지원한다.

반면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유급과 달리 업종이나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평균 임금 50%의 범위 내에서 1일 6.8만원을 한도로 최대 180일의 기간 동안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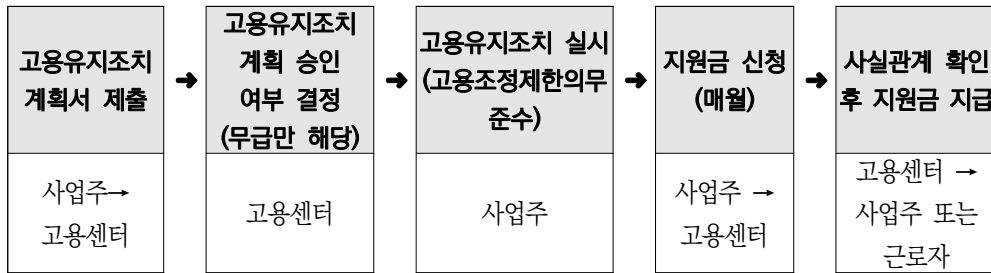
[2026년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내용]

구분	유급 휴업·휴직		무급 휴업·휴직	
	지원수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기준)	지원한도 (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 (기간)
일반업종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 이상)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8만원 (연 180일)	평균임금 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	· 우선지원 (대규모) 1일 6.8만원 (최대 180일)
특별고용 지원업종· 고용위기지 역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 단축율 50% 이상)	· 우선지원 1일 7만원 · 대규모 1일 6.8만원 (연 180일)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매월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고용센터는 해당 사업주가 고용조정제한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6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2) 분석의견

중동전쟁에 따른 경기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고용악화를 대비하기 위해 지출계획액을 증액하였는데, 연초 지급실적 및 과거 기금운용계획안 증액 후 집행부진 사례를 고려하여 기업들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경기하방 압력 및 이에 따른 고용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하반기 고용악화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유급 휴업·휴직 유형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출계획액 185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다.

동 사업의 과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비교적 집행률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나, 2021년~2023년의 경우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용이 발생한 사례가 상당하다. 특히 금번 추경과 유사하게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기여건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해 당초 금액의 36%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률은 이에 미치지 못한바 있다.

2026년의 경우 2월말까지 집행실적을 확인해보면 당초 계획액인 702억 2,500만원 중 112억 1,700만원이 집행된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라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집행률은 약 12.7%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집행이 연중 계속될 시 불용이 재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동 전쟁으로 향후 고용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집행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바 불용 등의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이며, 동 지원금 예산이 부족하여 받지 못하는 사업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바 여유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동일 사업에 자주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바, 고용노동부가 동 사업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독려하고 지원금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동 사업의 집행률 제고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 확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일선 고용센터 등을 통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 제도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1~2026년(2월말) 고용유지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개사, 명, %)

구분	예산		실적			
	당초	현액(A)	사업장	순인원	집행액(B)	집행률(B/A)
2021	1,365,832	1,855,247	40,950	338,921	1,281,774	69.1
2022	597,621	596,901	14,268	137,114	463,802	77.7
2023	197,220	197,220	6,204	61,176	126,802	64.3
2024	71,372	71,372	3,727	44,842	70,126	98.3
2025	70,225	81,368	3,065	32,797	71,729	88.2
2026 (2월말)	70,225	88,764	824	9,396	11,217	12.7

주. 2021~2025는 결산 기준, 2026년 현액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직접융자의 적정 규모 검토 및 높은 수요를 감안한 이차보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고용노동부)

(1) 현 황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¹⁾은 저소득 근로자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장기 저이율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및 이차보전을 통해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와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의 2개 내역 사업으로 구성된다.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894억 3,200만원이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89억 7,500만원 증액된 984억 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수정 ¹⁾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생활안정자금(융자)	106,342	89,432	98,407	8,975	10.0
생활안정자금(융자)	103,342	85,475	94,450	8,975	10.5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3,000	3,957	3,957	-	-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이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2020년 12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융자대상을 중위소득 2/3 이하 취약계층 근로자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및 산재가입 1인 자영업자로 확대하였다.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근로복지진흥기금 3062-306

[2026년도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 개요]

구분		대상 및 조건
사업 내용		• 저소득 근로자(비정규직, 특고, 1인 자영업자 포함)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기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기간		• '96년부터 ~ 계속
사업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1호)
용 자 대 상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노부모부양비 ⑤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1/2('26년 268만 원) 이하 (*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⑥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휴업·휴직(경영상 이유, 개인 사정),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 사업, 공공근로)로 용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1/2('26년 268만 원) 이하 (*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용 자 한 도	①의료비	• 1,000만 원
	③장례비	
	②혼례비	• 1,250만 원
	④노부모부양비	• 2,000만 원 한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⑤자녀양육비	• 2,000만 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500만 원(18세 미만 자녀)
	⑥소액생계비	• 200만 원
		•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금 리	• 연 1.5% (신용보증료 연 0.9%)	
상 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자료: 고용노동부

반면 2025년부터 용자사업 대상자를 기존 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에서 중위소득 1/2 이하 근로자로 축소하면서,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보전해주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제도를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2025년도 12월 용자 종목·대상·한도를 확대하였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비교]

구분	융자	이차보전
목적	결혼, 장례, 의료 등 목돈이 필요한 취약계층 근로자 생활 보호	결혼, 장례, 자녀양육 등 목돈이 필요한 취약계층 근로자 생활 보호
대상	중위소득 1/2 이하 취약계층 근로자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조건	결혼, 장례, 의료, 자녀 양육 등 생활 필수자금 소요가 확인되는 경우	결혼, 장례, 자녀양육 등 목돈이 필요한 취약계층 근로자 생활 보호
지원한도	의료비·장례비 1,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2,000만원,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혼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2,0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1.5%(보증료율 연 0.9% 별도)	금융기관 고정금리에 3%p 내 보전 * 개인 신용대출 금리(최저 4.5%~최고 9.5%)에서 3%p 이차보전으로 신용 도에 따라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율은 최저 1.5%~최고 6.5% 수준 임
필요예산	855억원(당초)→945억(변경)	40억원
지원규모	14,118명→15,780명	20,000명(융자재원 1,000억원 기준)
융자신청	근로복지공단	기업은행
심사기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기업은행 대출심사기준
담보제공	공단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통한 신용보증	개별 신용대출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중동발 오일쇼크에 따른 물가상승 및 경기하방 압력 심화로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규모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바 동 계획액을 확대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2026년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2026년도 계획		2026년도 변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54억 7,500만원	○ 생활안정자금(용자) 854억 7,500만원 = 14,118명 × '24년 용자종목별 평균단가 - 의료비 3,054명×370만원('24년 평균단가) = 113억원 - 혼례비 3,423명×1,220만원('24년 평균단가) = 417억 6,100만원 - 장례비 165명×890만원('24년 평균단가) = 14억 6,900만원 - 부모요양비 1,222명×430만원('24년 평균단가) = 52억 5,500만원 - 자녀양육비 5,114명×460만원('24년 평균단가) = 235억 2,400만원 - 소액생계비 1,140명×190만원('24년 평균단가) = 21억 6,600만원	984억 700만원	○ 생활안정자금(용자) 854억 7,500만원 (좌 동)
			○ 생활안정자금(용자) 증액 89억 7,500만원 = 1,662명 × 540만원('26년 2월 평균 지원단가)
	○ 생활안정자금(용자)(이차보전) 39억5,700만원		○ 생활안정자금(용자)(이차보전) 39억5,7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2) 분석의견

첫째, 고용노동부는 국제 분쟁 확대 속 경기둔화 등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용자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직접 용자사업의 적정 인원과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은 용자대상을 근로자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계획 규모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용자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운영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2024년과 2025년 동 사업의 계획액을 2023년 대비 약 60% 수준인 884억원 규모와 914억원 규모로 대폭 감액하였으나, 경제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용자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동 수요를 충당하였다.

[생활안정자금(용자)-직접 용자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명, 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	당초	88,546	99,051	199,051	150,000	88,462	91,462
	수정(A)	210,300	169,051	231,850	170,000	118,462	103,342
집행액(B)		206,647	143,946	223,170	165,030	118,234	92,438
집행률(B/A)		98.3	85.1	96.3	97.1	99.8	89.4
지원인원(C)		31,743	24,801	41,639	30,639	20,306	15,780
1인당 지원금액(B/C)		651	580	536	539	582	586

자료: 고용노동부

최근 중동발 오일쇼크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용자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동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용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편성으로 보인다.

다만, 동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원인원이 14,118명에서 15,78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용자가능 금액이 598만 5,000원으로 당초 계획 기준 605만 4,000원 대비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지원인원이 증가하여 1인당 용자가능 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타당한 편

성인지에 대해,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2026년 당초 계획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용자)-직접용자 지원인원·금액]

(단위: 명, 백만원, 만원)

구 분	당초 계획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액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최종)
지원인원(A)	14,118	1,662	15,780
지원금액(B)	85,475	8,975	94,450
1인당 지원금액(B/A)	605.4	540.0	598.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이차보전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직접 용자사업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완 방안으로 2025년 5월부터 시행된 이차보전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차보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금융기관의 금리를 일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식인바,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재정건전성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2025년도 이차보전 사업의 집행내역을 확인해보면 집행률이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2026년 2월말 현재까지도 집행실적이 없는 등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²⁾.

이는 금의 측면에서 근로자가 이차보전의 방식을 선택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직접용자의 경우 용자금리 1.5%에 보증료율 0.9%를 합산해 근로자가 연 2.4%의 금리를 부담하는 반면, 이차보전의 경우 개인 신용대출 금리 중 3%p를 보전받는 것인바 실질적으로 최저 1.5%~최고 6.5%의 금리를 부담한다. 신용대출 금리가 5.4%를 상회하는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실질 금리가 2.4%를 상회하므로 근로자는 이차보전을 선택할 유인이 부족하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차보전이 직접 용자사업의 역할을 분담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동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고정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을

2) 2025년도 이차보전 사업의 집행이 부진했음에 따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단계에서 이차보전 사업 지출계획이 55억 9,500만원에서 39억 5,700만원으로 16억 3,800만원이 감액된바 있다.

현행 3%p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근로자가 이차보전의 결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를 고정하는 방식³⁾ 등 금리 구조의 개선, 이차보전 한도의 재설정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명)

구분		2025	2026.2
계획	당초	3,000	3,957
	수정(A)	3,000	3,957
집행액(B)		42	-
집행률(B/A)		1.4	-
지원인원		757	-

자료: 고용노동부

3) 예를 들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리를 3%로 고정하는 경우, 개인 신용대출 금리가 7%인 근로자는 4%p를 보전받고, 개인 신용대출 금리가 6%인 근로자는 3%p를 보전받는다.

카. 신용보증대위변제: 구상채권 회수를 개선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고용노동부)

(1) 현 황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¹⁾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²⁾ 및 제26조³⁾에 따라 보증·담보여력이 낮은 취약근로자 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금융회사를 통해 용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득격차 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377억 3,400만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225억 8,100만원이 증가한 603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수정 ¹⁾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신용보증대위변제	86,331	37,734	60,315	22,581	59.8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정한슬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근로복지진흥기금 3064-308

2)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용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용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근로복지기본법」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용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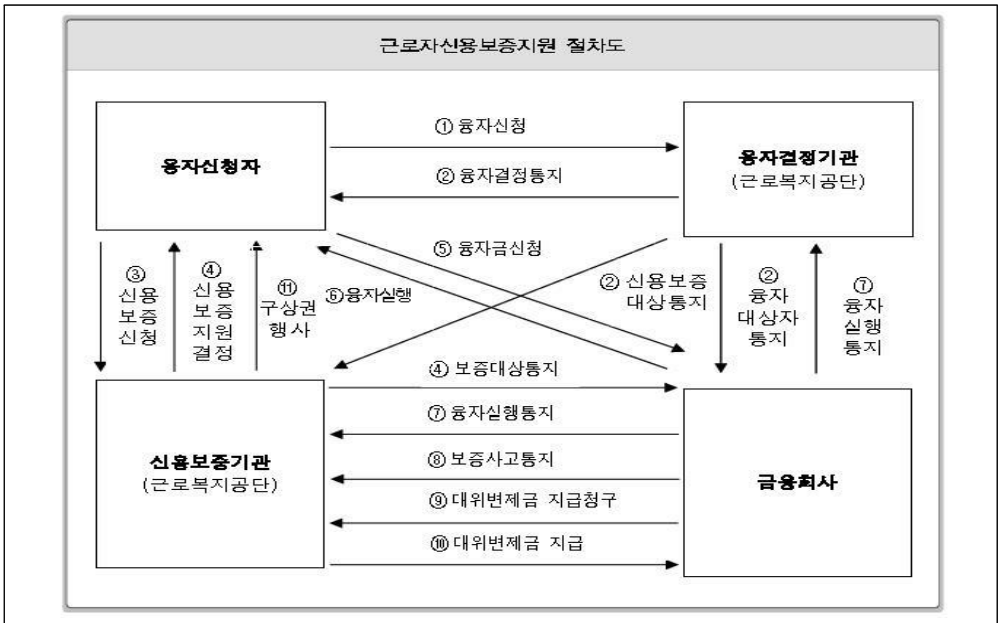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 사업은 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②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용자, ③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④ 전직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 훈련생계비 대부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동 사업에 따른 신용보증을 제공받기 위해서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생활안정자금 등에 대한 용자 및 보증을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요건을 확인하여 용자 신청자에게 용자결정 통보를 하고 대행금융기관에게 용자대상자를 통지한다. 이후 각 기금으로부터 용자금을 지급받은 금융기관은 용자대상자에게 용자를 실시하고, 용자대상자의 원리금 상환액을 각 기금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일 원리금 연체 등 용자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동 사업 계획액에서 용자원리금을 회수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용자대상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대위변제한 원리금을 회수한다.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집행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2026년도 계획				2026년도 변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7억 3,400만원	○ 신용보증대위변제: 368억 6,700만원 - '25년말 추정보증잔액에 최근 5년간 ('20~'24년) 용자사업별 대위변제율의 평균 적용·산출 - 용자사업별 '25년말 추정보증잔액 × 대위변제율 (단위: 백만원, %)			603억 1,500만원	○ 신용보증대위변제: 594억 4,800만원 (+225억 8,100만원) - '25년 대위변제 이월 금액(미집행분) 3,061백만원과 '26년 신용보증 대위변제 필요금액 63,734백만원을 합산한 후 '26년 대위변제 절감액 7,347백만원)과 '26년 기배정 예산 36,867백만원을 제외한 금액 (단위: 백만원, %)				
	구분	25년 추정 보증잔액	대위 변제율		대위 변제금	구분	청구 예상액	구분	청구 예상액
	생활안정자금	338,111	4.99		16887	'26.1월	6,065	'26.7월	4,730
	임금채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포함)	107,899			5,390	'26.2월	5,863	'26.8월	5,044
	소액생계비	1,292			65	'26.3월	5,576	'26.9월	5,389
	직업훈련생계비	239,606			11988	'26.4월	5,378	'26.10월	5,009
	산재생활안정자금	51,197			2557	'26.5월	5,828	'26.11월	4,621
	산재대학학자금	-			-	'26.6월	5,090	'26.12월	5,141
	계	738,105	-		36867	계	63,734		
	○ 신용보증료환급: 8억 6,700만원				○ 신용보증료환급: 8억 6,7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2) 분석의견

향후 신용보증 규모 증가에 따라 대위변제금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이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바,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회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신용보증 현황에 따르면 동 사업을 통해 34,833명의 근로자들이 1,701억 3,000만원의 신용보증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기금별·사업별 분류를 보면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이 가장 큰 규모의 924억 4,800만원의 신용보증지원을 받았고, 다음으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임금채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 326억8,700만원, 고용보험기금의 직업훈련생계비 용자 244억 8,100만원, 산재보험기금의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용자 205억 1,4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신용보증사업계정의 용자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월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생활안정자금용자 (근로복지진흥기금)	24801	14896	41,639	22,676	30,639	16,030	20,306	11,824	15,781	92,448	5,482	29,780
직업훈련생계비용자 (고용보험기금)	20,383	17,305	8,405	53,848	13,103	78,953	10,053	25,055	12,570	24,481	2,257	4,40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산재보험기금)	1,588	15,481	1,580	15,636	1,637	15,617	1,515	14,265	2,185	20,514	288	2,534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 (임금채권보장기금)	2,842	19,724	3,080	18,918	5,910	47,207	4,734	35,391	4,297	32,687	5,967	27,913
신용보증합계	49,614	35,215	54,704	30,078	51,289	30,607	36,608	19,295	34,833	170,130	13,994	64,633

주) 괄호안의 숫자는 전체에서 해당 용자사업 신용보증 지원금액 또는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금액은 2021~2023년 기간 동안 크게 확대되었는데,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일환으로 2020년부터 취약계층 용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금별로 용자지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들 용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근로복지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의 신용보증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2024년과 2025년에 그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이나, 2026년 2월 현재 이미 2025년 집행금액의 1/3 이상을 집행한바 그 규모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노동부는 추후 중동발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경기하방 압력으로 생활안정자금용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용보증금액 계획액을 증액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보조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동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대위변제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회수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확대 편성 과정에서 이를 개선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

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용자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 보증지원 후 원리금 연체 등의 발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위변제금도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2025년도 사업별 대위변제금 회수 및 지급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급	회수	지급	회수	지급	회수	지급	회수	지급	회수
생활안정자금용자 (근로복지진흥기금)	13,176	4,726	17,432	5,088	18,346	4,742	16,301	5,147	49,699	5,961
직업훈련생계비용 자 (고용보험기금)	3,874	1,482	8,788	1,696	12,510	1,784	10,975	2,139	32,186	2,79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산재보험기금)	1,368	880	1,399	931	1,739	747	1,529	780	1,527	728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 (임금채권보장기금)	-	-	92	2	439	21	750	86	2,390	142
합 계	18,418	7,088	27,711	7,717	33,034	7,294	29,555	8,152	85,802	9,625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대위변제금 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년 대위변제금에 대한 회수 역시 저조한 수준으로 2025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최근 5년간 가장 저조했을뿐만 아니라, 불납결손액도 63억 3,400만원으로 그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21~2026년(2월말) 구상채권 수납액 및 미수납액 등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1	18,418	7,147	38.80	11,271	4,170
2022	27,711	7,756	27.99	19,955	6,532
2023	33,035	7,320	22.16	25,715	6,942
2024	29,555	8,173	27.65	21,382	7,463
2025	85,803	9,647	11.24	76,156	6,334
2026년 2월말	12,492	1,975	15.81	10,519	-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이번 추경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용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대위변제금 지급 규모가 증가하고 구상채권 회수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 규모의 확대 상황에서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타. 체불청산지원용자: 대지급금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를 감안한 사업 활성화 및 집행 관리 필요(고용노동부)

(1) 현 황

체불청산지원용자 사업¹⁾은 경영 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용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용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당초 계획액은 706억 3,500만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899억 4,400만원이 증가한 1,605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체불청산지원용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수정 ¹⁾	2026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체불청산지원용자	86,356	70,635	160,579	89,944	127.3

주: 1) 수정계획액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체불청산지원용자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용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① ‘체불사업주 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용자이고, ② ‘체불근로자 용자’는 용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중인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용자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동발 오일쇼크 등으로 최근 경기하방 압력이 심화됨에 따라 체불임금 증가가 예상되는바,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동 용자 금액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하려는 것이다.

정한של 예산분석관(gkstmf92@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임금채권보장기금 3054-304

[2026년 체불청산지원용자 사업 변경안 세부내역]

2026년도 계획		2026년도 변경안(증액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6억 3,500만원	○ 기타민간용자금(450-04) 1. 체불청산지원 용자 가. 사업주 5,580명*6,655,000원=371억 3,400만원 나. 근로자 4,645명*7,212,000원=334억 9,900만원	1,605억 7,900만원	○ 기타민간용자금(450-04) 1. 체불청산지원 용자 가. 사업주 9,952명*6,655,000원=662억 3,000만원 나. 근로자 (부족분) 7,758명*7,212,000원=559억 4,900만원 (대규모체불) 5,324명*7,212,000원=384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체불사업주 용자 및 체불근로자 용자 비교]

구분	체불사업주 용자 (‘12.8월~)	체불근로자 용자 (‘21.6.9. 시행)
지원 형태	용자	용자
지원 대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 (용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용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 중인 근로자
지원 요건	6개월 이상 가동	① 용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이상 임금체불 ② 체불확인서 필요
이자율	(담보) 2.2%, (신용) 3.7%	1.5%
용자 금액	원칙적으로 근로자 체불액만큼 용자 (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당 1,500만원 한도)	총 체불금액에서 대지급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체불금액 (1천만원 한도)
용자 상환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원 금균등분할상환

자료: 고용노동부

(2) 분석의견

첫째,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 악화를 감안해 사업주의 책임 하에 임금체불 상황을 해소하는 사업주 용자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휴가급여)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① 법원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기업의 파산 또는 도산을 인정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과 ②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를 받아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된다.

[대지급금 제도 개요]

구 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및 한도
도산 대지급금	[사업주] ①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②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 ③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 [근로자]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파산·회생·도산인정 신청일 등	[지원내용]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²⁾(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지원한도]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2) 2026년도 하반기엔 최종 6개월분의 임금 지급으로 변경될 예정임

구 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및 한도
간이 대지 급금	퇴 직 자	[사업주] ①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③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 확인 [근로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또는 (체불확인서) 1년 이내 진정 제기	[지원내용] ①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지원한도]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 직 자	[사업주] ①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②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③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 확인 [근로자] ①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일용근로자 제외) ② 3개월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110% 미만 ③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 (체불확인서의 경우) 제기	[지원내용]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지원한도] 7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으로, 「임금채권보장법」³⁾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징수된 부담금을 그 재원으로 하는데 2023년도부터 경기 위축이 심화되면서 임금 체불액 및 대지급금 지급액이 증가 추세에 있어 동 기금의 적립금 규모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⁴⁾.

3)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용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4)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18042호, 2021.10.14. 시행)에 따라 법원의 판결 등이 없이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이 증가한 측면도 있다.

[임금체불액 및 대지급금 지급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임금체불액(A)	1,721,703	1,583,014	1,350,452	1,347,209	1,784,530	2,044,848	2,067,896
대지급금 지급액(B)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684,511
도산 대지급금	168,789 (36.7)	109,975 (19.0)	79,360 (14.5)	36,576 (6.8)	39,635 (5.8)	54,828 (7.6)	69,274 (10.1)
간이 대지급금	291,090 (63.3)	469,715 (81.0)	467,210 (85.5)	500,288 (93.2)	647,271 (94.2)	669,379 (92.4)	615,237 (89.9)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대지급금 지급액 중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4	2024	2025
수입(A)	488,392	515,629	523,876	565,385	617,255	663,021	736,848
지출(B)	519,153	640,374	627,414	600,342	792,305	836,242	807,518
사업비 지출	506,251	627,195	613,715	584,138	773,028	818,023	789,845
대지급금 지급 ¹⁾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7,198	688,395
수지차(A-B)	△30,761	△124,745	△103,538	△34,957	△175,050	△173,221	△70,670
적립금	958,777	834,032	730,494	695,537	520,487	347,266	276,596
여유자금	753,168	629,067	626,307	590,558	416,886	292,690	270,746
공자기금 예탁금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0
한국은행 예치금	5,609	4,965	4,188	4,980	3,601	4,576	5,850

주: 1) 이는 대지급금 지급 사업비 지출액으로서, 실제 대지급금 지급액과 채권관리비용을 합산한 금액임

1. 결산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최근 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간이대지급금 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만으로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편의성은 높으나,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이 있는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은 법상 청산 절차등을 거쳐 회수가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간이대지급금의 회수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다.

반면 체불사업주 용자 사업의 경우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가 직접 용자를 받아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구조로, 대지급금 지급에 의한 체불임금 지급보다 회수가 용이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간이대지급금 회수율 대비 3~4배 이상의 높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체불임금 관련 회수율]

(단위: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지급금 회수율	32.8	32.2	31.9	30.9	30.0	29.7
도산대지급금 회수율	39.2	39.8	40.7	41.1	41.2	41.3
간이대지급금 회수율	12.8	14.6	16.0	16.4	17.0	18.1
체불사업주 용자 회수율	52.5	53.0	56.9	57.4	56.0	55.5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지급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이 아닌 사업주 용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임금채권보장기금 건전성 확보의 양 측면에서 타당한 면이 크다고 보인다⁵⁾⁶⁾.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체불청산용자 금액을 증액한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앞으로도 대지급금 지출 규모 대비 사업주 용자로 인한 지출 규모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거나 사업주 용자제도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은 체불사업주 용자와 체불근로자 용자로 구분되는데, 체불근로자 용자 대비 체불사업주 용자 사업의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 체불근로자 용자의 경우 근로자가 용자를 받더라도 여전히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6) 다만, 아직까지 대지급금 지급 규모에 비해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의 규모는 약 1/10 규모로 작은 편이다.

[체불청산지원용자 및 대지급금 지급 금액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체불청산 지원용자 금액	18,046	19,240	40,979	33,177	72,786	76,918	85,911
사업주 용자	18,046	19,240	21,255	14,259	25,579	39,806	53,224
근로자 용자	-	-	19,724	18,918	47,207	37,112	32,687
대지급금 지급액(B)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684,511
도산 대지급금	168,789 (36.7)	109,975 (19.0)	79,360 (14.5)	36,576 (6.8)	39,635 (5.8)	54,828 (7.6)	69,274 (10.1)
간이 대지급금	291,090 (63.3)	469,715 (81.0)	467,210 (85.5)	500,288 (93.2)	647,271 (94.2)	669,379 (92.4)	615,237 (89.9)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대지급금 지급액 중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

둘째, 체불청산지원용자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용자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고 누적 미상환금액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용자 후 회수 및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체불임금 해소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 대지급금 지급 사업 대비 높은 회수율 등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의 긍정적 측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동 사업의 확대 추진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체불청산지원용자 유형별 부실률을 확인해보면 사업주 용자의 경우 2021년 19%에서 2022년 24%로 증가한 이후 20% 이상의 부실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로자 용자의 경우에도 부실률이 증가 추세에 있음이 확인된다.

[2020~2025년 체불청산지원용자 용자 유형별 부실률]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주 용자	21.0	19.0	24.0	23.0	24.0	20.0
근로자 용자	-	-	0.24	0.62	1.06	2.35

주1)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부실률 = 매년도 말일기준 부실용자잔액* / 매년도 말일기준 용자누적잔액**

* 매년도 말일기준 부실용자 잔액: 양수 금액 - 양수 채권 회수액

** 매년도 말일기준 용자누적잔액: 누적용자액-누적정상상환액- 누적양수액

2)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 부실률(대위변제율) = 누적 대위변제금액 / 누적 용자금액(신용보증지원금액)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회수율의 측면에서도 사업주 용자의 누적 회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누적 미상환액이 2020년 185억 8,200만원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주 용자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용자액	누적 용자액	상환예정액	누적 상환 예정액(A)	실제 상환액	누적 상환액(B)	누적 미상환액 (A-B)	누적 회수율 (B/A)
2020	19,240	72,856	14,001	39,132	6,285	20,550	18,582	52.5
2021	21,255	94,111	17,058	56,190	9,254	29,804	26,386	53.0
2022	14,259	108,370	19,418	75,608	13,247	43,051	32,557	56.9
2023	25,579	133,949	18,522	94,130	10,974	54,025	40,105	57.4
2024	39,806	173,755	15,698	109,828	7,480	61,505	48,323	56.0
2025	53,224	226,979	11,651	121,479	5,953	67,458	54,021	55.5
2026.2	12,360	239,339	3,122	124,601	627	68,085	56,516	54.6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자 융자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융자금	누적 융자금	상환예정액	누적 상환 예정액(A)	실제 상환액	누적 상환액(B)	누적 미상환액 (A-B)	누적 회수율 (B/A)
2021	19,724	19,724	-	-	133	133	-	-
2022	18,918	38,642	1,213	1,213	2,864	2,997	-	247.1
2023	47,207	85,849	6,152	7,365	9,823	12,820	-	176.1
2024	37,112	122,961	12,043	19,408	19,708	32,528	-	167.6
2025	32,687	155,648	22,316	41,724	28,707	61,235	-	146.8
2026.2	27,909	183,557	3,493	45,217	4,913	66,148	-	146.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융자 사업의 확대와 함께 동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내실있게 집행하여 사업 확대에 따른 융자금 회수 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⁷⁾.

7)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회수율 제고를 위한 「양수채권 관리 계획」을 수립·운영(매년 3월 경) 중이고,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채권연령 4년 미만 신규발생 채권(전체 양수채권 중 65.8%) 집중관리, 체계적 채권관리를 위한 관리채권 활동목표 부여(보전조치, 회수활동, 소멸정리 등), 채권관리 역량 지원(신규전입자 교육, 민사채권 실무교육, 현장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25년 7월 14일부터 고액채권 집중회수팀을 구성하여 3억 이상 변제금 채권관리 외에 신규발생 융자 양수채권 전담관리 인력을 운영하여 기존 전담인력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한 강제집행과 회수율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

개 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27조 8,851억 8,5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62조 8,992억 7,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다.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총수입 ·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국토교통부	총수입	27,640,924	27,885,185	27,885,185	-	-
	총지출	59,960,128	62,782,088	62,899,270	117,182	0.2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임동훈 예산분석관(forallglory@assembly.go.kr, 6788-4623)

김민혁 예산분석관(mh.k@assembly.go.kr, 6788-4687)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사업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7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1개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구제와 일상회복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지급 사업이 279억 4,1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② 중동전쟁의 여파로 분쟁 피해가 우려되는 중동지역 건설현장 진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률·세무 지원 확대를 위해 해외인프라 시장 개척 사업이 4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모두의 카드 환급률 상향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이 877억 800만원 증액 편성되었다.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일반회계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지급	-	-	27,941	27,941	순증
	정책연구개발사업	4,015	2,878	3,878	1,000	34.7
	건설산업정보 시스템구축및운영 (정보화)	3,151	4,305	4,438	133	3.1
	해외인프라시장개척	56,510	56,490	56,890	400	0.7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전출	6,710,482	2,141,022	4,517,469	2,376,447	111.0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전출(교통·에너지· 환경세분)	1,489,515	1,693,537	1,781,245	87,708	5.2
교통시설 특별회계	대중교통비환급지원	237,460	557,970	645,678	87,708	15.7
합 계		8,501,133	4,456,202	7,037,539	2,581,337	57.9

주: 1. 총계 기준

2. 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한 사업은 현재계획액을 기재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사업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 편성된 사업은 1개(세부사업 단위)이며, 감액규모는 총 2조 3,764억 4,7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 기금명	세부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전출 (교통·에너지·환경세분)	-	4,276,798	1,900,351	△2,376,447	△55.6
합 계		-	4,276,798	1,900,351	△2,376,447	△55.6

주: 총계 기준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가. 법 개정 논의 및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반영한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소요예산 추계정확성 제고 필요(국토교통부)

(1) 현 황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사업¹⁾은 전세사기피해자²⁾에게 전세보증금 피해액 3분의 1에서 경·공매를 통한 배당금, 임대인으로부터의 변제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 피해회복금을 제한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202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구제 및 일상회복 필요성을 감안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279억 4,1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지원	-	-	27,941	27,941	순증
민간위탁사업 (320-02)	-	-	27,941	27,941	순증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라 한다)에 따를 때,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

임동훈 예산분석관(forallglory@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1034-325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인으로서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 확보,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임차보증금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될 것 등의 요건³⁾을 충족하는 임차인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하게 된다.

동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중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세사기피해자

나.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과거에 인도받았거나 인도가 불가능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받았으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춘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또는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회복금⁴⁾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인 최소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이다. 이때,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⁵⁾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 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개정안이 의결되어야 동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피해지원금 산정기준을 임차보증금의 2분의 1로 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3분의 1보다 높은 상황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경·공매가 완료된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최소지원금과 적법한 소유권한이 없는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무권리 임차인에게 최소지원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소피해자지원금의 경우 국가 재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이고, 선지급금의 경우 위탁기관의 재원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2) 분석의견

현재로서는 동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으로 법에서 동 사업의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요 예산을 추계하기 어렵고, 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인원이 사업대상에 제외되어 있으므로 연내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수반될 여지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이후부터 2025년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 10,256명에 대하여 1조 4,101억원의 피해액이 인정되었고, 2024년에는 15,322명에 대하여 2조 72억원이 인정되어 그 규모가 늘었다가 2025년에는 다시 10,331명에 대해 1조 3,177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경·공매 종료 후의 배당금, 임대인으로 변제받은 금액, 공공으로부터의 임대료 지원액 등이 포함되며, 법률상당지원이나 생계비 지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510)

[연도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2023	2024	2025	합 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인원(A)	10,256	15,322	10,331	35,909
전세피해 임차보증금(B)	14,101	20,072	13,177	47,350
피해자 1인당 피해 임차보증금(B/A)	1.37	1.31	1.28	1.32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25년말까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35,909명에서 피해주택을 직접매입한 인원 약 4,000명을 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완료 통계와 법원의 경·공매 종료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지원금이 전세피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을 추정한 결과 약 4,800명에 대해 인당 평균 3,310만원 정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상기 인원에서 전체 전세사기피해자 중 경·공매절차가 종료된 피해자의 비율인 43.7%⁶⁾를 곱하고 개정법률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것을 전제로 지원대상인원 중 40% 정도인 839명에게 최소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최소지원금 소요예산을 277억 6,400만원으로 추산하였고 여기에 위탁관리비 1억 7,700만원을 더한 279억 4,1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소요예산 산출근거]

① 최소지원금 = 지원대상 예상인원 × 인당 최소지원금 지급 예상액 × 피해자 중 경공매절차 종료자 비중 × 연내 지급률 = 4,800명 × 33.1백만원 × 43.7% × 40% = 27,764백만원

② 위탁관리비: 177백만원

합계: 27,941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6)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자를 제외한 전세사기피해자는 32,000명 정도이며 이중 경·공매 절차가 종료된 인원은 14,000명으로 그 비중은 43.7% 정도이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최소지원금 산정 시의 기준을 임차보증금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가 소요예산 산출근거로 제시한 3분의 1보다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개정안 논의 경과에 따라 기준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 동 사업에 따른 지원대상 및 인당 최소지원금 지급금은 증가하며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초과세수 예상분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과 달리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자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6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에 따를 때,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보증금은 2억원 이하가 84.2% 정도로 나타나며, 경·공매 절차 종료로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 미회수 보증금 규모는 1억원 이하가 76.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피해 보증금 및 미회수 보증금 액수 구간별 건수]

(단위: 건, %)

구 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피해보증금	12,733	12,863	4,031	659	103	11
비중	41.9	42.3	13.3	2.2	0.3	0.0
미회수 보증금 ¹⁾	4,665	1,238	200	21	5	0
비중	76.1	20.2	3.3	0.3	0.1	0.0

주: 1) 경·공매 종료 후 배당 이후에도 회수되지 못한 보증금

1. 경·공매 절차가 종료되고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임대인 변제금,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 기타 피해회복금은 포함되지 않음

자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 2025.6.

경·공매 절차가 종료된 사건 6,130건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3억원, 경·공매 결과 배당으로 회수된 보증금은 1인당 6천만원 수준이며, 그에 따라 1인당 미회수보증금 평균은 7천만원이다. 해당 통계의 경·공매 절차가 종료된 사건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보증금의 3분의 1은 4,300만원 수준이나, 1인당 평균 보증금의 2분

의 1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액수는 6,500만원이 되어 배당 회수금 평균을 초과하는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책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로, 국토교통부는 개정법의 시행시기를 올해 4분기로 예상하여 연내지급률을 40%로 설정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개정법을 신속하게 의결하는 경우 시행일이 앞당겨질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연내 지급률이 상향될 수 있어 연내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인원은 적게는 1만명에서 많게는 1.5만명 수준으로 나타나는바, 2026년에도 상당한 인원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최소지원금 소요예산 산정시의 지원대상은 2025년까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요예산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최소피해지원금 기준이 상향되는 경우 그리고 올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인원에 대한 최소지원금 지급이 실시되는 경우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소요예산의 가변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심사시 개정안 논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예산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소요예산 증액이 예상되는 경우 그 재원을 마련할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법률 및 세무 자문 지원 단가 및 규모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국토교통부)

(1) 현 황

해외인프라 시장 개척 사업¹⁾은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인프라 수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행정업무 및 각종 행사 실시, 해외건설 전문가 훈련, 해외투자개발사업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564억 9,000만원이나 중동지역 건설현장에서 분쟁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률 및 세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억원이 증액된 568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해외인프라 시장 개척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해외인프라 시장 개척 사업	56,510	56,490	56,890	400	0.7
해외건설시장개척 기업활동지원	5,887	5,887	6,287	400	6.8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법률 지원의 경우 해외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독소조항을 검토하고, 공사기간 지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및 채무불이행 등 주요 법률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세무 지원의 경우 진출국 세법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세부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임동훈 예산분석관(forallglory@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4310-301

(2) 분석의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률 및 세무 지원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공사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인건비 등 직접비 증가 및 미수금 회수 등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그간의 신청 및 지원실적이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지원 횟수 및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기업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본예산에도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해외건설시장개척 기업활동지원에 법률 및 세무 자문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지원액에 근거하여 기 편성된 지원횟수의 50% 정도의 추가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에는 회당 12시간을 기준으로 단가 550만원을 설정하였으나 중동 전쟁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회당 24시간을 기준으로 단가 1,100만원을 설정하였다.

[해외건설시장개척 기업활동지원 중 법률·세무지원 소요예산 산출근거]

2026년 본예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① 법률 지원 36건 × 5.5백만원 + 세무 지원 36건 × 5.5백만원 = 411백만원	① 법률 지원 36건 × 5.5백만원 + 세무 지원 36건 × 5.5백만원 = 411백만원
합계: 411백만원	② (증액) 법률 지원 18건 × 11백만원 + 세무 지원 18건 × 11백만원 = 400백만원
	합계: 811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따를 때, 국내 법무법인 및 세무법인과 협약하여 중소·중견기업에게 법률 및 세무 자문을 지원하며, 해당 법인들이 구축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동지역에서의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기업유형별 중동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수주액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2021년 107.7억달러에서 2024년 183.1억달러를 기록한 후 2025년 다시 117.3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중견기업은 2023년 5,128.8만달러에서 2025년 1,270.7만달러 정도로 확인된다. 중소기업은 2021년 1,961.3만달러 수준을 기록한 후 등락을 반복하며 2025년에는 2,850.6만달러 수준의 수주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연도별 기업유형별 중동지역 건설공사 수주 현황]

(단위: 건, 천달러)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대기업	수주건수	17	14	12	34	22
	수주액	10,768,513	8,888,835	10,894,054	18,310,173	11,727,206
중견기업	수주건수	6	2	16	8	13
	수주액	254,954	122,179	512,876	173,338	127,067
중소기업	수주건수	11	17	16	12	18
	수주액	196,131	9,884	27,806	10,699	28,506
합계	수주건수	34	33	44	54	53
	수주액	11,219,598	9,020,898	11,434,736	18,494,210	11,882,779

자료: 국토교통부

아울러 중동지역에서의 건설공사 관련 미수금은 2022년 9억 9,437만달러 이후 2025년 4억 9,410만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지만 아직 상당한 규모의 미수금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연도별 중동지역 건설공사 미수금 현황]

(단위: 천달러)

2021	2022	2023	2024	2025
877,589	994,366	800,041	750,988	494,096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따를 때, 중동지역의 공사와 관련하여 2025년 상반기 해외건설 시공경과통보 기준으로 중동지역의 미수금 27건 중 시공분쟁이 13건으로 48%, 국가리스크가 10건으로 37%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에서 국가리스크를 이유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총 13건인데 이 중 10건이 중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그 원인은 중동에서의 전쟁과 중동지역에 가해진 경제제재에 따른 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파악된다.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건설을 하는 경우 전쟁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나 해당 보험은 전쟁으로 인해 직접 타격을 받아 건설현장의 물리적인 손상이나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촉발된 각종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쟁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 간 비용분담은 계약으로 정해지는데, 통상적으로 전쟁과 같이 불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상의 공사기간 미준수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는 해소될 여지가 있지만 공사중단에 따른 금융비용, 현장유지비용, 인건비, 간접비 등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중동전쟁으로 발생 가능한 법률분쟁의 양상은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계약관계뿐 아니라 동반 진출한 중소·중견 기업과 현지 기업, 현지 근로자 간의 대금 및 임금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중소·중견 건설기업 중 자체적으로 국제 법률 및 세무 자문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동 사업에 따른 법률 및 세무 자문 지원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이나 세무 자문 지원이 공사중단 및 지연에 따라 중소·중견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직접비용을 경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기존에도 전쟁에 따른 국가리스크를 이유로 발생한 미수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

안할 때, 법률이나 세무 자문 지원 규모의 양적 확대 외에 해당 지원이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법률 및 세무 자문 지원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전세계적으로 2024년에는 법률지원 20건, 세무지원 19건, 2025년에는 법률 23건, 세무 2건으로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한 측면이 있다. 특히 중동지역의 경우 2024년의 법률지원 실적은 6건으로 전체의 30%이고, 세무지원 실적은 3건으로 전체의 15.8%이다. 2025년의 경우 법률지원 실적은 5건으로 전체의 21.7%인 것으로 나타난다. 법률 및 세무지원을 신청한 기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 신청건수와 지원건수의 차이는 신청기업의 내부 사정에 의해 자체적으로 취소한 것에 기인한다.

[연도별 법률 및 세무지원 신청 및 지원건수]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법률지원	신청건수	33	32	30	26	24
		지원건수	30	25	26	20	23
		지원액	177	128	131	110	123
	세무지원	신청건수	-	12	17	22	7
		지원건수	-	12	16	19	2
		지원액	-	118	88	100	20
중동 지역	법률지원	신청건수	8	8	4	6	5
		지원건수	7	6	4	6	5
		지원액	39	34	22	33	22
	세무지원	신청건수	-	1	1	3	1
		지원건수	-	1	1	3	1
		지원액	-	13	6	17	13

자료: 해외건설협회

기존 집행실적에 비추어볼 때, 법률 및 세무 지원규모를 양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연내 효과적으로 집행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²⁾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집행실적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추가경정예산 안에 반영된 법률 및 세무 지원의 확대 건수 및 건당 단가가 적정한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고, 법률 및 세무 자문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원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산업통상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특허 및 지적재산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등 민·관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서류 작성 대행, 법무·세무·회계컨설팅 등 15개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해외에서 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³⁾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다른 국가재정사업과의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따른 지원과 동 사업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사업 간 차별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⁴⁾

2) 국토교통부는 중동전쟁 이후 해외건설협회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법률 지원 등을 우선순위로 요청하였다는 점,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이 공사비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어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관련 분쟁이 우려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수요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사업시행주체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도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선정 과정에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 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4) 국토교통부는 수출바우처와 동 사업은 사업 목적 및 선정기준이 다르고, 수출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광범위하여 해외건설기원이 지원을 받기 어려우며, 영세한 해외건설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 모두의 카드 사업 소요예산 적정성 검토 필요(국토교통부)

(1) 현 황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¹⁾은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비 지출액의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5,579억 7,000만원이나,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환급률 인상을 통해 지원을 한시적으로(6개월) 확대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에는 877억 800만원을 증액한 6,45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추경 ¹⁾	2026		증 감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237,460	557,970	645,678	87,708	15.7

주: 1) 추경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김민혁 예산분석관(mh.k@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4931-354

(2) 분석의견

모두의 카드 사업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 추계에 활용된 추정치가 실제 이용실적 대비 과소·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추경안의 소요예산 전반을 적정히 재추계하여 국회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모두의 카드(舊 K-패스) 사업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제1항²⁾ 및 제12조제5호³⁾에 근거하여,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에게 정해진 환급기준에 따라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환급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방식으로 분담하며, 서울에는 국비 40%, 그 외 지역에는 국비 50%를 보조하고 있다. 현재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⁴⁾

K-패스 사업은 2024년 5월 도입 당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나, 국토교통부는 교통비 지출이 많은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부터 K-패스 사업을 ‘모두의 카드’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의 환급률 기반 환급 방식(기본형) 외에 정액형 방식(일반형 및 플러스형)이 신규 도입되었으며, 이용자가 공제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환급 상한도 폐지되어 이용자는 제한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당시 모두의 카드의 환급 기준 금액은 지역 구분 없이 이용자 유형에 따라서만 차등 설정되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이하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4) 2026년도 2월 4일부터 전라남도 4개 기초자치단체(구례군·완도군·영광군·진도군) 및 경상북도 7개 기초자치단체(봉화군·영덕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울릉군·울진군)가 모두의 카드 사업에 신규 참여함에 따라,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전체가 모두의 카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업의 수혜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방권을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및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⁵⁾하고, 지역에 따라 기준 금액을 차등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026년도 모두의 카드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국민에게 교통비 지출금액의 기준 비율 또는 기준 금액 초과분을 환급 지원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어린이·청소년 미해당)인 국민						
○ (지원방식) 환급금 지원방식(기본형, 모두의 카드 일반형,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에 따라 산출된 환급액을 비교하여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환급 방식을 적용						
1. (기본형)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에게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 [기본형 환급률]						
(단위: %)						
구분	일반 국민	청년 ¹⁾	어르신 ²⁾	2자녀	3자녀 이상	저소득 ³⁾
환급률	20.0	30.0	30.0	30.0	50.0	53.3
주: 1) 「청년기본법」에 따른 19~34세 (경기·인천의 경우 19~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2) 65세 이상						
3)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정액형 - 일반·플러스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교통비(차액)를 100% 환급 - 1회 이용금액·이용자 유형·지역별로 기준 금액을 차등 설정 [정액형 환급 기준 금액]						
(단위: 만원)						
구분	일반 국민		청년·어르신·2자녀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형	플러스형
수도권	6.2	10.0	5.5	9.0	4.5	8.0
일반 지방권	5.5	9.5	5.0	8.5	4.0	7.5
우대지원지역	5.0	9.0	4.5	8.0	3.5	7.0
특별지원지역	4.5	8.5	4.0	7.5	3.0	6.5
주: 일반형은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형은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이 3,000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은 기본형 모두의 카드의 환급률을 한시적으로(6개월) 기존 대비 50% 이상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 사업의 환급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환급률 인상에 따라 월 146억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를 6개월분 반영한 877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5) 84개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원지역(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44개)과 특별지원지역(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등 40개)으로 구분하고, 그 외 지역은 일반 지방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 83개)으로 분류하였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기본형 환급률 인상]

(단위: %)

구분	일반	청년	어르신	2자녀	3자녀 이상	저소득
변경 전	20.0	30.0	30.0	30.0	50.0	53.3
변경 후	30.0	45.0	45.0	45.0	75.0	83.3
인상 폭	10%p	15%p			25%p	30%p

자료: 국토교통부

[기본형 환급률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산출근거]

- 한시적 기본형 환급률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6개월분) : **87,708백만원**
 - (기존 가입자) 211만명¹⁾ × 7,580원 × 47.51%³⁾ × 6개월 = 45,582백만원
 - (추가 신규 가입자) 65만명²⁾ × 22,740원 × 47.51%³⁾ × 6개월 = 42,126백만원

주: 1) 기존 가입자 중 향후 6개월 간 기본형 환급 대상인원 추정치(월평균)

2) 고유가·환급률 인상 등으로 인한 신규 가입자(본예산 미반영분) 추정치

3) 평균 국고보조율

자료: 국토교통부

먼저 해당 사업 추경의 목적적합성과 관련하여,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유류 공급 불안 요인 해소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국내 유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또한, 당초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로 발생한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모두의 카드 사업의 지원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2026년 1월 기준 모두의 카드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가입자 449만명 중 모두의 카드를 이용한 사람은 361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80.4%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환급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271만명(이용자 대비 75.0%)으로, 209만명(77.4%)이 기본형 환급방식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았고, 48만명(17.8%)은 정액형(일반형), 13만명(4.8%)은 정액형(플러스형)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환급 대상자의 77.4%가 기본형 환급을 받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기본형 환급률을 인상하는 추가 지원 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⁶⁾

6) 또한, 환급률 인상에 따라 정액형 환급방식 대신 기본형 환급방식을 적용받는 이용자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1월 모두의 카드 이용 및 환급인원 실적]

(단위: 천명, 백만원)

구 분	가입 인원	월간 이용 인원	환급 대상 인원	기본형		정액형(일반형)		정액형(플러스형)	
				대상 인원	비중	대상 인원	비중	대상 인원	비중
일반 국민	1,471	1,169	892	652	73.1	190	21.3	50	5.6
청년·어르신·2자녀	2,721	2,203	1,637	1,276	78.0	283	17.3	77	4.7
3자녀	69	56	42	39	92.7	2	5.7	1	1.6
저소득	227	180	135	127	94.3	7	5.3	1	0.5
전체 가입자	4,488	3,608	2,706	2,094	77.4	483	17.8	129	4.8

자료: 국토교통부

다만, 재정소요 추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환급 대상 인원, 1인당 환급 규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두의 카드 개편 이후 2026년 1월 기준 환급 실적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을 통해 1인당 평균 2만 1,637원의 환급금이 지급되었다. 환급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기본형은 20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만 5,773원, 정액형은 6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4만 1,723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2026년 1월 모두의 카드 환급 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전체 실적			기본형 환급			정액형 환급		
	환급 대상자	환급액 합계	1인당 환급액 (원)	환급 대상자	환급액 합계	1인당 환급액 (원)	환급 대상자	환급액 합계	1인당 환급액 (원)
2026.1.	2,705,502	58,538	21,637	2,094,169	33,031	15,773	611,333	25,507	41,723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1인당 환급액을 기본형 1만 4,053원, 정액형 3만 4,022원으로 각각 추산하였다. 이는 2026년 1월 실적 대비 기본형이 1,730원, 정액형이 7,701원 적은 수준으로, 과소하게 추정된 측면이 있다.

[모두의 카드 2026년도 본예산 산출 근거]

○ 모두의 카드 환급비용 지원 : 555,647백만원
가. 기본형 환급비용 지원 : 212,324백만원
- 265만명(월 평균 환급 대상자 수) × 14,053원(월 평균 환급액) × 47.51%(국고보조율) × 12개월 = 212,324백만원
나. 정액형 환급비용 지원 : 343,323백만원
- 177만명(연 평균 환급 대상자 수) × 34,022원(월 평균 환급액) × 47.51%(국고보조율) × 12개월 = 343,323백만원

- 주: 1. 국토교통부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임
 2. 단수 차이로 인한 오차가 발생함에 유의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기존 가입자 중 환급률 인상에 따라 추가 환급금을 지급받을 대상자를 2026년 1월 기본형 환급 대상자 실적(209.4만명)과 유사한 211만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해당 이용자들에게 7,580원의 추가 환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였다.⁷⁾ 다만, 이는 환급률 50% 인상에 따른 재정소요만 반영한 것으로, 1인당 환급소요가 본예산 추정치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7) (참고) 추경안에 따라 모두의 카드 기본형의 환급률이 인상될 경우 이용자는 기본형 환급이 유리한 구간에서 기존 환급금 대비 50% 수준의 추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체감할 수혜 금액을 살펴보고자 정액형(일반형) 이용자의 1회 통행요금을 1,600원, 정액형(플러스형) 이용자의 1회 통행요금을 3,200원으로 단순 가정하여 산출해보았다. 그 결과, 일반 국민 중 일반형 이용자는 최대 7,680원, 플러스형 이용자는 최대 1만 2,480원의 추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일반형 이용자가 최대 2만 8,800원, 플러스형 이용자가 최대 5만 1,142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용 횟수 및 이용자 유형에 따른 예상 추가 환급금]

(단위: 원)

월간 이용횟수	일반 국민		청년·어르신·2자녀		저소득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형	플러스형
15회	+2,400	+4,800	+3,600	+7,200	+7,200	+14,400
30회	+4,800	+9,600	+7,200	+14,400	+14,400	+28,800
39회	+6,240	+12,480	+9,360	+18,720	+18,720	+37,440
40회	+6,400	+10,400	+9,600	+19,200	+19,200	+38,400
45회	+7,200	-	+10,800	+10,800	+21,600	+43,200
48회	+7,680	-	+11,520	+5,520	+23,040	+46,080
49회	+7,120	-	+11,760	+3,760	+23,520	+47,040
54회	+1,520	-	+7,480	-	+25,920	+51,142
60회	-	-	+2,200	-	+28,800	+47,936

- 주: 1. 환급률 인상 시 환급금과 인상 전 환급금의 차액을 나타낸 것임.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일반형 이용자는 1회 통행 기준 1,600원, 플러스형 이용자는 1회 통행 기준 3,200원 단일 금액으로만 이용한다고 가정하였음
 2. 최대 환급금은 bold 표시

또한, 국토교통부는 고유가·차량 5부제 실시·환급률 상향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신규 유입된 65만명을 대상으로, 월 2만 2,740원 수준의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본형 환급률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산출근거]

○ 한시적 기본형 환급률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6개월분) : 87,708백만원
- (기존 가입자) 211만명¹⁾ × 7,580원 × 47.51% ³⁾ × 6개월 = 45,582백만원
- (신규 가입자) 65만명²⁾ × 22,740원 × 47.51% ³⁾ × 6개월 = 42,126백만원

- 주: 1) 기존 가입자 중 향후 6개월 간 기본형 환급 대상인원 추정치(월평균)
 2) 신규 가입자(본예산 미반영분) 중 향후 6개월 간 기본형 환급 대상인원 추정치(월평균)
 3) 평균 국고보조율

자료: 국토교통부

이는 최근 모두의 카드 이용자 증가 추세가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소요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적절해 보인다. 모두의 카드 가입자 수는 2025년 1월 기준 283만명에서 2026년 1월에는 449만명으로 58.7% 증가하였다. 2025년 연간 월평균 신규 가입자 수는 13.1만명이었으나, 모두의 카드 개편 이후 2026년 1월·2월에는 월평균 19.6만명으로 49.5% 증가하였다.

[월별 모두의 카드(舊 K-패스) 이용 실적 및 가입자 수 전망]

(단위: 명, 회, 원)

구분		가입자 수 (월말 기준)	1인당 평균 이용횟수	환급 대상자 수	1인당 평균	1인당 평균
					이용금액	환급액
2025	1월	2,828,118	25	1,917,211	64,730	14,819
	4월	3,392,338	28	2,330,275	71,980	16,890
	7월	3,755,448	27	2,409,996	74,682	17,463
	10월	4,055,676	24	2,548,685	68,062	15,985
2026	1월	4,488,484	24	2,705,502	67,483	21,637
	2월 ¹⁾	4,658,916	-	-	-	-
	12월(전망) ²⁾	6,247,000	-	-	-	-

주: 1) 이용실적 미확정(3. 26. 기준)

2) 2026년도 예산안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이러한 추세는 모두의 카드 이용 혜택 확대 등으로 신규 유입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본예산 편성 시 월평균 16만명의 신규 가입자 유입을 예측하였음을 고려하면,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 40~50만명 수준의 추가 신규 가입(본예산 미반영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65만명이라는 예상치는 여기에 고유가·환급률 인상 등에 따른 가입추세 증가까지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액형 환급 수령자 수는 2026년 1월 기준 61만명에 불과하여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177만명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예상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가입 추세를 반영하여 2026년 예상 가입자 수(연간 중간값, 534만명)의 20% 수준인 100만명 내외가 정액형 환급을 받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더하여 기본형 환급에서 정액형 환급으로의 전환 수요, K-패스 사업 도입 이후 대중교통 이용 증가 추이, 기후동행카드(서울시) 등 유사 제도로부터의 이용자 유입 등을 종합 고려하여 70만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2026년 모두의 카드 개편에 따라 기후동행카드의 일 평균 이용자 수가 72만명에서 3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⁸⁾ 그러나, 2026년 1월 및 2월 기후동행카드의 일 평균 이용자 수는 각각 66만명과 60만명으로 나타나 이용자 이탈 규모가 서울시의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추이: 2025.11.~2026. 2.]

(단위: 만명)

구분	'25.11.	'25.12.	'26.1.	'26.2.
월간 충전자 수	89	92	86	77
일평균 이용자 수	72	71	66	60

주: 기후동행카드 일평균 이용자 수는 방학기간 등에 영향을 받아 1·2월은 감소하였다가 3월에는 회복되는 경향이 있고, 2026년 3월 이용자 수는 다시 7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서울특별시

이처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이탈이 저조한 것은 잠금효과(lock-in effect)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의 카드(일반형)의 환급 기준 금액이 수도권 이용자

8) 서울특별시는 2026년도 1~7월 기후동행카드 운영 예산에 일 평균 이용객 30만명 기준으로 60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다.

9) 이용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익숙해지거나 의존하게 되어 다른 대안으로 전환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가격과 동일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혜택의 차이도 크지 않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모두의 카드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추경안에 따른 기본형 환급률 인상이 반영될 경우 기후동행카드 등 유사 제도로부터의 이용자 유입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의 본예산 편성 당시 소요예산 추계에 기초로 사용된 일부 추정치가 실제 실적 대비 과소·과다하게 산정되어 현재로서는 추경안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사업 개편 및 급격한 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소요를 정확히 추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가용한 자료 범위에서 예산의 과부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모두의 카드 개편 후 최신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추경안의 소요예산 전반을 적정하게 재추계하여 국회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¹⁰⁾ 특히,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형 환급률 인상 외에도 정액형 환급 기준 금액 인하, 한시적 요금 전면 무료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재추계 결과 해당 사업의 재정 여력이 확인될 경우 혜택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 국토교통부는 모두의 카드 도입 이후 최신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추계하였다는 입장이나,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소요예산 산출 근거만으로는 추경안 편성 규모의 적정성 판단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6년 4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ISBN 979-11-6799-246-8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